GOVP1199221725

法務資料 第109輯

外國 矯正關係法令集(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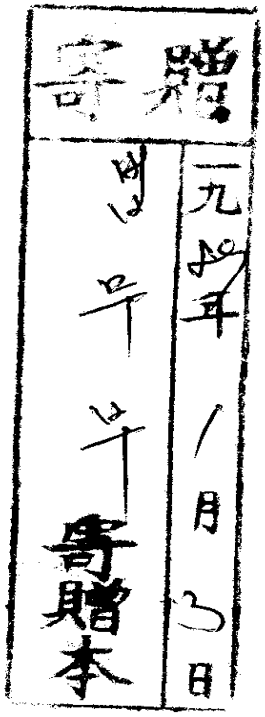

法　務　部

發 刊 辭

第6共和國의 出帆과 더불어 汎國民的 熱望 속에 民主化의 課業이 하나씩 그 結實을 맺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行刑도 앞으로 보다 民主的이고 發展的인 方向으로 改善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各界로부터 나오고 있다.

그동안 우리 나라의 矯正行政도 教育刑主義에 立脚하여 制度面이나 運營面에서 先進國 수준에 크게 뒤지지 않을 정도의 括目할만한 成長과 發展을 거듭하여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 나라의 民主的이고 科學的인 矯正處遇技法의 開發·施行을 위하여는 學問的 理論을 바탕으로 外國制度와의 比較研究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行刑에 대한 學問的 研究가 本格化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늘 아쉽게 생각하여 오던 중 이번에 外國 몇 나라의 矯正關係法令을 蒐集·飜譯하여, 比較研究를 위한 資料集으로 그 發刊을 하게 되니 그 意義 매우 크다 할 것이다.

한 나라의 行刑制度는 그 時代的 背景과 政治狀況 그리고 刑罰觀에 따라 變遷의 過程을 겪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犯法者의 收容管理 및 處遇에 관한 마그나카르타로서의 矯正關係法令은 바로 그 나라 그 시대의 變遷史인 동시에 社會發展의 한 단면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으며 이에 대한 比較研究는 매우 有益하고 必須的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本書의 編輯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 行刑法制에 관한 比較研究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大陸法과 英美法 系統의 대표적 國家인 西獨, 스위스, 日本, 英國, 美國, 카나다 등의 현행 矯正關係法令을 우선 소개하면서 유엔被拘禁者處遇最低基準規則과 日本의 현행 監獄法 改正試案으로 마련된 刑事施設法案도 앞으로 우리의 行刑法 改正方向에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보아 함께 수록하기로 하였다.

本書의 出刊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 나라 矯正行政의 획기적인 發展과 더불어 矯正分野에 대한 學問的 研究가 더욱 活性化 되기를 期待하면서 本書가 나오기까지 刻苦의 노력을 傾注하여 온 關係職員 여러분에게 感謝를 드린다.

1988. 12. 9.

法務部 矯政局

目 次

◇ 日本 監獄法 3
監獄法施行規則 31
刑事施設法(案) 99
刑事施設法施行法(案) 205
◇ 싱가포르 行刑法 233
◇ 附錄
韓國 行刑法 293

目　　次

第1部　日　　本

監　獄　法

第1章　総則 …… 2
第2章　収監 …… 6
第3章　拘禁 …… 8
第4章　戒護 …… 10
第5章　作業 …… 12
第6章　教誨及ビ教育 …… 14
第7章　給養 …… 14
第8章　衛生及ビ医療 …… 16
第9章　接見及ビ信書 …… 18
第10章　領置 …… 20
第11章　賞罰 …… 22
第12章　釈放 …… 24
第13章　死亡 …… 26
附　則 …… 28

監獄法施行規則

第1章　総則 …… 30
第2章　収監 …… 34
第3章　拘禁 …… 38
第4章　戒護 …… 44
第5章　作業 …… 50
第6章　教誨及ビ教育 …… 56
第7章　給養 …… 58
第8章　衛生及ビ医療 …… 66
第9章　接見及ビ信書 …… 70

目　　次

제 1 부　日　　本

監　獄　法

제 1 장　總則 ····· 3
제 2 장　收監 ····· 7
제 3 장　拘禁 ····· 9
제 4 장　戒護 ····· 11
제 5 장　作業 ····· 13
제 6 장　敎誨와 敎育 ····· 15
제 7 장　給與 ····· 15
제 8 장　衛生과 治療 ····· 17
제 9 장　接見과 書信 ····· 19
제10장　領置 ····· 21
제11장　賞罰 ····· 23
제12장　釋放 ····· 25
제13장　死亡 ····· 27
附　則 ····· 29

監獄法施行規則

제 1 장　總則 ····· 31
제 2 장　收監 ····· 35
제 3 장　拘禁 ····· 39
제 4 장　戒護 ····· 45
제 5 장　作業 ····· 51
제 6 장　敎誨와 敎育 ····· 57
제 7 장　給與 ····· 59
제 8 장　衛生과 醫療 ····· 67
제 9 장　接見과 書信 ····· 71

第10章　領置 ……78
第11章　賞罰 ……82
第12章　釈放 ……86
第13章　死亡 ……88
附　則 ……92

刑事施設法（案）

第１編　総則 ……98
第１章　通則 ……98
第２章　収容の開始 ……100
第３章　物品の貸与等及び自弁 ……102
第４章　保健衛生及び医療 ……106
第５章　宗教 ……112
第６章　書籍等の閲覧 ……114
第７章　規律及び秩序の維持 ……116
第２編　受刑者の処遇 ……128
第１章　通則 ……128
第２章　矯正処遇の実施 ……132
第３章　作業 ……136
第４章　教科指導等 ……144
第５章　外出及び外泊 ……146
第６章　面会，信書の発受等 ……150
第７章　被勾留受刑者等の処遇 ……158
第３編　被勾留者の処遇 ……160
第１章　通則 ……160
第２章　面会，信書の発受等 ……162
第４編　死刑確定者等の処遇 ……168
第１章　死刑確定者の処遇 ……168
第２章　各種被収容者の処遇 ……172

제10장 領置 ……79
제11장 賞罰 ……83
제12장 釋放 ……87
제13장 死亡 ……89

附 則 ……93

刑事施設法(案)

제 1 편 總則 ……99

제 1 장 通則 ……99
제 2 장 收容의 開始 ……101
제 3 장 物品貸與 등과 自辨 ……103
제 4 장 保健衛生과 醫療 … ……107
제 5 장 宗教 ……113
제 6 장 書籍 등의 閱覽 ……115
제 7 장 規律과 秩序의 維持 ……117

제 2 편 受刑者의 處遇 ……129

제 1 장 通則 ……129
제 2 장 矯正處遇의 實施 ……133
제 3 장 作業의 實施 ……137
제 4 장 教科指導 등 ……145
제 5 장 外出과 外泊 ……147
제 6 장 面會, 書信受發 등 ……151
제 7 장 被拘束受刑者 등의 處遇 ……159

제 3 편 被拘禁者의 處遇 ……161

제 1 장 通則 ……161
제 2 장 面會, 書信受發 등 ……163

제 4 편 死刑確定者 등의 處遇 ……169

제 1 장 死刑確定者의 處遇 ……169
제 2 장 各種 被收容者의 處遇 ……173

第５編　雑則 ……172
第１章　領置 ……172
第２章　賞罰 ……178
第３章　審査の申請及び苦情の申出 ……186
第４章　釈放 ……192
第５章　死亡 ……194
第６章　労役場及び監置場 ……196
第７章　留置施設への代替収容 ……198
第８章　罰則 ……200
附　則 ……202
理　由 ……202
刑事施設法施行法(案) ……204

PART II. SINGAPORE

PRISONS ACT

PART I. PRELIMINARY 234
PART II. CONSTITUTION AND ADMINISTRATION 236
PART III. OFFICERS 240
PART IV. CUSTODY AND REMOVAL OF PRISONERS 248
PART V. DISCIPLINE AND PRISON OFFENCES 258

*** APPENDIX**

KOREAN PENAL ADMINISTRATION ACT 292

제 5 편 雜則 ……173
제 1 장 領置 ……173
제 2 장 賞罰 ……179
제 3 장 審査의 申請 및 苦衷의 申告 ……187
제 4 장 釋放 ……193
제 5 장 死亡 ……195
제 6 장 勞役場과 留置場 ……197
제 7 장 留置施設에의 代替收容 ……199
제 8 장 罰則 ……201
附 則 ……201
理 由 ……201
刑事施設法施行法(案) ……205

제 2 부 싱가포르

行 刑 法

제 1 장 序則 ……235
제 2 장 組織과 管理 ……237
제 3 장 公務員 ……241
제 4 장 受刑者의 監護와 移送 ……247
제 5 장 規律과 矯導所犯罪 ……259

＊附錄

韓國 行刑法 ……292

제 1 부

日本

監　獄　法

（ 明治41.3.28　法　28 ）

改正 昭22法20・法61 ・法223,
昭24法143,
昭27法286,
昭28法68

目　次

第１章　総則（第１条～第10条）
第２章　収監（第11条～第14条）
第３章　拘禁（第15条～第18条）
第４章　戒護（第19条～第23条）
第５章　作業（第24条～第28条）
第６章　教誨及ビ教育（第29条～第31条）
第７章　給養（第32条～第35条）
第８章　衛生及ビ医療（第36条～第44条）
第９章　接見及ビ信書（第45条～第50条）
第10章　領置（第51条～第57条）
第11章　賞罰（第58条～第62条）
第12章　釈放（第63条～第70条）
第13章　死亡（第71条～第75条）
附　則

第１章　總　　則

第１条（監獄の種類）　監獄ハ之ヲ左ノ４種トス

１．懲役監　懲役ニ処セラレタル者ヲ拘禁スル所トス

２．禁錮監　禁錮ニ処セラレタル者ヲ拘禁スル所トス

監　獄　法

(1908. 3. 28. 법 28)

<改 正>
1947. 法 20, 61, 223,
1949. 法 143,
1952. 法 286,
1953. 法 68.

제1장　總則(제1조～제10조)
제2장　收監(제11조～제14조)
제3장　拘禁(제15조～제18조)
제4장　戒護(제19조～제23조)
제5장　作業(제24조～제28조)
제6장　敎誨와 敎育(제29조～제31조)
제7장　給與(제32조～제35조)
제8장　衛生과 治療(제36조～제44조)
제9장　接見과 書信(제45조～제50조)
제10장 領置(제51조～제57조)
제11장 賞罰(제58조～제62조)
제12장 釋放(제63조～제70조)
제13장 死亡(제71조～제75조)
附　則

제1장 總　　則

제1조 (監獄의 種類)　① 監獄은 이를 다음 4種으로 한다.

1. 懲役監 : 징역을 선고받은 자를 拘禁하는 곳으로 한다
2. 禁錮監 : 금고를 선고받은 자를 구금하는 곳으로 한다

3．拘留場　拘留ニ処セラレタル者ヲ拘禁スル所トス

4．拘置監　刑事被告人，拘禁許可状，仮拘禁許可状又ハ拘禁状ニ依リ監獄ニ拘禁シタル者，引致状ニ依リ監獄ニ留置シタル者及ヒ死刑ノ言渡ヲ受ケタル者ヲ拘禁スル所トス

②拘置監ニハ懲役，禁錮又ハ拘留ニ処セラレタル者ヲ一時拘禁スルコトヲ得

③警察官署ニ附属スル留置場ハ之ヲ監獄ニ代用スルコトヲ得但懲役又ハ禁錮ニ処セラレタル者ヲ1月以上継続シテ拘禁スルコトヲ得ス

第2条（少年の拘禁場所）　2月以上ノ懲役ニ処セラレタル18歳未満ノ者ハ特ニ**設ケタル監獄又ハ監獄内ニ於テ設ケタル場所ニ之ヲ拘禁ス**

②前項ノ規定ニ依ル者ハ満20歳ニ至ルマテ又満20才ニ至リタル後3月内ニ刑期終了ス可キ者ハ其残刑期間仍ホ継続シテ之ヲ拘禁スルコトヲ得

③心身発育ノ状況ニ因リ必要ト認ムル者ハ前2項ノ適用ニ付キ年令ニ拘ハラサルコトヲ得

第3条（男監及び女監の分隔，監獄の種類による分界）　監獄ニ男監及ヒ女監ヲ設ケ之ヲ分隔ス

②懲役監，禁錮監，拘留場及ヒ拘置監ノ同一区劃内ニ在ルモノハ之ヲ分界ス

第4條（巡閲，巡視）　主務大臣ハ少クトモ2年毎ニ1回官吏ヲシテ監獄ヲ巡閲セシム可シ

②判事及ヒ検察官ハ監獄ヲ巡視スルコトヲ得

第5條（参観）　監獄ノ参観ヲ請フ者アルトキハ学術ノ研究其他正当ノ理由アリト認ムル場合ニ限リ命令ノ定ムル所ニ依リ之ヲ許スコトヲ得

3. 拘留場 : 구류를 선고받은 자를 구금하는 곳으로 한다.
4. 拘置監 : 형사피고인, 拘禁許可狀·假拘禁許可狀 또는 拘禁狀에 의하여 감옥에 구금된 자, 引置狀에 의하여 감옥에 留置된 자 및 사형선고를 받은 자를 구금하는 곳으로 한다.

② 구치감에는 징역, 금고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은 자를 一時拘禁할 수 있다.

③ 경찰관서에 설치된 留置場은 이를 감옥으로 代用할 수 있다. 그러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 받은 자를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구금할 수 없다.

제2조 (少年의 拘禁場所) ① 2개월 이상의 懲役刑을 선고받은 18세 미만의 자는 특별히 설치한 監獄 또는 감옥 내에서 특별히 分界를 설치한 장소에 이를 拘禁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는 자는 만 20세에 달할 때까지 또는 만 20세에 달한 후 3월내에 형기를 종료할 자는 그 殘余刑期 동안 계속하여 이를 구금할 수 있다.

③ 心身의 發育狀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전 2항의 적용에 있어 연령에 구애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男監과 女監의 分離, 監獄의 種類에 따른 分界) ① 감옥에 男監과 女監을 설치하고 이를 분리한다.

② 懲役監, 禁錮監, 拘留監 및 拘置監이 동일 구획내에 있는 것은 이를 分界한다.

제4조 (巡閱, 巡視) ① 主務大臣은 적어도 2년에 1회 官吏로 하여금 감옥을 巡閱하게 하여야 한다.

② 判事와 檢察官은 감옥을 巡視할 수 있다.

제5조 (參觀) 감옥의 參觀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學術研究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命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許可할 수 있다.

第 6 条（没入物の充用） 本法ニ依リ没入シ又ハ国庫ニ帰属シタル物ハ之ヲ監獄慈恵ノ用ニ充ツ

第 7 条（情願） 在監者監獄ノ処置ニ対シ不服アルトキハ命令ノ定ムル所ニ依リ主務大臣又ハ巡閲官吏ニ情願ヲ為スコトヲ得

第 8 条（労役場・監置場） 労役場及ビ監置場ハ之ヲ監獄ニ附設ス

②監置ノ執行ヲ為スニ当リ最寄ノ地ニ監置場ナキ場合又ハ監置場アルモ其収容能力十分ナラザル場合ニ於テハ拘留場（第 1 条第 3 項ノ規定ニ依リ代用セラルルモノヲ含ム）ノ特ニ区別シタル場所ヲ監置場ニ充ツルコトヲ得

③前 5 条ノ規定ハ之ヲ労役場及ビ監置場ニ準用ス

第 9 条（死刑囚・労役場留置人への準用） 本法中別段ノ規定アルモノヲ除ク外刑事被告人ニ適用ス可キ規定ハ拘禁許可状，仮拘禁許可状又ハ拘禁状ニ依リ監獄ニ拘禁シタル者，引致状ニ依リ監獄ニ留置シタル者，監置ニ処セラレタル者及ビ死刑ノ言渡ヲ受ケタル者ニ之ヲ準用シ懲役囚ニ適用ス可キ規定ハ労役場留置ノ言渡ヲ受ケタル者ニ之ヲ準用ス但第35 条ノ規定ハ監置ニ処セラレタル者ニ之ヲ準用セズ

第 10 条（陸海軍監獄への不適用） 本法ハ陸海軍ニ属スル監獄ニ之ヲ適用セス

第2章 収 監

第 11 条（入監文書の査閲） 新ニ入監スル者アルトキハ令状又ハ判決書及ビ執行指揮書其他適法ノ文書ヲ査閲シタル後入監セシム可シ

第 12 条（幼児の携帯） 新ニ入監スル婦女其子ヲ携帯センコトヲ請フトキハ必要ト認ムル場合ニ限リ満 1 歳ニ至ルマテ之ヲ許スコトヲ得

제6조 (沒收物의 充用) 이법에 의하여 沒收되거나 또는 國庫에 귀속된 물건은 이를 감옥의 慈惠에 충용한다.

제7조 (請願) 在監者는 감옥의 處遇에 대하여 不服이 있는 때에는 命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主務大臣 또는 巡閱官吏에게 청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勞役場·監置場) ① 노역장과 감치장은 이를 감옥에 부설한다.
② 監置의 집행을 함에 있어서 부근에 監置場이 없는 경우 또는 감치장이 있어도 그 收容能力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拘留場(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代用되는 것을 포함)의 특히 구별된 장소를 監置場으로 보충할 수 있다.
③ 전 5조의 규정은 이를 노역장 및 감치장에 준용한다.

제9조 (死刑囚·勞役裝留置人에 대한 準用) 이 법 중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刑事被告人에게 적용되어야 할 규정은 拘禁許可狀·假拘禁許可狀 또는 拘禁狀에 의하여 감옥에 구금된 자, 引致狀에 의하여 감옥에 留置된 자, 監置者 및 死刑宣告를 받은 자에게 이를 준용하며, 懲役囚에게 적용되어야 할 규정은 노역장유치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이를 준용하다. 그러나 제35조의 규정은 監置者에게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陸·海軍監獄에의 不適用) 이 법은 陸·海軍에 속하는 감옥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收 監

제11조 (入監文書의 調査) 새로 입감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令狀 또는 判決書 및 執行指揮書, 기타 적법한 문서를 조사한 후 입감시켜야 한다.

제12조 (幼兒의 帶同) ① 새로 입감하는 婦女가 그 자를 帶同할 것을 구하는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만 1세에 달할 때까지 이를 허가할

②監獄ニ於テ分娩シタル子ニ付テモ亦前項ノ例ニ依ル

第 13 条（伝染病患者） 新ニ入監スル者伝染病予防法ニ依リ予防方法ノ施行ヲ必要トスル伝染病ニ罹リタルモノナルトキハ之ヲ入監セシメサルコトヲ得

第 14 条（身体及び衣類の検査） 新ニ入監スル者アルトキハ其身体及ビ衣類ノ検査ヲ為ス可シ在監中ノ者ニ付キ必要ト認ムルトキ亦同シ

第3章 拘 禁

第 15 条（独居拘禁） 在監者ハ心身ノ状況ニ因リ不適当ト認ムルモノヲ除ク外之ヲ独居拘禁ニ付スルコトヲ得

第 16 条（雑居拘禁） 雑居拘禁ニ在テハ在監者ノ罪質，性格，犯数，年齢等ヲ斟酌シテ其監房ヲ別異ス

②第 1 条第 2 項及ビ第 3 項ノ場合ニ於テハ在監者ノ種類ニ依リ其監房ヲ別異ス

③18 歳未満ノ者ハ第 2 条第 2 項ノ場合ヲ除ク外 18 歳以上ノ者ト其監房ヲ別異ス但心身発育ノ状況ニ因リ其必要ナシト認ムルトキハ此限ニ在ラス

④前 3 項ノ規定ハ工場ニ於ケル就業ノ場合ニ之ヲ準用ス

第 17 条（関連被告人の取扱い） 刑事被告人ニシテ被告事件ノ相関連スルモノハ互ニ其監房ヲ別異シ監房外ニ於テモ其交通ヲ遮断ス

수 있다.

② 감옥에서 分娩한 자에 대하여도 역시 전항의 예에 의한다.

제13조 (傳染病患者) 새로 入監하는 자가 傳染病豫防法에 의하여 豫防方法의 시행을 필요로 하는 전염병에 걸린 자인 때에는 이를 입감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身體 및 衣類의 檢査) 새로 입감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身體 및 衣類를 검사하여야 하며, 在監 중인 자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역시 같다.

제3장 拘 禁

제15조 (獨居拘禁) 在監者는 心身의 상황에 따라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제외하고는 이를 獨居拘禁할 수 있다.

제16조 (雜居拘禁) ① 雜居拘禁에 있어서는 재감자의 罪質·性格·犯数·年齡 등을 참작하여 그 監房을 달리한다.

② 제1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在監者의 종류에 따라 그 監房을 달리한다.

③ 18세 미만의 자는 제2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8세 이상의 자와 그 居室을 달리한다. 다만 心身發育의 狀況에 따라 그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 3항의 규정은 工場에 就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7조 (関聯被告人의 取扱) 刑事被告人에 있어서 被告事件과 상호 관련있는 자는 서로 그 監房을 달리하고 居室 밖에서도 그 交通을 차단한다.

第 18 条（病監教誨堂の共同使用） 懲役監，禁錮監，拘留場，拘置監，労役場及ビ監置場ノ同一区劃内ニ在ル場合ニ於テハ同性者ニ付キ同一ノ病監又ハ教誨堂ヲ使用スルコトヲ得

②前項ノ場合ニ於テハ在監者ノ種類ニ因リ監房若クハ座席又ハ診療若クハ教誨ノ時間ヲ異ニス

③病監ニ在テハ第 2 条及ビ第 16 条ヲ適用セサルコトヲ得

第4章 戒 護

第 19 条（戒具の使用） 在監者逃走，暴行若クハ自殺ノ虞アルトキ又ハ監外ニ在ルトキハ戒具ヲ使用スルコトヲ得

②戒具ノ種類ハ命令ヲ以テ之ヲ定ム

第 20 条（剣銃の使用） 法令ニ依リ監獄官吏ノ携帯スル剣又ハ銃ハ左ノ各号ノ 1 ニ該ル場合ニ限リ在監者ニ対シ之ヲ使用スルコトヲ得

1．人ノ身体ニ対シテ危険ナル暴行ヲ為シ又ハ為ス可キ脅迫ヲ加フルトキ

2．危険ナル暴行ノ用ニ供シ得可キ物ヲ所持シ其放棄ヲ肯セサルトキ

3．逃走ノ目的ヲ以テ多衆騒擾スルトキ

4．逃走ヲ企テタル者暴行ヲ為シテ捕拿ヲ免カレントシ又ハ制止ニ従ハスシテ逃走セントスルトキ

第 21 条（天災事変の処置） 天災事変ニ際シ必要ト認ムルトキハ在監者ヲシテ応急ノ用務ニ就カシムルコトヲ得

②前項ノ用務ニ就キタル者ニハ第 28 条ノ規定ヲ準用ス

第 22 条 天災事変ニ際シ監獄内ニ於テ避難ノ手段ナシト認ムルトキハ在監者ヲ他所ニ護送ス可シ若シ護送スルノ遑ナキトキハ 1 時之ヲ解放スルコトヲ得

제18조 (病監·敎誨堂의 共同使用) ① 징역감, 금고감, 구류장, 구치감, 노역장 및 감치장이 동일구획 내에 있는 경우에는 同性者에 대해 동일한 病監 또는 敎誨堂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감자의 종류에 따라 監房이나 座席 또는 診察이나 敎誨의 시간을 달리한다.

③ 病監에 있어서는 제2조 및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戒 護

제19조 (戒具의 使用) ① 재감자의 逃走, 暴行 또는 自殺의 우려가 있는 때 또는 監外에 있는 때에는 戒具를 사용할 수 있다.

② 戒具의 종류는 命令으로 이를 정한다.

제20조 (銃劍의 使用) 法令에 의하여 監獄官吏가 휴대하는 銃 또는 劍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감자에게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사람의 身體에 대하여 위험한 暴行을 하거나 脅迫을 가할 때
2. 위험한 暴行의 사용에 提供될 수 있는 물건을 所持하고 그 投棄命令에 따르지 아니할 때
3. 逃走의 목적으로 多衆騷擾를 일으킬 때
4. 逃走를 기도하는 자가 暴行을 하고 逮捕를 면하려고 하거나 또는 制止에 不應하고 도주하려고 하는 때

제21조 (天災地變時의 處置) ① 天災地變時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감자로 하여금 應急의 用務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사무에 종사한 자에게는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① 天災地變時에 監獄 내에 避難手段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감자를 다른 곳으로 護送해야 하고 만약 호송할 겨를이 없을 때에는 一時釋放할

②解放セラレタル者ハ監獄又ハ警察官署ニ出頭ス可シ解放後 24 時間内ニ 出頭セサルトキハ刑法第 97 条ニ依リ処断ス

第 23 条（監獄官吏の逮捕権） 在監者逃走シタルトキハ監獄官吏ハ逃走後 48 時間内ニ限リ之ヲ逮捕スルコトヲ得

②前項ノ規定ハ刑事訴訟法第 60 条ノ適用ヲ妨ケス

第5章 作 業

第 24 条（作業） 作業ハ衛生，経済及ビ在監者ノ刑期，健康，技能，職業，将来ノ生計等ヲ斟酌シテ之ヲ課ス

② 18 歳未満ノ者ニ課ス可キ作業ニ付テハ前項ノ外特ニ教養ニ関スル 事項ヲ斟酌ス

第 25 条（作業の免除） 大祭祝日，1月 1 日 2 日及ビ 12 月 31 日ニハ就業ヲ免ス

②父母ノ訃ニ接シタル者ハ 3 日間其就業ヲ免ス

③主務大臣ハ必要ト認ムルトキハ臨時就業ヲ免スルコトヲ得

④炊事，酒掃，看護其他監獄ノ経理ニ関シ必要ナル作業ニ就ク者ニ付テハ就業ヲ免セサルコトヲ得

第 26 条（請願作業） 刑事被告人，拘留囚又ハ禁錮囚作業ニ就カンコトヲ請フトキハ其選択スルモノニ就キ之ヲ許スコトヲ得

第 27 条（作業収入，作業賞与金） 作業ノ収入ハ総テ国庫ノ所得トス

②在監者ニシテ作業ニ就クモノニハ命令ノ定ムル所ニ依リ作業賞与金ヲ給スルコトヲ得

수 있다.

② 釋放된 자는 監獄 또는 警察官署에 출석해야 하며, 석방 후 24시간내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형법 제97조에 의하여 처단한다.

제23조 (監獄官吏의 逮捕權) ① 재감자가 逃走한 때에는 監獄官吏는 도주 후 48시간내에 한하여 이를 체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60조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5장 作 業

제24조 (作業) ① 작업은 衛生, 經濟 및 재감자의 刑期, 健康, 技能, 職業, 장래의 生計 등을 참작하여 이를 과한다.

② 18세 미만의 자에게 과해야 할 作業에 대해서는 전항 외에 특히 敎養에 관한 사항을 참작한다.

제25조 (作業의 免除) ① 대축제일, 1월 1일, 2일 및 12월 31일에는 취업을 면제한다.

② 父母의 訃音에 접한 자는 3일간 그 就業을 면제한다.

③ 主務大臣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就業을 면제할 수 있다.

④ 吹事, 청소, 看護 기타 감옥의 經理에 관하여 필요한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업을 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 (請願作業) 형사피고인, 拘留囚 또는 禁錮囚가 作業에 就業할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27조 (作業收入, 作業賞與金) ① 작업수입은 모두 國庫收入으로 한다.

② 在監者로서 작업에 취업한 자에게는 命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作業賞與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③作業賞与金ハ行状，作業ノ成績等ヲ斟酌シテ其額ヲ定ム

第 28 条（手当金） 在監者就業ニ因リ創傷ヲ受ケ又ハ疾病ニ罹リ之カ為メニ死亡シ又ハ業務ヲ営ミ難キニ至リタルトキハ情状ニ因リ手当金ヲ給スルコトヲ得

②前項ノ手当金ハ釈放ノ際本人ニ之ヲ給シ死亡ノ場合ニ於テハ死亡者ノ父，母，配偶者又ハ子ニ之ヲ給ス

第6章 教誨及ビ教育

第 29 条（教誨） 受刑者ニハ教誨ヲ施ス可シ其他ノ在監者教誨ヲ請フトキハ之ヲ許スコトヲ得

第 30 条（教育）18 歳未満ノ受刑者ニハ教育ヲ施ス可シ其他ノ受刑者ニシテ特ニ必要アリト認ムルモノニハ年齢ニ拘ハラス教育ヲ施スコトヲ得

第 31 条（図書の閲読） 在監者文書，図画ノ閲読ヲ請フトキハ之ヲ許ス

②文書，図画ノ閲読ニ関スル制限ハ命令ヲ以テ之ヲ定ム

第7章 給 養

第 32 条（受刑者の衣類等） 受刑者及ビ監置ニ処セラレタル者ニハ一定ノ衣類臥具ヲ著用セシム但拘留囚及ビ監置ニ処セラレタル者ニハ自衣ノ著用ヲ許シ其他ノ者ニハ襯衣ノ自弁ヲ許スコトヲ得

③ 작업상여금은 行狀, 作業成績 등을 참작하여 그 금액을 정한다.

제28조 (手當金) ① 재감자가 就業中 負傷을 당하거나 疾病에 걸리고 이로 인해 死亡하거나 業務를 영위하기가 어렵게 된 때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手當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手當金은 釋放時에 본인에게 이를 지급하며,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父·母·配偶者 또는 자녀에게 이를 지급한다.

제6장 敎誨와 敎育

제29조 (敎誨) 受刑者에게는 敎誨를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在監者가 敎誨를 신청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30조 (敎育) 18세 미만의 受刑者에게는 敎育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의 수형자에 있어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연령에 관계없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 (圖書의 閱覽) ① 재감자가 文書, 圖畫의 閱覽을 신청할 때에는 이를 허가한다.

② 문서·도화의 열람에 관한 制限은 命令으로써 이를 정한다.

제7장 給 與

제32조 (受刑者의 衣類 등) 受刑者 및 監置者에게는 일정 衣類와 寢具를 사용하게 한다. 다만 拘留囚 및 監置者에게는 자기 옷의 사용을 허가하며 기타의 자에게는 속옷의 自辨을 허가할 수 있다.

第 33 条（被告人・留置人の衣類等） 刑事被告人及ビ労役場留置ノ言渡ヲ受ケタル者ノ衣類臥具ハ自弁トシ其自弁スルコト能ハサル者ニハ之ヲ貸与ス

②自弁ノ衣類臥具ニ関スル制限ハ命令ヲ以テ之ヲ定ム

第 34 条（糧食） 在監者ニハ其体質，健康，年齢，作業等ヲ斟酌シテ必要ナル糧食及ビ飲料ヲ給ス

第 35 条（被告人の糧食ノ自弁）刑事被告人ニハ糧食ノ自弁ヲ許スコトヲ得

第8章　衛生及ビ医療

第 36 条（頭髪鬚髯の剪剃） 在監者ノ頭髪鬚髯ハ之ヲ剪剃セシムルコトヲ得但刑事被告人ノ頭髪鬚髯ハ衛生上特ニ必要アリト認ムル場合ヲ除ク外其意思ニ反シテ之ヲ剪剃セシムルコトヲ得ス

第 37 条（監房の清潔保持） 在監者ハ其拘禁セラルル監房ノ清潔ヲ保ツニ必要ナル用務ニ服ス可シ

第 38 条（運動） 在監者ニハ其健康ヲ保ツニ必要ナル運動ヲ為サシム

第 39 条（伝染病の予防） 在監者ニハ種痘其他伝染病予防ニ必要ト認ムル医術ヲ行フコトヲ得

第 40 条（治療） 在監者疾病ニ罹リタルトキハ医師ヲシテ治療セシメ必要アルトキハ之ヲ病監ニ収容ス

제33조 (被告人·留置人의 衣類 등) ① 형사피고인 및 勞役場 留置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의류·침구는 自辨으로 하며, 자변할 수 없는 자에게는 이를 貸與한다.

② 自辨衣類·寢具에 관한 制限은 命令으로써 이를 정한다.

제34조 (食糧) 재감자에게는 그 체질, 건강, 연령, 작업 등을 참작하여 필요한 食糧 및 飮料를 급여한다.

제35조 (被告人의 食糧自辨) 형사피고인에게는 식량의 자변을 허가할 수 있다.

제8장 衛生과 醫療

제36조 (頭髮·수염의 短削) 재감자의 두발과 수염은 이를 짧게 깎는다. 그러나 형사피고인의 두발과 수염은 衛生上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醫師에 반하여 이를 짧게 깎을 수 없다.

제37조 (居室의 淸潔維持) 재감자는 그 拘禁되는 監房의 淸潔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用務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38조 (運動) 재감자에게는 그 건강을 유지하무는 데 필요한 운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39조 (傳染病의 豫防) 재감자에게는 種痘 기타 傳染病 豫防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醫術을 행할 수 있다.

제40조 (治療) 재감자가 疾病에 걸린 때에는 醫師로 하여금 치료하게 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를 病監에 수용한다.

第 41 条（伝染病患者の隔離） 伝染病者ハ厳ニ之ヲ離隔シ健康者及ビ他ノ病者ニ接近セシムルコトヲ得ス但懲役囚ヲシテ看護セシムルハ此限ニ在ラス

第 42 条（自費治療） 病者医師ヲ指定シ自費ヲ以テ治療ヲ補助セシメンコトヲ請フトキハ情状ニ因リ之ヲ許スコトヲ得

第 43 条（病院への移送） 精神病，伝染病其他ノ疾病ニ罹リ監獄ニ在テ適当ノ治療ヲ施スコト能ハスト認ムル病者ハ情状ニ因リ仮ニ之ヲ病院ニ移送スルコトヲ得

②前項ニ依リ病院ニ移送シタル者ハ之ヲ在監者ト看做ス

第 44 条（病者に準ずる者） 妊婦，産婦，老衰者及ビ不具者ハ之ヲ病者ニ準スルコトヲ得

第9章　接見及ビ信書

第 45 条（接見） 在監者ニ接見センコトヲ請フ者アルトキハ之ヲ許ス

②受刑者及ビ監置ニ処セラレタル者ニハ其親族ニ非サル者ト接見ヲ為サシムルコトヲ得ス但特ニ必要アリト認ムル場合ハ此限ニ在ラス

第 46 条（信書発受の許可） 在監者ニハ信書ヲ発シ又ハ之ヲ受クルコトヲ許ス

②受刑者及ビ監置ニ処セラレタル者ニハ其親族ニ非サル者ト信書ノ発受ヲ為サシムルコトヲ得ス但特ニ必要アリト認ムル場合ハ此限ニ在ラス

第 47 条（信書発受の禁止） 受刑者及ビ監置ニ処セラレタル者ニ係ル信書ニシテ不適当ト認ムルモノハ其発受ヲ許サス

제41조 (傳染病患者의 隔離) 傳染病者는 엄격히 이를 隔離하고 건강자 및 다른 病者에게 접근하게 할 수 없다. 다만 懲役囚로 하여금 看護하게 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 (自費治療) 病者가 醫師를 지정하여 自費로써 補助治療를 원하는 때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43조 (病院에의 移送) ① 精神病, 傳染病 기타의 질병에 걸려 監獄에서 적당한 治療를 행할 수가 없다고 인정되는 病者는 정상을 참작하여 임시로 이를 病院에 移送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라 병원으로 이송된 자는 이를 在監者로 간주한다.

제44조(病者에 준하는 者) 妊婦, 산부, 노약자 및 不具者는 이를 病者에 준할 수 있다.

제9장 接見과 書信

제45조 (接見) ① 在監者와 接見을 원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許可한다.

② 受刑者 및 監置者는 그 親族이 아닌 자와 接見을 하게 할 수 없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6조 (書信受發의 許可) ① 재감자에게는 書信을 발송하거나 이를 받는 것을 許可한다.

② 受刑者 및 監置者는 그 親族이 아닌 자와 書信의 受發을 하게 할 수 없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7조 (書信受發의 禁止) ① 수형자 및 감치자와 関係되는 書信 중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受發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前項ニ依リ発受ヲ許ササル信書ハ２年ヲ経過シタル後之ヲ廃棄スルコトヲ得

第 48 条（公文書の交付）裁判所其他ノ公務所ヨリ在監者ニ宛テタル文書ハ披閲シテ之ヲ本人ニ交付ス

第 49 条（信書及び公文書の領置）在監者ニ交付シタル信書及ビ前条ノ文書ハ本人閲読ノ後之ヲ領置ス

第 50 条（接見及び信書の制限）接見ノ立会，信書ノ検閲其他接見及ビ信書ニ関スル制限ハ命令ヲ以テ之ヲ定ム

第10章　領　　置

第 51 条（携有物の領置）在監者ノ携有スル物ハ点検シテ之ヲ領置ス

②保存ノ価値ナク又ハ保存ニ不適当ト認ムル物ハ其領置ヲ為サス又ハ之ヲ解クコトヲ得

③領置ヲ為サス又ハ之ヲ解キタル物ニ付キ在監者相当ノ処分ヲ為ササルトキハ之ヲ廃棄スルコトヲ得

第 52 条（領置物の充用）在監者領置物ヲ以テ其父，母，配偶者又ハ子ノ扶助其他正当ノ用途ニ充テンコトヲ請フトキハ情状ニ因リ之ヲ許スコトヲ得

第 53 条（差入れ）在監者ニ差入ヲ為サンコトヲ請フ者アルトキハ命令ノ定ムル所ニ依リ之ヲ許スコトヲ得

② 전항에 따라 수발을 허가하지 아니한 서신은 2년을 경과한 후에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제48조 (公文書의 交付) 法院 기타 公務所로부터 재감자 앞으로 보내어진 文書는 開披하여 이를 본인에게 교부한다.

제49조 (書信 및 公文書의 領置) 재감자에게 交付한 書信 및 前條의 文書는 본인이 閱讀한 후에 이를 領置한다.

제50조 (接見 및 書信의 制限) 接見의 參與, 書信의 檢閱, 기타 접견 및 서신에 관한 制限은 命令으로써 이를 정한다.

제10장 領 置

제51조 (携帶物의 領置) ① 재감자가 携帶하는 물건은 點檢하여 이를 영치한다.

② 保存할 價値가 없거나 보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그 領置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開披할 수 있다.

③ 領置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開披한 물건에 대해 재감자가 상당한 處分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廢棄할 수 있다.

제52조 (領置物의 充用) 재감자가 領置物로써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의 扶助 기타 정당한 用度에 充當할 것을 원하는 때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53조 (差入) ① 재감자에게 差入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命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在監者ニ宛テ送致シ来リタル物ニシテ其差出人ノ氏名若クハ居所不明ナルトキ，其差入ヲ許ス可カラスト認ムルトキ又ハ在監者ニ於テ其受領ヲ拒ミタルトキハ之ヲ没入又ハ廃棄スルコトヲ得

第 54 條（私に所持する物）在監者ノ私ニ所持スル物ハ之ヲ没入又ハ廃棄スルコトヲ得

第 55 條（領置物の交付）領置物ハ釈放ノ際之ヲ交付ス

第 56 條（死亡者の遺留物）死亡者ノ遺留物ハ請求ニ因リ相続人又ハ親族ニ之ヲ交付ス

第 57 條　死亡者ノ遺留物ハ死亡ノ日ヨリ１年内ニ前条ニ掲ケタル者ノ請求ナキトキハ国庫ニ帰属ス

②逃走者ノ遺留物ニシテ逃走ノ日ヨリ１年内ニ居所分明セサルトキ亦同シ

第11章　賞　　罰

第 58 条（賞遇）受刑者改悛ノ状アルトキハ賞遇ヲ為スコトヲ得

②賞遇ノ種類及ビ方法ハ命令ヲ以テ之ヲ定ム

第 59 条（懲罰）在監者紀律ニ違ヒタルトキハ懲罰ニ処ス

第 60 条（懲罰の種類）懲罰ハ左ノ如シ

１．叱責
２．賞遇ノ３月以内ノ停止
３．賞遇ノ廃止

② 재감자 앞으로 送付되어 온 물건으로서 그 送付人의 성명 또는 居所가 불명한 때, 그 差入을 許可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재감자가 그 受領을 거부한 때에는 이를 沒收 또는 廢棄할 수 있다.

제54조 (私的으로 所持하는 物件) 재감자가 私的으로 所持하는 물건은 이를 몰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55조 (領置物의 交付) 領置物은 釋放時에 이를 교부한다.

제56조 (死亡者의 遺留物) 사망자의 遺留物은 청구에 의하여 相続人 또는 親族에게 이를 교부한다.

제57조 ① 사망자의 遺留物은 사망일로부터 1년 내에 前條에 열거한 자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國庫에 歸属한다.

② 逃走者의 유류물로서 逃走日로부터 1년내에 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역시 같다.

제11장 賞 罰

제58조 賞遇 ① 수형자가 改俊의 情이 있는 때에는 賞遇를 할 수 있다.

② 賞遇의 종류 및 방법은 命令으로써 이를 정한다.

제59조 (懲罰) 재감자가 紀律에 위반한 때에는 懲罰에 처한다.

제60조 (懲罰의 種類) ① 징벌은 다음과 같다.

1. 叱責
2. 賞遇의 3월 이내의 停止
3. 賞遇의 發止

4．文書，図画閲読ノ3月以内ノ禁止
5．請願作業ノ10日以内ノ停止
6．自弁ニ係ル衣類臥具著用ノ15日以内ノ停止
7．糧食自弁ノ15日以内ノ停止
8．運動ノ5日以内ノ停止
9．作業賞与金計算高ノ一部又ハ全部減削
10．7日以内ノ減食
11．2月以内ノ軽屏禁
12．7日以内ノ重屏禁

②屏禁ハ受罰者ヲ罰室内ニ昼夜屏居セシメ情状ニ因リ就業セシメサルコトヲ得重屏禁ニ在テハ仍ホ罰室ヲ暗クシ臥具ヲ禁ス

③第1項各号ノ懲罰ハ之ヲ併科スルコトヲ得

第61条（減食の適用除外）前条第1項第10号ノ懲罰ハ刑事被告人及ビ18歳未満ノ在監者ニ之ヲ科セス

第62条（懲罰の執行停止・免除）懲罰ニ処セラレタル者疾病其他特別ノ事由アルトキハ其懲罰ノ執行ヲ停止スルコトヲ得

②懲罰ニ処セラレタル者改悛ノ状著シキトキハ其懲罰ヲ免除スルコトヲ得

第12章　釈　　放

第63条（釈放）在監者ノ釈放ハ恩赦，職権アル者ノ命令又ハ刑期ノ終了ニ因リ関係文書ヲ査閲シテ其手続ヲ為ス可シ

第64条（釈放の猶予時間）恩赦ヲ受ケ又ハ仮出獄若クハ仮出場ヲ許サレタル者ハ其特赦状，減刑状若クハ刑ノ執行ノ免除状又ハ許可書ノ監獄ニ達シタル後24時間内ニ之ヲ釈放ス

4. 3월이내의 文書·圖畫 열독금지
5. 10일 이내의 請願作業 정지
6. 自辨에 의한 의류, 침구 착용의 15일 이내 정지
7. 15일 이내의 食糧 自辨停止
8. 5일 이내의 운동정지
9. 作業賞與金 計算高의 일부 또는 전부 삭감
10. 7일 이내의 減食
11. 2월 이내의 輕屛禁
12. 7일 이내의 重屛禁

② 屛禁는 受罰者를 罰室 내에서 주야 屛居시키고 정상을 참작하여 就業,시키지 아니할수 있다. 重屛禁에 있어서는 다시 罰室을 어둡게 하고 침구를 금한다.

③ 제1항 각호의 懲罰은 이를 併科할 수 있다.

제61조 (減食의 適用 除外) 전조 제1항 제10호의 懲罰은 형사피고인 및 18세 미만의 재감자에게는 이를 과하지 아니한다.

제62조 (懲罰의 執行停止·免除) ① 懲罰者에게 疾病,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懲罰의 執行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징벌자가 改悛의 情이 현저한 때에는 그 懲罰을 免除할 수 있다.

제12장 釋 放

제63조 (釋放) 재감자의 釋放은 赦免, 권한있는 자의 命令 또는 刑期終了에 의하여 관계문서를 조사한 후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64조 (釋放의 猶豫期間) 赦免을 받거나 假釋放 또는 假出場을 허가받은 자는 그 特赦狀, 減刑狀 또는 刑執行免除狀 또는 許可書가 감옥에 도달한

第 65 条　前条ノ場合ヲ除ク- 外命令ニ因リ釈放ヲ為ス可キ者ハ命令書ノ監獄ニ達シタル後10時間内ニ之ヲ釈放ス

第 66 条（仮出獄又は仮出場の証票）仮出獄又ハ仮出場ヲ許サレタル者ヲ釈放スルトキハ之ニ証票ヲ交付ス

第 67 条　削除

第 68 条（満期者の釈放）満期ノ者ハ其刑期終了ノ翌日午後６時マテニ之ヲ釈放ス

第 69 条（請求による滞監）釈放セラル可キ者重キ疾病ニ罹リ監獄ニ於テ医療中ナルトキハ其請求ニ因リ仍ホ在監セシムルコトヲ得

第 70 条（帰住旅費又は衣類の支給）釈放セラル可キ者帰住旅費若クハ相当ノ衣類ヲ有セサルトキ又ハ監獄行政ノ便宜ニ因リ移監セシメタルカ為メ帰住旅費ノ増加ヲ要スルニ至リタルトキハ衣類又ハ旅費ヲ給与スルコトヲ得

第13章　死　亡

第 71 条（死刑の執行）死刑ノ執行ハ監獄内ノ刑場ニ於テ之ヲ為ス

②大祭祝日，１月１日，２日及ビ12月31日ニハ死刑ヲ執行セス

第 72 条（絞首後の手続）死刑ヲ執行スルトキハ絞首ノ後死相ヲ検シ仍ホ５分時ヲ経ルニ非サレハ絞繩ヲ解クコトヲ得ス

후 24시간 내에 이를 석방한다.

제65조 前條의 경우를 제외하고 命令에 의하여 釋放을 하여야 할 자는 命令書가 감옥에 도달한 후 10시간 내에 이를 석방한다.

제66조 (假釋放 또는 假出場의 證票) 假釋放 또는 假出場을 허가받은 자를 釋放할 때에는 이에 證票를 교부한다.

제67조 削除

제68조 (滿期者의 釋放) 滿期者는 그 刑期終了의 다음날 오후 6시까지 이를 석방한다.

제69조 (請求에 의한 收容) 석방되어야 할 자가 重疾病에 걸려 감옥에서 治療 중인 때에는 그 청구에 의하여 계속 재감시킬 수 있다.

제70조 (歸家旅費 또는 衣類의 支給) 釋放되어야 할 자가 歸家旅費 또는 상당한 衣類를 가지고 있지 못한 때 또는 監獄行政의 편의에 따라 移監시켰기 때문에 귀가여비를 증가하게 된 때에는 의류 또는 旅費를 급여할 수 있다.

제13장 死 亡

제71조 (死刑의 執行) ① 死刑의 執行은 감옥내의 刑場에서 이를 행한다.
② 대축제일, 1월 1일, 2일 및 12월 31일에는 死刑을 執行하지 아니한다.

제72조 (絞首 후의 節次) 死刑을 집행할 때에는 絞首한 후 死相을 점검하고 다시 5분의 시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絞繩을 풀 수 없다.

第 73 条（埋葬）在監者死亡シタルトキハ之ヲ仮葬ス

②死体ハ必要ト認ムルトキハ之ヲ火葬スルコトヲ得

③死体又ハ遺骨ハ仮葬後 2 年ヲ経テ之ヲ合葬スルコトヲ得

第 74 条（死体の交付）死亡者ノ親族故旧ニシテ死体又ハ遺骨ヲ請フ者アルトキハ何時ニテモ之ヲ交付スルコトヲ得但合葬後ハ此限ニ在ラス

第 75 条（解剖）受刑者ノ死体ハ命令ノ定ムル所ニ依リ解剖ノ為メ病院，学校又ハ其他ノ公務所ニ之ヲ送付スルコトヲ得

附　　則

①本法ハ刑法施行ノ日（明治 41 年 10 月 1 日）ヨリ之ヲ施行ス

②監獄則ハ之ヲ廃止ス但懲治人ニ関スル規定ハ当分ノ内仍ホ其効力ヲ有ス

附　　則（昭和 28．7．21　法 68 ）

1．この法律は，昭和 28 年 7 月 22 日から施行する。

제73조 (埋葬) ① 재감자가 死亡한 때에는 이를 埋葬한다.
② 死體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火葬할 수 있다.
③ 死體 또는 遺骨은 假葬 후 2년을 경과하여 이를 合葬할 수 있다.

제74조 (死體의 交付) 사망자의 親族, 친구 중에서 死體 또는 遺骨을 신청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언제라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合葬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조 (解剖) 수형자의 死體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解剖하기 위하여 병원, 학교 또는 기타 관청에 이를 송부할 수 있다.

附 則

① 이 법은 刑法施行日 (1908년 10월 1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② 監獄則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懲治人에 관한 규정은 당분간 계속 그 효력을 가진다.

附 則 (1953. 7. 21 법 68)

1. 이 법률은 1953년 7월22일부터 시행한다.

監獄法施行規則

（明治41.6.16 司18）

〈改正〉
前略……法務12，昭47 法務48，
昭49 法務52，昭52 法務24

第1章 総則（第1条～第10条）
第2章 収監（第11条～第22条）
第3章 拘禁（第23条～第40条）
第4章 戒護（第41条～第57条）
第5章 作業（第58条～第79条ノ2）
第6章 教誨及ビ教育（第80条～第88条）
第7章 給養（第89条～第101条）
第8章 衛生及ビ医療（第102条～第119条）
第9章 接見及ビ信書（第120条～第139条）
第10章 領置（第140条～第151条）
第11章 賞罰（第152条～第166条）
第12章 釈放（第167条～第176条）
第13章 死亡（第177条～第182条）
附 則

第1章 総 則

第1条（刑事被告人に準ずる者等） 外国艦船乗組員ノ逮捕留置ニ関スル援助法ニ依リ監獄ニ拘禁シタル者ハ刑事被告人ニ準ス

②少年法（昭和23年法律第168号）第17条の2第1項及ビ少年院法（昭和23年法律第169号）第17条の2ノ規定ニ依リ拘置監ニ仮ニ収容シタル者ノ取扱ニ付テハ少年法及ビ少年院法ノ趣旨ニ反セサル限リ刑事被告人ニ適用スヘキ規定

監獄法施行規則

(1908. 6. 16 司18)

〈改正〉 前略……1972. 6. 법무 48
1974. 6. 법무 52
1974. 4. 법무 24

제 1 장 總則(제1조～제10조)
제 2 장 收監(제11조～제22조)
제 3 장 拘禁(제23조～제40조)
제 4 장 戒護(제41조～제57조)
제 5 장 作業(제59조～제79조의 2)
제 6 장 敎誨와 敎育(제80조～제88조)
제 7 장 給與(제89조～제101조)
제 8 장 衛生과 醫療(제102조～제119조)
제 9 장 接見과 書信(제120조～제139조)
제10장 領置(제140조～제151조)
제11장 賞罰(제152조～제166조)
제12장 釋放(제167조～제176조)
제13장 死亡(제177조～제182조)
附則

제1장 總 則

제1조 (刑事被告人에 準하는 者 등) ① 외국 艦船乘務員의 逮捕·留置에 관한 援助法에 의하여 감옥에 拘禁된 자는 刑事被告人에 준한다.

② 少年法(1948년 법률 제168호) 제17조의 2 제1항 및 少年院法(1948년 법률 제169호)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拘置監에 임시로 收容된 자의 取級에 있어서는 소년법 및 소년원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刑事被告人에게

ヲ準用ス

第2条（参観） 監獄ノ参観ハ男子ニハ男監，女子ニハ女監ニ限リ之ヲ許ス但法務大臣ヨリ特別ノ許可ヲ得タルトキハ此限ニ在ラス

② 18歳未満ノ者ニハ監獄ノ参観ヲ許サス

第3条 監獄ノ参観ヲ請フ者アルトキハ所長（刑務所，少年刑務所及ビ拘置所ノ長ヲ請フ以下同ジ）ハ其氏名，職業，住所，年齢及ビ参観ノ目的ヲ調査シ許可ヲ与ヘタル者ニハ参観者心得事項ヲ告知ス可シ

第4条（情願） 法務大臣ニ情願ヲ為スニハ其趣旨ヲ記載シタル書面ヲ差出スコトヲ要ス

②情願書ハ本人ヲシテ之ヲ封緘セシメ監獄官吏ハ之ヲ披閲スルコトヲ得ス

③情願書ヲ差出シタルトキハ所長ハ速ニ之ヲ法務大臣ニ進達ス可シ

第5条 巡閲官吏ニハ書面又ハ口頭ヲ以テ情願ヲ為スコトヲ得

②巡閲官吏ニ情願ヲ為サンコトヲ予告スル者アルトキハ所長ハ其者ノ氏名ヲ情願簿ニ記載シ置ク可シ

③前条第2項ノ規定ハ本条ノ情願書ニ之ヲ適用ス

第6条 巡閲官吏情願ヲ聴クニハ必要アル場合ヲ除ク外監獄官吏ヲシテ之ニ立会ハシム可カラス

第7条 巡閲官吏情願ヲ審査シタルトキハ自ラ裁決ヲ為シ又ハ法務大臣ノ裁決ヲ乞フコトヲ得

적용되어야 할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 (參觀) ① 감옥의 參觀은 남자에게는 男監, 여자에게는 女監에 한하여 이를 허용한다. 다만, 法務大臣으로부터 특별한 許可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18세 미만의 자에게는 監獄의 參觀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3조 監獄의 參觀을 신청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所長(형무소, 소년형무소 및 구치소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성명, 직업, 주소, 연령 및 참관의 목적을 조사하고, 참관을 허가한 자에게는 參觀者 注意事項을 고지해야 한다.

제4조 (請願) ① 法務大臣에게 請願을 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書面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請願書는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封緘시키고 監獄官吏는 이를 開披할 수 없다.

③ 청원서를 제출한 때에는 소장은 신속히 이를 법무대신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5조 ① 巡閱官吏에게는 書面 또는 口頭로써 請願을 할 수 있다.

② 巡閱官吏에게 청원을 豫告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所長은 그 자의 성명을 청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전조 제2항의 규정은 이 조의 청원서에 이를 적용한다.

제6조 巡閱官吏의 청원 청취에는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監獄官吏를 참여시키지 못한다.

제7조 ① 巡閱官吏가 請願을 심사한 때에는 스스로 裁決을 하거나 法務大臣의 재결을 받을 수 있다.

②巡閲官吏自ラ裁決ヲ為シタルトキハ情願簿ニ其要旨ヲ記載ス可シ

第8条 情願ニ対スル裁決ハ所長速ニ之ヲ本人ニ告知ス可シ

第9条 所長ハ監獄ノ処置又ハ一身ノ事情ニ付キ申立ヲ為サンコトヲ請フ在監者ニ面接ス可シ

②前項ノ申立ヲ為サンコトヲ予告スル者アルトキハ其氏名ヲ面会簿ニ記載シ置キ其順序ニ従ヒ面接シタル後本人ニ開示シタル意見ノ要旨ヲ面会簿ニ記載ス可シ

第10条（準用） 本則中別段ノ規定アルモノヲ除ク外刑事被告人ニ適用ス可キ規定ハ監置ニ処セラレタル者ニ之ヲ準用シ懲役受刑者ニ適用ス可キ規定ハ労役場留置ノ言渡ヲ受ケタル者ニ之ヲ準用ス

第2章 収　監

第11条（領収） 新ニ入監スル者ヲ領収シタルトキハ入監者ノ氏名，領収ノ年月日時及ビ領収官吏ノ氏名ヲ記載シタル領収書ヲ護送者ニ交付ス可シ

第12条（子の引渡し） 新ニ入監スル婦女ニ子ノ携帯ヲ許ササル場合ニ於テ担当ノ引取人ナキトキハ都道府県知事ニ通報シ其指定スル児童福祉施設又ハ里親ニ其子ヲ引渡ス可シ

②携帯ヲ許シタル子ガ満1歳ニ達シ又ハ他ニ在監ヲ許ス可カラサル事情アル場合ニ於テ相当ノ引取人ナキトキ亦同シ

② 巡閱官吏가 스스로 裁決을 한 때에는 請願簿에 그 要旨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청원에 대한 재결은 소장이 신속히 이를 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 ① 소장은 監獄의 處遇 또는 一身의 사정에 대해 面談을 원하는 재감자와 면접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面談을 豫告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面接簿에 기재하고 그 순서에 따라 면접한 후 본인에게 표시한 意見의 要旨를 면접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準用) 이 규칙 중 別段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刑事被告人에게 적용되어야할 규정은 監置者에게 이를 準用하고, 징역수형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규정은 勞役場留置의 宣告를 받은 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2장 收 監

제11조 (引受) 새로 入監하는 자를 引受한 때에는 入監者의 성명, 인수의 년월일시 및 引受官吏의 성명을 기재한 인수서를 護送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 (子女의 引渡) ① 새로 入監하는 婦女에게 자녀의 帶同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자녀의 상당한 引受人이 없는 때에는 도도부현(都道府県)의 知事에게 통보하여 그가 지정하는 兒童福祉施設 또는 養父母에게 그 자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 帶同을 허가받은 子女가 만 1세에 달하거나 달리 在監을 허가해서는 안 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상당한 引受人이 없는 때에도 역시 같다.

第 13 条（健康診査） 新ニ入監スル者アルトキハ監獄ノ医師其健康ヲ診査ス可シ

第 14 条（伝染病罹患者の入監） 監獄ニ於テ隔離病監其他伝染病者ノ収容ニ適当ノ設備アルトキハ伝染病予防法ニ依リ予防方法ノ施行ヲ必要トスル伝染病ニ罹ル者ト雖モ之ヲ入監セシム可シ

第 15 条 監獄法第 13 条ニ依リ入監セシメサル場合ニ於テハ直ニ其旨ヲ入監ヲ指揮シタル官庁及ビ監獄所在地ノ市町村長（東京都ノ区ノ在スル区域及ビ保健所法（昭和22年法律第101号）第1条ノ規定ニ基ク政令ヲ以テ定メタル市ニ於テハ保健所長以下同ジ）ニ通報シ仍ホ其事情ヲ法務大臣ニ申報ス可シ

第 16 条（自由刑の執行の停止の場合の入監等） 新ニ入監スル者ニ付キ刑事訴訟法（昭和23年法律第131号）第480条及ビ第482条各号ニ定メタル事由アリト認ムルトキハ之ヲ入監セシメタル上直ニ其旨ヲ検察官ニ通報ス可シ

②前項ノ規定ハ在監中ノ者ニ之ヲ準用ス

③監置ニ処セラレタル者ニ付キ法廷等ノ秩序維持ニ関スル法律（昭和27年法律第286号）第7条第8項ニ定メタル事由アリト認ムルトキハ直ニ其旨ヲ裁判官ニ通報ス可シ

第 17 条（入浴） 新ニ入監スル者アルトキハ医病其他已ムコトヲ得サル場合ヲ除ク外入浴ヲ為サシム可シ

②婦女ノ入浴ニハ女子ノ監獄官吏之ニ立会ヒ婦女ノ身体及ビ衣類ノ検査ハ女子ノ監獄官吏之ヲ為ス可シ

③前項ノ規定ハ在監中ノ婦女ノ入浴及ビ身体衣類ノ検査ニ之ヲ準用ス

第 18 条（番号） 入監者ニハ番号ヲ付ス可シ

제13조 (健康診斷) 감옥의 醫師는 새로 입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健康診斷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傳染病患者의 入監) 감옥에 隔離病監, 기타 傳染病患者의 수용에 적당한 設備가 있는 때에는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豫防方法의 시행을 필요로 하는 전염병에 걸린 자라 하더라도 이를 入監시켜야 한다.

제15조 監獄法 제13조에 의하여 入監을 거절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를 입감을 지휘한 官庁 및 감옥소재지의 市町村長<東京道의 區가 있는 區域 및 保健所法(1947년 법률 제101호) 제1조의 규정에 근거하는 政令으로 정한 市에 있어서는 保健所長.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다시 그 사유를 法務大臣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自由刑의 執行停止의 경우 入監 등) ① 새로 입감하는자에 대하여 刑事訴訟法(1948년 법률 제131조), 제480조 및 제482조 각호에 정해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입감시킨 후 즉시 그 사유를 檢察官에게 통보하야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재감 중인 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③ 監置者에 대하여 法廷 등의 秩序維持에 관한 法律(1952년 법률 제286) 제7조 제8항에 정해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裁判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沐浴) ① 새로 入監하는 자에 대하여는 疾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목욕을 시켜야 한다.

② 婦女의 목욕에는 女子인 監獄官吏가 參與하고, 부녀의 身體 및 衣類의 檢査는 여자인 감옥관리가 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은 재감 중인 부녀의 목욕 및 신체의류의 검사에 준용한다.

제18조 (番號) 入監者에게는 番號를 지정한다.

第19条（遵守事項等の告知） 所長ハ在監者ノ遵守スベキ事項並ニ刑期ノ起算及ビ終了ノ日ヲ入監者ニ告知ス可シ

②所長ハ入監者ノ身上ニ関スル事情ヲ調査シ其結果ヲ身上調査表ニ記載ス可シ

③前項ノ調査ヲ為スニ付キ必要アリト認ムルトキハ公務所，公私ノ団体又ハ本人ニ縁故アル者ニ照会ヲ為ス可シ

第20条（撮影及び指紋の採取） 所長ハ於テ必要アリト認ムルトキハ入監者ノ撮影及ビ指紋ノ採取ヲ為ス可シ在監中ノ者ニ付キ亦同シ

第21条（独居拘禁） 新ニ入監シタル者ハ疾病其他已ムコトヲ得サル場合ヲ除ク外3日以内之ヲ独居拘禁ニ付ス可シ

②前項ニ依リ独居拘禁ニ付セラレタル懲役受刑者ニハ作業ヲ課セザルコトヲ得

第22条（身分帳簿等） 入監者ノ身分帳簿，在監人人名簿及ビ放免暦簿ハ収監後3日以内ニ整理シ必要ナル事項ヲ記載ス可シ

②在監者遵守事項ハ冊子トシテ之ヲ監房内ニ備ヘ置ク可シ

第3章 拘　禁

第23条（独居拘禁者） 独居拘禁ニ付セラレタル者ハ他ノ在監者ト交通ヲ遮断シ召喚，運動，入浴，接見，教誨，診療又ハ已ムコトヲ得サル場合ヲ除ク外常ニ1房ノ内ニ独居セシム可シ

第24条（刑事被告人の独居拘禁） 刑事被告人ハ成ル可ク之ヲ独居拘禁ニ付ス可

제19조 (遵守事項 등의 告知) ① 所長은 在監者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刑期의 起算日과 終了日을 입감자에게 告知하여야 한다.

② 所長은 입감자의 身上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身上調査表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前項의 調査를 하는데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公務所, 公私團體 또는 본인의 緣故者에게 照會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撮影 및 指紋의 採取) 所長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入監者의 사진을 촬영하고 指紋을 採取하여야 한다. 재감 중인 자에 대하여도 같다.

제21조 (獨居拘禁) ① 새로 입감한 자는 疾病 기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3일 이내에 이를 獨居拘禁시켜야 한다.

② 전항에 의하여 獨居拘禁된 징역수형자에게는 作業을 과하지 아니한다.

제22조 (身分帳簿 등) ① 입감자의 身分帳簿, 재감자 人名簿 및 放免歷簿는 수감후 3일 이내에 整理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감자 준수사항은 책자로서 이를 감방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拘 禁

제23조 (獨居拘禁) 獨居拘禁者는 다른 재감자와 交通을 遮斷하고 召喚, 운동, 목욕, 接見, 敎誨, 診療 또는 부득히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獨居시켜야 한다.

제24조 (刑事被告人의 獨居拘禁) 형사피고인은 가능한 한 독거구금하여야 한다.

第25条（独居拘禁に付すべき者） 受刑者ハ本則ニ於テ特ニ規定アル場合ヲ除ク外左ノ順序ニ従ヒ之ヲ独居拘禁ニ付ス可シ

1. 余罪又ハ刑期限内ノ犯罪ニ因リ審問中ニ在ル者
2. 刑期2月未満ノ者
3. 分類調査ノ為必要ト認ムル者

②独居監房ニ残余アルトキハ前項ニ該当セサル受刑者ト雖モ之ヲ独居拘禁ニ付スルコトヲ得

第26条（独居拘禁の禁止） 在監者ノ精神又ハ身体ニ害アリト認ムルトキハ在監者ヲ独居拘禁ニ付スルコトヲ得ス

第27条（独居拘禁の期間） 独居拘禁ノ期間ハ6月ヲ超ユルコトヲ得ス但特ニ継続ノ必要アル場合ニ於テハ爾後3月毎ニ其期間ヲ更新スルコトヲ妨ケス

②20歳未満ノ者ハ特ニ必要アリト認メタル場合ヲ除ク外3月以上継続シテ之ヲ独居拘禁ニ付スルコトヲ得ス

第28条（巡視） 所長及ビ監獄ノ医師ハ少クトモ30日毎ニ1回，其他ノ監獄官吏ハ毎日数次独居拘禁ニ付セラレタル在監者ヲ巡視ス可シ

第29条（単独巡視の禁止） 所長，監獄ノ医師及ビ女子ノ監獄官吏ヲ除ク外監獄官吏ハ単独ニテ独居拘禁ニ付セラレタル婦女ヲ巡視スルコトヲ得ス夜間独居監房ニ拘禁セラレタル婦女ノ巡視ニ付キ亦同シ

第30条（巡視結果の報告） 独居拘禁ニ付セラレタル在監者ヲ巡視シタル監獄官吏ハ其視察シタル事項ヲ所長ニ報告ス可シ

第31条（夜間の独居監房への拘禁） 第25条第1項各号ニ掲ケタル受刑者ニシテ監房不足ノ為メ独居拘禁ニ付スルコト能ハサルモノ及ビ独居拘禁ノ期間満了後

제25조 (獨居拘禁할 者) ① 受刑者는 이 규칙에 특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順位에 따라 이를 獨居拘禁한다.

1. 餘罪 또는 刑 期限內의 범죄로 인하여 審問 중에 있는 자
2. 형기 2월 미만의 자
3. 分類調査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獨居室에 殘餘가 있는 때에는 전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受刑者라 하더라도 이를 독거구금할 수 있다.

제26조 (獨居拘禁의 禁止) 재감자의 精神 또는 身體에 害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감자를 독거구금할 수 없다.

제27조 (獨居拘禁의 期間) ① 獨居拘禁의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후 3월마다 그 기간을 更新할 수 있다.

② 20세미만인 자는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이상 계속하여 독거구금할 수 없다.

제28조 (巡視) 所長 및 감옥의 醫師는 적어도 30일마다 1회, 기타의 監獄官吏는 매일 수회 독거구금자를 巡視하여야 한다.

제29조 (單獨巡視의 禁止) 所長, 감옥의 醫師 및 여자인 監獄官吏를 제외하고는 감옥관리는 單獨으로 독거구금된 婦女를 巡視할 수 없다. 야간 獨居室에 구금된 婦女의 巡視에 대해서도 역시 같다.

제30조 독거구금자를 巡視한 감옥관리는 그 視察한 사항을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夜間의 獨居室에의 拘禁) ① 제25조 제1항 각호의 受刑者로서 居室 부족으로 인하여 獨居拘禁할 수 없는 자 및 獨居拘禁의 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必要アリト認ムルモノハ之ヲ夜間独居監房ニ拘禁ス可シ

②第25条第2項ノ規定ハ夜間独居監房ニ之ヲ準用ス

第32条 夜間独居監房ニ拘禁セラレタル者作業ニ就カサルトキハ昼間ト雖モ仍ホ在房セシム可シ

第33条（同一監房への拘禁を禁止される者） 労役場留置ノ言渡ヲ受ケタル者ト受刑者トハ之ヲ同一ノ監房又ハ工場ニ雑居セシムルコトヲ得ス

第34条 病者又ハ不具者ト健康者トハ之ヲ同一監房ニ拘禁スルコトヲ得ス但看護ニ従事スルモノハ此限ニ在ラス

第35条（雑居監房） 雑居監房ニハ三人以上ヲ拘禁ス可シ但療養其他已ムコトヲ得サル場合ハ此限ニ在ラス

第36条（席次） 雑居監房，工場，教場及ビ教誨堂ニ於テハ在監者ノ席次ヲ定ム可シ

第37条（交談の禁止） 所長ニ於テ必要アリト認ムルトキハ在監者ノ交談ヲ禁止スルコトヲ得

第38条（代用の禁止） 雑居監房ハ已ムコトヲ得サル場合ヲ除クノ外之ヲ工場ニ代用スルコトヲ得ス

第39条（小札，番号の掲示） 居房ノ前ニハ小札ヲ掲ケ在房者ノ番号ヲ記載ス可シ

第40条（容積，定員等の掲示） 雑居監房ニハ其容積，定員及ビ現在人員ヲ記載シタル小札ヲ掲ク可シ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야간獨居室에 구금할 수 있다.

② 제25조 제2항의 규정은 야간독거실에 준용한다.

제32조 야간독거실에 구금된 자가 취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간이라도 계속 재실시켜야 한다.

제33조 (同一 居室에의 拘禁이 禁止되는 者) 勞役場留置의 선고를 받은 자와 수형자와는 동일한 거실 또는 공장에 混居시킬 수 없다.

제34조 病者 또는 不具者와 건강자와는 동일 거실에 구금할 수 없다. 다만 看護에 종사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제35조 (混居室) 混居室에는 3인 이상을 收容하여야 한다. 그러나 療養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6조 (席次) 混居室, 공장, 교실 및 敎誨堂에 있어서는 재감자의 席次를 정하여야 한다.

제37조 (交談의 禁止) 所長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감자의 交談을 禁止할 수 있다.

제38조 (代用의 禁止) 混居室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工場으로 代用할 수 없다.

제39조 (名札, 番號의 揭示) 居室의 앞에는 명찰을 게시하고 在室者의 番號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0조 (面積, 定員 등의 表示) 혼거실에는 그 面積, 定員 및 現在人員을 기재한 票札을 게시하여야 한다.

第4章 戒　護

第41条（検査） 監獄ニ於テハ出入ノ警戒ヲ厳ニシ必要アリト認ムルトキハ出入者ノ携帯品ヲ検査ス可シ

②開監前閉監後ハ所長ノ許可アルニ非サレハ監獄官吏以外ノ者ヲ出入セシムルコトヲ得ス

第42条（閉鎖） 監獄ノ外門，各出入口，監房，工場及ビ現ニ在監者ヲ拘禁スル場所ハ之ヲ閉鎖シ置ク可シ若シ必要ニ因リ一時開放スルトキハ其要所ヲ守衛ス可シ

②所長ニ於テ受刑者ノ処遇上特ニ必要アリト認ムルトキハ戒護ニ支障ナキ限リ前項ノ規定ニ依ラザルコトヲ得

③鍵ハ一定ノ監獄官吏之ヲ保管シ必要アル場合ニ非サレハ其授受ヲ為スコトヲ得ス

第43条（開扉等） 監獄官吏ハ所長ノ命令アルニ非サレハ他ノ監獄官吏ノ立会ナクシテ監房ヲ開扉シ又ハ在監者ヲ出房セシムルコトヲ得ス但病監ニ在リテハ此限ニ在ラス

第44条（障害物等の取扱い） 監獄ノ構内ニ於テハ常ニ視察ノ便ヲ計リ観望ヲ妨ケ其他戒護ノ障害ト為ル可キ物ヲ置ク可カラス

②已ムコトヲ得サル場合ニ於テ梯子其他戒護ノ障害ト為ル可キ物ヲ構内ニ置クトキハ施錠其他必要ナル措置ヲ講ズ可シ

第45条（検査） 所長ハ監獄官吏ヲシテ少クトモ毎日1回監房ノ検査ヲ為サシム可シ

第46条 所長ハ監獄官吏ヲシテ工場又ハ監外ヨリ還房スル在監者ノ身体及ビ衣類ノ検査ヲ為サシム可シ

제4장 戒 護

제41조 (檢査) ① 감옥에서는 出入의 警戒를 엄격히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입자의 携帶品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 開監前·廢監後에는 所長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는 監獄官吏 이외의 자를 출입시킬 수 없다.

제42조 (廢鎖) ① 監獄의 外門, 각 출입구, 거실, 공장 및 在監者를 구금하고 있는 장소는 이를 廢鎖해야 한다. 만일 필요에 의하여 一時開放하는 때에는 그 要所를 守衛하여야 한다.

② 所長은 수형자의 處遇上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戒護에 지장이 없는 한 전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열쇠는 일정한 監獄官吏가 보관하며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受授를 할 수 없다.

제43조 (廢門 등) 監獄官吏는 소장의 命令이나 다른 감옥관리의 參與없이 居室을 열거나 재감자를 出室시킬 수 없다. 다만 病監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제44조 (障害物 등의 取扱) ① 감옥의 構內에는 항상 視察의 편의를 위하여 觀望을 방해하거나 기타 戒護의 障害가 되는 물건을 두지 못한다.

② 부득이한 경우에 사다리 기타 戒護의 障害가 되는 물건을 구내에 둘 때에는 자물쇠를 채우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45조 (檢査) 所長은 監獄官吏로 하여금 적어도 매일 1회 居室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46조 所長은 감옥관리로 하여금 工場 또는 居室 밖에서 돌아오는 재감자의 身體 및 衣類를 검사시켜야 한다.

第46条ノ2 所長ニ於テ受刑者ノ処遇上特ニ必要アリト認ムルトキハ前2条ノ規定ニ依ラザルコトヲ得

第47条（隔離） 在監者ニシテ戒護ノ為メ隔離ノ必要アルモノハ之ヲ独居拘禁ニ付ス可シ

第48条（戒具の種類） 戒具ハ左ノ4種トス

1. 鎮静衣
2. 防声具
3. 手錠
4. 捕縄

②戒具ノ製式ハ法務大臣別ニ之ヲ定ム

第49条（戒具の使用） 戒具ハ所長ノ命令アルニ非サレハ之ヲ使用スルコトヲ得ス但緊急ヲ要スルトキハ此限ニ在ラズ

②前項但書ノ場合ニ於テハ使用後直ニ其旨ヲ所長ニ報告ス可シ

第50条（戒具の使用条件） 鎮静衣ハ暴行又ハ自殺ノ虞アル在監者，防声具ハ制止ヲ肯ンセスシテ大声ヲ発スル在監者，手錠及捕縄ハ暴行，逃走若クハ自殺ノ虞アル在監者又ハ護送中ノ在監者ニシテ必要アリト認ムルモノニ限リ之ヲ使用スルコトヲ得

②鎮静衣ハ12時間以上，防声具ハ6時間以上之ヲ使用スルコトヲ得ス但特ニ継続ノ必要アル場合ニ於テハ爾後3時間毎ニ更新スルコトヲ妨ケス

③護送中ノ者ニハ鎮静衣ヲ使用スルコトヲ得ス

第51条（銃の使用の申報） 監獄官吏在監者ニ対シテ銃ヲ使用シタルトキハ所長ハ直ニ其旨ヲ法務大臣ニ申報ス可シ

제46조의 2 소장은 受刑者의 處遇上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 2조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47조 (隔離) 재감자로서 戒護上 隔離할 필요가 있는 자는 이를 독거구금할 수 있다.

제48조 (戒具의 種類) ① 戒具는 다음의 4종으로 한다.

1. 鎭靜衣
2. 防聲具
3. 手匣
4. 捕繩

② 계구의 制式은 法務大臣이 별도로 이를 정한다.

제49조 (戒具의 使用) ① 戒具는 소장의 命令이 없이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 단서의 경우에는 사용후 즉시 그 사실을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 (戒具의 使用條件) ① 鎭靜衣는 폭행 또는 自殺의 우려가 있는 재감자, 防聲具는 制止에 불응하고 大聲을 발하는 재감자, 手匣 및 捕繩은 폭행·도주 또는 자살의 우려가 있는 재감자 또는 護送 중인 재감자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진정의는 12시간 이상, 방성구는 6시간 이상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후 3시간마다 갱신할 수 있다.

③ 호송 중인 자에게는 진정의를 사용할 수 없다.

제51조 (銃의 使用報告) 監獄官吏가 재감자에 대하여 銃을 사용한 때에는 所長은 즉시 그 사실을 法務大臣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第52条（消防用務・消防演習） 所長ハ受刑後3月ヲ経過シ逃走ノ虞ナキ者ノ中ニ就キ予メ消防ノ用務ニ就カシムル可キモノヲ指定シ随時消防演習ヲ為サシムル可シ

第53条（避難のための解放） 監獄法第22条ニ依リ在監者ヲ解放スルトキハ出頭ス可キ期間及ビ場所ヲ告知ス可シ

第54条（護送の場合の診断等） 在監者ヲ他所ニ護送ス可キ場合ニ於テハ監獄ノ医師ヲシテ之ヲ診断セシメ健康ニ害アリト認ムルトキハ其護送ヲ停止ス可シ

②護送ヲ停止シタルトキハ其旨ヲ関係官庁ニ通報ス可シ

第55条（男女同行の禁止） 護送中ハ男女ヲ同行セシムル可カラス刑事被告人ニシテ被告事件ノ相関連スルモノ亦同シ

②刑事被告人及ビ20歳未満ノ者ハ護送ノ際他ノ在監者ト区分ス可シ

第56条（逃走の通報） 在監者逃走シタルトキハ所長ハ速ニ監獄所在地及ビ其附近並ニ逃走者ノ立寄ル可キ見込アル地方ノ警察署ニ逃走者ノ人相書ヲ添ヘ逃走ノ事実ヲ通報ス可シ

第57条（逃走等の申報等） 前条ノ場合ニ於テハ所長ハ其事実ヲ法務大臣ニ申報ス可シ逃走者ヲ逮捕シタルトキ亦同シ

②逃走者刑事被告人又ハ監置ニ処セラレタル者ナルトキハ前項ノ報告ヲ為ス外逃走及ビ逮捕ノ事実ヲ夫々検察官又ハ裁判官ニ通報ス可シ

제52조 (消防用務·消防練習) 所長은 수형 후 3월을 경과하고 逃走의 우려가 없는 자 중에서 사전에 消防用務에 나가야 할 자를 지정하여 수시로 消防練習을 시켜야 한다.

제53조 (避難을 위한 釋放) 監獄法 제22조에 의하여 재감자를 一時釋放할 때에는 出席해야 할 기간 및 장소를 고지해야 한다.

제54조 (護送할 경우의 診斷 등) ① 재감자를 他所로 護送해야 할 경우에는 감옥의 醫師로 하여금 이를 診斷하게 하고, 건강에 해롭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護送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 護送을 停止한 때에는 그 사실을 関係官庁에 通報하여야 한다.

제55조 (男女同行의 禁止) ① 護送 중에는 男女를 同行시키지 못한다. 刑事被告人으로서 피고사건과 관련되는 자도 역시 같다.

② 刑事被告人 및 20세 미만의 자는 護送時에 다른 재감자와 구분하여야 한다.

제56조 (逃走의 通報) 재감자가 逃走한 때에는 소장은 신속히 監獄所在地와 그 附近 및 도주자가 들를 만한 가능성이 있는 地方의 警察署에 도주자의 人相書를 첨부하여 도주의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57조 (逃走 등의 報告 등) ① 前條의 경우에 所長은 그 事實을 법무대신에게 報告해야 한다. 도주자를 逮捕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도주자가 刑事被告人 또는 監置者인 때에는 전항의 報告를 하는 외에, 도주 및 체포의 사실을 담당 檢察官 또는 法官에게 통보해야 한다.

第5章 作　業

第58条（作業時間） 在監者ノ作業時間ハ法務大臣別ニ之ヲ定ム

②所長ハ地方ノ状況，監獄ノ構造又ハ作業ノ種類ニ因リ作業時間ヲ伸縮スルコトヲ得

③請求ニ因リ作業ニ就ク者ノ作業時間ハ2時間以内短縮スルコトヲ得

④教育，教誨及ビ運動ニ要スル時間ハ之ヲ作業時間ニ通算スルコトヲ得

第59条 削除

第60条（作業の種類等の告知） 在監者ニ課スル作業ハ其種類及ビ1日ノ科程ヲ指定シ之ヲ本人ニ告知ス可シ

第61条（作業科程） 作業科程ハ普通1人ノ仕上高及ビ第58条第1項ノ 作業時間ヲ標準トシテ等一ニ之ヲ定ム可シ

②仕上高ヲ標準トスルコト能ハサル作業ニ付テハ第58条第1項ノ作業時間ヲ以テ作業科程トス

③20歳未満ノ受刑者，老者，病弱者及ビ不具者ハ前2項ニ依ラス各 就業者ニ付キ相当ノ作業科程ヲ定ムルコトヲ得

第62条（作業の併課） 作業時間ノ全部ヲ通シテ就業セシムルコト能ハサル作業ハ之ヲ他ノ作業ト併課スルコトヲ得

第63条（継続作業） 1日ノ作業科程ヲ終了シタル者ト雖モ作業時間内ハ継続シテ作業に就カシム可シ

第64条（作業の中止等の禁止） 請求ニ因リ作業ニ就ク者ハ正当ノ事由アルニ非

제5장 作 業

제58조 (作業時間) ① 재감자의 작업시간은 법무대신이 별도로 이를 정한다.
② 소장은 地方의 狀況, 監獄의 構造 또는 작업의 종류에 따라 작업시간을 신축할 수 있다.
③ 請求에 의하여 작업에 취업한 자의 작업시간은 2시간 이내 단축할 수 있다.

④ 敎育, 敎誨 및 운동에 요하는 시간은 이를 작업시간에 通算할 수 있다.

제59조 삭제

제60조 (作業의 種類 등의 告知) 재감자에게 부과하는 作業은 그 種類 및 1일의 科程을 정하여 이를 본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61조 (作業科程) ① 作業科程은 보통 1인의 作業成績과 제58조 제1항의 작업시간을 標準으로 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② 作業成績을 標準으로 할 수 없는 작업에 대해서는 제58조 제1항의 작업시간을 作業科程으로 한다.
③ 20세 미만의 수형자, 老人, 病弱者 및 不具者는 전 2항에 의하지 아니하고 각 취업자에 대한 적당한 作業科程을 정할 수 있다.

제62조 (作業의 併科) 作業時間의 전부를 통하여 就業하게 할 수 없는 작업은 이를 다른 작업과 병과할 수 있다.

제63조 (繼續作業) 1일의 作業科程을 종료한 자라 하더라도 作業時間 내에는 계속하여 작업하게 하여야 한다.

제64조 (作業中止 등의 禁止) 請求에 의하여 作業에 就業한 자는 정당한 사유

サレハ其作業ヲ中止シ若クハ之ヲ廃止シ又ハ作業ノ種類ヲ変更スルコトヲ得ス

第65条（削除）

第66条（作業を禁止する者） 刑事被告人ハ之ヲ監外ノ作業ニ就カシムルコトヲ得ス

第67條（成績の検査） 所長ハ監獄官吏ヲシテ毎日1回各就業者ニ就キ作業ノ成績ヲ検査セシム可シ

第68条（作業高） 仕上高ハ毎月末日ニ其月分ヲ積算シ1日ノ平均高ト1日ノ科程トヲ対照シ作業科程ノ了否ヲ定ム可シ

②第61条第2項ノ作業ニ付テハ1月毎ニ其就業時間ヲ積算シ前項ノ例ニ依リ作業科程ノ了否ヲ定ム可シ

第69条（作業賞与金） 前条ニ依リ作業科程ノ了否ヲ定メタルトキハ作業賞与金ノ計算ヲ為ス可シ

第70条 作業ニ就キタル者ト雖モ行状不良ニシテ作業成績劣等ナルモノニハ作業賞与金ノ計算ヲ為ササルコトヲ得

第71条 作業賞与金ハ行状，性向，作業ノ種類，成績，科程ノ了否ヲ斟酌シ法務大臣ノ定ムル所ニ依リ計算ス可シ

第72条（作業賞与金の増額） 監獄法第25条第4項ニ依リ作業ニ就キタル者ニハ前条ニ依リ計算シタル額ヲ増加スルコトヲ得

第73条（作業賞与金からの控除） 在監者悪意又ハ重過失ニ因リ器具，製品，素品其他ノ物ニ損害ヲ加ヘタルトキハ其賠償ニ相当スル金額ヲ作業賞与金計算高ノ内ヨリ控除スルコトヲ得

가 없이는 그 作業을 中止 또는 廢止하거나 작업의 종류를 변경할 수 없다.

제65조 삭제

제66조 (作業을 禁止하는 者) 刑事被告人은 監外의 作業에 취업할 수 없다.

제67조 (成績의 檢查) 所長은 監獄官吏로 하여금 매일 1회 각 취업자에 대해 作業成績을 검사하게 해야 한다.

제68조 (作業量) ① 作業成績은 매월 말일에 그 월분을 積算하고 1일의 平均量과 1일의 과정을 對照하여 作業科程의 완료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61조 제2항의 作業에 대해서는 1월마다 그 就業時間을 積算하며, 전항의 예에 의하여 作業科程의 완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9조 (作業賞與金) 전조에 의하여 作業科程의 了否를 정한 때에는 作業賞與金을 계산하여야 한다.

제70조 작업에 취업하였던 자라 하더라도 行狀이 불량하고 作業成績이 劣等한 자에게는 作業賞與金을 계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1조 作業賞與金은 行狀, 性向, 작업의 종류·成績, 科程의 了否 등을 참작하여 法務大臣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제72조 (作業賞與金의 增額) 監獄法 제25조 제4항에 의하여 作業에 就業한 자에게는 전조에 의하여 計算한 금액을 증가할 수 있다.

제73조 (作業賞與金의 控除) 재감자가 惡意 또는 重過失로 인하여 器具, 製品, 素品 기타 물건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賠償에 상당하는 금액을 작업상여금 計算額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第74条（作業賞与金計算高の告知） 就業者ニハ毎月15日マテニ 前月分ノ作業賞与金計算高ヲ告知ス可シ

第75条（作業賞与金の給与時期等） 作業賞与金ハ釈放ノ際之ヲ給与ス

②作業賞与金ハ其計算高ヲ有スル者死亡シタルトキハ本人ノ配偶者，子，父又ハ母ニ之ヲ給与スルコトヲ得

③作業賞与金ヲ給与スル場合ニ於テ必要アリト認ムルトキハ条件ヲ指定スルコトヲ得

第76条（在監中の作業賞与金の給与） 作業賞与金計算高ヲ有スル受刑者，其配偶者，子，父若クハ母ノ扶助，犯罪被害者ニ対スル賠償又ハ書籍ノ購求其他必要アル場合ニ於テハ情状ニ因リ在監中ト雖モ作業賞与金計算高ノ三分ノ一ヲ超エサル金額ヲ給スルコトヲ得

②受刑者ノ為メ特ニ必要アリト認ム可キ場合ニ於テハ前項ノ規定ニ依ラス之ニ作業賞与金ヲ給スルコトヲ得

第77条 作業賞与金計算高ヲ有スル刑事被告人其配偶者，子、父又ハ母ノ扶助其他正当ノ費用ヲ要スル場合ニ於テハ情状ニ因リ在監中ト雖モ之ニ作業賞与金ヲ給スルコトヲ得

第78条（作業賞与金計算高の抹消） 作業賞与金計算高ヲ有スル在監者逃走後6月内ニ其居所分明セサルトキハ其計算高ヲ抹消ス可シ

第79条（手当金） 監獄法第21条及ビ第28条ニ依ル手当金ハ法務大臣ノ定ムル所ニ依リ之ヲ給与ス可シ

第79条ノ2（労作） 懲役受刑者行状及ビ作業成績優良ニシテ且ツ其処遇上害ナ

제74조 (作業賞與金 計算額의 告知) 就業者에게는 매월 15일까지 前月分의 작업상여금 계산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75조 (作業賞與金의 給與時期 등) ① 작업상여금은 釋方時에 이를 급여한다.

② 작업상여금 計算額을 가지고 있는 재감자가 死亡한 때에는 본인의 配偶者, 子女, 父 또는 母에게 이를 급여할 수 있다.

③ 작업상여금을 급여할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76조 (在監 중의 作業賞與金의 給與) ① 작업상여금 계산액을 가지고 있는 수형자 그 배우자, 자녀, 父 또는 母의 扶助, 犯罪被害者에 대한 賠償 또는 서적의 구입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재감 중이라 하더라도 作業賞與金 計算額의 ⅓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급여할 수 있다.

② 受刑者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前項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作業賞與金을 급여할 수 있다.

제77조 作業賞與金 計算額을 가지고 있는 刑事被告人이 그 배우자, 자녀, 父 또는 母의 扶助 기타 정당한 費用을 요하는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在監중이라 하더라도 이에 作業賞與金을 급여할 수 있다.

제78조 (作業賞與金 計算額의 抹消) 作業賞與金 計算額을 가지고 있는 재감자가 逃走 후 6월 내에 그 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計算額을 抹消해야 한다.

제79조 (手當金) 監獄法 제21조 및 제28조에 의한 手當金은 法務大臣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給與해야 한다.

제79조 (勞作) ① 징역수형자가 行狀 및 作業成績이 우량하고 또 그 處遇上 害

シト認ムルトキハ余暇時間内ニ於テ自己ノ為ニスル労作ヲ許スコトヲ得禁錮受刑者行状優良ニシテ且ツ其処遇上害ナシト認ムルトキ亦同ジ

②前項ノ労作ノ時間ハ1日ニ付キ2時間以内ナルコトヲ要ス

第6章 教誨及ビ教育

第80条（教誨） 教誨ハ休業日又ハ日曜日ニ於テ之ヲ為ス可シ

②必要アリト認ムルトキハ所長ハ休業日又ハ日曜日以外ノ日ニ於テモ教誨ヲ為サシムルコトヲ得

第81条 病監又ハ独居監房ニ拘禁スル受刑者及ビ刑事被告人ニハ其居所ニ就キ教誨ヲ為ス可シ

第82条 受刑者父母ノ訃ニ接シ就業ヲ免セラレタルトキハ教誨ヲ為ス可シ

②前項ノ場合ニ於テハ本人ノ希望ニ因リ其亡父母ノ為メ読経其他ノ行事ヲ為サシムルコトヲ得

③第1項ノ受刑者ハ之ヲ独居拘禁ニ付スルコトヲ得

第83条 削除

第84条 受刑者死亡シタルトキハ本人ト縁故アル受刑者ヲ集メ棺前ニ 於テ教誨ヲ為ス可シ

第85条（教科） 監獄法第30条ニ依リ教育ヲ施ス受刑者ニハ毎日 4時間 以内其教育ノ程度ニ応シ相当ノ教科ヲ授ク可シ

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餘暇時間 내에 자기를 위한 勞作을 許可할 수 있다. 금고수형자가 行狀이 우량하고 또 그 處遇上 해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전항의 勞作時間은 1일에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제6장 敎誨와 敎育

제80조 (敎誨) ① 敎誨는 休業日 또는 일요일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所長은 休業日 또는 일요일 이외의 날에도 敎誨를 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 病監 또는 獨居室에 拘禁하는 수형자 및 형사피고인에게는 그의 居所에서 敎誨를 하여야 한다.

제82조 ① 수형자가 父母의 訃音에 접하여 취업을 免除받은 때에는 敎誨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본인의 希望에 따라 그 亡父母를 위하여 讀經 기타의 行事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형자는 이를 독거구금할 수 있다.

제83조 삭제

제84조 수형자가 死亡한 때에는 본인과 緣故가 있는 수형자를 모아 棺前에서 敎誨를 하여야 한다.

제85조 (敎科) ① 감옥법 제30조에 의하여 敎育을 實施하는 수형자에게는 매일 4시간 이내 그 敎育의 程度에 따라 상당하는 敎科를 주어야 한다.

②前項ノ受刑者ニシテ小学校又ハ中学校ノ課程ヲ修了セサルモノニ付キ特ニ必要アリト認ムルトキハ前項ノ時間ヲ超エ小学校又ハ中学校ニ於テ必要トスル教科ヲ授クルコトヲ得

第86条（文書図画の閲読） 文書図画ノ閲読ハ拘禁ノ目的ニ反セズ且ツ監獄ノ紀律ニ害ナキモノニ限リ之ヲ許ス

②文書図画多数其他ノ事由ニ因リ監獄ノ取扱ニ著シク困難ヲ来タス虞アルトキハ其種類又ハ箇数ヲ制限スルコトヲ得

第87条 削除

第88条（自弁の筆記具等の使用） 在監者ニハ情状ニ因リ其監房内ニ於テ自弁ニ係ル筆記具及ビ筆記用紙ノ使用ヲ許スコトヲ得

第7章 給　養

第89条（給養） 在監者ノ使用ニ供スル衣類臥具食器及ビ雑具ノ品目ハ左ノ如シ

衣類

1. 常衣
2. 作業衣
3. 襯衣
4. 帯
5. 褌
6. 足袋

臥具

1. 蒲団又ハ毛布

② 전항의 수형자로서 國民學校 또는 中學校의 課程을 修了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항의 시간을 초과하여 국민학교 또는 중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敎科를 줄 수 있다.

제86조 (文書·圖畫의 閱讀) ① 문서·도화의 열독은 拘禁의 目的에 반하지 아니하고 또 감옥의 紀律에 害가 없는 것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② 문서·도화가 다수 기타 사유로 인하여 監獄의 取扱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種類 또는 個数를 제한할 수 있다.

제87조 삭제

제88조 (自辨 筆記具 등의 使用) 재감자에게는 情狀을 참작하여 그 居室 내에서 自辨에 의한 필기구 및 筆記用紙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7장 給 與

제89조 (給與) 재감자에게 제공되는 衣類, 寢具, 食器 및 雜具의 품목 다음과 같다.

<의류>

1. 평상복
2. 작업복
3. 내 의
4. 허리띠
5. 훈도시(곤의)
6. 양 말

<침구>

1. 이불 또는 담요

2. 敷布
3. 枕
4. 蚊帳

食器

1. 膳
2. 飯櫃
3. 椀
4. 箸
5. 皿

雑具

1. 手巾
2. 履物
3. 雨具
4. 冠物

②前項ニ掲クル物品ノ製式ハ法務大臣別ニ之ヲ定ム

③所長ニ於テ必要アリト認ムルトキハ第1項ノ品目ヲ増加スルコトヲ得

④前項ニ依リ品目ヲ増加シタルトキハ其事由ヲ具シ法務大臣ニ申報ス可シ

⑤用紙，歯磨楊枝，歯磨粉，石鹸，妻楊枝等日常必需品ハ之ヲ給与ス

第90条（給養の数量） 在監者ノ使用ニ供スル衣類臥具及ビ雑具ノ数ハ1人ニ付キ1箇トス但蚊帳ハ此限ニ在ラス

②所長ニ施テ必要アリト認ムルトキハ前項ニ掲ケタル箇数ヲ増減スルコトヲ得

③前項ニ依リ箇数ノ増減ヲ為シタルトキハ其事由ヲ具シ法務大臣ニ申報スヘシ

④病者ノ使用ニ供スル衣類臥具及ビ雑具ノ数ハ所長ニ於テ適宜之ヲ増減スルコトヲ得

⑤食器及ビ日常必需品ノ数量ハ所長ニ於テ之ヲ定ム

2. 시이트
3. 베개
4. 모기장

<식기>

1. 밥 상
2. 밥그릇
3. 국그릇
4. 수 저
5. 접 시

<잡구>

1. 수건
2. 신
3. 우비
4. 모자

② 前項에 열거한 物品의 制式은 法務大臣이 별도로 이를 정한다.

③ 所長은 필요하다고 일정될 때에는 제1항의 品目을 증가할 수 있다.

④ 전항의 의하여 品目을 증가할 때에는 그 事由를 갖추어 法務大臣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종이, 치솔, 치약, 비누, 이쑤시개 등 일상필수품은 이를 급여한다.

제90조 (給與数量) ① 재감자에게 급여하는 衣類, 寢具, 및 雜具의 수는 1인에 대하여 1개로 한다. 다만 모기장은 예외로 한다.

②~所長은 필요하고 인정될 때에는 전항에 열거한 個数를 증감할 수 있다.

③ 전항에 의해 個数를 증감한 때에는 그 事由를 法務大臣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病者에게 제공되는 의류, 침구 및 잡구의 수는 소장이 적절히 이를 증감할 수 있다.

⑤ 食器 및 日常必須品의 수량은 소장이 이를 정한다.

第 90 条ノ 2（器具の品目） 監房又ハ工場内ニ備フル器具ノ品目ハ左ノ如シ

1. 机
2. 寝台
3. 箒
4. 塵払
5. 塵取
6. 布巾及ビ雑巾
7. 紙屑入レ
8. 飲料水容器
9. 雑用水容器
10. 洗面器
11. 調髪用具
12. 唾壺
13. 便器
14. 履物箱
15. 団扇

②前項ニ掲クル掃除用具ハ其用途ニ従ビ区分ス可シ

③机，寝台，調髪用具及ビ団扇ハ必要アル場合ニ限リ之ヲ備フ

④監房及ビ工場ニハ第 1 項ノ品目及ビ数量ヲ記載シタル小札ヲ掲ク可シ

第 91 条 左ニ掲クル者ニ付テハ特ニ定ムル衣類ヲ着用セシムルコトヲ得

1. 20 歳未満ノ受刑者
2. 婦女受刑者
3. 其他処遇上特ニ必要アル者

第 92 条（自弁の衣類等） 自弁ノ衣類臥具ハ時季ニ適シ且ツ監獄ノ紀律及ビ衛生ニ害ナキ物ニ限ル

제90조 (器具의 品目) ①居室 또는 工場내에 비치하는 器具의 品目은 다음과 같다.

1. 책상
2. 침구
3. 비
4. 총채
5. 쓰레받기
6. 행주 및 걸레
7. 휴지통
8. 음료수용수
9. 잡용수 용기
10. 세면기
11. 조발용구
12. 타구
13. 변기
14. 신발장
15. 부채

② 전항에 열거한 淸掃用具는 그 用度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

③ 책상, 침대, 조발용구 및 부채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비치한다.

④ 居室 및 工場에는 제1항의 品目 및 数量을 기재한 票札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91조 다음에 열거하는 자에 대하여는 특히 정하는 의류를 착용시킬 수 있다.

1. 20세미만의 수형자
2. 부녀수형자
3. 기타 처우상 특히 필요한 자

제92조 (自辨衣類) ① 自辨衣類, 寢具는 계절에 적합하고 감옥의 紀律 및 衛生에 해가 없는 물건에 한한다.

②自弁ノ衣類臥具ノ品目及ビ箇数ハ所長之ヲ定ム

第93条 自弁ノ衣類臥具ハ時々之ヲ交換，補綴又ハ洗濯セシム可シ

②監獄ニ於テ自弁ノ衣類臥具ヲ補綴又ハ洗濯シタルトキハ其費用ハ本人ノ負担トス

第94条（糧食） 在監者ニ給与スル糧食ノ1人1日当リノ熱量ノ基準ハ左ノ如シ

1. 主食ノ熱量 1,700カロリー以上3,000カロリー以下
2. 主食副食ノ総熱量 2,300カロリー以上 3,600カロリー以下

②作業又ハ在監者ノ健康保全上其他特ニ必要アルトキハ前項ノ熱量ヲ増減スルコトヲ妨ゲズ但主食副食ノ総熱量ヲ2,300カロリー未満ニ減ズルコトヲ得ズ

③在監者ニ給与スル糧食ノ種類及ビ分量ハ法務大臣別ニ之ヲ定ム

第95条（飲料） 在監者ニ給与スル飲料ハ白湯，麦湯又ハ茶ヲ用ウ但在監者ノ健康保全上其他特ニ必要アルトキハ他ノ適当ナル飲料ヲ用ウルコトヲ得

第95条ノ2（特別の糧食又は飲料の給与） 国民ノ祝日，1月2日3日 其他特ニ法務大臣ノ指定シタル日ニ於テハ前2条ノ規定ニ拘ハラス特別ノ糧食又ハ飲料ヲ給スルコトヲ得

第96条（酒類等の禁止） 在監者ニハ酒類又ハ煙草ヲ用ウルコトヲ許サス

第97条（病者等の糧食及び飲料） 病者ノ糧食及ビ飲料ハ所長ニ於テ監獄ノ医師

② 자변의류, 침구의 품목 및 개수는 소장이 이를 정한다.

제93조 ① 자변의류 침구는 때때로 이를 交換, 補綴 또는 洗濯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감옥에서 자변의류, 침구를 보철 또는 세탁한 때에는 그 비용은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94조 (食糧) ① 재감자에게 給與하는 식량의 1인 1일당 熱量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主食의 열량 : 1,700칼로리 이상 3,000칼로리 이하
2. 主食·副食의 총열량 : 2,300칼로리 이상 3,600칼로리 이하

② 作業 또는 재감자의 健康維持上 기타 특히 필요한 때에는 전항의 熱量을 증감할 수 있다. 다만, 주식, 부식의 총열량을 2,300칼로리 미만으로 감소할 수 있다.

③ 재감자에게 급여하는 식량의 종류 및 분량은 법무대신이 별도로 이를 정한다.

제95조 (飮料) 재감자에게 급여하는 飮料는 끓인 물, 보리물 또는 茶를 사용한다. 다만, 재감자의 건강유지상 기타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른 적당한 음료를 사용할 수 있다.

제95조의2 (特別한 食糧 또는 飮料의 給與) 國民의 祝日, 1월2일, 3일 기타 특히 법무대신이 지정한 날에는 전 2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특별한 食糧 또는 飮料를 급여할 수 있다.

제96조 (酒類 등의 禁止) 재감자에게는 酒類 또는 煙草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97조 (病者 등의 食糧 및 飮料) 病者의 식량 및 음료는 소장이 監獄醫師의

ノ意見ニ依リ適宜之ヲ定ムルコトヲ得監獄法第12条ニ依リ携帯ヲ 許シタル子ノ糧食及ビ飲料ニ付キ亦同ジ

第98条（自弁糧食） 自弁糧食ノ種類及ビ分量ハ所長之ヲ定ム

第99条 削除

第100条 自弁糧食ハ監獄官吏立会ノ上監獄ノ医師其検査ヲ為ス可シ

第101条 雑居拘禁ニ付セラレタル者ノ自弁糧食ハ成ル可ク一定ノ場所ニ於テ之ヲ用キシム可シ

第8章 衛生及ビ医療

第102条（衛生） 監獄ニ於テハ清潔ヲ旨トシ衣類臥具及ビ雑具ハ期限ヲ定メ蒸汽其他適当ノ方法ヲ用キテ之ヲ清浄ナラシム可シ

第103条（調髪） 在監者ニハ常ニ頭髪ノ清潔ヲ保タシメ其容姿ヲ整ヘシム可シ

②在監者ノ調髪ハ概ネ20日毎ニ1回，顔剃ハ少クトモ7日毎ニ1回之ヲ行ハシム可シ但婦女及ビ特別ノ事情アル者ニ付テハ適宜之ヲ行ハシムルコトヲ得

第104条 削除

第105条（入浴の度数） 在監者ノ入浴ノ度数ハ作業ノ種類及ビ其他ノ事情ヲ斟

意見에 따라 적당히 이를 정할 수 있다. 감옥법 제12조에 의하여 帶同을 허가한 子의 식량 및 음료에 대하여도 역시 같다.

제98조 (自辨食糧) 자변식량의 種類 및 分糧은 소장이 이를 정한다.

제99조 삭제

제100조 자변식량은 감옥관리가 참여하고 감옥의사가 그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01조 獨居拘禁者의 자변식량은 되도록 일정한 장소에서 이를 식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8장 衛生과 醫療

제102조 (衛生) 감옥에서는 淸潔을 第一로 하고 의류와 침구 및 잡구는 期限을 정하여 증기 기타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이를 청결하게 하여야 한다.

제103조 (調髮) ① 재감자에게는 항상 頭髮의 淸潔을 유지하게 하고 그 容貌를 단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재감자의 調髮은 대략 20일에 1회, 面刀는 적어도 7일에 1회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婦女 및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적당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4조 삭제

제105조 (沐浴의 回数) 재감자의 沐浴 回数는 作業의 種類 및 기타 事情을 참

酌シテ所長之ヲ定ム但6月ヨリ9月マテハ5日毎ニ1回，10月ヨリ5月マテハ7日毎ニ1回ヲ下ルコトヲ得ス

第106条（運動） 在監者ニハ雨天ノ外毎日30分以内戸外ニ於テ運動ヲ為サシム可シ但作業ノ種類其他ノ事由ニ因リ運動ノ必要ナシト認ム可キ者ニ付テハ此限ニ在ラス

②前項ノ運動時間ハ独居拘禁ニ付セラレタル者ニ限リ1時間以内ニ伸長スルコトヲ得

第107条（健康診断） 独居拘禁ニ付セラレタル在監者ニシテ20歳未満ノモノハ少クトモ30日毎ニ1回，其他ノモノハ少クトモ3月毎ニ1回，雑居拘禁ニ付セラレタル受刑者ニシテ刑期1年以上ノモノハ少クトモ6月毎ニ1回監獄ノ医師ヲシテ健康診断ヲ為サシム可シ

第108条（治療・居室） 20歳未満ノ者ハ其他ノ者ト治療ノ時間及ビ病監ニ於ケル居室ヲ異ニス可シ

第109条（独房拘禁者の治療） 独居拘禁ニ付セラレタル者疾病ニ罹リタルトキハ病監ニ移ス必要アル場合ヲ除ク外其監房ニ於テ治療セシメ病監ニ移シタルトキハ成ル可ク病監内ノ独居監房ニ拘禁ス可シ

第110条（隔離） 伝染病流行ノ兆アルトキハ其予防ヲ厳ニシ流行地ヲ発シ又其地方ヲ経過シタル入監者ハ1週日以上他ノ者ト隔離シ其携帯物ニハ消毒方法ヲ行フ可シ

第111条（予防接種等） 伝染病予防ノ為メ必要アル場合ニ於テハ在監者ニ予防接種其他ノ措置ヲ施ス可シ

第112条（差入等の禁止） 伝染病流行ノ際ニハ飲食物ノ差入及ビ購求ヲ停止スルコトヲ得

작하여 소장이 이를 정한다. 다만 6월부터 9월까지는 5일에 1회, 10월부터 5월까지는 7일에 1회 이상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06조 (運動) ① 재감자에게는 雨天時 이외에는 매일 30분 이내로 屋外에서 運動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종류 기타 사유에 의하여 운동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의 운동시간은 독거구금자에 한하여 1시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107 (健康診斷) 獨居拘禁 재감자로서 20세미만인 자는 적어도 30일에 1회, 기타의 자는 적어도 3월에 1회, 混居拘禁 수형자로서 형기가 1년 이상인 자는 적어도 6월마다 한번 감옥의 醫師 하여금 건강진단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108조 (治療居室) 20세 미만인 자는 기타의 자와 治療時間 및 病監에 있어서의 居室을 달리하여야 한다.

제109조 (獨居拘禁者 治療) 독거구금자가 疾病에 걸린 때에는 病監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居室에서 치료하게 하고, 병감으로 옮긴 때에는 되도록 병감내의 獨居室에 拘禁해야 한다.

제110조 (隔離) 傳染病이 流行할 徵兆가 있는 때에는 그 豫防을 엄격히 하고, 流行地를 출발 또는 그 지방을 통과한 입감자는 1주일 이상 다른 자와 격리하며, 그 휴대물에는 消毒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1조 (豫防接種) 傳染病 豫防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감자에게 豫防接種 기타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2조 (傳染病者의 隔離) ① 재감자가 傳染病에 걸린 때에는 즉시 이를 隔離하여 엄격히 消毒을 행하고 그 상황을 법무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第 113 条（伝染病患者の隔離等） 在監者伝染病ニ罹リタルトキハ直ニ之ヲ隔離シ厳ニ消毒方法ヲ行ヒ其状況ヲ法務大臣ニ申報ス可シ

②前項ノ場合ニ於テハ監獄所在地ノ市町村長ニ其事実ヲ通報ス可シ

第 114 条（病院移送） 監獄法第 43 条ニ依リ在監者ヲ病院ニ移送シタルトキハ所長ハ監獄ノ医師ノ診断書及ビ移送シタル病院トノ協議書ヲ添ヘ法務大臣ニ申報ス可シ

第 115 条（病院移送者の視察） 在監者ヲ病院ニ移送シタルトキハ所長ハ監獄官吏ヲシテ毎日其状況ヲ視察セシム可シ

第 116 条（還送） 病院ニ移送シタル者在院ノ必要ナキニ至リタルトキハ所長ハ速ニ之ヲ還送セシメ法務大臣ニ其旨ヲ申報ス可シ

第 117 条（治療の補助） 治療ノ為メ特ニ必要アリト認ムルトキハ所長ハ監獄ノ医師ニ非サル医師ヲシテ治療ヲ補助セシムルコトヲ得

②分娩ノ際必要アリト認ムルトキハ所長ハ助産婦ヲ付スルコトヲ得

第 118 条（疾病危篤の通知） 在監者ノ疾病危篤ナルトキハ其旨ヲ本人ノ親族ニ通知シ刑事被告人又ハ監置ニ処セラレタル者ナルトキハ仍ホ夫々検察官又ハ裁判官ニ通報ス可シ

第 119 条（病者に準ずる者） 妊婦ハ受胎後 5 月以上ノ者産婦ハ分娩後 2 月ヲ経過セサル者ニ限リ之ヲ病者ニ準スルコトヲ得

第9章 接見及ビ信書

第 120 条（接見を禁止する者） 14 歳未満ノ者ニハ在監者ト接見ヲ為スコトヲ許サス

② 전항의 경우는 監獄 所在地의 市·町·村長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4조 (病院移送) 감옥법 제43조에 의하여 在監者를 病院에 移送한 때에는 소장은 감옥의사의 診斷書 및 이송한 병원과의 協議書를 첨부하여 법무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5 (病院 移送者의 視察) 재감자를 病院으로 移送한 때에는 소장은 監獄官吏로 하여금 매일 그 상황을 視察하게 하여야 한다.

제116 (還送) 病院에 移送한 자가 在院의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所長은 신속히 이를 還送시키고 법무대신에게 그 사실은 보고하여야 한다.

제117조 (治療의 補助) ① 治療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所長은 감옥의 醫師가 아닌 醫師로 하여금 治療를 補助하게 할 수 있다.
② 分晩時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所長은 助産婦를 둘 수 있다.

제118조 (疾病危篤의 通知) 재감자의 疾病이 危篤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본인의 親族에게 通知하고, 형사피고인 또는 監置者인 때에는 다시 담당 檢察官 또는 裁判官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9조 (病者에 準하는 者) 妊婦는 受胎 후 5월 이상인 자, 産婦는 分晩후 2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한하여 이를 病者에 準할 수 있다.

제9장 接見과 書信

제120조 (接見이 禁止되는 者) 14세 미만인 자에게는 在監者와의 接見을 許可하지 아니한다.

第 121 条（接見の時間） 接見ノ時間ハ 30 分以内トス但弁護人トノ接見ハ此限ニ在ラス

第 122 条（接見の許可） 接見ハ執務時間内ニ非サレハ之ヲ許サス

第 123 条（接見の度数） 接見ノ度数ハ拘留受刑者及ビ監置ニ処セラレタル者ニ付テハ 10 日毎ニ 1 回，禁錮受刑者ニ付テハ 15 日毎ニ 1 回，懲役受刑者ニ付テハ 1 月毎ニ 1 回トス但 20 歳未満ノ受刑者又ハ之ニ準スル処遇ヲ為ス受刑者ノ接見度数ハ所長ニ於テ教化上必要ト認ムル程度ヲ標準トシテ適宜之ヲ増加スルコトヲ得

第 124 条 所長ニ於テ処遇上其他必要アリト認ムルトキハ前 4 条ノ制限ニ依ラサルコトヲ得

第 125 条（接見の請求があった場合） 在監者ニ接見センコトヲ請フ者アルトキハ其氏名，職業，住所，年齢，在監者トノ続柄及ビ面談ノ要旨ヲ聞取リ許可ヲ与ヘタル者ニハ接見者心得事項ヲ告知ス可シ

②接見センコトヲ請フ者弁護人ナルトキハ其氏名，職業及ビ住所ノミヲ聞取リ裁判所ノ許可ヲ得テ弁護人ト為リタル者ニハ仍ホ其旨ヲ証明セシム可シ

第 126 条（接見の方法） 接見ハ接見所ニ於テ之ヲ為サシム可シ

②受刑者ノ教化上其他必要アリト認ムルトキハ接見所以外ノ適当ナル場所ニ於テ接見ヲ為サシムルコトヲ得

③在監者疾病ノ為メ已ムコトヲ得ザル場合ハ其居所ニ於テ接見ヲ為サシムルコトヲ得

제121조 (接見時間) 接見의 時間은 30분 이내로 한다. 다만 辯護人과의 接見은 예외로 한다.

제122조 (接見의 許可) 접견은 執務時間內가 아니면 이를 許可하지 아니한다.

제123조 (接見의 回数) 接見의 회수는 拘留受刑者 및 監置者에 대해서는 10일에 1회, 禁錮受刑者에 대하여는 15일에 1회, 懲役受刑者에 대하여는 1월에 1회로 한다. 다만 20세 미만인 수형자 또는 이에 준하는 處遇를 하는 수형자의 接見回数는 소장이 敎化上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도를 標準으로 하여 적절히 이를 증가할 수 있다.

제124조 所長은 處遇上 기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 4조의 制限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5조 (接見의 請求가 있는 경우) ① 재감자와의 接見을 申請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 직업, 주소, 연령, 재감자와의 관계 및 面談의 要旨를 기록하고, 허가를 부여한 때에는 접견자 注意事項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접견을 신청하는 자에게 辯護人이 있을 때에는 그 성명, 직업 및 주소만을 기록하고, 法院의 許可를 얻어 辯護人이 된 자에게는 다시 그 事實을 證明하게 하여야 한다.

제126조 (接見의 方法) ① 접견은 接見室에서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수형자의 敎化上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接見室 이외의 적당한 장소에서 接見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재감자가 疾病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居所에서 接見을 하게 할 수 있다.

第127条（接見の立会） 接見ニハ監獄官吏之ニ立会フ可シ但刑事被告人ト弁護人トノ接見ハ此限ニ在ラス

②前項但書ノ場合ニ於テハ逃走不法ナル物品ノ授受又ハ罪証湮滅其他ノ事故ヲ防止スル為メ必要ナル戒護上ノ措置ヲ講ス可シ

③所長ニ於テ教化上其他必要アリト認ムルトキハ受刑者ノ接見ニ付立会ヲ為サシメサルコトヲ得

第128条（外国語の禁止） 外国語ハ所長ノ許可アルニ非サレハ接見ノ際之ヲ使用スルコトヲ得ス

第129条（発信の数） 発信ノ数ハ拘留受刑者及ビ監置ニ処セラレタル者ニ付テハ10日毎ニ1通，禁錮受刑者ニ付テハ15日毎ニ1通，懲役受刑者ニ付テハ1月毎ニ1通トス但20歳未満ノ受刑者又ハ之ニ準スル処遇ヲ為ス受刑者ノ発送スル信書ノ数ハ所長ニ於テ教化上必要ト認ムル程度ヲ標準トシテ適宜之ヲ増加スルコトヲ得

②所長ニ於テ処遇上其他必要アリト認ムルトキハ前項ノ制限ニ依ラサルコトヲ得

第129条ノ2（信書の交付） 受刑者ノ受ク可キ信書ニシテ教化上支障ナキモノハ其都度之ヲ本人ニ交付ス可シ

②受刑者ニ交付ス可キ信書多数ニシテ監獄ノ取扱ニ著シキ困難ヲ来タス虞アルトキハ急速ヲ要スル信書ヲ先ツ交付ス可シ

第130条（信書の検閲） 在監者ノ発受スル信書ハ所長之ヲ検閲ス可シ

②発信ハ封緘ヲ為サスシテ之ヲ所長ニ差出サシメ受信ハ所長之ヲ開披シ検印ヲ押捺ス可シ

第131条（信書の翻訳） 外国文ヲ用ヰタル信書ハ検閲ノ為メ在監者ノ費用ヲ以テ之ヲ翻訳セシムルコトヲ得

제127조 (接見의 參與) ① 접견에는 監獄官吏가 이에 함여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피고인과 辯護人과의 接見은 예외로 한다.

② 전항 단서의 경우에는 逃走, 불법한 물품의 受授 또는 罪證湮滅 기타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戒護上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敎化上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형자의 接見에 참여를 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8조 (外國語의 禁止) 外國語는 所長의 허가없이는 接見時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129조 (發信의 回数) ① 발신의 회수는 拘留受刑者 및 監置者에 대하여는 10일에 1통, 禁錮受刑者에 대하여는 15일에 1통, 懲役受刑者에 대하여는 1월마다 한 통으로 한다. 다만 20세 미만의 수형자 또는 이에 準하는 處遇를 받는 受刑者가 발송하는 서신의 수는 소장이 敎化上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도를 標準으로 하여 적절히 이를 증가할 수 있다.

② 所長이 處遇上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항의 제한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9조의2 (書信의 交付) ① 수형자가 受領할 書信으로써 敎化上 지장이 없는 것은 그 때마다 이를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수형자에게 交付하여야 할 書信의 수가 많아 監獄의 取扱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急速을 요하는 書信을 먼저 교부하여야 한다.

제130조 (書信의 檢閱) ① 재감자가 受發하는 書信은 소장이 이를 檢閱하여야 한다.

② 發信은 封緘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所長에게 제출하게 하며, 수신은 소장이 이를 開披하고 檢印을 押捺하여야 한다.

제131조 (書信의 翻譯) ① 外國語를 사용한 書信은 檢閱을 위하여 재감자의

②在監者前項ノ費用ヲ負担スル資力ナク又ハ其負担ヲ肯セサルトキハ信書ノ発受ヲ許ササルコトヲ得

第132条（信書の作成の制限） 受刑者ノ発送スル信書ハ急速ヲ要スル場合ヲ除ク外日曜日，休業日又ハ休憩時間内ニ非サレハ之ヲ作成セシムルコトヲ得ス

第133条（信書の代書） 在監者信書ヲ自書スルコト能ハサルトキハ本人ノ求ニ因リ監獄官吏之ヲ代書ス可シ

第134条（郵便料金の自弁等） 在監者ノ発送スル信書ノ郵便料金ハ自弁トス裁判所其他公務所ニ対シ返信ヲ要スル場合及ビ処遇上其他必要アリト認ムル場合ニ於テ郵便料金ヲ自弁スルコト能ハサルトキハ監獄ニ於テ之ヲ支弁ス可シ

②信書用紙及ビ封筒ハ監獄ニ於テ之ヲ給与スルコトヲ得

第135条（信書の所持） 在監者ニ交付シタル信書及ビ其他ノ文書ハ所長ニ於テ処遇上其他必要アリト認ムル期間之ヲ本人ニ所持セシムルコトヲ得

第136条（信書の検閲等の迅速処理） 信書ノ検閲，発送及ビ交付ノ手続ハ成ル可ク速ニ之ヲ為ス可シ

第137条（信書の発送等の記載） 信書ノ発送，交付及ビ廃棄ノ年月日ハ之ヲ本人ノ身分帳簿ニ記載ス可シ

第138条（信書の制限） 監獄法第47条第1項ニ依リ発受ヲ許ササル信書ハ保管シ置キ廃棄ス可キモノヲ除ク外釈放ノ際之ヲ本人ニ交付ス可シ

費用으로 이를 번역하게 할 수 있다.

② 재감자가 전항의 費用을 부담할 自力이 없거나 또는 그 부담을 肯定하지 아니할 때에는 書信의 受發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2조 (書信作成의 制限) 受刑者가 發送하는 書信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 휴업일 또는 휴게시간이 아니면 이를 작성하게 할 수 없다.

제133조 (書信의 代書) 재감자가 書信을 自書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의 要求에 의하여 監獄官吏가 이를 代書하여야 한다.

제134조 (郵便料金의 自辨 등) ① 在監者가 발송하는 書信의 郵便料金은 自辨으로 한다. 법원 기타 공무소에 대해 返信을 요하는 경우 및 處遇上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우편요금을 自辨할 수 없는 때에는 감옥에서 이를 지불해야 한다.

② 서신용지 및 봉투는 감옥에서 이를 급여할 수 있다.

제135조 (書信의 所持) 재감자에게 교부한 書信 및 기타 文書는 소장이 處遇上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이를 본인에게 所持하게 할 수 있다.

제136조 (書信의 檢閱 등의 迅速処理) 書信의 檢閱, 발송 및 交付節次는 되도록 신속히 이를 하여야 한다.

제137조 (書信의 發送 등의 기재) 서신의 발송, 교부 및 폐기의 년월일은 이를 본인의 身分帳簿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38조 (書信의 制限) 監獄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受發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書信은 保管해 두고, 폐기해야 할 것을 제외하고는 釋放時에 이를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第139条（参考事項の記載） 接見ノ立会及ビ信書ノ検閲ノ際処遇上其他参考ト為ル可キ事項ヲ発見シタルトキハ其要旨ヲ本人ノ身分帳簿ニ記載ス可シ

第10章 領　置

第140条（領置物の記載等） 領置物ハ其品目及ビ数量ヲ領置金品基帳ニ記載シ領置品基帳ニハ所長之ニ証印ス可シ

第141条（領置物の売却） 金銭ニ非サル領置物ハ本人ノ請求ニ因リ之ヲ売却シテ其代金ヲ領置スルコトヲ得

②領置ヲ為サス又ハ領置ヲ解キタル物ニ付キ本人相当ノ処分ヲ為ササルトキハ請求ナキトキト雖モ前項ノ処分ヲ為スコトヲ得

③領置シタル金銭ニ付キ本人預金センコトヲ請ヒタル場合ニ於テ其金額，身上関係其他ノ事情ヲ斟酌シテ相当ト認ムルトキハ之ヲ許シ其証書ヲ領置スルコトヲ得

第142条（差入れの制限） 在監者ニハ拘禁ノ目的ニ反シ又ハ監獄ノ紀律ヲ害ス可キ物ノ差入ヲ為スコトヲ得ス

第143条 受刑者ニハ法令其他ノ文書図画，筆記具，筆記用紙，印紙，郵便切手郵便葉書，金銭及ビ教化上特ニ必要ト認ムル物ヲ除ク外差入ヲ為スコトヲ得ス但自弁ヲ許シタル物ハ此限ニ在ラス

第144条 刑事被告人ニハ前条ニ掲ケタル物ノ外衣類臥具，飲食物，手巾及ビ履物ニ限リ差入ヲ為スコトヲ得自弁ヲ許シタル其他ノ物ニ付キ亦同ジ

제139조 (參考事項의 記載) 접견의 참여 및 書信의 檢閱時에 處遇上 기타 參考가 될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要旨를 본인의 身分帳簿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장 領 置

제140조 (領置物의 記載 등) 領置物은 그 품목 및 수량을 領置金品元帳에 기재하고 領置品元帳에는 소장이 이를 확인·날인 하여야 한다.

제141조 (領置物의 賣却) ① 金錢이 아닌 領置物은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賣却하고 그 代金을 領置할 수 있다.

② 領置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영치를 푼 물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상당한 處分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가 없는 때라 하더라도 전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領置한 金錢에 대하여 본인이 預金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 그 금액, 身上関係 기타의 事情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許可하고 그 證書를 영치할 수 있다.

제142조 (差入의 制限) 재감자에게는 拘禁의 目的에 반하거나 감옥의 紀律을 해하는 물건을 差入할 수 없다.

제143조 수형자에게는 법령 기타의 문서·도화, 필기구, 필기용지, 인지, 우표, 우편엽서, 금전 및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건을 제외하고는 差入을 할 수 없다. 다만 自辨을 허가한 물건은 예외로 한다.

제144조 형사피고인에게는 전조에 열거한 물건 외에 의류, 침구, 음식물, 수건 및 신발에 한하여 차입을 할 수 있다. 자변을 허가한 기타의 물건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第145条（準用） 衣類臥具ノ差入ニ付テハ第92条飲食物ノ差入ニ付テハ第98条ノ規定ヲ準用ス

第146条（差入れの調査） 在監者ニ差入ヲ為サンコトヲ請フ者アルトキハ其氏名，職業，住所，年齢及ビ在監者トノ続柄ヲ調査ス可シ

②前項ノ調査ノ結果其差入ガ在監者ノ処遇上害アリト認ムルトキハ之ヲ許サズ

第147条（検査） 在監者ニ宛テ送致シ来リタル物及ビ差入ヲ為シタル物ハ監獄官吏之ヲ検査ス可シ

②飲食物ノ検査ニハ監獄ノ医師ヲシテ立会ハシム可シ

第148条（領置） 自弁又ハ差入ヲ許シタル物ハ本人ニ交付セサルトキト雖モ携有物ノ例ニ依リ領置ノ手続ヲ為ス可シ

第149条（領置の手続をしない物） 新聞紙，雑誌，飲食物及ビ日常必需品ニ付テハ領置ノ手続ヲ為サザルコトヲ得

第150条（没入又は廃棄） 没入又ハ廃棄ノ処分ヲ為シタルトキハ没入廃棄簿ニ品目，数量並ニ処分ヲ為シタル理由及ビ年月日ヲ記載シ所長之ニ証印ス可シ但前条ニ依リ領置ヲ為サザル物ニ付テハ此限ニ在ラズ

第151条（遺留物） 死亡者ノ遺留物ノ交付ヲ受ク可キ者遠隔地ニ在ルトキハ其請求ニ因リ遺留物ヲ売却シテ代金ヲ送付スルコトヲ得但其費用ハ請求者ノ負担トス

제145조 (準用) 의류, 침구의 차입에 대하여는 제92조, 음식물의 차입에 대해서는 제9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6조 (差入의 調査) ① 재감자에게 差入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직업, 주소, 연령 및 재감자와의 관계를 조사해야 한다.

② 전항의 調査結果 그 差入이 재감자의 處遇上 해롭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147조 (檢査) ① 재감자에게 送付되어 온 물건과 差入을 한 물건은 監獄官吏가 이를 검사하여 한다.

② 음식물의 檢査에는 감옥의 醫師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48조 (領置) 自辨 또는 差入을 허가한 물건은 본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는 때라 하더라도 携帶物의 예에 따라 領置의 節次를 밟아야 한다.

제149조 (領置의 節次를 거치지 않는 物件) 신문, 잡지, 음식물 및 일상필수품에 대하여는 영치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0조 (沒取 또는 廢棄) 沒取 또는 廢棄의 處分을 한 때에는 沒取·廢棄簿에 품목, 수량 및 처분을 한 이유 및 년월일을 기재하고 소장이 이에 확인·날인해야 한다. 다만 전조에 의하여 領置를 하지 아니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51조 (遺留物) 死亡者의 遺留物의 교부를 받아야 할 자가 遠隔地에 있는 때에는 그 청구에 의하여 遺留物을 賣却하고 대금을 송부할 수 있다. 다만 그 費用은 請求者의 負擔으로 한다.

第11章 賞　罰

第 152 条（賞表）　賞遇ヲ為ス可キ者ニハ賞表ヲ付与ス可シ

②賞表ハ加ヘテ3箇ヲ超ユルコトヲ得ス

第 153 条　賞表ハ長6糎幅三糎ノ白色ノ布ヲ用キ上衣ノ左袖肩臂間ノ表面ニ縫著セシム可シ

第 154 条（賞遇）　賞遇ハ左ノ如シ

1. 第 123 条ニ定メタル接見ノ度数及ビ第 129 条ニ定メタル信書発送ノ度数ヲ1回宛増加スルコト
2. 襯衣ノ自弁ヲ許スコト
3. 作業ノ変更ヲ許スコト
4. 第 71 条ニ依ル作業賞与金計算高ヲ賞表1箇毎 20 分ノ2宛増加スルコト
5. 特別ノ糧食及ビ飲料ヲ給与スルコト

第 155 条（賞遇の停止）　賞遇ヲ廃止セラレタル者ニハ賞表ヲ剝奪シ賞遇ヲ停止セラレタル者ニハ其期間賞表ヲ除去ス可シ

第 156 条（賞金）　在監者左ノ各号ニ該ル行為アルトキハ5,000 円以下ノ賞金ヲ給スルコトヲ得

1. 人命ヲ救護シタルトキ
2. 在監者ノ逃走ヲ防止シタルトキ
3. 天災事変又ハ伝染病流行ノ際監獄ノ用務ニ服シ功労アリタルトキ

第 157 条（減食）　減食ハ第 94 条ノ規定ニ拘ハラズ本人ニ給与スル糧食ノ1回ノ分量ヲ二分ノ一乃至三分ノ一ニ減ス

제11장 賞 罰

제152조 (賞表) ① 賞遇를 하여야 할 자에게는 賞表를 주어야 한다.
② 상표는 합하여 세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153조 상표는 길이 6센티미터, 폭 3센티미터의 백색 직물을 사용하여 상의의 왼쪽소매의 어깨 팔뚝 사이의 표면에 꿰매어 부착한다.

제154조 (賞遇) 상우는 다음과 같다.

1. 제123조에 정한 접견의 회수 및 제129조에 정한 서신발송의 회수를 1회씩 증가함.
2. 內衣의 自辨을 허가함.
3. 작업의 변경을 허가함.
4. 제71조에 의한 作業賞與金 計算額을 賞表 1개마다 10분의 2씩 증가함.
5. 특별식량 및 음료를 급여함.

제155조 (賞遇의 廢止) 賞遇를 폐지당한 자에는 賞表를 剝奪하고, 상우를 정지당한 자에게는 그 기간동안 상표를 제거해야 한다.

제156조 (賞金) 재감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천엔 이하의 賞金을 支給할 수 있다.

1. 人命을 救護한 때
2. 재감자의 逃走를 방지한 때
3. 天災地變 또는 전염병의 流行時에 감옥의 用務에 功勞가 있은 때

제157조 (減食) 감식은 제94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본인에게 급여할 식량의 1회 분량을 2분의 1 내지 3분의 1로 감한다.

第 158 条（懲罰事犯者の拘禁） 懲罰事犯ニ付キ取調中ノ者ハ之ヲ独居拘禁ニ付シ又ハ夜間独居監房ニ拘禁ス可シ

第 159 条（懲罰の言渡し） 懲罰ノ言渡ハ所長之ヲ為ス可シ

第 160 条（懲罰の執行） 懲罰ハ言渡ノ後直ニ之ヲ執行ス可シ

②戸外運動ノ停止，減食又ハ屏禁ニ処セラレタル者ニ付テハ監獄ノ医師ヲシテ本人ヲ診断セシメ其健康ニ害ナシト認メタルトキニ非サレハ懲罰ヲ執行スルコトヲ得ス

第 161 条（健康診断） 減食又ハ屏禁ノ執行中ニ在ル者ハ監獄ノ医師ヲシテ時時其健康ヲ診断セシムル可シ

第 162 条（懲罰の執行の停止） 減食又ハ屏禁ニ処セラレタル者裁判所ノ呼出ニ因リ出頭スルトキハ当日ニ限リ懲罰ノ執行ヲ停止ス可シ

②前項ニ掲ケタル者ヲ移監ノ為メ他所ニ護送スルトキハ護送ノ前日，其当日及ビ護送中懲罰ノ執行ヲ停止ス可シ

③停止ノ日数ハ之ヲ処罰期間ニ算入セス

第 163 条（健康診断） 戸外運動ノ停止，減食又ハ屏禁ニ処セラレタル者ハ懲罰ノ執行ヲ終リタル後速ニ監獄ノ医師ヲシテ其健康ヲ診断セシムル可シ

第 164 条（懲罰の執行の開始） 懲罰ニ処セラレタル者ヲ移監ニ因リ受領シタル監獄ニ於テハ収監後 3 日以内ニ懲罰ノ執行ヲ開始ス可シ

②収監後執行開始ニ至ル迄ノ日数ハ之ヲ処罰期間ニ算入セス

제158조 (懲罰事犯者의 拘禁) 징벌사범에 대해 調査 중인 자는 이를 獨居拘禁하거나 야간 독거실에 구금하여야 한다.

제159조 (懲罰의 宣告) 懲罰의 宣告는 소장의 이를 하여야 한다.

제160조 (懲罰의 執行) ① 懲罰은 선고 후 즉시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屋外運動의 停止, 減食 또는 屛禁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감옥의 醫師로 하여금 본인을 診斷하게 하고 그 건강에 해가 없다고 인정한 때가 아니면 징벌을 집행할 수 없다.

제161조 (健康診斷) 減食 또는 屛禁의 執行 중에 있는 자는 감옥의 醫師로 하여금 수시로 그 健康을 診斷하게 하여야 한다.

제162조 (懲罰執行의 停止) ① 減食 또는 屛禁者가 법원의 召喚에 의하여 출석하는 때에는 당일에 한하여 징벌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열거한 자를 移監하기 위하여 他所로 護送하는 경우에 호송의 전날, 그 당일 및 호송 중에는 징벌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日数는 이를 處罰期間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3조 (건강진단) 屋外運動의 정지, 減食 또는 屛禁을 선고받은 자는 징벌의 집행을 종료한 후 즉시 감옥의 의사로 하여금 그 건강을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제164조 (징벌집행의 개시) ① 懲罰의 선고를 받은 자를 移監으로 인수한 감옥은 收監 후 3일이내에 징벌의 집행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 수감후 執行開始에 이르기까지의 日数는 이를 處罰期間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第 165 条（紀律違反の懲罰） 在監者護送ノ途中ニ於テ紀律違反ノ行為アリタルトキハ本人ヲ受領シタル監獄ニ於テ之ヲ懲罰ニ処スルコトヲ得

第 166 条（懲罰に関する事項の記載） 在監者ノ賞罰ニ関スル事項ハ身分帳簿及ビ懲罰簿ニ記載ス可シ

第12章 釈 放

第 167 条（釈放後の諭告） 刑期ノ終了ニ因リ釈放セラル可キ受刑者ハ釈放前3日以内独居拘禁ニ付シ所長ハ釈放後ノ心得ニ付キ諭告ヲ為ス可シ

第 168 条（釈放後に関する調査） 刑期ノ終了ニ因リ釈放セラル可キ受刑者ニ付テハ釈放ノ 10 日前迄ニ釈放後ノ保護ニ関スル事項ヲ調査ス可シ

第 169 条（意見の通報） 所長ニ於テ必要アリト認メタルトキハ釈放セラル可キ者ノ性格及ビ行状並ニ保護ニ関スル意見ヲ本人ノ保護ニ関係アル公務所又ハ本人ノ保護ヲ引受ク可キ者ニ通報ス可シ

第 170 条（領置物等の交付の準備） 釈放セラル可キ者ノ領置物及ビ作業賞与金ハ予メ交付ノ準備ヲ為シ置ク可シ

第 171 条（衣類の調達等） 釈放ノ際著用ス可キ衣類ヲ有セサル者ニハ予メ本人ノ領置金若クハ作業賞与金又ハ其他ノ方法ヲ以テ之ヲ調達セシメ若シ調達スルコト能ハサルトキハ監獄ニ於テ之ヲ給与ス可シ

第 172 条（同行等） 受刑者ヲ釈放シタル場合ニ於テ必要アリト認ムルトキハ所

제165조 (紀律違反의 懲罰) 재감자가 호송도중에 紀律違反의 행위를 한 때에는 그를 引受한 監獄에서 이를 징벌에 처할 수 있다.

제166조 (懲罰에 관한 事項의 記載) 재감자의 賞罰에 관한 사항은 身分帳簿 및 懲罰簿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장 釋 放

제167조 (釋放 후의 諭告) 刑期의 終了로 인하여 釋放되어야 할 수형자는 석방전 3일이내 獨居拘禁하고 소장은 석방후의 銘心事項에 대해 諭告를 하여야 한다.

제168조 (釋放후에 관한 調査) 刑期의 終了로써 석방되어야 할 수형자에 대하여는 석방 10일전까지 석방 후의 保護에 관한 事項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169조 (意見의 通報) 소장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석방되어야 할 자의 性格과 行狀 및 保護에 관한 意見을 그의 보호에 관계있는 公務所 또는 그의 보호를 인수해야 할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70조 (領置物 등의 交付準備) 석방되어야 할 자의 領置物과 作業賞與金은 미리 교부준비를 해 두어야 한다.

제171조 (衣類의 調達 등) 석방시에 사용해야 할 의류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자에게는 미리 본인의 領置金 또는 作業賞與金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써 이를 調達하게 하고 만일 조달할 수 없는 때에는 감옥에서 이를 급여하여야 한다.

제172조 (同行 등) 수형자를 석방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장은

長ハ監獄官吏ヲシテ停車場又ハ乗船所迄同行セシメ本人ニ代リ其帰住地又ハ帰住地ニ最近ノ場所ニ至ル迄ノ乗車券又ハ乗船切符ヲ購求シ之ヲ本人ニ交付セシムル可シ

第 173 条 削除

第 174 条（仮出獄の申渡し） 仮出獄ニ因リ釈放ス可キ場合ニ於テハ一定ノ式ニ依リ所長釈放ノ申渡ヲ為シ本人ニ証票ヲ交付ス可シ

第 175 条（仮出獄の取消事由に該当の場合の通報） 仮出獄ニ因リ釈放セラレタル者刑法第29条第1項第1号乃至第3号ニ該ルコトヲ知リタルトキハ所長ハ速ニ其旨ヲ法務大臣ノ別ニ定ムル所ニ依リ保護観察所ノ長ニ通報ス可シ

第 176 条（仮出場についての準用） 第 174 条ノ規定ハ刑法第 30 条ニ依ル仮出場ノ場合ニ之ヲ準用ス

第13章 死 亡

第 177 条（死亡の場合の手続） 在監者死亡シタルトキハ所長ハ其死体ヲ検ス可シ

②病死ノ場合ニ於テハ監獄ノ医師ハ其病名，病歴，死因及ビ死亡ノ年月日時ヲ死亡帳ニ記載シ之ヲ署名ス可シ

③自殺其他変死ノ場合ニ於テハ其旨ヲ検察官及ビ警察署ニ通報シテ検視ヲ受ケ検視者及ビ立会者ノ官氏名並ニ検視ノ結果ヲ死亡帳ニ記載ス可シ

감옥관리로 하여금 停車場 또는 乘船所까지 同行하게 하고 그에 대신하여 그 歸住地 또는 귀주지 근처에 이르지까지의 乘車券 또는 乘船票를 구입하여 이를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73조 삭제

제174조 (假出獄의 宣告) 假出獄에 의하여 석방되어야 할 경우에는 일정한 方式에 의하여 所長이 석방의 선고를 하고 본인에게 證票를 교부하여 한다.

제175조 (假出獄의 取消事由에 해당될 경우의 通報) 假出獄에 의해 석방된 자가 刑法 제2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됨을 안 때에는 所長은 그 뜻을 法務大臣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護觀察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6조 (假出所에 대한 準用) 제174조의 규정은 刑法 제30조에 의한 假出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장 死 亡

제177조 (死亡한 경우의 節次) ① 재감자가 死亡한 때에는 所長은 그 死體를 檢查하여야 한다.

② 病死한 경우에는 감옥의 醫師는 그 病名, 病歷, 死因 및 사망의 년월일시를 사망부에 기재하고 이에 署名하여야 한다.

③ 自殺 기타 變死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檢察官 및 경찰서에 통보하여 檢屍를 받고 검시자와 참여자의 官等姓名 및 檢屍의 결과를 死亡簿에 기재하여야 한다.

第178条 死亡者ノ病名，死因及ビ死亡ノ年月日時ハ速ニ之ヲ死亡者ノ親族ニ通報ス可シ死亡者刑事被告人又ハ監置ニ処セラレタル者ナルトキハ仍ホ夫々検察官又ハ裁判官ニ通報ス可シ

第179条（死体の処置） 受刑者ノ死体ハ死亡後24時間ヲ経テ交付ヲ請フ者ナキ場合ニ限リ解剖ノ為メ法務大臣ニ於テ指定シタル病院，学校又ハ公務所ニ之ヲ送付スルコトヲ得

②死亡後24時間ヲ経テ交付ヲ請フ者ナキ場合ト雖モ其後ニ至リ交付ヲ請フ者アリト思料ス可キトキ又ハ本人ガ生前ニ於テ解剖ヲ肯セサル意思ヲ表示シタルトキハ前項ノ処分ヲ為スコトヲ得ス

第180条（死亡帳の記載） 死体ヲ請求者ニ交付シ又ハ解剖ノ為メ送付シタルトキハ其旨ヲ死亡帳ニ記載ス可シ

第181条（仮葬） 死亡後24時間ヲ経テ死体ノ交付ヲ請フ者ナキトキハ第179条ノ場合ヲ除ク外之ヲ監獄ノ墓地ニ仮葬ス可シ

②火葬ニ付シタル場合ニ於テハ其遺骨ニ付キ亦同シ

③仮葬ノ場所ニハ死亡者ノ氏名及ビ死亡ノ年月日ヲ記シタル木標ヲ立ツ可シ

第182条（合葬） 死体又ハ遺骨ヲ合葬シタルトキハ合葬者ノ氏名及ビ死亡ノ年月日ヲ合葬簿ニ記載シ合葬ク場所ニハ墓標ヲ立ツ可シ

②墓標ニハ石ヲ用ウ可シ

제178조 死亡者의 病名, 死因 및 사망의 년월일시는 신속히 이를 사망자의 親族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망자가 형사피고인 또는 監置者인 때에는 다시 담당검찰관 또는 법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9조 (死體의 處理) ① 수형자의 死體는 사망후 24시간을 경과하여도 交付를 請求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解剖를 위하여 法務大臣이 지정한 병원, 학교 또는 공무소에 이를 송부할 수 있다.

② 사망후 24시간을 경과하여도 交付를 請求하는 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후에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있다고 사료될 때 또는 본인이 生前에 解剖를 긍정하지 아니하는 意思를 表示한 때에는 전항의 처분을 할 수 없다.

제180조 (死亡者의 記載) 死體를 청구자에게 交付하거나 解剖를 위하여 송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死亡帳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81조 (假葬) ① 사망후 24시간을 경과하여도 死體의 交付를 청구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제179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감옥의 墓地에 假葬하여야 한다.

② 火葬을 한 경우에는 그 遺骨에 대하여 역시 같다.

③ 假葬의 장소에는 사망자의 성명 및 사망년월일을 기록한 標識를 세워야 한다.

제182조 (合葬) ① 死體 또는 遺骨을 合葬한 때에는 합장자의 성명 및 사망년월일을 合葬簿에 기재하고 합장의 장소에는 墓標를 세워야 한다.

② 墓標는 돌을 사용해야 한다.

附　則

①本則ハ監獄法施行ノ日（明治41年10月1日）ヨリ之ヲ施行ス

②監獄則施行細則ハ之ヲ廃止ス但懲治人ニ関スル規定ハ当分ノ内仍ホ其効力ヲ有ス

附　則（昭和41．11．1 法務47）

第1条（施行期日）　この省令は，昭和42年1月1日から施行する。

第2条（独居拘禁の期間の改正に伴う経過措置）　この省令による改正後の第27条の規定は，この省令の施行の際現に独居拘禁中の者についても適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この省令の施行の日（以下「施行日」という。）においてこの省令による改正前の第27条第1項本文の規定による拘禁の期間が6月を越えている者については，その拘禁が施行日以前6月から開始されたものとみなし，同項ただし書の規定による期間の更新を受けて拘禁されている者で施行日において更新後の拘禁（2回以上更新を受けて拘禁されている者については最後の更新後の拘禁。以下同じ。）の期間が3月を越えているものについては，その更新後の拘禁が施行日以前3月から開始されたものとみなす。

附　則（昭和49．6．28 法務52）

1.　（施行期日）　この省令は，昭和49年7月1日から施行する。

2.　（経過措置）　この省令の施行前にこの省令による改正前の監獄法施行規則第156条各号に該当する行為をした者に対し，この省令の施行後に賞金を給するとき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附 則

① 이 規則은 監獄法施行日(1908년 10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② 監獄則施行細則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懲治人에 관한 규정은 당분간 계속 그 효력을 가진다.

附 則(1966년 11월 1일 법무 47)

제1조 (시행기일) 이 省令은 196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獨居拘禁 期間의 개정에 따른 經過措置) 이 省令에 의한 개정후의 제27조의 규정은 이 성령의 시행시 현재 獨居拘禁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에 이 성령의 시행일(이하'시행일'이라 한다)에 이 省令에 의한 개정전의 제2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구금기간이 6월을 초과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구금의 시행일 이전 6월부터 개시된 것으로 간주하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期間의 更新을 받고 구금되어 있는 자로서 시행일에 갱신후의 구금(2회이상 갱신을 받고 구금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최후의 갱신 후의 구금. 이하 같다)기간이 3월을 초과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갱신후의 구금이 시행일 이전 3월부터 개시된 자로 간주한다.

附 則(1974년 6월 28일 법무 52)

1. (施行期日)이 省令은 197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經過措置)이 省令의 시행전에 이 성령에 의한 개정전의 감옥법시행규칙 제156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이 성령의 시행후

3.　この省令による改正前の行刑累進処遇令第46条第1項(第51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りした許可は，この省令による改正後の監獄法施行規則第79条ノ2の規定によりした許可とみなす。

附　　則（昭和52．4．1法務24）

この省令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에 賞金을 지급할 때에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른다.

3. 이 省令에 의한 개정전의 行刑累進處遇令 제46조 제1항(제5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許可는 이 성령에 의한 개정후의 감옥법 시행규칙 제79조의 그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허가로 간주한다.

附 則(1977년 4월1일 법무 24)

이 省令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刑事施設法(案)

監獄法（明治41年法律第28号）の全部を改正する。

第1編　総　則
　第1章　通則（第1条～第9条）
　第2章　収容の開始（第10条・第11条）
　第3章　物品の貸与等及び自弁（第12条～第14条）
　第4章　保健衛生及び医療（第15条～第29条）
　第5章　宗教（第30条・第31条）
　第6章　書籍等の閲覧（第32条～第36条）
　第7章　規律及び秩序の維持（第37条～第47条）
第2編　受刑者の処遇
　第1章　通則（第48条～第56条）
　第2章　矯正処遇の実施（第57条～第62条）
　第3章　作業（第63条～第79条）
　第4章　教科指導等（第80条～第84条）
　第5章　外出及び外泊（第85条～第91条）
　第6章　面会，信書の発受等（第92条～第103条）
　第7章　被勾留受刑者等の処遇（第104条・第105条）
第3編　被勾留者の処遇
　第1章　通則（第106条～第108条）
　第2章　面会，信書の発受等（第109条～第117条）
第4編　死刑確定者等の処遇
　第1章　死刑確定者の処遇（第118条～第124条）
　第2章　各種被収容者の処遇（第125条）
第5編　雑　則
　第1章　領置（第126条～第133条）
　第2章　賞罰（第134条～第142条）
　第3章　審査の申請及び苦情の申出（第143条～第153条）
　第4章　釈放（第154条～第159条）
　第5章　死亡（第160条～第161条）
　第6章　労役場及び監置場（第162条～第165条）
　第7章　留置施設への代替収容（第166条）
　第8章　罰則（第167条～第169条）
　附　則
　理　由

刑事施設法(案)

監獄法(1908년 법률 제28호)의 전부를 개정한다.

제1편 總則
  제1장 通則(제1조～제9조)
  제2장 收容의 開始(제10조～제11조)
  제3장 物品貸與등과 自辨(제12조～제14조)
  제4장 保健衛生과 醫療(제15조～제29조)
  제5장 宗 教(제30조～제31조)
  제6장 書籍등의 閱覽(제32조～제36조)
  제7장 規律과 秩序의 維持(제37조～제47조)
제2편 受刑者의 處遇
  제1장 通則(제48조～제56조)
  제2장 矯正處遇의 實施(제57조～제62조)
  제3장 作業의 實施(제63조～제80조)
  제4장 敎科指導등(제81조～제84조)
  제5장 外出과 外泊(제85조～제91조)
  제6장 面會, 書信受發등(제92조～제103조)
  제7장 被拘束受刑者 등의 處遇(제104조～제105조)
제3편 被拘禁者의 處遇
  제1장 通則(제106조～제108조)
  제2장 面會, 書信受發등(제109조～제118조)
제4편 死刑確定者등의 處遇
  제1장 死刑確定者의 處遇(제118조～제124조)
  제2장 各種 被收容者의 處遇(제125조)
제5편 雜 則
  제1장 領 置(제126조～제133조)
  제2장 賞 罰(제134조～제142조)
  제3장 審査의 申請 및 苦衷의 申告(제143조～제153조)
  제4장 釋 放(제154조～제159조)
  제5장 死 亡(제160조～제161조)
  제6장 勞役場과 留置場(제162조～제165조)
  제7장 留置施設에의 代替收容(제166조)
  제8장 罰 則(제167조～제169조)
附則
理由

第1編　総　則

第1章　通　則

第1条（目的）　この法律は，刑事施設の適正な管理運営を図り，被収容者の人権を尊重しつつ，収容の性質に応じた適切な処遇を行うことを目的とする。

第2条（刑事施設）　刑事施設は，懲役，禁錮又は拘留の刑の執行のため拘置される者，刑事訴訟法（昭和23年法律第131号）の規定により勾留される者及び死刑の言渡しを受けて拘置される者を収容し，これらの者に対し必要な処遇を行う施設とする。

②刑事施設には，前項に規定する者を収容するほか，法令の規定により刑事施設に収容すべきこととされる者及び収容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とされる者を収容する。

第3条（定義）　この法律において，次の各号に掲げる用語の意義は，それぞれ当該各号に定めるところによる。

1．被収容者　刑事施設に収容されている者をいう。

2．受刑者　懲役，禁錮又は拘留の刑の執行のため刑事施設に拘置されている者をいう。

3．被勾留者　刑事訴訟法の規定により刑事施設に勾留されている者をいう。

4．死刑確定者　死刑の言渡しを受けて刑事施設に拘置されている者をいう。

5．各種被収容者　前条第2項の規定により刑事施設に収容されている者をいう。

第4条（被収容者の分離）　受刑者と被勾留者，死刑確定者及び各種被収容者と

제1편 總 則

제1장 通 則

제1조 (目的) 이 법률은 刑事施設의 적정한 管理運營을 도모하고 피수용자의 人權을 존중하면서 收容의 性質에 따른 적절한 處遇를 행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 (刑事施設) ① 형사시설은 懲役, 禁錮 또는 拘留刑의 執行을 위하여 拘置되는 자, 刑事訴訟法(1948년 법률 제131호)의 규정에 따라 拘束되는 자 및 死刑宣告를 받고 拘置되는 자를 수용하고 이들에 대하여 필요한 處遇를 행하는 施設로 한다

② 刑事施設에는 전항에 규정하는 자를 收容하는 외에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刑事施設에 收容하도록 되어 있는 자 및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자를 수용한다

제3조 (定義) 이 法律에서 다음 各號에 열거하는 用語의 意味는 각각 당해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被收容者 ; 형사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2. 受刑者 ;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刑의 執行을 위하여 刑事施設에 拘置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3. 被拘束者 ; 刑事訴訟法의 규정에 의하여 刑事施設에 拘束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4. 死刑確定者 ; 死刑宣告를 받고 형사시설에 拘置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각종 被收容者 ;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刑事施設에 收容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 (被收容者의 分離) ① 受刑者와 被拘束者, 死刑確定者 및 각종 被收容

は，刑事施設を別にし，又は同一の刑事施設において分離のための特別の区域を設けて各別に収容するものとする。

②被収容者は，性別，被勾留者，死刑確定者及び各種被収容者の別並びに受刑者に係る刑名の別に従い，それぞれ互いに分離するものとする。

第5条（この法律の解釈及び運用）　この法律の解釈及び運用（この法律に基づく命令の制定及び改廃並びにその解釈及び運用を含む。）は，受刑者，被勾留者，死刑確定者及び各種被収容者の別に，その収容の性質を十分に考慮してな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第6条（実地監査）　法務大臣は，この法律の施行の適正を期するため，各刑事施設について，毎年1回以上，当該職員に実地監査を行わせなければならない

第7条（意見聴取）　刑事施設の長は，その刑事施設の適正な運営に資するため必要な意見を公務所及び公私の団体の職員並びに学識経験のある者から聴くこと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第8条（視察）　裁判官及び検察官は，刑事施設を視察することができる。

第9条（参観）　刑事施設の長は，その刑事施設の参観を申し出る者がある場合において，学術の研究の目的であることその他正当な理由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これを許すことができる。

第2章　収容の開始

第10条（収容開始時の告知）刑事施設の長は，被収容者に対し，その刑事施設における収容の始めに，次に掲げる事項を告知するものとする。

者는 형사시설을 달리하거나 또는 동일한 형사시설에서 分離를 위한 特別區域을 설치하여 별도로 수용하여야 한다.

② 피수용자는 性別, 被拘束者, 死刑確定者 및 각종 피수용자별, 그리고 수형자에 관계되는 刑名別로 각각 서로 분리하여야 한다.

제5조 (이 法律의 解釋 및 運用) 이 法律의 解釋 및 運用(이 법률에 근거하는 命令의 制定과 改廢 및 그 解釋과 運用을 포함한다)은 수형자, 피구속자, 사형확정자 및 각종 피수용자별로 그 收容의 性質을 충분히 고려하여 행한다.

제6조 (實地監査) 法務大臣은 이 법률의 施行의 適正을 기하기 위하여 각 刑事施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당해 직원에게 實地監査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 (意見聽取) 刑事施設의 장은 그 형사시설의 적정한 運用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意見을 公務所 및 公·私 團體의 직원, 그리고 學識과 經驗이 있는 자로부터 聽取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視察) 法官과 檢査는 형사시설을 視察할 수 있다.

제9조 (參觀) 刑事施設의 長은 그 형사시설의 參觀을 申請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學術研究의 目的 기타 정당한 理由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許可할 수 있다

제2장 收容의 開始

제10조 (收容開始時의 告知) ① 刑事施設의 長은 被收容者에 대하여서 그 형사시설에서의 收容初期에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告知하여야 한다.

1．物品の貸与等及び自弁に関する事項

2．保健衛生及び医療に関する事項

3．宗教に関する事項

4．第32条に規定する書籍等の閲覧に関する事項

5．第38条第1項に規定する遵守事項

6．面会及び信書の発受に関する事項

7．懲罰に関する事項

8．審査の申請を行うことができる措置，審査の申請についての審査庁及び審査の申請を行うことができる期間その他の審査の申請に関する事項

9．苦情の申出に関する事項

②前項の規定による告知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書面で行う。

第11条（写真撮影等）刑事施設の長その他の刑事施設の職員は，被収容者につき，その刑事施設における収容の始めに，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者の識別のため必要な限度で，写真の撮影，指紋の採取その他の措置を執るものとする。その後必要が生じたときも，同様とする。

第3章　物品の貸与等及び自弁

第12条（物品の貸与等の原則）被収容者には，刑事施設における日常生活のため必要な衣類及び寝具を貸与し，並びに食事及び湯茶を支給する。

②被収容には，前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日用品，筆記具その他の刑事施設における日常生活のため必要な物品（第32条に規定する書籍等を除く。第14条において同じ。）を貸与し，又は支給する。

③被収容者には，前二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必要に応じ，室内装飾品を貸与し，及びし好品（酒類を除く。以下同じ。）を支給することができる。

1. 물품의 貸與 등과 自辨에 관한 사항
2. 保健衛生과 醫療에 관한 사항
3. 宗教에 관한 사항
4. 제32조에 규정하는 書籍 등의 閱覧에 관한 사항
5. 제3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준수사항
6. 接見 및 書信의 受發에 관한 사항
7. 懲罰에 관한 사항
8. 審査의 申請을 행할 수 있는 措置, 심사의 신청에 대한 審査聽 및 심사의 신청을 행할 수 있는 期間, 기타 심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
9. 苦衷의 申告에 관한 사항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告知는 法務省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書面으로 행한다.

제11조 (寫眞撮影 등) 刑事施設의 長 또는 그 職員은 被收容者에 대해서 그 형사시설에 收容할 初期에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의 識別을 위해 필요한 한도내에서 寫眞撮影, 指紋採取 기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후 필요가 발생한 때에도 동일하다

제3장 物品貸與 등과 自辨

제12조 (物品貸與 등의 原則) ① 被收容者에게는 형사시설에서의 日常生活을 위하여 필요한 衣類와 寢具를 貸與하며, 식사와 끓인 물과 茶를 지급한다.

② 被收容者에게는 전항에 정하는 것 이외에 日用品, 筆器具 기타 刑事施設에의 日常生活을 위하여 필요한 物品(제32조에 규정하는 서적 등을 제외한다. 제14조에 있어서도 같다)을 貸與하거나 支給한다.

③ 被收容者에게는 전 2항에 정하는 것 외에 法務省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에 따라 室內裝飾品을 대여하고, 또 기호품(酒類를 제외한다. 이하 동

④被収容者は，この法律その他の法令に特別の定めがある場合を除き，前３項の規定により貸与され，又は支給された物品以外の物品を使用し，又は摂取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13条（物品の貸与等の基準）前条第１項又は第２項の規定により貸与し，又は支給する物品は，被収容者の健康を保持するに足り，かつ，国民生活の実情等を勘案し，被収容者としての地位に照らして，適正と認められ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第14条（自弁の物品の使用等）刑事施設の長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受刑者に対し，その者の改善更生に資することとなる場合には，次に掲げる物品について，自弁のものを使用し，又は摂取することを許すことができる。

１．衣類

２．食料品及び飲料

３．日用品，文房具その他の刑事施設における日常生活に用いる物品

４．室内装飾品

５．し好品

②刑事施設の長は，受刑者以外の被収容者が衣類及び寝具並びに次に掲げる物品で法務省令で定める品目のものについて，自弁のものを使用し，又は摂取することを申請した場合には，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の維持その他管理運営上支障がない限り，これを許すものとする。

１．食料品及び飲料

２．日用品，文房具その他の刑事施設における日常生活に用いる物品

３．室内装飾品

４．し好品

일)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피수용자는 이 法律 기타의 法令에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3항의 규정에 의해 貸與하거나 支給한 물품 이외의 물품을 사용하거나 섭취할 수 없다.

제13조 (物品貸與 등의 基準) 전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貸與하거나 支給하는 물품은 被收容者의 健康을 유지하는데 족하고, 또 國民生活의 實情 등을 감안하여 피수용자로서의 地位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제14조 (自辨物品의 使用 등) ①刑事施設의 長은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受刑者에 대하여 그자의 改善更生에 도움이 될 경우에는 다음 물품에 대한 自辨物品 사용 또는 섭취를 허가할 수 있다.

1. 의류
2. 식료품과 음료
3. 일용품, 문방구 기타 형사시설에서의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물품
4. 실내 장식품
5. 기호품

② 刑事施設의 長은 受刑者 이외의 被收容者가 衣類와 寢具 및 다음에 열거하는 물품 중 法務省令으로 정하는 品目에 대하여 自辨物品의 사용 또는 섭취를 신청한 경우에는 형사시설의 規律 및 秩序의 維持 기타 管理運用上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식료품과 음료
2. 일용품, 문방구 기타 형사시설에서의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물품
3. 실내 장식품
4. 기호품

第4章　保健衛生及び医療

第15条（保健衛生及び医療の原則）刑事施設においては，被収容者の心身の状況を把握することに努め，被収容者の健康及び刑事施設内の衛生を保持するため適切な保健衛生上又は医療上の措置を講ずるものとする。

第16条（運動）被収容者には，できる限り戸外で，その健康を保持するため適切な運動を行う機会を与えなければならない。

第17条（被収容者の清潔義務）被収容者は，身体，着衣及び所持品並びに居室（被収容者が主として休息し，及び就寝するために使用する室をいう。以下同じ。）その他日常使用する場所を清潔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18条（入浴）被収容者に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刑事施設における保健衛生上適切な入浴を行わせる。

第19条（調髪及びひげそり）受刑者に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調髪及びひげそりを行わせる。

②受刑者以外の被収容者には，その者の申出がある場合又は刑事施設内の衛生に支障がある場合に，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調髪及びひげそりを行わせる。

第20条（健康診断）刑事施設の長は，被収容者がその刑事施設に収容された後速やかに，その者の健康診断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②刑事施設においては，毎年1回以上定期に，被収容者の健康診断を行うものとする。刑事施設における保健衛生上必要があるときも，同様とする。

③被収容者は，前二項の規定による健康診断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は，その健康診断の実施のため必要な限度内における採血，エック

제4장 保健衛生과 醫療

제15조 (保健衛生과 醫療의 原則) 刑事施設에서는 피수용자의 心身狀況을 파악하는 데에 노력하고, 피수용자의 健康 및 형사시설내의 衛生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保健衛生上 또는 醫療上의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 (運動) 被收容者에게는 그 健康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屋外에서 적절한 運動을 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제17조 (被收容者의 淸潔義務) 피수용자는 身體, 衣類와 所持品 및 居室(피수용자가 주로 휴식하고 취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타 日常 사용하는 장소를 청결히 하여야 한다.

제18조 (沐浴) 피수용자에게는 法務省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刑事施設에서 保健衛生上 적절한 沐浴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19조 (理髮과 面刀) ① 受刑者에게는 法務省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理髮과 面刀를 하게 한다.

② 受刑者 이외의 被收用者에게는 그 자의 申請이 있는 경우 또는 형사시설내의 衛生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法務省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발과 면도를 하게 한다.

제20조 (健康診斷) ① 刑事施設의 長은 피수용자가 그 刑事施設에 수용된 후 신속히 그 자의 健康診斷을 행하여야 한다.

② 刑事施設에서는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被收容者의 健康診斷을 행하여야 한다. 형사시설에서의 保健衛生上 필요한 때에도 같다.

③ 被收容者는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健康診斷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의 採血, 엑스선 촬영 기타의 醫

ス線撮影その他の医学的処置を拒むことはできない。

第21条（伝染病予防上の措置等）刑事施設の長又はその指示を受けた職員は，刑事施設内における伝染性の疾病の発生を予防し，又はそのまん延を防止するため緊急の必要がある場合その他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には，被収容者に対する健康診断又は予防接種，伝染性の疾病にかかつており，又はかかつている疑いがある被収容者の診療，当該疾病を伝染させるおそれがなくなるまで間の被収容者の隔離その他法務省令で定める措置を執ることができる。

第22条（診療）刑事施設の長は，被収容者が負傷し，若しくは疾病にかかつた場合又はこれらの疑いがある場合には，速やかに，刑事施設の職員である医師又は歯科医師（以下「医師等」という。）による診療を行う。

②刑事施設の長は，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傷病の種類，程度等に応じ必要と認めたときは，刑事施設の職員でない医師等による診療を行うことができる。

第23条（医療上の特別処置）刑事施設の長は，被収容者が診療を拒む場合又は飲食物を摂取しない場合において，その生命に危険が及ぶおそれがあるときはその者に対し，医師等による診療又は栄養補給の処置を受けさせることができる。

第24条（入院その他診療上の特別措置）刑事施設の長は，前二条の規定により刑事施設の職員でない医師等による診療を行う場合には，必要に応じ，被収容者を刑事施設の外の病院又は診療所に通院させ，やむを得ないときは，刑事施設の外の病院又は診療所に一時入院させるものとする。

②刑事施設の長は，刑事施設において診療を行う場合には，被収容者の傷病の程度に応じ，病室（傷病者の治療又は療養のための特別の居室をいう。以下同じ。）での処遇その他の法務省令で定める措置を執ることができる。

學的 處置를 거부할 수 없다.

제21조 (傳染病 豫防上의 措置 등) 刑事施設의 長 또는 그 指示를 받은 職員은 형사시설내에서의 傳染性 疾病의 발생을 豫防하거나 그 만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기타 法務省令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피수용자에 대한 健康診斷 또는 豫防接種, 傳染性 疾病에 걸려 있거나 걸려 있다는 疑心이 있는 피수용자의 診療, 당해 질병을 전염시킬 우려가 없을 때까지 피수용자의 隔離 기타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2조 (診療) ①刑事施設의 長은 피수용자가 負傷을 당하거나 疾病에 걸린 경우 또는 그러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刑事施設의 직원인 醫師 또는 齒科醫師(이하'의사 등'이라 한다)에 의한 진료를 행한다.

② 刑事施設의 長은 전항에 규정하는 경우에 傷病의 種類, 程度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형사시설의 職員이 아닌 醫師 등에 의한 治療를 행할 수 있다.

제23조 (醫療上의 特別措置) 刑事施設의 장은 피수용자가 診療를 拒否하는 경우 또는 飮食物을 섭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生命에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醫師 등에 의한 診療 또는 營養補給의 處置를 받게 할 수 있다.

제24조 (入院 기타 診療上의 特別措置) ① 刑事施設의 長은 전 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시설의 職員이 아닌 醫師 등에 의한 診療를 행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被收容者를 형사시설 이외의 病院 또는 診療所에 通院시키고 부득이한 때에는 형사시설 외의 병원 또는 진료소에 일시 입원시켜야 한다.

② 형사시설의 장은 刑事施設에서 診療를 행하는 경우에는 피수용자의 傷病의 程度에 따라 病室(상병자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특별한 거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處遇 기타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第25条（指名医による診療） 刑事施設の長は，負傷し，又は疾病にかかつた被収容者が，刑事施設の職員でない医師等を指名して，その診療を受けることを申請した場合において，傷病の種類及び程度，刑事施設に収容される前にその医師等による診療を受けていたことその他の事情に照らして，その被収容者の医療上適当であると認めるときは，刑事施設内において，自弁によりその診療を受けることを許すことができる。

②刑事施設の長は，前項の規定による診療を受けることを許す場合において，指名による診療を行う医師等（以下「指名医」という。）の診療方法を確認するため，又はその後にその被収容者に対して刑事施設において診療を行う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刑事施設の職員である医師等をその診療に立ち会わせ，刑事施設の職員である医師等にその診療に関して質問させ，又は診療録の写しその他のその診療に関する資料の提出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③第1項の規定により診療を行う指名医は，その診療に際し，法務省令で定める基準に従い刑事施設の長が指示する事項を遵守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④刑事施設の長は，第1項の規定による診療を受けることを許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指名医が第2項の規定により刑事施設の長が行う措置に従わないとき，前項の規定により刑事施設の長が指示する事項を遵守しないとき，その他診療を継続することが不適当であるときは，これを中止し，以後，その指名医の診療を受けることを許さないことができる。

第26条（出産） 被収容者が出産するときは，刑事施設の外の病院，診療所又は助産所に一時入院させるものとする。ただし，やむを得ない理由により入院させ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には，刑事施設内の病室をその出産のために使用する

第27条（子の養育） 刑事施設の長は，女子の被収容者がその子を刑事施設内で養育することを希望する旨の申出をした場合において，相当と認めるときは，その子が満一歳に達するまで，これを許すことができる。

②刑事施設の長は，前項の規定により刑事施設内で養育されている子が満一歳に達した際，その子の養育をしている被収容者が引き続いて養育することを申

제25조 (指名醫에 의한 診療) ① 형사시설의 장은 負傷을 당하거나 疾病에 걸린 被收容者가 형사시설의 職員이 아닌 醫師 등을 指名하여 그 진료를 신청한 경우에 傷病의 種類 및 程度, 형사시설에 收容되기 前 醫師 등에 의한 진료를 받았던 사실, 기타 사정에 비추어 그 피수용자의 醫療上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형사시설내에서 自辨에 의한 診療를 許可할 수 있다.

② 刑事施設의 長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診療를 許可하는 경우에 指名에 의한 診療를 행하는 醫師 등(이하'指名醫 '라 한다)의 진료방법을 확인하기 위하여 또는 그후에 그 被收容者에 대하여 刑事施設에서 診療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는 때에는 형사시설의 職員인 醫師 등을 그 진료에 참여시키고, 형사시설의 직원인 醫師 등에게 그 診療에 관하여 質問하게 하거나 診療錄의 寫本 기타 그 진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診療를 행하는 指名醫는 그 진료시에 法務省令으로 정하는 基準에 따라 형사시설의 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刑事施設의 長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診療를 許可한 경우에 그 指名醫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사시설의 장이 행하는 措置에 따르지 아니할 때,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刑事施設의 長이 指示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기타 診療를 계속하는 것이 不適當한 때에는 이를 중지하고, 이후 그 指名醫의 진료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 (出産) 被收容者가 出産할 때에는 형사시설 외의 病院, 診療所 또는 助産所에 一時 入院시켜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入院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出産을 위하여 刑事施設 내의 病室을 사용한다.

제27조 (子女의 養育) ① 刑事施設의 長은 女子인 被收容者가 그 子女를 형사시설 내에서 養育하기를 希望하는 趣旨의 신청을 한 경우에 상당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그 자녀가 만 1세에 달할 때까지 이를 許可할 수 있다.

② 刑事施設의 長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시설내에서 養育되고 있는 子女가 만 1세에 달하고 그 자녀를 양육하는 被收容者가 계속 양육할 것을 신청

し出た場合において，その被収容者の心身の状況に照らして，又はその子を養育する上で，特に必要があるときは，引き続き6月間に限り，これを許すことができる。

③前2項の規定により許されて子の養育をしている被収容者に対しては，その子の養育に必要な物品の貸与又は支給，医療上の措置その他の措置を執るものとし，その子の養育上適当と認める場合には，自弁の物品を使用し，摂取し，又はその子に摂取させることを許すことができる。

第28条（養護のための特別処遇）刑事施設の長は，老人，妊産婦，身体虚弱者その他養護を必要とする被収容者について，その養護を必要とする事情に応じ，病室での処遇その他傷病者のための措置に準じた措置を執ることができる。

第29条（法務省令への委任）この章に定めるもののほか，被収容者の運動及び健康診断の実施に関し必要な事項，被収容者の診療及び出産に関し必要な事項並びに第27条第1項及び第2項に規定する子の養育（引渡しを含む。）に関し必要な措置並びにその子を養育する被収容者の自弁の物品の許可の範囲は法務省令で定める。

第5章　宗　　教

第30条（自ら行う宗教上の行為）刑事施設内において被収容者が自ら個別に行う礼拝その他の宗教上の行為は，これを禁止し，又は制限す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の維持その他管理運営上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第31条（宗教上の儀式行事及び宗教教誨）刑事施設の長は，被収容者が民間の篤志家である宗教家の行う説教，礼拝その他の宗教上の儀式行事に参加し，又

한 경우에 그 被收容者의 心身狀況에 비추어 또는 그 자녀를 양육함에 특히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속하여 6월이내의 기간동안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되어 子女의 養育하는 被收容者에 대하여는 그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물품의 貸與 또는 支給, 醫療上 措置 및 기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자녀의 養育上 적당하다고 認定될 경우에는 自辨物品의 사용, 攝取 또는 그 자녀에의 섭취를 허가할 수 있다.

제28조 (養護를 위한 特別處遇) 형사시설의 장은 老人, 妊産婦, 身體虛弱者 기타 養護를 필요로 하는 피수용자에 대하여 그 양호를 필요로 하는 사정에 따라 病室에서의 處遇, 기타 傷病者를 위한 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9조 (法務省令에의 委任) 이 장에 정하는 것 이외에 被收容者의 운동 및 健康診斷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피수용자의 診療 및 出産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제27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子女의 養育(引渡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및 양육하는 피수용자의 自辨物品의 허가범위는 法務省令으로 정한다.

제5장 宗 教

제30조 (스스로 행하는 宗教上의 行爲) 형사시설내에서 被收容者 자신이 개별적으로 행하는 禮拜 기타의 宗教的 行爲는 이를 禁止하거나 制限할 수 없다. 그러나 형사시설의 規律 및 秩序의 維持 기타 管理運營上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1조 (宗教上의 儀式行事 및 宗教教誨) ① 형사시설의 장은 被收容者가 民間篤志家인 宗教家가 행하는 宗教教誨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機會(被拘

はその宗教家の行う宗教教誨を個別に受けることができる機会(被勾留者又は各種被収容者にあつては,宗教教誨を個別に受けることができる機会に限る。)を設けるよう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②刑事施設の長は,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の維持その他管理運営上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場合(被勾留者又は各種被収容者にあつては,罪証の隠滅の防止上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場合を含む。)には,被収容者を前項に規定する宗教上の儀式行事に参加させず,又はその者に同項に規定する宗教教誨を受けさせないことができる。

第6章　書籍等の閲覧

第32条(書籍等の閲覧) 被収容者が書籍,雑誌,新聞紙その他の文書図画(以下「書籍等」という。)であつてその自弁に係るものを閲覧することは,この章及び第5編第2章の規定によるほか,これを禁止し,又は制限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33条 刑事施設の長は,被収容者がその自弁に係る書籍等を閲覧することにより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こととなる場合には,その書籍等の閲覧を禁止することができる。

1. 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害する結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き。
2. 受刑者にあつては,第48条第2項に規定する矯正処遇の適切な実施に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き。
3. 被勾留者にあつては,罪証の隠滅の結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き。

第34条(外国語の書籍等) 被収容者の外国語による書籍等について前条に規定する閲覧を禁止すべき事由の有無を確認するためこれを翻訳に付する場合に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被収容者に費用を負担させ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被収容者がその費用を負担しないときは,その書籍等の閲覧を禁止する。

束者 또는 각종 被收容者에 있어서는 宗教教誨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에 한한다)를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刑事施設의 長은 형사시설의 規律 및 秩序의 維持 기타 관리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被拘束者 또는 각종 被收容者에 있어서는 罪證湮滅의 防止上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피수용자를 전항에 규정하는 종교상의 儀式行使에 참가시키지 아니하거나 그 자에게 동항에 규정하는 宗教教誨를 받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書籍 등의 閲覧

제32조 (書籍 등의 閲覧) 피수용자가 그 自辨에 의한 서적, 잡지, 신문지 기타 문서·도화 (이하 '書籍 등 '이라 한다)를 閲覧하는 것은 이 장 및 제5편 제2장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제33조 형사시설의 장은 被收容者가 그 自辨에 의한 書籍 등을 閲覧함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서적 등의 열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형사시설의 規律 및 秩序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 受刑者에 있어서는 제48조 제2항에 규정하는 矯正處遇의 적절한 實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3. 被拘束者에 있어서는 罪證湮滅의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제34조 (外國語 書籍 등) 被收容者의 외국어로 된 書籍 등에 대하여 前條에 규정하는 閲覧을 禁止해야 할 事由의 有無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번역하는 경우에는 法務省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피수용자에게 費用을 負擔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피수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書籍 등의 閲覧을 금지한다.

第35条（書籍等の取扱い）刑事施設の長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被収容者が居室で所持することができる自弁に係る書籍等の個数，被収容者が取得することができる定期発行の雑誌及び新聞紙にあつては，その種類，取得方法及び閲覧後の措置その他被収容者の書籍等の取扱いについて，刑事施設の管理運営上必要な制限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36条（時事の報道に接する機会の付与等）刑事施設の長は，被収容者に対し刑事施設に備え付けた日刊新聞紙の閲覧，刑事施設において管理するラジオ受信機による放送の聴取その他の方法によつて，できる限り，主要な時事の報道に接する機会を与え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②第55条，第108条第4項又は第119条第4項の規定による読書の援助その他被収容者の読書の便に供するための措置として，刑事施設に書籍等を備え付けるよう努めるもの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備え付ける書籍等の種類，閲覧の方法その他備え付ける書籍等に関し必要な事項は，法務省令で定める。

第7章　規律及び秩序の維持

第37条（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は，厳正に維持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②前項の目的を達成するためこの章の規定により執る措置は，被収容者の収容を確保し，並びにその処遇のための適切な環境及びその安全かつ平穏な共同生活を維持するため必要な限度を超えてはならない。

第38条（遵守事項等）刑事施設の長は，法務省令で定める基準に従い，被収容者としての地位の別に，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維持するため必要な被収容者の遵守すべき事項（以下「遵守事項」という。）を定める。

제135조 (書籍 등의 取扱) 刑事施設의 長은 法務省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被收容者가 居室에서 所持할 수 있는 自辨에 의한 書籍 등의 個数, 피수용자가 취득할 수 있는 定期發行雜誌 및 新聞紙에 있어서는 그 종류, 취득방법 및 열람 후의 조치 기타 피수용자의 서적 등의 취급에 대하여 刑事施設의 管理運營上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제136조 (時事報道에 접할 機會의 附與 등) ① 刑事施設의 長은 被收容者에 대하여 형사시설에 비치한 日刊新聞의 열람, 형사시설에서 관리하는 라디오 受信器에 의한 방송청취 기타 방법에 의하여 가능한 한 주요한 時事의 報道에 접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55조, 제108조 제4항 또는 제1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讀書의 援助 기타 피수용자의 讀書의 便宜에 提供하기 위한 조치로서 刑事施設에 書籍 등을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비치하는 書籍 등의 種類, 閱覽의 방법 기타 비치하는 서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法務省令으로 정한다.

제7장 規律과 秩序의 維持

제137조 (刑事施設의 規律 및 秩序) ① 刑事施設의 規律과 秩序는 엄정히 유지되어야 한다.

② 전항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취하는 조치는 피수용자의 收容을 確保하고, 處遇를 위한 적절한 環境 및 안전하고 평온한 共同生活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제138조 (遵守事項 등) ① 刑事施設의 長은 法務省令으로 정하는 基準에 따라 被收容者로서의 地位別로 형사시설의 規律과 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피수용자가 遵守해야 할 事項(이하 '준수사항'이라 한다)을 정한다.

②전항 외에 刑事施設의 長 또는 그가 指定하는 職員은 형사시설의 規律 및 秩

②前項のほか，刑事施設の長又はその指定する職員は，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維持するため必要がある場合には，被収容者に対し，その生活及び行動について指示することができる。

第39条（身体の検査等）刑事施設の長その他の刑事施設の職員のうち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法務大臣が特に指定する者（以下「刑務官」という。）は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維持するため必要がある場合には，被収容者の身体着衣，所持品及び居室を検査し，並びに被収容者の所持品を取り上げて一時保管することができる。

②刑務官は，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維持するため必要がある場合には，刑事施設内において被収容者以外の者（弁護人又は刑事訴訟法第39条第1項に規定する弁護人となろうとする者（以下「弁護人等」という。）を除く。）の着衣及び携帯品を検査することができる。

③前2項の検査は，文書図画の内容の検査に及んではならない。

④女子の身体及び着衣の検査は，女子の刑務官が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刑事施設の長がやむを得ないと認める場合には，刑事施設の長の指名する女子の職員が，男子の刑務官の指揮の下に，その検査を行うことができる。

第40条（隔離）刑事施設の長は，受刑者である被収容者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その者を他の被収容者から隔離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その者の居室は単独室とし，その者の処遇は，運動，入浴又は面会の場合その他の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を除き，昼夜，居室において行う。

1．逃走するおそれがあるとき。

2．他の被収容者と接触することにより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害するおそれがあるとき。

②受刑者である被収容者が他の被収容者から危害を加えられるおそれがあり，これを避けるために他に方法がないときも，前項と同様とする。

③前2項の規定による隔離の期間は，3月とする。ただし，特に継続の必要がある場合には，刑事施設の長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1月ごとにこれを更新することができる。

序를 維持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피수용자에 대하여 그 生活 및 行動에 대하여 指示할 수 있다.

제39조 (身體檢査 등) ① 刑事施設의 長 기타 형사시설의 職員 중 法務省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法務大臣이 특히 指定하는 자(이하'刑務官'이라 한다)는 형사시설의 規律 및 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피수용자의 身體, 衣類, 所持品 및 居室을 檢査하고, 또 피수용자의 所持品을 押收하여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② 刑務官은 형사시설의 規律 및 秩序를 維持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형사시설 내에서 被收容者 이외의 자<辯護人 또는 형사소송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이하 '변호인 등'이라 한다)를 제외한다>의 衣類 및 携帶品을 檢査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검사는 문서·도화의 내용의 검사에 미쳐서는 아니된다.

④ 女子의 身體 및 衣類의 검사는 女子刑務官이 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刑事施設의 長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刑事施設의 長이 指名하는 여자 직원이 男子刑務官의 指揮下에 그 검사를 행할 수 있다.

제40조 (隔離) ① 刑事施設의 長은 受刑者인 피수용자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다른 피수용자로부터 隔離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자의 居室은 單獨室로 하고 그 자의 處遇는 운동, 목욕 또는 접견의 경우, 기타 法務省令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晝夜로 거실에서 행한다.

1. 逃走할 우려가 있는 때
2. 다른 피수용자와 접촉함으로써 刑事施設의 規律 및 秩序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② 受刑者인 被收容者가 다른 피수용자로부터 危害를 당할 우려가 있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달리 방법이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隔離期間은 3월로 한다. 그러나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刑事施設의 長이 法務省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월마다 이를 更新할 수 있다.

④刑事施設の長は，前項の期間中であつても，第1項又は第2項の規定による隔離の必要がなくなつたときは，直ちにその隔離を中止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41条（制止等の措置）刑務官は，被収容者が自己若しくは他人に危害を加え，逃走し，刑事施設の職員の職務の執行を妨げ，その他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著しく害する行為をし，又はこれらの行為をしようとする場合には，合理的に必要と判断される限度で，その行為を制止し，その被収容者を拘束し，その他その行為を抑止するための措置を執ることができる。

②刑務官は，被収容者以外の者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合理的に必要と判断される限度で，その行為を制止し，その行為をする者を拘束し，その他その行為を抑止するための措置を執ることができる。

1．刑事施設に侵入し，その設備を損壊し，被収容者の看守若しくは護送を妨げ，又はこれらの行為をまさにしようとするとき。

2．刑務官の要求を受けたのに刑事施設から退去しないとき。

3．被収容者の逃走又は刑事施設の職員の職務執行の妨害を，現場で，援助しあおり，又は唆すとき。

4．被収容者に危害を加え，又はまさに加えようとするとき。

③前2項の措置に必要な警備用具については，法務省令で定める。

第42条（捕縄，手錠，拘束台及び防声具の使用）被収容者に対しては，この条及び次条に定めるところにより，法務省令で定める捕縄，手錠，拘束台及び防声具を使用することができる。

②刑務官は，被収容者を護送する場合又は被収容者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の行為をするおそれがある場合に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捕縄又は手錠を使用することができる。

1．逃走すること。

2．自己又は他人に危害を加えること。

3．刑事施設の設備、器具その他の物を損壊すること。

④ 형사시설의 장은 전항의 기간 중이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격리의 필요가 없어진 때는 즉시 그 격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41조 (制止 등의 措置) ① 刑務官은 피수용자가 自己 또는 他人에게 危害를 가하고, 도주하고, 형사시설직원의 職務遂行을 방해하며, 기타 형사시설의 規律 및 秩序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이들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合理的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내에서 그 행위를 制止하고 그 피수용자를 拘束하거나 기타 그 행위를 抑止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刑務官은 피수용자 이외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合理的으로 필요하다고 判斷되는 한도내에서 그 행위를 制止하고, 그 행위를 하는 자를 拘束하거나 기타 그 행위를 抑止하기 위한 措置를 취할 수 있다.

1. 형사시설에 侵入하여 그 設備를 損壞하고 피수용자의 간看守 또는 護送을 防害하거나 이들 행위를 하려고 할 때
2. 刑務官의 要求를 받았음에도 형사시설로부터 退去하지 아니할 때
3. 피수용자의 逃走 또는 형사시설 직원의 職務執行 防害를 현장에서 援助하고 煽動하거나 敎唆할 때
4. 피수용자에게 危害를 加하거나 또는 가하려고 할 때

③ 전 2항의 조치에 필요한 警備用具에 대하여는 法務省令으로 정한다.

제42조 (捕繩, 手匣, 拘束台 및 防聲具의 使用) ① 被收容者에 대하여는 본조 및 다음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法務省令으로 정하는 捕繩, 手匣, 拘束台 및 防聲具를 사용할 수 있다.

② 刑務官은 被收容者를 護送할 때 또는 피수용자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法務省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捕繩 또는 手匣을 사용할 수 있다.

1. 도주함.
2. 자기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함.
3. 형사시설의 설비, 기구 기타 물건을 손괴함.

③刑事施設の長は，被収容者が刑事施設内にあつて自己に危害を加えるおそれがある場合において，他にこれを防止する手段がないときは，刑務官に，拘束台を使用させることができる。

④刑事施設の長は，被収容者が刑務官の制止に従わず大声を発し続けて，刑事施設内の平穏な共同生活を乱し，その他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害する場合において，他にこれを抑止する手段がないときは，刑務官に，防声具を使用させ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防声具を効果的に使用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捕縄又は手錠を同時に使用させることができる。

⑤拘束台は，捕縄，手錠又は防声具と同時に使用してはならない。

⑥拘束台及び防声具の使用の期間は，3時間を超えてはならない。ただし，拘束台については，刑事施設の長は，特に継続の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使用の期間が通じて12時間を超えない範囲内で，これを延長することができる。

⑦第3項又は第4項の規定により被収容者に対し拘束台又は防声具を使用した場合には，刑事施設の長は，速やかに，その被収容者の健康状態について，刑事施設の職員である医師の意見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⑧前項の規定は，第6項ただし書の規定により拘束台の使用の期間を延長する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前項中「速やかに」とあるのは，「その延長の際及びそれ以後3時間ごとに」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43条（保護室への収容）刑事施設の長は，被収容者が自己に危害を加えるおそれがあるとき，被収容者が逃走するおそれがある場合において他にこれを防止する手段がないとき，又は被収容者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おいて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維持するため特に必要があるときは，刑務官に，その者を保護室に収容させることができる。

1．刑務官の制止に従わず，大声又は騒音を発するとき。

2．他人に危害を加えるおそれがあるとき。

3．刑事施設の設備，器具その他の物を損壊するおそれがあるとき。

②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刑事施設の長の命令を受けるいとまがないときは，刑務官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自らその被収容者を保護室に収容することができる。

③ 刑事施設의 長은 피수용자가 형사시설에서 自身에게 危害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달리 이를 防止할 手段이 없는 때에는 刑務官에게 拘束台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형사시설의 장은 피수용자가 刑務官의 制止에 따르지 아니하고 큰소리를 계속 발하여 형사시설내의 평온한 共同生活을 어지럽히고 기타 형사시설의 規律 및 秩序를 해치는 경우에 달리 이를 抑止할 手段이 없는 때에는 刑務官에게 防聲具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防聲具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는 때에는 捕繩 또는 手匣을 동시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拘束台는 포승, 수갑 또는 방성구와 동시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拘束台 및 防聲具의 使用期間은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구속대에 대하여는 刑事施設의 長이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使用期間이 모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延長할 수 있다.

⑦ 제5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被收容者에게 拘束台 또는 防聲具를 사용한 경우에는 刑事施設의 長은 신속히 그 피수용자의 健康狀態에 대하여 형사시설의 직원인 醫師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⑧ 전항의 규정은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拘束台의 使用期間을 연장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전항 중 '迅速히'라는 문구는 '그 延長時 및 그 이후 3시간마다'로 바꾸어 읽는다.

제43조 (保護室 收容) ① 刑事施設의 長은 피수용자가 自己에게 危害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 피수용자가 逃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달리 이를 防止할 手段이 없는 때, 또는 피수용자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경우에 刑事施設의 規律 및 秩序를 維持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가 있는 때에는 刑務官으로 하여금 그 자를 保護室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1. 刑務官의 制止에 따르지 아니하고 大聲 또는 騷音을 발하는 때
2. 타인에게 危害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
3. 형사시설의 設備, 器具 기타의 물건을 損壞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전항의 경우에 刑事施設의 長의 命令을 받을 틈이 없는 때에는 刑務官은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피수용자를 保護室에 收容할 수 있다.

③保護室における収容の期間は，５日とする。ただし，特に継続の必要がある場合には，刑事施設の長は，３日ごとにこれを更新することができる。

④刑事施設の長は，前項の期間中であつても，収容の必要がなくなつたときは直ちにその収容を中止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⑤第１項又は第２項の規定により被収容者を保護室に収容した場合には，刑事施設の長は，速やかに，その被収容者の健康状態について，刑事施設の職員である医師の意見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⑥前項の規定は，第３項ただし書の規定により保護室における収容の期間を更新する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前項中「速やかに」とあるのは，「その際に」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⑦保護室に収容されている者に対しては，拘束台又は防声具を使用してはならない。

⑧保護室の構造及び設備の基準は，法務省令で定める。

第44条（武器の携帯及び使用）刑務官は，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に限り，小型武器を携帯することができる。

②刑務官は，被収容者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事態に応じ合理的に必要と判断される限度で，武器を使用することができる。

１．暴動を起こし，又はまさに起こそうとするとき。

２．他人に重大な危害を加え，又はまさに加えようとするとき。

３．凶器を携帯し，刑務官が放棄を命じたのに，これに従わないとき。

４．刑務官の制止に従わず，又は刑務官に対し暴行若しくは団結による威力を用いて，逃走し，若しくは逃走しようとし，又は他の被収容者の逃走を助けるとき。

③刑務官は，被収容者以外の者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事態に応じ合理的に必要と判断される限度で，武器を使用することができる。

１．銃器，爆発物その他の凶器を携帯し，又は使用して，刑事施設に侵入し，若しくは刑事施設の設備を損壊し，又はこれらの行為をまさにしようとするとき。

③ 保護室에의 收容期間은 5일로 한다. 그러나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刑事施設의 長은 3일마다 이를 更新할 수 있다.

④ 형사시설의 장은 전항의 期間 중이더라도 收容의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즉시 그 收容을 中止해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被收容者를 保護室로 收容한 경우에는 刑事施設의 長은 신속히 그 피수용자의 健康狀態에 관하여 형사시설의 직원인 醫師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⑥ 전항의 규정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保護室에의 收容期間을 更新하는 경우에 대하여 準用한다. 이 경우에 전항 중 '迅速히'라는 文句는 '그 때에'로 바꾸어 읽는다.

⑦ 保護室에 수용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拘束台 또는 防聲具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⑧ 보호실의 構造 및 設備의 基準은 법무성령으로 정한다.

제44조 (武器의 携帶 및 使用) ① 刑務官을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小形武器를 携帶할 수 있다.

② 刑務官은 피수용자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事態에 따라 合理的으로 필요하다고 判斷되는 한도내에서 武器를 사용할 수 있다.

1. 폭동을 일으키거나 일으키려고 할 때
2. 他人에게 중대한 危害를 加하거나 가하려고 할 때
3. 凶器를 휴대하고 刑務官이 버릴 것을 命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
4. 刑務官의 制止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형무관에게 暴行 또는 團結에 의한 威力을 사용하여 逃走 또는 도주하려고 하거나 다른 피수용자의 도주를 돕는 때

③ 刑務官은 被收容者 이외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事態에 따라 合理的으로 필요하다고 判斷되는 한도내에서 武器를 사용할 수 있다.

1. 銃器, 爆發物 기타 凶器를 휴대하거나 사용하여 刑事施設에 侵入하거나 또는 형사시설의 設備를 損壞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하려고 할 때

2．被収容者が暴動を起こし，又はまさに起こそうと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現場で，これらに参加し，又はこれらを援助するとき。

3．暴行又は脅迫を用いて，被収容者を奪取し，若しくは解放し，又はこれらの行為をまさにしようとするとき。

4．被収容者に重大な危害を加え，又はまさに加えようとするとき。

④武器を使用するに当たつては，刑法（明治40年法律第45号）第36条若しくは第37条に該当する場合 又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を除いては，人に危害を加えてはならない。

1．刑務官において他に被収容者の第2項各号に掲げる行為を抑止する手段がないと信ずるに足りる相当の理由があるとき。

2．刑務官において他に被収容者以外の者の前項各号に掲げる行為を抑止する手段がないと信ずるに足りる相当の理由があるとき。ただし，同項第1号から第3号までのいずれかの場合にあつては，その者が刑務官の制止に従わないで当該行為を行うときに限る。

第45条（収容のための逮捕）刑務官は，被収容者について，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当該各号に定める期間に限り，収容のための逮捕をすることができる。

1．逃走したとき。逃走の時から48時間以内

2．第67条の規定による外部通勤作業における通勤又は第85条の規定による外出の場合において，その通勤又は外出の日のうちに当該刑事施設に帰着しなかつたとき。その日の翌々日までの間

3．第86条の規定による外泊の場合において,外泊の期間の末日までに当該刑事施設に帰着しなかつたとき。その外泊の期間の末日の翌々日までの間

第46条（災害時の応急用務）刑事施設の長は，地震，火災その他の災害に際して必要がある場合には，被収容者を刑事施設内における消火，人命の救助その他の応急の用務に就かせることができる。

②第76条から第79条までの規定は，被収容者が前項の規定により応急の用務に就いて死亡し，負傷し，又は疾病にかかつた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2. 被收容者가 暴動을 일으키거나 일으키려고 할 경우에 그 現場에서 이들에 參加하거나 이들을 援助할 때
3. 暴行 또는 脅迫으로써 피수용자를 脫取 혹은 釋放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하려고 할 때
4. 被收容者에게 중대한 危害를 加하거나 가하려고 할 때

④ 武器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刑法(1907년 법률 제45호)제36조 또는 제37조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危害를 가해서는 아니된다.

1. 刑務官이 달리 被收容者의 제2항 각호에 열거하는 행위를 抑止할 手段이 없다고 믿기에 족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2. 刑務官이 달리 被收容者 이외의 자의 전항 각호에 열거하는 행위를 抑止할 手段이 없다고 믿기에 족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그러나 동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어느 경우에도 그 자가 刑務官의 制止에 따르지 아니하고 당해 행위를 행하는 때에 한한다.

제45조 (收容을 위한 逮捕) 刑務官은 피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정하는 期間에 한하여 收容을 위한 逮捕를 할 수 있다.

1. 逃走한 때 : 도주시부터 48시간이내
2.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外部通勤作業에 있어서의 通勤 또는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外出의 경우에 그 通勤 또는 外出日 중에 당해 형사시설에 歸還하지 아니한 때 : 그날의 다음다음 날까지의 기간
3.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外泊의 경우에 外泊期間의 말일까지 당해 刑事施設로 歸還하지 아니한 때 : 그 外泊期間의 말일 다음다음날까지의 기간

제46조 (災害時의 應急用務) ① 형사시설의 장은 地震, 火災 기타 재해시에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被收容者를 형사시설내에서의 消火, 人命救助 기타 應急用務에 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76조에서 제79조까지의 규정은 被收容者가 전항의 규정에 의해 應急用務

第47条（災害時の避難及び解放）地震，火災その他の災害に際し，刑事施設内において避難の方法がないときは，刑事施設の長は，被収容者をその刑事施設の外の適当な場所に護送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前項の場合において，被収容者を護送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刑事施設の長は，その者を刑事施設から解放することができる。

③前項の規定により解放された者は，避難を必要とする状況がなくなつた後速やかに，その刑事施設，最寄りの他の刑事施設又は刑事施設の長が指定した場所に出頭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2編　受刑者の處遇

第1章　通　則

第1節　受刑者の処遇の原則

第48条（受刑者の処遇の原則）受刑者の処遇は，その収容を確保しつつ，その者の資質及び環境に応じ，その自覚に訴え，改善更生の意欲の喚起及び社会生活に適応する能力の育成を図ることを旨として行うものとする。

②受刑者に対しては，前項の目的を達成するため，矯正処遇として,第63条又は第64条に規定する作業を行わせ，及び第80条から第82条までに規定する教科指導，治療的処遇又は生活指導（以下「教科指導等」という。）を行う。

第49条（自主性の促進）受刑者の自主性を促進するため，この法律に基づく受刑者の生活及び行動に対する制限は，前条第1項の目的を達成する見込みが高まるに従い，順次緩和されるものとする。

에 임하여 死亡, 負傷 또는 疾病에 걸린 경우에 대하여 準用한다.

제47조 (災害時의 避難 및 一時釋放) ① 地震, 火災 기타의 災害時에 형사시설내에서 避難方法이 없는 때에는 형사시설의 장은 被收容者를 그 형사시설 밖의 적당한 장소로 護送해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被收容者를 護送할 수 없는 때에는 형사시설의 장은 그 자를 刑事施設에서 釋放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一時釋放된 자는 避難을 필요로 하는 狀況이 없어진 때는 신속히 그 刑事施設, 부근의 다른 형사시설 또는 형사시설의 장이 指定한 場所에 출석해야 한다.

제2편 受刑者의 處遇

제1장 通 則

제1절 受刑者處遇의 原則

제48조 ① 受刑者의 處遇는 그 收容을 확보하면서 그 자의 資質 및 環境에 따라 그의 自覺에 호소하여 改善更生意慾의 喚起 및 社會生活 適應能力의 育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② 수형자의 대하여는 전항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矯正處遇로서 제63조 또는 64조에 규정하는 作業을 행하게 하고 또 제80조에서 제82조까지 규정하는 敎科指導, 治療的 處遇 또는 生活指導(이하'교과지도 등'이라 한다)를 행한다.

제49조 (自主性의 促進) ① 受刑者의 自主性을 促進하기 위하여 이 法律에 근거하는 수형자의 生活과 行動에 대한 制限은 전조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할 可

②前項の場合において，前条第1項の目的を達成する見込みが特に高いと認められる受刑者の処遇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開放的施設（収容を確保するため通常必要とされる設備又は措置の一部を設けず，又は講じない刑事施設の全部又は一部で法務大臣が指定するものをいう。以下同じ。）で行うことができる。

第50条（社会との連携）刑事施設の長は，受刑者の処遇を行うに当たつては，できる限り，罪を犯した者の改善更生に関係のある公私の団体及び民間の篤志家その他の個人の協力と援助を得ることに努めるものとする。

第51条（刑執行開始時の指導等）刑事施設においては，受刑者に対し，当該刑の執行開始後の法務省令で定める期間は，受刑の意義その他矯正処遇の実施の基礎となる事項につき必要な指導及び訓練を行うものとする。

第52条（釈放前の指導等）刑事施設においては，受刑者に対し，その者の釈放前における法務省令で定める期間は，その者が社会復帰を円滑に行うことができるように，釈放後の社会生活において直ちに必要となる知識その他その帰住及び生計の方途に関し必要な指導及び援助を行うものとする。

②刑事施設の長は，前項の規定による指導及び援助を行うに当たつては，特に受刑者の更生保護に関係のある者，その受刑者の家族，その受刑者の釈放後にこれを雇用しようとする者等の協力を得ること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③第1項に規定する期間における受刑者の処遇（矯正処遇並びに同項の指導及び援助を含む。）は，できる限り，これにふさわしい設備と環境を備えた場所で行うものとし，必要に応じ，第85条の規定による外出に関する措置その他の措置を執るものとする。

第53条（法務省令への委任）前2条に規定する指導，訓練及び援助（次条にお

能性이 높아짐에 따라 순차로 緩和되어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전조 제1항의 目的을 達成할 展望이 특히 높다고 인정되는 受刑者의 處遇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開放的 施設(收容을 確保하기 위하여 통상 필요한 設備 또는 措置의 일부를 만들지 아니하거나 講究하지 아니하는 형사시설의 全部 또는 一部로서 法務大臣이 指定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행할 수 있다.

제50조 (社會와의 連繫) 刑事施設의 장은 受刑者의 處遇를 행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죄를 범한 자의 改善更生에 관계있는 公私團體 및 民間篤志家 기타 個人의 協力과 援助를 얻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

제51조 (刑執行開始時의 指導 등) 刑事施設에서는 수형자에 대하여 당해 刑의 執行開始 후의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受刑의 意義 기타 矯正處遇實施에 기초가 되는 사항에 대해 필요한 指導 및 訓練을 행하여야 한다.

제52조 (釋放前의 指導 등) ① 刑事施設에서는 수형자에 대하여 그 자의 釋放前에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社會復歸를 원활히 행할 수 있도록 석방 후의 社會生活에서 즉시 필요한 知識 기타 그 歸家 및 生計의 方途에 관하여 필요한 指導 및 援助를 행하여야 한다.

② 刑事施設의 長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指導와 援助를 행함에 있어서는 특히 受刑者의 更生保護에 관계있는 자, 그 수형자의 家族, 그 수형자의 석방 후에 이를 雇用하려고 하는 자 등의 協力을 얻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기간 동안의 受刑者의 處遇(矯正處遇 및 동항의 指導와 援助를 포함)는 가능한 한 이에 적당한 設備와 環境을 갖춘 장소에서 행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外出에 관한 措置 기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3조 (法務省令에의 委任) 전 2조에 규정하는 指導, 訓練 및 援助(다음 조에

いて「特定期間における指導等」という。)に関し必要な事項は，法務省令で定める。

第2節 起居動作の時限等

第54条(起居動作の時限) 刑事施設の長は，法務省令で定める基準に従い，矯正処遇の時限，特定期間における指導等の時限，起床，食事，就寝その他の起居動作をすべき時限及び余暇に充てられるべき時限を定め，これを受刑者に告知するものとする。

②前項の時限を定めるに当たつては,第48条第1項の目的の達成に資するよう配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55条(余暇活動の援助) 刑事施設の長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前条第1項の規定により定められた時限による余暇に行う読書，学習，運動競技，自己労作(自己の収支において行う物品の製作その他の労作をいう。以下同じ。)その他の活動につき援助を与えるものとする。

第56条(居室) 受刑者の居室は，その者の矯正処遇の実施上共同室を適当とする場合その他の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を除き，単独室とする。

第2章 矯正処遇の実施

第57条(処遇のための調査) 刑事施設においては,第48条第1項の目的を達成するため，医学，心理学，教育学，社会学その他の専門的知識及び技術を活用して，受刑者の資質及び環境の調査を行うものとする。

②刑事施設の長は，前項の調査を行うに当たり，公務所又は公私の団体に照会

서 '특정기간 동안의 지도 등'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法務省令으로 정한다.

제2절 起居動作의 時限 등

제54조 (起居動作의 時限) ① 刑事施設의 長은 法務省令으로 정하는 基準에 따라 矯正處遇의 時限, 特定期間 동안의 指導 등의 制限, 起床, 식사, 취침 기타의 起居動作을 해야 할 時限 및 餘暇에 충당되어야 할 時限을 정하고 이를 수형자에게 告知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時限을 정함에 있어서는 제48조 제1항의 目的達成에 기여하도록 配慮하여야 한다.

제55조 (餘暇活動의 援助) 刑事施設의 長은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정하여진 時限에 의한 餘暇에 행하는 讀書, 학습, 운동경기, 自己勞作(自己의 收支로 행하는 물품의 製作 기타의 勞作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타의 활동에 대해 援助를 하여야 한다.

제56조 (居室) 수형자의 居室은 그 자의 矯正處遇 실시상 共同室이 적당한 경우 기타 法務省令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單獨室로 한다.

제2장 矯正處遇의 實施

제57조 (處遇를 위한 調査) ① 刑事施設에서는 제48조 제1장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醫學, 心理學, 教育學, 社會學 기타 전문적 知識 및 技術을 활용하여 수형자의 資質 및 環境의 調査를 행하여야 한다.

② 刑事施設의 長은 전항의 調査를 행함에 있어서 公務 또는 公私團體에 照會

して，必要な事項の通報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第58条（処遇要領の作成及び変更）矯正処遇は，受刑者ごとに定める計画的な矯正処遇の実施の要領（以下「処遇要領」という。）に基づいて行うものとする。

②処遇要領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刑事施設の長が前条の規定による調査の結果に基づき定めるものとする。

③処遇要領に定める事項は，矯正処遇の基本方針並びに矯正処遇の内容及び方法とする。

④処遇要領で定めた事項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矯正処遇の実施状況等を勘案し，処遇要領決定後の前条の規定による調査を行つた上で，必要に応じ，これを変更するものとする。

第59条（希望の参酌）矯正処遇は，処遇要領に従つてこれを適切かつ効果的に実施するため，その内容に応じ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受刑者の希望を参酌して行うものとする。

第60条（集団処遇）矯正処遇は，その効果的な実施を図るため，必要に応じ，受刑者を集団に編成して行うものとする。

②前項の場合において特に必要があるときは，第4条第2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居室外において，性別又は刑名の別による分離をしないことができる。

第61条（刑事施設外処遇）矯正処遇は，その効果的な実施を図るため必要な限度において，刑事施設の外の適当な場所で行うことができる。

第62条（法務省令への委任）この章に定めるもののほか，第57条第1項の調査及び第60条第1項の規定による集団の編成の基準その他この章の規定による矯正処遇の実施に関し必要な事項は，法務省令で定める。

하여 필요한 사항의 通報를 구할 수 있다.

제58조 (處遇要領의 作成과 變更) ① 矯正處遇는 수형자마다 정하는 계획적인 矯正處遇實施要領(이하'처우요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행해야 한다.

② 處遇要領은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刑事施設의 長이 전조의 규정에 의한 調査結果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③ 處遇要領에 정하는 사항은 矯正處遇의 基本方針 및 교정처우의 內容과 方法으로 한다.

④ 處遇要領으로 정해진 사항은 法務省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처우의 실시상황 등을 감안하여 處遇要領 결정 후 전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행하여 필요에 따라 이를 변경하도록 한다.

제59조 (希望의 參酌) 矯正處遇는 처우요령에 따라 이를 適切하고도 效果的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그 내용에 따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受刑者의 希望을 참작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60조 (集團處遇) ① 矯正處遇는 그 效果的인 實施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수형자를 集團으로 編成하여 행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특히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居室밖에서 性別 또는 刑名別에 의한 分離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1조 (刑事施設에서의 處遇) 矯正處遇는 그 效果的인 실시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刑事施設 밖의 적당한 장소에서 행할 수 있다.

제62조 (法務省令에의 委任) 이 章에 정하는 것 외에 제57조 제1항의 調査 및 제 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集團編成의 基準 기타 이 장의 규정에 의한 矯正處遇의 實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法務省令으로 정한다.

第3章 作 業

第1節 作業の実施

第63条（懲役受刑者の作業） 懲役の刑の執行を受けている者（以下「懲役受刑者」という。）が服すべき定役に係る作業の種類は，懲役受刑者ごとに，刑事施設の長が指定する。

第64条（禁錮受刑者等の作業） 刑事施設の長は，禁錮の刑の執行を受けている者（以下「禁錮受刑者」という。）又は拘留の刑の執行を受けている者が刑事施設の長の指定する作業を行うことを希望する旨の申出をした場合には，法務省令で定める条件で，その希望する作業を行うことを許すことができる。

第65条（作業の実施） 作業は，できる限り，受刑者の勤労意欲を高め，これに職業上有用な知識及び技能を習得させるように実施するものとする。

②受刑者に職業に関する免許若しくは資格を取得させ，又は職業に必要な知識及び技能を習得させる必要がある場合には，これらを目的とする訓練を，作業として実施する。

第66条（作業の条件） 刑事施設の長は，法務省令で定める基準に従い，1日の作業時間及び作業を行わない日を定める。

②刑事施設の長は，作業を行う受刑者の安全及び衛生を確保するため必要な措置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

③受刑者は，刑事施設の長が前項の規定に基づき講ずる措置に応じて，必要な事項を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

④第2項の規定により刑事施設の長が講ずべき措置及び前項の規定により受刑者が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事項は，労働安全衛生法（昭和47年法律第57号）その他の法令に定める労働者の安全及び衛生を確保するため事業者が講ずべき措置及び労働者が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事項に準じて，法務大臣が定める。

제3장 作 業

제1절 作業의 實施

제63조 (懲役受刑者의 作業) 懲役刑의 執行을 받은 자(이하 '징역수형자 '라 한다)가 복역하여야 할 정역에 관한 作業의 種類는 징역수형자마다 刑事施設의 長이 指定한다.

제64조 (禁錮受刑者 등의 作業) 형사시설의 장은 禁錮刑의 執行을 받고 있는 자(이하'금고수형자'라 한다)또는 拘留刑의 執行을 받은 자가 형사시설의 장이 指定하는 작업을 희망하는 취지의 申請을 한 경우에는 법부성령에서 정하는 조건으로 그 작업을 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65조 (作業의 實施) ① 作業은 가능한 한 수형자의 勤勞意慾을 높이고 이에 職業上 유용한 知識 및 技能을 습득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형자에게 職業에 관한 免許 또는 資格을 取得시키거나 직업에 필요한 知識 및 技能을 습득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訓練을 作業으로서 실시한다.

제66조 (作業의 條件) ① 刑事施設의 長은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基準에 따라 1일의 作業時間 및 作業을 행하지 아니하는 날을 정한다.

② 형사시설의 장은 作業을 하는 수형자의 安全 및 衛生을 確保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受刑者는 형사시설의 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講究하는 措置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시설의 장이 講究해야 할 措置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형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勞動安全衛生法(1972년 법률 제57호) 기타 法令에 정하는 勞動者의 安全 및 衛生을 確保하기 위하여 事業者가 강구해야 할 조치 및 노동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준하여 法務大臣이 정한다.

第67条（外部通勤作業）刑事施設の長は，刑法第28条に規定する期間又は少年法（昭和23年法律第168号）第58条各号に掲げる期間を経過した懲役受刑者又は禁錮受刑者が，第49条第2項の規定により開放的施設において処遇を受けていることその他の法務省令で定める事由に該当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円滑な社会復帰を図る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期間を定めて，刑事施設の職員の同行なしに，その受刑者を刑事施設の外の事業所（以下この条及び第71条において「外部事業所」という。）に通勤させて作業を行わせることができる。

②前項の規定による作業は，刑事施設の長が委嘱した外部事業所の業務に従事することによつて行う。この場合において，外部事業所の事業主は，いかなる名目によるかを問わず，受刑者に対し業務に従事することの対価を支払つてはならない。

③前項の委嘱を行うに当たつては，刑事施設の長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外部事業所の事業主との間において，受刑者の行う作業の種類，作業時間，受刑者の安全及び衛生を確保するため必要な措置その他作業の実施に関し必要な事項について，取決め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④刑事施設の長は，第1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同項に規定する受刑者の円滑な社会復帰を図る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期間を定めて，刑事施設の職員の同行なしに，その受刑者を刑事施設の外の職業訓練のための施設に通勤させて第65条第2項の規定に基づき作業として実施する訓練を受けさせ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前2項の規定を準用する。

第68条（外部通勤者心得）刑事施設の長は，前条第1項又は第4項の規定による作業（以下「外部通勤作業」という。）を行う受刑者ごとに，あらかじめ，通勤の方法，帰着の時限その他の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次第において「外部通勤者心得」という。）を定め，これを当該受刑者に告知するものとする。

第69条（外部通勤者の連戻し等）刑事施設の長は，外部通勤作業を行う受刑者が外部通勤者心得を遵守しなかつた場合その他その者に外部通勤作業を不適当とする事由があると認める場合には，その者を連れ戻し，又はその者の外部通勤作業を中止することができる。

제67조 (外部通勤作業) ① 刑事施設의 長은 형법 제28조에 규정하는 期間 또는 少年法(1948년 법률 제168호) 제58조 각호에 열거하는 기간을 경과한 懲役受刑者 또는 禁錮受刑者가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開放的 施設에서 處遇를 받고 있거나, 기타 法務省令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원활한 社會復歸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을 때에는 期間을 정하여 刑事施設 職員의 同行없이 그 수형자를 형사시설 밖의 事業所(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外部事業所'라 한다)에 通勤시켜 作業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作業은 형사시설의 장이 委囑한 外部事業所의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행한다. 이 경우에 외부사업소의 事業主는 어떠한 名目에 의해서도 수형자에 대하여 業務에 종사하는 代價를 支給해서는 아니된다.

③ 전항의 委囑을 함에 있어서 刑事施設의 長은 法務省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外部事業所의 事業主와의 사이에서 수형자가 행하는 作業의 種類, 作業時間, 수형자의 安全 및 衛生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 기타 작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約定을 하여야 한다.

④ 刑事施設의 長은 제1항의 경우에 동항에 규정하는 수형자의 원활한 社會復歸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는 때에는 期間을 정하여 刑事施設職員의 同行없이 그 수형자를 형사시설 밖의 職業訓練을 위한 시설에 通勤시켜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作業으로서 실시하는 訓練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 (外部通勤者 注意事項) 刑事施設의 長은 전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作業(이하'외부통근작업'이라 한다)을 행하는 受刑者마다 미리 通勤方法, 歸所時限 기타 法務省令으로 정하는 사항(다음 조에서 '外部通勤者注意事項'이라 한다)을 정하여 이를 당해 수형자에게 告知하여야 한다.

제69조 (外部通勤者의 連行 등) 刑事施設의 長은 外部通勤作業을 행하는 수형자가 외부통근자 注意事項을 遵守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 그 자에게 외부통근작업을 不適當하게 하는 사유가 있다고 認定될 경우에는 그 자를 連行하거나 그 자의 외부통근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第70条（法務省令への委任） この節に定めるもののほか，作業の方法その他作業の実施に関し必要な事項は，法務省令で定める。

第2節 作業収入，作業報奨金及び災害給付

第71条（作業収入） 作業により生産された物品の売払い代金，外部事業所からの収入その他の作業の実施による収入は，国庫に帰属する。

第72条（作業報奨金） 刑事施設の長は，作業を行つた受刑者に対しては，釈放の際に，作業報奨金の額を確定して，これを支給する。

②作業報奨金の額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受刑者が作業を行つた日の属する月ごとに，次項に規定する基準に従い，その受刑者の作業成績その他の就業に関する事項を考慮してその月の作業に対応するものとして算出した金額の累計額（以下「報奨金支給予定額」という。）と同額とする。

③前項の金額の算出に関する基準は，作業の種類及び内容，当該作業に要する知識及び技能の程度等を考慮して，法務大臣が定める。

第73条（釈放前における作業報奨金の支給） 刑事施設の長は，受刑者が，その釈放前に作業報奨金の支給を受けることを希望する旨の申出を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使用の目的が親族の生計の援助，使用又は摂取を許された自弁の物品の購入，被害者に対する損害賠償への充当等正当なものであり，かつ，当該作業報奨金の使用がその者の改善更生のため有益であると認めるときは，前条第1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申出の日の属する月の前月における報奨金支給予定額の範囲内で，申出の額の全部又は一部を支給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は，その支給額を報奨金支給予定額から減額する。

第74条（報奨金支給予定額の削減） 受刑者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

제70조 (法務省令에의 委任) 이 節에서 정하는 것 외에 作業의 方法 기타 작업의 實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성령으로 정한다.

제2절 作業收入, 作業報奬金 및 災害給付

제71조 (作業收入) 作業에 의하여 生産된 물품의 賣却代金, 外部事業所로부터의 收入 기타 作業實施에 의한 수입은 國庫에 귀속한다.

제72조 (作業報奬金) ① 형사시설의 장은 作業을 한 수형자에 대하여 釋放時에 作業報奬金의 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지급한다.

② 作業報奬金의 金額은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受刑者가 작업을 한 날이 속하는 달마다 다음항에 규정하는 基準에 따라 그 수형자의 作業成績 기타 就業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그 달의 작업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算出한 금액의 累計額(이하'보장금지급예정액'이라 한다)과 同額으로 한다.

③ 전항의 金額算出에 관한 기준은 作業의 種類 및 內容, 당해 작업에 필요한 知識 및 技能의 程度 등을 고려하여 法務大臣이 정한다.

제73조 (釋放前의 作業報奬金 支給) 형사시설의 장은 受刑者가 그 釋放前에 作業報奬金의 지급을 희망하는 취지의 申請을 한 경우에 그 사용목적이 親族의 生計援助, 사용 또는 섭취를 허가받은 自辨物品購入, 피해자에 대한 損害賠償에의 充當 등 正當한 것이고, 또 당해 작업보장금의 사용이 그 자의 改善更生을 위하여 有益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法務省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申請日이 속하는 달의 前月에 있어서의 報奬金 支給豫定額의 범위내에서 신청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支給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支給額을 보장금지급 예정액에서 減額한다.

제74조 (報奬金支給 豫定額의 削減) ① 受刑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合において，当該各号に定める日から起算して6月を経過する日までに，その者が刑事施設に収容されなかつたときは，当該各号に定める日の属する月における報奨金支給予定額の支給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

1．逃走したとき。逃走した日

2．第47条第2項の規定により解放された後速やかに同条第3項に規定する場所に出頭しなかつたとき。解放された日

3．外部通勤作業における通勤又は第85条の規定による外出の場合において，その通勤又は外出の日のうちに当該刑事施設に帰着しなかつたとき。その通勤又は外出の日

4．第86条の規定による外泊の場合において，外泊の期間の末日までに当該刑事施設に帰着しなかつたとき。その外泊の期間の初日

②第136条第1項第5号の懲罰を科した場合には，懲罰に係る削減額をその懲罰を科した日の属する月の前月における報奨金支給予定額から減額する。

第75条（遺族への給付）刑事施設の長は，受刑者が死亡した場合には，法務省令で定める遺族に対し，その時に釈放するとしたならばその受刑者に支給すべき作業報奨金の額を確定して，これを支給する。

第76条（災害給付）刑事施設の長は，受刑者が作業上死亡した場合には，法務省令で定める遺族に対し，死亡手当金を支給する。

②刑事施設の長は，作業上負傷し，又は疾病にかかつた受刑者が治つた場合において，身体に障害が残つたとき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者に障害手当金を支給する。ただし，その者が故意又は重大な過失によつて負傷し又は疾病にかかつ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③前2項の規定により支給する手当金の額は，労働基準法（昭和22年法律第49号）に基づく災害補償の額に関する基準を参酌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基準に従い算出した金額とする。

④刑事施設の長は，作業上負傷し，又は疾病にかかつた受刑者が釈放の時にな

경우에 당해 각호에 정하는 날로부터 起算하여 6월을 경과하는 날까지 그 자가 刑事施設에 收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각호에 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에 있어서의 보장금 지급예정액의 지급을 받을 수 없다.

1. 逃走한 때, 도주한 날
2.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一時釋放된 후 신속히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장소로 出席하지 아니한 때, 일시석방된 날
3. 外部通勤作業에 있어서의 通勤 또는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外出의 경우에 通勤 또는 外出일 중에 당해 刑事施設로 돌아오지 아니한 때, 그 통근 또는 외출일
4.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外泊의 경우에 外泊期間의 말일까지 당해 형사시설로 돌아 오지 아니한 때, 그 외박기간의 첫날

② 제136조 제1항 제5호의 懲罰을 科한 경우에는 징벌에 관계되는 削減額을 그 징벌을 부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에 있어서의 報奬金支給豫定에서 감액한다.

제75조 (遺族에의 給付) 刑事施設의 長은 수형자가 死亡한 경우에는 法務省令으로 정하는 遺族에 대하여 그 때에 석방하기로 하였다면 그 受刑者에게 지급하여야 할 作業報奬金額을 확정하여 이를 지급한다.

제76조 (災害給付) ① 刑事施設의 장은 수형자가 作業 중 死亡한 경우에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遺族에 대하여 死亡手當金을 지급한다.

② 형사시설의 장은 作業 중 負傷을 당하거나 疾病에 걸린 수형자가 治療된 경우에 身體에 障害가 남은 때에는 法務省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에게 障害手當金을 지급한다. 그러나 그 자가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負傷하거나 疾病에 걸린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手當金額은 勞動基準法(1947년 법률 제49조)에 근거하는 災害報償額에 관한 基準을 참작하여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해 算出한 금액으로 한다.

④ 형사시설의 장은 작업중 負傷을 당하거나 疾病에 걸린 수형자가 釋放時에

お治つていない場合において、その傷病の性質，程度その他の状況を考慮して相当と認められるとき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者に特別手当金を支給する。

第77条（損害賠償との調整）国が国家賠償法（昭和22年法律第125号），民法（明治29年法律第89号）その他の法律による損害賠償の責めに任ずる場合において，前条の規定による手当金を支給したときは，同一の事由については国は，その価額の限度においてその損害賠償の責めを免れる。

②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手当金の支給を受けるべき者が，同一の事由につき国家賠償法，民法その他の法律による損害賠償を受けたときは，国は，その価額の限度において手当金の支給の義務を免れる。

第78条（支給を受ける権利の保護）第76条の規定により支給を受ける権利は，譲り渡し，担保に供し，又は差し押さえることができない。

第79条（公課の禁止）第76条の規定により支給を受けた金銭を標準として,租税その他の公課を課してはならない。

第4章　教科指導等

第80条（教科指導）社会生活の基礎となる労力を欠く受刑者その他の教科指導を必要とする受刑者に対しては，学校教育法（昭和22年法律第26号）による学校教育の内容に準ずる内容の教科指導を行う。

第81条（治療的処遇）身体に障害を有する受刑者又は精神薄弱者である受刑者で，その心身の状況が改善更生に支障を及ぼすと認められるものに対しては，治療的処遇を行う。

여전히 完治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傷病의 性質, 程度 기타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法務省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에게 特別手當金을 지급한다.

제77조 (損害賠償의 調整) ① 國家가 國家賠償法(1947년 법률 제125호), 民法(1896년 법률 제89호) 기타의 법률에 의한 損害賠償의 責任이 있는 경우에 前條의 규정에 의한 手當金을 支給한 때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는 國家는 그 價額의 限度內에서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한다.

② 전항에 규정하는 경우에 수당금의 지급을 받아야 할 자가 동일한 사유로 國家賠償法, 民法 기타의 법률에 의한 損害賠償을 받은 때에는 국가는 그 價額限度내에서 手當金 支給義務를 면한다.

제78조 (支給을 받을 權利의 保護)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支給을 받을 權利는 讓渡하거나 擔保로 제공하거나 押留할 수 없다.

제79조 (公課의 禁止)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支給을 받은 金錢을 標準으로 하여 租稅 기타 公課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敎科指導 등

제80조 (敎科指導) 社會生活의 기초가 되는 勞動力을 결하는 수형자 기타 敎科指導를 필요로하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學校敎育法(1947년 법률 제26호)에 의한 學校敎育의 內容에 준하는 내용의 교과지도를 행한다.

제81조 (治療的 處遇) ① 身體에 障害가 있는 수형자 또는 精神薄弱者인 수형자로서 그 心身의 狀況이 改善更生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治療的 處遇를 행한다.

②身体に障害を有する受刑者に対する治療的処遇は，その障害の程度に応じ，障害の除去，機能の回復等に必要な治療，施術，指導及び訓練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治療又は施術については，当該受刑者の意思に反しない場合に限り，行うものとする。

③精神薄弱者である受刑者に対する治療的処遇は，その自立能力の育成に必要な指導及び訓練とする。

第82条（生活指導）受刑者が健康な心身を培い，並びに社会生活に適応するのに必要な知識を習得し，及び生活態度を養う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ための生活指導として，体育，相談助言その他の必要な指導及び訓練を行う。

第83条（教科指導等の日及び時間）教科指導等を行うべき日及び時間は，法務省令で定める基準に従い，刑事施設の長が定める。

第84条（法務省令への委任）この章に定めるもののほか，教科指導等の内容，方法その他その実施に関し必要な事項は，法務省令で定める。

第5章　外出及び外泊

第85条（外出）刑事施設の長は，刑法第28条に規定する期間又は少年法第58条各号に掲げる期間を経過した懲役受刑者又は禁錮受刑者が，第49条第2項の規定により開放的施設において処遇を受けていること，第52条第1項の指導及び援助を受けていることその他の法務省令で定める事由に該当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円滑な社会復帰を図るため，刑事施設の外において，その者が一身上の重要な用務を行い，更生保護に関係のある者を訪問し，その他その釈放後の社会生活に有用な体験をする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1日のうちの時間を定めて、刑事施設の職員の同行なしに外出することを許すことができる。

② 身體에 障害를 갖는 수형자에 대한 治療的 處遇는 그 障害의 程度에 따라 障害除去, 機能回復 등에 필요한 治療, 施術, 指導 및 訓練으로 한다. 이 경우에 치료 또는 시술에 대하여는 당해 受刑者의 意思에 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 精神薄弱者인 수형자에 대한 治療的 處遇는 그 自立能力의 育成에 필요한 指導 및 훈련으로 한다.

제82조 (生活指導) 受刑者가 건강한 心身을 培養하고 아울러 社會生活에 適應하는 데 필요한 知識을 습득하며, 또 生活態度를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生活指導로서 體育, 相談助言 기타 필요한 指導 및 訓練을 행한다.

제83조 (教科指導 등의 日字 및 時間) 教科指導 등을 행해야 하는 日字 및 時間은 法務省令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刑事施設의 長의 정한다.

제84조 (法務省令에의 委任) 이 章에 정하는 것 외에 教科指導 등의 내용, 방법 기타 그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法務省令으로 정한다.

제5장 外出과 外泊

제85조 (外出) 刑事施設의 長은 刑法 제28조에 규정하는 期間 또는 少年法 제58조 각호에 列挙하는 期間을 경과한 懲役受刑者 또는 禁錮受刑者가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開放的 施設에서 處遇를 받고 있고, 제52조 제1항의 指導 및 援助를 받고 있으며, 기타 法務省令으로 정하는 事由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원활한 社會復歸를 도모하기 위하여 형사시설 밖에서 자기의 一身上의 중요한 用務를 보고 更生保護에 관계가 있는 자를 訪問하며, 기타 그 釋放 후의 社會生活에 유용한 體驗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일 중의 시간을 정하여 刑事施設職員의 동행없이 外出을 許可 할 수 있다.

第86条（外泊）刑事施設の長は，刑法第28条に規定する期間又は少年法第58条各号に掲げる期間を経過し，かつ，6月以上刑の執行を受けた懲役受刑者又は禁錮受刑者が,第49条第2項の規定により開放的施設において処遇を受けていることその他の法務省令で定める事由に該当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円滑な社会復帰を図る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7日以内の期間を定めて，その者が，刑事施設の職員の同行なしに刑事施設の外に外泊して，一身上の重要な用務を行い，又は更生保護に関係のある者を訪問することを許す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第54条第1項の時限を定めることを要しない。

第87条（外出受刑者等心得）刑事施設の長は，前2条の規定により外出又は外泊をする受刑者（以下この章において「外出受刑者等」という。）ごとに，あらかじめ，外出先又は外泊先，外泊期間，帰着の時限その他の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次条において「外出受刑者等心得」という。）を定め，これを当該外出受刑者等に告知するものとする。

第88条（外出受刑者等の連戻し）刑事施設の長は，外出受刑者等が外出受刑者等心得を遵守しなかつた場合その他その者に外出又は外泊を不適当とする事由があると認める場合には，その者を連れ戻すことができる。

第89条（刑期不算入）第86条の規定による外泊をした者が,外泊の期間の末日までに当該刑事施設に帰着しなかつた場合には，その外泊の期間は，刑期に算入しない。ただし，自己の責めに帰することのできない事由によつて帰着することができなかつた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第90条（外出等に要する費用）第85条の規定による外出又は第86条の規定による外泊に要する費用は，その外出受刑者等に負担させる。ただし，刑事施設の長は，その外出受刑者等がその費用を負担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又は国が負担することを相当と認める場合には，その費用の全部又は一部を負担することができる。

제86조 (外泊) 刑事施設의 長은 刑法 제28조에 규정하는 期間 또는 少年法 제58조 각호에 열거하는 기간을 경과하고 또한 6월 이상 刑의 執行을 받은 징역수형자 또는 금고수형자가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開放的 施設에서 處遇를 받고 있고, 기타 法務省令으로 정하는 事由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원활한 社會復歸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가 刑事施設職員의 동행없이 刑事施設 밖에서 外泊하고 一身上의 중요한 用務를 보거나 更生保護에 관계가 있는 자를 방문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의 時限을 정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87조 (外出受刑者 등 遵守事項) 刑事施設의 長은 전 2조의 규정에 의하여 外出 또는 外泊을 하는 受刑者(이하 이 장에서 '外出受刑者 등'이라 한다)마다 미리 外出處 또는 外泊處, 外泊期間, 歸所時限, 기타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다음 조에서'외출수형자 등 遵守事項'이라 한다)을 정하여 이를 당해 外出受刑者 등에게 告知하여야 한다.

제88조 (外出受刑者 등의 連行) 형사시설의 장은 外出受刑者 등이 외출수형자 등 遵守事項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그 자에게 外出 또는 外泊을 부적당하게 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자를 連行할 수 있다.

제89조 (刑期不算入)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外泊을 한 자가 外泊期間의 말일까지 당해 형사시설로 歸所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外泊期間을 刑期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自己의 責任으로 돌릴 수 없는 事由로 인하여 歸所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0조 (外出 등에 필요한 費用)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外出 또는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外泊에 필요한 費用은 그 外出受刑者 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다. 그러나 刑事施設의 長은 그 외출수형자 등이 그 費用을 負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國家가 負擔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第91条（法務省令への委任）　この章に定めるもののほか，外出又は外泊の実施に関し必要な事項は，法務省令で定める。

第6章　面会，信書の発受等

第1節　面　会

第92条（面会の相手方及び面会の立会い）　受刑者は，刑事施設の職員による立会いの下で，次に掲げる者と面会することができる。

1．その親族

2．婚姻関係の調整，訴訟の遂行，家計の維持その他その身分上，法律上又は業務上の重大な利害に係る用務の処理のため面談をすることが必要な者。

3．面会により受刑者の改善更生に資すると認められる者その他の刑事施設の長が相当と認める者

②刑事施設の長は，受刑者の正当な利益の保護又は矯正処遇の効果的な実施のため適当と認める場合には，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同項の立会いを行わないことができる。

第93条（面会に関する制限）　刑事施設の長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受刑者の面会の相手方の人数，面会の場所，日及び時限，面会の時間及び回数その他受刑者の面会の態様について，刑事施設の管理運営上必要な制限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94条（面会の一時停止及び終了）　面会の立会いに当たる刑事施設の職員は，受刑者若しくは面会の相手方が前条の制限に違反する行為その他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害する行為をする場合又は受刑者若しくは面会の相手方の発言の

제91조 (法務省令에의 委任) 이 장에 정하는 것 이외에 外出 또는 外泊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성령으로 정한다.

제6장 面會, 書信受發 등

제1절 面 會

제92조 (面會의 相對方 및 面會의 立會) ① 수형자는 刑事施設 職員의 立會下에 다음에 열거하는 자와 面會할 수 있다.

1. 그 親族
2. 婚姻關係의 調整 訴訟의 遂行, 家計의 維持 기타 그 신분상, 법률상 또는 업무상의 중대한 利害關係있는 用務의 処理를 위하여 面談 할 필요가 있는 자
3. 面會에 의하여 수형자의 改善更生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 기타 刑事施設의 長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刑事施設의 장은 수형자의 정당한 利益의 保護 또는 矯正處遇의 효과적 실시를 위하여 적당하다고 認定될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항의 立會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3조 (面會의 制限) 刑事施設의 장은 法務省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형자의 面會相對方의 사람수, 면회장소, 일자 및 시한, 면회시간 및 회수 기타 수형자의 面會 態様에 대하여 형사시설의 管理運營上 필요한 制限을 가할 수 있다.

제94조 (面會의 一時停止 및 終了) ① 面會에 立會 하는 형사시설 직원은 受刑者 또는 面會相對方이 전조의 制限에 위반하는 행위 기타 형사시설의 規律 및 秩序를 해치는 행위를 할 경우 또는 수형자나 면회상대방의 發言內容이 다음

内容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その行為若しくは発言を制し，又はその面会を一時停止させ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面会の一時停止のため，面会の場所から受刑者又は面会の相手方を退出させる等必要な措置を執ることができる。

1．暗号の使用その他の理由によつて立会いに当たる職員が理解できないものであるとき。

2．犯罪を唆すものであるとき。

3．逃走を図るものその他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害するおそれのあるものであるとき。

4．被収容者の処遇その他刑事施設の状況に関する明らかな虚偽の事実を含むものであるとき。

5．その受刑者の矯正処遇の適切な実施に支障を生ずるおそれのあるものであるとき。

②刑事施設の長は，前項の規定により面会が一時停止された場合において，面会を継続させることが相当でないと認めるときは，その面会を終わらせることができる。

第2節 信書の発受

第95条（信書の発受）受刑者については，この節及び次節並びに第5編第2章の規定によるほか，信書を発し，又はこれを受けることを禁止し，差し止め，又は制限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96条（信書の発受の相手方）刑事施設の長は，犯罪性のある者その他受刑者が信書を発し，又は受けることにより，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害するおそれがあり，又はその受刑者の矯正処遇の適切な実施に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者については，受刑者がその者に信書を発し，又はその者から信書を受けることを禁止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次に掲げる者については，第99条,第101条第3項及び第137条第1項の規定の適用を受ける場合を除き，この限りではない。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그 행위와 發言을 制止하거나 면회를 一時停止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면회의 일시정지를 위하여 面會場所에서 수형자 또는 면회상대방을 退去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暗号使用 기타 이유로 立會를 하는 職員이 理解할 수 없는 것일 때
2. 犯罪를 示唆하는 것일 때
3. 逃走를 企圖하는 것 기타 형사시설의 規律 및 秩序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4. 被收容者의 處遇 기타 형사시설의 狀況에 관한 분명한 虛僞事實을 포함하는 것일 때
5. 그 수형자의 矯正處遇의 적절한 실시에 支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일 때

② 刑事施設의 長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面會가 停止된 경우에 면회를 계속시킴이 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面會를 終了시킬 수 있다.

제2절 書信의 受發

제95조 (書信의 受發) 受刑者에 대하여는 이 節 및 다음節 그리고 제5편 제2장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書信을 發送하거나 수령하는 것을 禁止, 停止 또는 制限할 수 없다.

제96조 (書信受發의 相對方) 刑事施設의 長은 犯罪性이 있는 자 기타 수형자가 書信을 發送 또는 受領함으로써 형사시설의 規律 및 秩序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受刑者의 矯正處遇의 적절한 實施에 支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수형자가 그 자에게 서신을 발송하거나 그 자로부터 書信을 受領하는 것을 禁止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에 게재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99조, 제101조 제3항 및 제137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その親族

2．婚姻関係の調整，訴訟の遂行，家計の維持その他その身分上，法律上又は業務上の重大な利害に係る用務の処理のため通信をすることが必要な者

第97条（信書に関する制限）刑事施設の長は，法務省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受刑者が発する信書の作成方法，字数及び回数並びに受刑者の信書の発受の方法について，刑事施設の管理運営上必要な制限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98条（信書の検査）受刑者が発する信書及び受ける信書については，刑事施設の長又はその指名する職員により，その内容の検査を行う。ただし，刑事施設の長が，その受刑者の矯正処遇の効果的な実施のため適当と認め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②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受刑者が国又は地方公共団体の機関から受ける信書については，その旨を確認するため必要な限度において，これを検査する。

第99条（信書の内容による差止め等）刑事施設の長は，前条第1項の検査の結果，受刑者が発し，又は受ける信書について，その全部又は一部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その発信若しくは受信を差し止め，又はその該当箇所を削除し，若しくは抹消することができる。

1．暗号の使用その他の理由によつてその内容が理解できないものであるとき

2．その発信又は受信によつて，刑罰法令に触れることとなり，又は刑罰法令に触れる結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き。

3．その発信又は受信によつて，逃走その他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害する結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き。

4．威迫にわたる記述又は明らかな虚偽の記述があるため，受信人を著しく不安にさせ，又は受信人に損害を被らせるおそれがあるとき。

5．受信人を著しく侮辱する記述があるとき。

1. 親族
2. 婚姻関係의 調整, 訴訟의 遂行, 家計의 維持 기타 그 身分上, 法律上 또는 業務上의 중대한 利害에 관계되는 用務의 處理를 위하여 연락이 필요한 자 ~

제97조 (書信에 관한 制限) 刑事施設의 長은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受刑者가 發送하는 書信의 作成方法, 字数 및 回数 그리고 수형자의 書信受發方法에 대하여 형사시설의 管理運營上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제98조 (書信의 檢查) ① 수형자가 發送하거나 受領하는 書信에 대하여 刑事施設의 長은 그가 指命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그 內容을 檢查하게 한다. 그러나 형사시설의 장이 그 수형자의 效果的 矯正處遇 實施를 위하여 적정하다고 認定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受刑者가 國家 또는 地方公共團體의 機関으로부터 수령하는 書信에 대하여는 그 뜻을 確認하기 위하여 필요한 限度內에서 이를 검사한다.

제99조 (書信의 內容에 따른 停止 등) ① 刑事施設의 長은 전조 제1항의 檢查結果 수형자가 발송하거나 수령하는 書信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發信 또는 受信을 정지하거나 그 해당 個所를 삭제 또는 말소할 수 있다.

1. 暗号使用 기타 이유로 인하여 그 내용을 理解할 수 없는 것일 때
2. 發信 또는 受信에 의하여 刑罰法令에 抵觸되거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3. 발신 또는 수신에 의하여 逃走 기타 형사시설의 規律 및 秩序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
4. 脅迫의 내용이 담긴 記述 또는 명백한 虛僞의 記述이 있기 때문에 受信人을 현저히 불안하게 하거나 수신인에게 損害를 입힐 우려가 있는 때
5. 受信人을 현저히 侮辱하는 記述이 있을 때

6．被収容者の処遇その他刑事施設の状況に関する明らかな虚偽の記述があるとき。

7．その発信又は受信によつて，その受刑者の矯正処遇の適切な実施に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き。

②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受刑者が国又は地方公共団体の機関に対して発する信書であつてその機関の権限に属する事項を含むもの及び受刑者が弁護士との間で発受する信書であつてその受刑者に係る弁護士法（昭和24年法律第205号）第3条第1項に規定する弁護士の職務に属する事項を含むものについては，これらの事項に係る部分の全部又は一部が前項第1号から第3号まで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を除き，その発信又は受信を差し止めることができない。

③第1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前項に規定する部分は，その全部又は一部が第1項第4号から第7号まで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おいても，その該当箇所を削除し，又は抹消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100条（発信に要する費用） 受刑者が信書を発するため必要な費用は，その者に負担させる。ただし，刑事施設の長は，その者がその費用を負担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において，発信の目的に照らし相当と認めるときは，その費用の全部又は一部を負担することができる。

第3節 雑 則

第101条（外国語による面会等） 刑事施設の長は，受刑者又はその面会の相手方が国語に通じない場合には，外国語による面会を許す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発言の内容を確認するため通訳をすることができる者に立会いの補助をさせるとき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受刑者に費用を負担させることができる。

6. 被收容者의 處遇 기타 형사시설의 상황에 관한 명백한 虛僞의 記述이 있을 때
7. 발신 또는 수신에 의하여 受刑者의 적절한 矯正處遇 실시에 支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受刑者가 國家 또는 地方公共團體의 機關에 대하여 발송하는 書信으로 그 기관의 權限에 속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것 및 수형자가 辯護人과의 사이에서 手發하는 書信으로 그 수형자에 관계되는 辯護士法(1949년 법률 제205호)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辯護士의 職務에 속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들 사항에 관계되는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1에 해당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發信이나 受信을 停止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전항에 규정하는 부분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제1항 제4호에서 제7호까지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해당 개소를 삭제하거나 말소할 수 없다.

제100조 (發信에 필요한 費用) 受刑者가 書信을 발송하는데 필요한 費用은 그 자에게 부담시킨다. 그러나 刑事施設의 長은 그 자가 그 費用을 負擔할 수 없는 경우에 發信目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3절 雜 則

제101조 (外國語에 의한 面會 등) ① 형사시설의 장은 受刑者 또는 그 면회 相對方이 國語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에는 외국어에 의한 面會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發言內容을 확인하기 위해 通譯을 할 수 있는 자에게 立會의 補助를 시킬 때에는 法務省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형자에게 費用을 負擔시킬 수 있다.

②刑事施設の長は，受刑者が国語に通じない場合，受刑者の発信の相手方が国語に通じないと認められる場合その他相当と認められる場合には，外国語による信書を発し，又は受けることを許す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内容の検査を行うためこれを翻訳に付するとき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受刑者に費用を負担させることができる。

③当該受刑者が第1項又は前項の費用を負担しないときは，その面会又は発信若しくは受信を許さない。

第102条（受刑者作成の文書図画） 刑事施設の長は，受刑者が，その作成した文書図画（信書を除く。）を他の者に交付することを申請した場合には，その交付につき，受刑者が発する信書に準じてその内容の検査その他の措置を執ることができる。

②前項の規定により執るべき措置は，法務省令で定める。

第103条（法務省令への委任） この章に定めるもののほか，受刑者とその面会の相手方との関係及び面会の目的を確認するための手続，第92条第1項の立会いの方法，第96条の規定による禁止又は第99条の規定による差止めに係る信書の取扱いその他受刑者の面会及び信書の発受に関し必要な事項は，法務省令で定める。

第7章 被勾留受刑者等の処遇

第104条（被勾留受刑者） 刑事訴訟法の規定により勾留されている受刑者（以下「被勾留受刑者」という。）については，受刑者に関するこの法律の規定（第49条第2項，第56条，第60条，第61条，第67条から第69条まで，第2編第5章，第92条第2項，第93条，第97条及び第98条の規定を除く。）及び被勾留者に関するこの法律の規定（第14条第2項，第19条第2項，第107条

② 刑事施設의 장은 수형자가 國語로 意思가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형자의 發信相對方이 국어로 통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外國語에 의한 書信을 發送 또는 受領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內容의 檢査를 행하기 위하여 이를 翻譯할 때에는 法務省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수형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③ 당해 수형자가 제1장 또는 전항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面會 또는 發信·受信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02조 (受刑者가 作成한 文書·圖畫) ① 刑事施設의 長은 受刑者가 자신이 작성한 文書·圖畫(서신은 제외한다)를 다른 자에게 交付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교부에 대해 수형자가 발송하는 書信에 準하여 그 內容의 檢査 기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해야 할 조치는 법무성령으로 정한다.

제103조 (法務省令에의 委任) 이 章에 정하는 것 외에 受刑者와 그 面會 相對方과의 관계 및 面會의 目的을 확인하기 위한 節次, 제92조 제1항의 立會方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禁止 또는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停止에 관계되는 書信의 取扱 기타 수형자의 面會 및 書信受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法務省令으로 정한다.

제7장 被拘束受刑者 등의 處遇

제104조 (被拘束受刑者) 刑事訴訟法의 규정에 의하여 拘束되어 있는 受刑者(이하'피구속수형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수형자에 관한 이 법률의 규정(제49조 제2항, 제56조, 제60조, 제61조, 제67조에서 제69조까지, 제2편 제5장, 제92조 제2항, 제93조, 제97조 및 제98조의 규정을 제외한다) 및 피구속자에 관한 이 법률의 규정(제14조 제2항, 제19조 제2항, 제107조 및 제108조 제4항의

及び第108条第4項の規定を除く。)を適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4条第1項中「受刑者」とあるのは「受刑者(被勾留受刑者を除く。次項において同じ。)」と，「被勾留者」とあるのは「被勾留者(被勾留受刑者を除く。次項において同じ。)，被勾留受刑者」と，同条第2項中「被勾留者」とあるのは「被勾留者，被勾留受刑者」と，「受刑者」とあるのは「受刑者及び被勾留受刑者」と，第48条第2項中「前項の目的を達成するため」とあるのは「刑事訴訟法の規定により勾留される者としての地位を損なわない限度で，かつ，勾留される期間を考慮して可能な範囲内で前項の目的を達成するため，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とする。

第105条(勾留されていない被告人又は被疑者である受刑者)　被告人又は被疑者である受刑者であつて刑事訴訟法の規定による勾留をされていないもの(各種被収容者であつて受刑者たる地位を有するものを除く。)が弁護人等と面会し，又は弁護人等との間において信書の発受をする場合については，被勾留者の弁護人等との面会又は信書の発受の例による。

第3編　被勾留者の處遇

第1章　通　則

第106条(被勾留者の処遇の原則)　被勾留者の処遇に当たつては，刑事訴訟法の規定により勾留される者としての地位を考慮し，その逃走及び罪証の隠滅の防止並びにその防御権の尊重に特に留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107条(起居動作の時限)　刑事施設の長は，法務省令で定める基準に従い，被勾留者が起床，食事，就寝その他の起居動作をすべき時限を定め，これを被勾留者に告知するものとする。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제4조 제1항 중 '수형자'는'수형자(피구속수형자를 제외한다. 다음항에 있어서도 같다)'로, '피구속자'는 '피구속자(피구속수형자를 제외한다. 다음항에 있어서도 같다), 피구속수형자로, 동조 제2항 중 '피구속자'는 '피구속자, 피구속수형자'로, '수형자'는 '수형자 및 피구속수형자'로, 제48조 제2항 중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하여 구속되는 자로서의 지위를 해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및 구속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한다.

제105조 (拘束되어 있지 아니한 被告人 또는 被疑者인 受刑者) 被告人 또는 被疑者인 수형자로서 刑事訴訟의 규정에 의한 拘束을 당하고 있지 아니한 자(각종 被收容者로서 수형자의 地位를 가지는 자를 제외한다)가 辯護人 등과 面會하거나 辯護人 등과의 사이에서 書信을 受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피구속자의 辯護人 등과의 面會 또는 書信受發의 예에 의한다.

제3편 被拘束者의 處遇

제1장 通 則

제106조 (被拘束者의 處遇原則) 被拘束者의 處遇에 있어서는 刑事訴訟法의 규정에 의하여 拘束되는 자로서의 地位를 고려하여 그 逃走와 罪證湮滅의 防止 및 그 防禦權의 尊重에 특이 유의하여야 한다.

제107조 (起居動作의 時限) 刑事施設의 長은 法務省令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被拘束者가 起床, 식사, 취침 기타 起居動作을 해야 할 시간을 정하여 이를 피구속자에게 告知하여야 한다.

第108条（居室等）　被勾留者の居室は，罪証の隠滅を防止する上で支障がない場合に限り，単独室としないことができる。

②被勾留者の処遇は，運動，入浴又は面会の場合その他の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を除き，昼夜，居室において行う。

③被勾留者は，第1項に規定する場合でなければ，居室外においても相互に接触させてはならない。

④刑事施設の長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被勾留者がその居室において行う読書，学習，自己労作その他の活動につき援助を与えることができる

第2章　面会，信書の発受等

第109条（面会及び信書の発受）　被勾留者については，この章及び第5編第2章の規定によるほか，その面会及び信書の発受を差し止め，又は制限す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他の法令に特別の定めが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第110条（面会に関する制限）　被勾留者と弁護人等との面会の日時は，日曜日その他政令で定める日以外の日の刑事施設の執務時間内とし，面会の場所は，刑事施設の面会室（被収容者の面会に適切な構造及び設備を有する室をいう。）とする。

②前項の面会において，被勾留者が同時に面会することができる弁護人等の人数は，3人以内とする。

③刑事施設の長は，弁護人等から前2項の定めによらない面会の申出がある場合においても，当該刑事施設の管理運営上支障があるときを除き，その申出に応じなければならない。

④刑事施設の長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被勾留者の弁護人等以外の者との面会に関し，面会の相手方の人数，面会の場所，日及び時限，面会の時間及び回数その他面会の態様について，刑事施設の管理運営上必要な制限をすることができる。

제108조 (居室 등) ① 被拘束者의 居室은 罪證湮滅을 방지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單獨室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被拘束者의 處遇는 운동, 목욕, 면회의 경우 기타 法務省令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晝夜로 居室에서 행한다.

③ 피구속자는 제1항에 규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거실 밖에서도 서로 접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형사시설의 장은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구속자가 그 거실에서 행하는 讀書, 學習, 自己勞作 기타의 활동에 대해 원조를 할 수 있다.

제2장 面會, 書信受發 등

제109조 (面會와 書信受發) 被拘束者에 대해서는 이 章과 제5편 제2장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는 그 面會와 書信受發을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法令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0조 (面會에 관한 制限) ① 被拘束者와 辯護人 등의 面會日時는 일요일 기타 政令으로 정하는 날 이외의 날의 刑事施設의 執務時間內로 하고, 면회의 장소는 刑事施設의 面會室(피수용자의 면회에 적절한 構造 및 設備를 가지는 장소를 말한다)로 한다.

② 전항의 面會에서 피구속자가 동시에 면회할 수 있는 辯護人 등의 인원수는 3명 이내로 한다.

③ 刑事施設의 長은 辯護人 등으로부터 전 2항의 정함에 의하지 아니하는 面會의 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형사시설의 管理運營上 지장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신청에 응해야 한다.

④ 刑事施設의 長은 法務省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被拘束者의 辯護人 등 이외의 자와의 面會에 관하여 면회상대방의 人員数, 面會場所, 日字 및 時限, 面會時間 및 회수 기타 面會의 態様에 대하여 형사시설의 管理運營上 필요한

第111条（面会の立会い） 被勾留者の弁護人等以外の者との面会には，刑事施設の職員による立会いを行う。

第112条（面会の一時停止及び終了） 面会の立会いに当たる刑事施設の職員は被勾留者若しくは面会の相手方が第110条第4項の制限に違反する行為その他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害する行為をする場合又は被勾留者若しくは面会の相手方の発言の内容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その行為若しくは発言を制し，又はその面会を一時停止させ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面会の一時停止のため，面会の場所から被勾留者又は面会の相手方を退出させる等必要な措置を執ることができる。

1．第94条第1項第1号から第4号までに掲げる場合

2．罪証の隠滅を図るものである場合

②刑事施設の長は，前項の規定により面会が一時停止された場合において，面会を継続させることが相当でないと認めるときは，その面会を終わらせることができる。

第113条（信書に関する制限） 刑事施設の長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被勾留者の弁護人等との信書の発受に関し，被勾留者が発する信書の作成方法並びに被勾留者の発信及び受信の方法について，刑事施設の管理運営上必要な制限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刑事施設の長は，その被勾留者の防御の準備に支障を生じないよう，その制限をやむを得ない限度にとどめなければならない。

②刑事施設の長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被勾留者の弁護人等以外の者との信書の発受に関し，被勾留者が発する信書の作成方法，字数及び回数並びに被勾留者の発信及び受信の方法について，刑事施設の管理運営上必要な制限をすることができる。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제111조 (面會의 立會) 被拘束者의 辯護人 등 이외의 자와의 面會에는 刑事施設의 職員에 의한 立會를 행한다.

제112조 (面會의 一時停止 및 終了) ① 面會의 立會에 있어서 刑事施設의 직원은 被拘束者 또는 面會相對方이 제110조 제4항의 制限에 違反하는 행위 기타 형사시설의 規律 및 秩序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피구속자나 면회상대방의 發言內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行爲 또는 發言을 制止하거나 그 면회를 一時停止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면회의 일시정지를 위하여 面會場所에서 피구속자나 면회상대방을 退去시키는 등 필요한 措置를 취할 수 있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열거하는 경우
2. 罪證湮滅을 꾀하는 것일 경우

② 刑事施設의 長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面會가 一時停止된 경우에 면회를 계속시킴이 상당하지 아니하고 인정될 때에는 그 面會를 終了시킬 수 있다.

제113조 (書信에 관한 制限) ① 刑事施設의 長은 法務省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被拘束者의 辯護人 등과의 書信受發에 관하여 피구속자가 발송하는 書信의 作成方法 및 피구속자의 發信과 書信의 方法에 대하여 형사시설의 管理運營上 필요한 制限을 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刑事施設의 長은 그 피구속자의 防禦準備에 支障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그 제한을 부득이한 한도로 그쳐야 한다.

② 刑事施設의 長은 法務省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被拘束者의 辯護人 등 이외의 자와의 書信受發에 관하여 피구속자가 발송하는 書信의 作成方法, 文字数 및 回数, 그리고 피수속자의 發信과 受信方法에 대하여 형사시설의 管理運營上 필요한 制限을 가할 수 있다.

第114条（信書の検査） 被勾留者が発する信書及び受ける信書については，刑事施設の長又はその指名する職員により，その内容の検査を行う。

②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被勾留者が国又は地方公共団体の機関から受ける信書及び弁護人等から受ける信書については，その旨を確認するため必要な限度において，これを検査する。

第115条（信書の内容による差止め等） 刑事施設の長は，前条第1項の検査の結果，被勾留者が発し，又は受ける信書について，その全部又は一部が次の各号（被勾留者が弁護人等に対して発する信書にあつては，第1号から第4号まで）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その発信若しくは受信を差し止め，又はその該当箇所を削除し，若しくは抹消することができる。

1．暗号の使用その他の理由によつてその内容が理解できないものであるとき。

2．罪証の隠滅を図るものであるとき。

3．その発信又は受信によつて，刑罰法令に触れることとなり，又は刑罰法令に触れる結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き。

4．その発信又は受信によつて，逃走その他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害する結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き。

5．威迫にわたる記述又は明らかな虚偽の記述があるため，受信人を著しく不安にさせ，又は受信人に損害を被らせるおそれがあるとき。

6．受信人を著しく侮辱する記述があるとき。

7．被収容者の処遇その他刑事施設の状況に関する明らかな虚偽の記述があるとき。

②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被勾留者が国又は地方公共団体の機関に対して発する信書であつてその機関の権限に属する事項を含むもの及び被勾留者が弁護士（弁護人等である者を除く。）との間で発受する信書であつてその被勾留者に係る弁護士法第3条第1項に規定する弁護士の職務に属する事項を含むものについては，これらの事項に係る部分の全部又は一部が前項第1号から第4号まで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を除き，その発信又は受信を差し止めることができない。

제114조 (書信의 檢査) ① 被拘束者가 발송하는 書信에 대해서는 刑事施設의 長 또는 그가 指命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檢査하게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被拘束者가 國家 또는 地方公共團體의 기관으로부터 받는 書信 및 辯護人 등으로부터 받는 서신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이를 검사한다.

제115조 (書信의 內容에 의한 停止 등) ① 刑事施設의 長은 전조 제1항의 檢査結果, 피구속자가 발송하거나 받는 서신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의 各號(被拘束者가 辯護人 등에 대하여 발송하는 書信에 있어서는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發信 또는 受信을 정지하거나 그 해당 個所를 삭제 또는 말소할 수 있다.

1. 暗号의 使用 기타 理由에 의하여 그 내용을 理解할 수 없는 것일 때
2. 罪證湮滅을 企圖하는 것인 때
3. 發信 또는 受信에 의하여 刑罰法令에 抵觸되거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
4. 발신 또는 수신에 의하여 逃走 기타 형사시설의 規律과 秩序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5. 脅迫의 내용을 담은 記述 또는 명백한 虛僞의 記述이 있기 때문에 受信人을 현저히 불안하게 하거나 수신인에게 損害를 입힐 우려가 있는 때
6. 受信人을 현저히 侮辱하는 記述이 있는 때
7. 피수용자의 處遇 기타 형사시설의 狀況에 관한 명백한 虛僞의 記述이 있는 때

②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被拘束者의 國家 또는 地方公共團體의 機関에 대하여 발송하는 書信으로서 그 기관의 權限에 속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것 및 피구속자가 辯護士(변호인 등의 자를 제외한다)와의 사이에서 受發하는 書信으로서 그 피수속자에 관계되는 辯護士法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辯護士의 職務에 속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들 사항에 관계되는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發信 또는 受信을 停止할 수 없다.

③第1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前項に規定する部分は，その全部又は一部が第1項第5号から第7号まで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おいても，その該当箇所を削除し，又は抹消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116条（準用）　第100条から第102条までの規定は，被勾留者について準用する。

第117条（法務省令への委任）　この章に定めるもののほか，第111条の立会いの方法，第115条の規定による差止めに係る信書の取扱いその他被勾留者の面会及び信書の発受に関し必要な事項は，法務省令で定める。

第4編　死刑確定者等の處遇

第1章　死刑確定者の処遇

第118条（死刑確定者の処遇の原則）　死刑確定者の処遇は，その収容を確保しつつ，その者が心情の安定を得られるようにすることを旨として行うものとする。

第119条（居室等）　死刑確定者の居室は，単独室とする。

②死刑確定者の処遇は，運動，入浴又は面会の場合その他の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を除き，昼夜，居室において行う。

③死刑確定者は，前条に規定する処遇の原則に照らして有益と認められる場合を除いて，居室外においても相互に接触させないものとする。

④刑事施設の長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死刑確定者がその居室において行う読書，学習，自己労作その他の活動につき援助を与えることができる。

第120条（心情安定のための措置）　刑事施設の長は，死刑確定者に対し，必要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항에 규정하는 부분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제1항 제5부터 제7호까지의 1에 해당할 경우에도 그 해당 개소를 삭제하거나 말소할 수 없다.

제116조 (準用) 제100조에서 제102조까지의 규정은 피구속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17조 (法務省令에의 委任) 이 章에 정하는 것 이외에 제111조 의 立會方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停止에 관계되는 書信의 取扱 기타 피구속자의 面會와 書信受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성령으로 정한다.

제4편 死刑確定者 등의 處遇

제1장 死刑確定者의 處遇

제118조 (死刑確定者 處遇原則) 死刑確定者의 處遇는 그 收容을 확보하면서 그 자가 心情의 安定을 얻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19조 (居室 등) ① 死刑確定者의 居室은 단독실로 한다.

② 사형확정자의 處遇는 운동, 목욕 또는 면회의 경우 기타 法務省令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晝夜로 居室에서 한다.

③ 사형확정자는 前條에 규정하는 處遇原則에 비추어 有益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居室 밖에서도 서로 접촉시키지 말아야 한다.

④ 刑事施設의 長은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死刑確定者가 그 居室에서 행하는 讀書, 學習, 自己勞作 기타의 활동에 대해 援助를 할 수 있다.

제120조 (心情安定을 위한 措置) 刑事施設의 長은 사형확정자에 대하여 필요

に応じ，民間の篤志家の協力と援助を求め，相談助言，講話の実施その他その心情の安定に資するため適当と認められる措置を執るものとする。

第121条（面会及び信書の発受の相手方） 死刑確定者は，次に掲げる者と面会し，並びにその者に信書を発し，及びその者から信書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

1．その親族

2．婚姻関係の調整，訴訟の遂行，家計の維持その他その身分上，法律上又は業務上の重大な利害に係る用務の処理のため面談をし，又は通信をすることが必要な者

3．面会又は信書の発受により死刑確定者の心情の安定に資すると認められる者その他の刑事施設の長が相当と認める者

第122条（面会の立会い） 死刑確定者の面会には，刑事施設の職員による立会いを行う。

②刑事施設の長は，死刑確定者の正当な利益の保護のため適当と認める場合には，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同項の立会いを行わないことができる。

第123条（準用等） 第93条，第94条（第1項第5号を除く。）第97条，第98条（第1項ただし書を除く。）第99条（第1項第7号を除く。）第100条から第102条まで及び第107条の規定は死刑確定者の処遇について，第105条の規定は被告人又は被疑者である死刑確定者であつて刑事訴訟法の規定による勾留をされていないものの処遇について準用する。

②刑事訴訟法の規定により勾留されている死刑確定者（以下「被勾留死刑確定者」という。）については，死刑確定者に関するこの法律の規定（前条及び前項の規定を除く。）及び被勾留者に関するこの法律の規定（第108条 第1項及び第2項の規定を除く。）を適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4条第2項中「被勾留者」とあるのは，「被勾留者（被勾留死刑確定者を除く。）」とする。

에 따라 民間篤志家의 협력과 원조를 구하고, 相談助言, 講話의 실시 기타 그 心情的 安定에 기여하기 위하여 적당하다고 認定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1조 (面會와 書信受發의 相對方) 死刑確定者는 다음에 열거하는 자와 面會하고 아울러 그 자에게 書信을 발송하거나 그 자로부터 서신을 받을 수 있다.

1. 그 親族
2. 婚姻関係의 調整, 訴訟의 遂行, 家計의 維持 기타 그 신분상, 법률상 또는 업무상의 중대한 利害에 관계되는 用務의 處理를 위하여 面談을 하거나 通信을 할 필요가 있는 자.
3. 面會 또는 書信受發에 의하여 사형확정자의 心情安定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자 기타 刑事施設의 長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2조 (面會의 立會) ① 死刑確定者의 面會에는 형사시설의 직원이 立會한다.

② 형사시설의 장은 死刑確定者의 정당한 利益保護를 위하여 적당하다고 認定할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의 立會를 아니할 수 있다.

제123조 (準用 등) ① 제93조, 제94조(제1항 제5조를 제외함), 제97조, 제98조(제1항 단서를 제외함), 제99조(제1항 제7호를 제외함), 제100조에서 제102조까지 및 제107조의 규정은 死刑確定者의 處遇에 대하여, 제105조의 규정은 被告人 또는 被疑者인 사형확정자로서 刑事訴訟法의 규정에 의해 拘束되고 있지 아니한 자의 處遇에 대하여 각각 준용한다.

② 刑事訴訟法의 규정에 의하여 拘束되어 있는 死刑確定者(이하'피구속 사형확정자'과 한다)에 대해서는 사형확정자에 관한 이 법률의 규정(전조 및 전조의 규정을 제외한다) 및 被拘束者에 관한 이 법률의 규정(제10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제4조 제2항 중'피구속자'는 '피구속자(피구속 사형확정자를 제외한다)'로 한다.

第124条（法務省令への委任）　この章に定めるもののほか，死刑確定者とその面会の相手方との関係及び面会の目的を確認するための手続，第122条第1項の立会いの方法，前条第1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99条の規定による差止めに係る信書の取扱いその他死刑確定者の面会及び信書の発受に関し必要な事項は法務省令で定める。

第2章　各種被収容者の処遇

第125条（各種被収容者の処遇）　各種被収容者（次項に規定する者を除く。）の処遇については，この法律又は他の法令に特別の定めがあるもののほか，その性質に反しない限り，この法律中の被勾留者に関する規定を準用する。

②各種被収容者であつて受刑者たる地位を有するものの処遇については，被勾留受刑者の例によるものとし，各種被収容者であつて死刑確定者たる地位を有するものの処遇については，被勾留死刑確定者の例によるものとする。

第5編　雑　則

第1章　領　置

第126条（領置）　刑事施設の長は，被収容者が収容される際携帯した現金及び物品（以下この章において「金品」という。）又は次条の規定により許されて交付を受けた金品その他の収容中に取得した金品を領置する。ただし，その物品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領置しない。

1．保管に不便なものであるとき。

제124조 法務省令에의 委任) 이 章에 정하는 것 외에 死刑確定와 그 面會相對方의 관계 및 면회의 목적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 제122조 제1항의 立會方法, 전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停止에 관계되는 書信의 取扱, 기타 사형확정자의 面會 및 書信의 수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法務省令으로 정한다.

제2장 各種 被收容者의 處遇

제125조 (各種 被收容者의 處遇) ① 각종 被收容者(다음 항에서 규정하는 자를 제외함)의 處遇에 대하여는 이 법률 또는 타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것 외에는 그 性質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법률 중의 被拘束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각종 被收容者로서 수형자의 地位를 가지는 자의 處遇에 대해서는 被拘束受刑者의 예에 따라야 하며 각종 피수용자로서 死刑確定者의 地位를 가지는 자의 처우에 대하여는 피구속 사형확정자의 예에 따른다.

제5편 雜 則

제1장 領 置

제126조 (領置) ① 刑事施設의 長은 피수용자가 收容될 때 휴대하였던 現金과 物品(이하 이 장에서'金品'이라 한다) 또는 다음 조의 규정에 의하여 許容되어 交付받은 金品 기타 收容 중에 취득한 金品을 領置한다. 그러나 그 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영치하지 아니한다.

1. 보관에 불편한 것인 때

2．腐敗し，又は滅失するおそれがあるものであるとき。

3．危険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ものであるとき。

4．価値のないものであるとき。

②前項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物品について被収容者が親族その他の者への交付等相当の処分をしない場合には，刑事施設の長は，これを売却してその代金を領置する。ただし，売却す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は，廃棄することができる。

③第1項の規定により物品を領置すべき場合において，その被収容者の物品が著しく多量であるため刑事施設における被収容者の物品の適正な管理に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きは，刑事施設の長は，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その全部又は一部を領置しないことができる。

④第2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り領置しない物品について準用する。

第127条（差入物の取扱い） 被収容者以外の者が，書籍等その他の物品でこの法律の規定に基づき自弁により用いることができることとされるもの若しくは釈放の際に必要と認められる物品（次条において「自弁物品等」という。）又は現金を被収容者に交付するため刑事施設に持参し，又は送付した場合には，刑事施設の長は，他の法律に特別の定めがある場合を除き，被収容者がその交付を受けることを許すものとする。ただし，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は，これを許さない。

1．その金品を持参し，又は送付した被収容者以外の者（以下この条において「差入人」という。）の氏名又は居所が明らかでないとき。

2．その金品の交付を受けることを許すことにより，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害するおそれがあるとき（受刑者にあつては，差入人が親族以外の者である場合において，その受刑者の矯正処遇の適切な実施に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きを含む。）

3．その物品が前条第1項ただし書又は第3項の規定により領置しないものであるとき。

2. 부패하거나 멸실될 우려가 있는 것인 때
3.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인 때
4. 가치가 없는 것인 때

② 전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物品에 대하여 被收容者가 親族 기타의 자에 대한 交付 등 상당한 處分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刑事施設의 長은 이를 賣却하여 그 代金을 領置한다. 그러나 매각할 수 없는 것은 廢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物品을 領置할 경우에 그 被收容者의 물품이 현저히 다량이기 때문에 刑事施設에서의 피수용자의 물품의 適正管理에 支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刑事施設의 長은 동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영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치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27조 (差入物의 取扱) ① 被收容者 이외의 자가 書籍 등 기타 物品으로서 이 법률 규정에 기하여 自辨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것, 또는 釋放時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다음 조에서 '自辨物品 등'이라 한다) 또는 現金을 피수용자에게 交付하기 위하여 刑事施設에 持參하거나 送付한 경우에 형사시설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수용자에게 그 교부를 허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그 金品을 持參하거나 送付한 피수용자 이외의 자(이하 이 조에서'差入人'이라 한다)의 성명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2. 金品의 交付를 허가함으로써 형사시설의 規律 및 秩序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수형자에게 있어서는 差入人이 親族 이외의 자인 경우에 그 수형자의 矯正處遇의 적절한 실시에 支障을 招來할 우려가 있는 때를 포함한다.)
3. 물품이 전조 제1항 단서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치하지 아니하는 것인 때

②前項の規定により交付を受けることを許さない金品又は被収容者が交付を受けることを拒んだ金品については，差入人にその旨を通知して，その金品を引き取るよう求めるものとする。

③刑事訴訟法第499条の規定は，前項の金品を差入人に返還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第1項中「検察官」とあるのは，「刑事施設の長」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128条（領置金の使用等）　刑事施設の長は，領置されている現金（以下「領置金」という。）により自弁物品等を購入すること又は領置金をこの法律の規定に基づき自ら負担すべき費用に充てることを被収容者が申請した場合には，購入すべき物品が第126条第1項ただし書又は第3項の規定により領置しないものである場合その他刑事施設における被収容者の物品の適正な管理に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場合を除き，領置を解いて，その使用を許すものとする。

②刑事施設の長は，領置されている金品（以下「領置物」という。）を親族その他の者に交付することを被収容者が申請した場合には，領置を解いて，これを許すことができる。

第129条（領置物の交付）　領置物は，釈放の際，被収容者に交付する。

第130条（死亡者の遺留物）　被収容者が死亡した場合において，領置物その他の刑事施設に遺留された金品（以下「遺留物」という。）があるときは，法務省令で定める遺族その他の者に対し，その申請に基づき，これを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その遺留物が，腐敗し，若しくは滅失するおそれがあるもの又は価値のないものであるときは，交付の申請前に廃棄することができる。

②被収容者の死亡の日から起算して6月を経過する日までに前項の規定による交付の申請がないときは，その者の遺留物は，同日に国庫に帰属する。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交付를 許可받지 못한 金品 또는 피수용자가 交付를 거부한 金品에 대하여는 差入人에게 그 뜻을 通知하고 그 금품을 引取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③ 刑事訴訟法 제499조의 규정은 전항의 金品을 差入人에게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조 제1항 중 '檢察官'은 '刑事施設의 長'으로 바꾸어 읽는다.

제128조 (領置金의 使用 등) ① 형사시설의 장은 領置되어 있는 現金(이하'領置金'이라 한다)에 의해 自辨物品 등을 구입하거나 또는 領置金을 이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충당할 것을 被收容者가 申請한 경우에는 구입해야 할 물품이 제126조 제1항 단서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영치하지 아니하는 것일 경우, 기타 刑事施設에서의 피수용자 물품의 적정한 管理에 支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치를 해제하여 그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형사시설의 장은 領置되어 있는 金品(이하'영치물 '이라 한다)을 親族 기타의 자에게 交付할 것을 피수용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領置를 解除하고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29조 (領置物의 交付) 영치물은 釋放時에 피수용자에게 交付한다.

제130조 (死亡者의 遺留物) ① 피수용자가 死亡한 경우에 領置物 기타 형사시설에 遺留된 金品(이하'遺留物'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法務省令으로 정하는 遺族, 기타의 자에 대하여 그 申請에 기인하여 이를 交付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유류물이 腐敗하거나 滅失될 우려가 있는 것 또는 價置가 없는 것인 때에는 交付 申請前에 폐기할 수 있다.

② 피수용자의 死亡日로부터 起算하여 6월을 경과하는 날까지 전항의 규정에 의한 交付의 申請이 없는 때에는 그 자의 遺留物은 동일로 國庫에 귀속한다.

第131条（逃走者等の遺留物） 被収容者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の場合に該当しかつ，その者の遺留物が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各号に定める日から起算して6月を経過する日までに，その者の居所が明らかとならず，その者からその遺留物の交付を求める申出がなく，又はその交付に要する費用の提供がないときは，その遺留物は，同日に国庫に帰属する。

1．逃走したとき。逃走した日

2．第47条第2項の規定により解放された後速やかに同条第3項に規定する場所に出頭しなかつたとき。解放された日

3．外部通勤作業における通勤又は第85条の規定による外出の場合において，その通勤又は外出の日のうちに当該刑事施設に帰着しなかつたとき。その通勤又は外出の日

4．第86条の規定による外泊の場合において，外泊の期間の末日までに当該刑事施設に帰着しなかつたとき。その外泊の期間の初日

第132条（法廷釈放者の遺留物） 第155条第2項の規定により刑事施設への同行を求めたにもかかわらず釈放された者が同行せず，かつ，その者の遺留物がある場合において，釈放の日から起算して6月を経過する日までに，その者からその遺留物の交付を求める申出がなく，又はその交付に要する費用の提供がないときは，その遺留物は，同日に国庫に帰属する。

第133条（法務省令への委任） この章に定めるもののほか，領置，差入れ，領置金の使用及び領置物の交付に関する手続並びに遺留物の取扱手続に関し必要な事項は，法務省令で定める。

第2章 賞 罰

第134条（褒賞） 刑事施設の長は，被収容者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

제131조 (逃走者 등의 遺留物) 被收容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고 또 그자의 遺留物이 있는 경우에 당해 각호에 정하는 날로부터 起算하여 6월을 경과하는 날까지 그자의 居所가 분명하지 않으며 그 자로부터 그 유류물의 交付를 요구하는 申請이 없거나 그 교부에 필요한 費用의 提供이 없는 때에는 그 유류물은 동일로 국고에 귀속한다.

1. 逃走한 때, 도주한 날
2.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釋放된 후 신속히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장소에 出席하지 아니하는 때, 석방된 날
3. 外部通勤作業에 있어서의 通勤 또는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外出의 경우에 그 통근 또는 외출일 중에 당해 刑事施設로 돌아오지 아니한 때. 그 通勤 또는 外出日
4.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外泊의 경우에 外泊期間의 末日까지 당해 刑事施設로 돌아오지 아니한 때. 그 외박기간의 첫날

제132조 (法定釋放者의 遺留物)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刑事施設에의 同行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釋放된 者가 동행하지 아니하고 또 그 자의 遺留物이 있는 경우에 釋放日로부터 起算하여 6월을 경과하는 날까지 그 자로부터 그 유류물의 교부를 요구하는 신청이 없거나 그 교부에 필요한 費用의 提供이 없는 때에는 그 유류물은 동일로 國庫에 귀속한다.

제133조 (法務省令에의 委任) 이 장에 정하는 것 외에 領置, 差入, 領置金의 使用 및 領置物의 交付에 관한 절차 그리고 遺留物의 取扱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法務省令으로 정한다.

제2장 賞 罰

제134조 (褒賞) 刑事施設의 長은 被收容者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場合に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賞金又は賞品の授与その他の方法により褒賞を行うことができる。

1．人命を救助したとき。

2．第46条第1項に規定する応急の用務に服して，功労があつたとき。

3．前2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賞揚に値する行為をしたとき。

第135条（懲罰） 刑事施設の長は，被収容者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の行為をした場合には，これに懲罰を科することができる。

1．逃走し，暴行し，他人の物を損壊し，その他刑罰法令に触れる行為をすること。

2．刑事施設の職員の職務の執行を妨げること。

3．自己に危害を加えること。

4．受刑者にあつては，正当な理由がなく，作業を行わず，又は教科指導等を受けないこと。

5．遵守事項を遵守しないこと。

6．第38条第2項の規定に基づき刑事施設の職員が行つた指示に従わないこと

7．前各号に掲げる行為を準備し，共謀し，あおり，唆し，又は援助すること

第136条（懲罰の種類） 懲罰の種類は，次のとおりとする。

1．戒告

2．第64条の規定による作業の10日以内の停止

3．第14条の規定による自弁の衣類その他の物品の使用又は摂取の一部 又は全部の15日以内の停止

4．書籍等の閲覧の一部又は全部の30日以内の停止

5．報奨金支給予定額の3分の1以内の削減

6．30日以内（懲罰を科する時20歳以上の者につき，特に情状が重い場合には，60日以内）の閉居

에는 法務省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賞金 또는 賞品의 授與 기타 방법에 의하여 褒賞을 할 수 있다.

1. 人命을 救助한 때
2. 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應急의 用務에 功勞가 있었을 때
3. 전 2호에 열거하는 것 외에 칭찬할 만한 행위를 한 때

제135조 (懲罰) 刑事施設의 장은 피수용자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懲罰을 과할 수 있다.

1. 逃走, 폭행, 타인의 物件 損壞, 기타 刑罰法令에 저촉하는 행위를 하는 것.
2. 형사시설직원의 職務執行을 방해하는 것.
3. 자기에게 危害를 가하는 것.
4. 수형자에 있어서는 正當한 理由없이 작업을 행하지 아니하거나 敎科指導 등을 받지 아니하는 것.
5. 遵守事項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것.
6.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시설직원이 행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것.
7. 전 각호에 열거하는 행위를 準備, 共謀, 煽動, 敎唆하거나 원조하는 것.

제136조 (懲罰의 種類) ①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戒告
2.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作業의 10일 이내의 停止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自辨衣類 기타 물품의 使用 또는 攝取의 15일 이내의 일부 또는 전부의 停止
4. 書籍 등 閱覽의 30일 이내의 일부 또는 전부의 停止
5. 報奬金 지급예정액의 3분의1 이내의 削減
6. 30일 이내 (懲罰을 과할 때 20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특히 情狀이 重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의 閉居

②懲罰は，２種類以上を併せて科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前項第１号の懲罰は他の懲罰と，同項第６号の懲罰（以下この章において「閉居罰」という。）は同項第５号以外の懲罰と併せて科することができない。

③被告人又は被疑者である被収容者については，第１項第４号の懲罰を科する場合においても，防御の準備に必要と認められる書籍等の閲覧の停止をしてはならない。

第137条（閉居罰の内容）　閉居罰においては，次に掲げる行為を停止し，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刑事施設の長が特に指定した居室内において謹慎させる。この場合において，受刑者には，謹慎の趣旨に反しない限度において，作業を行わせ，又は教科指導等を受けさせる。

１．第14条の規定による自弁の衣類その他の物品の使用又は摂取

２．第31条第１項の規定による宗教上の儀式行事への参加

３．書籍等の閲覧

４．面会及び信書の発受

②閉居罰を科せられた被収容者については，その健康の保持に支障を生じない限度において，法務省令で定める基準に従い，運動を制限する。

③閉居罰を科せられた被収容者が被告人若しくは被疑者である場合又はその者の訴訟の準備その他の権利の保護の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られる場合には，弁護人等との面会及び信書の発受その他の権利の保護に必要な面会及び信書の発受並び権利の保護に必要な書籍等の閲覧を停止してはならない。

第138条（懲罰の一般基準）　懲罰は，懲罰を科せられるべき行為を抑制するのに必要な限度を超えてはならない。

②懲罰を科するに当たつては，第135条各号に掲げる行為（以下この章において「反則行為」という。）をした被収容者の年齢，心身の状態及び行状，反則行為の軽重，動機及び刑事施設の運営に及ぼした影響，反則行為後におけるその被収容者の態度，その被収容者が受刑者である場合には懲罰がその者の改善更生に及ぼす影響その他の事情を考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 懲罰은 두 종류 이상을 併科할 수 있다. 그러나 전항 제1호의 징벌은 다른 징벌과, 동항 제6호의 징벌(이하 이 장에서'閉居罰'이다 한다)은 동항 제5호 이외의 징벌과 병과할 수 없다.

③ 被告人 또는 被疑者인 피수용자에 대해서는 제1항 제4호의 懲罰을 과할 경우에도 防禦의 準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書籍 등의 閱覽을 停止해서는 아니된다.

제137조 (閉居罰의 內容) ①閉居罰에 있어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行爲를 停止하고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사시설의 장이 특히 指定한 居室內에서 謹愼시킨다. 이 경우에 수형자에게는 謹愼의 趣旨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作業을 하게 하거나 敎科指導 등을 받게 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自辨衣類 기타 물품의 使用 또는 攝取
2.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宗敎上의 의식행사 참여
3. 書籍 등의 閱覽
4. 面會 및 書信受發

② 閉居罰을 받은 피수용자에 대해서는 그 健康의 維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法務省令으로 정하는 基準에 따라 운동을 제한한다.

③ 閉居罰을 받은 피수용자가 被告人 또는 被疑者인 경우 또는 그 자의 訴訟準備 기타 權利의 保護를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辯護人 등과의 面會 및 書信受發 기타 권리의 보호에 필요한 면회 및 서신수발 그리고 권리의 보호에 필요한 서적 등의 열람을 정지해서는 아니된다.

제138조 (懲罰의 一般基準) ① 懲罰은 징벌을 받아야 할 행위를 抑制하는 데에 필요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② 懲罰을 과함에 있어서는 제135조 각호에 열거하는 행위(이하 이 장에서 '反則行爲'라 한다)를 한 피수용자의 年齡, 心身의 狀態 및 行狀, 反則行爲의 輕重, 動機 및 형사시설의 운영에 미친 영향, 反則行爲 후에 있어서의 그 피수용자의 태도, 그 피수용자가 受刑者인 경우에는 懲罰이 그 자의 改善更生에 미치는 영향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第139条(懲罰を科する手続等) 刑事施設の長は，被収容者が反則行為をした疑いがあると思料する場合には，反則行為の有無及び前条第2項の規定により考慮すべき事情について，できる限り速やかに調査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②前項の調査のため必要がある場合に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反則行為をした疑いのある被収容者を他の被収容者から隔離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その者の居室は単独室とし，その者の処遇は，運動，入浴又は面会の場合その他の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を除き，昼夜，居室において行う。

③懲罰を科する場合には，あらかじめ，反則行為をした疑いのある被収容者に事実の要旨を告げた上，弁解の機会を与えなければならない。

④被収容者が反則行為の後に被収容者としての地位を異にするに至つたときは，その者に対しては，反則行為の時に科することのできた種類の懲罰に限り，これを科し，又は執行することができる。

第140条(懲罰の執行延期等) 刑事施設の長は，懲罰を科せられた被収容者について，反省の情が著しい場合その他相当の理由がある場合には，その懲罰の執行を延期し，又はその全部若しくは一部の執行をしないことができる。

第141条(反則行為に係る物の国庫への帰属) 刑事施設の長は，被収容者が反則行為をした場合において，反則行為を構成し，その手段に供し，又はその結果取得した物をその者に所有させることにより，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の維持上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きは，その物を国庫に帰属させることができる。

②第139条第3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国庫への帰属について準用する

第142条(法務省令への委任) この章に定めるもののほか，懲罰を科する手続その他の懲罰に関する手続及び前条の規定による国庫への帰属の手続に関し必要な事項は，法務省令で定める。

제139조 (懲罰을 과하는 節次 등) ① 형사시설의 장은 被收容者가 反則行爲를 한 嫌疑가 있다고 사료될 경우에는 反則行爲의 有無 및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려해야 할 사정에 대하여 가능한 한 신속히 조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調査를 위하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法務省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反則行爲를 한 혐의가 있는 被收容者를 다른 피수용자로부터 隔離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자의 居室은 單獨室로 하고 그 자의 處遇는 운동, 목욕 또는 면회의 경우 기타 法務省令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晝夜로 居室에서 행한다.
③ 懲罰을 과할 경우에는 미리 反則行爲를 한 嫌疑가 있는 피수용자에게 事實의 要旨를 알린 후에 辯明의 機會를 주어야 한다.
④ 피수용자가 反則行爲 후에 피수용자로서의 地位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그 자에 대해서는 반칙행위시에 과할 수 있었던 種類의 懲罰에 한하여 이를 과하거나 執行할 수 있다.

제140조 (懲罰의 執行延期 등) 刑事施設의 長은 懲罰이 과하여진 피수용자에 대하여 反省의 情이 현저한 경우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懲罰의 執行을 延期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의 執行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1조 (反則行爲에 관계되는 물건의 國庫歸屬) ① 형사시설의 장은 被收容者가 反則行爲를 한 경우에 반칙행위를 구성하고 그 手段에 提供되거나 그 결과 取得한 물건을 그 자에게 所有시킴으로써 형사시설의 規律 및 秩序의 維持上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을 國庫에 歸屬시킬 수 있다.
② 제139조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國庫歸屬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42조 (法務省令에의 委任) 이 章에 정하는 것 외에 懲罰을 과하는 節次 기타 징벌에 관한 절차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한 國庫에의 歸屬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法務省令으로 정한다.

第3章　審査の申請及び苦情の申出

第1節　審査の申請

第143条（審査の申請）　被収容者は，次に掲げる刑事施設の長の措置に不服があるときは，法務大臣に対し，審査の申請を行うことができる。

1．第14条第2項の規定による自弁の衣類,寝具その他の物品の使用又は摂取を許さない処分

2．第25条第1項の規定による指名医の診療を受けることを許さない処分 又は同条第4項の規定による指名医の診療の中止

3．第30条の規定による宗教上の行為の禁止又は制限

4．第33条，第34条又は第35条の規定による書籍等の閲覧に関する禁止又は制限

5．第40条第1項若しくは第2項の規定による隔離 又は同条第3項ただし書の規定による隔離期間の更新

6．第76条第2項（第46条第2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障害手当金の支給又は不支給

7．第96条，第97条若しくは第99条（第123条第1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113条又は第115条（第125条第1項において 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信書の発受に関する禁止，差止め又は制限

8．第121条第1号又は第2号に掲げる者との信書の発受をさせない処分

9．第128条第1項の規定による領置金の使用又は同条第2項の規定による領置物の交付を許さない処分

10．第135条の規定による懲罰

11．第141条第1項に規定する物を国庫に帰属させる処分

②審査の申請は，審査の申請を行う被収容者（以下この章において「申請人」

제3장 審査의 申請 및 苦衷의 申告

제1절 審査의 申請

제143조 (審査의 申請) ① 被收容者는 다음에 열거하는 刑事施設의 長의 조치에 不服이 있을 때에는 法務大臣에 대하여 審査를 申請할 수 있다.

1.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自辨衣類, 침구 기타 물품의 使用 또는 攝取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처분
2.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指名醫의 診療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처분 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의 진료 중지
3.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宗教上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4. 제33조,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書籍 등의 閱覽에 관한 금지 또는 제한
5. 제4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隔離 또는 동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隔離期間의 更新
6. 제76조 제2항(제46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의한 障害手當金의 支給 또는 不支給
7. 제96조, 제97조 또는 제99조(제123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제113조 또는 제115조(제125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의한 書信受發에 관한 금지, 정지 또는 제한
8. 제121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열거하는 자와의 書信受發을 시키지 아니하는 처분
9.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領置金의 使用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領置物의 交付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처분
10.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懲罰
11. 제141조 제1항에 규정하는 물건을 國庫에 歸屬시키는 處分

② 審査의 申請은 심사를 신청하는 被收容者(이하 이 장에서'신청인'이라

という。)が自ら書面(以下この章において「審査申請書」という。)を作成し,封をした上,当該刑事施設の長に提出することによつて行う。

③刑事施設の長は,審査申請を受理したときは,速やかに,これを法務大臣に送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144条(審査の申請期間) 審査の申請は,当該措置のあつたことを知つた日の翌日から起算して30日以内に行わなければならず,当該措置のあつた日の翌日から起算して1年を経過したときは,行うことができない。

第145条(執行の停止等) 審査の申請は,当該措置の効力若しくは執行又は手続の続行を妨げない。

②法務大臣は,審査の申請を受理した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職権で,当該措置の効力若しくは執行又は手続の続行の全部又は一部の停止その他の措置を執ることができる。

第146条(裁決) 審査の申請が,第144条に定める審査の申請を行うことができる期間の経過後に行われたものであるとき,第143条第1項各号に掲げる事項以外の事項について行われたものであるとき,その他不適法であるときは,法務大臣は,裁決で,その審査の申請を却下する。

②審査の申請が理由がないときは,法務大臣は,裁決で,その審査の申請を棄却する。

③審査の申請が理由があるときは,法務大臣は,審査の申請に係る措置について,当該刑事施設の長に対し,その全部又は一部の取消し,撤廃,変更その他の是正措置を執ることを命ずるとともに,裁決で,その旨を宣言する。

④裁決は,書面で行い,かつ,理由を付するものとし,裁決の告知は,裁決書の謄本を申請人に交付することによつて行う。

第147条(不利益取扱いの禁止) 刑事施設の職員は,被収容者が審査の申請を行つたことを理由として,その者に対し不利益な取扱いをしてはならない。

한다)가 직접 書面(이하 이 장에서'審査申請書'라 한다)을 작성하여 봉한 후 당해 刑事施設의 長에게 제출함으로써 행한다.

③ 형사시설의 장이 審査申請書를 修理한 때에는 신속히 이를 法務大臣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44조 (審査의 申請期間) 審査의 申請은 당해 措置가 있은 것을 안 날의 다음날부터 起算하여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당해 조치가 있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년을 경과한 때에는 행할 수 없다.

제145조 (執行의 停止 등) ①審査의 申請은 당해 조치의 效力이나 執行 또는 節次의 續行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 法務大臣은 심사의 신청을 受理한 경우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職權으로 당해 措置의 效力이나 執行 또는 節次의 續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기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6조 (裁決) ① 審査의 申請이 제144조에 정하는 審査申請期間의 경과 후에 행하여진 것인 때, 제143조 제1항의 각호에 열거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인 때, 기타 부적법한 때에는 法務大臣은 裁決로 그 심사의 신청을 却下한다.

② 審査의 申請이 이유가 없는 때에는 法務大臣은 裁決로 그 審査申請을 棄却한다.

③ 審査의 申請이 理由가 있을 때에는 法務大臣은 심사의 신청에 관계되는 조치에 관하여 당해 형사시설의 장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取消, 撤廢, 變更 기타 是正措置를 취할 것을 명함과 동시에 裁決로 그 趣旨를 선언한다.

④ 裁決은 書面으로 하고 理由를 붙여야 하며 裁決의 告知는 재결서의 謄本을 신청인에게 交付함으로써 한다.

제147조 (不利益한 取扱의 禁止) 刑事施設의 직원은 被收容者가 심사의 신청을 한 것을 이유로 하여 그 자에 대하여 不利益한 取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48条（法務省令への委任）　この節に定めるもののほか，審査申請書の記載事項及び作成方法，審査の申請の補正，調査，審査の申請の取下げその他の審査の申請の手続に関し必要な事項は，法務省令で定める。

第2節　苦情の申出

第149条（刑事施設の長に対する苦情の申出）　被収容者は，自己に対する刑事施設の長の措置（第143条第1項各号に掲げるものを含む。以下この節において同じ。）その他自己が受ける処遇について，当該刑事施設の長に対し，口頭又は書面で，苦情の申出を行うことができる。

第150条（監査官に対する苦情の申出）　被収容者は，自己に対する刑事施設の長の措置その他自己が受ける処遇について，第6条の規定により刑事施設の実地監査を行う職員（以下この条において「監査官」という。）に対し，口頭又は書面で，苦情の申出を行うことができる。

②口頭による苦情の申出があつたときは，監査官は，被収容者に面接し，その内容を聴取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③前項の規定による面接をするに当たつては，監査官は，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の維持の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場合その他特別の理由がある場合を除き当該刑事施設の職員を立ち会わせてはならない。

④書面による苦情の申出は，苦情の申出を行う被収容者が自ら作成し，封をした書面を当該刑事施設の長を経由して提出することによつて行う。

第151条（法務大臣に対する苦情の申出）　被収容者は，自己に対する刑事施設の長の措置その他自己が受ける処遇について，法務大臣に対し，書面で，苦情の申出を行うことができる。

②前条第4項の規定は，前項の苦情の申出について準用する。

제148조 (法務省令에의 委任) 이 절에 정하는 것 외에 審査申請書의 記載事項 및 作成方法, 심사신청의 補定, 조사, 심사신청의 取下 기타 심사의 申請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성령으로 정한다.

제2절 苦衷의 申告

제149조 (刑事施設의 長에 대한 苦衷의 申告) 被收容者는 자기에 대한 刑事施設의 長의 措置(제143조 제1항 각호에 열거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기타 自己가 받는 處遇에 대하여 당해 형사시설의 장에 대하여 口頭 또는 書面으로 苦衷의 申告를 할 수 있다.

제150조 (監査官에 대한 苦衷의 申告) ① 被收容者는 자기에 대한 刑事施設의 長의 措置 기타 自己가 받는 處遇에 관하여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시설의 實地監査를 행하는 職員(이하 이 조에서'감사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苦衷의 申告를 행할 수 있다.

② 口頭에 의한 苦衷의 申告가 있은 때에는 監査官은 피수용자와 面接하여 그 내용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面接을 함에 있어서 監査官은 형사시설의 規律 및 秩序의 維持를 위하여 필요한 있다고 認定될 경우 기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刑事施設의 職員을 입회시켜서는 아니된다.

④ 書面에 의한 苦衷의 申告는 고충의 신고를 행하는 피수용자가 직접 작성하고 封緘한 書面을 당해 형사시설의 장을 경유하여 제출함으로써 한다.

제151조 (法務大臣에 대한 苦衷의 申告) ① 被收容者는 자기에 대한 刑事施設의 長의 조치 기타 자기가 받는 處遇에 관하여 法務大臣에게 서면으로 苦衷의 申告를 할 수 있다.

② 전조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苦衷申告에 대하여 準用한다.

第152条(準用) 第147条の規定は，この節で定める苦情の申出について準用する。

第153条(法務省令への委任) この節に定めるもののほか，苦情の申出の手続，処理の方法その他苦情の申出に関し必要な事項は法務省令で定める。

第4章 釈 放

第154条(釈放時限) 受刑者の釈放は，刑期の終了による場合その他の釈放すべき日があらかじめ定められている場合はその日の午前中に，不定期刑の終了による場合は犯罪者予防更生法(昭和24年法律第142号)第48条第3項の通知が刑事施設に到達した日の翌日の午前中に，政令で行われる恩赦による場合であつて，当該恩赦に係る政令の規定の施行の日が釈放すべき日となる場合はその日のうちに，その他の場合は特赦状その他の釈放の根拠となる文書が刑事施設に到達した時から10時間以内に，できる限り速やかに行う。

第155条 被告人である被勾留者の勾留の期間の満了による釈放は，その期間の満了後できる限り速やかに行う。

②刑事訴訟法第345条の裁判の告知があつたため同条の規定により勾留状が効力を失つた場合において，被勾留者が公判廷にあるときは，その者の釈放は，直ちにその場で行う。この場合において，貸与物品の返還を受け，領置物を交付し，その他釈放に付随する措置を執る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その者に刑事施設への同行を求め，又はこれを許すことができる。

③前2項の釈放以外の被勾留者の釈放は，他の法令に特別の定めがある場合を除き、検察官の指揮又は通知を受けた後できる限り速やかに行う。

제152조 (準用) 제147조의 규정은 이 절에서 정하는 고충신고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53조 (法務省令에의 委任) 이 절에 정하는 것 외에 고충의 신고절차, 처리방법 기타 고충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성령으로 정한다.

제4장 釋 放

제154조 (釋放時限) 수형자의 釋放은 刑期의 終了에 의한 경우 기타 釋放하여야 할 날이 미리 정하여져 있는 경우는 그 날의 오전 중에 不定期刑의 終了에 의한 경우는 犯罪者 豫防更生法(1949년 법률 제142조) 제48조 제3항의 통지가 刑事施設에 도달한 날의 다음날 오전중에, 政令으로 행해지는 書面에 의한 경우로서 당해 赦免에 관계되는 政令規定의 施行日이 석방해야 할 날로 되는 경우는 그 날중에, 기타의 경우는 特赦狀 기타 釋放의 근거가 되는 文書가 刑事施設에 도달한 때로부터 10시간 이내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행한다.

제155조 ① 被告人인 피구속자의 拘束期間 滿了에 의한 釋放은 그 期間滿了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행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裁判의 告知가 있었기 때문에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拘束狀이 효력을 잃은 경우에 피구속자가 公判廷에 있는 때에는 그 자의 釋放은 즉시 그곳에서 행한다. 이 경우에 貸與物品의 반환을 받고 領置物을 交付하고 기타 석방에 부수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刑事施設에의 同行을 구하거나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석방 이외의 被拘束者의 釋放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檢察官의 指揮 또는 通知를 받은 후 가능한 한 신속히 행한다.

第156条　各種被収容者の釈放は，他の法令に特別の定めがある場合を除き，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速やかに行う。

第157条（傷病による滞留）　刑事施設の長は，釈放すべき被収容者が重い傷病により刑事施設内において医療を受けている場合において，釈放によつてその生命に危険が及ぶおそれがあるとき，又はその健康に回復し難い重大な障害が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きは，その者の希望により，一時，刑事施設にとどまることを許すことができる。

②前項の規定により刑事施設にとどまる者の処遇については，その性質に反しない限り，この法律中の被勾留者に関する規定を準用する。

第158条（帰住旅費等の支給）　釈放される被収容者に対しては，その帰住を助けるため必要な旅費又は衣類を支給することができる。

第159条（法務省令への委任）　この章に定めるもののほか，釈放の手続に関し必要な事項は，法務省令で定める。

第5章　死　亡

第160条（死亡の通知）　刑事施設の長は，被収容者が死亡した場合に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死亡の原因及び日時並びに支給又は交付すべき作業報奨金，死亡手当金又は遺留物があるときはその旨を遺族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161条（死体に関する措置）　遺族又は知人等への被収容者の死体の引渡しその他死体に関する措置については，他の法令の規定によるほか，法務省令で定める。

제156조 각종 被收容者의 釋放은 他法令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政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히 행한다.

제157조 (傷病에 의한 滯留) ① 형사시설의 장은 釋放하여야 할 被收容者가 중한 傷病으로 인하여 형사시설내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 석방으로써 그 生命에 危險이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그 건강에 회복곤란한 중대한 障害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자의 希望에 따라 일시 刑事施設에 滯留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刑事施設에 滯留하는 자의 處遇에 대하여는 그 性質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법률 중의 被拘束者에 관한 규정을 準用한다.

제158조 (歸家旅費 등의 支給) 釋放되는 피수용자에 대하여는 그 歸家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旅費 또는 衣類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9조 (法務省令에의 委任) 이 장에 정하는 것 외에 釋放節次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法務省令으로 정한다.

제5장 死 亡

제160조 (死亡의 通知) 刑事施設의 長은 피수용자가 死亡한 경우에는 法務省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死亡原因 및 一時 그리고 支給 또는 交付해야 할 作業報奬金, 死亡手當金 또는 遺留物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遺族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61조 (死體에 관한 措置) 遺族 또는 知人 등에 대한 피수용자의 死體引渡 기타 死體에 관한 措置에 대하여는 타법령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법무성령으로 정한다.

第6章　労役場及び監置場

第162条(労役場及び監置場の附置等)　労役場及び法廷等の秩序維持に関する法律(昭和27年法律第286号)に定める監置場は,それぞれ,法務大臣が指定する刑事施設に附置する。

②監置の裁判の執行を受ける者は,最寄りの地に監置場がないとき,又は最寄りの監置場に収容の余力がないときは,刑事施設内の特に区別した場所に収容することができる。

③労役場及び監置場については,第6条から第9条までの規定を準用する。

第163条(労役場留置者)　労役場に留置されている者(以下「労役場留置者」という。)については,この法律に特別の定めがあるもののほか,その性質に反しない限り,この法律中の懲役受刑者に関する規定を準用する。

②前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労役場留置者の処遇に関し必要な事項は,法務省令で定める。

第164条(被監置者)　監置場又は第162条第2項の規定により刑事施設内の特に区別した場所に収容された者(次条において「被監置者」という。)については,次条に定めるもののほか,その性質に反しない限り,この法律中の被勾留者に関する規定を準用する。

第165条　被監置者の自弁の物品(衣類,日用品及び文房具を除く。)の使用及び摂取並びに面会及び信書の発受(被監置者が被告人又は被疑者であるときの弁護人等との面会及び信書の発受並びに次項に定めるものを除く。)については,その性質に反しない限り,第14条第1項及び第2編第6章の規定を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項中「その者の改善更生に資することとなる場合には」とあるのは,「監置場又は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の維持その他管理運営上支障がない場合には」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제6장 勞役場과 監置場

제162조 (勞役場과 監置場의 附設 등) ① 勞役場과 法廷 등의 秩序維持에 관한 法律(1952년 법률 제286호)에 정하는 監置場은 각각 法務大臣이 지정하는 형사시설에 부설한다.

② 監置裁判의 執行을 받은 자는 부근에 監置場이 없는 때 또는 부근의 감치장에 收容 餘力이 없는 때에는 형사시설내의 특히 區別된 場所에 수용할 수 있다.

③ 勞役場과 監置場에 대해서는 제6조에서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3조 (勞役場留置者) ① 勞役場에 留置되어 있는 자(이하'勞役場留置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법률 중의 懲役受刑者에 관한 규정을 準用한다.

② 전항에 정하는 것 외에 勞役場留置者의 處遇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法務省令으로 정한다.

제164조 (被監置者) 監置場 또는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刑事施設 내의 특히 區別된 場所에 수용된 자(다음 조에서'被監置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조에 정하는 것 외에는 그 性質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법률 중의 被拘束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5조 ① 被監置者의 自辨物品(의류, 일용품 및 문방구를 제외한다)의 使用 및 攝取 그리고 면회 및 서신수발(피감치자가 被告人 또는 被疑者인 때에 辯護人 등과의 면회 및 서신수발 그리고 다음 항에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性質에 反하지 아니하는 한 제14조 제1항 및 제2편 제6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항 중'그 자의 改善更生에 기여하게 될 경우에는'은'監置場 또는 형사시설의 規律 및 秩序의 維持 기타 관리운영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으로 바꾸어 읽는다.

②被監置者が被告人又は被疑者であつて監置の裁判の執行により勾留の執行が停止されているものであるときは，弁護人等以外の者との面会及び信書の発受については，第2編第6章(第92条第2項，第94条第1項第5号，第98条第1項ただし書及び第99条第1項第7号を除く。)第112条，第115条及び第117条の規定を準用する。

第7章　留置施設への代替収容

第166条(留置施設への代替収容)　第2条に規定する者であつて次に掲げる者以外のものは，刑事施設に収容することに代えて，留置施設法(昭和62年 法律第　　号)第3条第1項の規定に基づき都道府県警察に設置される留置施設に留置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刑事施設に収容することに関する刑事訴訟法その他の法律の規定は，留置施設に留置することに関して適用するものとし，これに必要な技術的読替えは，政令で定める。

1．懲役，禁錮又は拘留の刑の執行のため拘置される者(逮捕，勾留その他の事由により刑事訴訟法その他の法令の規定に基づいて収容される者を除く。)

2．死刑の言渡しを受けて拘置される者

3．少年法第17条の2第1項又は少年院法(昭和23年法律第169号)第17条の2(同法第14条第4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り仮に収容される者

4．前3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政令で定める者

②前項の規定により留置された者については，刑事施設に収容されたものとみなして，この法律の規定を適用する。ただし，他の法律に特別の定めがある場合には，そ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

③法務大臣は，国家公安委員会に対し，第1項の規定による留置をする場合における当該留置施設の運営について必要な事項の通報を求め，又は同項の規定により留置された者の処遇について意見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

② 被監置者가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監置裁判의 執行에 의해 拘束의 執行이 정지되어 있는 자인 때에는 辯護人 등 이외의 자와의 面會 및 書信受發에 대해서는 제2편 제6장(제92조, 제2항 제94조 제1항 제5호, 제98조 제1항 단서 및 제99조 제1항 제7호를 제외한다), 제112조, 제115조 및 제1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留置施設에의 代替收容

제166조 (留置施設에의 代替收容) ① 제2조에 규정하는 자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자 이외의 자는 刑事施設에 收容하는 대신에 留置施設法(1987년 법률 제 호)제3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都道府県 警察에 설치되는 留置施設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刑事施設에 수용하는 것에 관한 刑事訴訟法 기타의 법률규정은 留置施設에 유치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하며 이에 필요한 技術的 代替는 政令으로 정한다.

1. 懲役, 禁錮 또는 拘留刑의 집행을 위하여 拘置되는 자(체포, 구속 기타 사유에 의하여 刑事訴訟法 기타의 法令規定에 근거하여 收容되는 자를 제외한다.)
2. 死刑宣告를 받고 拘置되는 자
3. 少年法 제17조의 2 제1항 또는 少年院法(1948년 법률 제169호)제17조의 2 (동법 제14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一時收容되는 자
4. 제3호에 열거하는 자 외에 政令으로 정하는 자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해 留置된 자에 대해서는 刑事施設에 收容된 것으로 보며 이 법률규정에 적용한다. 그러나 他法律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法務大臣은 國家公安委員會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留置를 할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留置施設의 運營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통보를 요구하거

第8章　罰　　則

第167条　第47条第2項(第163条第1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り解放された受刑者，被勾留者，死刑確定者又は労役場留置者が第47条第3項(第163条第1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違反して刑事施設又は指定された場所に出頭しないときは，1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第168条　受刑者が，外部通勤作業における通勤又は第85条の規定による外出の場合において，その通勤又は外出の日を過ぎて当該刑事施設に帰着しないときは，1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第169条　受刑者が，第86条の規定による外泊の場合において，外泊の期間の末日を過ぎて当該刑事施設に帰着しないときは，1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附　　則

この法律の施行期日及びその施行に伴い必要な経過措置その他の事項については，別に法律で定める。

理　　由

最近における刑事政策思想の発展の状況にかんがみ、刑の執行を受けている者、

나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留置된 자의 處遇에 대하여 意見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장 罰 則

제167조 제47조 제2항(제163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一時釋放된 受刑者, 被拘束者, 死刑確定者 또는 勞役場留置者가 제47조 제3항(제163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刑事施設 또는 指定된 場所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8조 수용자가 外部 通勤 作業에 있어서의 通勤 또는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外出의 경우에 그 통근 또는 외출일을 경과하고도 당해 刑事施設로 歸所하지 아니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9조 수형자가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外泊의 경우에 外泊期間의 말일을 경과하고도 당해 刑事施設로 歸所하지 아니할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附 則

이 法律의 施行期日 및 그 시행에 수반하여 필요한 經過措置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理 由

최근 刑事政策 思想의 발전상황에 비추어 刑의 執行을 받고 있는 자, 刑事訴

刑事訴訟法により勾留されている者その他の刑事施設の被収容者の適切な処遇を行うため，被収容者の宗教上の行為，書籍等の閲覧，信書の発受等について，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の維持等のためになし得る規制の範囲を明らかにし，かつ，その規制に対する簡易迅速な不服申立ての制度を整備し，もつて国と被収容者との法律関係を明確にするとともに，受刑者について，作業を行わせるほか，その資質及び環境に応じた計画的な処遇を行うこととし，外部通勤作業等受刑者の改善更生のための効果的な処遇方法を導入する等の必要がある。これが，この法律案を提出する理由である。

訟法에 의하여 拘束되어 있는 자, 기타 형사시설의 被收容者의 적절한 處遇를 행하기 위하여 피수용자의 宗教上의 행위, 書籍 등의 閱覽, 서신수발 등에 대하여, 형사시설의 規律 및 秩序의 維持 등을 위하여 가할 수 있는 規制의 範圍를 밝히고 또 그 規制에 대한 간이신속한 不服申請制度를 정비하고 그로써 國家와 被收容者와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受刑者에 대하여 作業을 행하게 하는 외에 그 資質 및 環境에 부응하는 계획적인 處遇를 행하도록 하며, 外部通勤作業 등 수형자의 改善更生을 위한 효과적인 處遇方法을 導入하는 등의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 法律案을 제출하는 理由이다.

刑事施設法施行法(案)

第1条（刑事施設法の施行期日）　刑事施設法（昭和62年法律第　号。以下「新法」という。）は，昭和63年5月1日から施行する。

第2条（巡閲に関する経過措置）　昭和63年1月から同年4月までの間に行われた新法による改正前の監獄法（明治41年法律第28号。以下「旧法」という。）第4条第1項の規定による巡閲は，新法第6条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条の規定による実地監査とみなす。

第3条（収容開始時の告知に関する特例）　新法の施行の際現にその刑事施設に収容されている者に係る新法第10条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条第1項中「その刑事施設における収容の始めに」とあるのは，「この法律の施行後速やかに」とする。

第4条（解放に関する経過措置）　新法の施行前に旧法第22条第1項の規定により解放された者の出頭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第5条（作業賞与金に関する経過措置）　受刑者についての昭和63年　5月における新法第72条第2項に規定する報奨金支給予定額は，同項の規定により同月中に受刑者が行った作業に対応するものとして算出した金額に同年4月30日における旧法第27条第2項の規定による未支給の作業賞与金の額を加算したものとする。

②受刑者以外の被収容者が旧法第26条（旧法第9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り作業に就いた場合において支給されるべき作業賞与金は新法の施行の日に支給する。

刑事施設法施行法 (案)

제1조 (刑事施設法의 施行期日) 刑事施設法(1987년 법률□호 이하 '新法'이라 한다)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巡閱에 관한 經過措置) 1988년 1월부터 동년 4월까지의 사이에 행하여진 新法에 의한 改正前의 監獄法(1908년 법률 제28호, 이하'舊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巡閱은 신법 제6조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實地監査로 본다.

제3조 (收容開始時의 告知에 관한 特例) 新法의 施行時 현재 그 刑事施設에 收容되어 있는 자에 관계되는 신법 제10조의 규정의 適用에 대하여 동조 제1항 중'그 형사시설에 있어서의 收容의 初期에'는'이 법률의 시행후 신속히'로 한다.

제4조 (一時釋放에 관한 經過措置) 新法의 시행전에 舊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一時釋放된 자의 出席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5조 (作業報奬金에 관한 經過措置) ① 受刑者에 대한 1988년 5월의 新法 제72조 제2항에 규정하는 報奬金支給 豫定額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월 중에 수형자가 행한 作業에 對應하는 것으로서 算出된 金額에 동년 4월30일에 있어서의 舊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未支給의 作業賞與金額을 加算한 것으로 한다.

② 수형자 이외의 被收容者가 舊法 제26조(구법 제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作業에 就業한 경우에 지급돼야 할 作業賞與金은 신법의 시행일에 지급한다.

第6条（手当金に関する経過措置） 新法の施行前に支給事由が生じた旧法第28条第1項（旧法第21条第2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手当金の支給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ただし，その支給の日は，新法の施行の日とする。

第7条（領置に関する経過措置） 新法の施行の際現に旧法第49条の規定により領置されている信書及び文書並びに旧法第51条第1項の規定により領置されている物は，新法第126条第1項の規定により領置されたものとみなす。

第8条（遺留物の措置に関する経過措置） 新法の施行の際現に刑事施設に存する死亡者及び逃走者の遺留物の措置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第9条（懲罰に関する経過措置） 新法第135条から第142条までの規定は，新法の施行前にした旧法第59条の規定により懲罰を科されるべき行為で，新法の施行の際まだ懲罰が科されていないものについても，適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新法第136条第1項第3号中「衣類その他の物品」とあるのは「衣類，寝具，食料品，食料及びし好品」と，同条第2項中「同項第5号」とあるのは「同項第3号から第5号まで」と，新法第137条第1項中「次に」とあるのは「第2号及び第4号に」とする。

②新法の施行前に科され，新法の施行の際まだその執行が終わっていない懲罰は，次の各号に掲げるものに限り，かつ，第1号に掲げるものにあっては30日から新法の施行前に執行した期間を除いた期間，第5号に掲げるものにあっては60日（懲罰を科した時20歳未満の者については，30日）から新法の施行前に執行した期間を除いた期間に限り，新法の施行後に執行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新法第139条第4項及び第140条の規定は当該懲罰について，新法第136条第3項の規定は第1号に掲げる懲罰について，新法第137条第1項後段，第2項及び第3項の規定は第5号に掲げる懲罰について準用する。

1. 旧法第60条第1項第4号に規定する文書，図画閲読の禁止であって新法の施行前に執行した期間が30日に満たないもの
2. 旧法第60条第1項第5号に規定する請願作業の停止

제6조 (手當金에 관한 經過措置) 新法의 시행전에 支給事由가 발생한 구법 제28조 제1항(구법 제21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手當金의 支給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른다. 다만 그 支給日은 신법의 施行日로 한다.

제7조 (領置에 관한 經過措置) 新法 施行時 현재 舊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領置되어 있는 書信 및 文書 그리고 구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領置되어 있는 물건은 신법 제1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치된 것으로 본다.

제8조 (遺留物의 措置에 관한 經過措置) 新法 施行時 현재 刑事施設에 있는 死亡者 및 逃走者의 遺留物의 조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9조 (懲罰에 관한 經過措置) ① 新法 제135조에서 제142조까지의 규정은 신법의 施行前에 행한 舊法 제59조의 규정에 의해 懲罰을 과하여야 할 행위로서 신법 시행시 아직 懲罰이 賦課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에 신법 제136조 제1항 제3호 중 '衣類 기타의 物品'은'의류, 침구, 식료품, 음료 및 기호품, 으로 동조 제2항 중'동항 제5호'는 '동항 제3호에서 제5호 까지'로 신법 제137조 제1항 중 `다음에'는'제2호 및 제4호에'로 한다.

② 新法 施行前에 賦課되고 신법 시행시 아직 그 執行이 終了되지 아니한 懲罰은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것에 한하여, 또 제1호에 열거하는 것에 있어서는 30일에서 新法 施行前에 執行한 期間을 뺀 기간, 제5호에 열거하는 것에 있어서는 60일(징벌을 과한 때 20세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30일)에서 新法 施行前에 執行한 期間을 뺀 기간에 한하여 신법의 시행 후에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신법 제139조 제4항 및 제140조의 규정은 당해 懲罰에 대하여 신법, 제136조 제3항의 규정은 제1호에 열거하는 징벌에 대하여, 신법 제137조 제1항 후단,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5호에 열거하는 징벌에 대하여 각각 준용한다.

1. 구법 제60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文書, 圖畫閱讀의 禁止로서 신법의 시행전에 執行한 期間이 30일에 이르지 아니한 것
2. 舊法 제60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請願作業의 停止

3. 旧法第60条第1項第6号に規定する自弁に係る衣類臥具著用の停止

4. 旧法第60条第1項第7号に規定する糧食自弁の停止

5. 旧法第60条第1項第11号に規定する軽屏禁であって新法の施行前に執行した期間が60日(懲罰を科した時20歳未満の者については,30日)に満たないもの

第10条(審査の申請に関する新法の規定の準用) 新法第143条から第148条までの規定は,前条第2項の規定により新法の施行後に執行する懲罰に係る不服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新法第144条中「当該措置のあったことを知った日の翌日から起算して30日以内に行わなければならず,当該措置のあった日の翌日から起算して1年」とあるのは,「この法律の施行の日から起算して30日」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11条(情願に関する経過措置) 新法の施行前に旧法第7条の規定により主務大臣又は巡閲官吏に対して行った情願で,新法の施行の際まだその処理がされていないものは,主務大臣に係るものにあっては新法第151条第1項の規定により法務大臣に対して行った苦情の申出と,巡閲官吏に係るものにあっては新法第150条第1項の規定により監査官に対して行った苦情の申出とみなす。

第12条(準用) 第2条の規定は,労役場及び監置場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中「新法による改正前の監獄法(明治41年法律第28号。以下「旧法」という。)第4条第1項」とあるのは「新法による改正前の監獄法(明治41年法律第28号。以下「旧法」という。)第8条第3項において準用する旧法第4条第1項」と,「新法第6条」とあるのは「新法第162条第3項において準用する新法第6条」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②第3条,第4条,第5条第1項,第6条から第8条まで,第9条(第2項第2号及び第4号を除く。),第10条及び前条の規定は,労役場留置者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次の表の上欄に掲げる規定中同表の中欄に掲げる字句は,同表の下欄に掲げる字句にそれぞれ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3. 구법 제60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自辨에 의한 衣類·침구사용의 停止
4. 구법 제60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食糧自辨의 停止
5. 구법 제60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輕併禁으로 신법의 시행전에 執行한 期間이 60일(징벌을 과한 때 20세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30일)에 이르지 아니한 것

제10조 (審査의 申請에 관한 新法規定의 準用) 신법 제143에서 제148조까지의 규정은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신법 시행 후에 執行하는 懲罰에 관계되는 不服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신법 제144조 중'당해 조치가 있었음을 안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행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고 당해 조치가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년'은 '이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로 바꾸어 읽는다.

제11조 (請願에 관한 經過措置) 新法의 施行前에 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主務大臣 또는 巡閱官吏에 대하여 행한 請願으로, 신법 시행시 아직 그 처리가 되지 아니한 것은 主務大臣에 관계되는 것에 있어서는 신법 제1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法務代身에 대하여 행한 苦衷의 申告로, 巡閱官吏에 관계되는 것에 있어서는 신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監査官에 대하여 행한 고충의 신고로 본다.

제12조 (準用) ① 제2조의 규정은 勞役場 및 監置場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조 중 '신법에 의한 改正前의 監獄法(1908년 법률 제28호 이하'구법'이라 한다)제4조 제1항'은'신법에 의한 改正前의 監獄法(1908년 법률 제28호 이하 '구법'이라 한다)제8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구법 제4조 제1항'으로,'신법 제6조'는'신법 제162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신법 제6조'로 바꾸어 읽는다.
② 제3조, 제4조, 제5조 제1항, 제6조에서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2호 및 제4호를 제외한다), 제10조 및 전조의 규정은 勞役場留置者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다음 표의 上欄에 열거하는 규정 중 동표의 중란에 열거하는 字句는 동표의 하란에 열거하는 字句로 각각 바꾸어 읽는다.

(上)	(中)	(下)
第3条	新法第10条	新法第163条第1項において準用する新法第10条
第4条	旧法第22条第1項	旧法第9条において準用する旧法第22条第1項
第5条第1項	新法第72条第2項	新法第163条第1項において準用する新法第72条第2項
	旧法第27条第2項	旧法第9条において準用する旧法第27条第2項
第6条	旧法第28条第1項	旧法第9条において準用する旧法第28条第1項
	旧法第21条第2項	旧法第9条において準用する旧法第21条第2項
第7条	旧法第49条	旧法第9条において準用する旧法第49条
	旧法第51条第1項	旧法第9条において準用する旧法第51条第1項
	新法第126条第1項	新法第163条第1項において準用する新法第126条第1項
第9条第1項	旧法第59条	旧法第9条において準用する旧法第59条
第9条第2項	旧法第60条第1項第4号	旧法第9条において準用する旧法第60条第1項第4号
	旧法第60条第1項第6号	旧法第9条において準用する旧法第60条第1項第6号
	旧法第60条第1項第11号	旧法第9条において準用する旧法第60条第1項第11号
第11条	旧法第7条	旧法第9条において準用する旧法第7条
	新法第151条第1項	新法第163条第1項において準用す新法第151条第1項
	新法第150条第1項	新法第163条第1項において準用する新法第150条第1項

3. 第3条，第4条，第5条第2項，第6条から第8条まで，第9条（第2項第4号を除く。），第10条及び前条の規定は，被監置者について 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次の表の上欄に掲げる規定中同表の中欄に掲げる字句は，同表の下欄に掲げる字句にそれぞれ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上)	(中)	(下)
第3条	新法第10条	新法第164条において準用する新法第10条
第4条	旧法第22条第1項	旧法第9条において準用する旧法第22条第1項
第6条	旧法第28条第1項	旧法第9条において準用する旧法第28条第1項
	旧法第21条第2項	旧法第9条において準用する旧法第21条第2項
第7条	旧法第49条	旧法第9条において準用する旧法第49条
	旧法第51条第1項	旧法第9条において準用する旧法第51条第1項
	新法第126条第1項	新法第164条において準用する新法第126条第1項
第9条第1項	旧法第59条	旧法第9条において準用する旧法第59条

(上)	(中)	(下)
제 3 조	신법 제10조	신법 제163조 제 1 항에서 준용하는 신법 제10조
제 4 조	구법 제22조 제 1 항	구법 제 9 조에서 준용하는 구법 제22조 제 1 항
제 5 조 제 1 항	신법 제72조 제 2 항	신법 제163조 제 1 항에서 준용하는 신법 제72조 제 1 항
	구법 제27조 제 2 항	구법 제 9 조에서 준용하는 구법 제27조 제 2 항
제 6 조	구법 제28조 제 1 항	구법 제 9 조에서 준용하는 구법 제28조 제 1 항
	구법 제21조 제 2 항	구법 제 9 조에서 준용하는 구법 제21조 제 2 항
제 7 조	구법 제49조	구법 제 9 조에서 준용하는 구법 제49조
	구법 제51조 제 1 항	구법 제 9 조에서 준용하는 구법 제51조 제 1 항
	신법 제126조 제1항	신법 제163조 제 1 항에서 준용하는 신법 제126조 제 1 항
제 9 조 제 1 항	구법 제59조	구법 제 9 조에서 준용하는 구법 제59조
제 9 조 제 2 항	구법 제60조 제 1 항 제 4 호	구법 제 9 조에서 준용하는 구법 제60조 제 1 항 제 4 호
	구법 제60조 제 1 항 제 6 호	구법 제 9 조에서 준용하는 구법 제60조 제 1 항 제 6 호
	구법 제60조 제 1 항 제11호	구법 제 9 조에서 준용하는 구법 제60조 제 1 항 제11호
제11조	구법 제 7 조	구법 제 9 조에서 준용하는 구법 제 7 조
	신법 제151조 제 1 항	신법 제163조 제 1 항에서 준용하는 신법 제151조 제 1 항
	신법 제150조 제1항	신법 제163조 제 1 항에서 준용하는 신법 제150조 제 1 항

③제3조, 제4조, 제5조 제2항, 제6조에서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4호를 제외함)제10조 및 전조의 규정은 被監置者에 대하여 準用한다. 이 경우에 다음 표의 상란에 열거하는 규정 중 동표의 중란에 열거하는 字句는 동표의 하란에 열거하는 字句로 각각 바꾸어 읽는다.

(上)	(中)	(下)
제 3 조	신법 제10조	신법 제164조에서 준용하는 신법 제10조
제 4 조	구법 제22조 제 1 항	구법 제 9 조에서 준용하는 구법 제22조 제 1 항
제 6 조	구법 제28조 제 1 항	구법 제 9 조에서 준용하는 구법 제28조 제 1 항
	구법 제21조 제 2 항	구법 제 9 조에서 준용하는 구법 제21조 제 2 항
제 7 조	구법 제49조	구법 제 9 조에서 준용하는 구법 제49조
	구법 제51조 제 1 항	구법 제 9 조에서 준용하는 구법 제51조 제 1 항
	신법 제126조 제1항	신법 제164조에서 준용하는 신법 제126조 제 1 항
제 9 조 제 1 항	구법 제59조	구법 제 9 조에서 준용하는 구법 제59조

第9条第2項	新法第137条第1項後段，第2項	新法第137条第2項
	旧法第60条第1項第4号	旧法第9条において準用する旧法第60条第1項第4号
	旧法第60条第1項第5号	旧法第9条において準用する旧法第60条第1項第5号
	旧法第60条第1項第6号	旧法第9条において準用する旧法第60条第1項第6号
	旧法第60条第1項第11号	旧法第9条において準用する旧法第60条第1項第11号
第11条	旧法第7条	旧法第9条において準用する旧法第7条
	新法第151条第1項	新法第164条において準用する新法第151条第1項
	新法第150条第1項	新法第164条において準用する新法第150条第1項

第13条（新法施行前にされた収容に関する裁判の効力）　新法の施行前にされた収容に関する裁判で，その収容の場所を旧法第1条第3項の規定により同項に規定する警察官署に附属する留置場とするものは，その収容の場所を新法第166条第1項の規定により同項に規定する留置施設とする裁判とみなす。

第14条（死刑の執行の場所等に関する旧法の規定の効力）　旧法第71条及び第72条の規定は，当分の間，なおその効力を有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旧法第71条第1項中「監獄」とあるのは，「刑事施設」とする。

第15条（罰則の適用に関する経過措置）　新法の施行前にした行為及び第4条（第12条第2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り従前の例によることとされる場合における新法の施行後にした行為に対する罰則の適用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第16条（民事訴訟法の一部改正）　民事訴訟法（明治23年法律第29号）の一部を次のように改正する。

제 9 조 제 2 항	신법 제137조 제1항 후단, 제 2 항	신법 제137조 제 2 항
	구법 제60조 제 1 항 제 4 호	구법 제 9 조에서 준용하는 구법 제60조 제 1 항 제 4 호
	구법 제60조 제 1 항 제 5 호	구법 제 9 조에서 준용하는 구법 제60조 제 1 항 제 5 호
	구법 제60조 제 1 항 제 6 호	구법 제 9 조에서 준용하는 구법 제60조 제 1 항 제 6 호
	구법 제60조 제 1 항 제11호	구법 제 9 조에서 준용하는 구법 제60조 제 1 항 제11호
제11조	구법 제 7 조	구법 제 9 조에서 준용하는 구법 제 7 조
	신법 제151조 제1항	신법 제164조에서 준용하는 신법 제151조 제 1 항
	신법 제150조 제1항	신법 제164조에서 준용하는 신법 제150조 제 1 항

제13조 (新法施行前에 행하여진 收容에 관한 裁判의 效力) 新法의 시행전에 행하여진 收容에 관한 裁判으로 그 수용의 장소를 구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동항에 규정하는 警察官署에 부속하는 留置場으로 하는 것은 그 收容場所를 신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에 규정하는 留置施設로 하는 裁判으로 본다.

제14조 (死刑의 執行場所 등에 관한 舊法規定의 效力) 구법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은 당분간 여전히 그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에 구법 제71조 제1항 중 '監獄'은 '刑事施設'로 한다.

제15조 (罰則의 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新法의 施行前에 행한 行爲 및 제4조(제12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예에 따르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新法 施行後에 행한 행위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16조 (民事訴訟法의 一部改正) 민사소송법(1890년 법률 제29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68条中「在監者」を「刑事施設ニ収容中ノ者」に，「監獄」を「刑事施設」に改める。

第17条（伝染病予防法の一部改正）　伝染病予防法（明治30年法律第36号）の一部を次のように改正する。

第18条第4項中「在監人出獄スル」を「刑事施設ニ収容セラレタル者ノ釈放」に改める。

第18条（刑法の一部改正）　刑法（明治40年法律第45号）の一部を次のように改正する。

目次中「仮出獄」を「仮釈放」に改める。

第11条，第12条第2項及び第13条第2項中「監獄」を「刑事施設」に改める。

第16条中「拘留場」を「刑事施設」に改める。

「第5章　仮出獄」を「第5章　仮釈放」に改める。

第28条中「出獄ヲ許ス」を「釈放スル」に改める。

第29条第1項中「仮出獄」を「仮釈放」に改め，同条第2項中「仮出獄」を「仮釈放」に，「出獄中」を「釈放中」に改める。

第19条（健康保険法の一部改正）　健康保険法（大正11年法律第70号）の一部を次のように改正する。

第62条第1項第2号中「監獄」を「刑事施設」に，「拘禁」を「収容」に改める。

第20条（船員保険法の一部改正）　船員保険法（昭和14年法律第73号）の一部を次のように改正する。

第53条第1項第3号中「監獄」を「刑事施設」に，「拘禁」を「収容」に改める。

第21条（法務省設置法の一部改正）　法務省設置法（昭和22年法律第193号）の一部を次のように改正する。

제168조 중'在監者'를 '형사시설에 수용 중인 자'로'감옥'을 '형사시설'로 고친다.

제17조 (傳染病豫防法의 一部改正) 전염병예방법(1897년 법률 제36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4항 중'재감인의 出獄'을 '刑事施設에 수용된 자의 釋放'으로 고친다.

제18조 (刑法의 一部改正) 형법(1907년 법률 제45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차 중'假出獄'을 '가석방'으로 고친다.

제11조, 제12조 제2항 및 제13조 제2항 중'감옥'을 '형사시설'로 고친다. 제16조중 '拘留場'을 '형사시설'로 개정한다. '

제5장 '가출옥'을 '제5장 가석방'으로 고친다.

제28조 중'出獄을 許可할' 을 '석방할'로 고친다.

제29조 제1항 중'가출옥'을 '가석방'으로 고치고 동조 제2항중'가출옥'을 '가석방'으로,'출옥증'을 '석방증'으로 고친다.

제19조 (健康保險法의 一部改正) 건강보험법(1922년 법률 제70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 제1항 제2호 중 '감옥'을 '형사시설'로 '拘禁'을 '收容'으로 고친다.

제20조 (船員保險法의 一部改正) 선원보험법(1939년 법률 제73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제1항 제3호 중'감옥'을 형사시설로,'구금'을 '수용'으로 고친다.

제21조 (法務省設置法의 一部改正) 법무성설치법(1947년 법률 제193호)의 일부

第3条第19号中「仮出獄」を「仮釈放」に改める。
第4条第一項中「監獄法（明治41年法律第28号）第1条第1項の規定による監獄」を「刑事施設法（昭和62年法律第　　号）第2条の規定による刑事施設」に改める。

第22条（戸籍法の一部改正）　戸籍法（昭和22年法律第224号）の一部を次のように改正する。
第56条中「監獄」を「刑事施設」に，「ともに」を「共に」に改める。
第90条第1項中「監獄の」を「刑事施設の」に，「監獄所在地」を「刑事施設の所在地」に改め，同条第2項中「在監」を「刑事施設に収容」に，「添附」を「添付」に改める。

第23条（刑事訴訟法の一部改正）　刑事訴訟法（昭和23年法律第131号）の一部を次のように改正する。
第64条第1項中「監獄」を「刑事施設」に改める。
第65条第3項及び第70条第2項中「監獄に」を「刑事施設に」に，「監獄官吏」を「刑事施設の職員」に改める。
第73条第2項中「且つ」を「かつ，」に，「監獄」を「刑事施設」に改める。
第74条中「最寄の監獄」を「最寄りの刑事施設」に改める。
第75条中「監獄」を「刑事施設」に改める。
第78条第1項中「監獄」を「刑事施設」に，「但し」を「ただし」に改め，同条第2項中「監獄」を「刑事施設」に改める。
第80条中「監獄」を「刑事施設」に改める。
第98条第1項中「監獄官吏」を「刑事施設の職員」に，「収監」を「刑事施設に収容」に改め，同条第2項中「収監」を「刑事施設に収容」に，「但し」を「ただし」に改め，同条第3項中「収監」を「収容」に改める。
第286条の2　中「監獄官吏」を「刑事施設の職員」に改める。
第366条第1項中「監獄」を「刑事施設」に改め，同条第2項中「監獄」を「刑事施設」に，「吏員」を「職員」に改める。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9호 중 '가출옥'을 '가석방'으로 고친다.

제4조 제1항 중'감옥법(1908년법률 제28호)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옥'을 '형사 시설법(1987년 법률 □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형사시설'로 고친다.

제22조 (戶籍法의 一部改正) 호적법(1947년 법률 제224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 중'감옥'을 '형사시설'로'함께'를 '공히'로 고친다.

제90조 제1항 중'감옥의'를 '형사시설의'로'감옥 소재지'를 '형사시설 소재지'로 고치며, 동조 제2항중 `재감'을'형사시설에 수용'으로,'첨부'를 '添付'로 고친다.

제23조 (刑事訴訟法의 一部改正)형사소송법(1948년 법률 제131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 제1항중 '감옥'을'형사시설'로 고친다.

제65조 제3항 및 제70조 제2항 중'감옥에'를 '형사시설에'로 '감옥관리'를 '형사시설 직원'으로 고친한다.

제73조 제2항 중 '且つ'를 'かつ'로, '각옥'을'형사시설'로 고친다.

제74조중 '부근의 감옥'을'부근의 형사시설'로 고친다.

제75조중 '감옥'을 '형사시설'로 고친다.

제78조 제1항 중 '감옥'을 '형사시설'로, '但し'를 'ただし'로 고치며 동조 제2항 중 '감옥'을 '형사시설'로 고친다.

제80조 중'감옥'을 '형사시설'로 고친다.

제98조 제1항 중 '監獄官吏'를'형사시설 직원'으로,'收監'을'형사시설에 수용'으로 고치고, 동조 제2항 중 '收監'을 '형사시설에 수용'으로, '但し'를 'ただし'로 고치며, 동조 제3항 중 '수감'을 '수용'으로 고친다.

제286조의 2 중'감옥관리'를 '형사시설 직원'으로 고친다.

제366조 제1항 중'감옥'을'형사시설'로 고치고 동조 제2항 중'감옥'을 '형사

第367条中「監獄」を「刑事施設」に，「取下」を「取下げ」に改める。
第477条第1項中「監獄」を「刑事施設」に，「立会」を「立会い」に改め，同条第2項中「監獄」を「刑事施設」に改める。
第478条及び第481条第2項中「監獄」を「刑事施設」に改める。
第484条中「言渡」を「言渡し」に，「呼出」を「呼出し」に，「収監状」を「収容状」に改める。
第485条中「言渡」を「言渡し」に，「虞」を「おそれ」に，「収監状」を「収容状」に改める。
第486条第1項中「言渡」を「言渡し」に，「判らない」を「分からない」に「その収監」を「その者の刑事施設への収容」に改め，同条第2項中「収監状」を「収容状」に改める。
第487条中「収監状」を「収容状」に，「言渡」を「言渡し」に，「収監に」を「収容に」に改める。
第488条及び第489条中「収監状」を「収容状」に改める。

第24条（検察審査会法の一部改正）　検察審査会法（昭和23年法律第147号）の一部を次のように改正する。
第6条中「左に」を「次に」に改め，同条第14号を次のように改める。
14　刑事施設の職員

第25条（少年法の一部改正）　少年法（昭和23年法律第168号）の一部を次のように改正する。
第17条の2第1項中「最寄」を「最寄り」に，「拘置監（監獄法（明治41年法律第28号）第1条第3項の規定により代用されるものを含まない。）」を「刑事施設」に，「但し」を「ただし」に改め，同条第2項中「拘置監」を「刑事施設」に改める。
第37条第1項第4号中「第62条第2項」を「第62条第2号」に改める。
第49条第3項中「拘置監」を「刑事施設」に改め，「少年」の下に「（懲役又

시설'로 '吏員'을 '職員'으로 고친다.

제367조 중'감옥'을 '형사시설'로'取下'를'取下げ'로 고친다.

제477조 제1항 중 '감옥'을 '형사시설'로'立會'을'立会に'로 고치고 동조 제2항 중'감옥'을 '형사시설'로 고친다.

제478조 및 제481조 제2항 중'감옥'을 '형사시설'로 고친다.

제484조 중'言渡'를 '言渡'로 '呼出'을 '呼出'로'수감장'을 '수용장'으로 고친다.

제485조중 '言渡'를 '言渡し'로, '虞'를 'おそれ'로, '收監狀'을 '收容狀'으로 고친다.

제486조 제1항 중 '言渡'를 '言渡し'로, '判らない'를 '分からない'로, '그 수감'을 '그 자의 형사시설에의 수용'으로 고치고, 동조 제2항 중 '수감장'을 '수용장'으로 고친다.

제487조 중 `收監狀'을 '收容状'으로,'言渡'를 '言渡し'로, '수감에' '수용에'로 고친다.

제488조 및 제489조 중 '수감장'을 '수용장'으로 고친다.

제24조 (檢察審査會法의 一部改正) 검찰심사회법(1948년 법률 제147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左に'을 '次に'로 고치고, 동조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4. 형사시설의 직원

제25조 (少年法의 一部改正) 소년법(1948년 법률 제168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2 제1항 중 '最寄'를 '最寄り'로, '拘置監(감옥법〈1908년 법률제28호〉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용되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형사시설'로, '但し'를 'ただし'로 고치고, 동조 제2항 중 '구치감'을 '형사시설'로 고친다.

제37조 제1항 제4호 중 '제62조 제2항'을 '제62조 제2호'로 고친다.

제49조 제3항 중'구치감'을 '형사시설'로 고치고,'소년'다음에'(징역 또는

は禁錮の言渡しを受け，その刑を執行されている者を除く。）」を加える。
第56条第1項中「言渡」を「言渡し」に，「監獄」を「刑事施設」に改める。
第58条の見出しを「（仮釈放）」に改め，同条中「言渡を受けた者には」を「言渡しを受けた者については」に，「仮出獄を許す」を「仮釈放をする」に改める。
第59条の見出し中「仮出獄」を「仮釈放」に改め，同条第1項中「言渡」を「言渡し」に，「仮出獄を許された」を「仮釈放」に，「受け終った」を「受け終わった」に改め，同条第2項中「言渡」を「言渡し」に，「仮出獄を許された」を「仮釈放」に，「仮出獄前」を「仮釈放前」に，「何れか」を「いずれか」に，「受け終った」を「受け終わった」に改める。

第26条（少年院法の一部改正）　少年院法（昭和23年法律第169号）の一部を次のように改正する。
第17条の2中「最寄」を「最寄り」に，「拘置監（監獄法（明治41年法律第28号）第1条第3項の規定により代用されるものを含まない。以下同じ）」を「刑事施設」に，「拘置監の」を「刑事施設の」に改める。

第27条（司法警察職員等指定応急措置法の一部改正）　司法警察職員等指定応急措置法（昭和23年法律第234号）の一部を次のように改正する。
第1条中「範囲は，」を「範囲は，この法律又は」に，「特別の定」を「特別の定め」に改める。
本則に次の1条を加える。
第4条　刑事施設の長は，刑事施設における犯罪について，刑事訴訟法の規定による司法警察員として職務を行う。

②刑事施設の職員（刑事施設の長を除く。）で，刑事施設の長がその刑事施設の所在地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に対応する検察庁の検事正と協議をして指名し

금고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를 추가한다.

제56조 제1항 중'言渡'를 '言渡し'로 '감옥'을 '형사시설'로 고친다.

제58조의 표제를'(假釋放)'으로 고치고, 동조 중'선고를 받은 자에게는 '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으로,'가출옥을 허가한다'를 '가석방을 한다'로 고친다.

제59조의 표제 중 '가출옥''가석방'으로 고치고, 동조 제1항 중'言渡'를'言渡 '로 '가출옥을 허가받은'을 '가석방'으로 고치고,'受終'를 `受終'로 고치고, 동조 제2항 중 '言渡'를'言渡'로, '가출옥을 허가받은' 을'가석방'으로,'假出獄前'을 '가석방전'으로, `何'를'ミ'로'受終'를'受終'로 고친다.

제26조 (少年院法의 一部改正)소년원법(1948년 법률 제169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중 '最寄'를 '最寄り'로, '拘置監(감옥법〈1908년 법률 제28호〉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대용되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을 '형사시설'로 '구치감의'를 '형사시설의'로 고친다.

제27조 (司法警察職員 등 指定應急措置法의 一部改正) 사법경찰직원등지정응급조치법(1948년 법률 제234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범위는'을 '범위는 이 법률 또는'으로'특별한 定'을 '특별한 定め'로 고친다.

본칙에 다음 한 조를 추가한다.

제4조 ① 刑事施設의 長은 형사시설에 있어서의 犯罪에 대하여 刑事訴訟法의 규정에 의한 私法警察員으로서 직무를 행한다.

② 刑事施設의 職員(형사시설의 장을 제외한다)으로서 刑事施設의 長이 그 형사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地方裁判所에 대응하는 檢察庁의 檢事正과 협의를 하여 지명한 자는 형사시설에 있어서의 범죄에 대하여 法務大臣이

たものは，刑事施設における犯罪について，法務大臣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刑事訴訟法の規定による司法警察職員として職務を行う。

第28条（犯罪者予防更生法の一部改正）　犯罪者予防更生法（昭和24年法律第142号）の一部を次のように改正する。

第12条第1項中「左に」を「次に」に改め，同項第1号中「仮出獄及び」を「刑事施設から仮に釈放されて出所すること（以下「仮出所」という。）を許し，」に，「並びに仮出獄」を「及び仮出所に改め，同項第2号中「受け終った」を「受け終わった」に改め，同項第4号中「属せしめられた」を「属させられた」に改める。

第28条中「監獄」を「刑事施設」に改める。

第29条第1項中「監獄」を「刑事施設」に，「仮出獄」を「仮出所」に，「但し」を「ただし」に改め，同条第2項中「仮出獄」を「仮出所」に，「監獄」を「刑事施設」に改める。

第30条第1項中「在監在院」を「刑事施設又は少年院に収容」に，「入監入院」を「刑事施設又は少年院に収容」に改め，同条第2項中「仮出獄」を「仮出所」に，「みずから」を「自ら」に，「但し」を「ただし」に改める。

第31条第1項及び第2項中「もとずき，仮出獄」を「基づき，仮出所」に改め同条第3項中「仮出獄」を「仮出所」改める。

第32条中「監獄」を「刑事施設」に，「仮出獄」を「仮出所」に，「且つ」を「かつ」に，「但し」を「ただし」に改める。

第33条第1項中「左に」を「次に」に改め，同項第3号中「仮出獄」を「仮出所」に改める。

第42条の2第1項中「仮出獄」を「仮出所」に改め，同条第5項中「仮出獄」を「仮出所」に，「取消」を「取消し」に改める。

정하는 바에 따라 刑事訴訟法의 규정에 의한 司法警察職員으로서 직무를 행한다.

제28조 (犯罪者豫防更生法의 一部改正) 범죄자예방갱생법(1949년 법률 제142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중 '左に'를 '次に'로 고치고, 동항 제1호 중 '가출옥 및'을 '형사시설로부터 일시 가석방되어 출소하는 것(이하 '가출소'라 한다)을 허가하고'로, '아울러 가출옥'을 '및 가출소'로 고치고, 동항 제2호 중 '受け終つた'를 '受け終わつた'로 고치며, 동항 제4호 중 '属せしあられた'을 '属させられた'로 고친다.

제28조 중 '감옥'을 '형사시설'로 고친다.

제29조 제1항 중 '감옥'을 '형사시설'로, '가출옥'을 '가출소'로, '但し'을 'ただし'로 고치고 동조 제2항 중 '가출옥'을 '가출소'로, '감옥'을 '형사시설'로 고친다.

제30조 제1항 중 '재감재원'을 '형사시설 또는 소년원에 수용'으로, '입감입원'을 '형사시설 또는 소년원에 수용'으로 고치고, 동조 제2항중 '가출옥'을 '가출소'로, 'おずから'를 '自ら'로, '但し'를 'ただし'로 고친다.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중 'もとずき, 가출옥'을 '基つ 가출옥'로 고치고, 동조 제3항 중 '가출옥'을 '가출소'로 고친다. 소

제32조 '감옥'을 '형사시설'로, '가출옥'을 '가출소'로, '旦つ'를 'カつ'로, '但つ'를 'ただし'로 고친다.

제33조 제1항 중 '左に'를 '次に'로 고치고, 동항 제3호 중 '가출옥'을 '가출소'로 고친다.

제42조의 2 제1항 중 '가출옥'을 '가출소'로 고치고, 동조 제5항 중 '가출옥'을 '가출소'로, '取消'를 '取消し'로 고친다.

제42조 의 2 제1항 중'가출옥'을'가출소'로 고치고, 동조 제5항 중 '가출옥'을 '가출소'로 '取消'를 '取消し'로 고친다.

第44条の見出し及び同条第1項中「仮出獄の取消」を「仮出所の取消し」に改め，同条第2項中「仮出獄の取消」を「仮出所の取消し」に，「且つ」を「かつ」に改め，同条第3項中「刑事訴訟法中収監に関する規定」を「刑事訴訟法第484条から第489条までの規定」に，「仮出獄」を「仮出所」に，「収監」を「収容」に改める。

第45条第1項中「仮出獄の取消」を「仮出所の取消し」に改め，同条第2項中「監獄」を「刑事施設」に，「但し」を「ただし」に改め，同条第4項中「仮出獄」を「仮出所」に改める。

第48条第1項中「言渡」を「言渡し」に，「仮出獄」を「仮出所」に，「受け終った」を「受け終わった」に改め，同条第2項中「言渡」を「言渡し」に，「在監者」を「受刑者」に，「監獄」を「刑事施設」に，「受け終った」を「受け終わった」に改め，同条第3項及び第4項中「監獄」を「刑事施設」に改める。

第50条第1項中「監獄」を「刑事施設」に改め，「（以下「収容施設」という。）」を削り，「収容施設の」を「刑事施設又は少年院の」に改め，同条第2項及び第3項中「収容施設」を「刑事施設又は少年院」に改める。

第52条の見出し中「在監者及び在院者」を「社会復帰のため」に改め，同条中「監獄」を「刑事施設」に改める。

第54条第2項中「在監中の者」を「刑事施設に収容されている者」に，「おびやかす」を「脅かす」に改める。

第55条の2第3項中「在監者又は在院者」を「刑事施設又は少年院に収容されている者」に，「監獄」を「刑事施設」に改める。

第57条第2項中「監獄」を「刑事施設」に改める。

第58条第1項中「なした」を「した」に，「仮出獄」を「仮出所」に改める。

第29条（刑事補償法の一部改正）　刑事補償法（昭和25年法律第1号）の一部を次のように改正する。

第1条第3項中「収監状」を「収容状」に改める。

제44조의 표제 및 동조 제1항 중 '가출옥의 取消'를 '가출소의 取消し'로 고치고, 동조 제2항 중 '가출옥의 取消'를 '가출소의 取消し'로, '且つ'를 'かつ'로 고치며, 동조 제3항 중 '형사소송법 중 수감에 관한 규정'을 '형사소송법 제484조에서 제489조까지 규정'으로, '가출옥'을 '가출소'로, '수감'을 '수용'으로 고친다.

제45조 제1항 중 '가출옥의 取消'를 '가출소의 取消し'로 고치고, 동조 제2항 중 '감옥'을 '형사시설'로, '但し'을 'ただし'로 고치며, 동조 제4항중 '가출옥'을 '가출소'로 고친다.

제48조 제1항 중 '言渡'를 '言渡し'로, '가출옥'을 '가출소'로, '受け終つた'를 '受け終わつた'로 고치고, 동조 제2항 중 '言渡'를 '言渡し'로, '재감자'를 '수형자'로, '감옥'을 '형사시설'로, '受け終つた'를 '受け終わつた'로 고치며, 동조 제3항 및 제4항 중 '감옥'을 '형사시설'로 고친다.

제50조 제1항 중 '각옥'을 '형사시설'로 고치고(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를 삭제하며 '수용시설의'를 '형사시설 또는 소년원의'로 고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 중 '수용시설'을 '형사시설 또는 소년원'으로 고친다.

제52조의 표제 중 '재감자 및 재원자'를 '사회복귀를 위한'으로 고치고, 동조 중 '감옥'을 '형사시설'로 고친다.

제54조 제2항 중 '재감 중인 자'를 '형사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로, 'おびやかす'를 '脅かす'로 고친다.

제55조의2 제3항 중 '재감자 또는 재원자'를 '형사시설 또는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 자'로, '감옥'을 '형사시설'로 고친다.

제57조 제2항 중 '감옥'을 '형사시설'로 고친다.

제58조 제1항 중 'なした'를 'した', '가출옥'을 '가출소'로 고친다.

제29조 (刑事補償法의 一部改正) 형사보상법(1950년 법률 제1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항 중 '收監狀'을 '收容狀'으로 고친다.

第30条（更生緊急保護法の一部改正）　更生緊急保護法（昭和25年法律第203号）の一部を次のように改正する。

第4条第2項中「監獄」を「刑事施設」に改め，同条第3項中「拘禁」を「収容」に，「監獄」を「刑事施設」に，「聞かなければ」を「聴かなければ」に「但し，仮出獄期間」を「ただし，刑法（明治40年法律第45号）第28条及び少年法（昭和23年法律第168号）第58条の規定による仮釈放の期間」に改める。

第31条（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の一部改正）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昭和26年政令第319号）の一部を次のように改正する。

第25条の2第1項第2号中「仮出獄」を「刑法第28条及び少年法第58条の規定により刑事施設から仮に釈放されて出所すること（以下「仮出所」という。）」に改める。

第62条第3項中「（分監及び分院の長を含む。以下同じ。）」を削り，「仮出獄」を「仮出所」に，「因り」を「より」に改め，同条第4項中「仮出獄」を「仮出所」に改める。

第32条（逃亡犯罪人引渡法の一部改正）　逃亡犯罪人引渡法（昭和28年法律第68号）の一部を次のように改正する。

第7条第2項中「人違」を「人違い」に，「監獄」を「刑事施設」に，「すみやかに且つ」を「速やかに，かつ，」に改める。

第15条の見出し中「引渡」を「引渡し」に改め，同条中「引渡」を「引渡し」に，「監獄」を「刑事施設」に，「但し」を「ただし」に，「取消」を「取消し」に改める。

第17条第1項中「監獄」を「刑事施設」に，「引渡」を「引渡し」に改め，同条第5項中「監獄」を「刑事施設」に，「すみやかに」を「速やかに」に，「引渡」を「引渡し」に改める。

第20条第1項中「引渡」を「引渡し」に，「監獄」を「刑事施設」に改め，同

제30조 (更生緊急保護法의 一部改正) 갱생긴급보호법(1950년 법률 제203호) 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감옥'을 '형사시설'로 고치고, 동조 제3항 중 '구금'을 '수용'으로, '감옥'을 '형사시설'로, '聴かなければ'를 '聞かなければ'로, '그러나 가출옥기간'을 '글러나 형법(1907년 법률 제45호) 제28조 및 소년법(1948년 법률 제168호)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의 기간'으로 고친다.

제31조 (出入局管理 및 難民認定法의 一部改正)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1951년 政令 제319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의 2 제1항 제2호 중 '가출옥'을 '형법 제28조 및 소년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해 형사시설로부터 가석방되어 출소하는 것(이하 '假出所'라 한다)'으로 고친다.

제62조 제3항중 '(分監 및 分院의 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삭제하고 '가출옥'을 '가출소'로, '因'을 'より'로 고치며, 동조 제4항 중 '가출옥'을 '가출소'로 고친다.

제32조 (逃亡犯罪人引渡法의 一部改正) 逃亡犯罪人引渡法(1953년 법률 제68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人違'를 '人違し'로, '감옥'을 '형사시설'로, 'すみせかに日つ旦'를 '速せかに, かつ'로 고친다.

제15조의 표제 중 '引渡'를 '引渡し'로 고치고, 동조 중 '引渡'를 '引渡し'로, '감옥'을 '형사시설'로 '但し'를 'ただし'로, '取消'를 '取消し' 로 고친다.

제17조 제1항 중 '감옥'을 '형사시설'로, '引渡'를 '引渡し'로 고치고, 동조 제5항 중 '감옥'을 '형사시설'로, 'すみやかに'를 '速やかに'로, '引渡'를 '引渡し'로 고친다.

제20조 제1항 중 '引渡'를 '引渡し'로, '감옥'을 '형사시설'로 고치고, 동

条第2項中「監獄」を「刑事施設」に，「引渡」を「引渡し」に，「求めがない」に改める。
第22条第4項中「監獄」を「刑事施設」に改め、同条第5項中「監獄」を「刑事施設」に，「但し」を「ただし」に，「すみやかに」を「速やかに」に改め同条第6項中「取消」を「取消し」に，「監獄」を「刑事施設」に，「すみやかに」を「速やかに」に改める。
第27条第2項及び第29条中「監獄」を「刑事施設」に改める。

第33条（執行猶予者保護観察法の一部改正）　執行猶予者保護観察法（昭和29年法律第58号）の一部を次のように改正する。
第11条第2項中「監獄」を「刑事施設」に，「但し」を「ただし」に改める。

第34条（売春防止法の一部改正）　売春防止法（昭和31年法律第118号）の一部を次のように改正する。
第22条第3項中「監獄」を「刑事施設」に改める。
第28条第2項中「第50条第1項」を「第50条」に，「監獄」を「刑事施設」に改める。
第31条中「受け終った」を「受け終わった」に，「監獄」を「刑事施設」に「仮出獄」を「刑法第28条の規定による仮釈放」に改める。

第35条（国民年金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一部改正）　国民年金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昭和60年法律第34号）の一部を次のように改正する。
附則第28条第10項に後段として次のように加える。
この場合において，旧国民年金法第65条第1項第2号中「監獄」とあるのは，「刑事施設」とする。

第36条（外国艦船乗組員ノ逮捕留置ニ関スル援助法等の一部改正）　次に掲げる法律の規定中「監獄」を「刑事施設」に改める。

1.　外国艦船乗組員ノ逮捕留置ニ関スル援助法（明治32年法律第68号）第7条

조 제2항 중 '감옥'을 '형사시설'로, '引渡'를 '引渡し'로, '求かない'를 '求めがない'로 고친다.

제22조 제4항 중 '감옥'을 '형사시설'로 고치고, 동조 제5항 중 '감옥'을 '형사시설'로, '但し'를 'ただし'로, 'すみやかに'를 '速やかに'로 고치고, 동조 제6항 중 '取消'를 '取消し'로, '감옥'을 '형사시설'로, 'すみやかに'를 '速やかに'로 고친다.

제27조 제2항 및 제29조 중 '감옥'을 '형사시설'로 고친다.

제33조 (執行猶豫者保護觀察法의 一部改正) 집행유예자보호찰법(1954년 법률 제58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감옥'을 '형사시설'로, '但し'를 'ただし'로 고친다.

제34조 (賣春防止法의 一部改正) 매춘방지법(1956년 법률 제118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3항 중 '감옥'을 '형사시설'로 고친다.

제28조 제2항 중 '제50조 제1항'을 '제50조'로, '감옥'을 '형사시설'로 고친다.

제31조 중 '受け終つた'를 '受け終わた'로, '감옥'을 '형사시설'로, '가출옥'을 '형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으로 고친다.

제35조 (國民年金法 등의 一部를 改正하는 法律의 一部改正) 국민연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85년 법률 제34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8조 제10항에 후단으로서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이 경우에 국민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2호중 '감옥'은 '형사시설'로 한다.

제36조 (外國艦船 乘務員의 逮捕留置에 관한 援助法 등의 一部改正)다음에 열거하는 법률의 규정중'감옥'을 '형사시설'로 고친다.

1. 외국함선승무원의 체포유치의 관한 원조법(1899년 법률 제68호)제7조

2.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昭和22年法律第50号)第14条の2第1号
3. 国家公務員法(昭和22年法律第120号)第108条の2第5項
4. 公職選挙法(昭和25年法律第100号)第49条第1項第3号
5. 国家公務員災害補償法(昭和26年法律第191号)第12条第1号
6. 麻薬取締法(昭和28年法律第14号)第58条の5
7. 国民健康保険法(昭和33年法律第192号)第59条第3号
8. 国民年金法(昭和34年法律第141号)第36条の2第1項第2号
9. 地方公務員災害補償法(昭和42年法律第121号)第28条第1号
10. 老人保健法(昭和57年法律第80号)第36条
11. 国民年金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附則第32条第9項の規定によりなお効力を有するものとされた同法第1条の規定による改正前の国民年金法第65条第1項第2号

附　則

この法律(第1条を除く。)は，昭和63年5月1日から施行する。

理　由

刑事施設法の施行期日及びその施行に伴い必要な経過措置を定めるとともに，関係法律の規定を整理する必要がある。これが，この法律案を提出する理由である。

2.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1947년 법률 제50호) 제14조의 2 제1호
3. 국가공무원법(1947년 법률 제120호) 제108조의 2 제5항
4. 공직선거법(1950년 법률 제100호) 제49조 제1항 제3호
5. 국가공무원재해보상법(1951년 법률 제191호) 제12조 제1호
6. 마약단속법(1953년 법률 제14호) 제58조의 5
7. 국민건강보험법(1958년 법률 제192호) 제59조 제3호
8. 국민연금법(1959년 법률 제141호) 제36조의 2 제1항 제2호
9. 지방공무원재해보상법(1967년 법률 제121호) 제28호 제1호
10. 노인보건법(1982년 법률 제80호) 제36조
11. 국민연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부칙 제32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해 여전히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된 동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전의 국민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2호

附 則

이 법률(제1조를 제외한다)은 198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理 由

형사시설법의 시행기일 및 그 시행에 따라 필요한 경과조치를 정함과 아울러 관계법률의 규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 법률안을 제출하는 이유이다.

여 백

제2부

싱가포르

PRISONS ACT

Ords. 17 of 1933,
23 of 1935,
21 of 1940,
65 of 1940,
10 of 1950,
37 of 1952,
38 of 1956,
31 of 1958,
71 of 1959,
72 of 1959,
Act. 14 of 1969.
G.Ns. S 223/59,
S (N.S.) 177/59,
S (N.S.) 179/59.

CONTENTS

PART I. PRELIMINARY
PART II. CONSTITUTION AND ADMINISTRATION
PART III. OFFICERS
PART IV. CUSTODY AND REMOVAL OF PRISONERS
PART V. DISCIPLINE AND PRISON OFFENCES

An Act to amend and consolidate the law relating to prisons.

[18th August 1933]

PART I. PRELIMINARY

Short title.

1. This Act may be cited as the Prisons Act.

Interpretation.
Am. 38 of 1956.

2. In this Act, unless there is something repugnant in the subject or context —

"Director" means the Director of Prisons appointed

行 刑 法

(1933. 칙령 17)

<改正>

1935. 칙령 23	1952. 칙령 37	1969. 법률 14
1940. 칙령 21	1956. 칙령 38	
1940. 칙령 65	1958. 칙령 31	
1950. 칙령 10	1959. 칙령 72	

제1장 序則 (제1조～제2조)
제2장 組織과 管理 (제3조～제7조)
제3장 公務員 (제8조～제22조)
제4장 受刑者의 監護와 移送 (제23조～제38조)
제5장 規律과 矯導所犯罪 (제39조～제65조)

矯導所에 관한 法을 改正하고 통합한 法律

(1933. 8. 18.)

제1장 序 則

제1조 (略式名稱) 이 법은 行刑法으로 인용한다.

제2조 (定義) 이 法에서 主題나 內容에서 不一致한 것이 없는 한,

"長"이란 제8조에 의하여 임명된 矯導所長을 말한다.

"靑少年"이란 矯導所에 수용되어 있는 有罪가 宣告되었거나 선고되지

under section 8;

"juvenile" means any person under the age of sixteen years, whether convicted or not, under detention in any prison;

"prescribed" means prescribed by regulations under section 64;

"prison" means any house, building, enclosure or place, or any part thereof, declared to be a prison or reformative training centre under section 3, and shall include the grounds and buildings within the prison enclosure and also the airing grounds or other grounds or buildings belonging or attached thereto and used by prisoners;

"prison officer" means any Chief Rehabilitation Officer, Principal Rehabilitation Officer, warder or other subordinate officer;

"prisoner" means any person, whether convicted or not, under detention in any prison or reformative training centre;

"Superintendent" means a Superintendent of Prisons appointed under section 8;

"Visiting Justice" means a member of the Board of Visiting Justices appointed under section 62.

PART II. CONSTITUTION AND ADMINISTRATION

Power to declare prisons.
Am. 38 of 1956, 72 of 1959.

3. The Minister, by notification in the *Gazette*, may—

(a) declare any house, building, enclosure or place, or any part thereof, to be a prison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for the imprisonment or detention of persons lawfully in custody;

(b) define which prisons shall be used for the custody of particular classes of prisoners;

(c) declare that any prison shall cease to be a prison; and on the gazetting of such declaration, or from and after any later date specified therein, such prison shall cease to be a prison; and

아니한 16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規定한"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한 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矯導所"는 제3조에 의하여 矯導所 또는 保護訓練院 이라고 지칭된 家屋, 建物, 構內, 장소 또는 그 일부 시설을 말하고, 교도소 구내에 있는 대지와 건물 그리고 교도소 산책장소 기타 교도소에 속하고 수용자가 사용하는 장소 또는 건물을 포함한다.

"矯導官"는 主任更生公務員, 責任更生公務員, 矯導官 또는 기타 하급 공무원을 의미한다.

"收容者" 矯導所 또는 保護訓練所에 수용되어 있는 有罪가 宣告된 또는 선고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監督者"는 제8조에 의하여 임명된 矯導所의 監督者를 말한다.

"訪問判事"는 제62조에 의하여 임명된 訪問判事委員會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2장 組織과 管理

제3조 (矯導所指定權) 長官은 官報의 公示로

1. 家屋, 建物, 構內 또는 場所, 또는 그 일부를 적법하게 監護 중인 자의 收容 또는 留置를 위한 본법의 목적상의 矯導所임을 선언할 수 있고,
2. 어느 矯導所가 특별한 類型의 수용자를 收監하기 위하여 사용된다라고 限定할 수 있다.
3. 어느 矯導所가 교도소임이 中止된다고 선언할 수 있다. 이 선언이 官報에 게재된 때부터 또는 그 것에 정한 그 다음 날부터 그 교도소는 폐지된다.

(d) declare any prison, house, building, enclosure or place, or any part thereof, to be a reformative training centre for the detention of persons sentenced to reformative training.

Appointment of lock-ups at police stations and court houses as places of detention. Am. 72 of 1959.

4. (1) It shall be lawful for the Minister by notification in the *Gazette* to appoint the lock-ups at such police stations and court houses as may be specified in the notification to be places for the confinement of persons awaiting trial, remanded, or sentenced to such terms of imprisonment, not exceeding one month, as may be specified in each case.

(2) A lock-up appointed as a place of confinement under subsection (1) shall not be deemed to be a prison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or of the Registration of Criminals Ordinance, and regulations made under section 64 of this Act shall not apply thereto, but every such lock-up shall be deemed to be a prison for the purposes of Chapter XXV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Am. 72 of 1959.

(3) The Minister may make regulations with regard to lock-ups appointed under subsection (1) to provide for all or any of the following matters:—

(a) the inspection and management of such lock-ups and the officers to be in charge thereof;

(b) the employment of persons confined therein;

(c) the diets to be supplied to such persons;

(d) the maintenance of discipline.

(4) All regulations made under subsection (3) shall be published in the *Gazette* and shall thereupon have the force of law.

Temporary prisons. Am. 72 of 1959.

5. Whenever it appears to the Director—

(a) that the number of prisoners in any prison is greater than can be conveniently kept therein, and that it is not convenient to transfer the excess number to some other prison; or

(b) that, by reason of the outbreak within any prison of disease or for any other reason, it is desirable to provide for the temporary shelter and safe custody of any prisoners,

4. 矯導所, 家屋, 건물, 구내, 장소 또는 그 일부 시설을 보호훈련이 선고된 자의 수용을 위한 保護訓練所라 선언할 수 있다.

제4조 (警察署 留置場과 法院庁舍의 收容場所로의 指定) ① 長官은 官報에의 告示에 의하여 그 고시에서 상술될 수 있는 警察署留置場과 法院庁舍을 각 事件에서 명시되는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수용이 선고된 審理待機者의 수용을 위한 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收容場所로 지정된 留置場은 이 법의 目的上 또는 犯罪者登錄令의 目的上 矯導所로 간주되지 아니하고 이 법 제64에 의한 규정은 여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모든 留置場은 형사소송법 제15장의 목적을 위한 교도소로 간주된다.

③ 長官은 다음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비하기 위하여 제1항에서 指定된 留置場에 관하여 규정을 둘 수 있다.

1. 유치장의 檢査와 管理 그리고 그에 관하여 責任을 負擔하는 공무원
2. 그곳에 收容된 자의 勞役
3. 規律의 維持

④ 제3항에 의한 모든 규정은 官報에 公示되어야 하고 이 때부터 法의 效力을 갖는다.

제5조 (臨時矯導所) 矯導所長에게

1. 교도소내의 收容者의 수가 그안에서 편리하게 지낼 수 있는 수보다 많고 초과된 수의 수용자를 다른 矯導所에 移送하는 것이 편리하지 아니한 때,
2. 矯導所내의 疾病의 發生 또는 다른 理由로 임시보호소와 수용자의 안전한 監視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일 때에는,

such provision shall be made as the Director,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may direct for the shelter and safe custody in temporary prisons of so many of the prisoners as cannot be conveniently or safely kept in the prison, and every such temporary prison shall be a prison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General administration of prisons.
Am. 72 of 1959.

6. Subject to the orders of the Minister, the general charge and administration of prisons and the control and direction of prison officers throughout Singapore shall be vested in the Director, who may from time to time make such transfers, and direct the employment and distribution, of prison officers as he may think fit.

Administration of prisons.
Am. 72 of 1959.

7. (1) Subject to the orders of the Director, the administration of the prisons shall be vested in a Superintendent:

Provided that where there are more Superintendents than one appointed, the administration of all or any of the prisons shall be vested in such Superintendent or Superintendents as the Minister may determine.

Am. 72 of 1959, 14 of 1969.

(2) The powers and duties of a Superintendent under this Act or any regulations made thereunder may be exercised and performed in case of the absence or incapacity of the Superintendent by any officer appointed by the Minister to exercise and perform the same:

Provided that pending such appointment the powers and duties of a Superintendent shall be exercised and performed by the senior prison officer.

PART III. OFFICERS

Appointment of officers.
Am. S (N.S.) 179/59.

8.— (1) The President may appoint a Director of Prisons for Singapore, and, either by name or as holding any office for the time being, one or more Superintendents of Prisons, and such and so many prison officers, male or female, as may be necessary.

3. 矯導所長은 長官의 承認을 얻어 교도소에 편리하거나 안전하게 수용될 수 없는 많은 수의 수용자를 保護所를 두어 이 臨時保護所에서 안전하게 수용할 것을 명할 수 있는 條項이 두어져야 한다. 이 모든 臨時矯導所는 이 법의 目的上의 교도소이다.

제6조 (矯導所의 管理) 長官의 命令에 따라 교도소의 一般的 職務와 管理, 싱가포르 전역의 교도소의 통제와 관리는 교도소장에게 부여된다. 矯導所長은 수시로 이러한 變更을 할 수 있고 자신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矯導官의 採用과 配置를 지시할 수 있다.

제7조 (矯導所의 管理) ① 矯導所의 命令에 따라 교도소의 管理는 監督者에게 부여된다. 한 명이상의 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교도소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는 長官이 정하는 한명 또는 수인의 감독자에게 부여된다.

② 이 법에 의한 監督者의 權利와 義務 또는 이에 의하여 制定된 규정은 감독자가 없거나 無能力인 경우에 實行하고 行使하기 위하여 長官이 任命한 공무원에 의하여 행사하고 수행될 수 있다. 그러나 任命될 때까지는 監督者의 權限과 義務는 상급교도소 공무원에 의하여 행사되고 수행된다.

제3장 公務員

제8조 (公務員의 任命) ① 大統領은 싱가포르 矯導所長과 명목상 또는 당분간 어떠한 職責을 가진 1인 또는 수인의 교도소 監督官 그리고 필요에 따라 많은 수의 남자 또는 女子矯導官을 任命할 수 있다.

② 所長과 監督者의 임명은 官報에 공시되어야 한다.

(2) The appointment of the Director and of any Superintendent shall be notified in the *Gazette*.

Prison Stadning Orders.

9. The Director may issue orders, to be called "Prison Standing Orders", not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ct or of any regulations made thereunder.

Inspection by Director.

10. The Director shall periodically visit and inspect, or cause to be visited and inspected, all prisons in Singapore.

Director may exercise powers of Superintendent.

11. The Director may exercise and perform any of the powers conferred or duties imposed by law on a Superintendent.

Duties of Superintendent.

12. Subject to the orders of the Director, a Superintendent shall supervise and control all matters in connection with any prison the administration of which is vested in him, and shall be responsible to the Director for the conduct and treatment of the prison officers and prisoners under his control, and for the due observance by prison officers and prisoners of the provisions of this Act and of all other laws, regulations or orders relating to prisons or prisoners.

Medical officer for prisons.

13.—(1) The Director of Medical Services shall, whenever the circumstances permit, appoint from the staff of the Medical Department a medical officer for the prisons.

Am. 72 of 1959.

(2) If circumstances do not permit of the Director of Medical Services making an appointment under subsection (1), the Minister may appoint any registered medical practitioner to be the medical officer for any particular prison.

(3) Whenever a medical officer appointed under subsection (1) shall owing to illness or temporary absence or for other sufficient reason be unable to perform his duties as such medical officer, such duties shall be performed by a member of the staff of the Medical Department appointed in that behalf by the medical officer, or in default of the medical officer by the Superintendent.

Duties of medical officer.

14. Subject to the control of the Director, the medical officer shall perform such duties as may be prescribed.

제9조 (矯導所 內規) 所長은 이 法 또는 이에 의하여 制定된 규정의 조항과 相違가 없는 교도소 內規라 불리는 命令을 발할 수 있다.

제10조 (所長의 巡閱) 所長은 싱가포르 내의 모든 矯導所를 정기적으로 訪問·檢閱하거나 방문·검열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 (所長의 監督者 權限의 行使) 所長은 법에 의하여 監督者에게 부여된 權限과 부과된 의무를 행사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監督者의 義務) 감독자는 所長의 命令에 따라 자신에게 부여된 矯導所의 運營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監視하고 統制하여야 하고, 소장은 자신이 감독하고 있는 矯導官과 收容者의 행위와 취급에 대하여 責任을 지고, 교도소관과 수용자가 이 法과 교도소 또는 수용자에 관한 기타 法律, 規定 또는 命令을 정당하게 遵守하였는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醫務官) ① 醫療院長은 상황이 허락할 때마다 醫務官의 직원중에서 收容者를 위한 醫務官을 任命하여야 한다.

② 醫療院長이 제1항에 의한 任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관은 특정한 矯導所를 위한 의무관으로서 登錄된 開業醫를 任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기하여 임명된 醫務官이 疾病 또는 一時的 不在 또는 기타 理由로 의무관으로서의 職務를 遂行할 수 없는 경우에 그 職務는 의무관 또는 의무관이 없는 경우에는 監督者가 이에 관하여 任命한 醫務部 職員의 구성원이 수행한다.

제14조 (醫務官의 義務) 所長의 統制를 받아 醫務官은 규정된 義務를 수행하여야 한다.

Terms of engagment of prison officers.

15.—(1) All prison officers who are not engaged or re-engaged for a term of years, or whose services are retained without special engagement at the end of such term, shall be held to be under engagement to the Government to serve on the prisons staff from month to month, every such engagement, after the first month's service, being held to begin on the first and to be determinable on the last day of each successive month.

(2) No prison officer shall be entitled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Superintendent to resign or withdraw from prison duties unless he shall have given not less than one month's notice in writing to the Superintendent of his intention to resign.

(3) Every such notice shall be given on or before the first day of the month at the end of which such officer intends to cease performing prison duties.

(4) Any prison officer who contravenes the provision in subsection (2) shall be liable to a fine not exceeding one hundred dollars or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three months, or to both, and all arrears of pay due to him may be forfeited.

Suspension from duty.

16. Any prison officer may, pending the determination of an inquiry, be suspended from the performance of duty by the Director or by a Superintendent.

Duties of prison officers.

17. Prison officers shall perform such duties as may be prescribed.

Accoutrements.

18. Every Superintendent and every prison officer shall be provided with such staves, arms, ammunition and other accoutrements as may be prescribed.

Observance of laws, regulations and orders.

19. Every Superintendent and every prison officer shall strictly conform to all law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prisons and prisoners, and shall obey all lawful orders of his superior officers, whether given verbally or in writing, or issued in the form of prison regulations or standing orders.

제15조 (矯正公務員의 任用期間) ① 수년의 기간동안 雇傭 또는 再雇傭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의 職務가 이 기간의 종료에 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모든 矯導官은 月單位로 교도소공무원으로 奉仕하도록 政府와 契約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모든 契約은 최초 월의 服務 후에 다시 시작하고 每月 말일에 종료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② 矯正公務員은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1월이상 辭任意思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감독자로부터의 書面許可없이는 矯導所職務에서 사임할 수 없다.

③ 모든 通知는 공무원이 矯導所職務의 수행을 중지하고자 하는 月의 初日 또는 그 이전에 행하여져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矯導官은 100달러이하의 罰金 또는 3월 이하의 懲役 또는 이 양자를 병과한다. 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未支給金은 沒收할 수 있다.

제16조 (職務의 停止) 矯導官은 조사가 係留중인 경우에는 所長 또는 監督官에 의하여 職務遂行이 정지될 수 있다.

제17조 (矯導官의 職務) 矯導官은 규정된 職務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 (服裝) 모든 監督者와 矯導官에게는 규정된 대로 棍棒, 武器, 兵器 기타 服裝이 지급되어야 한다.

제19조 (法律, 規定 그리고 命令의 遵守) 모든 監督者와 矯導官은 교도소와 수용자에 관한 모든 法律과 規定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고 口頭 또는 書面으로, 矯導所 內規으로 발부되었든 간에 上級公務員의 모든 적법한 命令을 준수하여야 한다.

Prison officers deemed public servants.

20. The Director, and all Superintendents, medical officers and prison officers appointed under this Act or under any regulations made thereunder, shall be deemed to be public servants within the meaning of the Penal Code.

Use of weapons.

21.—(1) Every Superintendent and every prison officer may use weapons against any prisoner escaping or attempting to escape:

Provided that resort shall not be had to the use of any such weapons unless such officer has reasonable ground to believe that he cannot otherwise prevent the escape.

(2) Every Superintendent and every prison officer may use weapons on any prisoner engaged in any combined outbreak, or in any attempt to force or break open the outside door or gate or enclosure wall of the prison, and may continue to use such weapons so long as such combined outbreak or attempt is being actually prosecuted.

(3) Every Superintendent and every prison officer may use weapons against any prisoner using violence to any prison officer or other person, provided that such officer has reasonable ground to believe that the prison officer or other person is in danger of life or limb, or that other grievous hurt is likely to be caused to him.

(4) Before using firearms against a prisoner under the authority conveyed in subsection (1), the officer shall give a warning to the prisoner that he is about to fire on him.

(5) No prison officer shall, in the presence of his superior officer, use arms of any sort against a prisoner in the case of an outbreak or attempt to escape except under the orders of such superior officer.

(6) The use of weapons under this section shall be, as far as possible, to disable and not to kill.

(7) Every police officer and constable who is for the time being serving in the capacity of an escort, or of a guard in or around any prison or lock-up, for the purpose of ensuring the safe custody of any prisoner or prisoners, shall be deemed to have all the powers and privileges granted to prison officers under this section.

제20조 (公的 奉任者) 所長 또는 모든 監督者, 醫務官 그리고 이 법 또는 이에 의하여 발하여진 命令에 의하여 任命된 교도관은 刑法이 의미하는 公的 奉仕者로 간주된다.

제21조 (武器의 使用) ① 모든 監督者와 교도관은 逃走하거나 逃走를 시도하려는 收容者에 대하여 武器를 사용할 수 없다고 믿는 데 상당한 根據가 있지 아니하는 한 이 武器의 사용에 의존하여서는 안된다.

② 모든 監督者와 矯導官은 合同하여 暴動 또는 교도소의 外部出入口, 大門, 구내담을 강제로 또는 깨뜨려 열려고 시도하는 데 관계된 수용자에게 武器를 사용할 수 있고 이 합동한 暴動 또는 試圖가 실제로 遂行되고 있는 한 이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계속할 수 있다.

③ 모든 監督者와 矯導官은 교도관 또는 다른 사람에게 暴力을 사용하는 수용자에 대하여 武器를 사용할 수 있다. 단, 교도관 또는 다른 사람의 生命 또는 身體에 危險이 있거나 기타 중대한 傷害가 야기될 것이라고 認定하는 정당한 根據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제1항의 權限에 의하여 收容者에 대하여 武器를 사용하기 전에 公務員은 수용자에게 發砲하려고 한다는 警告를 하여야 한다.

⑤ 矯導官은 上級矯導官의 面前에서는 이 상급공무원의 命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暴動 또는 逃走試圖의 경우에 어느 종류의 武器도 사용할 수 없다.

⑥ 이 조의 武器의 사용은 가능한 한 殺人하는 것이 아닌 無力化하는 것이어야 한다.

⑦ 한명 또는 수인의 收容者의 안전한 監視를 확보할 목적으로 矯導所 또는 留置場 안에서 또는 주위에서 護送 또는 監視의 權限아래 당시 근무중인 모든 警察은 이 조에 의하여 교도관에 부여된 모든 權限과 特權을 가진 것으로 본다.

Prison officers to have powers of police constable.

22. Every Superintendent and every prison officer while acting as such shal have by virtue of his office all the powers, authorities, protections and privileges of a police constable.

PART IV. CUSTOPY AND REMOVAL OF PRISONERS

Prisoners deemed in legal custody.

23.—(1) Every prisoner confined in any prison shall be deemed to be in the legal custody of the Superintendent thereof.

(2) Every prisoner shall be subject to the prison discipline and regulations during the whole time of his imprisonment, whether he is or is not within the precincts of any prison.

Superintendent to detain persons committed.

24. The Superintendents appointed under this Act are hereby authorized and required to keep and detain all persons duly committed to their custody by any court, Judge, Magistrate, Justice of the Peace, Coroner, or other public officer lawfully exercising civil or criminal jurisdiction, according to the exigency of any writ, warrant or order by which such person has been committed, or until such person is discharged by due course of law.

Delivery of persons on remand.

Am. 72 of 1959.

25. Every person remanded to any prison by any court, Judge, Magistrate, Justice of the Peace or Coroner, charged with any crime or offence, shall be delivered to the Superintendent of such prison as the Minister appoints for the custody of such persons, together with warrant of commitment, and such Superintendent shall detain such person according to the terms of such warrant, and shall cause such person to be delivered to such court, Judge, Magistrate, Justice of the Peace or Coroner, or shall discharge such person at the time named in and according to the terms of such warrant.

Delivery of persons arrested on warrant.

26. Every person arrested in pursuance of any writ, warrant or order of any court having civil jurisdiction shall be brought without delay before the court by which the writ,

제22조 (警察의 權限을 갖는 矯導官) 이와 같이 행위하고 있는 동안 모든 監督者와 敎導官은 그의 任務에 관하여 警察의 모든 權限, 保護 그리고 特權을 갖는다.

제4장 受刑者의 監護와 移送

제23조 (適法한 監護下에 있다고 看做되는 收容者) ① 矯導所에 收容된 모든 수용자는 監督者의 적법한 監護下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② 수용자는 矯導所構內에 있건 그러하지 아니하건 전수용기간 동안 교도소규율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 (宣告된 자를 留置할 監督者의 權限) 이 法에 의하여 任命된 감독자는 이에 의하여 그에게 유죄가 선고된 証書, 令狀 또는 命令의 요구에 따라서, 또는 그者가 適法節次에 의하여 釋放될 때까지 民事 또는 刑事裁判權을 적법하게 행사하고 있는 법원, 법관, 유급치안판사, 명예치안판사 또는 기타 공무원에 의하여 정당하게 監護가 宣告된 모든 자를 保護하고 收容할 權限이 있고 이것이 요구된다.

제25조 (拘禁중인 자의 移送) 법원, 법관, 有給治安判事, 名譽治安判事 또는 調査官에 의하여 犯罪行爲 또는 違法行爲로 告發되어 어느 矯導所에 수용된 자는 拘束令狀과 함께 長官이 수용자의 監護를 위하여 指定하는 교도소의 監督者에게 이송되어야 한다. 監督者는 令狀의 條件에 따라 그를 수용하고 법원, 법관, 유급치안판사, 명예치안판사 또는 조사관에게 그 수용자를 인도하게 하여야 하고 또는 令狀의 條件에서 지정된 또는 그에 따른 時期에 그를 釋放하여야 한다.

제26조 (令狀에 의하여 逮捕된 자의 移送) 民事裁判權을 가진 法院의

warrant or order was issued, awarded or made, and if such court is not then sitting such person shall be delivered to the Superintendent for intermediate custody, and the Superintendent shall cause such person to be brought before the said court at its next sitting, in order that such person may be dealt with according to law.

Production of persons before the court.

27.—(1) Whenever the presence of any person confined in a prison is required in any court of civil or criminal jurisdiction, such court may issue an order in writing addressed to the Superintendent requiring the production before the court of such person in proper custody at the time and place to be named in such order, and such Superintendent shall cause the person named in such order to be brought up as directed, and shall provide for his safe custody during his absence from prison, and every such court may by endorsement on such order require the person named therein to be again brought up at any time to which the matter wherein such person is required may be adjourned.

(2) Every such order issued from the Supreme Court may be signed by a Registrar of the Court, and if issued by a District Court may be signed by the Judge or Registrar thereof and if issued by any other court shall be signed by the Magistrate or Coroner, as the case may be.

Powers of Minister for production of prisoner in certain cases.

Am. S. (N.S.) 177/59.

28.—(1) The Minister, on proof to his satisfaction that the presence of any prisoner at any place is required in the interests of justice, or for the purpose of any public inquiry, may by writing under his hand order that the prisoner be taken to that place.

(2) A prisoner taken from a prison in pursuance of an order made under this section shall, while outside that prison, be kept in such custody as the Minister may by writing under his hand so direct and while in that custody shall be deemed to be in legal custody.

Discharge of prisoners.

29. The Superintendent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due discharge of all prisoners immediately upon their becoming entitled to release, whether by the expiration of their terms of sentence, or by pardon, or by commutation, or by remis-

令狀 또는 命令에 의하여 逮捕된 모든 사람은 영장, 명령이 발부되거나 심사된 法院앞에 지체없이 召喚되어야 한다. 만일 이때 法院이 開廷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는 臨時監護를 위하여 監督者에게 移送되어야 하고, 감독자는 그 法律에 따라 處理되게 하기 위하여 다음에 開廷되는 상기 법원앞에 이 자를 出席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 (法院에의 出席) ① 矯導所에 수용되어 있는 자의 出席이 民事 또는 刑事管轄權의 法院에서 요구되는 때에는 법원은 令狀에 지정된 時間과 場所에 적절히 監護하여 그를 법원앞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監督者에 대한 書面命令을 발할 수 있다. 이 감독자는 그 명령에 지정된 자를 명령대로 출석하게 하여야 하고 矯導所에 없는 동안 안전한 監護를 제공하여야 하고, 모든 法院은 이 令狀에의 背書에 의하여 令狀에 指定된 자를 당해 사람을 필요로 하는 事案을 延期하여 다시 정한 時期에 출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大法院으로부터 발행된 모든 令狀은 法院記錄係에 의하여 署名될 수 있고 地方法院에 의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法官 또는 그곳의 記錄係에 의하여 署名될 수 있고 다른 법원에 의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有給治安判事 또는 檢屍官에 의하여 서명될 수 있다.

제28조 (特定한 경우 受刑者의 출석을 위한 長官의 權限) ① 長官은 法院의 이익 또는 公的 調査의 목적상 收容者의 어느 장소에서 출석이 요구된다는 충분한 證據에 의하여 수용자를 그곳으로 출석시키도록 書面으로 命令할 수 있다.

② 이 조에 의하여 발하여진 命令에 따라 矯導所로부터 데려온 收容者는 교도소 밖에 있는 동안 長官이 書面으로 指示한 것과 같이 監護되고 이 감호 동안은 적법한 감호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29조 (受刑者의 釋放) 監督者는 宣告期間의 滿了 또는 假釋放, 減刑

sion of sentence.

Occurrence of infectious disease.

Am. S (N.S.) 177/59.

30.—(1) In case of a contagious or infectious disease occurring in any prison, it shall be lawful to remove any of the prisoners from such prison to another place although such place may not be a prison under this Act, and such removal may be made in pursuance of an order under the hand of the Minister, or, in a case of emergency, of the Superintendent or of any of the Visiting Justices of such prison.

(2) Any such place shall be deemed during the continuance of any prisoner therein to be a part of the prison from which such prisoner was so removed, and when such disease shall have ceased, any prisoners so removed from any prison shall be taken back to the prison whence they were removed, if still liable to be confined therein.

Prisoners of unsound mind.

Am. S (N.S.) 177/59.

31.—(1) Whenever a prisoner undergoing a sentence of imprisonment appears to the Minister on the certificate of a registered medical practitioner to be of unsound mind, the Minister may, by order in writing, setting forth the grounds of belief that such prisoner is of unsound mind, direct his removal to any mental hospital or other fit place of safe custody within Singapore, there to be kept and treated as the Minister directs until the expiration of the term of imprisonment ordered by the sentence, or if it is certified by a medical officer that it is necessary for the safety of the prisoner or of others that he should be detained under medical care and treatment, then until he is discharged according to law.

(2) When it appears to the Minister on the certificate of a registered medical practitioner that such prisoner has again become of sound mind, the Minister, by an order in writing, shall return him to the prison whence he was removed if his term of imprisonment has not expired, but if such term has expired shall direct him to be discharged.

(3) Section 41 of the Mental Disorders and Treatment Ordinance shall apply to every person confined in a mental hospital under this section after the expiration of the term of imprisonment to which he has been sentenced, and the time during which he is so confined shall be reckoned as part of such term.

또는 宣告의 免除에 의하여 釋放될 權限이 있게 되는 모든 수용자를 즉시 정당하게 釋放할 責任이 있다.

제30조 (傳染病의 發生) ① 傳染病이 矯導所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이 장소가 이 法에 의한 교도소가 아닐지라도 이 교도소에서 다른 장소로 收容者를 移送하는 것은 적법하다. 이 이송은 長官의 命令 또는 급박한 경우에는 監督者 또는 이 교도소의 訪問判事의 命令에 따라 행하여 질 수 있다.

② 이 場所는 收容者의 滯留동안에는 矯導所의 一部로 간주되고, 이 疾病이 종료된 경우에는 矯導所로부터 移送된 수용자는 그때까지 收容될 責任이 있는 경우에는 이송되어 온 교도소로 다시 이송된다.

제31조 (非正常的인 精神의 受刑者) ① 收容宣告를 받은 수용자가 長官에게 등록된 開業醫 確認書에 의하여 비정상적 精神狀態이라고 보일 때에는 長官은 수용자가 비정상적인 정신상태라고 믿는 근거를 밝히는 書面上의 命令으로 精神病院 또는 기타 싱가포르 안의 적절한 안전한 監護場所에 移送하여 判決에 따라 명령된 收容期間의 만료까지 또는 醫務官이 수용자 또는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醫師의 看護와 治療아래 수용될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法律에 따라 釋放될 때까지 長官이 命令하는 곳에 수용하여 치료받게 할 수 있다.

② 登錄된 開業醫의 증명서에 의하여 長官에게 이 收容者가 다시 정상적인 정신상태가 된 듯한 때에는 장관은 書面上의 命令에 의하여 收容期間이 만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가 移送되어 온 교도소로 다시 移送하고 이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釋放을 명하여야 한다.

③ 精神病과 治療令 제41조는 선고된 收容期間이 만료되어 이 조에 의하여 精神病院에 收容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이와같이 수용된 期間은 이 期間의 一部로 계산된다.

Removal of prisoners.

32.—(1) The Director may, by order in writing, remove all or any prisoners confined in any prison to another prison within Singapore, and it shall not be necessary in such order to designate any prisoner by name, but it shall be sufficient to describe such prisoner or prisoners by reference to their nationality or sentence, or by some other like general description.

Add. 38 of 1956. Am. S (N.S.) 177/59.

(2) If the Minister is satisfied that a person serving a sentence of imprisonment is under twenty-one years of age and might with advantage be detained in a reformative training centre he may, after consultation where practicable with the Judge or District Judge of the court which passed the sentence, authorize the Director to transfer him to a reformative training centre; and the provisions of subsection (7) of section 13A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shall thereupon apply to him as if he had on the date of the transfer been sentenced to reformative training:

Provided that if on that date the unexpired term of his sentence is less than three years those provisions shall apply to him as if he had been sentenced to reformative training three years before the expiration of that term.

Add. 38 of 1956. Am. S (N.S.) 177/59.

(3) If a person detained in a reformative training centre is reported to the Minister by the Visiting Justices to be incorrigible, or to be exercising a bad influence on the other inmates of the institution, the Minister may commute the unexpired part of the term for which the said person is then liable to be detained in a reformative training centre to such term of imprisonment as the Minister may determine, not exceeding the said unexpired part; and for the purpose of this Act the said person shall be treated as if he had been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that term.

Illness of a prisoner.

33.—(1) In case of the serious illness of a prisoner (other than a prisoner referred to in subsection (2)) confined in a prison in which there is not suitable accommodation for such prisoner, any Superintendent may, on the certificate of a medical officer, make an order for his removal to a Government hospital.

Am. S (N.S.) 177/59.

(2) Where a prisoner confined in a prison appears to the Minister on the certificate of a registered medical practitioner

제32조 (受刑者의 移送) ① 所長은 書面上의 命令으로 어느 矯導所에 수용된 모든 또는 어느 受刑者를 싱가포르에 있는 다른 교도소로 移送할 수 있다. 이 命令에는 수용자의 이름을 摘示할 필요는 없고 國籍, 宣告에 또는 기타 一般的 記述에 의하여 이 수형자 또는 수형자들을 기술함으로 충분하다.

② 長官이 收容宣告를 받은 자가 21세 미만이고 保護訓練院에 수용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宣告를 내린 法官 또는 法院의 地區法官과 가능한 한 협의를 거친 후에 장관은 소장에게 保護訓練院에 移送하게 할 수 있다. 刑事訴訟法 제 13A 조 제7항의 규정은 移送時에 보호훈련에 宣告된 것처럼 곧 그에게 적용한다. 다만, 선고된 未終了期間이 이 때 3년미만인 경우에는 收容者가 그 기간의 종료 3년전에 보호훈련이 선고된 것과 같이 그에게 적용한다.

③ 保護訓練院에 수용된 자가 訪問判事에 의하여 長官에게 敎化할 수 없거나 施設의 다른 收容者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으로 報告된 경우에 장관은 상기의 자가 보호훈련원에 收容될 義務가 있는 未終了期間을 장관이 정하는 상기의 미종료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收容期間으로 輕減할 수 있다. 이 법에서 상기의 자는 그 期間동안 收容宣告를 받은 것처럼 취급된다.

제33조 (受刑者의 疾病) ① 이 受刑者들 위한 적합한 收容場所가 아닌 교도소에 收容된 수형자 (제2항에 언급된 수형자가 아닌)의 중대한 疾病의 경우에 監督者는 醫務官의 確認書에 의하여 政府病院에의 移送을 명할 수 있다.

② 矯導所에 수용된 受刑者가 長官에게 등록된 開業醫의 확인서에 의하여 나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長官은 書面上의 命令에 의

to be suffering from leprosy, the Minister may, by order in writing, direct his removal to any home within the meaning of the Leprosy Ordinance, there to be kept and treated until cured of his leprosy.

(3) So long as any prisoner who shall have been removed to any hospital or home under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subsections shall remain therein, the medical officer thereof shall, at the end of every month, transmit to the Superintendent of the prison a certificate signed by him that it is in his opinion necessary that he should remain in the hospital or home.

Am. 72 of 1959.

(4) The expression "Government hospital" in this section includes any hospital which the Minister, by notification in the *Gazette,* may declare to be a hospital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Return to prison.

34. So soon as, in the opinion of the medical officer in charge of any hospital or home within the meaning of the Leprosy Ordinance, it is no longer necessary that any prisoner who shall have been removed to the said hospital or home should remain therein, he shall transmit to the Superintendent a certificate, stating that such necessity has ceased, and thereupon the Superintendent shall forthwith cause such prisoner to be brought back to the prison if he is still liable to be confined therein.

Liability for escape.

35. If any prisoner shall escape during such time as he is in any hospital, mental hospital or home as aforesaid, no prison officer shall be held answerable therefor, unless such prisoner shall have been in the personal custody of such officer.

Duty to prevent escape.

36. Every precaution shall be taken by the medical officers and other officers of any hospital, mental hospital or home to prevent the escape of prisoners who may at any time be under treatment therein, and it shall be lawful for the said officers to take such measures for preventing the escape of any such prisoners as shall be necessary, provided that nothing be done under the authority hereof which in the opinion of the medical officers is likely to be prejudicial to the health of such prisoners.

하여 癩病令에서 의미하는 收容所에 移送하여 나병이 治療될 때까지 수용하여 치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病院 또는 收容所에 移送되어야 했던 수용자가 滯留하고 있는 경우에는 醫務官은 매달 말일에 矯導所의 감독자에게 그의 見解로는 그가 病院 또는 收容所에 있을 것이 필요하다는 자신이 署名한 確認書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이 條의 '政府病院'에는 장관이 官報의 告示에 의하여 이 조의 病院이라고 宣言할 수 있는 모든 병원을 포함한다.

제34조 (矯導所에의 移送) 癩病令에서 의미하는 病院 또는 收容所를 책임지고 있는 醫務官의 견해로 상기의 病院 또는 收容所에 移送되어야 했던 수용자가 그곳에 滯留할 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醫務官은 이 必要性이 종료하였음을 나타내는 確認書를 監督者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수용자가 여전히 그곳에 收容될 責任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收容者를 復歸하게 하여야 한다.

제35조 (逃走로 인한 責任) 收容者가 病院, 精神病院, 상기의 收容所에 있는 동안 逃走하는 경우에는 수용자가 矯導官의 개인적 監護아래 있지 아니하는 한 矯導官은 그에 대한 責任이 없다.

제36조 (逃走를 豫防할 責任) 그곳에 治療를 받고 있는 收容者의 逃走를 예방하기 위하여 모든 豫防措置가 醫務官 그리고 病院, 精神病院 또는 收容所의 기타 公務員에 의하여 취하여져야 하고, 상기의 공무원이 어느 수용자의 도주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합하다. 다만 醫務官의 見解로 이 수용자의 健康을 해치는 조치가 이 權限아래 취하여져서는 아니된다.

Special custody in hospital.

37. Where in any case, from the gravity of the offence for which any prisoner may be in custody or for any other reason, the Superintendent considers it to be desirable to take special measures for the security of such prisoner while under treatment in a hospital, mental hospital or home, it shall be lawful for him to give such prisoner into the charge of fit and proper persons not being less than two in number, one of whom at the least shall always be with such prisoner day and night, and such persons shall be vested with full power and authority to do all things necessary to prevent such prisoner from escaping, and shall be answerable for his safe custody until such time as he is handed over to a prison officer on his discharge from such hospital, mental hospital or home or until such time as his sentence expires, whichever may first occur.

Saving of powers of High Court.

38. Nothing in this Act contained shall be held to lessen or affect the power of the High Court to direct persons confined in Singapore to be brought before the Court by writ of habeas corpus.

PART V. DISCIPLINE AND PRISON OFFENSES

Offences concerning prison supplies.

39.—(1) Niether the Director nor any Superintendent nor any medical officer nor any prison officer shall sell or supply or receive directly or indirectly any benefit or advantage from the sale or supply of any article to or for the use of any prisoner or for the use of any prison, nor shall any such officer directly or indirectly have any interest in any contract or agreement for the sale or supply of any such article.

(2) Neither the Director nor any Superintendent nor any medical officer nor any prison officer shall directly or indirectly have any pecuniary interest in the purchase of any prison supplies, or receive any discounts, gifts or other consideration from contractors for or sellers of such supplies, or have any pecuniary dealing with prisoners or with their friends with regard to them, or on behalf of any prisoner hold any unauthorized communication with any person.

제37조 (病院에의 特別監護) 收容者가 監護되어야 할 犯罪의 重大性 또는 기타 이유로 監督者가 病院, 精神病院 또는 收容所에서 치료받는 동안 이 收容者의 安全을 위한 특별한 措置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監督者가 2명의 適任者들에게 당해 收容者를 委託하는 것은 적법이며, 이들 중의 적어도 1명은 밤낮 당해 收容者와 함께 지내야 한다. 이들은당해 수용자의 逃走를 방지하는 필요한 모든 措置를 취할 權能이 있으며, 당해 수용자가 해당 病院·精神病院 또는 收容所에서 退院하여 矯導官이 인계되는 時期 또는 그에 대해 宣告의 效果가 종료되는 시기 더 빠른 시기까지 그의 安全 監護를 책임진다.

제38조 (高等法院의 權限의 留保) 이 條의 어떠한 內容도 人身保護令狀에 의하여 싱가포르에 수용된 收容者를 法院앞에 出席하도록 命令하는 高等法院의 權限을 減縮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제5장 規律과 矯導所犯罪

제39조 (矯導所 供給物品에 관한 犯罪行爲) ① 所長, 監督者, 醫務官 또는 矯導官은 수용자 또는 교도소가 사용하기 위한 物品의 賣買 또는 供給으로부터 利益 또는 惠澤을 직접·간접으로 수령하거나 매매하거나 공급할 수 없고, 공무원은 이 물품의 매매 또는 공급을 위한 契約 또는 約定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利益을 가질 수 없다.

② 소장, 감독자, 의무관 또는 교도관은 矯導所 供給物品의 購入에 있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金錢上의 利益을 받거나 또는 이 공급물품의 契約者, 賣渡人으로부터 割引, 선물 기타 代價를 받거나 수용자 또는 수용자의 친구와 금전상의 거래를 하거나 어떤 사람과 승인되지 아니하는 관계를 가진 收容者를 위하여 공급물품에 관하여 金錢上의 去來

(3) Any person who contravenes any provision of this section shall be liable on conviction to a fine not exceeding two thousand dollars or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twelve months, or to both, and may in addition, unless the conviction is reversed on appeal, be dismissed from his office, and all arrears of pay due to him may be forfeited.

Desertion.

40. Any prison officer who unlawfully or in breach of his engagement absents himself from duty under circumstances which show that he has the intention of not returning to his duty shall be deemed to have deserted, and shall be liable on conviction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twelve months, and all arrears of pay due to him shall be forfeited.

Payment of money forbidden.

41.—(1) No money or other consideration shall on any pretext whatsoever be payable, paid, given or promised by or on behalf of any prisoner, either on his entrance into, commitment to, continuance in or discharge from any prison, to any prison officer; and any prison officer receiving or demanding any such money or other consideration or undertaking any service in consideration of receiving or the promising of such money or other consideration shall be liable on conviction to a fine not exceeding four hundred dollars or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six months, or to both.

(2) Any person convicted under this section may, unless the conviction is reversed on appeal, be dismissed from his office, and all arrears of pay due to him may be forfeited.

Delivery of uniform, etc. on leaving.

42.—(1) Every person, upon ceasing to be a prison officer, shall forthwith deliver up to the chief rehabilitation officer or senior principal rehabilitation officer of the prison in which he is serving at the time of ceasing to be a prison officer, every article of uniform and clothing and all arms, accoutrements, ammunition, staves and other effects of every kind belonging to the Government.

(2) Any person who fails to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shall be liable on conviction to a fine not exceeding one hundred dollars or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three months, or to both, and in addition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이 條의 規定을 違反한 자는 5천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2개월이하의 懲役 또는 이 양자의 處罰을 받고 附加하여 이 선고가 上訴에 의하여 破棄되지 아니하는 한 地位에서 解任되고 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滯拂金은 沒收될 수 있다.

제40조 (遺棄) 不法的으로 또는 約定에 違反하여 그의 職務에 復歸하지 아니하려는 意思를 나타내는 狀況에서 職務에서 이탈한 矯導官은 遺棄한 것으로 看做되고, 12개월 이하의 懲役에 처하고 그에게 支給하여야 하는 모든 滯拂金은 몰수된다.

제41조 (禁止된 金錢의 支給) ① 어떤 名目으로도 矯導所에의 入所, 收容, 계속 또는 釋放을 위하여 收容者에 의하여 또는 수용자를 위하여 교도관에게 金錢 또는 기타 代價가 지급되거나 약속되어서는 아니된다. 金錢 또는 기타 代價를 받거나 요구하거나 또는 금전 또는 기타 대가의 약속대가로 서비스를 약속한 교도관은 400달러 이하의 罰金 또는 6개월 이하의 懲役 또는 양자를 병과하여 처한다.

② 이 條에 의하여 有罪를 宣告받은 자는 이 선고가 上訴에 의하여 破棄되지 아니하는 한 職位에서 해임되고 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滯拂金은 沒收될 수 있다.

제42조 (退職時 制服 등의 返還) ① 矯導官은 退職할 때 勤務하고 있는 矯導所의 首席更生公務員 또는 상급갱생공무원에게 즉시 모든 制服, 衣服과 모든 武器, 裝具, 彈藥, 棍棒 기타 정부에 속한 모든 종류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이 조의 규정를 遵守하지 아니하는 자는 100달러이하의 罰金 또는 3개월이하의 懲役 또는 양자를 병과하여 처하고 이에 附加하여 반환하

thereto shall be liable to pay the value of any article not delivered up, which value shall be summarily ascertained by the court and shall be recoverable as if it were a fine.

Offences by warders, etc.

43.—(1) Any warder or subordinate officer below the rank of principal rehabilitation officer, who shall be guilty of any of the following offences:—

(a) absence from duty without good cause;

(b) sleeping on duty;

(c) conduct to the prejudice of good order or discipline;

(d) neglect or disobedience of orders;

(e) be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or drugs while on duty;

(f) insubordination;

(g) neglect of duty;

(h) wilful destruction of or careless loss of or injury to Government property;

(i) malingering;

(j) using personal violence to any prisoner save in the case of —

(i) repeated refusal to obey a lawful order;

(ii) self-defence; or

(iii) defence of any other officer, person or prisoner;

(k) using personal violence or threats towards any prison officer;

(l) associating with discharged prisoners without the written authority of the Superintendent,

shall be liable on conviction before the Superintendent to any one of the following punishments:—

(i) summary dismissal (subject to confirmation by the Director); or

(ii) reduction in rank or grade; or

(iii) forfeiture of not more than one month's pay; or

(iv) severe reprimand; or

지 아니하는 物品의 價格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가격은 법원에 의하여 略式으로 확인되고 罰金과 같이 청구된다.

제43조 (矯導官 등에 의한 違反行爲) ① 矯導官 또는 責任更生官의 階級이하의 하급공무원이 다음 違反行爲를 할 경우에는,

1. 충분한 원인없는 缺勤
2. 職務 중 睡眠
3. 선량한 秩序 또는 規律을 해치는 행위
4. 命令의 無視 또는 不服從
5. 근무중 술 또는 약품의 영향아래 있는 경우
6. 不順從
7. 勤務의 怠慢
8. 政府財産의 고의적인 破壞 또는 부주의한 滅失 또는 毁損
9. 勤務回避를 위한 疾病憑籍
10. 다음 경우를 제외한 收容者에 대한 개인적 暴力의 使用
   (ⅰ) 적법한 命令에 대한 반복적인 服從拒否
   (ⅱ) 自己防禦; 또는
   (ⅲ) 다른 공무원, 사람 또는 수용자의 방어
11. 矯導官에 대한 개인적인 暴力 또는 脅迫의 利用

① 監督者의 書面同意 없는 釋放된 수용자와의 交際

다음 처벌중 하나를 감독자앞에서 처벌하여 진다.

(ⅰ) 略式解雇(소장의 확인에 따라); 또는
(ⅱ) 階級 또는 職級의 降等; 또는
(ⅲ) 1월이하의 給料의 沒收
(ⅳ) 엄중한 懲戒; 또는
(Ⅴ) 懲戒

다만, 충분한 원인없는 缺勤의 경우에는 賦課된 다른 處罰에 덧붙여 결

(v) reprimand:

Provided that, in case of absence without good cause, forfeiture of pay may extend to the period of absence in addition to any other punishment inflicted:

Provided also that, on conviction under paragraph (h), any such officer shall be liable to pay the value of the property destroyed, lost or injured.

(2) Any warder or subordinate officer below the rank of principal rehabilitation officer may appeal to the Director against any punishment ordered under this section, and the Director may reduce or confirm any such punishment, provided that any appeal made under this subsection shall be submitted in writing to the Director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upon which such punishment was ordered.

Grave offences.

44.—(1) If it shall appear to the Superintendent that an offence punishable under the last preceding section is of such a grave character as to require a more severe punishment than any therein prescribed, then such Superintendent shall forthwith refer the case in writing to the Director, and the Director may either direct the case to be dealt with by the Superintendent of the prison wherein the accused is then serving, or he may direct that the person accused be charged before a District Court or Magistrate's Court, and such person shall be liable on conviction to a fine not exceeding four hundred dollars or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six months, or to both. If the offence relates to the destruction or loss of or injury to Government property, the person convicted shall also be liable to pay the value of the property destroyed, lost or injured, which value shall be summarily ascertained by the court and shall be recoverable as if it were a fine.

(2) Any warder or subordinate officer below the rank of principal rehabilitation officer convicted by a District Court of Magistrate's Court under this section may, unless the conviction is reversed on appeal, be dismissed from his office, and all arrears of pay due to him may be forfeited.

근동안 給料의 沒收가 병과될 수 있다.

단, 또한 제8항에 의한 處罰의 경우에는 이 공무원은 破壞, 滅失 또는 毁損 된 財產의 價格을 補償하여야 한다.

② 責任更生官의 계급이하의 矯導官 또는 下級公務員은 이 조에 의하여 내려진 처벌에 대하여 所長에게 訴請할 수 있고, 소장은 이 처벌을 輕減 또는 確認할 수 있다. 다만, 이 항에 의한 訴請은 처벌이 내려진 날로부터 30일이내에 書面으로 所長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제44조 (重大한 違反行爲) ① 전조에 의한 犯罪行爲가 동조에 규정된 것보다 엄중한 處罰을 요하는 중대한 性格이 있는 것으로 監督者에게 보이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즉시 書面으로 所長에게 회부하고, 소장은 被告人이 이때 근무중인 矯導所의 監督者가 이 사건을 처리하도록 명하거나 또는 被疑者가 地區法院 또는 治安判事法院에 起訴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 자는 400달러 이하의 罰金 또는 6개월이하의 懲役 또는 양자의 병과에 처한다. 違反行爲가 정부재산의 破壞, 滅失, 또는 毁損에 관한 경우에는 被告人은 파괴된 財產의 價格을 보상하여야 하고, 이 재산의 가격은 法院에 의하여 略式으로 확인되어야 하고 罰金과 같이 徵收된다.

② 이 조에 의하여 地區法院 또는 治安判事法院에 의하여 有罪가 宣告된 矯導官 또는 責任更生官 계급이하의 下級公務員은 유죄선고가 上訴에 의하여 破棄되지 아니하는 한 職位에서 解任되고 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滯拂金은 沒收될 수 있다.

Offences by principal rehabilitation officers.

45.—(1) Any principal rehabilitation officer who shall be guilty of any of the offences specified in subsection (1) of section 43 shall be liable upon conviction before the Superintendent to either of the following punishments:—

(a) reprimand;

(b) forfeiture of not more than three days' pay.

(2) Any principal rehabilitation officer may appeal to the Director against any punishment ordered under this section and the Director may reduce or confirm any such punishment, provided that any appeal made under this subsection shall be submitted in writing to the Director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upon which such punishment was ordered.

Punishment of chief rehabilitation officer or principal rehabilitation officer, by Director.

46.—(1) The Director may punish any chief rehabilitation officer or principal rehabilitation officer for any of the offences specified in subsection (1) of section 43 by reprimand, severe reprimand, deductions from pay not exceeding the amount of one month's pay or by stopping or deferring any increment to salary for which such chief rehabilitation officer or principal rehabilitation officer may be eligible.

(2) Any chief rehabilitation officer or principal rehabilitation officer may appeal to the President against any punishment awarded under this section, provided that such appeal shall be submitted in writing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upon which the punishment was ordered.

(3) If it shall appear to the Director that the offence is of such a grave character as to require a more severe punishment than any herein prescribed, he may direct that the person accused be charged before a District Court or Magistrate's Court, and such person shall be liable on conviction to a fine not exceeding four hundred dollars, or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six months, or to both.

(4) Any person convicted before a District Court or Magistrate's Court under this section may, unless the conviction is reversed on appeal, be dismissed from his office, and all arrears of pay due to him may be forfeited.

제45조 (責任更生官에 의한 違反行爲) ① 43조 제1항에 규정된 위반행위로 有罪가 宣告될 責任更生官은 감독자앞에서 다음 処罰중 하나가 선고된다.

1. 懲戒 ;
2. 3일 이하의 給料의 沒收

② 責任更生官은 所長에게 이 조에 의하여 내려진 處罰에 대하여 訴請할 수 있고 所長은 이 처벌을 경감 또는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에 의한 訴請은 이 처벌이 내려진 날로부터 30일이내에 所長에게 書面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제46조 (責任에 의한 主任更生官 또는 責任更生官의 處罰) ① 所長은 主任更生官 또는 責任更生官을 43조 제1항에 규정된 違反行爲로 懲戒, 엄중한 징계, 주임갱생관 또는 책임갱생관이 받을 資格이 있는 給料引上을 中止 또는 延期하는 處罰을 할 수 있다.

② 主任更生員 또는 責任更生官은 이 조에 의하여 내려진 處罰에 대하여 大統領에게 訴請할 수 있다. 단, 이 소청은 이 처벌이 내려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③ 所長에게 違反行爲가 여기에 규정된 것보다 엄중한 處罰을 요구하는 중대한 性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所長은 被告人이 地區法院 또는 治安判事法院에 회부되도록 명할 수 있고, 被告人은 400달러 이하의 罰金 또는 6월 이하의 拘禁 또는 양자의 병과에 처한다.

④ 이 조에 의하여 地區法院 또는 治安判事法院앞에서 有罪가 宣告된 자는 이 선고가 上訴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職位에서 解任될 수 있고, 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滯拂金은 몰수할 수 있다.

Threatening or insulting superiors.

47.—(1) Any prison officer who shall assault, threaten or insult any officer senior to him in the prisons service, when such senior officer is on duty or when such assault, threat or insult shall relate to or be consequent upon the discharge of duty by the officer so assaulted, threatened or insulted, shall be liable on conviction before a District Court or Magistrate's Court to a fine not exceeding four hundred dollars, or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twelve months.

(2) Any person convicted under this section may, unless the conviction is reversed on appeal, be dismissed from his office, and all arrears of pay due to him may be forfeited.

Prison Officers Reward Fund.

48. All pay which is forfeited by and fines inflicted upon prison officers under this Act shall be paid into a fund to be called "the Prison Officers Reward Fund". This Fund shall be administered by the Director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s under section 64.

Articles not to be conveyed into or out of prison.

49. Every person who without lawful authority —

(a) conveys, supplies or causes to be supplied or conveyed to any prisoner, or hides or places for his use any letter or document, or any intoxicating liquor, tobacco, bhang or hemp, drug, opiate, money, clothing, provisions or any other article whatsoever; or

(b) brings or attempts by any means whatever to introduce into any prison, or places or attempts to place where prisoners shall labour, any letter or document, or any intoxicating liquor, tobacco, bhang or hemp, opiate, drug, money, clothing, provisions or any other article to be sold or used therein; or

(c) brings or attempts to bring out of any prison, or conveys from any prisoner, any letter, document or other article; or

(d) communicates with any prisoner;

and every prison officer who without lawful authority —

제47조 (上級者를 威脅·侮辱하는 行爲) ① 근무중에 자기보다 上級의 公務員을 暴行, 威脅 또는 侮辱한 교도관은, 그 상급공무원이 職務 중인 때 또는 그 폭행·위협 또는 모욕이 폭행·위협 또는 모욕받은 공무원에 의한 職務에 解除와 관련되거나 그로 인한 때에는 地區法院 또는 治安判事法院 앞에서 400달러 이하의 罰金 또는 12월 이하의 懲役에 처한다.

② 이 조에 의하여 有罪宣告를 받은 자는 선고가 上訴에 의하여 破棄되지 아니하는 한 職務에서 解任될 수 있고 그에게 支給하여야 하는 모든 滯拂金은 몰수할 수 있다.

제48조 (矯導官補償基金) 이 조에 의하여 沒收된 모든 給料와 교도관에게 부과된 罰金은 "矯導官補償基金"이라 불리는 基金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이 기금은 제64조에 기한 규정에 따라 소장은 관리한다.

제49조 (矯導所에 또는 矯導所로부터 運搬되어서는 안되는 物品) 適法한 權限없이 다음행위를 하는 모든 자는,

1. 편지 또는 서류, 또는 흥분시키는 액체, 담배, 대마초, 약품, 아편, 금전, 의복, 기타 다른 물품을 收容者에게 運搬하거나 運搬 또는 供給하게 하거나 또는 은익하거나 사용을 위하여 두는 경우
2. 여하한 手段에 의하여 矯導所에 반입하기 위하여 들여오거나 시도하거나 收容者가 勞動하여야 하는 장소로 편지, 서류 또는 흥분시키는 액체, 담배, 대마초 또는 삼, 아편, 약품, 금전, 의복, 식량 또는 기타 물품을 그곳에서 販賣 또는 使用되게 하려고 두거나 시도하는 경우
3. 편지, 서류 또는 기타 물품을 矯導所로부터 搬出하여 오거나 또는 시도하거나, 또는 收容者로부터 轉達하는 경우
4. 收容者와 交通하는 경우 또는 適法한 權限없이 다음 행위를 하는 모든 矯導官은

(e) knowingly suffers any intoxicating liquor, tobacco, bhang or hemp, drug, opiate, money, clothing, provisions, letter, document or other article to be sold to or received or used by or on behalf of any prisoner; or

(f) lends or gives to any prisoner any such intoxicating liquor, tobacco, bhang or hemp, opiate, drug, money, clothing, provisions or other article; or

(g) knowingly suffers any letter, document or other article to be brought out of any prison, or to be conveyed from any prisoner,

shall be liable on conviction to a fine not exceeding one thousand dollars or to imprisonment for a period not exceeding twelve months, or to both, and, if a prison officer, he may, unless the conviction is reversed on appeal, be dismissed from his office, and all arrears of pay due to him may be forfeited.

Prisoner may be required to work.

50. Whenever any person is sentenced to imprisonment, such person may be required to work at any labour prescribed under this Act, and for which he is certified as fit by the prison medical officer.

Separation of convicts.

51.—(1) Persons confined under civil process, and persons on remand charged with crimes or offences, or committed to take their trial, or confined for want of sureties, shall not ordinarily be associated with convicted prisoners, nor shall they be required to labour beyond such labour as is reasonably proper for keeping their persons and dress in a proper state, and keeping the places in which they are confined clean.

(2) All juveniles shall, so far as local conditions permit, be kept apart from adults under detention.

Extramural custody of prisoners.

52. A prisoner, when being taken to or from any prison in which he may be lawfully confined, or whenever he is working outside or is otherwise beyond the limits of any such prison in or under the lawful custody or control of a prison officer, shall be deemed to be in prison, and shall be subject to all the same incidents as if he were actually in prison.

5. 故意로 흥분시키는 액체, 담배, 대마초 또는 삼, 약품, 마약, 금전, 의복, 식량, 편지, 서류 또는 기타 물품이 收容者에 의하여 또는 위하여 販賣, 또는 受領 또는 使用되게 하는 경우
6. 수용자에게 흥분시키는 액체, 담배, 대마초 또는 삼, 마약, 약품, 금전, 의복, 식량 또는 기타 물품을 빌려주거나 제공하는 경우
7. 알고서 편지, 서류 또는 기타 물품이 矯導所로부터 우송되게 하는 경우

100달러 이하의 罰金 또는 12월 이하의 懲役 또는 양자의 병과에 처하고, 矯導官인 경우에는 宣告가 上訴에 의하여 破棄되지 아니하는 한 矯導官은 職務로부터 解任될 수 있고, 그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모든 체불금은 몰수될 수 있다.

제50조 (受刑者의 勞役) 어느 사람에게 懲役이 宣告되는 경우에는 그는 이 법이 규정하는 일과 醫務官이 적합하다고 확인한 일에서 勞役할 것이 요구될 수 있다.

제51조 (收容者의 分離) ① 民事訴訟에 의하여 收容된 자와 犯罪 또는 違反行爲로 留置된 자, 保證金의 부족으로 수용된 자는 수형자와 통상적으로 교제하여서는 안되고, 이들을 拘留하기 위하여 상당히 적절한 勞動을 초과하여 노동할 것이 要求되어서는 안되고 정상적인 상태로 옷을 입고 수용된 장소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少年은 地域的 條件이 허용하는 한 수용중인 成人과 分離되어야 한다.

제52조 (受刑者의 外部에서의 監護) 收容者가 적법하게 收容된 矯導所로부터 또는 교도소에로 護送된 때 또는 外部에서 勞役하고 있는 때 또는 이 교도소 外部에 있거나 矯導官의 적법한 監護 또는 統制아래 있는 때에는 收容者는 교도소 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그가 마치 실제로 교도소 내에 있는 것과 동일한 義務에 服從하여야 한다.

Punishment by Superintendent of minor prison offences.

53.—(1) The Superintendent may punish any prisoner found after due inquiry to be guilty of a minor prison offence as hereinafter specified by ordering him to undergo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punishments:—

(a) confinement in a punishment cell for a term not exceeding seven days on a diet of bread and water or rice and water;

(b) forfeiture of remission not exceeding such amount as may be prescribed;

(c) reduction in grade or postponement of promotion for such period as may be prescribed.

(2) The Superintendent shall enter in a register to be open to the inspection of the Visiting Justices a record of the punishments imposed by him upon prisoners, showing, in respect of each prisoner punished, the name of the prisoner, the nature of his offence and the extent of his punishment.

Punishment by Superintendent of aggravated prison offences.

54.—(1) The Superintendent may punish any prisoner found after due inquiry to be guilty of an aggravated prison offence as hereinafter specified by ordering him to undergo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punishments:—

(a) corporal punishment not exceeding twelve strokes with a rattan;

(b) confinement in a punishment cell for a term not exceeding seven days on a diet of bread and water or rice and water;

(c) forfeiture of remission not exceeding such amount as may be prescribed;

(d) reduction in grade or postponement of promotion for such period as may be prescribed.

(2) The Superintendent shall enter in a register to be open to the inspection of the Visiting Justices a record of the punishments imposed by him upon prisoners, showing, in respect of each prisoner punished, the name of the prisoner, the nature of his offence and the extent of his punishment.

제53조 (監督者에 의한 輕微한 矯導所 違反行爲의 處罰) ① 監督者는 後條에서 규정된 경미한 矯導所 違反行爲를 범하였음이 상당한 조사후에 발견된 수용자를 다음 각호의 1 또는 그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1. 빵과 물 또는 쌀과 물의 規定食에 의한 7일이하의 기간동안 處罰에의 收容
2. 規定된 量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免除의 取消
3. 規定된 기간동안 職位의 降等 또는 昇進의 延期

② 監督者는 訪問判事가 조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登錄簿에 처벌된 수용자의 이름, 違反行爲의 性格 그리고 處罰內容을 나타내는 자신이 수용자에게 부과한 처벌기록을 기입하여야 한다.

제54조 (監督者에 의한 重大한 矯導所 違反行爲의 處罰) ① 監督者는 뒤에서 규정된 중대한 矯導所違反行爲를 범하였음이 상당한 조사후에 발견된 수용자를 다음 처벌중 하나 또는 그 이상를 부과할 수 있다.

1. 12대이하의 등회초리로의 체형
2. 빵과 물 또는 쌀과 물의 規定食에 의한 7일이하의 처벌실에의 수용
3. 규정된 양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면제의 취소
4. 규정된 기간동안 職位의 降等 또는 昇進의 延期

② 감독자는 訪問判事가 조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登錄簿에 처벌된 각 수용자의 이름, 違反行爲의 性格 그리고 處罰內容을 나타내는 자신이 수용자에게 부과한 처벌기록을 기입하여야 한다.

Minor prison offences.

55. The following shall be deemed to be minor prison offences:—

(1) talking during working hours, or talking loudly, laughing or singing at any time after having been ordered by an officer of the prison to desist;

(2) quarrelling with any other prisoner;

(3) secreting any article whatever;

(4) showing disrespect to any officer or official visitor;

(5) common assault or taking part in any attack on any other prisoner;

(6) answering untruthfully any question put by an officer or an official visitor;

(7) holding any communication (in writing, by word of month, or otherwise) with any person in disobedience of the regulations of the prison;

(8) abetting the commission of any minor prison offence;

(9) omitting to assist in the maintenance of discipline by reporting any prison offence, or to give assistance to an officer when called on to do so;

(10) doing any act or using any language calculated to wound or offend the feelings and prejudices of any other prisoner;

(11) doing any act calculated to create any unnecessary alarm in the minds of the prisoners or officers;

(12) leaving without permission of an officer the gang to which he is attached, or the part of the prison in which he is confined;

(13) leaving without permission of an officer the ward, the yard, the place in file, the seat or berth assigned to him;

(14) loitering about the yards or lingering in the wards when these are open;

(15) omitting or refusing to march in file when moving about the prison or proceeding to or returning from work:

제55조 (輕微한 矯導所違反行爲) 이하는 輕微한 矯導所 違反行爲로 간주된다.

1. 勞役時間에 對話하거나 또는 矯導官에 의하여 中止하라고 指示받은 후 큰 소리로 대화하거나 웃거나 노래하는 행위
2. 다른 수용자와 다투는 행위
3. 어떤 물품을 은익하는 행위
4. 어느 공무원 또는 公式訪問客에게 無禮함을 나타내는 행위
5. 일반적 暴行 또는 다른 수용자에 대한 攻擊에 가담하는 행위
6. 공무원 또는 공식방문객이 한 質問에 虛僞로 대답하는 행위
7. 矯導所規定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와 交信을 계속하는 행위(서면, 구두 또는 기타 방법으로)
8. 輕微한 교도소 위반행위의 敎唆
9. 교도소 위반행위를 報告함에 의하여 規律의 維持를 돕지 아니하거나 또는 公務員을 돕도록 要求받았을 때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것
10. 다른 수용자의 感情과 先入見을 상하게 하거나 攻擊할 意圖로 어떤 행위 또는 말을 하는 것
11. 수용자 또는 공무원의 마음에 불필요한 恐怖心을 일으킬 意圖로 행위를 하는 것
12. 공무원의 許可없이 소속된 集團 또는 수용된 矯導所의 일부를 離脫하는 것
13. 공무원의 허가없이 居室, 作業場, 隊列, 그에게 割當된 좌석 또는 宿所를 이탈하는 것
14. 開放되어 있을 때, 作業場 또는 居室에서 머뭇거리는 것
15. 矯導所 주위를 移動할 때 또는 作業場으로 가거나 그곳에서 돌아올 때 줄을 지어 行進하지 아니하거나 拒否하는 것

(16) visiting the latrines without permission of an officer or remaining there longer than is necessary;

(17) refusing to eat the food prescribed by the prison diet scale;

(18) eating or appropriating any food not assigned to him or taking from or adding to the portions assigned to other prisoners;

(19) removing without permission of an officer food from the cook-room or godowns or from the place where meals are served, or disobeying any order as to the issue and distribution of food and drink;

(20) wilfully destroying food or throwing it away without orders;

(21) introducing into food or drink anything likely to render it unpalatable or unwholesome;

(22) omitting or refusing to wear the clothing given to him, or exchanging any portion of it for the clothing of other prisoners, or losing, discarding, damaging or altering any part of it;

(23) removing, defacing or altering any distinctive number, mark or badge attached to, or worn on, the clothing or person;

(24) omitting or refusing to keep the person clean, or disobeying any order regulating the cutting of hair;

(25) omitting or refusing to keep clothing, blankets, bedding, fetters, or utensils clean, or disobeying any order as to the arrangement of disposition of such articles;

(26) tampering in any way with prison locks, lamps or lights or other property with which he has no concern;

(27) stealing the prison clothing or any part of the prison kit of any other prisoner;

(28) committing a nuisance in any part of the prison;

(29) spitting on or otherwise soiling any floor, door, wall or other part of the prison building or any article in the prison;

16. 공무원의 허락없이 화장실에 가거나 필요한 것보다 길게 그곳에 머무는 것
17. 교도소 規定食單에 정한 음식을 먹기를 거부하는 것
18. 자신에게 割當되지 아니한 음식을 먹거나 훔치거나 또는 다른 수용자에게 할당된 몫으로부터 가져오거나 거기에 더하는 것
19. 공무원의 허가없이 料理室 또는 倉庫 또는 음식이 제공되는 장소에서 음식을 제거하거나 또는 음식 또는 음료수의 支給과 分配에 관한 指示에 불복종하는 것
20. 故意로 음식을 파괴하거나 命令없이 폐기하는 것
21. 음식 또는 음료수에 맛없게 하거나 비위생적이도록 할 것 같은 것을 넣는 것
22. 자신에게 제공된 衣服을 입지 아니하거나 拒否하거나 자기 몫을 다른 수용자의 의복과 교환하거나 그 일부를 紛失하거나 버리거나 毁損하거나 改造하는 행위
23. 衣服 또는 사람에게 부착된 識別数字, 標識 또는 벳지를 제거하거나, 지워버리거나 개조하는 것
24. 사람을 淸潔하게 維持하지 아니하거나 拒否하는 것 또는 이발을 단속하는 命令에 不服從 하는 것
25. 의류, 모포, 침구 족쇄나 그릇들을 깨끗하게 간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간수를 거부하는 행위 혹은 그와 같은 물건들의 정리정돈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
26. 교도소자물쇠, 램프 또는 光源 기타 관련이 없는 財産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
27. 교도소의복 또는 다른 수용자의 교도소장비의 일부를 훔치는 것
28. 교도소의 일부에서 不法行爲를 하는 것
29. 바닥, 문, 벽 또는 교도소 건물 다른 부분 또는 교도소내의 물품에 침을 뱉거나 또는 기타 더럽히는 것

(30) wilfully befouling the wells, latrines, washing or bathing places;

(31) damaging the trees within the enclosure of the prison;

(32) omitting or refusing to take due care of all prison property entrusted to him;

(33) omitting or refusing to take due care of, or injuring, or misappropriating, the materials and implements entrusted to him for work;

(34) omitting to report at once any loss, breakage or injury which he may have caused to prison property or implements;

(35) manufacturing any article without the knowledge or permission of an officer;

(36) performing any portion of the task allotted to another prisoner, or obtaining the assistance of another prisoner in the performance of his own task;

(37) appropriating any portion of the task performed by another prisoner;

(38) mixing or adding any foreign substance to the materials issued for work;

(39) cursing or swearing, or using indecent, violent, threatening or insulting language;

(40) causing or omitting to assist in suppressing violence or insubordination of any kind;

(41) immoral, disorderly or indecent behaviour;

(42) omitting or refusing to help any prison officer in case of an attempted escape or of an attack upon such officer or upon another prisoner;

(43) disobeying any lawful order of an officer;

(44) idling or refusing to work or showing negligence in the performance of his allotted task;

(45) defacing or injuring the walls, furniture or other property of the prison;

(46) malingering;

(47) refusing to undergo medical treatment;

30. 우물, 화장실, 세면장 또는 목욕장소를 고의로 더럽히는 것
31. 교도소 구내에 있는 나무를 훼손하는 일
32.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矯導所財産에 정당한 注意를 기울이지 아니하거나 거부하는 것
33. 작업을 위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材料와 道具에 상당한 注意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하거나 또는 훼손 또는 횡령하는 것
34. 그가 교도소 財産 또는 道具를 멸실, 파손 또는 훼손을 즉시 보고하지 아니하는 것
35. 공무원의 허락없이 또는 알리지 아니하고 어떤 물품을 제조하는 것
36. 다른 수용자에게 할당된 몫을 遂行하거나 자신의 勞役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수용자의 도움을 얻는 것
37. 다른 수용자가 수행한 勞役의 몫을 착복하는 것
38. 勞役을 위하여 제공된 材料에 異物質을 혼합 또는 첨가하는 것
39. 猥설·亂暴·威脅 또는 侮辱的인 언어로 악담하거나 사용하는 일
40. 暴力 또는 여하한 종류의 不服從을 鎭庄하는데 돕지 아니하는 일
41. 不道德·무질서한 또는 猥설的인 행위
42. 脫出企圖 또는 공무원 또는 다른 收容者를 攻擊하는 경우 矯導官을 돕지 아니하거나 거부하는 것
43. 공무원의 適法한 命令에 服從하지 아니하는 것
44. 자신의 할당된 作業을 遂行함에 있어서 勞役을 태만 또는 거부하거나 不注意함을 보이는 것
45. 벽, 가구 또는 기타 교도소재산을 損失 또는 毁損시키는 일
46. 꾀병부리는 일
47. 醫師의 治療를 받기를 拒否하는 일

(48) any other act, conduct, disorder or neglect to the prejudice of good order or discipline though not specified in the foregoing paragraphs.

Aggravated prison offences.

56. The following shall be deemed to be aggravated prison offences: —

(1) mutiny;

(2) escape or attempt to escape;

(3) taking part in any assault or attack on any officer;

(4) aggravated or repeated assault on any other prisoner;

(5) wilful destruction of prison property;

(6) wilfully causing to himself any illness, injury or disability;

(7) wilfully making a false or groundless accusation or complaint against any officer or prisoner;

(8) repetition of any minor prison offence after having been twice punished for the same minor offence;

(9) any other act of gross misconduct or insubordination;

(10) abetting the commission of any aggravated prison offence.

Punishment by Visiting Justices.

57.—(1) Where a prisoner is accused of any aggravated prison offence and the Superintendent is of opinion that, in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the power of punishment which he possesses is inadequate, he shall forthwith report the matter in writing to the Visiting Justice or Justices.

(2) The Visiting Justice or Justices shall, upon receipt of such report, attend at the prison without undue delay and investigate the charge, and may punish any prisoner whom after due inquiry upon oath he or they may find guilty of such offence with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punishments:—

(a) confinement in a punishment cell for a term not exceeding thirty days upon such prescribed diet as he or they may think fit;

(b) corporal punishment not exceeding twenty-four strokes with a rattan;

48. 전항에 규정이 없더라도 善良, 秩序 또는 規律을 해치는 다른 행위, 品行, 無秩序 또는 不注意

제56조 다음은 중대한 矯導所 違反行爲로 간주된다.

1. 暴動
2. 逃走 또는 逃走企圖
3. 다른 수용자에 대한 暴行 또는 攻擊에 참여하는 것
4. 다른 收容者에 대한 중대한 또는 반복된 暴行
5. 교도소 財産의 故意的인 破壞
6. 故意로 자신에게 疾病, 傷害 또는 不具를 야기하는 것
7. 공무원 또는 수용자에 대한 虛僞 또는 근거없는 告發 또는 告訴
8. 동일한 矯導所違反行爲로 2회 處罰받은 후 경미한 교도소 위반행위의 反復
9. 다른 중대한 非行 또는 不服從行爲
10. 중대한 교도소違反行爲의 敎唆

제57조 (訪問判事에 의한 處罰) ① 收容者가 중대한 교도소 違反行爲로 起訴되고 監督者가 사건의 상황에서 그가 가진 處罰權限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 경우에는 감독자는 즉시 書面으로 訪問判事 또는 法官에게 이 사건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訪問判事 또는 法官은 이 報告를 받은 후 부당한 지체없이 矯導所에 出席하여 범죄행위를 조사하여야 하고 宣誓에 의한 정당한 조사후에 한명 또는 수인의 판사는 다음 각호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위반행위로 有罪宣告 될 수 있음이 발견된 수용자를 처벌할 수 있다.

1. 法官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規定食事로 30일이하의 處罰室에의 收容
2. 24대 이하의 회초리로의 體刑

(c) forfeiture of remission not exceeding such amount as may be prescribed.

Prisoner may make his defence.

58. No prisoner shall be punished until he has had an opportunity of hearing the charge and evidence against him, and making his defence.

Detention after date for discharge.

59. Any punishment lawfully imposed on a prisoner under this Act or any regulations made thereunder may be carried into effect notwithstanding that the carrying into effect thereof may necessitate the detention of the prisoner beyond the date at which he would otherwise be entitled to be discharged from prison:

Provided that the period of such detention shall not exceed forty-eight hours, such period to be calculated from the last hour of the day upon which the prisoner would otherwise be entitled to be discharged.

Corporal punishment.

60.—(1) When any sentence of corporal punishment is passed under this Act upon any prisoner he shall not be liable to more than one such sentence in respect of the act or acts, or omission or omissions, for which he has been sentenced.

(2) In no case shall a sentence of corporal punishment be passed upon a female.

(3) In no case shall a sentence of corporal punishment in excess of ten strokes with a light rattan be passed on a juvenile.

(4) In no case shall a sentence of dietary or corporal punishment be inflicted upon any prisoner or juvenile until a medical certificate has been given to the effect that such prisoner or juvenile is in a fit condition of health to undergo the punishment.

Prosecution for offences.

61. Nothing in this Act shall be construed to exempt any prisoner from being proceeded against for any offence by the ordinary course of law, but no prisoner shall be punished twice for the same offence.

Appointment of Visiting Justices.

62.—(1) The Minister shall for each year appoint a Board of Justices of the Peace, to be called "the Board of Visiting

3. 규정된 양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면제의 취소

제58조 (收容者의 防禦權) 收容者는 그에 대한 告發과 證據를 듣고 防禦할 機會를 가질 때까지 처벌되어서는 아니된다.

제59조 (釋放을 위한 날 이후의 收容) 이 法 또는 이에 의하여 制定된 規定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處罰은 비록 그 施行이 없었더라면 교도소로부터 석방될 자격이 있는 날을 초과하여 수용자의 수용을 불가피하게 하더라도 실행될 수 있다.

다만, 이 收容期間은 수용자가 그렇지 아니하면 處罰될 수 있는 날의 마지막 시간에서 계산하여 48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60조 (體刑) ① 體刑의 宣告가 이 법에 의하여 收容者에게 내려진 경우에는 그가 그로 인하여 宣告받은 하나 또는 복수의 행위 또는 하나 또는 복수의 不作爲에 대하여 하나의 判決이상이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어느 경우에도 體刑의 宣告가 여자에게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어느 경우에도 가벼운 회초리 10대를 초과하는 체형의 선고가 소년에게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이 收容者 또는 少年이 處罰을 견디기에 적합한 健康狀態에 있다는 내용의 醫師의 確認이 내려지지 아니하는 한 어느 경우에도 음식 또는 체형의 선고가 수용자 또는 소년에게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

제61조 (違反行爲로 인한 起訴) 이 法의 어느 것도 收容者를 통상적인 法律節次에 의하여 起訴하는 것을 免除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고, 수용자는 동일한 違反行爲로 거듭 處罰되어서는 아니된다.

제62조 (訪問判事의 任命) ① 長官은 매년 모든 治安判事가 當然職 구

Am. S (N.S.) 177/59.

Justices", of which all Magistrates shall be ex-officio members.

Am. 38 of 1956.

(2) A Visiting Justice may at any time visit any prison or reformative training centre in Singapore and may inspect the several wards, cells, yards, solitary or punishment cells and other apartments or divisions of the prison, inspect and test the quality and quantity of the prisoners' food, hear the complaints (if any) of the prisoners, and question any prisoner or prison officer, and shall ascertain, so far as possible, whether the prison regulations are adhered to, and shall call the attention of the Superintendent to any irregularity that may be observed in the working of the prison or reformative training centre or in the treatment of any prisoner confined therein, and shall exercise and perform such other powers and duties as may be prescribed.

(3) The Board shall appoint one or more of its members to be in rotation Visiting Justice or Justices of the prisons of Singapore for each month of the year, and such Visiting Justice or Justices shall hear, try and dispose of such prison offences as to which a report under subsection (1) of section 57 has been made.

(4) Every Visiting Justice shall,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have power to summon witnesses and to administer oaths.

Add. 38 of 1956.

(5) The Board shall in relation to persons detained in reformative training centres exercise such functions as may be required of it by any written law.

Visits by Judges, Magistrates, etc.

63.—(1) Every Judge, Magistrate or Justice of the Peace having jurisdiction in the place where any prison is situate may, whenever he thinks fit, enter into and examine the condition of such prison, and of the prisoners therein, and he may question any prisoner or officer, and he may enter any observations he thinks fit to make in reference to the condition of the prison in a Visitors' Book to be kept for that purpose by the Superintendent, which book shall be duly produced to the Visiting Justices at their next ensuing visit.

(2) Any member of the Cabinet or of Parliament may at any time visit any prison in Singapore and may exercise all or any of the powers specified in subsection (1).

성원이 되는 "訪問判事委員會"라 불리는"治安判事委員會"를 任命하여야 한다.

② 訪問判事는 수시로 싱가포르내의 矯導所 또는 保護訓練院을 방문하고 각 居室, 작은 거실(作業場, 獨居室 또는 處罰室 그리고 矯導所內의 기타 區域들을 조사하고 수용자의 음식의 양과 질을 조사하고 심사하며(있으면) 收容者의 異議를 듣고, 收容者 또는 矯導官에게 質問하고, 가능한 한 矯導所規定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불규칙적으로 矯導所 또는 保護訓練院의 作業 또는 그곳에 수용된 收容者의 처우에 있어서 監督者의 注意가 기울여지도록 비정규적으로 喚起하여야 하고 규정된 기타 權限과 義務를 행사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③ 委員會는 차례로 訪問判事 또는 싱가포르 교도소의 治安判事가 되는 1인 또는 수인의 構成員을 任命하여야 하고, 이 訪問判事 또는 수인의 法官은 57조 제1항에 의하여 보고된 교도소 違反行爲를 審理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④ 모든 訪問判事는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證人을 召喚하고 宣誓를 하게 할 權限을 갖는다.

⑤ 委員會는 保護訓練院에 수용된 자에 관하여 成文法에 의하여 요구되는 權限을 행사한다.

제63조 (法官, 治安判事의 訪問) ① 모든 法官, 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有給 또는 名譽治安判事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교도소를 방문하여 교도소와 수용자의 상태를 검사할 수 있고, 감독자가 이 목적으로 보존하고 있고, 다음 계속되는 방문시에 訪問判事에게 당연히 제출되어야 하는 장부인 訪問帳簿에 矯導所의 狀態에 관하여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意見을 기입할 수 있다.

② 內閣 또는 議會 構成員은 수시로 싱가포르 내의 矯導所를 방문하고 전항에 규정된 權限의 전부 또는 어느 것을 행사할 수 있다.

Regulations.

Am. 38 of 1956, 71 of 1959.

64.—(1) The Minister may make all such regulations, not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ct, as are necessary for the good management and government of prisons and reformative training centres or for carrying out the objects of this Act.

(2) In particular and without prejudice to the generality of the foregoing powers, such regulations may prescribe for all or any of the following purposes or matters:—

(a) the conditions of service and the powers, conduct and duties of the officers of prisons;

(b) the medical examination, measuring, photographing and taking of fingerprint impressions or other records of persons confined in any prison or otherwise detained in custody, including detailed personal statistics and histories, and for requiring full and truthful answers to all questions put to such persons with the object of obtaining such statistics and histories;

(c) the persons, if any, to whom such measurements, photographers, fingerprint impressions or other records are to be sent or supplied;

(d) the employment, diets, classification, safe custody, separation, treatment and discipline of prisoners;

(e) the kind of labour to be exacted at the different stages of their imprisonment with the manner and place of exacting the same;

(f) the remission of sentences to be allowed to prisoners who duly comply with the regulations to which they are subjected, and the conditions on which such remissions are to be made;

(g) the disposal of the products of the labour of prisoners;

(h) the establishment of prisoners aid associations and societies and for the subsidizing of their work and the utilizing of their services in connection with prisoners discharged on probation and convicted prisoners whose sentences have expired;

제64조 (規定) ① 長官은 矯導所와 保護訓練院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이 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 법의 規定과 불일치하지 아니하는 모든 규정을 制定할 수 있다.

② 이전의 權限의 一般的 原則을 특히 그리고 침해하지 아니하고 이 규정은 다음 目的 또는 問題의 전부 또는 어느 것을 정할 수 있다.

1. 業務와 權限의 條件, 교도소의 公務員의 行爲와 義務
2. 상세한 개인적인 統計와 前歷을 포함하여 교도소 또는 달리 監護되어 수용된 자의 醫學的 調査, 測定, 사진촬영, 指紋 또는 기타 기록의 채취 그리고 이 統計와 前歷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자에게 제기한 모든 문제에 완전하고 정직한 대답을 요구하는 것
3. 만일 있으면 이 측정, 촬영자, 지문 또는 기타 기록이 보내지거나 제공되는 자
4. 수용자의 勞役, 規定食, 分類, 안전한 監護, 分離, 處遇와 規律
5. 다른 수용단계에 그 방법으로 强制된 勞役의 種類와 동일한 것을 강제하는 장소
6. 服從하여야 하는 規定을 잘 준수한 收容者에게 허용되는 宣告의 免除 그리고 이 면제가 행하여지는 조건
7. 收容者의 노력으로 생산한 物品의 處分
8. 收容者救助協會 및 單體의 설립과 그들의 근무를 보조하고 假釋放된 수용자와 宣告期間이 만료된 受刑者에 관하여 그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i) the supply of money, food, clothing or means of travelling to prisoners on their discharge;

(j) the administration of the Prison Officers Reward Fund;

(k) the proceedings and visits of the Visiting Justices;

(l) any other matter which under this Act is required or permitted to be prescribed.

Subs. 31 of 1958.

(3) All regulations made under this section shall be published in the *Gazette* and shall be presented to Parliament as soon as may be after publication and if a resolution is passed pursuant to a motion notice whereof has been given for a sitting day not later than the first available sitting day of Parliament next after the expiry of three months from the date when such regulations are so presented annulling the regulations or any part thereof as from a specified date, such regulations or such part thereof as the case may be shall thereupon become void as from such date but without prejudice to the validity of anything previously done thereunder or to the making of new regulations.

Trial of offences.

65.—(1) Except where by this Act it i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all offences under this Act shall be cognizable by a District Court or a Magistrate's Court.

(2) Any District Court or Magistrate's Court may, notwithstanding anything in the Criminal Procedure Code, impose the full punishment prescribed by this Act in respect of any offence.

9. 금전, 음식, 의복 또는 석방된 수용자의 여행수단의 제공
10. 교도관 報償基金의 관리
11. 訪問判事의 訴訟節次와 訪問
12. 이 법에서 要求되거나 또는 規定하기로 허용된 기타 문제

③ 이 조에 의하여 정하여진 모든 規定은 官報에 公示되어야 하고 공시 후 가능한 한 빨리 議會에 제출되어야 하고, 특정한 날로부터 규정 또는 그 일부를 無效로 하는 규정이 제출될 날로부터 3月이 경과된 후 차기 議會의 최초의 실제 開會日보다 늦지 아니하는 개회일에 이에 관하여 행하여진 發議通知에 따라서 決意가 통과된 경우에는 이 규정 또는 경우에 따라서 그 일부는 이 날로부터 즉시 無效이다. 다만 이에 따라 이전에 행하여진 것의 有效性에 영향이 없고 새로운 規定의 制定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제65조 (違反行爲의 審理) ① 이 조에서 달리 明示的으로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에 의한 違反行爲는 지구법원 또는 치안판사법원에서 審理될 수 있어야 한다.

② 地區法院 또는 治安判事法院은 형사소송법의 어떠한 것에 불구하고 어떠한 違反行爲에 관하여 이 법이 정한 충분한 處罰을 과할 수 있다.

여 백

附録

PENAL ADMINISTRATION ACT

Law No. 105, Promulgated on Mar. 2, 1950
Amended by Law No. 858, Dec. 23, 1961
Amended by Law No. 1222, Dec. 24, 1962
Amended by Law No. 2437, Jan. 15, 1973
Amended by Law No. 3289, Dec. 22, 1980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CHAPTER II. COMMITMENT
CHAPTER III. SECURITY
CHAPTER IV. INTERVIEW AND CORRESPONDENCE
CHAPTER V. SUPPLIES
CHAPTER VI. SANITATION AND MEDICAL TREATMENT
CHAPTER VII. EDUCATION AND PREACHING
CHAPTER VIII. PRISON INDUSTRY
CHAPTER IX. CUSTODY OF CONVICTED PERSON'S ARTICLE
CHAPTER X. CLASSIFICATION AND TREATMENT
CHAPTER XI. RELEASE ON PAROLE
CHAPTER XII. RELEASE
CHAPTER XIII. EXECUTION OF DEATH SENTENCE AND DEATH
CHAPTER XIV. DETENTION OF THE UNCONVICTED PERSON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reform and educate those persons, who are sentenced to imprisonment with or without hard labor, detention in the workhouse or penal deten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icted persons"), by separating them and to enable them to return to society by cultivating sound national spirit and giving them vocational training, and at the same time to stipulate matters concerning commitment of the criminal suspects or defendants detained under the warrant of arrest (hereinafter referred to as "unconvicted detainees").

行 刑 法

(1950. 3. 2 법률 제105호)

<改正>
1961. 12. 23. 법률 제858호
1962. 12. 24. 법률 제1222호
1973. 1. 15. 법률 제2437호
1980. 12. 22. 법률 제3289호

제 1 장 總則(제1조 - 제7조)
제 2 장 收容(제8조 - 제13조)
제 3 장 戒護(제14조 - 제17조)
제 4 장 接見과 書信(제18조 - 제19조)
제 5 장 給與(제20조 - 제22조)
제 6 장 衛生과 醫療(제23조 - 제30조)
제 7 장 教育과 教誨(제31조 - 제34조)
제 8 장 作業(제35조 - 제40조)
제 9 장 領置(제41조 - 제43조)
제10장 分類와 處遇(제44조 - 제48조)
제11장 假釋放(제49조 - 제52조)
제12장 釋放(제53조 - 제56조)
제13장 死刑의 執行 및 死亡(제57조 - 제61조)
제14장 未決收容(제62조 - 제69조)
附 則

제1장 總 則

제1조 (目 的) 本法은 懲役刑, 禁錮刑 및 勞役場留置와 拘留刑을 받은 者(이하 受刑者라 한다)를 隔離하여 矯正教化하며 건전한 國民思想과 勤勞精神을 함양하고 技術教育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며 아울러 刑事被疑者 또는 刑事被告人으로서 拘束令狀의 執行을 받은 者(以下 未決收容者라 한다)의 收容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Article 2 (Establishment of Prisons and the Like) (1) Repealed.

(2) To prisons the convicted persons who are 20 or more in age shall be committed.

(3) To juvenile reformatories the convicted persons who are under 20 in age shall be committed.

(4) In order to commit unconvicted detainees, rooms for unconvicted detainees shall be established inside of the prison or juvenile reformatory.

(5) For the purpose of having office works concerning commitment of unconvicted detainees administered, detention houses may be established under the Minister of Justice.

(6) Matters concerning the official names, locations and office regulations of prisons, juvenile reformatories and detention houses shall be provided for by a Presidential Decree.

Article 3 (Exception to the Rule of Separate Commitment) (1) When chiefs of prisons or juvenile reformator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ison chiefs") find some particular circumstances, provisions of Paragraph 2 and Paragraph 3 of Article 2 may not be applied only within a period not exceeding six months.

(2) In the case mentioned in Paragraph 1, adults and juveniles shall be committed separately.

Article 4 (Separation of Convicted Persons of Different Sexes) Men and women shall be committed separately.

Article 5 (Rounds of Inspection of Prisons and the Like) (1) The Minister of Justice may make rounds of inspection of prisons, juvenile reformatories and detention houses himself (or herself), or may let public officials under him make the rounds of inspection.

(2) Judges and prosecutors may conduct inspection of prisons, juvenile reformatories or detention houses at any time they want to.

(3) When persons other than those prescribed in Paragraph 2 want to pay a visit of inspection to prisons or juvenile reformatories for the purpose of conducting academic research or for other justifiable reasons, they are required to obtain permission from the competent prison chiefs, with the reasons therefor clearly expressed.

(4) When men or women want to pay a visit of inspection to prisons or juvenile reformatories where those different from their sexes are accommodated, competent prison chiefs shall grant permission after obtaining approval from the Minister of Justice.

제2조 (矯導所 등의 設置) ① <폐지 73. 1. 15. 정부조직법부칙⑥>
② 矯導所에는 만20세이상의 수용자를 수용한다.
③ 少年矯導所에는 만20세미만의 수용자를 수용한다.
④ 未決收容者를 수용하기 위하여 矯導所, 少年矯導所內에 未決收容室을 둔다.
⑤ 未決收容者의 收容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게 하기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法務部長官 소속하에 拘置所를 둘 수 있다.
⑥ 矯導所·少年矯導所·拘置所의 名稱, 位置 및 職制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3조 (區分收容의 例外) ① 矯導所 또는 少年矯導所의 長(이하 所長이라 한다)이 특별한 事情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6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期間에 한하여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경우에는 成年과 少年을 分離收容한다.

제4조 (異性受刑者의 隔離) 男子와 女子는 隔離收容한다.

제5조 (矯導所 등의 巡閱 등) ① 법무부장관은 矯導所, 少年矯導所 및 拘置所를 巡閱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巡閱하게 할 수 있다.
② 判事와 檢事는 矯導所, 少年矯導所 또는 拘置所를 수시로 視察할 수 있다.
③ 제2항이외의 자로서 學術硏究 기타 정당한 理由로 矯導所, 少年矯導所를 參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理由를 명시하여 당해 所長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④ 男子 또는 女子가 異性을 수용한 矯導所, 少年矯導所를 參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所長이 法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이를 허가한다.

Article 6 (Petition) When the convicted persons have complaints about their treatment, they may petition to the Minister of Justice or public officials making rounds of inspection.

Article 7 (Regulations Concerning Execution of Duties) Matter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duties of prison officials shall be provided for by the Minister of Justice.

CHAPTER II. COMMITMENT

Article 8 (Commitment of New-Comers) (1) Persons newly coming to prisons, juvenile prisons or detention houses as convicted persons or unconvicted detaine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new-comers) shall be committed thereto after review of written instructions for execution of punishment, documents on trials and other legal documents.

(2) When a newly coming woman has requested for taking a baby she gave birth to with her, the competent prison chief may grant permission thereof as far as 18 months after the birth, only when there are proper reasons found.

(3) To a baby born while in the course of serving the sentence, Paragraph 2 shall be applied *mutatis mutandis.*

Article 9 (Isolation of Patients of Infectious Diseases) A patient of infectious disease which is feared as contagious to other persons may not be committed.

Article 10 (Physical Examination and the Like) (1) For new comers, physical conditions and clothes must be examined, finger prints taken, and photographs must be taken.

(2) When it is considered necessary by competent prison chiefs, examination of physical conditions and clothes, taking of finger prints, and shooting of photographs may be conducted also for those convicted persons who are in the course of serving their sentences.

Article 11 (Solitary Confinement) (1) Each convicted person be placed in solitary confinement, except in cases when associate confinement may be made as it is considered necessary.

(2) In case of associated confinement, the terms of the sentences, nature of offences, personal characters, numbers of previous offences, the ages, personal careers and so on of the convicted persons shall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제6조 (請 願) 受刑者는 그 處遇에 대하여 不服이 있을 때에는 法務部長官 또는 巡閱公務員에게 請願할 수 있다.

제7조 (執務 規程) 矯導官의 執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法務部長官이 정한다.

제2장 收 容

제8조 (新入者의 收容 등) ① 受刑者 또는 未決收容者로서 矯導所, 少年矯導所 또는 拘置所에 新入하는 자(이하 新入者 라 한다)에 대하여는 執行指揮書 및 裁判書 기타 適法한 書類를 調査한 후 收容한다.

② 新入의 여자가 所生乳兒의 帶同을 신청한 때에는 상당한 理由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生後 18月에 이르기까지 당해 所長이 이를 許可할 수 있다.

③ 受刑中에 출생한 乳兒에 대하여도 제2항에 準한다.

제9조 (傳染病羅病者의 隔離) 他人에게 傳染의 念慮가 있는 傳染病羅病者는 收容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身體檢查 등) ①新入者에 대하여는 身體, 衣類를 檢查하고 指紋을 採取하며 寫眞을 撮影하여야 한다.

② 受刑中의 자에 대하여도 당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身體·衣類를 檢查하고 指紋을 채취하며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제11조 (獨居 收容) ① 受刑者는 獨居收容한다. 但, 필요한 경우에는 混居收容할 수 있다.

② 混居收容의 경우에는 수용자의 刑期·罪質·性格·犯數·年齡·經歷 등을 참작하여 居室을 區別 收容한다.

deciding the cells wherein they are to be confined.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in the case of prison industry in workshops.

Article 12 (Transfer of the Convicted Persons) When it is specially considered necessary from the viewpoints of commitment, prison industry, education and other matters concerning treatment of a convicted person, the competent prison chief may transfer the convicted person to another prison or juvenile reformatory after obtaining approval from the Minister of Justice.

Article 13 (Commitment of a Convicted Person under Sentence of Death) A person sentenced to death shall be committed to a detention house or a room for unconvicted detainees.

CHAPTER III SECURITY

Article 14 (Instrument of Restraint) (1) In case there is a fear of escape of a convicted person or of committing violence, riot or suicide, or in another necessary case, instruments of restraint may be used.

(2) The kinds of the instruments of restraint shall be as follows:

1. Restraining rope;
2. Handcuffs;
3. Chain; and
4. Voice prevention tools.

Article 15 (Use of Arms) (1) When convicted persons fall under the category of any of the following items, prison officials may use arms.

1. When the situation is considered urgent because of the convicted persons resorting to, or being about to resort to, violence or threatening against prison officials;
2. When the convicted persons are possessed with objects of danger to be used in violences or threatening, and refuse to obey an order to throw them away;
3. When a group of the convicted persons make disturbances for the purpose of escaping;
4. When a convicted person attempting to escape does not comply with an order to stop or continues on with the attempt; and
5. In the cases other than those corresponding to any of the items mentioned in Paragraphs 1 to 4, when it is considered imminent for preven-

③ 作業場의 就業에 있어서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수형자의 移送) 受刑者의 收容·作業·敎化 기타 處遇上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소장은 법무부장관의 承認을 얻어 受刑者를 다른 矯導所 또는 少年矯導所에 移送할 수 있다.

제13조 (死刑囚의 收容) 死刑의 宣告를 받은 자는 拘置所 또는 未決收容室에 수용한다.

제3장 戒 護

제14조 (戒 具) ① 受刑者의 逃走·暴行·騷擾 또는 自殺의 防止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戒具를 사용할 수 있다.

② 戒具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

1. 捕 繩
2. 手 匣
3. 連 鎖
4. 防聲具

제15조 (武器의 使用) ① 受刑者 또는 未決收容者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矯導官은 武器를 사용한다.

1. 矯導官에 대하여 暴行 또는 脅迫을 하거나 하려고 하여 事態가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때
2. 暴行 또는 脅迫에 사용할 危險物을 所持하고 그 投棄命令에 服從하지 아니할 때
3. 逃走할 목적으로 多衆이 騷擾하는 때
4. 逃走를 企圖하는 자가 制止에 不應하거나 그 計劃을 계속하는 때
5. 제1호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외에 人命, 身體, 建物 其他 施設

tion of dangers toward human lives and bodies, buildings, and other equipment, machinery and apparatuses.

(2) Prison officials may also use arms to others except the convicted and the unconvicted within the necessary limits, when there are proper reasons considered urgent for the protection of their and others lives and bodies, the prevention of being taken the convicted and the unconvicted from custody and the prevention of dangers toward buildings, other equipments and arms around prision (in cluding prison work outside and on transferring inmates).

Article 16 (Emergency Transfer of the Inmates and the Like) (1) When it is admitted that, in time of natural calamity or other disasters, no method of refuge can be found inside a prison, juvenile reformatory or detention house, chief of the prison or detention house may transfer the inmates to other places under due escort.

(2) When it is not possible to transfer to other places under due escort, temporary release may be made.

(3) Persons releas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must present themselves, within 24 hours after the release, at the prison, juvenile reformatory, detention house or nearest police stations.

(4) A person, who has violated the provision of Paragraph 3, shall be subjected to punish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45 of the Criminal Code.

Article 17 (Arrest of Escaped Convicted Person) When a convicted person has escaped, prison officials shall be allowed to arrest the convict only within 72 hours thereafter.

CHAPTER IV. INTERVIEW AND CORRESPONDENCE

Article 18 (Meeting, and Receiving or Dispatching of Letters) (1) A convicted person may meet, or receive and dispatch letters, with other persons after obtaining the permission of the competent prison chief.

(2) Meeting, or receiving and dispatching letters, with persons other than relatives shall be permitted only on necessary business.

(3) Meeting, or receiving and dispatching letters, by a convicted person requires participation or inspection by prison officials.

(4) Matters necessary for participation in meetings, and for inspection and restriction to be imposed on letters shall be provided for by a Presidential Decree.

과 器機에 대한 危險을 防止하기 위하여 緊急하다고 認定되는 때

② 矯導官은 矯導所內(矯導所외에서의 作業 또는 護送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防護, 受刑者 또는 미결수용자에 대한 奪取의 沮止, 建物 기타 施設과 武器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한도내에서 受刑者 및 未決收容者 이외의 者에 대하여도 武器를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 (收容者의 緊急移送 등) ① 所長 또는 拘置所의 長은 天災地變 기타 事變으로 인하여 矯導所, 少年矯導所 또는 拘置所內에서 避難의 방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收容者를 他處에 移送할 수 있다.

② 他處에의 移送이 불능한 때에는 일시 석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釋放後 24시간내에 矯導所, 少年矯導所, 拘置所 또는 最近地 警察署에 출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刑法 第145條에 의하여 處斷한다.

제17조 (逃走受刑者의 逮捕) 受刑者가 逃走한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한하여 矯導官은 이를 逮捕할 수 있다.

제4장 接見과 書信

제18조 (接見과 書信의 受發) ① 受刑者는 所長의 許可를 받아 他人과 接見하거나 書信을 受發할 수 있다.

② 親族이외의 자와의 接見과 書信受發은 필요한 用務가 있을 때에 한한다.

③ 수형자의 接見과 書信受發은 矯導官의 參與 또는 檢閱을 요한다.

④ 接見參與, 書信의 檢閱 및 接見과 書信의 制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으로 정한다.

Article 19 (Custody of Letters and the Like) Letters and other documents delivered to a convicted person shall be placed in the custody of the prison authorities after the convicted person has perused them.

CHAPTER V. SUPPLIES

Article 20 (Supplies) (1) A convicted person shall be supplied with specific clothes and beddings.

(2) Matters concerning the supply of clothes and beddings shall be provided for by a Presidential Decree.

Article 21 (Ditto) (1) Convicted persons shall be supplied with food considered necessary with their physical constitutions, health, ages and prison industry, in which they are engaged, of each of them taken into consideration.

(2) Criteria for the supply of food shall be provided for by an order of the Ministry of Justice.

Article 22 (Self-supply of Clothes and the Like) (1) In case of necessity, the convicted persons may be permitted to supply themselves with clothes, beddings and food at their own expenses.

(2) Matters concerning self-supplied clothes, beddings and food shall be provided for by a Presidential Decree.

CHAPTER VI. SANITATION AND MEDICAL TREATMENT

Article 23 (Cutting Short of Hairs and the Like) Convicted persons shall have their hairs and beards cut and shaved short, except for woman convicts, those convicts under a term less than three months, and those whose remaining terms of sentences are less than two months.

Article 24 (Physical Exercises) The prison chief must let the convicted persons take physical exercises required for maintaining their health.

Article 25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The prison chief must take measures for the convicted persons necessary for the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Article 26 (Committment to the Infirmary of the Institution) In case a convicted person has been taken ill, he shall receive proper medical treatment and shall, if necessary, be committed to the infirmary of the institution.

제19조 (書信 등의 領置) 受刑者의 交付된 書信其他 文書는 本人이 閱讀한 후에 이를 領置한다.

제5장 給 與

제20조 (給 與) ① 受刑者에게는 일정한 衣類와 寢具를 급여한다.
② 衣類와 寢具의 급여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으로 정한다.

제21조 (同 前) ① 수형자에게는 體質, 健康, 年齡과 作業 등을 참작하여 필요한 食糧을 給與한다.
② 食糧給與의 基準은 法務部令으로 정한다.

제22조 (衣類 등의 自辨) ① 수형자에게는 필요한 경우에 衣類, 寢具와 食糧의 自辨을 許可할 수 있다.
② 自辨의 衣類, 寢具와 食糧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5장 衛生과 醫療

제23조 (頭髮 등의 短削) 受刑者의 頭髮과 수염은 短削한다. 단 女子受刑者와 3월이하의 刑을 받은 자와 殘刑期가 2월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24조 (運 動) 所長은 受刑者에게 健康에 필요한 運動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25조 (傳染病豫防) 所長은 受刑者에게 傳染病豫防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 (病室 收容) 疾病에 걸린 受刑者에 대하여 病室收容 기타 적당한 治療를 하여야 한다.

Article 27 (Accommodation under Isolation) The prison chief must isolate the convicted persons of infectious diseases separately from other persons under detention.

Article 28 (Medical Treatment at Self Expenses) When a convicted person wants to receive subsidiary medical treatment at his or her own expense, the competent prison chief may grant permission therefor as the occasion demands.

Article 29 (Accommodation in Hospital) (1) When it is considered impossible to render suitable medical treatment to a convicted person inside the compound of the prison, the competent prison chief may transfer the convicted person to another hospital outside the compound.

(2) A convict transferr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be considered as a quasi inmate.

Article 30 (Pregnant Women and the Like) Pregnant women, women who have given births, and the old and weak shall be treated as persons who have fallen sick.

CHAPTER VII. EDUCATION AND PREACHING

Article 31 (Preaching) (1) Repealed by Law No. 3289, December 22, 1980.

(2) When a convicted person has requested for a special preaching based on the doctrine of the denomination which he or she believes in, the competent prison chief may commission the denomination with the preaching.

Article 32 (Education) (1) For the convicted persons without educational background or juvenile convicts, education suitable therefor must be enforced with the ages, volumes of knowledge and other matters taken into consideration, except for persons who are feeble mentally and physically and the old and weak.

(2) The prison chief may enforce necessary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which not only enhance cultivation of good personality on the part of convicted persons and their reformation but also help them keep mentally and physically healthy and learn skills and technology.

Article 33 (Perusal of Books and Other Publications) When a convicted person has requested for an opportunity to read books and other publications, the competent prison chief must grant permission therefor so long as no causes particularly considered not fit are found.

제27조 (隔離 收容) 所長은 傳染病에 걸린 受刑者에 대하여 다른 收容者와 隔離收容하여야 한다.

제28조 (自費 治療) 受刑者가 自費로써 補助治療를 願하는 때에는 필요에 의하여 당해 所長은 이를 許可할 수 있다.

제29조 (病院 收容) ① 所內에서 受刑者에게 적당한 治療를 하는 것이 不可能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所長은 所外의 다른 病院에 移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移送된 者는 收容者에 준한다.

제30조 (妊婦 등) 妊婦, 産婦와 老衰者는 罹病者에 준한다.

제7장 敎育과 敎誨

제31조 (敎 誨) ① 削除<80. 12. 22.>
② 受刑者가 그가 信奉하고 있는 宗派의 敎義에 의한 特別敎誨를 請願할 때에는 당해 所長은 그 宗派에 위촉하여 敎誨를 할 수 있다.

제32조 (敎 育) ① 無敎育者 또는 少年受刑者에 대하여는 年齡, 知識程度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그에 適應한 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心身微弱者 또는 老衰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所長은 受刑者의 人格陶冶와 改善遷善을 촉진시키고 心身鍛鍊과 技術習得을 위하여 필요한 敎育訓練을 實施할 수 있다.

제33조 (圖書 閱讀) 受刑者가 圖書의 閱讀을 신청하는 때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事由가 없는 한 당해 所長은 이를 許可하여야 한다.

Article 34 (Regulations for Education) Matters necessary in connection with subjects, time and books and other publications for education shall be provided for by the Minister of Justice.

CHAPTER VIII. PRISON INDUSTRY

Article 35 (Prison Industry) Prison industry shall be imposed upon the convicted persons with due consideration of their ages, sentenced terms, health, skills, characters, tastes, occupations, livelihood in the future and other matters.

Article 36 (Industry on Holidays) (1) Industry shall not be imposed on national holidays, festival days, Sundays and other official take-off days; however, cooking, cleaning, nursing, accounting and other particularly required works are to be excepted.

(2)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work hours of prison industry and temporary industry shall be provided for by the Minister of Justice.

Article 37 (Exemption from Industry) Any convicted person who has received information of the death of his father, mother, wife, child or brother, shall be exempt from industry for two days; and any convicted person shall be exempt from industry for one day on the anniversary of the death of his father, mother or wife.

Article 38 (Prison Industry Permitted on Application) Prison industry may be imposed upon those convicted persons under the sentence of imprisonment or penal detention upon their own application.

Article 39 (Proceeds from Industry, Etc.) (1) All the proceeds from prison industry shall be vested in the national treasury.

(2) The convicted person who has been engaged in prison industry may be granted a reward money for his work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specifi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kind of prison indsutry his behavior and showings in the prison industry and other relevant circumstances.

(3) The money reward d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granted to the convicted person at the time of his release from the institution; however, the partial or whole payment may be made even before the release when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assist his education or family living.

제34조 (敎育 規程) 敎育의 科目·時間과 圖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法務部長官이 정한다.

제8장 作 業

제35조 (作 業) 作業은 수형자의 年齡·刑期·健康·技術·趣味, 職業과 장래의 生計 기타 事情을 참작하여 課한다.

제36조 (休日의 作業) ① 國家慶祝日, 日曜日 기타 公休日에는 作業을 課하지 아니한다. 但, 炊事, 淸掃, 看護, 經理 기타 특히 필요한 作業은 예외로 한다.

② 作業時間과 臨時作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法務部長官이 정한다.

제37조 (作業의 免除) 수형자중 父母·妻子 또는 兄弟의 訃告를 받은 자는 2일간, 父·母 또는 妻의 忌日은 1일간 作業을 면제한다.

제38조 (申請에 의한 作業) 禁錮와 拘留刑을 받은 자에게는 신청에 의하여 作業을 課할 수 있다.

제39조 (作業收入 등) ① 作業收入은 國庫收入으로 한다.

② 受刑者에게는 法務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作業의 種類·成績과 行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作業賞與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③ 第 2 項의 作業賞與金은 釋放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한다. 단 본인의 家族, 生活扶助 또는 敎化上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방전이라도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Article 40 (Consolation Money or Condolence Money) (1) When a convicted person is injured or crippled or killed by accident while engaged in prison industry, a consolation money or condolence money may be pai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specifi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2) The consolation money shall be paid to the convicted person at the time of his release from the prison, and the condolence money to his successor respectively.

CHAPTER IX. CUSTODY OF CONVICTED PERSON'S ARTICLE

Article 41 (Custody of Money and Articles) (1) The money and things which the convicted person has with him shall be placed in the custody of the prison or juvenile reformatory authorities; however, the things not worthy of custody shall be excepted.

(2) When a convicted person does not dispose of the things specified in the provision of the saving clause of Paragraph 1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they may be destroyed.

Article 42 (Sending in of Money or Articles to the Convicted Person) (1) In case a person applies for permission to send in money or things to a convicted person, such permission shall be granted unless there is no particularly adequate ground to deny such permission.

(2) If the convicted person refuses to receive the money or things sent in him, or if it is deemed unreasonable to deliver them to the convicted person, the prison chief shall return and deliver them back to the sender.

(3) In case of Paragraph 2, when the sender or his address is not clear, the prison chief shall make a public notice thereof. When nobody claims for the delivery after lapse of six months since the public notice, the money or things shall be vested in the National Treasury; however, those things which are considered worthless may be destroyed.

Article 43 (Return of Money or Articles under Custody) (1) The money or things taken into custody of prison authorities shall be delivered back to the convicted person at the time of his release from prison.

(2) The money or things left behind the dead inmate shall be delivered to his successor upon request. However, they shall be vested in the National Treasury if the delivery thereof is not requested within one year from the day of his death.

(3) The money or things left by an escaped immate shall be delivered to the

제40조 (慰勞金, 吊慰金) ① 受刑者의 携帶金品은 矯導所 또는 少年矯導所에 領置한다. 단 領置의 價値가 없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規定에 해당하는 物品을 本人이 상당한 기간내에 處分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廢棄할 수 있다.

제9장 領 置

제41조 (携帶金品의 領置) ① 受刑者의 携帶金品은 矯導所 또는 少年矯導所에 領置한다. 단 領置의 價値가 없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② 제 1 항 단서의 規定에 해당하는 物品을 본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處分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廢棄할 수 있다.

제42조 (受刑者에 대한 金品交付) ① 受刑者에게 金品의 交付를 申請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소장은 이를 許可하여야 한다.

② 所長은 受刑者에게 송부된 金品으로써 본인이 受領을 거부하거나 또는 그 물품을 본인에게 교부함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그 송부인에게 還付한다.

③ 所長은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送付人 또는 그 送付人의 住所가 不明한 경우에는 그 뜻을 公告하여야 하며 公告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그 金品은 國庫에 歸屬된다. 단 價値가 없다고 인정되는 物品은 廢棄할 수 있다.

제43조 (領置金品의 還付) ① 領置金品은 釋放할 때에는 本人에게 還付한다.

② 死亡者의 遺留金品은 청구에 의하여 相續人에게 교부한다. 단 死亡후 1년을 경과하여도 請求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 歸屬한다.

③ 逃走者의 遺留金品은 청구에 의하여 本人이나 直系의 尊屬이나 卑屬에게

escaped immate himself or a lineal ascendant or descendant of him upon request. However they shall be vested in the National Treasury if the delivery thereof is not requested within one year from the day of his escape.

CHAPTER X. CLASSIFICATION AND TREATMENT

Article 44 (Classification, Treatment and Home Leave) (1) The prison chief shall examine and classify the convicted person on an individual basis and render him an appropriate treatment based on such classification.

(2) When a convicted person, who has served for more than a year and one half of whose prison term has elapsed, has shown a remarkable sign of repentance and behaved himself extremely well, a home leave up to three weeks may be granted. The period of home leave shall be calculated into the term of the execution of sentence.

(3)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classification, Treatment and Home leave shall be provided for by the Minister of Justice.

Article 45 (Prison Discipline)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prison discipline for the convicted person shall be provided for by the Minister of Justice.

Article 46 (Disciplinary Punishment) (1) A convicted person who acts against prison discipline shall be liable to a disciplinary punishment.

(2) Kinds of the disciplinary punishment shall be as follows:

1. Warning;
2. Prohibition of reading books for three months or less;
3. Suspension of labor in prison industry permitted on application;
4. Suspension of physical exercise for five days or less;
5. Whole or partial deprivation of the accumulated amount of rewards for labor in prison industry;
6. Suspension of labor in prison industry for two months or less;
7. Prohibition of interview and correspondence for two days or less;
8. Confinement for disciplinary punishment for two months or less; and
9. Reduction of food for seven days or less.

(3) Criteria necessary for rendering disciplinary punishment shall be provided for by the Minister of Justice.

Article 47 (Disciplinary Committee) (1) Disciplinary punishment shall be determined through a resolution of the disciplinary committee.

(2) The disciplinary committee shall be composed of less than five but over

교부한다. 단 逃走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청구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 歸屬된다.

제10장 分類와 處遇

제44조 (分類·處遇 및 歸休) ① 所長은 受刑者를 개별적으로 審査分類하여 그에 상응한 處遇를 하여야 한다.

② 1년이상 服役한 수형자로서 그 刑期의 2분의 1을 경과하고 改過의 情狀이 특히 현저하며 行狀이 우수한 때에는 刑期間 중 3주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歸休期間은 刑執行期間에 算入한다.

③ 分類·處遇 및 歸休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法務部長官이 정한다.

제45조 (規 律) 受刑者의 規律에 관한 사항은 法務部長官이 정한다.

제46조 (懲 罰) ① 受刑者가 規律을 위반한 때에는 懲罰에 처한다.

② 懲罰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

1. 警告
2. 3월이내의 圖書閱讀禁止
3. 請願作業의 停止
4. 5일 이내의 運動停止
5. 作業賞與金의 일부 또는 전부의 削減
6. 2월이내의 作業停止
7. 2월이내의 接見·書信禁止
8. 2월이내의 禁置
9. 7월이내의 減食

③ 懲罰을 科함에 있어서 필요한 基準은 法務部長官이 정한다.

제47조 (懲罰委員會) ① 懲罰은 懲罰委員會의 議決로써 정한다.

② 懲罰委員會는 3인이상 5인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며 委員長은 당해所長이

three members and the prison chief shall be the chairman thereof, who shall appoint the commitee members among the deputy chief and section chiefs of the prison.

Article 48 (Suspension or Exemption of Disciplinary Punishment) (1) In case the inmate under disciplinary punishment is suffering from illness, or in case there are other special circumstances, the prison chief may temporarily suspend the execution of disciplinary punishment.

(2) In case the inmate under disciplinary punishment has shown a remarkable sign of repentance, the prison chief may exempt or remit the disciplinary punishment through a resolution of the disciplinary committee.

CHAPTER XI. RELEASE ON PAROLE

Article 49 (Release on Parole) A Parole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at a prison or a juvenile reformatory in order to make recommendations to the Minister of Justice for release on parole in accordance with Article 72, of the Criminal Code.

Article 50 (Examination Committee for Release on Parole) (1) The Parole Committee shall be composed of less than five but over three members and the prison chief shall be the Chairman, who shall commission the committee members among judges, prosecutors, or men high in public esteem.

(2)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Parole Committee shall be provided for by the Minister of Justice.

Article 51 (Recommendation for Release on Parole) (1) In deciding whether to make recommendation for release on parole, the Parole Committee shall take into consideration the convicted person's age, kind and motive of the crime committed, kind of punishment, sentenced term, behavior and showings in prison, living and protection after release on parole, possibility of repeating crimes and other factors.

(2) When the Parole Committee decides to make a recommendation for release on parole, the Chairman shall submit it within five days to the Minister of Justice with other necessary documents.

Article 52 (Approval for Provisional Release) The Minister of Justice shall grant approval for the release on parole, when the recomendation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51 is considered justifiable.

되고 委員은 위원장이 당해所內 副所長과 課長中에서 任命한다.

제48조 (懲罰의 停止·免除) ① 懲罰을 받은 者로서 疾病 기타 事由가 있을 때에는 所長은 그 執行을 一時 停止할 수 있다.

② 소장은 懲罰을 받은 자가 改悛의 情이 현저한 때에는 懲罰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懲罰을 輕減 또는 免除할 수 있다.

제11장 假 釋 放

제49조 (假 釋 放) 刑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假釋放을 법무부장관에게 具申하게 하기 위하여 矯導所와 少年矯導所에 假釋放審査委員會를 둔다.

제50조 (假釋放審査委員會) ① 假釋放審査委員會는 3인이상 5인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며 委員長은 당해 所長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判事, 檢事 또는 社會名望家中에서 委囑한다.

② 假釋放審査委員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法務部長官이 정한다.

제51조 (假釋放具申) ① 假釋放審査委員會가 假釋放具申與否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受刑者의 年齡, 罪名, 犯罪의 動機, 刑名, 刑期, 受刑中의 行狀, 假釋放後의 生活과 保護關係, 再犯의 憂慮有無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假釋放審査委員會가 假釋放의 具申을 決定하였을 때에는 委員長은 決定書에 필요한 書類를 첨부하여 5일이내에 法務部長官에게 具申하여야 한다.

제52조 (假釋放許可) 法務部長官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假釋放의 具申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許可한다.

CHAPTER XII. RELEASE

Article 53 (Release) Release of a convicted person shall be conducted by the prison chief after the relevant documents concerning amnesty, expiration of the sentenced term or order of competent authorities is examined.

Article 54 (Ditto) (1) The convicted person to whom amnesty, or release on parole from prison, exemption and commutation of the punishment shall be released within twelve hours from the time of arrival at the prison of the relevant documents thereof.

(2) The convicted person to be released by the order of competent authorities shall be released within five hours from the time of arrival at the prison of the relevant documents thereof.

(3) The convicted person whose sentenced term has expired shall be released on the day of the expiration.

Article 55 (Stay of the Person to be Released in Prison) In case the convicted person who shall be released finds it difficult to return home on account of illness, he may be, on his application, permitted to temporarily stay in prison, juvenile reformatory or detention house.

Article 56 (Travel Expenses for Return Home, Etc.) The convicted person who shall be released may be granted travelling expenses or clothings, if he is without such means of returning home or proper clothings.

CHAPTER XIII. EXECUTION OF DEATH SENTENCE AND DEATH

Article 57 (Execution of Death Sentence) (1) The sentence of death shall be executed at the place of execution in the prison.

(2) The sentence of death shall not be executed on the national holidays, Sundays, or other official holidays.

Article 58 (Temporary Burial of a Corpse) If a convicted prisoner has died and his relatives or friends do not take over the body immediately, a temporary burial shall be carried out; the Corpse may be cremated, if it is deemed necessary to do so.

제12장 釋 放

제53조 (釋 放) 수형자의 釋放은 赦免, 刑期終了 또는 權限이 있는 자의 命令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調査한 후 所長이 이를 행한다.

제54조 (同 前) ① 赦免, 假釋放, 刑의 執行免除, 減刑에 의한 釋放은 그 書類到達後 12시간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② 權限이 있는 者의 命令에 의한 석방은 書類到達後 5시간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③ 刑期終了에 의한 석방은 刑期終了日에 행하여야 한다.

제55조 (被釋放者의 收容) 피석방자가 疾病으로 인하여 歸家하기 곤란한 때에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一時 矯導所, 少年矯導所 또는 拘置所內에 수용할 수 있다.

제56조 (歸家旅費 등) 被釋放者가 歸家旅費 또는 衣類를 所持하지 아니한 때에는 旅費 또는 衣類를 當該所에서 貸與할 수 있다.

제13장 死刑의 執行 및 死亡

제57조 (死刑의 執行) ① 死刑은 교도소내의 死刑場에서 執行한다.

② 國家慶祝日, 日曜日 기타 公休日에 死刑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제58조 (屍體의 假葬 등) 受刑者가 死亡한 때에 그의 親族 또는 親知가 그 屍體를 즉시 引受하지 아니하면 이를 假葬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火葬할 수 있다.

Arricle 59 (Delivery of Corpse or Remains) The corpse or remains of the dead convicted person shall be delivered to his relatives or friends upon their request; however, the request for the delivery shall not be made after they have been buried together with other corpse or remains.

Article 60 (Joint Burial of Corpses or Remains) In case nobody requests for the delivery of the corpse or remains for two years after their temporary burial, the corpses or remains may be buried together with other corpses or remains.

Article 61 (Dissection of a Corpse) The corpse of a convicted person may, if necessary for the academic study and research, be sent to a hospital or other public office for dissection; provided that the convicted person has left the will to such effect or his successor has consented to such dissection.

CHAPTER XIV. DETENTION OF THE UNCONVICTED PERSON

Article 62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Provisions of This Act to the Person under Non-Penal Confinement) Provisions of this Act concerning convicted person shall be applied *mutatis mutandis* to the unconvicted person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is Act or an order issued in accordance with provisions of this Act.

Article 63 (Prohibition of Observation) Observation of a cell where the person under non-penal confinement is detained within the house of detention shall not be permitted.

Article 64 (Separate Detention of the Person under Non-Penal Confinement) The persons under non-penal confinement who have mutual relations concerning a criminal case, shall be detained separately and prohibited from meeting each other.

Article 65 (Restriction on Cutting or Shaving Short) The unconvicted detainees in detention house or cell for the unconvicted detainees shall not have their hairs and beards cut or shaved short against their will except when it is particularly required.

Article 66 (Food Supply at Personal Expenses) (1) Food, clothes, and

제59조 (屍體·遺骨의 交付) 屍體 또는 遺骨은 請求에 의하여 親族 또는 親知에게 교부한다. 단 合葬後에는 교부를 請求할 수 없다.

제60조 (屍體·遺骨의 合葬) 屍體 또는 遺骨을 假葬한 후 2년을 경과하여도 交付를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合葬할 수 있다.

제61조 (屍體의 解剖) 受刑者의 屍體는 學術研究上 필요한 때에는 본인의 遺言 또는 相續人의 承諾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解剖하기 위하여 病院 기타 公務所에 送付할 수 있다.

제14장 未決 收容

제62조 (未決收容者에 대한 本法의 準用) 未決收容者에 대하여 本法 또는 本法의 규정에 의하여 發하는 命令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受刑者에 관한 規定(제46조 제2항 제7호의 接見·書信禁止 중 辯護人이 되려고하는 자와의 接見·書信禁止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63조 (參觀 禁止) 拘置所와 未決收容室은 參觀할 수 없다.

제64조 (未決收容者의 分離收容) 拘置所의 未決收容室에 收容된 者로서 事件에 상호관련이 있는 자는 分離收容하고 相互接見을 禁止하여야 한다.

제65조 (短削 禁止) 拘置所와 未決收容室의 수용자의 頭髮과 수염은 특히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本人의 意思에 反하여 短削하지 못한다.

제66조 (食糧 등의 自辨) ① 拘置所와 未決收容室의 食糧·衣類 및 寢具는 自

beddings shall be supplied to the detainees at their personal expenses.

(2) The Government shall supply food, clothes and beddings prescribed in Paragraph 1 to those unconvicted detainees who cannot afford to self-supply them.

Article 67 (Prison Industry and Admonition) For those unconvicted detainees in detention house or cell, Prison industry may be imposed and preaching may be given only on application.

Article 68 (Police Jail) Police jail established in police stations shall be considered as detention cells for the unconvicted persons.

Article 69 (Enforcement Order)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enforcement of this Act shall be provided for by a Presidential Decree.

ADDENDUM

This Act shall be effective 15 day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DDENDUM

(Law No. 858, Dec. 23, 1961)

(1) This Act shall come into effect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2) The Prison Officials System of the Government-General of Choson, Imperial Ordinance No. 243, October 18, 1909, shall be repealed herewith.

(3) Prisons and Juvenile reformatiories existing at the time of enforcing this Act shall be considered as having been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is Act.

(4) Prisons, juvenile reformatories and prison officials prescribed in other laws and orders at the time of enforcing this Act shall be considered as having been established and amended respectively, as prisons, juvenile reformatories and prison officials prescribed in this Act.

ADDENDUM

(Law No. 1222, Dec. 24, 1962)

This Act shall come into effect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辨한다.

② 제1항의 規定에 의한 食糧·衣類 및 寢具의 自辨이 불가능한 자에게는 이를 官給한다.

제67조 (作業과 敎誨) 拘置所와 未決收容室의 收容者에 대하여는 申請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作業을 課하거나 敎誨를 行할 수 있다.

제68조 (留置場) 警察官署에 설치된 留置場은 未決收容室에 준한다.

제69조 (施行令) 本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附 則

본법은 公布한 후15일을 經過 날로부터 시행한다.

附 則

〈61. 12. 23. 法 858〉

① 본법은 公布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檀記 4245년 10월18일 勅令 第243號 朝鮮總督府監獄官制는 이를 廢止한다.
③ 본법 시행당시의 矯導所, 少年矯導所는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看做한다
④ 본법 시행당시의 他法令 중의 刑務所 중의 刑務所, 少年刑務所 및 刑務官은 본법에 의한 矯導所, 少年矯導所 및 矯導官으로 각각 設置, 改正된 것으로 간주한다.

附 則

〈62. 12. 24. 法 1222〉

이 법은 公布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ADDENDUM

(Law No. 3289, Dec. 22, 1980)

This Act shall come into effect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附 則

〈80. 12. 22. 法 3289〉

이 법은 公布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第109輯　外國 矯正關係法令集(I)

1988. 12. 5 印刷
1988. 12. 20 發行

非賣品

編輯및發行 法務部矯政局

印 刷 永登浦矯導所

政刊委審議畢

GOVP1199221725

法務資料 第110輯

外國 矯正關係法令集(Ⅱ)

寄贈
一九89年1月13日
법무부 寄贈本

法　務　部

目次

◇ 유엔 被拘禁者處遇最低基準規則 3
◇ 미국 聯邦 矯正關係法令 55
◇ 카나다 矯導所 및 感化院法 189

CONTENTS

PART I.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PRELIMINARY OBSERVATIONS 2

PART I. RULES OF GENERAL APPLICATION 4

PART II. RULES APPLICABLE TO SPECIAL CATEGORIES 30

A. PRISONERS UNDER SENTENCE 30

B. INSANE AND MENTALLY ABNORMAL PRISONERS 44

C. PRISONERS UNDER ARREST OR AWAITING TRIAL 44

D. CIVIL PRISONERS 46

E. PERSONS ARRESTED OR DETAINED WITHOUT CHARGE 50

PART II. UNITED STATES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PART III. PRISONS AND PRISONERS 54

CHAPTER 301 GENERAL PROVISIONS 54

CHAPTER 303 BUREAU OF PRISONS 62

CHAPTER 305 COMMITEMENT AND TRANSFER 64

CHAPTER 306 TRANSFER TO OR FROM FOREIGN COUNTRIES 70

CHAPTER 307 EMPLOYMENT 92

CHAPTER 309 GOOD TIME ALLOWANCES 100

CHAPTER 311 PAROLE 104

CHAPTER 313 OFFENDERS WITH MENTAL DISEASE OR DEFFECT 138

目　　次

제 1 부　유　　엔

被拘禁者處遇最低基準規則

序　則 …… 3

제 1 편　通則 …… 5

제 2 편　特則 ……31

제 1 장　受刑者 ……31

제 2 장　精神病 및 精神異常의 受刑者……45

제 3 장　精神病 및 未決被拘禁者 ……45

제 4 장　民事上의 被拘禁者 ……47

제 5 장　嫌疑없이 逮捕 또는 拘禁된 者 ……51

제 2 부　미　　국

聯邦 矯正關係法令 (犯罪 및 刑事訴訟節次)

제 3 편　矯導所와 在所者 ……55

제301장　總則……55

제303장　矯正局……63

제305장　拘禁과 移送 ……65

제306장　外國으로의 또는 外國으로부터의 引渡 ……71

제307장　雇傭……93

제309조　善時控除 ……101

제311장　假釋放 ……105

제313장　精神的疾病 또는 缺陷을 지닌 犯罪人 ……139

PART IV. CORRECTION OF YOUTHFUL OFFENDERS 166

CHAPTER 401 GENERAL PROVISIONS 166

CHAPTER 403 JUVENILE DELIQUENCY 168

PART III. CANADA

PRISONS AND REFORMATORIES ACT

SHORT TITLE 188

INTERPRETATION 188

PART I. GENERAL 190

PART II. ONTARIO 214

PART III. QUEBEC 238

PART IV. NOVA SCOTIA 244

PART V. NEW BRUNSWICK 262

PART VI. PRINCE EDWARD ISLAND 276

PART VII. MANITOBA 280

PART VIII. BRITISH COLUMBIA 286

PART IX. NOVA SCOTA, NEW BRUNSWICK AND PRINCE EDWARD ISLAND 296

PART X. ALBERTA 306

제 4 편 少年犯罪人의 矯正 ……167
제401장 總則 ……167
제403장 少年犯罪 ……169

제 3 부 카 나 다

矯導所 및 感化院法

略式名稱 ……189
解釋 ……189
제 1 장 總則 ……191
제 2 장 온타리오 ……215
제 3 장 퀘 벡 ……239
제 4 장 노바 스코티아 ……245
제 5 장 뉴 부른스위크 ……263
제 6 장 프린스 애드워드 아일랜드 ……277
제 7 장 마니토바 ……281
제 8 장 브리티시 콜롬비아 ……287
제 9 장 노바스코티아, 뉴 부른스위크, 프린스 애드워드 아일랜드 ……297
제10장 알버타 ……307

제1부

엔진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The First United Nations Congress on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Treatment of Offenders resolved on 30 August 1955.

The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approved and adopted on 31 July 1957.

PRELIMINARY OBSERVATIONS
PART I. RULES OF GENERAL APPLICATION
PART II. RULES APPLICABLE TO SPECIAL CATEGORIES
- A. PRISONERS UNDER SENTENCE
- B. INSANE AND MENTALLY ABNORMAL PRISONERS
- C. PRISONERS UNDER ARREST OR AWAITING TRIAL
- D. CIVIL PRISONERS
- E. PERSONS ARRESTED OR DETAINED WITHOUT CHARGE

PRELIMINARY OBSERVATIONS

1. The following rules are not intended to describe in detail a model system of penal institutions. They seek only, on the basis of the general consensus of contemporary thought and the essential elements of the most adequate systems of today, to set out what is generally accepted as being good principle and practice in the treatment of prisoners and the management of institutions.

2. In view of the great variety of legal, social, economic and geographical conditions of the world, it is evident that not all of the rules are capable of application in all places and at all times. They should, however, serve to stimulate a constant endeavour to overcome practical difficulties in the way of their application, in the knowledge that they represent, as a whole, the minimum conditions which are accepted as suitable by the United Nations.

3. On the other hand, the rules cover a field in which thought is constantly

被拘禁者處遇最低基準規則

1955. 8. 30. 犯罪豫防 및 犯罪者處遇에 관한 제1회 유엔會議 決意
1957. 7. 31 유엔 經濟社會理事會 承認 採擇

序 則(제1조~제5조)
제1편 通則 (제6조~제55조)
제2편 特則
제1장 受刑者(제56조~제81조)
제2장 精神病 및 精神異常의 受刑者(제82조~제83조)
제3장 精神病 및 未決被拘禁者(제84조~제93조)
제4장 民事上의 被拘禁者(제94조)
제5장 嫌疑없이 逮捕 또는 拘禁된 者(제95조)

序 則

제1조 이 規則은 矯正施設의 모범적인 制度를 상세하게 기술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 규칙은 단지 現代의 一致된 思想과 가장 완비된 制度의 필수적인 要素에 바탕을 두어 被收容者의 處遇 및 施設의 管理에 대한 적절한 原理 및 實際라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것을 明示하려는 것이다.

제2조 세계에 있어서의 法律的·社會的·經濟的 및 地理的 條件이 매우 다양하므로 이 규칙의 모든 規定이 모든 場所에서 또는 모든 時期에 적용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이 규칙은 전체적으로 國際聯合에 의하여 적절한 것으로 승인된 最低條件을 표시하는 것임을 認識하여 이의 적용과정에서 實際上의 諸難觀을 극복하려는 지속적인 努力을 促求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제3조 이 규칙은 다른 한편으로는 思想이 끊임없이 發展하고 있는 分野를 대

developing. They are not intended to preclude experiment and practices, provided these are in harmony with the principles and seek to further the purposes which derive from the text of the rules as a whole. It will always be justifiable for the central prison administration to authorize departures from the rules in this spirit.

4. (1) Part I of the rules covers the general management of institutions, and is applicable to all categories of prisoners, criminal or civil, untried or convicted, including prisoners subject to "security measures" or corrective measures ordered by the judge.

(2) Part II contains rules applicable only to the special categories dealt with in each section. Nevertheless, the rules under section A, applicable to prisoners under sentence, shall be equally applicable to categories of prisoners dealt with in sections B, C and D, provided they do not conflict with the rules governing those categories and are for their benefit.

5. (1) The rules do not seek to regulate the management of institutions set aside for young persons such as Borstal institutions or correctional schools, but in general part I would be equally applicable in such institutions.

(2) The category of young prisoners should include at least all young persons who come within the jurisdiction of juvenile courts. As a rule, such young persons should not be sentenced to imprisonment.

PART I. RULES OF GENERAL APPLICATION

Basic principle

6. (1) The following rules shall be applied impartially. There shall be no discrimination on grounds of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

(2) On the other hand, it is necessary to respect the religious beliefs and moral precepts of the group to which a prisoner belongs.

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규칙은 전체적으로 이 규칙의 原文으로부터 抽出되는 原理에 부합되고 또 그 목적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이를 위한 여러가지 實驗과 慣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中央矯正當局이 이러한 精神에서 이 규칙에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항상 正當하다 할 것이다.

제4조 ① 이 規則 제1편은 施設의 일반적 管理에 관한 규정으로서 모든 종류의 피구금자, 즉 刑事被拘禁者 또는 民事被拘禁者, 未決被拘禁者 또는 旣決被拘禁者에게 적용되며, 이에는 '保安處分' 기타 判事가 명하는 矯正處遇에 부쳐진 모든 피구금자를 포함한다.

② 제2편은 그 各章에서 취급하는 특정한 被拘禁者에게만 적용되는 규칙이다. 다만 受刑者에게 적용되는 제1장의 규정은 제2장, 제3장 및 제4장에서 취급하는 각종의 피구금자에 대하여도 그 자들에 관한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또 그들에게 利益이 되는 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제5조 ① 이 규칙은 보스탈(BORSTAL)施設 또는 矯正院과 같은 소년을 위하여 마련된 施設의 管理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1편은 이와같은 시설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② 少年被拘禁者의 범주에는 적어도 少年法院의 管轄에 속하는 모든 소년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년에게는 원칙적으로 拘禁刑을 선고해서는 아니된다.

제1편 通 則

[基本原則]

제6조 ① 이 규칙은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피구금자의 人種, 피부색, 性別, 언어, 종교, 정치적이거나 그밖의 意見, 國籍, 사회적 신분, 재산, 出生 또는 그밖의 地位에 의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② 다른 한편 피구금자가 속하는 團體의 宗教的 信條 및 道德律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Register

7. (1) In every place where persons are imprisoned there shall be kept a bound registration book with numbered pages in which shall be entered in respect of each prisoner received:

(a) Information concerning his identity;

(b) The reasons for his commitment and the authority therefor;

(c) The day and hour of his admission and release.

(2) No person shall be received in an institution without a valid commitment order of which the details shall have been previously entered in the register.

Separation of categories

8. The different categories of prisoners shall be kept in separate institutions or parts of institutions taking account of their sex, age, criminal record, the legal reason for their detention and the necessities of their treatment. Thus,

(a) Men and women shall so far as possible be detained in separate institutions; in an institution which receives both men and women the whole of the premises allocated to women shall be entirely separate;

(b) Untried prisoners shall be kept separate from convicted prisoners;

(c) Persons imprisoned for debt and other civil prisoners shall be kept separate from persons imprisoned by reason of a criminal offence;

(d) Young prisoners shall be kept separate from adults.

Accommodation

9. (1) Where sleeping accommodation is in individual cells or rooms, each prisoner shall occupy by night a cell or room by himself. If for special reasons, such as temporary overcrowding, it becomes necessary for the central prison administration to make an exception to this rule, it is not desirable to have two prisoners in a cell or room.

(2) Where dormitories are used, they shall be occupied by prisoners carefully selected as being suitable to associate with one another in those conditions. There shall be regular supervision by night, in keeping with the nature of the institution.

[登 錄]

제7조 ① 피구금자를 收容하는 장소에는 항상 番号를 부쳐서 편철한 登錄簿를 비치하고 收容되는 각 피구금자에 관한 다음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1. 피구금자의 身上에 관한 情報
2. 收容의 理由 및 收容을 결정한 機関
3. 收容 및 釈放의 日時

② 사전에 登錄簿에 그 상세한 내용이 기재된 유효한 收容令狀에 의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施設에 수용되어서는 아니된다.

[被拘禁者의 分離]

제8조 相異한 種類의 피구금자는 그의 성별, 연령, 犯罪經歷, 拘禁의 法律的 事由 및 處遇上의 필요를 고려하여 분리된 施設 또는 施設內의 구역에 收容하여야 한다.

1. 남자와 여자는 가능한 한 分離된 施設에 拘禁하여야 한다. 남자와 여자를 함께 수용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女子用으로 割當된 設備의 전체를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
2. 未決拘禁者는 旣決被拘禁者와 분리하여 구금하여야 한다.
3. 債務로 인하여 수용된 자 및 그밖의 民事被拘禁者는 刑事被拘禁者와 분리하여 구금하여야 한다.
4. 소년은 성년과 분리하여 구금하여야 한다.

[居住設備]

제9조 ① 就寢設備가 獨居室 또는 단독실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각 피구금자는 야간에는 1명에게 독거실 또는 단독실이 제공되어야 한다. 일시적인 過剩拘禁 기타 특별한 이유로 中央矯正當局이 이 규정에 대한 예외를 둘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독거실 또는 단독실에 2명의 구금자를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② 混居室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상태에서 서로 접촉시켜도 좋은 被拘禁者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收容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施設의 性格에 따

10. All accommodation provided for the use of prisoners and in particular all sleeping accommodation shall meet all requirements of health, due regard being paid to climatic conditions and particularly to cubic content of air, minimum floor space, lighting, heating and ventilation.

11. In all places where prisoners are required to live or work,

(a) The windows shall be large enough to enable the prisoners to read or work by natural light, and shall be so constructed that they can allow the entrance of fresh air whether or not there is artificial ventilation;

(b) Artificial light shall be provided sufficient for the prisoners to read or work without injury to eyesight.

12. The sanitary installations shall be adequate to enable every prisoner to comply with the needs of nature when necessary and in a clean and decent manner.

13. Adequate bathing and shower installations shall be provided so that every prisoner may be enabled and required to have a bath or shower, at a temperature suitable to the climate, as frequently as necessary for general hygiene according to season and geographical region, but at least once a week in a temperate climate.

14. All parts of an institution regularly used by prisoners shall be properly maintained and kept scrupulously clean at all times.

Personal hygiene

15. Prisoners shall be required to keep their persons clean, and to this end they shall be provided with water and with such toilet articles as are necessary for health and cleanliness.

라 夜間에 정기적으로 監視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被拘禁者가 사용을 하도록 마련된 모든 설비, 특히 모든 就寢設備는 기후상태와 특히 공기의 容積, 최소건평, 照明, 난방 및 換氣에 관하여 적절한 考慮를 함으로써 健康維持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1조 피구금자가 起居하거나 作業을 하여야 하는 모든 장소에 있어서는

1. 창문은 피구금자가 自然의 光線으로 讀書하거나 作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넓어야 하며, 人工的인 通風設備의 유무에 불구하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人工에 의한 照明은 피구금자가 視力을 해치지 아니하고 독서하거나 작업하기 충분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12조 衛生設備는 모든 피구금자가 필요한 때 淸潔하고 端正하게 생리적 慾求를 볼 수 있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3조 적당한 목욕 및 샤워설비를 마련하여 모든 피구금자가 기후에 알맞는 温度로 季節과 地域에 따라 一般衛生上 필요한 만큼 자주 목욕시키고, 온대기후의 경우 적어도 每週 1회 이상 목욕을 하거나 샤워를 할 수 있도록 設備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 피구금자가 상시 사용하는 施設內의 모든 부분은 항상 적절히 管理하고 또 세부에 이르기까지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個人衛生]

제15조 피구금자에게는 자기의 身體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그들에게 물과 건강 및 청결을 위해 필요한 洗面用品을 급여하여야 한다.

16. In order that prisoners may maintain a good appearance compatible with their self-respect, facilities shall be provided for the proper care of the hair and beard, and men shall be enabled to shave regularly.

Clothing and bedding

17. (1) Every prisoner who is not allowed to wear his own clothing shall be provided with an outfit of clothing suitable for the climate and adequate to keep him in good health. Such clothing shall in no manner be degrading or humiliating.

(2) All clothing shall be clean and kept in proper condition. Underclothing shall be changed and washed as often as necessary for the maintenance of hygiene.

(3)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whenever a prisoner is removed outside the institution for an authorized purpose, he shall be allowed to wear his own clothing or other inconspicuous clothing.

18. If prisoners are allowed to wear their own clothing, arrangements shall be made on their admission to the institution to ensure that it shall be clean and fit for use.

19. Every prisoner shall, in accordance with local or national standards, be provided with a separate bed, and with separate and sufficient bedding which shall be clean when issued, kept in good order and changed often enough to ensure its cleanliness.

Food

20. (1) Every prisoner shall be provided by the administration at the usual hours with food of nutritional value adequate for health and strength, of wholesome quality and well prepared and served.

(2) Drinking water shall be available to every prisoner whenever he needs it.

제16조 피구금자가 그들의 自尊心을 지켜 그 容貌를 단정하게 할 수 있도록 두발 및 수염을 적당히 調髮할 수 있는 器具를 제공하여야 하며, 남자가 定期에 수염을 깎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衣類 및 寢具]

제17조 ① 자기의 衣類를 입도록 허용되지 아니하는 각 피구금자에 대하여는 기후에 알맞고 그 健康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衣類의 한 벌이 給與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의류는 결코 피구금자의 品位를 떨어뜨리거나 수치심을 주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② 모든 衣類는 청결하고 또 적절히 간수되어야 한다. 內衣는 衛生을 유지하기에 필요할 정도로 자주 교환되고 세탁되어야 한다.

③ 피구금자가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 許可된 目的을 위하여 施設의 밖으로 나갈 때에는 자기의 衣類 또는 너무 눈에 띄지 아니하는 衣類를 입도록 허가되어야 한다.

제18조 피구금자에게 자기가 衣類를 입도록 허용되는 경우에는 施設에 收容함에 있어서 그 衣類가 청결하고 사용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적당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모든 피구금자에게는 地方 또는 國家의 生活水準에 따라 獨立된 寢台와 충분한 專用寢具를 급여되어야 한다. 寢具는 지급될 때에 청결하여야 하며 항상 잘 정돈되어야 하고 또 그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주 교환되어야 한다.

[食 糧]

제20조 ① 모든 피구금자에게는 당국에 의하여 통상의 식사시간에 健康과 體力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營養價와 衛生的인 品質로서 잘 調理된 음식을 급여하여야 한다.

② 음료수는 모든 피구금자가 필요할 때에는 언제나 마실 수 있도록 마련되야

Exercise and sport

21. (1) Every prisoner who is not employed in out-door work shall have at least one hour of suitable exercise in the open air daily if the weather permits.

(2) Young prisoners, and others of suitable age and physique, shall receive physical and recreational training during the period of exercise. To this end space, installations and equipment should be provided.

Medical services

22. (1) At every institution there shall be available the services of at least one qualified medical officer who should have some knowledge of psychiatry. The medical services should be organized in close relationship to the general health administration of the community or nation. They shall include a psychiatric servcie for the diagnosis and, in proper cases, the treatment of states of mental abnormality.

(2) Sick prisoners who require specialist treatment shall be transferred to specialized institutions or to civil hospitals. Where hospital facilities are provided in an institution, their equipment, furnishings and pharmaceutical supplies shall be proper for the medical care and treatment of sick prisoners, and there shall be a staff of suitably trained officers.

(3) The services of a qualified dental officer shall be available to every prisoner.

23. (1) In women's institutions there shall be special accommodation for all necessary pre-natal and post-natal care and treatment. Arrangements shall be made wherever practicable for children to be born in a hospital outside the institution. If a child is born in prison, this fact shall not be mentioned in the birth certificate.

(2) Where nursing infants are allowed to remain in the institution with their mothers, provision shall be made for a nursery staffed by qualified persons, where the infants shall be placed when they are not in the care of their mothers.

한다.

[運動 및 競技]

제21조 ① 室外作業에 就役하지 아니하는 모든 피구금자에게는 날씨가 허락하면 매일 적어도 1시간정도 적당한 室外運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少年被拘禁者 및 적당한 연령 및 체격을 가진 그밖의 피구금자에게는 운동시간 중에 體育的 및 娛樂訓練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空間, 設備 및 用具를 마련하여야 한다.

[醫 療]

제22조 ① 모든 시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精神醫學의 意識을 가진 1명 이상의 資格있는 有資格 醫師의 醫療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醫療業務는 地域社會 또는 국가의 一般保健行政과의 긴밀한 관계하에 組織되어야 한다. 醫療業務에는 精神異常의 診察 및 적합한 경우에 있어서 精神異常 상태의 治療를 포함되어야 한다.

② 專門醫師의 治療를 요하는 疾病을 가진 피구금자는 이를 專門施設 또는 一般病院에 移送하여야 한다. 病院設備가 시설내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器具, 備品 및 醫藥品은 병자의 看護 및 治療에 적합한 것이여야 하며, 또 거기에는 상당한 教育訓練을 받은 職員이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③ 有資格을 가진 齒科意思의 치료는 모든 피구금자에게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제23조 ① 女子施設에 있어서는 모든 産前 및 産後의 看護 및 處置를 위하여 필요한 특별한 設備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에는 항상 시설밖인 병원에서 分娩할 수 있도록 措置를 講究하여야 한다. 아이가 시설내에서 태어난 경우 이 사실을 出生證明書에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유아가 모친과 함께 시설내에 있도록 하는 것이 許容될 경우 母親이 돌볼 수 없는 때에는 그 乳兒를 맡아서 돌보기 위하여 자격있는 직원이 근무하는 乳兒室을 설치하여야 한다.

24. The medical officer shall see and examine every prisoner as soon as possible after his admission and thereafter as necessary, with a view particularly to the discovery of physical or mental illness and the taking of all necessary measures; the segregation of prisoners suspected of infectious or contagious conditions; the noting of physical or mental defects which might hamper rehabilitation, and the determination of the physical capacity of every prisoner for work.

25. (1) The medical officer shall have the care of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the prisoners and should daily see all sick prisoners, all who complain of illness, and any prisoner to whom his attention is specially directed.

(2) The medical officer shall report to the director whenever he considers that a prisoner's physical or mental health has been or will be injuriously affected by continued imprisonment or by any condition of imprisonment.

26. (1) The medical officer shall regularly inspect and advise the director upon:

(a) The quantity, quality, preparation and service of food;

(b) The hygiene and cleanliness of the institution and the prisoners;

(c) The sanitation, heating, lighting and ventilation of the institution;

(d) The suitability and cleanlines of the prisoners' clothing and bedding;

(e) The observance of the rules concerning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 in cases where there is no technical personnel in charge of these activities.

(2) The director shall take into consideration the reports and advice that the medical officer submits according to rules 25 (2) and 26 and, in case he concurs with the recommendations made, shall take immediate steps to give effect to those recommendations; if they are not within his competence or if he does not concur with them, he shall immediately submit his own report and the advice of the medical officer to higher authority.

제24조 醫師는 모든 피구금자를 入所 후 가능한 한 조속히 또 그 이후에도 필요한 때에 診察하여야 한다. 이 診察은 특히 身體的 또는 精神的 疾病을 발견하여 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接觸傳染病 또는 그밖의 傳染病의 의심이 있는 피구금자를 隔離하며 社會復歸에 방해가 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缺陷을 명백히 하고 作業에 대한 피구금자의 身體的 能力을 결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5조 ① 醫師는 피구금자의 身體的 및 精神的인 健康에 유의하여야 하며 또 매일 病者와 疾病을 호소하는 자 및 특히 注意가 요구되는 자를 모두 診察하여야 한다.

② 의사는 피구금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인 건강이 계속된 拘禁 또는 여하한 拘禁狀態에 의하여 損傷되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때마다 所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제26조 ① 醫師는 정기적으로 檢査를 행하고 다음 각호에 대하여 시설의 장에게 助言하여야 한다.

1. 食糧의 分量, 質, 調理 및 配食方法
2. 施設 및 被拘禁者의 衛生 및 淸潔
3. 施設의 衛生管理, 暖房, 照明 및 通風
4. 被拘禁者의 衣類 및 寢具의 適合要件 및 淸潔
5. 體育 및 競技를 담당하는 專門職員이 없는 경우에 이에 관한 規則의 遵守

② 시설의 醫師가 제25조 제2항,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報告 및 助言을 참작하여야 한다. 시설의 장은 醫師의 提案과 같은 意見일 경우에는 그 提案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그 提案이 자기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아닌 경우 또는 제안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설의 장은 자기의 報告와 의사의 助言을 즉시 上級官庁에 보고하여야 한다.

Discipline and punishment

27. Discipline and order shall be maintained with firmness, but with no more restriction than is necessary for safe custody and well-ordered community life.

28. (1) No prisoner shall be employed, in the service of the institution, in any disciplinary capacity.

(2) This rule shall not, however, impede the proper functioning of systems based on self-government, under which specified social, educational or sports activities or responsibilities are entrusted, under supervision, to prisoners who are formed into groups for the purposes of treatment.

29. The following shall always be determined by the law or by the regulation of the competent administrative authority:

(a) Conduct constituting a disciplinary offence;

(b) The types and duration of punishment which may be inflicted;

(c) The authority competent to impose such punishment.

30. (1) No prisoner shall be punished except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such law or regulation, and never twice for the same offence.

(2) No prisoner shall be punished unless he has been informed of the offence alleged against him and given a proper opportunity of presenting his defence.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conduct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case.

(3) Where necessary and practicable the prisoner shall be allowed to make his defence through an interpreter.

31. Corporal punishment, punishment by placing in a dark cell, and all cruel, inhuman or degrading punishments shall be completely prohibited as punishments for disciplinary offences.

32. (1) Punishment by close confinement or reduction of diet shall never

[規律 및 懲罰]

제27조 規律 및 秩序는 엄정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制限은 拘禁을 확보하고 秩序있는 所內生活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제28조 ① 어떠한 被拘禁者라도 施設의 수형 중에 規律의 維持에 관여하는 어떠한 地位도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그러나 이 규칙은 被拘禁者의 自治에 기초를 두는 制度의 적당한 활용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피구금자의 自治에 기초를 두는 制度란 지정한 社會的·敎育的 또는 身體的인 활동 또는 그 책임을 職員의 監督下에 處遇目的을 위하여 그룹으로 분류된 피구금자들에게 맡기는 것이다.

제29조 다음 각호의 사항은 항상 法律 또는 權限있는 行政官庁의 規則으로 정하여야 한다.

1. 規律違反을 구성하는 行爲
2. 부과할 懲罰의 종류 및 그 期間
3. 懲罰權을 갖는 機関

제30조 ① 어떠한 피구금자도 위와같은 法律 또는 規則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懲罰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위반에 대해 二重으로 징벌받지 아니한다.

② 피구금자는 자신에 대하여 주장되는 違反을 通告받고 이에 대한 抗辯할 적절한 기회를 부여받지 아니하고서는 懲罰받지 아니한다. 권한있는 기관이 사건의 철저한 심리를 행한다.

③ 이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수용자는 通譯者를 통해 자신의 抗辯을 하도록 허용된다.

제31조 體刑, 암실에 수용하는 懲罰 및 모든 잔인하거나 非人間的인 또는 불명예스러운 징벌은 規律違反에 대한 징벌로서 철저히 금지되어야 한다.

제32조 ① 嚴正獨居拘禁 또는 減食의 懲罰은 醫師가 그 피구금자를 診察하고

be inflicted unless the medical officer has examined the prisoner and certified in writing that he is fit to sustain it.

(2) The same shall apply to any other punishment that may be prejudicial to the physical or mental health of a prisoner. In no case may such punishment be contrary to or depart from the principle stated in rule 31.

(3) The medical officer shall visit daily prisoners undergoing such punishments and shall advise the director if he considers the termination or alteration of the punishment necessary on grounds of physical or mental health.

Instruments of restraint

33. Instruments of restraint, such as handcuffs, chains, irons and straitjackets, shall never be applied as a punishment. Furthermore, chains or irons shall not be used as restraints. Other instruments of restraint shall not be used except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 As a precaution against escape during a transfer, provided that they shall be removed when the prisoner appears before a judicial or administrative authority;

(b) On medical grounds by direction of the medical officer;

(c) By order of the director, if other methods of control fail, in order to prevent a prisoner from injuring himself or others or from damaging property; in such instances the director shall at once consult the medical officer and report to the higher administrative authority.

34. The patterns and manner of use of instruments of restraint shall be decided by the central prison administration. Such instruments must not be applied for any longer time than is strictly necessary.

Information to and complaints by prisoners

35. (1) Every prisoner on admission shall be provided with written information about the regulations governing the treatment of prisoners of his category, the disciplinary requirements of the institution, the authorized methods of seeking information and making complaints, and all such other matters as are

서면으로 그가 그러한 징벌에 견딜 수 있음을 證明한 경우가 아니면 부과해서는 아니된다.

② 피구금자의 身體的 또는 精神的인 健康을 침해하는 그밖의 懲罰에 있어서도 그러한 징벌은 제31조에 규정된 原則에 반하거나 이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③ 醫師는 이러한 懲罰을 받고 있는 피구금자를 매일 診察하여야 하며, 신체적 또는 精神的인 健康上의 이유로 그 懲罰의 執行을 정지시키거나 다른 징벌로 代替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所長에게 그 취지를 助言하여야 한다.

제33조 手匣, 連鎖, 각종 枷 및 拘束服 등과 같은 戒具는 懲罰의 手段으로서 결코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특히 連鎖, 각종 枷는 계구로서도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밖의 戒具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① 護送中 逃走에 대한 豫防策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司法當局 또는 行政當局의 面前에 설 때에는 戒具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醫師의 지시에 따른 醫療上의 이유가 있는 경우

③ 피구금자가 자기 또는 타인에게 侵害를 가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수단으로써는 그 목적을 達成할 수 없을 때에 소장의 명령이 있는 경우 소장은 지체없이 醫師에게 연락하고 또 上級官庁에 報告하여야 한다.

제34조 戒具의 制式 및 그 사용방법은 中央矯正當局에 의하여 정하여져야 한다. 이러한 戒具는 엄격히 필요한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被拘禁者에게 주는 情報 및 그의 不服申請]

제35조 ① 모든 피구금자는 收容에 있어서 자기가 소속하는 部類의 피구금자 處遇에 관한 規則, 施設의 規律을 위하여 요청되는 사항, 情報를 구하고 不服申請을 하기 위하여 許容되고 있는 방법, 기타 자기의 權利와 義務를 알고 또

necessary to enable him to understand both his rights and his obligations and to adapt himself to the life of the institution.

(2) If a prisoner is illiterate, the aforesaid information shall be conveyed to him orally.

36. (1) Every prisoner shall have the opportunity each week day of making requests or complaints to the director of the institution or the officer authorized to represent him.

(2) It shall be possible to make requests or complaints to the inspector of prisons during his inspection. The prisoner shall have the opportunity to talk to the inspector or to any other inspecting officer without the director or other members of the staff being present.

(3) Every prisoner shall be allowed to make a request or complaint, without censorship as to substance but in proper form, to the central prison administration, the judicial authority or other proper authorities through approved channels.

(4) Unless it is evidently frivolous or groundless, every request or complaint shall be promptly dealt with and replied to without undue delay.

Contact with the outside world

37. Prisoners shall be allowed under necessary supervision to communicate with their family and reputable friends at regular intervals, both by correspondence and by receiving visits.

38. (1) Prisoners who are foreign nationals shall be allowed reasonable facilities to communicate with the diplomatic and consular representatives of the State to which they belong.

(2) Prisoners who are nationals of States without diplomatic or consular representation in the country and refugees or stateless persons shall be allowed similar facilities to communicate with the diplomatic representative of the State which takes charge of their interests or any national or international authority whose task it is to protect such persons.

39. Prisoners shall be kept informed regularly of the more important items of news by the reading of newspapers, periodicals or special institutional publica-

施設의 생활에 順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書面에 의한 情報를 제공받아야 한다.

② 피구금자가 문자를 解得할 수 없을 때에는 前項의 情報는 口述로 알려 주어야 한다.

제36조 ① 모든 피구금자는 平日에 所長 또는 그를 代理하는 權限을 가진 職員에게 建議 또는 不服申請을 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② 피구금자는 矯導所 監査官의 監査中에 감사관에게 要求 또는 不服申請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피구금자는 所長 또는 기타 職員의 참여없이 監督官 또는 施設을 감독하는 자와 面談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③ 모든 피구금자는 許可된 方法에 따라 中央矯正當局, 司法官庁 또는 기타 관청에 대하여 적합한 形式으로 그 내용의 檢閱을 받지 아니하고 要求 또는 不服申請이 許容되어야 한다.

④ 모든 要求 또는 不服은 그것이 명백하게 사소한 것이거나 근거없는 것이 아닌 한 즉시 處理되고 또 지체됨이 없이 回答되어져야 한다.

[外部와의 交通]

제37조 피구금자는 필요한 監督下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의 家族 또는 믿을 만한 친구와 通信 또는 接見에 의하여 交通하는 것이 許可되어야 한다.

제38조 ① 外國人인 피구금자는 그 소속 國家의 外交代表 또는 領事와 交通하기 위하여 상당한 便宜가 허용되어야 한다.

② 그 나라에 外交代表나 領事를 두지 아니하는 국가의 國籍을 가진 피구금자 및 亡命者 또는 無國籍者에게는 이들의 利益을 대변하는 국가의 外交代表 또는 이러한 자의 保護를 임무로 하는 國家機關 또는 國際機關과 交通할 수 있는 前項과 동일한 편의가 허용되어야 한다.

제39조 피구금자는 신문, 정기간행물 또는 施設의 特別刊行物을 閱讀하고 라디오 放送을 청취하며 講演을 듣거나 당국의 許可 또는 그 監督하는 그밖의

tions, by hearing wireless transmissions, by lectures or by any similar means as authorized or controlled by the administration.

Books

40. Every institution shall have a library for the use of all categories of prisoners, adequately stocked with both recreational and instructional books, and prisoners shall be encouraged to make full use of it.

Religion

41. (1) If the institution contains a sufficient number of prisoners of the same religion, a qualified representative of that religion shall be appointed or approved. If the number of prisoners justifies it and conditions permit, the arrangement should be on a full-time basis.

(2) A qualified representative appointed or approved under paragraph (1) shall be allowed to hold regular services and to pay pastoral visits in private to prisoners of his religion at proper times.

(3) Access to a qualified representative of any religion shall not be refused to any prisoner. On the other hand, if any prisoner should object to a visit of any religious representative, his attitude shall be fully respected.

42. So far as practicable, every prisoner shall be allowed to satisfy the needs of his religious life by attending the services provided in the institution and having in his possession the books of religious observance and instruction of his denomination.

Retention of prisoners' property

43. (1) All money, valuables, clothing and other effects belonging to a prisoner which under the regulations of the institution he is not allowed to retain shall on his admission to the institution be placed in safe custody. An inventory thereof shall be signed by the prisoner. Steps shall be taken to keep them in good condition.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비교적 중요한 뉴스를 定期的으로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圖 書]

제40조 모든 施設은 娛樂的·敎育的인 圖書를 충분히 비치하고 모든 部類의 피구금자가 이용할 수 있는 圖書室을 갖추어야 하며 피구금자들이 이를 충분히 이용하도록 勸奬하여야 한다.

[宗 敎]

제41조 ① 시설 내에 同一宗敎를 가진 피구금자가 상당수 있는 경우에는 資格을 가진 그 宗敎의 대표자가 任命되거나 承認되어야 한다. 피구금자의 人員數로 보아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또 여건이 許諾하는 경우 그 배치는 常勤制로 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승인된 有資格代表者는 정기적으로 宗敎儀式을 거행하고 또 自己宗敎의 피구금자를 수시로 訪問하여 敎誨를 시행하도록 許可되어야 한다.

③ 어떠한 宗敎에 대하여도 피구금자는 그 有資格代表者에게 가까이 接近하는 일을 거부당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한편 피구금자가 敎役者의 訪問을 거절할 때에도 그의 態度는 충분히 尊重되어야 한다.

제42조 모든 피구금자는 실제적으로 가능한 한 施設內에서 거행되는 종교행사에 참석하고 또 自己宗敎의 戒律書 및 敎訓書를 소지함으로써 宗敎生活의 欲求를 충족할 수 있도록 許容되어야 한다.

[被拘禁者의 所有物의 保管]

제43조 施設의 規則에 의하여 피구금자가 소지하는 것이 許可되지 아니하는 물건으로서 그의 所有에 속하는 모든 金錢, 有價物, 衣類 및 기타의 물건은 入所할 당시에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保管物에 관하여는 明細書를 작성하고 이에 피구금자의 署名을 받아야 한다. 保管物을 양호한 狀態에

(2) On the release of the prisoner all such articles and money shall be returned to him except in so far as he has been authorized to spend money or send any such property out of the institution, or it has been found necessary on hygienic grounds to destroy any article of clothing. The prisoner shall sign a receipt for the articles and money returned to him.

(3) Any money or effects received for a prisoner from outside shall be treated in the same way.

(4) If a prisoner brings in any drugs or medicine, the medical officer shall decide what use shall be made of them.

Notification of death, illness, transfer, etc.

44. (1) Upon the death or serious illness of, or serious injury to a prisoner, or his removal to an institution for the treatment of mental affections, the director shall at once inform the spouse, if the prisoner is married, or the nearest relative and shall in any event inform any other person previously designated by the prisoner.

(2) A prisoner shall be informed at once of the death or serious illness of any near relative. In case of the critical illness of a near relative, the prisoner should be authorized, whenever circumstances allow, to go to his bedside either under escort or alone.

(3) Every prisoner shall have the right to inform at once his family of his imprisonment or his transfer to another institution.

Removal of prisoners

45. (1) When prisoners are being removed to or from an institution, they shall be exposed to public view as little as possible, and proper safeguards shall be adopted to protect them from insult, curiosity and publicity in any form.

(2) The transport of prisoners in conveyances with inadequate ventilation or light, or in any way which would subject them to unnecessary physical hardship, shall be prohibited.

두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② 이와같은 모든 保管金品은 피구금자를 釋放할 때 그에게 返還되어야 한다. 다만 석방 전에 金錢을 사용하거나 保管物品을 시설밖으로 送付하는 것이 許可된 경우 또는 衛生上의 이유로 衣類를 廢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구금자는 返還을 받은 金品에 관하여 領收證에 署名하여야 한다.

③ 피구금자가 外部로부터 받은 金錢 또는 物品에 관하여도 前項과 동일한 방법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④ 피구금자가 藥種이나 藥劑를 가지고 수용된 경우에는 醫務官이 그 사용을 決定하여야 한다.

[死亡, 疾患, 移送 등에 관한 通知]

제44조 ① 所長은 피구금자가 死亡또는 重病이나 重傷을 입은 경우 또는 精神病 治療施設로 移送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配偶者(피구금자가 旣婚인 때), 가장 가까운 親族 또는 어떤 경우든지 피구금자가 사전에 指名한 사람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② 피구금자는 그 近親者의 死亡 또는 重病에 대하여 지체없이 통지를 받아야 한다. 近親者가 危篤한 경우 피구금자는 事情이 許諾하는 한 戒護下에 또는 單獨으로 그 問病갈 수 있도록 許可되어야 한다.

③ 모든 피구금자는 施設에 收容되거나 다른 施設로 移送될 때 이를 自己家族에게 즉시 通知할 수 있는 權利를 가져야 한다.

[被拘禁者의 移送]

제45조 ① 피구금자를 어느 시설에서 다른 施設로 移送할 때에는 가급적 公衆의 面前에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들을 또 어떤 형태의 侮辱, 好奇心 및 評判으로부터도 保護하기 위하여 적절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② 피구금자를 通風 또는 照明이 충분치 아니하는 交通手段에 의하거나 肉體的인 苦痛을 주기 쉬운 방법으로 移送하는 것은 禁止되어야 한다.

(3) The transport of prisoners shall be carried out at the expense of the administration and equal conditions shall obtain for all of them.

Institutional personnel

46. (1) The prison administration, shall provide for the careful selection of every grade of the personnel, since it is on their integrity, humanity, professional capacity and personal suitability for the work that the proper administration of the institutions depends.

(2) The prison administration shall constantly seek to awaken and maintain in the minds both of the personnel and of the public the conviction that this work is a social service of great importance, and to this end all appropriate means of informing the public should be used.

(3) To secure the foregoing ends, personnel shall be appointed on a full-time basis as professional prison officers and have civil service status with security of tenure subject only to good conduct, efficiency and physical fitness. Salaries shall be adequate to attract and retain suitable men and women; employment benefits and conditions of service shall be favorable in view of the exacting nature of the work.

47. (1) The personnel shall possess an adequate standard of education and intelligence.

(2) Before entering on duty, the personnel shall be given a course of training in their general and specific duties and be required to pass theoretical and practical tests.

(3) After entering on duty and during their career, the personnel shall maintain and improve their knowledge and professional capacity by attending courses of in-service training to be organized at suitable intervals.

48. All members of the personnel shall at all times so conduct themselves and perform their duties as to influence the prisoners for good by their examples and to command their respect.

49. (1) So far as possible, the personnel shall include a sufficient number of

③ 피구금자의 移送은 行政廳의 費用으로 행하여져야 하며 또 모든 피구금자에 대하여 균등한 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施設職員]

제46조 ① 施設의 적절한 運營管理는 직원의 誠實, 人間性, 勤務能力 및 職務에 대한 개인적인 適應性에 달려있는 것이므로 矯正當局은 각 階級의 職員選任에 있어서 신중한 配慮를 하여야 한다.

② 矯正當局은 끊임없이 職員과 一般公衆 모두의 마음 속에 矯正이 매우 중요한 社會的 奉仕이라는 인식을 일깨워 주고 이를 간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 목적을 위하여 一般公衆에게 알리기 위한 적당한 모든 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③ 이러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직원은 常勤의 職業矯正公務員으로서 任用되어야 하고 또 선량한 品行, 能力 및 健康만을 조건으로 하여 그 地位가 보장되는 공무원의 身分을 가져야 한다. 職員의 俸給은 적당한 男女家族을 부양하고 또 그 職業에 오래 머물게 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직업상의 福利 및 勤務條件은 職務의 특수성에 비추어 바람직한 것이어야 한다.

제47조 ① 職員은 상당한 水準의 敎育과 知識을 갖고 있어야 한다.

② 직원은 그 任務를 부여받기 전에 일반적·특수적인 任務에 관하여 硏修를 받고 또 理論 및 實務試驗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職員은 임무를 부여받은 이후에도 在職中 적당한 기간을 두고 행하여지는 職務敎育課程에 참가함으로써 자기의 知識 및 職務能力을 유지하고 향상시켜야 한다.

제48조 모든 職員은 模範的 行動을 통하여 피구금자에게 좋은 感化를 주고 그들의 尊敬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行動하고 任務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9조 ① 직원은 가능한 한 職員 중에 精神科醫師, 心理學者, 社會事業家,

specialists such as psychiatrists, psychologists, social workers, teachers and trade instructors.

(2) The services of social workers, teachers and trade instructors shall be secured on a permanent basis, without thereby excluding part-time or voluntary workers.

50. (1) The director of an institution should be adequately qualified for his task by character, administrative ability, suitable training and experience.

(2) He shall devote his entire time to his official duties and shall not be appointed on a part-time basis.

(3) He shall reside on the premises of the institution or in its immediate vicinity.

(4) When two or more institutions are under the authority of one director, be shall visit each of them at frequent intervals. A responsible resident official shall be in charge of each of these institutions.

51. (1) The director, his deputy, and the majority of the other personnel of the institution shall be able to speak the language of the greatest number of prisoners, or a language understood by the greatest number of them.

(2) Whenever necessary, the services of an interpreter shall be used.

52. (1) In institutions which are large enough to require the services of one or more full-time medical officers, at least one of them shall reside on the premises of the institution or in its immediate vicinity.

(2) In other institutions the medical officer shall visit daily and shall reside near enough to be able to attend without delay in cases of urgency.

53. (1) In an institution for both men and women, the part of the institution set aside for women shall be under the authority of a responsible woman officer who shall have the custody of the keys of all that part of the institution.

(2) No male member of the staff shall enter the part of the institution set aside for women unless accompanied by a woman officer.

(3) Women prisoners shall be attended and supervised only by women officers. This does not, however, preclude male members of the staff, par-

敎師 및 職業講師 등과 같은 專門人力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② 社會事業家, 敎師 및 職業講師의 업무는 常任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時間制 또는 自願奉仕者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제50조 ① 所長은 人格, 行政能力, 적절한 訓練 및 經驗에 비추어 그 職務를 감당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라야 한다.

② 所長은 자기의 全時間을 그 公的任務에 바쳐야 하며 非常勤職으로 任命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所長은 施設의 構內 또는 인접한 장소에 居住하여야 한다.

④ 2個所 이상의 施設이 한 사람의 所長 所管下에 있는 경우에는 그는 각 施設을 빈번히 巡視하여야 한다. 이들 각 施設은 責任있는 居住職員에 의하여 管理되어야 한다.

제51조 ① 所長, 그 代理者 및 기타의 職員은 최다수의 被拘禁者의 言語 또는 그들 최다수에 의하여 理解되는 言語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라도 通譯官의 통역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52조 ① 1명 또는 그 이상의 常勤醫務官의 勤務를 필요로 할만큼 규모가 큰 施設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들중 1명은 施設의 構內 또는 그 인접한 장소에 居住하여야 한다.

② 기타의 施設에 있어서는 醫務官이 매일 施設을 방문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출근할 수 있는 인접한 곳에 居住하여야 한다.

제53조 ① 남녀 피수용자를 함께 收容하고 있는 施設에 있어서는 女子區域은 責任있는 女子職員의 管理下에 두어야 하며, 女子區域의 모든 열쇠는 그 職員이 保管하여야 한다.

② 男子職員은 女子職員을 同伴하지 아니하는 한 女子區域에 들어갈 수 없다.

③ 여자피구금자는 女子職員에 의하여서만 保護되고 監督되어야 한다. 다만 男子職員, 특히 醫師 및 敎師가 여자시설 또는 여자구역에서 專門的인 職務를

ticularly doctors and teachers, from carying out their professional duties in institutions or parts of institutions set aside for women.

54. (1) Officers of the institutions shall not, in their relations with the prisoners, use force except in self-defence or in cases of attempted escape, or active or passive physical resistance to an order based on law or regulations. Officers who have recourse to force must use no more than is strictly necessary and must report the incident immediately to the director of the institution.

(2) Prison officers shall be given special physical training to enable them to restrain aggressive prisoners.

(3) Except in special circumstances, staff performing duties which bring them into direct contact with prisoners should not be armed. Furthermore, staff should in no circumstances be provided with arms unless they have been trained in their use.

Inspection

55. There shall be a regular inspection of penal institutions and services by qualified and experienced inspectors appointed by a competent authority. Their task shall be in particular to ensure that these institutions are administered in accordance with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and with a view to bringing about the objectives of penal and correctional services.

PART II. RULES APPLICABLE TO SPECIAL CATEGORIES

A. PRISONERS UNDER SENTENCE

Guiding principles

56. The guiding principles hereafter are intended to show the spirit in which penal institutions should be administered and the purposes at whith they should aim, in accordance with the declaration made under Preliminary Observation 1 of the present text.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 ① 施設의 직원은 피구금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正當防衛 또는 逃走企圖, 法令에 의한 命令에 대하여 作爲나 不作爲의 身体的 抵抗을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實力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職員이 實力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엄격히 필요한 限度를 넘어서 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일은 즉시 시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矯正職員은 난폭한 피구금자를 制止할 수 있도록 특별한 身體的 訓練을 받아야 한다.

③ 職務上 피구금자와 직접 接觸하는 職員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武器를 휴대하여서는 아니된다. 더구나 武器의 사용에 관한 訓練을 받지 아니한 직원에게는 여하한 경우에도 武器를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監 察]

제55조 矯正施設 및 矯正業務에 관하여는 權限있는 官廳에 의하여 임명된 資格과 經驗이 있는 監督官이 정기적인 監督을 행하여야 한다. 監督官의 임무는 특히 이러한 施設이 現行法令에 준거하여 刑罰執行 및 矯正業務의 諸目的을 달성한다는 관점에서 管理運營되고 있는지를 確認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2편 特 則

제1장 受 刑 者

[指導 原理]

제56조 다음에 揭記한 指導原理는 이 規則의 序則 제1조에 선언된 바에 따라서 矯正施設의 運營精神 및 行刑施設이 志向하여야 할 목적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57. Imprisonment and other measures which result in cutting off an offender from the outside world are afflictive by the very fact of taking from the person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by depriving him of his liberty. Therefore the prison system shall not, except as incidental to justifiable segregation or the maintenance of discipline, aggravate the suffering inherent in such a situation.

58. The purpose and justification of a sentence of imprisonment or a similar measure deprivative of liberty is ultimately to protect society against crime. This end can only be achieved if the period of imprisonment is used to ensure, so far as possible, that upon his return to society the offender is not only willing but able to lead a law-abiding and self-supporting life.

59. To this end, the institution should utilize all the remedial, educational, moral, spiritual and other forces and forms of assistance which are appropriate and available, and should seek to apply them according to the individual treatment needs of the prisoners.

60. (1) The regime of the institution should seek to minimize any differences between prison life and life at liberty which tend to lessen the responsibility of the prisoners or the respect due to their dignity as human beings.

(2) Before the completion of the sentence, it is desirable that the necessary steps be taken to ensure for the prisoner a gradual return to life in society. This aim may be achieved, depending on the case, by a pre-release regime organized in the same institution or in another appropriate institution, or by release on trial under some kind of supervision which must not be entrusted to the police but should be combined with effective social aid.

61. The treatment of prisoners should emphasize not their exclusion from the community, but their continuing part in it. Community agencies should, therefore, be enlisted wherever possible to assist the staff of the institution in the task of social rehabilitation of the prisoners. There should be in connexion with every institution social workers charged with the duty of maintaining and

제57조 拘禁刑 및 犯罪者를 外部로부터 隔離시키는 그밖의 處分은 犯罪者의 自由를 박탈함으로써 自己決定의 權利를 빼앗는 것이며 바로 이 사실이야말로 그들에게 苦痛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矯正制度는 정당한 理由에 근거한 分離拘禁 또는 規律維持를 수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같은 상태에 있는 고유한 苦痛을 그 이상으로 증대시켜서는 아니된다.

제58조 拘禁刑 또는 이와 유사한 自由剝奪處分의 目的 및 理由는 궁극적으로는 社會를 犯罪로부터 保護함에 있다. 이 목적은 범죄자가 社會에 復歸한 후 遵法的이고 自立的인 생활을 스스로 意慾할 뿐 아니라 그러한 능력을 가지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그 拘禁期間을 가능한 한 이용하여야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

제59조 이 목적을 위하여 施設은 治療的·敎育的·道德的·精神的 및 그밖의 적절하고 유효한 여러 援助手段을 모두 이용하여야 하며 또한 受刑者의 個別的 處遇上의 필요에 따라서 이들을 適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0조 ① 施設의 管理制度는 수형자의 責任觀念을 薄弱케 하거나 人間尊嚴性에 대한 尊敬心을 減少시킬만한 어떠한 收容生活과 自由生活間의 여하한 差異도 最小化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受刑者를 서서히 社會生活에 復歸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刑期終了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目的은 경우에 따라 같은 施設 또는 다른 적당한 施設에 설치된 釋放準備制度 또는 어떤 종류의 監督下에서 시험적으로 행하는 釋放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다. 이 경우에 監督은 警察에게 맡겨져서는 아니되고 유효한 社會的 援助와 결부되어야 한다.

제61조 受刑者의 處遇는 社會로부터의 排除가 아니라 社會와의 계속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社會의 여러 機關은 受刑者의 社會復歸事業에 관하여 가능한 한 언제든지 施設의 職員을 도울 수 있도록 참여시키도록 해야 한다. 受刑者와 그 家族 및 유용한 社會의 여러機關 사이의 모든 바

improving all desirable relations of a prisoner with his family and with valuable social agencies. Steps should be taken to safeguard, to the maximum extent compatible with the law and the sentence, the rights relating to civil interests, social security rights and other social benefits of prisoners.

62. The medical services of the institution shall seek to detect and shall treat any physical or mental illnesses or defects which may hamper a prisoner's rehabilitation. All necessary medical, surgical and psychiatric services shall be provided to that end.

63. (1) The fulfilment of these principles requires individualization of treatment and for this purpose a flexible system of classifying prisoners in groups; it is therefore desirable that such groups should be distributed in separate institutions suitable for the treatment of each group.

(2) These institutions need not provide the same degree of security for every group. It is desirable to provide varying degrees of security according to the needs of different groups. Open institutions, by the very fact that they provide no physical security against escape but rely on the self-discipline of the inmates, provide the conditions most favourable to rehabilitation for carefully selected prisoners.

(3) It is desirable that the number of prisoners in closed institutions should not be so large that the individualization of treatment is hindered. In some countries it is considered that the population of such institutions should not exceed five hundred. In open institutions the population should be as small as possible.

(4) On the other hand, it is undesirable to maintain prisons which are so small that proper facilities cannot be provided.

64. The duty of society does not end with a prisoner's release. There should, therefore, be governmental or private agencies capable of lending the released prisoner efficient after-care directed towards the lessening of prejudice against him and towards his social rehabilitation.

람직한 關係를 유지하고 發展시키는 것을 임무로 하는 社會事業家가 각 施設과 접촉을 하여야 한다. 法律 및 判決에 反하지 아니하는 한 최대한도로 수형자의 私法上의 利益에 관한 權利, 社會保障上의 權利 및 그밖의 社會的 利益을 保全하기 위한 필요한 措置가 취해져야 한다.

제62조 施設의 醫療機關은 受刑者의 社會復歸에 방해가 되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인 疾病 또는 缺陷을 발견하도록 노력하고 발견하였을 때에는 治療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모든 필요한 內科, 外科, 및 精神科의 醫療施術이 베풀어져야 한다.

제63조 ① 이들 諸原則을 수행함에는 處遇의 個別化와 이 목적을 위하여 피구금자를 그룹으로 분류하는 彈力性있는 制度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그룹은 그 각각의 處遇에 적합하도록 分離된 施設에 收容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이들 施設은 모든 그룹에 대하여 동일한 정도의 警備를 할 것이 아니라 각 그룹의 必要性에 따라 다양한 정도의 警備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開放施設은 逃走에 대한 物的 警備手段을 가지지 아니하고 被收容者의 自律을 신뢰하고 있다는 바로 그 점에서 신중하게 선발된 受刑者의 社會復歸를 위하여 가장 유리한 條件을 제공해 준다.

③ 閉鎖施設에 있어서의 受刑者의 数는 個別處遇處遇를 방해할 정도로 많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와같은 施設의 收容人員은 500명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開放施設의 收容人員은 가능한 한 적어야 한다.

④ 다른 한편 적당한 設備를 마련할 수 없을 만큼 작은 矯導所를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아니하다.

제64조 社會의 義務는 受刑者의 釋放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釋放者에 대한 偏見을 줄이고 그들의 社會復歸를 돕기 위하여 유효한 更生保護를 행할 수 있는 公的 또는 私的 機關이 있어야 한다.

Treatment

65. The treatment of persons sentenced to imprisonment or a similar measure shall have as its purpose, so far as the length of the sentence permits, to establish in them the will to lead lawabiding and self-supporting lives after their release and to fit them to do so. The treatment shall be such as will encourage their self-respect and develop their sense of responsibility.

66. (1) To these ends, all appropriate means shall be used, including religious care in the countries where this is possible, education, vocational guidance and training, social casework, employment counselling, physical development and strengthening of moral character, in accordance with the individual needs of each prisoner, taking account of his social and criminal history, his physical and mental capacities and aptitudes, his personal temperament, the length of his sentence and his prospects after release.

(2) For every prisoner with a sentence of suitable length, the director shall receive, as soon as possible after his admission, full reports on all the matters referred to in the foregoing paragraph. Such reports shall always include a report by a medical officer, wherever possible qualified in psychiatry, on the physical and mental condition of the prisoner.

(3) The reports and other relevant documents shall be placed in an individual file. This file shall be kept up to date and classified in such a way that it can be consulted by the responsible personnel whenever the need arises.

Classification and individualization

67. The purposes of classification shall be:

(a) To separate from others those prisoners who, by reason of their criminal records or bad characters, are likely to exercise a bad influence;

(b) To divide the prisoners into classes in order to facilitate their treatment with a view to their social rehabilitation.

68. So far as possible separate institutions or separate sections of an institu-

[處　　遇]

제65조　拘禁刑 또는 이와 유사한 處分을 宣告받은 자의 處遇는 刑期가 허용하는 한 그들이 釋放된 후에 법을 준수하고 自立的인 生活을 할 意志를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고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受刑者의 處遇는 그들의 自尊心을 키워주고 責任感을 고취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제66조　① 이 目的을 위하여 宗教的 保護가 가능한 國家에 있어서는 宗教的 保護, 教育, 職業의 輔導 및 訓練, 社會的 個別指導, 就業相談, 身體의 鍛鍊과 德性의 강화를 포함하는 모든 적당한 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은 각 受刑者의 社會的 및 犯罪的 經歷, 身體的 및 精神的인 能力과 適性, 個人的 氣質, 刑期및 釋放 후의 展望을 참작하여 각 수형자의 個人的 必要에 따라 활용되어야 한다.

② 施設의 長은 상당한 期間의 刑期를 가진 모든 受刑者에 대하여 그 收容後 가능한 한 신속하게 前項의 사항 전부에 관한 충분한 報告를 받아야 한다. 이와같은 報告에는 수형자의 身體 및 精神狀態에 관한 醫務官(가급적이면 精神醫學의 資格을 가진 醫務官) 의 報告가 언제나 포함되어야 한다.

③ 前項의 報告書 및 그밖의 關係文書는 個人別 身分帳에 편철되어야 한다. 이 身分帳은 항상 최신의 記錄을 포함하고 필요한 때에는 언제라도 책임있는 職員이 참고할 수 있도록 보관·분류되어야 한다.

〔分類 및 個別化〕

제67조　分類의 目的은 다음과 같다.

1. 그 犯罪經歷 또는 불량한 性格으로 보아 惡感染을 염려가 있는 자를 다른 受刑者로부터 隔離하는 것
2. 社會復歸의 관점에서 그 處遇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受刑者를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

제68조　相異한 그룹의 受刑者의 處遇에는 가능한 한 별개의 施設 또는 施設

tion shall be used for the treatment of the different classes of prisoners.

69. As soon as possible after admission and after a study of the personality of each prisoner with a sentence of suitable length, a programme of treatment shall be prepared for him in the light of the knowledge obtained about his individual needs, his capacities and dispositions.

Privileges

70. Systems of privileges appropriate for the different classes of prisoners and the different methods of treatment shall be established at every institution, in order to encourage good conduct, develop a sense of responsibility and secure the interest and cooperation of the prisoners in their treatment.

Work

71. (1) Prison labour must not be of an afflictive nature.

(2) All prisoners under sentence shall be required to work, subject to thier physical and mental fitness as determined by the medical officer.

(3) Sufficient work of a useful nature shall be provided to keep prisoners actively employed for a normal working day.

(4) So fare as possible the work provided shall be such as will maintain or increase the prisoners' ability to earn an honest living after release.

(5) Vocational training in useful trades shall be provided for prisoners able to profit thereby and especially for young prisoners.

(6) Within the limits compatible with proper vocational selection and with the requirements of institutional administration and discipline, the prisoners shall be able to choose the type of work they wish to perform.

72. (1) The organization and methods of work in the institutions shall resemble as closely as possible those of similar work outside institutions, so as to prepare prisoners for the conditions of normal occupational life.

(2) The interests of the prisoners and of their vocational training, however, must not be subordinated to the purpose of making a financial profit from an

內의 별도로 區域이 사용되어야 한다.

제69조 상당한 期間의 刑期를 가진 受刑者를 收容하여 人性檢査를 종료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 個人的 必要와 能力 및 性癖에 관하여 얻은 知識에 비추어 그에 대한 處遇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賞 遇]

제70조 수형자에게 善行을 奬勵하고 그 責任感을 향상시키며 處遇에 있어서 그들의 關心과 協力을 얻기 위하여 모든 施設은 수형자의 각 그룹 및 處遇의 각 방법에 적합한 賞遇制度를 마련하여야 한다.

[作 業]

제71조 ① 矯導作業은 苦痛을 주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② 모든 受刑者는 醫務官에 의하여 결정된 身體的·精神的인 適性에 따라 作業에 종사되어야 한다.

③ 통상의 作業日에 受刑者를 활발하게 就業시키기 위하여 有用한 종류의 충분한 作業이 제공되어야 한다.

④ 제공되는 作業은 가능한 한 수형자가 釋放 후 정직하게 生計費를 벌 수 있는 能力을 유지하고 이를 증진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⑤ 有用한 職種의 職業訓練은 그것으로써 所得을 올릴 수 있는 受刑者와 특히 少年受刑者에게 행하여져야 한다.

⑥ 受刑者는 적당한 職業選擇이라는 條件을 충족하고 施設의 管理와 規律의 要求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종류의 作業을 選擇할 수 있어야 한다.

제72조 ① 受刑者를 정상적인 職業生活의 모든 條件에 적응시키기 위하여 矯導作業의 組織 및 方法은 가능한 한 시설밖의 同種의 作業과 近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그러나 施設內에서의 作業으로부터 財政的 收益을 올리기 위하여 受刑者의

industry in the institution.

73. (1) Preferably institutional industries and farms should be operated directly by the administration and not by private contractors.

(2) Where prisoners are employed in work not controlled by the administration, they shall always be under the surpervision of the institution's personnel. Unless the work is for other departments of the government the full normal wages for such work shall be paid to the administration by the persons to whom the labour is supplied, account being taken of the output of the prisoners.

74. (1) The precautions laid down to protect the safety and health of free workmen shall be equally observed in institutions.

(2) Provision shall be made to indemnify prisoners against industrial injury, including occupational disease, on terms not less favourable than those extended by law to free workmen.

75. (1) The maximum daily and weekly working hours of the prisoners shall be fixed by law or by administrative regulation, taking into account local rules or custom in regard to the employment of free workmen.

(2) The hours so fixed shall leave one rest day a week and sufficient time for education and other activities required as part of th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the prisoners.

76. (1) There shall be a system of equitable remuneration of the work of prisoners.

(2) Under the system prisoners shall be allowed to spend at least a part of their earnings on approved articles for their own use and to send a part of their earnings to their family.

(3) The system should also provide that a part of the earnings should be set aside by the administration so as to constitute a savings fund to be handed over to the prisoner on his release.

이익과 그 職業訓練의 중요성이 輕視되어서는 아니된다.

제73조 ① 施設의 工場 및 農場은 가능한 한 當局에 의하여 직접 運營되어야 하고 契約當事者인 私人이 이를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受刑者는 當局이 管理하지 아니하는 作業에 종사할 경우에도 항상 施設職員의 감독하에 있어야 한다. 작업이 政府의 다른 部局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종의 作業에 대한 통상의 충분한 賃金이 수형자의 生産高를 참작하여 勞務의 提供을 받는 자로부터 矯正當局에 支給되어야 한다.

제74조 ① 自由勤勞者의 安全 및 健康을 保護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豫防措置는 施設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지켜져야 한다.

② 受刑者가 職業病을 포함하는 産業災害를 입은 경우는 法律에 의하여 自由勤勞者에게 인정되고 있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이를 補償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75조 ① 受刑者의 日日 및 週間의 최고 作業時間은 自由勤勞者의 雇傭에 관한 그 地方의 基準 및 慣習을 참작하여 法律 또는 行政規則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이와같이 정해진 作業時間은 週當 1日의 休日과 수형자의 處遇 및 更生措置의 일부로서 필요한 敎育과 그밖의 활동에 요구되는 충분한 시간을 남겨두는 것이어야 한다.

제76조 ① 受刑者의 작업에 있어서는 적절한 報酬制度가 있어야 한다.

② 이 制度하에서 受刑者는 적어도 자기의 收入의 일부를 自己用途로 사용할 허가된 物品의 購入에 사용하고 또 그 일부를 家族에게 보내는 것이 허가되어야 한다.

③ 또한 이 制度하에서 釋放時 受刑者에게 교부할 貯蓄基金으로 하기 위하여 當局이 수형자의 收入의 일부를 積立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Education and recreation

77. (1) Provision shall be made for the further education of all prisoners capable of profiting thereby, including religious instruction in the countries where this is possible. The education of illiterates and young prisoners shall be compulsory and special attention shall be paid to it by the administration.

(2) So far as practicable, the education of prisoners shall be integrated with the educational system of the country so that after their release they may continue their education without difficulty.

78. Recreational and cultural activities shall be provided in all institutions for the benefit of the mental and physical health of prisoners.

Social relations and after-care

79. Special attention shall be paid to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such relations between a prisoner and his family as are desirable in the best interests of both.

80. From the beginning of a prisoner's sentence consideration shall be given to his future after release and he shall be encouraged and assisted to maintain or establish such relations with persons or agencies outside the institution as may promote the best interests of his family and his own social rehabilitation.

81. (1) Services and agencies, governmental or otherwise, which assist released prisoners to re-establish themselves in society shall ensure, so far as is possible and necessary, that released prisoners be provided with appropriate documents and identification papers, have suitable homes and work to go to, are suitably and adequately clothed having regard to the climate and season, and have sufficient means to reach their destination and maintain themselves in the period immediately following their release.

(2) The approved representatives of such agencies shall have all necessary access to the institution and to prisoners and shall be taken into consultation as to the future of a prisoner from the beginning of his sentence.

[敎育 및 리크리에이숀]

제77조 ① 補習敎育은 가능한 國家에 있어서는 宗敎敎誨를 포함하여 利益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수형자에 대하여 행하여지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文盲者 및 少年受刑者의 敎育은 義務的이어야 하고 當局은 이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② 가능한 한 受刑者의 敎育은 석방 후 그 受刑者가 아무 어려움없이 계속하여 敎育을 받을 수 있도록 그 國家의 敎育制度의 일환으로서 행해져야 한다.

제78조 리크리에이숀 活動과 文化活動은 受刑者의 精神的·身體的 健康을 위하여 모든 施設에서 제공되어져야 한다.

[社會關係 및 更生保護]

제79조 受刑者와 그 家族과의 관계가 양자의 최상의 利益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이를 유지하고 發展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注意를 기울여야 한다.

제80조 受刑者에 대한 刑執行의 당초부터 미리 釋放後의 장래 生活에 관한 配慮를 하여야 한다. 수형자는 그 家族의 最上의 利益과 자신의 社會復歸를 촉진시켜 줄 施設外部의 개인 또는 단체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設定하도록 勸奬되어야 하고 또 援助가 베풀어져야 한다.

제81조 ① 피석방자의 社會復歸를 支援하는 政府 또는 그밖의 部局 및 機關은 가능한 한 필요한 한도에 있어서 피석방자가 적절한 文書 및 身分證明書를 지급받고, 알맞은 住居 및 職業을 가지며, 氣候와 季節를 고려하여 적당하고 충분한 衣服을 입고 그들의 目的地까지 歸住하여 釋放직후 한동안 自活할 수 있는 충분한 資金을 가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機關代表로서 認可를 받은 자는 施設 및 受刑者와 모든 필요한 접촉을 가져야 하며 또 受刑者의 장래에 대하여 刑執行의 당초부터 相談을 받아야 한다.

(3) It is desirable that the activities of such agencies shall be centralized or co-ordinated as far as possible in order to secure the best use of their efforts.

B. INSANE AND MENTALLY ABNORMAL PRISONERS

82. (1) Persons who are found to be insane shall not be detained in prisons and arrangements shall be made to remove them to mental institutions as soon as possible.

(2) Prisoners who suffer from other mental diseases or abnormalities shall be observed and treated in specialized institutions under medical management.

(3) During their stay in a prison, such prisoners shall be placed under the special supervision of a medical officer.

(4) The medical or psychiatric service of the penal institutions shall provide for the psychiatric treatment of all other prisoners who are in need of such treatment.

83. It is desirable that steps should be taken, by arrangement with the appropriate agencies, to ensure if necessary the continuation of psychiatric treatment after release and the provision of social-psychiatric after-care.

C. PRISONERS UNDER ARREST OR AWAITING TRIAL

84. (1) Persons arrested or imprisoned by reason of a criminal charge against them, who are detained either in police custody or in prison custody (jail) but have not yet been tried and sentenced, will be referred to as "untried prisoners" hereinafter in these rules.

(2) Unconvicted prisoners are presumed to be innocent and shall be treated as such.

③ 이러한 여러機關의 활동은 그 노력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중앙에 集中시키고 또 調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장 精神病 및 精神異常의 受刑者

제82조 ① 精神病인 것으로 판명된 受刑者는 矯導所에 拘禁해 두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자는 가능한 한 精神科 醫療施設로 移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② 기타의 精神障碍 또는 精神異常의 수형자는 醫學的 管理下에 특설된 施設에서 觀察되고 處遇되어야 한다.

③ 이러한 자가 矯導所에 收容되고 있는 동안은 醫務官의 特別監督下에 두어야 한다.

④ 矯正施設의 醫務科 또는 精神醫務科는 精神醫學的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受刑者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83조 적당한 機關과의 協定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受刑者의 釋放 후에도 精神醫學的인 치료를 계속하고 社會精神醫學的 豫後指導를 다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장 被逮捕者 및 未決被拘禁者

제84조 ① 犯罪의 혐의로 逮捕 또는 拘禁되어 警察署留置場 또는 拘置所에 拘留되어 아직 審理中이거나 判決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이 規則에 있어서 이하 "未決被拘禁者"라고 부른다.

② 有罪判決을 받지 아니한 피구금자는 無罪로 推定되고 이에 합당하게 處遇되어야 한다.

91. An untried prisoner shall be allowed to be visited and treated by his own doctor or dentist if there is reasonable ground for his application and he is able to pay any expenses incurred.

92. An untried prisoner shall be allowed to inform immediately his family of his detention and shall be given all reasonable facilities for communicating with his family and friends, and for receiving visits from them, subject only to such restrictions and supervision as are necessary in the interests of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nd of the security and good order of the institution.

93. For the purposes of his defence, an untried prisoner shall be allowed to apply for free legal aid where such aid is available, and to receive visits from his legal adviser with a view to his defence and to prepare and hand to him confidential instructions. For these purposes, he shall if he so desires be supplied with writing material. Interviews between the prisoner and his legal adviser may be within sight but not within the hearing of a police or institution official.

D. CIVIL PRISONERS

94. In countries where the law permits imprisonment for debt or by order of a court under any other non-criminal process, persons so imprisoned shall not be subjected to any greater restriction or severity than is necessary to ensure safe custody and good order. Their treatment shall be not less favourable than that of untried prisoners, with the reservation, however, that they may possibly be required to work.

제91조 未決被拘禁者는 그 신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또 그 費用을 支給할 수 있는 경우에 자기의 醫師 또는 齒科醫師의 診察 및 治療를 받는 것이 許用되어야 한다.

제92조 미결피구금자에게는 오직 訴訟進行과 施設安全 및 秩序를 위하여 필요한 制限과 監督下에 自己가 收容된 것을 즉시 家族에게 통지하도록 許用되어야 하고, 또 家族 또는 親舊와 通信을 하거나 이들의 接見을 위한 모든 필요한 便宜가 제공되어야 한다.

제93조 未決被拘禁者는 자기의 辯護를 위하여 이용가능한 경우에 無料法律救助를 請求하고 또 자기의 辯護人의 방문을 받으며 그에게 비밀의 사건설명을 準備하고 전달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미결피구금자에게는 희망에 따라 筆記用具가 제공되어야 한다. 미결피구금자와 辯護人과의 접견은 警察官 또는 施設職員의 참여하에 행해질 수 있으나 警察官 또는 施設職員은 對話의 내용을 청취해서는 아니된다.

제4장 民事上의 被拘禁者

제94조 法律이 債務로 인한 拘禁 또는 기타 非刑事的 節次에 따른 法院의 決定에 의하여 拘禁을 허용하고 있는 國家에 있어서 피구금자는 施設의 安全과 秩序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는 어떠한 束縛이나 苦痛을 가해서는 안된다. 그들의 處遇는 作業을 强制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未決被拘禁者의 處遇보다 不利하여서는 아니된다.

(3) Without prejudice to legal rules,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liberty or prescribing the procedure to be observed in respect of untried prisoners, these prisoners shall benefit by a special regime which is described in the following rules in its essential requirements only.

85. (1) Untried prisoners shall be kept separate from convicted prisoners.

(2) Young untried prisoners shall be kept separate from adults and shall in principle be detained in separate institutions.

86. Untried prisoners shall sleep singly in separate rooms, with the reservation of different local custom in respect of the climate.

87. Within the limits compatible with the good order of the institution, untried prisoners may, if they so desire, have their food procured at their own expense from the outside, either through the administration or through their family or friends. Otherwise, the administration shall provide their food.

88. (1) An untried prisoner shall be allowed to wear his own clothing if it is clean and suitable.

(2) If he wears prison dress, it shall be different from that supplied to convicted prisoners.

89. An untried prisoner shall always be offered opportunity to work, but shall not be required to work. If he chooses to work, he shall be paid for it.

90. An untried prisoner shall be allowed to procure at his own expense or at the expense of a third party such books, newspapers, writing materials and other means of occupation as are compatible with the interests of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nd the security and good order of the institution.

③ 個人의 自由를 保護하기 위한 法令 또는 未決被拘禁者에 관하여 遵守되어야 할 절차를 규정하는 法令의 諸規定에 반하지 아니하 한 미결피구금자는 이하의 제 규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만을 들고 있는 특별한 管理制度에 의하여 利益을 받아야 한다.

제85조 ① 未決被拘禁者는 受刑者와 분리수용 되어야 한다.
② 少年인 未決拘禁者는 成人과 격리수용 분리하며 원칙적으로 別個의 施設에 拘禁하여야 한다.

제86조 미결피구금자는 氣候關係로 地方에 따라 다른 慣習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리된 居室에 수용하여야 한다.

제87조 未決被拘禁者는 施設의 秩序에 反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희망에 따라 矯正當局, 家族 또는 親舊를 통하여 외부에서 食糧의 自辨을 허용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矯正當局이 그 飮食物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88조 ① 未決被拘禁者에게는 청결하고 적당한 自己衣類 착용이 許可되어야 한다.
② 미결피구금자가 官衣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受刑者에게 지급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어야 한다.

제89조 未決被拘禁者에게는 항상 作業의 機會가 주어져야 하지만 作業이 要求되어서는 아니된다. 미결피구금자가 作業에 취업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報酬를 支給하여야 한다.

제90조 미결피구금자에게는 訴訟進行과 施設安全 및 秩序에 障害가 되지 아니하는 書籍, 新聞, 筆記用具 및 기타에 餘暇活動에 쓸 물품을 自費 또는 제3者의 費用으로 구입하도록 許用되어야 한다.

E. PERSONS ARRESTED OR DETAINED WITHOUT CHARGE

95. Without prejudice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9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persons arrested or imprisoned without charge shall be accorded the same protection as that accorded under part I and part II, section C. Relevant provisions of part II, section A, shall likewise be applicable where their application may be conducive to the benefit of this special group of persons in custody, provided that no measures shall be taken implying that re-education or rehabilitation is in any way appropriate to persons not convicted of any criminal offence.

제5장 嫌疑없이 逮捕 또는 拘禁된 者

제95조 市民的·政治的 權利에 관한 國際規約 제9조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犯罪의 혐의없이 逮捕 또는 拘禁된 자는 제1편 및 제2편 제3장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保護를 받아야 한다. 제2편 제1장의 關聯規定도 그 적용이 拘禁狀態에 있는 이 특수한 그룹에 속한 사람에게 利益이 될 때에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再敎育 또는 更生措置가 有罪判決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도 적절하다는 趣旨의 措置는 취해져서는 아니된다.

여 백

제2부

미국

UNITED STATES CODE ANNOTATED

Title 18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PART III PRISONS AND PRISONERS
CHAPTER 301 GENERAL PROVISIONS
CHAPTER 303 BUREAU OF PRISONS
CHAPTER 305 COMMITEMENT AND TRANSFER
CHAPTER 306 TRANSFER TO OR FROM FOREIGN COUNTRIES
CHAPTER 307 EMPLOYMENT
CHAPTER 309 GOOD TIME ALLOWANCES
CHAPTER 311 PAROLE
CHAPTER 313 OFFENDERS WITH MENTAL DISEASE OR DEFFECT
PART IV CORRECTION OF YOUTHFUL OFFENDERS
CHAPTER 401 GENERAL PROVISIONS
CHAPTER 403 JUVENILE DELIQUENCY

PART III PRISONS AND PRISONERS

CHAPTER 301 GENERAL PROVISIONS

§ 4001. Limitation on detention; control of prisons

(a) No citizen shall be imprisoned or otherwise detained by the United States except pursuant to an Act of Congress.

(b) (1)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Federal penal and correctional institutions, except military or naval institutions, shall be vested in the Attorney General, who shall promulgate rules for the government thereof, and appoint all necessary officers and employees in accordance with the civil-service laws, the Classification Act, as amended[1] and the applicable regulations.

聯邦 矯正關係法令

이 법령은 「美聯邦法律註釋」(UNITED STATES CODE ANNOTATED) 중 「제18권 犯罪 및 刑事訴訟節次」에서 발췌한 것임.

제3편 矯導所와 在所者
제301장 總則 (제4001조~제4012조)
제303장 矯正局 (제4041장~제4043조)
제305장 拘禁과 移送 (제4081조~제4086조)
제306장 外國으로의 또는 外國으로부터의 引渡 (제4100조~4115조)
제307장 雇傭 (제4121조~제4128조)
제309조 善時控除 (제4161조~제4166조)
제311장 假釋放 (제4201조~제4218조)
제313장 精神的疾病 또는 缺陷을 지닌 犯罪人 (제4241조~제4247조)
제4편 少年犯罪人의 矯正
제401장 總 則 (제5001조~제5003조)
제403장 少年犯罪 (제5031조~제5042조)

제3편 矯導所와 在所者

제301장 總 則

제4001조 (拘禁上의 限界, 矯導所의 統制) ① 모든 市民은 聯邦議會의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미합중국에 의해 收容되거나 拘禁되지 아니한다.

② 1. 聯邦 矯正施設의 統制와 管理는 육·해군의 시설을 제외하고는 法務長官이 행한다. 법무장관은 이의 管理를 위해 命令을 발하고 公務員法과 수정된 分類에 관한 法律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規則에 의거하여 모든 필요한 職員과 雇傭人을 임명한다.

(2) The Attorney General may establish and conduct industries, farms, and other activities and classify the inmates; and provide for thier proper government, discipline, treatment, care, rehabilitation, and reformation.

(June 25, 1948, c. 645, 62 Stat. 847; Sept. 25, 1971, Pub. L. 92-128, § 1(a), (b), 85 Stat. 347.)

§ 4002. Federal prisoners in State institutions; employmen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suitable quarters for the safekeeping, care, and subsistence of all persons held under authority of any enactment of Congress, the Attorney General may contract, for a period not exceeding three years, with the proper authorities of any State, Territory, or political subdivision thereof, for the imprisonment, subsistence, care, and proper employment of such persons.

Such Federal prisoners shall be employed only in the manufacture of articles for, the production of supplies for, the construction of public works for, and the maintenance and care of the institution of, the State or political subdivision in which they are imprisoned.

The rates to be paid for the care and custody of said persons shall take into consideration the character of the quarters furnished, sanitary conditions, and quality of subsistence and may be such as will permit and encourage the proper authorities to provide reasonably decent, sanitary, and healthful quarters and subsistence for such persons.

(June 25, 1948, c. 645, 62 Stat. 847; Nov. 9, 1978, Pub. L. 95-624, § 8, 92 Stat. 3463.)

§ 4003. Federal institutions in States without appropriate facilities.

If by reason of the refusal or inability of the authorities having control of any jail, workhouse, penal, correctional, or other suitable institution of any State or Territory, or political subdivision thereof, to enter into a contract for the imprisonment, subsistence, care, or proper employment of United States prisoners, or if there are no suitable or sufficient facilities available at reasonable cost, the Attorney General may select a site either within or convenient to the State, Territory, or judicial district concerned and cause to be erected thereon a house of detention, workhouse, jail, prison-industries project, or camp, or other place of confinement, which shall be used for the detention of persons held under authority of any Act of Congress, and of such other persons as in the opinion of the Attorney General are proper subjects for confinement in such institutions.

2. 法務長官은 공장, 농장 기타 다른 事業을 설립하고 監督할 수 있으며 收容者를 分類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적절한 管理, 規律, 處遇, 保護, 社會復歸와 矯正을 행한다.

(June 25, 1948, c. 645, 62 Stat, 847; Sept. 25, 1971, Pub L. 92—128, §1 (a) (b), 85 Stat. 347.)

제4002조 (州 施設內의 聯邦在所者, 雇傭) 聯邦議會가 제정한 法律下에 拘禁된 모든 자의 戒護·保護·生計를 위하여 적당한 宿所를 제공할 목적으로 法務長官은 州, 準州 또는 그것의 下位行政區域의 관계기관과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그들의 구금·보호·생계 및 적절한 雇傭을 위한 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상기 聯邦在所者는 그들이 수용된 州 또는 下位行政區域을 위한 물품의 제조, 日用品의 생산, 土木工事, 그들이 수용된 州 또는 하위행정구역의 施設管理와 保護에 한하여 고용한다.

상기 자의 管理와 保護를 위해 지불하는 使用料는 宿所設備의 성격, 衛生狀態 및 生計의 水準을 고려하여 정한다. 사용료는 管理機關이 이들에게 합리적으로 상당하고 위생적인 그리고 건강에 유익한 宿所와 生計를 제공하도록 허용하고 鼓舞할 수 있는 정도로 책정할 수 있다.

(June 25, 1948, c. 645, 62 Stat. 847; Nov. 9, 1978, Pub. L. 95—624, §8, 92 Stat. 3463.)

제4003조 (적당한 設備가 없는 州의 聯邦施設) 州, 準州 또는 그것의 下位行政區에 있는 모든 矯導所, 少年院, 矯正施設 기타 적당한 시설을 統制하는 機關이 미합중국 在所者의 구금·보호·생계 또는 적절한 雇傭을 위한 契約의 締結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합리적인 費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혹은 충분한 設備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 法務長官은 당해 州, 準州 또는 관련 司法管轄 내에 혹은 가까운 곳에 敷地를 지정하고 그곳에 聯邦議會의 법률하에 拘禁된 자와 기타 법무장관의 의견으로 그러한 시설에 拘禁되는 것이 적절한 자의 구금을 위해 사용될 拘置所, 少年院, 矯導所, 교도소내 공장시설, 수용소 기타 구금장소를 설립하도록 할 수 있다.

(June 25, 1948, c. 645, 62 Stat. 848.)

§ 4004. Oaths and acknowledgments

The wardens and superintendents, associate wardens and superintendents, chief clerks, record clerks, and parole officers, of Federal penal or correctional institutions, may administer oaths to and take acknowledgments of officers, employees, and inmates of such institutions, but shall not demand or accept any fee or compensation therefor.

(June 25, 1948, c. 645, 62 Stat. 848; July 7, 1955, c. 282, 69 Stat. 282.)

§ 4005. Medical relief; expenses

(a) Upon request of the Attorney General, the Federal Security Administrator shall detail regular and reserve commissioned officers of the Public Health Service, pharmacists, acting assistant surgeons, and other employees of the Public Health Service to the Department of Justice for the purpose of supervising and furnishing medical, psychiatric, and other technical and scientific services to the Federal penal and correctional institutions.

(b) The compensation, allowances, and expenses of the personnel detailed under this section may be paid from applicable appropriations of the Public Health Service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regulations governing the personnel of the Public Health Service, such appropriations to be reimbursed from applicable appropriations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or the Attorney General may make allotments of funds and transfer of credit to the Public Health Service in such amounts as are available and necessary, for payment of compensation, allowances, and expenses of personnel so detail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regulations governing the personnel of the Public Health Service.

(June 25, 1948, c. 645, 62 Stat. 848.)

§ 4006. Subsistence for prisoners

The Attorney General shall allow and pay only the reasonable and actual cost of the subsistence of prisoners in the custody of any marshal of the United States, and shall prescribe such regulations for the government of the marshals as will enable him to determine the actual and reasonable expenses incurred.

(June 25, 1948, c. 645, 62 Stat. 848.)

§ 4007. Expenses of prisoners

The expenses attendant upon the confinement of persons arrested or committed under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upon the execution of any sentence of a court thereof respecting them, shall be paid out of the Treasury of the United States in the manner provided by law.

(June 25, 1948, c. 645, 62 Stat. 848.)

(June 25, 1948, c. 645, 62 Stat. 848.)

제4004조 (宣誓와 承認) 聯邦矯正施設의 長과 監督官, 부소장과 부감독관, 事務長, 記録員 그리고 保護觀察官은 당해 시설의 직원, 雇傭人, 收容者에게 宣誓시키고 그들을 承認할 수 있다. 단, 이에 대한 어떠한 手數料나 補償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June 25, 1948, c. 645, 62 Stat. 848 ; July 7, 1955, c. 282, 69 Stat. 282.)

제4005조 (醫療救護, 費用) ① 法務長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聯邦保安局長은 연방 교정시설에 醫學的 精神病理的 기타 技術的이고 科學的인 助力을 제공하고 감독할 목적으로 公衆保健所의 正規·예비로 任命된 職員, 藥劑師, 임시의 補助醫師와 기타 공중보건소의 雇傭人을 법무성에 파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파견된 職員의 報酬·手當과 費用은 공중보건소의 직원에 관한 法律과 規則에 의거하여 공중보건소의 適正豫算으로부터 지급될 수 있다. 이때 그 支出金은 法務省의 적정예산에서 충당된다.

法務長官은 公衆保健所의 職員에 관한 法律과 規則에 의거하여 파견된 직원의 報酬, 手當과 費用을 지급함에 있어 有用하고 필요한 金額에 대하여 공중보건소에 基金을 割當하고 計定을 이전시킬 수 있다.

(June 25, 1948, c. 645, 62 Stat. 848.)

제4006조 (在所者에 대한 生計) 法務長官은 미합중국의 모든 執行官의 감독하에 있는 재소자의 生計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費用만을 허가하고 지급한다. 法務長官은 執行官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비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집행관의 管理에 관한 規則을 제정한다.

(June 25, 1948, c. 645, 62 Stat. 848.)

제4007조 (在所者의 費用) 미합중국의 법률에 의해 逮捕 또는 拘禁된 자의 收容 및 그들에 대한 法院의 宣告의 執行에 따르는 費用은 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미합중국 國庫에서 지급한다.

(June 25, 1948, c. 645, 62 stat. 848)

§ 4008. Transportation expenses

Prisoners shall be transported by agents designated by the Attorney General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The reasonable expense of transportation, necessary subsistence, and hire and transportation of guards and agents shall be paid by the Attorney General from such appropriation for the Department of Justice as he shall direct.

Upon conviction by a consular court or court martial the prisoner shall be transported from the court to the place of confinement by agents of the Department of State, the Army, Navy, or Air Force, as the case may be, the expense to be paid out of the Treasury of the United States in the manner provided by law.

(June 25, 1948, c. 645, 62 Stat. 849; May 24, 1949, c. 139, § 61, 63 Stat. 98.)

§ 4009. Appropriations for sites and buildings

The Attorney General may authorize the use of a sum not to exceed $100,000 in each instance, payable from any unexpended balance of the appropriation "Support of United States prisoners" for the purpose of leasing or acquiring a site, preparation of plans, and erection of necessary buildings under section 4003 of this title.

If in any instance it shall be impossible or impracticable to secure a proper site and erect the necessary buildings within the above limitation the Attorney General may authorize the use of a sum not to exceed $10,000 in each instance, payable from any unexpended balance of the appropriation "Support of United States prisoners" for the purpose of securing options and making preliminary surveys or sketches.

Upon selection of an appropriate site the Attorney General shall submit to Congress an estimate of the cost of purchasing same and of remodeling, constructing, and equipping the necessary buildings thereon.

(June 25, 1948, c. 645, 62 Stat. 849.)

§ 4010. Acquisition of additional land

The Attorney General may, when authorized by law, acquire land adjacent to or in the vicinity of a Federal penal or correctional institution if he considers the additional land essential to the protection of the health or safety of the inmates of the institution.

(Added Pub.L. 89-554, § 3(f), Sept. 6, 1966, 80 Stat. 610.)

§ 4011. Disposition of cash collections for meals, laundry, etc.

Collections in cash for meals, laundry, barber service, uniform equipment,

제4008조 (護送費用) 在所者는 법무장관 그의 權限을 委任받은 代理人이 지명하는 담당관이 호송한다.

護送, 필요한 生計 그리고 護送人과 담당관의 雇傭과 護送의 합리적인 費用은 법무장관이 지정하는 法務省豫算에서 지급한다.

領事法院이나 軍事法院의 判決에 대하여는 재소자는 각 경우에 해당하는 國務省또는 육·해·공군의 담당관에 의해 法院에서 拘禁場所로 호송되며, 費用은 법률에 규정된 방법으로 미합중국 國庫에서 지급된다.

(June 25, 1948. c. 645, 62 Stat. 849; May 24, 1949, c. 139, §61, 63 Stat. 98.)

4009조 (敷地와 建物에 대한 支出金) 法務長官은 이 편 제4003조에 따른 敷地의 賃借 또는 買入, 計劃의 準備와 필요한 建物의 設立을 목적으로 "미합중국 재소자에 대한 지원" 豫算의 未支出殘高에서 지출할 수 있는 총액의 사용을 매 경우에 100,0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상기 限度內에서 適正敷地를 확보하고 필요한 建物을 設立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실현될 수 없을 경우에는 법무장관은 選擇權을 확보하고 基礎調査나 概略計劃을 세울 목적으로 "미합중국 재소자에 대한 지원" 豫算의 未支出殘高에서 지출할 수 있는 총액의 사용을 매 경우에 10,0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適正敷地의 선택에 대하여 法務長官은 그 買入費用과 그위의 필요한 건물의 改築·新築 및 設備의 費用에 대한 見積을 연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June 25, 1948, c. 645, 62 Stat. 849.)

제4010조 (追加土地의 取得) 法務長官은 연방교정시설의 收容者들의 健康이나 安全을 보호하기 위하여 追加土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法律에 의하여 權限이 附與된 때에는 시설에 근접한 또는 시설 부근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Added Pub. L. 89 — 554, §3(f), Sept, 6, 1966, 80 Stat. 610.)

제4011조 (食事, 洗濯 등에 대하여 徵收된 現金의 處分) 식사, 세탁, 이발, 제

and other items for which payment is made originally from appropriations for the maintenance and operation of Federal penal and correctional institutions, may be deposited in the Treasury to the credit of the appropriation currently available for those items when the collection is made.
(Added. Pub.L. 89-554, § 3(f), Sept. 6, 1966, 80 Stat. 610.)

§ 4012. Summary seizure and forfeiture of prison contraband

An officer or employee of the Bureau of Prisons may, pursuant to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Director of the Bureau of Prisons, summarily seize any object introduced into a Federal penal or correctional facility or possessed by an inmate of such a facility in violation of a rule, regulation or order promulgated by the Director, and such object shall be forfeited to the United States.
(Added Pub.L. 98-473, Title II, § 1109(d), Oct. 12, 1984, 98 Stat. 2148.)

CHAPTER 303 BUREAU OF PRISONS

§ 4041. Bureau of Prisons; director and employees

The Bureau of Prisons shall be in charge of a director appointed by and serving directly under the Attorney General at a salary of $10,000 a year. The Attorney General may appoint such additional officers and employees as he deems necessary.
(June 25, 1948, c. 645, 62 Stat. 849.)

§ 4042. Duties of Bureau of Prisons

The Bureau of Prisons, under the direction of the Attorney General shall—

(1) have charge of the management and regulation of all Federal penal and correctional institutions;
(2) provide suitable quarters and provide for the safekeeping, care, and subsistence of all persons charged with or convicted of offenses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held as witnesses or otherwise;
(3) provide for the protection, instruction, and discipline of all persons charged with or convicted of offenses against the United States;
(4) Provide technical assistance to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improvement of their correctional systems.

This section shall not apply to military or naval penal or correctional institutions or the persons confined therein.

복 기타 항목에 대한 지출은 원칙적으로 聯邦矯正施設의 管理와 活動을 위한 豫算에서 지급한다. 단, 現金이 徵收된 때에는 징수현금은 그러한 항목에 통상 이용할 수 있는 國庫의 計定의 貸邊에 豫置할 수 있다.

(Added Pub. L. 89-554, § 3(f), Sept. 6, 1966, 80 Stat. 610.)

제4012조 (密搬入品의 即時押收와 沒收) 矯正局의 職員 또는 雇傭人은 矯正局長이 발한 規則 또는 命令에 위반하여 聯邦矯正施設내로 搬入된 물건 또는 收容者가 所持한 물건은 교정국장의 규정과 규칙에 의하여 즉시 押收할 수 있으며 그 물건은 미합중국에 몰수된다.

(Added Pub. L. 98-473, Title Ⅱ, § 1109(d), Oct. 12, 1984, 98 Stat. 2148.)

제303장 矯正局

제4041조 (矯正局, 局長과 雇傭人) 교정국은 연봉 10,000 $ 로 法務長官이 任命하고 법무장관에 직속된 局長이 관리한다. 법무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職員과 雇傭人을 추가로 任命할 수 있다.

(June 25, 1948, c. 645, 62 Stat. 849.)

제4042조 (矯正局의 義務) 矯正局은 法務長官의 監督下에-

① 모든 연방교정시설의 管理와 規制를 담당한다.

② 미합중국에 대한 犯罪로 起訴되었거나 有罪判決을 받은 모든 자와 證人 등으로 召喚된 모든 자의 戒護·保護와 生計를 마련하고 적당한 宿所를 제공한다.

③ 미합중국에 대한 犯罪로 起訴되었거나 有罪判決을 받은 모든 자의 保護·敎育과 規律을 마련한다.

④ 州와 地方政府에 그들의 矯正體系의 향상을 위해 技術的 援助를 제공한다.

이 조는 陸·海軍의 矯正施設 또는 그 시설내에 拘禁된 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June 25, 1948, c. 645, 62 Stat. 849; July 1, 1968, Pub.L. 90-371, 82 Stat. 280.)

§ 4043. Acceptance of gifts and bequests to the Commissary Funds, Federal Prisons

The Attorney General may accept gifts or bequests of money for credit to the "Commissary Funds, Federal Prison". A gift or bequest under this section is a gift or bequest to or for the use of the United States under the Internal Revenue Code of 1954 (26 U.S.C. 1 et seq.).

(Added Pub.L. 97-258, § 2(d) (4) (B), Sept. 13, 1982, 96 Stat. 1059.)

CHAPTER 305 COMMITEMENT AND TRANSFER

§ 4081. Classification and treatment of prisoners

The Federal penal and correctional institutions shall be so planned and limited in size as to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system which will assure the proper classification and segregation of Federal prisoners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offenses committed, the character and mental condition of the prisoners, and such other factors as should be considered in providing an individualized system of discipline, care, and treatment of the persons committed to such institutions.

(June 25, 1948, c. 645, 62 Stat. 850.)

§ 4082. Commitment to Attorney General; residential treatment centers; extension of limits of confinement; work furlough

(a) A person convicted of an offense against the United States shall be committed, for such term of imprisonment as the court may direct, to the custody of the Attorney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who shall designate the place of confinement where the sentence shall be served.

(b) The Attorney General may designate as a place of confinement any available, suitable, and appropriate institution or facility, whether maintained by the Federal Government or otherwise, and whether within or without the judicial district in which the person was convicted, and may at any time transfer a person from one place of confinement to another.

(c) The Attorney General may extend the limits of the place of confinement of a prisoner as to whom there is reasonable cause to believe he will honor his trust, by authorizing him, under prescribed conditions, to—

(June 25, 1948, c. 645, 62 Stat. 849; July 1.1968, Pub. L.90—371, 82 Stat. 280.)

제4043조 (聯邦矯導所의 代表基金에 대한 贈與와 遺贈의 引受) 法務長官은 "聯邦矯導所 代表基金"에의 現金의 贈與나 遺贈을 받을 수 있다. 이 조에 의한 증여와 유증은 1954년의 內國稅法(26. U. S. C 1 et seq.)에 따라 미합중국의 사용을 위한 증여와 유증이 된다.

(Addedd Pub. L. 97—258, §2 (d)(4) (B), Sept. 13, 1982, 96 Stat. 1059.)

제305장 拘禁者와 移送

제4081조 (在所者의 分類와 處遇) 聯邦矯正施設은 犯罪의 性質, 在所者의 性格과 精神狀態 그리고 시설내에 拘禁된 자에 대한 개별적인 規律 保護와 處遇體系를 제공하는데 고려되어야 하는 기타 다른 要素에 따라 연방재소자를 적절히 分類하고 個別處遇할 수 있는 統一的 體系를 용이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計劃되고 規模가 제한되어야 한다.

(June 25, 1948, c. 645, 62 Stat. 850)

제4082조 (法務長官下의 拘禁, 社會內 處遇施設, 拘禁上의 限界의 擴張, 一時就業) ① 미합중국에 대한 犯罪로 有罪判決을 받은 자는 法院이 명하는 刑期동안 미합중국 법무장관의 감독하에 拘禁된다. 법무부장관은 刑의 宣告가 집행될 拘禁場所를 지정한다.

② 法務長官은 聯邦政府가 관리하고 있는가의 여부와 그가 有罪判決을 받은 司法管轄內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유용하고 적당하며 적절한 施設이나 設備를 拘禁場所로 지정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收容者를 他拘禁場所로 이송할 수 있다.

③ 法務長官은 수용자가 信賴를 존중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合理的인 理由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拘禁場所의 限界를 확장하여 규정된 條件下에서 다음 허가를 할 수 있다;

(1) visit a specifically designated place or places for a period not to exceed thrity days and return to the same or another institution or facility. An extension of limits may be granted to permit a visit to a dying relative, attendance at the funeral of a relative, the obtaining of medical services not otherwise avilable, the contacting of prospective employers, the establishment or reestablishment of family and community ties or for any other significant reason consistent with the public interest; or

(2) work at paid employment or participate in a training program in the community on a voluntary basis while continuing as a prsioner of the institution or facility to which he is committed, provided that—

(i) representatives of local union central bodies or similar labor union organizations are consulted;

(ii) such paid employment will not result in the displacement of employed workers, or be applied in skills, crafts, or trades in which there is a surplus of available gainful labor in the locality, or impair existing contracts for services; and

(iii) the rates of pay and other conditions of employment will not be less than those paid or provided for work of similar nature in the locality in which the work is to be performed.

A prisoner authorized to work at paid employment in the community under this subsection may be required to pay, and the Attorney General is authorized to collect, such costs incident to the prisoner's confinement as the Attorney General deems appropriate and reasonable. Collections shall be deposited in the Treasury of the United States as miscellanesous receipts.

(d) The willful failure of a prisoner to remain within the extended limits of his confinement, or to return within the time prescribed to an institution or facility designated by the Attorney General, shall be deemed an escape from the custody of the Attorney General punishable as provided in chapter 35 of this title.

(e) The authority conferred upon the Attorney General by this section shall extend to all persons committed to the National Training School for Boys.

(f) As used in this section—

the term "facility" shall include a residential community treatment center; and

the term "relative" shall mean a spouse, child (including stepchild, adopted child or child as to whom the prisoner, though not a natural parent, has acted in the place of a parent), parent (including a person who, though not a natural parent, has acted in the place of a parent), brother, or sister.

1.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한 개 또는 수 개의 場所를 訪問하고 본래의 施設 또는 타의 시설로 귀소한다. 死期가 임박한 親族에의 訪問, 친족의 葬禮에의 참석, 달리 받을 수 없는 治療의 達成, 장래의 雇用主와의 접촉, 家族과 共同體 緣分의 創設이나 復興을 허가하거나 公共福利와 합치하는 기타 중요한 이유가 있을 때 限界의 擴張이 인정될 수 있다.
2. 자신이 拘禁된 施設이나 設備의 收用者로 있는 동안 다음 조건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有給職에 就業하거나 사회의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한다. —

   (i) 地域勞動組合中央團體나 그와 유사한 勞動組合組織體의 대표자와 협의가 이루어지고 ;

   (ii) 그러한 有給職勞動으로 인하여 雇傭勞動者가 解雇되지 아니하며, 또한 그러한 유급직고용이 그 지역에 잉여의 有給勞動이 존재하는 기능직·기술직·수공업직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기존의 雇傭契約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

   (iii) 賃金 및 기타 雇傭條件이 作業이 수행되는 地域內의 유사한 性格의 作業의, 그것보다 적지 아니한 경우.

   이 항에 의거하여 社會의 有給職에 就業이 허가된 수형자는 법무장관이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그의 拘禁에 부수하는 費用을 支給할 것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法務長官이 이를 受領할 수 있다. 수령액은 雜收入으로 미합중국 國庫에 예치된다.

④ 受刑者가 故意로 자신의 拘禁上의 확장된 限界를 일탈하거나 規定된 시간내에 法務長官이 지정한 施設로 復歸하지 아니한 때에는 法務長官의 拘禁으로부터 逃走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편 제35장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處罰한다.

⑤ 이 조에 의하여 법무장관에게 부여된 權限은 國立少年院에 收容된 모든 자에게 까지 확장된다.

⑥ 이 조에 使用된 用語—

"設備"라 함은 社會內處遇施設을 포함한다.

"親族"이라 함은 配偶者, 子女(의붓자녀, 양자 혹은 수형자가 친부모가 아니더라도 부모의 地位에서 생활해 온 자녀를 포함한다), 父母 (친부모는 아니더라도 부모의 지위에서 생활해 온 자를 포함한다), 兄弟, 姉妹를 의미한다.

(June 25, 1948, c. 645, 62 Stat. 850; Sept. 10, 1965, Pub.L. 89-176, § 1, 79 Stat. 674; Dec. 28, 1973, Pub.L. 93-209, 87 Stat. 907.)

§ 4083. Penitentiary imprisonment; consent

Persons convicted of offenses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by courts martial punishable by imprisonment for more than one year may be confined in any United States penitentiary.

A sentence for an affense punishable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or less shall not be served in a penitentiary without the consent of the defendant.

(June 25, 1948, c. 645, 62 Stat. 850; Sept. 14, 1959, Pub.L. 86-256, 73 Stat. 518.)

§ 4084. Copy of commitment delivered with prisoner

Whenever a prisoner is committed to a warden, sheriff or jailer by virtue of a writ, or warrant, a copy thereof shall be delivered to such officer as his authority to hold the prisoner, and the original shall be returned to the proper court or officer, with the officer's return endorsed thereon.

(June 25, 1948, c. 645, 62 Stat. 850.)

§ 4085. Transfer for state offense; expense

(a) Whenever any federal prisoner has been indicted, informed against, or convicted of a felony in a court of record of any State or the District of Columbia, the Attorney General shall, if he finds it in the public interest to do so, upon the request of the Governor or the executive authority thereof, and upon the presentation of a certified copy of such indictment, information or judgment of conviction, cause such person, prior to his release, to be transferred to a penal or correctional institution within such State or District.

If more than one such request is presented in respect to any prisoner, the Attorney General shall determine which request should receive preference.

The expense of personnel and transportation incurred shall be chargeable to the appropriation for the "Support of United States prisoners."

(b) This section shall not limit the authority of the Attorney General to transfer prisoners pursuant to other provisions of law.

(June 25, 1948, c. 645, 62 Stat. 850.)

(June 25, 1948, c. 645, 62 Stat. 850; Sept. 10, 1965, Pub. L. 89—176, §1, 79 Stat. 674; Dec 28, 1973, Pub. L. 93—209, 87 Stat. 907.)

제4083조 (矯導所收容, 同意) 미합중국에 대한 犯罪로 有罪判決을 받았거나 軍事法院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그 犯罪가 1년초과의 自由刑으로 處罰을 할 수 있는 범죄인 경우에는 미합중국 교도소에 수용될 수 있다. 1년이하의 自由刑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刑의 宣告는 被告人의 동의없이는 교도소에서 집행되지 아니한다.

(June 25, 1948, c. 645, 62 Stat. 850; Sept. 14, 1959, Pub. L. 86—256, 73 Stat. 518.)

제4084조 (受刑者와 함께 引渡된 拘禁令狀의 写本) 受刑者가 令狀에 의하여 교도소의 장, 治安判事 또는 矯導官에게 拘禁될 때에는 令狀의 寫本이 그 수형자를 拘禁할 권한이 있는 職員에게 引渡되어야 하며, 原本은 그 직원이 背書하여 管轄法院이나 職員에게 회부되어야 한다.

(June 25, 1948, c. 645, 62 Stat. 850.)

제4085조 (州犯罪에 대한 移送·費用) ① 聯邦在所者가 어느 州 또는 콜롬비아 特別區의 登録法院에서 重罪로 大陪審이나 檢察에 의해 起訴되었거나 또는 중죄로 有罪判決을 받은 경우에 언제나 법무장관은 公益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州知事 또는 그의 行政官庁의 요구가 있고 大陪審起訴狀, 檢察起訴狀 또는 유죄판결의 判決書의 公認謄本의 제시가 있으면 그의 釋放以前에 당해 州 또는 特別區의 矯正施設로의 移送을 명한다.

한 在所者에 대하여 수개의 要求가 제시된 경우에 法務長官은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를 결정해야 한다.

위에 따라 초래되는 職員과 護送의 費用은 "미합중국 在所者에 대한 支援" 豫算에 부과된다.

② 이 조는 法務長官이 다른 法律規定에 의하여 재소자를 移送시킬 수 있는 權限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June 25, 1948, c. 645, 62 Stat. 850)

§ 4086. Temporary safe-keeping of federal offenders by marshals

United States marshals shall provide for the safe-keeping of any person arrested, or held under authority of any enactment of Congress pending commitment to an instltution.

(June 25, 1948, c. 645, 62 Stat. 851.)

CHAPTER 306 TRANSFER TO OR FROM FOREIGN COUNTRIES

§ 4100. Scope and limitation of chapter

(a)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relating to the transfer of offenders shall be applicable only when a treaty providing for such a transfer is in force, and shall only be applicable to transfers of offenders to and from a foreign country pursuant to such a treaty. A sentence imposed by a foreign country upon an offender who is subsequently transferred to the United States pursuant to a treaty shall be subject to being fully executed in the United States even though the treaty under which the offender was transferred is no longer in force.

(b) An offender may be transferred from the United States pursuant to this chapter only to a country of which the offender is a citizen or national. Only an offender who is citizen or national of the United States may be transferred to the United States. An offender may be transferred to or from the United States only with the offender's consent, and only if the offense for which the offender was sentenced satisfies the requirement of double criminality as defined in this chapter. Once an offender's consent to transfer has been verified by a verifying officer, that consent shall be irrevocable. If at the time of transfer the offender is under eighteen years of age the transfer shall not be accomplished unless consent to the transfer be given by a parent or guardian or by an appropriate court of the sentencing country.

(c) An offender shall not be transferred to or from the United States if a proceeding by way of appeal or of collateral attack upon the conviction or sentence be pending.

(d) The United States upon receiving notice from the country which imposed the sentence that the offender has been granted a pardon, commutation, or amnesty, or that there has been an ameliorating modification or a revocation of the sentence shall give the offender the benefit of the action taken by the sentencing country.

제4086조 (執行官에 의한 聯邦犯罪人의 一時戒護) 미합중국 執行官은 연방의회의 制定法律에 의해 逮捕되었거나 拘禁된 자를 施設에 引致할 때까지 戒護하여야 한다.

(June 25, 1948, c. 62 Stat. 851.)

제306장 外國으로의 또는 外國으로부터의 引渡

제4100조 (이 章의 範圍와 限界) ① 在所者의 引渡에 관한 이 장의 규정은 그 引渡를 위한 條約이 效力이 있을 때에 한하여 適用하며, 그 條約에 따라 外國으로부터의 또는 외국으로의 犯罪者의 引渡에 한하여 適用할 수 있다. 범죄자가 외국에서 刑의 宣告를 받고 그후에 條約에 의거하여 美合衆國으로 引渡된 경우에 그 宣告된 刑은 그 범죄자 인도의 근거가 된 條約이 效力을 상실했더라도 미합중국에서 전부 집행한다.

② 범죄자는 이 장에 의거하여 美合衆國으로부터 범죄자의 市民權 또는 國籍國家에 한해서만 引渡될 수 있다. 미합중국의 市民이거나 國民인 犯罪者만이 미합중국으로 인도될 수 있다. 犯罪者는 자신의 同意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리고 그 범죄자가 宣告를 받은 범죄가 이 장에 규정된 二重犯罪性의 要求를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미합중국으로 또는 미합중국으로부터 인도될 수 있다. 引渡에 대한 犯罪者의 동의가 證明官에 의해 일단 證明되면 그 同意는 취소할 수 없다. 引渡時에 犯罪者가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 또는 宣告國家의 당해 법원의 인도에 대한 동의가 없으면 인도는 완성되지 아니한다.

③ 有罪判決이나 宣告에 대한 上訴 또는 附帶的 訴訟에 의하여 訴訟節次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범죄자는 미합중국으로 또는 미합중국으로부터 인도되지 아니한다.

④ 범죄자가 特別赦免, 減刑 또는 一般赦免을 받았다는 통지 또는 선고의 개량적 변경이나 取消가 있었음을 알리는 通知를 형을 宣告한 국가로부터 받은 경우에 미합중국은 宣告國家가 취한 決定의 利益을 범죄자에게 부여하여야

(Added Pub.L. 95-144, § 1, Oct. 28, 1977, 91 Stat. 1212.)

§ 4101. Definitions

As used in this chapter the term–

(a) "double criminality" means that at the time of transfer of an offender the offense for which he has been sentenced is still an offense in the transferring country and is also an offense in the receiving country. With regard to a country which has a federal form of government, an act shall be deemed to be an offense in that country if it is an offense under the federal laws or the laws of any state or province thereof;

(b) "imprisonment" means a penalty imposed by a court under which the individual is confined to an institution;

(c) "juvenile" means–

(1) a person who is under eighteen years of age; or

(2) for the purpose of proceedings and disposition under chapter 403 of this title because of an act of juvenile deliquency, a person who is under twenty-one years of age;

(d) "juvenile deliquency" means –

(1) a violation of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r a State thereof or of a foreign country committed by a juvenile which would have been a crime if committed by an adult; or

(2) noncriminal acts committed by a juvenile for which supervision or treatment by juvenile authorities of the United States, a State thereof, or of the foreign country concerned is authorized;

(e) "offender" means a person who has been convicted of an offense or who has been adjudged to have committed an act of juvenile delinquency;

(f) "parole" means any form of release of an offender from imprisonment to the community by a releasing authority prior to the expiration of his sentence, subject to conditions imposed by the releasing authority and to its supervision;

(g) "probation" means any form of a sentence to a penalty of imprisonment the execution of which is suspended and the offender is permitted to remain at liberty under supervision and subject to conditions for the breach of which the suspended penalty of imprisonment may be ordered executed;

(h) "sentence" means not only the penalty imposed but also the judgment of conviction in a criminal case or a judgment of acquittal in the same proceeding, or the adjudication of delinquency in a juvenile deliquency proceeding or dismissal of allegations of delinquency in the same proceedings;

한다.

(Added Pub. L. 95—144, §1, Oct. 28, 91 Stat. 1212.)

제4101조 (正義)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

① "二重犯罪性"이라 함은 犯罪人의 引渡時에 그가 선고를 받은 犯罪가 引渡國家에서 犯罪이고 인도받는 국가에서도 범죄임을 의미한다. 聯邦政府形態를 취하는 國家에 대해서는 어느 행위가 聯邦法律이나 州 혹은 州의 地方法律下에서 범죄가 된다면 그 행위는 그 국가에서 범죄로 간주한다.

② "自由刑"이라 함은 個人을 施設에 拘禁시키는 法院이 부과하는 刑을 의미한다.

③ "少年"이라 함은

1. 18세이하의 자 또는
2. 少年犯罪行爲로 인하여 이 편 제403장에 의한 節次와 處決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21세 이하의 자를 의미한다.

④ "少年犯罪"라 함은

1. 少年이 행한 美合衆國, 미합중국의 州 또는 외국의 法律에 대한 違反으로 成人이 행했더라면 犯罪였을 행위 또는
2. 미합중국, 미합중국의 州 또는 관련된 외국의 少年關係機關에 의한 監視나 處遇가 부과된 少年에 의한 非犯罪行爲를 의미한다.

⑤ "犯人"이라 함은 범죄행위로 有罪判決을 받았거나 少年犯罪行爲를 행했다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

⑥ "假釋放"이라 함은 釋放當局이 부과하는 條件과 그의 監視에 의거하여 범죄인을 그의 刑期滿了 이전에 석방당국이 拘禁으로부터 社會에로 석방하는 諸形態를 의미한다.

⑦ "保護觀察"이라 함은 刑의 執行이 猶豫되는 제형태의 自由刑의 宣告를 의미하며, 범죄인은 監視下에 그리고 條件에 따라 自由를 享有할 수 있으며, 조건의 위반시에는 猶豫되었던 자유형의 執行을 명할 수 있다.

⑧ "宣告"라 함은 刑事事件에서 부과된 刑과 有罪의 判決이나 同 訴訟에서의

(i) "State" means any State of the United States, the District of Columbia, the Commonwealth of Puerto Rico, and any territory or possession of the United States;

(j) "transfer" means a transfer of an individual for the purpose of the execution in one country of a sentence imposed by the courts of another country; and

(k) "treaty" means a treaty under which an offender sentenced in the courts of one country may be transferred to the country of which he is a citizen or national for the purpose of serving the sentence.

(Added Pub.L. 95-144, § 1, Oct. 28, 1977, 91 Stat. 1213.)

§ 4102. Authority of the Attorney General

The Attorney General is authorized—

(1) to act on behalf of the United States as the authority referred to in a treaty;

(2) to receive custody of offenders under a sentence of imprisonment, on parole, or on probation who are citizens or nationals of the United States transferred from foreign countries and as appropriate confine them in penal or correctional institutions, or assign them to the parole or probation authorities for supervision;

(3) to transfer offenders under a sentence of imprisonment, on parole, or on probation to the foreign countries of which they are citizens or nationals,

(4) to make regulations for the proper implementation of such treaties in accordance with this chapter and to make regulations to implement this chapter;

(5) to render to foreign countries and to receive from them the certifications and reports required to be made under such treaties;

(6) to make arrangements by agreement with the States for the transfer of offenders in their custody who are citizens or nationals of foreign countries to the foreign countries of which they are citizens or nationals and for the confinement, where appropriate, in State institutions of offenders transferred to the United States;

(7) to make agreements and establish regulations for the transportation through the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of offenders convicted in a foreign country who are being transported to a third country for the execution of their sentences, the expenses of which shall be paid by the country requesting the transportation;

(8) to make agreements with the appropriate authorities of a foreign country and to issue regulations for the transfer and treatment of juveniles who

無罪의 判決 또는 소년범죄소송에서의 유죄판결 또는 동 訴訟上의 犯罪主張의 却下를 의미한다.

⑨ "州"라 함은 미합중국의 各州, 콜롬비아特別區, 푸에르토리코연방과 미합중국의 모든 領土와 屬領을 의미한다.

⑩ "引渡"라 함은 한 국가에서 他國의 法院이 과한 宣告를 집행할 목적으로 개인을 移送하는 것을 의미한다.

⑪ "條約"이라 함은 一國의 法院에서 宣告를 받은 犯罪人이 선고의 집행를 받기 위하여 그의 市民權 또는 國籍國家로 引渡될 수 있는 조약을 의미한다.
(Added Pub. L. 95—144, §1, Oct, 28, 1977, 91 Stat. 1213.)

제4102조 (法務長官의 權限) 법무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條約上 관계당국으로서 美合衆國을 代表하여 행위한다.
2. 미합중국의 市民이나 國民으로서 自由刑의 宣告를 받았거나 假釋放 또는 保護觀察中이며, 외국으로부터 인도된 犯罪者에 대한 管理를 인수하고, 그를 적절하게 矯正施設에 拘禁하거나 監視를 위하여 가석방당국 또는 보호관찰당국에 인계한다.
3. 自由刑의 선고를 받았거나 假釋放 또는 保護觀察 중인 범죄인을 그의 市民權 있는 국가나 國籍國家로 인도한다.
4. 이 장에 의거하여 그러한 條約의 적절한 履行을 위한 規則을 제정하고, 이 장을 이행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한다.
5. 條約에 따라 요구되는 證明書와 報告書를 외국에 교부하고 외국으로부터 접수한다.
6. 州의 拘禁下에 있는 外國市民이거나 국민인 犯罪人을 그의 市民權 있는 국가나 國籍國家로 인도하고, 미합중국으로 인도된 범죄인을 적절하게 州의 施設에 拘禁하기 위하여 協約에 따라 諸州와 협의한다.
7. 외국에서 有罪判決을 받고 宣告의 執行을 위해 제3의 국가로 移送 중인 범죄인의 미합중국 領土通過 移送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규칙을 제정한다. 移送通過의 비용은 移送을 要求하는 국가가 지급한다.
8. 條約에 따라 引渡되는 少年의 引渡와 處遇에 대하여 외국의 管轄當局과

are transferred pursuant to treaty, the expenses of which shall be paid by the country of which the juvenile is a citizen or national;

(9) in concert with the Secretary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to make arrangements with the appropriate authorities of a foreign country and to issue regulations for the transfer and treatment of individuals who are accused of an offense but who have been determined to be mentally ill; the expenses of which shall be paid by the country of which such person is a citizen or national;

(10) to designate agents to receive, on behalf of the United States, the delivery by a foreign government of any citizen or national of the United States being transferred to the United States for the purpose of serving a sentence imposed by the courts of the foreign country, and to convey him to the place designated by the Attorney General. Such agent shall have all the powers of a marshal of the United States in the several districts through which it may be necessary for him to pass with the offender, so far as such power is requisite for the offender's transfer and safekeeping; within the territory of a foreign country such agent shall have such powers as the authorities of the foreign country may accord him;

(11) to delegate the authority conferred by this chapter to officers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Added Pub.L. 95-144, § 1, Oct. 28, 1977, 91 Stat. 1214.)

§ 4103. Applicability of United States laws

All laws of the United States, as appropriate, pertaining to prisoners, probationers, parolees, and juvenile offenders shall be applicable to offenders transferred to the United States, unless a treaty or this chapter provides otherwise.

(Added Pub.L. 95-144, § 1, Oct. 28, 1977, 91 Stat. 1215.)

§ 4104. Transfer of offenders on probation

(a) Prior to consenting to the transfer to the United States of an offender who is on probation, the Attorney General shall determine that the appropriat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is willing to undertake the supervision of the offender.

(b) Upon the receipt of an offender on probation from the authorities of a foreign country, the Attorney General shall cause the offender to be brought before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which is to exercise supervision over the offender.

(c) The court shall place the offender under supervision of the probation officer of the court. The offender shall be supervised by a probation officer, under such conditions as are deemed appropriate by the court as though proba-

協約을 체결하고 규칙을 제정한다. 그 비용은 소년의 市民權이 있는 국가 또는 國籍國家가 지급한다.

9. 犯罪로 인하여 起訴되었으나 精神疾患者로 판명된 자의 引渡와 處遇에 대하여 保健·敎育·福祉長官과 협의하여 외국의 관계당국과 協定을 締結하고 規則을 제정한다. 費用은 그의 시민권이 있는 국가 또는 국적국가가 지불한다.

10. 외국의 法院이 과한 宣告를 執行할 목적으로 미합중국으로 引渡 중인 미합중국의 市民이나 國民을 미합중국을 代表하여 외국으로부터 인수하고, 그를 법무장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移送할 職員을 지명한다. 상기의 직원은 범죄인과 同行해야 할 필요가 있는 몇몇 區域에서는 그 범죄인의 移送과 戒護를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미합중국 執行官의 모든 權限을 가진다. 외국의 領土內에서 상기의 職員은 외국의 당국이 그에게 부여한 권한을 가진다.

11. 이 장에 의해 부여된 權限을 法務省의 직원에게 委任한다.

(Added Pub. L. 95—144, §1, Oct. 28, 1977, 91 Stat. 1214.)

제4103조 (美合衆國 法律의 適用可能性) 受刑者, 保護觀察 중인 자, 假釋放者와 少年犯에 관한 미합중국의 모든 법률은 條約이나 이 장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에 引渡된 犯罪人에게 적용한다.

(Added Pub. L. 95—144, §1, Oct. 28, 1977, 91 Stat. 1215.)

제4104조 (保護觀察 중인 犯罪人의 引渡) ① 法務長官은 保護觀察 중인 범죄인을 미합중국으로 引渡하는데 同意하기에 앞서, 미합중국의 관할 地方法院이 그 범죄인에 대한 監視를 담당할 意思가 있음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외국의 당국으로부터 保護觀察官 중인 범죄인을 인계받은 때에 法務長官은 그 범죄인을 그에 대한 감시를 수행할 미합중국 지방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法院은 그 犯罪人을 법원의 保護觀察官의 감시하에 둔다. 그 범죄인은 미합중국 지방법원에 의해 保護觀察이 선고된 것과 마찬가지로 法院이 적절하다

tion had been imposed by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d) The probation may be revoked in accordance with section 3653 of this title and rule 32(f) of the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A violation of the conditions of probation shall constitute grounds for revocation. If probation is revoked the suspended sentence imposed by the sentencing court shall be executed.

(e) The provisions of sections 4105 and 4106 of this title shall be applicable following a revocation of probation.

(f) Prior to consenting to the transfer from the United States of an offender who is on probation, the Attorney General shall obtain the assent of the court exercising jurisdiction over the probationer.

(Added Pub.L. 95-144, § 1, Oct. 28, 1977, 91 Stat. 1215.)

§ 4105. Transfer of offenders serving sentence of imprisonment

(a) Except as provided elsewhere in this section, an offender serving a sentence of imprisonment in a foreign country transferred to the custody of the Attorney General shall remain in the custody of the Attorney General under the same conditions and for the same period of time as an offender who had been committed to the custody of the Attorney General by a court of the United States for the period of time imposed by the sentencing court.

(b) The transferred offender shall be given credit toward service of the sentence for any days, prior to the date of commencement of the sentence, spent in custody in connection with the offense or acts for which the sentence was imposed.

(c) (1) The transferred offender shall be entitled to all credits for good time, for labor, or any other credit toward the service of the sentence which had been given by the transferring country for time served as of the time of the transfer. Subsequent to the transfer, the offender shall in addition be entitled to credits for good time, computed on the basis of the time remaining to be served at the time of the transfer and at the rate provided in section 4161 of this title for a sentence of the length of the total sentence imposed and certified by the foreign authorities. These credits shall be combined to provide a release date for the offender pursuant to section 4164 of this title.

(2) If the country from which the offender is transferred does not give credit for good time, the basis of computing the deduction from the sentence shall be the sentence imposed by the sentencing court and certified to be served upon transfer, at the rate provided in section 4161 of this title.

(3) A transferred offender may earn extra good time deductions, as authorized in section 4162 of this title, from the time of transfer.

(4) All credits toward service of the sentence, other than the creidt for time

고 간주하는 조건하에서 保護觀察官의 감시를 받는다.

④ 保護觀察官은 이 편의 제3653조와 聯邦 刑事訴訟規則 제32조(f)에 의거하여 取消될 수 있다. 보호관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宣告法院이 부과한 猶豫된 刑이 집행된다.

⑤ 保護觀察의 取消에 따라 이 편의 제4105조와 제4106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⑥ 法務長官은 보호관찰 중인 犯罪人의 미합중국으로부터의 引渡에 대하여 同意하기에 앞서, 그 자에 대한 管轄權을 수행하는 法院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Added Pub. L. 95—144, §1, Oct. 28, 1977, 91 Stat. 1215.)

제4105조 (自由刑의 宣告를 服役하는 犯罪人의 引渡) ① 이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에서 自由刑의 宣告를 받고 引渡되어 法務長官下에 拘禁된 범죄인은 宣告法院이 명한 기간동안 미합중국의 法院에 의하여 법무장관의 保護下에 구금된 犯罪人과 동일한 條件下에서 그리고 동일한 기간동안 법무장관에 의하여 구금된다.

② 引渡된 범죄인은 刑執行開始日前에 범죄행위 또는 刑이 宣告된 行爲와 관련하여 拘禁되었던 日数를 형집행에서 공제받는다.

1. 引渡된 범죄인은 善時와 勞動에 대한 모든 控除를 받을 權利가 있으며, 引渡時에 이미 執行된 期間에 대하여 引渡國家가 행한 宣告執行에서 공제받을 權利가 있다. 인도후에 그 범죄인은 또한 외국당국에 의하여 賦課되고 證明된 전 宣告期間의 집행에 대하여 이 편 제4161조에 규정된 比率에 따라서 그리고 引渡時에 미집행된 기간에 기초하여 계산된 善時控除를 추가로 받을 權利가 있다. 이 공제는 이 편 제4164조에 의한 범죄인의 釋放日을 算定하는데 포함한다.
2. 犯罪人을 인도한 국가가 善時控除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편 제4161조에 규정된 比率에 따라 宣告法院이 부과하고 引渡時 執行이 證明된 선고를 減刑計算의 기초로 삼는다.
3. 引渡된 犯罪人은 인도시로부터 이 편 제416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밖의 善時控除를 받을 수 있다.
4. 宣告前의 拘禁期間에 대한 控除를 제외하고 선고된 刑의 執行에 대한 모

in custody before sentencing, may be forfeited as provided in section 4165 of this title and may be restored by the Attorney General as provided in section 4166 of this title.

(5) Any sentence for an offense against the United States, imposed while the transferred offender is serving the sentence of imprisonment imposed in a foreign country, shall be aggregated with the foreign sentence, in the same manner as if the foreign sentence was one imposed by a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an offense against the United States.

(Added Pub.L. 95-144, § 1, Oct. 28, 1977, 91 Stat. 1215.)

§ 4106. Transfer of offenders on parole; parole of offenders transferred

(a) Upon the receipt of an offender who is on parole from the authorities of a foreign country, the Attorney General shall assign the offender to the United States Parole Commission for supervision.

(b) The United States Parole Commission and the Chairman of the Commission shall have the same powers and duties with reference to an offender transferred to the United States to serve a sentence of imprisonment or who at the time of transfer is on parole as they have with reference to an offender convicted in a court of the United States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chapter or in the pertinent treaty. Sections 4201 through 4204; 4205(d), (e), and (h); 4206 through 4216; and 4218 of this title shall be applicable.

(c) An offender transferred to the United States to serve a sentence of imprisonment may be released on parole at such time as the Parole Commission may determine.

(Added Pub.L. 95-144, § 1, Oct. 28, 1977, 91 Stat. 1216.)

§ 4107. Verification of consent of offender to transfer from the United States

(a) Prior to the transfer of an offender from the United States, the fact that the offender consents to such transfer and that such consent is voluntary and with full knowledge of the consequences thereof shall be verified by a United States magistrate or a judge as defined in section 451 of title 28, United States Code.

(b) The verifying officer shall inquire of the offender whether he understands and agrees that the transfer will be subject to the following conditions.

(1) only the appropriate courts in the United States may modify or set aside the conviction or sentence, and any proceedings seeking such action may only be brought in such courts;

든 공제는 이 편 제416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박탈될 수 있으며, 이 편 제416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法務長官이 회복시킬 수 있다.

5. 引渡된 犯罪人이 외국에서 선고된 自由刑의 執行을 받고 있는 동안에 美合衆國에 대한 犯罪로 인하여 받은 宣告는 그 外國의 宣告가 미합중국에 대한 범죄로 미합중국 地方法院에서 宣告된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외국의 선고에 합산한다.

(Added Pub. L. 95—144, §1, Oct. 28, 1977, 91 Stat. 1215.)

제4106조 (假釋放 중인 犯罪人의 引渡, 引渡된 犯罪人의 假釋放) ① 假釋放 중인 犯罪人을 외국의 당국으로부터 引受한 경우에 法務長官은 監視를 위하여 그 범죄인을 미합중국 가석방위원회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미합중국 假釋放委員會와 동 委員會의 長은 自由刑의 執行을 받기 위하여 미합중국으로 引渡된 犯罪人에 대하여 또는 인도시에 假釋放 중에 있는 범죄인에 대하여는 이 장이나 관련 條約에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합중국 法院에서 有罪判決을 받은 범죄인에 대한 경우와 동일한 權限과 義務가 있다. 이 편의 제4201조 내지 제4204조 , 제4205조 제4항, 제5항, 제8항, 제4206조 내지 제4216조 그리고 제4218조가 준용된다.

③ 自由刑의 執行을 받기 위하여 미합중국으로 引渡된 犯罪人은 가석방위원회가 결정하는 時期에 假釋放될 수 있다.

(Added Pub. L. 195—144, §1, Oct. 28, 1977, 91 Stat. 1216.)

제4107조 (美合衆國으로부터의 引渡에 대한 범죄인의 同意의 證明) ① 미합중국으로부터 범죄인을 引渡하기에 앞서, 범죄인이 引渡에 同意한다는 사실과 그러한 同意가 自發的이며, 그 결과에 대하여 충분히 認知하고서 행한 것이라는 사실이 미합중국법령집 제28편 제4151조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미합중국 治安判事나 法官에 의하여 證明되어야 한다.

② 證明擔當官은 다음과 같은 條件에 의해 引渡된다는 사실을 범죄인이 理解하고 同意하는가의 여부를 범죄인에게 質疑하여야 한다.

1. 미합중국의 管轄法院만이 有罪判決 혹은 宣告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2) the sentence shall be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laws of the country to which he is to be transferred and that those laws are subject to change;

(3) if a court in the country to which he is transferred should determine upon a proceeding initiated by him or on his behalf that his transfer was not accomp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treaty or laws of that country, he may be returned to the United States for the purpose of completing the sentence if the United States requests his return; and

(4) his consent to transfer, once verified by the verifying officer, is irrevocable.

(c) The verifying officer, before determining that an offender's consent is voluntary and given with full knowledge of the consequences, shall advise the offender of his right to consult with counsel as provided by this chapter. If the offender wishes to consult with counsel before giving his consent, he shall be advised that the proceedings will be continued until he has had an opportunity to consult with counsel.

(d) The verifying officer shall make the necessary inquiries to determine that the offender's consent is voluntary and not the result of any promises, threats, or other improper inducements, and that the offender accepts the transfer subject to the conditions set forth in subsection (b). The consent and acceptance shall be on an appropriate form prescribed by the Attorney General.

(e) The proceedings shall be taken down by a reporter or recorded by suitable sound recording equipment. The Attorney General shall maintain custody of the records.

(Added Pub.L. 95-144, § 1, Oct. 28, 1977, 91 Stat. 1216.)

§ 4108. Verification of consent of offender to transfer to the United States

(a) Prior to the transfer of an offender to the United States, the fact that the offender consents to such transfer and that such consent is voluntary and with full knowledge of the consequences thereof shall be verified in the country in which the sentence was imposed by a United States magistrate, or by a citizen specifically designated by a judge of the United States as defined in section 451 of title 28, United States Code. The designation of a citizen who is an employee or officer of a department or agency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있으며, 그러한 決定을 요청하는 모든 訴訟節次는 그 법원에서만 수행될 수 있다.

2. 宣告는 그가 引渡될 國家의 法律에 따라서 그리고 그 법률이 변경되는 바에 따라서 집행된다.
3. 그가 引渡될 국가의 法院이 범죄인 또는 그의 代理人에 의하여 開始된 訴訟에서 條約이나 그 국가의 법률에 따르면 그의 引渡가 終了된 것이 아니라고 결정한다면, 그는 美合衆國이 그의 歸還을 요구한 경우에는 宣告를 執行할 목적으로 미합중국으로 귀환될 수 있다.
4. 引渡에 대한 그의 同意는 證明擔當官이 일단 증명한 경우에는 取消할 수 없다.

③ 證明擔當官은 범죄인의 동의가 自發的이고 결과에 대하여 충분히 認知하고 행하여졌음을 확정하기 이전에, 이 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범죄인에게 그의 辯護人接見權을 고지하여야 한다. 범죄인이 同意에 앞서 辯護人과의 接見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가 辯護人을 접견할 機會가 있을 때까지 訴訟은 계속될 것임을 犯罪人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證明擔當官은 범죄인의 同意가 어떤 約束 · 脅迫 기타 부적절한 欺罔의 결과가 아니고 자발적이라는 점, 그리고 범죄인이 제2항에서 열거한 條件에 의한 引渡를 승낙한다는 점을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행한다. 동의와 승낙은 법무장관이 정하는 소정양식에 의한다.

⑤ 訴訟은 判決記錄員이 기록하거나 적당한 음향녹음장치로 녹음한다. 法務長官이 기록을 보관한다.

(Added Pub. L. 95—144, §1, Oct. 28, 1977, 91 Stat. 1216.)

제4108조 (美合衆國으로의 引渡에 대한 犯罪人의 同意의 證明) ① 美合衆國이 범죄인을 引受하기에 앞서, 범죄인이 引渡에 同意한다는 사실과, 그러한 동의가 自發的이고 그 결과에 대해 충분히 認知하고 행해졌다는 사실이 宣告가 행해진 國家에서 미합중국 治安判事에 의하여 또는 미합중국법령집 제28편 제451조에 규정된 미합중국 法官이 특별히 선정한 市民에 의해 證明되어야 한다. 미합중국의 省이나 機関의 雇傭人 또는 職員인 市民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당

with the approval of the head of that department or agency.

(b) The verifying officer shall inquire of the offender whether he understands and agrees that the transfer will be subject to the following conditions:

(1) only the country in which he was convicted and sentenced can modify or set aside the conviction or sentence, and any proceedings seeking such action may only be brought in that country;

(2) the sentence shall be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and that those laws are subject to change;

(3) if a United States court should determine upon a proceeding initiated by him or on his behalf that his transfer was not accomp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treaty or laws of the United States, he may be returned to the country which imposed the sentence for the purpose of completing the sentence if that country requests his return; and

(4) his consent to transfer, once verified by the verifying officer, is irrevocable.

(c) The verifying officer, before determining that an offender's consent is voluntary and given with full knowledge of the consequences, shall advise the offender of his right to consult with counsel as provided by this chapter. If the offender wishes to consult with counsel before giving his consent, he shall be advised that the proceedings will be continued until he has had an opportunity to consult with counsel.

(d) The verifying officer shall make the necessary inquiries to determine that the offender's consent is voluntary and not the result of any promises, threats, or other improper inducements, and that the offender accepts the transfer subject to the conditions set forth in subsection (b). The consent and acceptance shall be on an appropriate form prescribed by the Attorney General.

(e) The proceedings shall be taken down by a reporter or recorded by suitable sound recording equipment. The Attorney General shall maintain custody of the records.

(Added Pub.L. 95-144, § 1, Oct. 28, 1977, 91 Stat. 1217.)

§ 4109. Right to counsel, appointment of counsel

In proceedings to verify consent of an offender for transfer, the offender shall

해 機関長의 承認이 있어야 한다.

② 證明擔當官은 다음의 조건에 의하여 引渡된다는 사실을 犯罪人이 理解하고 同意하는가 여부를 그 범죄인에게 質疑하여야 한다.

1. 그에게 有罪判決과 宣告를 행한 國家만이 그 유죄판결이나 선고를 변경하거나 取消할 수 있으며 그러한 決定을 要求하는 모든 訴訟節次는 당해 국가에서만 遂行될 수 있다.
2. 선고는 미합중국 법률에 따라서 그리고 그 법률이 변경되는 바에 따라서 집행된다.
3 미합중국 法院이 그 자 혹은 그의 代理人에 의하여 開始된 訴訟에서 條約이나 미합중국의 法律에 따르면 그의 引渡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고 決定한다면 그는 宣告를 한 國家가 그의 歸還을 要求할 경우에는 宣告를 執行할 目的으로 당해 국가로 귀환될 수 있다;
4. 引渡에 대한 그의 同意는 證明擔當官이 일단 證明한 경우에는 取消할 수 없다.

② 證明擔當官은 범죄인의 同意가 자발적이고 結果에 대하여 충분히 認知하고 행해졌음을 확정하기 이전에, 이 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辯護人接見權을 범죄인에게 告知하여야 한다. 犯罪人이 同意에 앞서 辯護人과의 接見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가 辯護人과 접견할 機會를 가질 때까지 訴訟은 계속될 것임을 범죄인에게 告知하여야 한다.

③ 證明擔當官은 범죄인의 同意가 어떤 約束·脅迫 기타 부적절한 의 결과가 아니고 자발적이라는 점, 그리고 범죄인이 제2항에서 열거한 조건에 위한 인도를 한다는 점을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調査를 행한다. 同意와 承諾은 法務長官이 정하는 소정양식에 의한다.

④ 訴訟은 判決記錄員이 기록하거나 적당한 音響錄音裝置로 녹음한다. 법무장관이 기록을 보관한다.

(Added Pub. L. 95—144, §1, Oct. 28, 1977, 91 Stat. 1217.)

제4109조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 辯護人의 選定) 引渡에 대한 범죄인의 同意를 證明하는 절차에 있어 범죄인은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권리가 있다. 범

have the right to advice of counsel. If the offender is financially unable to obtain counsel—

(1) counsel for proceedings conducted under section 4107 shall be appointed in accordance with the Criminal Justice Act (18 U.S.C. 3006A). Such appointment shall be considered an appointment in a misdemeanor case for purposes of compensation under the Act.

(2) counsel for proceedings conducted under section 4108 shall be appointed by the verifying officer pursuant to such regulations as may be prescribed by the Director of the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Courts.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make payments of fees and expenses of the appointed counsel, in amounts approved by the verifying officer, which shall not exceed the amounts authorized under the Criminal Justice Act (18 U.S.C. 3006(a) for representation in a misdemeanor case. Payment in excess of the maximum amount authorized may be made for extended or complex representation whenever the verifying officer certifies that the amount of the excess payment is necessary to provide fair compensation, and the payment is approved by the chief judge of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appropriate circuit. Counsel from other agencies in any branch of the Government may be appointed: *Provided,* That in such cases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pay counsel directly, or reimburse the employing agency for travel and transportation expenses. Notwithstanding section 3324(a) and (b) of title 31, the Secretary may make advance payments of travel and transportation expenses to counsel appointed under this subsection.

(Added Pub.L. 95-144, § 1, Oct. 28, 1977, 91 Stat. 1218, and amended Pub.L. 97-258, § 3(e)(2), Sept. 13, 1982, 96 Stat. 1064.)

§ 4110. Transfer of juveniles

An offender transferred to the United States because of an act which would have been an act of juvenile delinquency had it been committed in the United States or any State thereof shall b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chapter 403 of this title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e relevant treaty or in an agreement pursuant to such treaty between the Attorney General and the authority of the foreign country.

(Added Pub.L. 95-144, § 1, Oct. 28, 1977, 91 Stat. 1218.)

§ 4111. Prosecution barred by foreign conviction

An offender transferred to the United States shall not be detained, prosecuted, tried, or sentenced by the United States, or any State thereof for any offense the prosecution of which would have been barred if the sentence upon which the transfer was based had been by a court of the jurisdiction seeking to prosecute the transferred offender, or if prosecution would have been barred by the laws of the jurisdiction seeking to prosecute the transferred offender if the

죄인이 財政的 事由로 변호인을 選任할 수 없을 때에는—

1. 제4107조에 의거하여 修行되는 訴訟節次를 위한 辯護人은 刑事衡評法(18 U. S. C. 3006 A)에 의하여 선정한다. 그러한 選定은 위의 法에서 補償을 목적으로 하는 輕犯罪事件에서의 선정으로 간주한다.
2. 제4108조에 의거하여 遂行되는 訴訟節次을 위한 辯護人은 미합중국 法院行政處長이 정하는 規則에 의하여 證明擔當官이 선정한다. 國務長官은 선정된 辯護人의 報酬와 費用을 증명담당관이 承認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형사형평법(18. U. S. C. 3006(a))이 경범죄 사건의 訴訟代理에 대하여 인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확대된 또는 複合訴訟代理에 있어서는 證明擔當官이 공정한 報償을 위하여 초과지급액이 필요하다고 證明하고, 미합중국 巡廻抗訴法院의 法院長이 지급이 適正範圍라고 승인한 경우에는 인정된 최고액을 초과하여 지불할 수 있다. 정부산하의 타기관으로부터 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다. 단, 그 경우에는 國務長官이 旅行과 護送의 비용을 변호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그의 고용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1편 제3324조 제1,2항에 관계없이 國務長官은 이 항에 따라 선정된 辯護人에게 여행과 호송의 비용을 선불할 수 있다.

(Added Pub. L. 95—144, § 1, Oct. 28, 1977, 91 Stat. 1218, and amended Pub. L. 97—258, § 3 (e) (2), Sept. 13, 1982, 96 Stat. 1064.)

제4110조 (少年의 引渡) 美合衆國이나 미합중국의 각 州에서 행해졌더라면 少年犯罪가 되었을 범죄인은 關係條約이나 그 조약에 의하여 法務長官과 외국의 관계기관간에 締結된 協約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편의 제403장의 규정에 의한다.

(Added Pub. L. 95—144, § 1, Oct. 28, 1977, 91 Stat. 1218)

제4111조 (外國의 判決에 의하여 禁止되는 訴追) 미합중국으로 引渡된 범죄인은 그를 訴追하려는 管轄法院이 引渡根據가 된 선고를 행하였더라면 訴追가 禁止되었을 犯罪로 인하여 미합중국이나 미합중국 各州에 의하여 拘禁·訴追·裁判 또는 宣告되지 아니한다. 또한 聯邦法院이나 州法院이 引渡의 근거가 된 宣告를 행하였더라면 그 인도된 범죄인을 訴追하려는 管轄地域의 법률에 의하

sentence on which the transfer was based had been issued by a court of the United States or by a court of another State.
(Added Pub.L. 95-144, § 1, Oct. 28, 1977, 91 Stat. 1218.)

§ 4112. Loss of rights, disqualification

An offender transferred to the United States to serve a sentence imposed by a foreign court shall not incur any loss of civil, political, or civic rights nor incur any disqualification other than those which under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r of the State in which the issue arises would result from the fact of the conviction in the foreign country.
(Added Pub.L. 95-144, § 1, Oct, 28, 1977, 91 Stat. 1218.)

§ 4113. Status of alien offender transferred to a foreign country

(a) An alien who is deportable from the United States but who has been granted voluntary departure pursuant to section 1252(b) or section 1254(e) of title 8, United States Code, and who is transferred to a foreign country pursuant to this chapter shall be deemed for all purposes to have voluntarily departed from this country.

(b) An alien who is the subject of an order of deportation from the United States pursuant to section 1252 of title 8, United States Code, who is transferred to a foreign country pursuant to this chapter shall be deemed for all purposes to have been deported from this country.

(c) An alien who is the subject of an order of exclusion and deportation from the United States pursuant to section 1226 of title 8, United States Code, who is transferred to a foreign country pursuant to this chapter shall be deemed for all purposes to have been excluded from admission and deported from the United States.
(Added Pub.L. 95-144, § 1, Oct. 28, 1977, 91 Stat. 1219.)

§ 4114. Return of transferred offenders

(a) Upon a final decision by the courts of the United States that the transfer of the offender to the United States was not in accordance with the treaty or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and ordering the offender released from serving the sentence in the United States the offender may be returned to the country from which he was transferred to complete the sentence if the country in which the sentence was imposed requests his return. The Attorney General shall notify the appropriate authority of the country which imposed the sentence, within ten days, of a final decision of a court of the United States ordering the offender released. The notification shall specify the time within which the sentencing country must request the return of the offender which shall be no longer than

여 起訴가 禁止되었을 경우도 같다.

(Added Pub. L. 95—144, §1, Oct. 28, 1977, 91 Stat. 1218.)

제4112조 (權利의 喪失, 資格喪失) 外國法院이 내린 宣告를 執行하기 위하여 미합중국에 引渡된 犯罪人은 미합중국의 법률 또는 州의 법률에 의할 때 외국에서의 判決事實로부터 연유하는 내용과 다른 어떠한 市民權, 政治的 權利, 公民權의 喪失이나 資格喪失을 당하지 아니한다.

(Added Pub. L. 95—144, §1, Oct. 28, 1977, 91 Stat. 1218.)

제4113조 (外國으로 引渡된 外國人犯罪人의 地位) ① 美合衆國으로부터 追放될 자로서 미합중국법령집 제8편 제1252조(b) 또는 제1254조(e)에 의거하여 任意出國이 허가된 그리고 이 장에 따라 외국으로 引渡된 外國人은 모든 경우에 임의로 出國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미합중국법령집 제8편 제1252조에 의거하여 美合衆國으로부터 追放命令을 받고, 이 장에 따라 외국으로 引渡된 外國人은 모든 경우에 미합중국으로부터 追放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미합중국법령집 제8편 제1226조에 의해 美合衆國으로부터 排斥과 追放命令을 받고 이 장에 의해 外國으로 引渡된 외국인은 모든 경우에 入國許可가 배척되고 미합중국으로부터 追放된 것으로 간주한다.

(Added Pub. L. 95—144, §1, Oct. 28, 1977, 91 Stat. 1219.)

제4114조 (引渡된 犯人의 歸還) ① 미합중국 法院이 범죄인의 미합중국 引受가 條約이나 미합중국의 法律에 의거하지 아니했다는 最終決定을 내리고 그 범죄인에게 미합중국에서의 刑宣告의 執行을 免除한 경우에 그 犯罪人은 선고를 내린 國家가 그의 歸還을 要求할 때에는 宣告의 執行을 위해 引渡한 국가로 歸還될 수 있다. 法務長官은 犯罪人의 釋放을 명한 미합중국 法院의 최종결정을 宣告를 내린 國家의 관할 당국에 10일이내에 通知하여야 한다. 통지에서는 宣告國家가 범죄인의 귀환을 요청해야 할 기간을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한다.

thirty days.

(b) Upon receiving a request from the sentencing country that the offender ordered released be returned for the completion of his sentence, the Attorney General may file a complaint for the return of the offender with any justice or judge of the United States or any authorized magistrate within whose jurisdiction the offender is found. The complaint shall be upon oath and supported by affidavits establishing that the offender was convicted and sentenced by the courts of the country to which his return is requested; the offender was transferred to the United States for the execution of his sentence; the offender was ordered released by a court of the United States before he had completed his sentence because the transfer of the offender was not in accordance with the treaty or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and that the sentencing country has requested that he be returned for the completion of the sentence. There shall be attached to the complaint a copy of the sentence of the sentencing court and of the decision of the court which ordered the offender released.

A summons or a warrant shall be issued by the justice, judge or magistrate ordering the offender to appear or to be brought before the issuing authority. If the justice, judge, or magistrate finds that the person before him is the offender described in the complaint and that the facts alleged in the complaint are true, he shall issue a warrant for commitment of the offender to the custody of the Attorney General until surrender shall be made. The findings and a copy of all the testimony taken before him and of all documents introduced before him shall be transmitted to the Secretary of State, that a Return Warrant may issue upon the requisition of the proper authorities of the sentencing country, for the surrender of offender.

(c) A complaint referred to in subsection (b) must be field within sixty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decision ordering the release of the offender becomes final.

(d) An offender returned under this section shall be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the country to which he is returned for all purposes.

(e) The return of an offender shall be conditioned upon the offender being given credit toward service of the sentence for the time spent in the custody of or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United States.

(f) Sections 3186, 3188 through 3191, and 3195 of this title shall be applicable to the return of an offender under this section. However, an offender returned under this section shall not be deemed to have been extradited for any purpose.

(g) An offender whose return is sought pursuant to this section may be admitted to bail or be released on his own recognizance at any stage of the proceedings.

② 釋放이 명해진 범죄인을 宣告의 執行을 위하여 召喚한다는 요청을 宣告國家로부터 접수한 경우에 法務長官은 그자에 대한 管轄權이 있는 미합중국의 判事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治安判事에게 당해 범죄인의 召喚에 대한 申立을 제기할 수 있다. 申立은 宣誓에 의하여야 하며, 그 범죄인이 소환을 요구한 국가의 法院에 의해 有罪判決과 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점 그 범죄인은 刑의 執行을 위하여 美合衆國에 인도되었다는 점 ; 그 범죄인은 그의 引渡가 條約이나 미합중국의 법률에 의거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刑의 執行이 종료하기 전에 미합중국 法院에 의해 釋放이 명해졌다는 점 ; 그리고 宣告를 한 國家가 선고의 집행을 위해 그의 召喚을 要求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陳述書에 의해 立證해야 한다. 申立에는 宣告法院의 判決文 등본과 범죄인의 석방을 명한 法院의 決定의 謄本이 첨부되어야 한다.

犯罪人에게 發付當局에 출석할 것을 명하는 召喚狀이나 令狀은 法官이나 治安判事가 발부한다. 법관이나 치안판사는 출석한 자가 申立에 명기된 범죄인이며 신립에 주장된 사실이 진정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범죄인에 대한 拘禁令狀을 발부하여 身柄引渡가 있을 때까지 法務長官下에 구금한다. 宣告國家의 관할 당국의 要請에 의하여 범죄의 身柄引渡를 위한 歸還令狀을 발부할 수 있도록 법관앞에서 행한 모든 證言의 謄本과 그에게 제출된 모든 기록의 謄本과 判決文이 국무장관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규정된 申立은 犯罪人의 석방을 명하는 決定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이 조에 의하여 召喚된 범죄인은 모든 경우에 그를 소환한 국가의 管轄權에 귀속된다.

⑤ 犯罪人의 召喚은 미합중국의 拘禁이나 監視下에 있었던 기간을 宣告의 執行에서 공제한다는 조건에 의한다.

⑥ 이 편의 제3186조, 제3188내지 3191조와 제3195조는 이 조에 의한 범죄인의 소환에 준용한다. 단, 이 조에 의하여 召喚된 범죄인은 어느 경우에도 引渡된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⑦ 이 조에 의거하여 召喚되는 犯罪人은 각 訴訟段階에서 자신의 保證金으로

(Added Pub.L. 95-144, § 1, Oct. 28, 1977, 91 Stat. 1219.)

§ 4115. Execution of sentences imposing an obligation to make restitution or reparations

If in a sentence issued in a penal proceeding of a transferring country an offender transferred to the United States has been ordered to pay a sum of money to the victim of the offense for damage caused by the offense, that penalty or award of damages may be enforced as though it were a civil judgement rendered by a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Proceedings to collect the moneys ordered to be paid may be instituted by the Attorney General in any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Moneys recovered pursuant to such proceedings shall be transmitted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o the treaty authority of the transferring country for distribution to the victim.
(Added Pub.L. 95-144, § 1, Oct, 28, 1977, 91 Stat. 1220.)

CHAPTER 307 EMPLOYMENT

§ 4121. Federal Prison Industries; board of directors

"Federal Prison Industries", a government corporation of the District of Columbia, shall be administered by a board of six directors, appointed by the President to serve at the will of the President without compensation.

The directors shall be representative of (1) industry, (2) labor, (3) agriculture, (4) retailers and consumers, (5) the Secretary of Defense, and (6) the Attorney General, respectively.
(June 25, 1948, c. 645, 62 Stat. 851; May 24, 1949, c. 139, § 62, 63, Stat. 98.)

§ 4122. Administration of Federal Prison Industries

(a) Federal Prison Industries shall determine in what manner and to what extent industrial operations shall be carried on in Federal penal and correc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duction of commodities for consumption in such institutions or for sale to the departments or agencies of the United States, but not for sale to the public in competition with private enterprise.

(b) Its board of directors shall provide employment for all physically fit inmates in the United States penal and correctional institutions, diversify, so far as practicable, prison industrial operations and so operate the prison shops that no single private industry shall be forced to bear an undue burden of competi-

保釋이나 釋放의 許可를 받을 수 있다.

(Added Pub. L. 95—144, §1, Oct. 28, 1977, 91 Stat. 1219.)

제4115조 (返還이나 賠償義務를 賦課하는 宣告의 執行) 美合衆國으로 引渡된 범죄인이 인도한 국가의 刑事訴訟에서 받은 선고에서 犯罪의 被害者에게 범죄로 인해 야기된 損害에 대한 賠償金支拂命令을 받았을 경우에 그 刑罰 또는 損害賠償은 미합중국의 地方法院이 행한 民事判決과 동일하게 집행될 수 있다. 支給이 命해진 금액의 徵收節次는 미합중국의 지방법원에서 法務長官이 수행한다. 그 節次에 따라 徵收된 금액은 被害者에 대한 分配를 위하여 外交的 經路를 통하여 인도한 국가의 條約當局에 전달되어야 한다.

(Added Pub. L. 95—144, §1, Oct. 28, 1977, 91 Stat. 1220.)

제307장 雇 傭

제4121조 (聯邦矯導作業, 管理者委員會) 콜롬비아 特別區 政府法人인 "聯邦矯導作業"은 大統領의 意思에 따라 근무하도록 대통령이 報酬없이 任命하는 6인의 管理者委員會가 관리한다.

관리자는 ①산업계 ②노동계 ③농업 ④소매상인과 소비자 ⑤국방장관 ⑥법무장관 각각의 대표자로 구성된다.

(Added 25, 1948, c.645, 62 Stat. 851; May 24, 1949, c. 139, §62, 63 Stat. 98.)

제4122조 (聯邦矯導作業의 管理) ① 聯邦矯導作業은 聯邦矯正施設 내에서의 消費 또는 미합중국의 各省과 산하기관에의 販賣를 위한 商品을 生産하기 위하여 연방교정시설 내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얼마만큼 産業的 運營을 수행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단, 私企業과 경쟁하여 國民에 대한 판매는 할 수 없다.

② 聯邦矯導作業의 管理者委員會는 미합중국의 교정시설내의 肉體的 能力이 있는 모든 수용자를 고용하고, 實用的인 限度에서 矯導作業의 運營을 다양하

tion from the products of the prison workshops, and to reduce to a minimum competition with private industry or free labor.

(c) Its board of directors may provide for the vocational training of qualified inmates without regard to their industrial or other assignments.

(d) (1)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shall apply to the industrial a emp ment and training of prisoners convicted by general courts-martial and confir in any institution under the jurisdiction of any department or agency compri sing the Department of Defense, to the extent and under terms and conditions agreed upon by the Secretary of Defense, the Attorney General and the Board of Directors of Federal Prison Industries.

(2) Any department or agency of the Department of Defense may, without exchange of funds, transfer to Federal Prison Industries any property or equipment suitable for use in performing the functions and duties covered by agreement entered into under paragraph (1) of this subsection.

(e) (1)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shall apply to the industrial employment and training of prisoners confined in any penal or correctional institution under the direction of the Commissioner of the District of Columbia to the extent and under terms and conditions agreed upon by the Commissioner, the Attorney General, and the Board of Directors of Federal Prison Industries.

(2) The Commissioner of the District of Columbia may, without exchange of funds, transfer to the Federal Prison Industries any property or equipment suitable for use in performing the functions and duties covered by an agreement entered into under subsection (e)(1) of this section.

(3) Nothing in this chapter shall be construed to affect the provisions of the Act approved October 3, 1964 (D.C. Code, sections 24-451 et seq.), entitled "An Act to establish in the Treasury a correctional industries fund for the government of the District of Columbia, and for other purposes."

(June 25, 1948, c. 645, 62 Stat. 851; May 24, 1949, c. 139, § 63, 63 Stat. 98; Oct. 31, 1951, c.655, § 31, 65 Stat. 722; Dec. 27, 1967, Pub.L. 90-226, Title VIII, § 802, 81 Stat. 741.)

§ 4123. New industries

Any industry established under this chapter shall be so operated as not to curtail the production of any existing arsenal, navy yard, or other Government workshop.

Such forms of employment shall be provided as will give the inmates of all

게 하며, 어떤 私企業도 교도소공장의 生産品으로 인하여 부당한 競爭의 負擔을 감수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私企業이나 自由勞動者와의 경쟁을 극소화 하도록 矯導作業을 경영하여야 한다.

③ 聯邦矯導作業의 관리자위원회는 資格있는 在所者에게 그들의 作業上 또는 기타 割當業務와 관계없이 職業訓練을 시킬 수 있다.

④ 1. 이 장의 규정은 國防長官, 法務長官과 연방교도작업의 관리자위원회가 合議한 範圍와 期間, 條件에 의거하여 普通軍事法院에서 有罪判決을 받고 各省 또는 國防省 산하기관의 관할하에 있는 시설에 拘禁된 수형자의 作業就業과 訓練에 대하여 준용한다.

2. 各省과 國防省 산하기관은 이 항의 1.문에 따라 이루어진 合議에 의한 役割과 義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財産이나 設備를 財源의 교환없이 연방교도작업에 이전시킬 수 있다.

⑤ 1. 이 장의 규정은 콜롬비아特別區의 長官, 法務長官, 聯邦矯導作業의 관리자위원회가 合意한 범위와 기간, 조건에 의거하여 콜롬비아 특별구장관의 감독하에 있는 矯正施設에 拘禁된 수형자의 作業就業과 訓練에 준용한다.

2. 콜롬비아 특별구장관은 이 조의 제5항 1문에 따라 이루어진 合議에 의한 役割과 義務를 수행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財産이나 設備를 財源의 교환없이 연방교도작업에 이전시킬 수 있다.

3. 이 장의 규정은 "콜롬비아 특별구정부와 기타 다른 목적을 위한 矯正作業基金을 國庫에 적립하기 위한 法律"이라 命命된 1964년 10월 3일 승인된 법률의 규정에 해석상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June 25, 1948, c. 645, 62 Stat. 851; May 24, 1949, c. 139, § 63, 63 Stat. 98; Oct. 31, 1951, c. 655, § 31, 65 Stat. 722; Dec. 27, 1967, Pub. L. 90—226, Title Ⅷ, § 802, 81 Stat. 741.)

제4123조 (新種作業) 이 장에 의거하여 新設된 作業은 기존의 兵器工場, 海軍工廠 또는 기타 政府工場의 생산을 削減시키도록 운영되어서는 아니된다. 釋放 후의 生計마련의 수단을 제공할 職業上의 知識과 技術을 습득할 수 있는

Federal penal and correctional institutions a maximum opportunity to acquire a knowledge and skill in trades and occupations which will provide them with a means of earning a livelihood upon release.

The industries may be either within the precincts of any penal or correctional insitution or in any convenient locality where an existing property may be obtained by lease, purchase, or otherwise.
(June 25, 1948, c. 645, 62 Stat. 851.)

§ 4124. Purchase of prison-made products by Federal departments

The several Federal departments and agencies and all other Government institutions of the United States shall purchase at not to exceed current market prices, such products of the industries authorized by this chapter as meet their requirements and may be available.

Disputes as to the price, quality, character, or suitability of such products shall be arbitrated by a board consisting of the Comptroller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the Administrator of General Services, and the President, or their representatives. Their decision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all parties.
(June 25, 1948, c. 645, 62 Stat. 851; Oct. 31, 1951, c. 655, § 32, 65 Stat. 723; Feb. 14, 1984, Pub.L. 98-216, § 3(b)(2), 98 Stat. 6.)

§ 4125. Public works; prison camps

(a) The Attorney General may make available to the heads of the several departments the services of United States prisoners under terms, conditions, and rates mutually agreed upon, for constructing or repairing roads, clearing, maintaining and reforesting public lands, building levees, and constructing or repairing any other public ways or works financed wholly or in major part by funds appropriated by Congress.

(b) The Attorney General may establish, equip, and maintain camps upon sites selected by him elsewhere than upon Indian reservations, and designate such camps as places for confinement of persons convicted of an offense against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c) The expenses of transferring and maintaining prisoners at such camps and of operating such camps shall be paid from the appropriation "Support of United States prisoners", which may, in the discretion of the Attorney General, be reimbursed for such expenses.

(d) As part of the expense of operating such camps the Attorney General is authorized to provide for the payment to the inmates or their dependents such pecuniary earnings as he may deem proper, under such rules and regulations as he may prescribe.

기회를 연방교정시설의 收容者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雇傭形態를 결정하여야 한다.

作業施設은 교정시설의 構內 또는 賃貸借, 買入 기타 방법으로 所有權을 획득할 수 있는 편리한 장소에 세울 수 있다.

(June 25, 1948, c. 645, 62 Stat. 851.)

제4124조 (聯邦政府機関의 矯導作業生産品의 購入) 일부의 聯邦省과 政府機關 및 기타 모든 政府施設은 이 장에 의하여 허가된 作業製品으로서 그들의 需要에 충당하여 이용할 수 있는 生産品을 현재의 市場價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가격으로 구입해야 한다.

生産品의 價格·品質·性質 또는 적합성에 관한 紛爭은 監査院長, 一般調達廳長과 大統領 또는 그들의 代理人으로 구성되는 委員會가 仲裁한다. 그들의 결정은 종국적이며 모든 당사자에게 효력이 있다.

(June 25, 1948, c. 645, 62 Stat. 851 ; Oct. 31, 1951, c. ; 655, § 32, 65 Stat. 723 ; Feb. 14, 1984, Pub. L. 98—216, § 3(b)(2), 98 Stat. 6.)

제4125조 (公共勞役, 受刑者캠프) ① 法務長官은 各省의 長官과 상호 합의한 期間·條件·報酬에 의거하여 道路建設과 補修, 公共土地의 청소와 관리, 再造林, 재방건축 기타 공공도로의 건설과 보수, 그리고 전부 혹은 대부분이 聯邦議會가 책정한 財源으로 충당되는 工事에 대하여 各省의 長官에게 미합중국 在所者의 勞務를 제공할 수 있다.

② 法務長官은 인디언 保護居住를 제외하고는 그가 지정한 敷地에 캠프를 신축하고 설비를 갖추어 관리할 수 있고, 그 캠프를 미합중국 법률에 위반한 범죄로 有罪判決을 받은 자의 拘禁場所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위의 캠프에서의 재소자의 移送과 管理費用 그리고 캠프管理費用은 "미합중국 재소자에 대한 지원"예산에서 지급되며 法務長官의 裁量에 따라 그 費用을 상환할 수 있다.

④ 캠프의 管理費用의 일부로서 法務長官은 그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金錢收入을 그가 제정한 規則과 命令에 의하여 재소자나 그의 扶養者에 대한 지급에

(e) All other laws of the United States relating to the imprisonment, transfer, control, discipline, escape, release of, or in any way affecting prisoners, shall apply to prisoners transferred to such camps.
(June 25, 1948, c. 645, 62 Stat. 852.)

§ 4126. Prison Industries Fund: use and settlement of accounts

All moneys under the control of Federal Prison Industries, or received from the sale of the products or by-products of such Industries, or for the services of federal prisoners, shall be deposited or covered into the Treasury of the United States to the credit of the Prison Industries Fund and withdrawn therefrom only pursuant to accountable warrants or certificates of settlement issued by the General Accounting Office.

All valid claim and obligations payable out of said fund shall be assumed by the corporation.

The corpo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laws generally applicable to the expenditures of the several departments and establishments of the government, is authorized to employ the fund, and any earnings that may accrue to the corporation, as operating capital in performing the duties imposed by this chapter; in the repair, alteration, erection and maintenance of industrial buildings and equipment; in the vocational training of inmates without regard to their industrial or other assignments; in paying, under rules and regulations promulgated by the Attorney General, compensation to inmates employed in any industry, or performing outstanding services in institutional operations, and compensation to inmates or their dependents for injuries suffered in any industry or in any work activity in connection with the maintenance or operation of the institution where confined. In no event shall compensation be paid in a greater amount than that provided in the Federal Employees' Compensation Act.

Accounts of all receipts and disbursements of the corporation shall be rendered to the General Accounting Office for settlement and adjustment, as required by the Comptroller General.

Such accounting shall include all fiscal transactions of the corporation, whether involving appropriated moneys, capital, or receipts from other sources.
(June 25, 1948, c. 645, 62 Stat. 852; May 24, 1949, c. 139, § 64, 63 Stat. 99; Sept. 26, 1961, Pub.L. 87-317, 75 Stat. 681.)

§ 4127. Prison Industries report to Congress

The board of directors of Federal Prison Industries shall make annual reports to Congress on the conduct of the business of the corporation and on the condition of its funds.
(June 25, 1948, c. 645, 62 Stat. 852.)

공할 수 있다.

⑤ 수용자의 拘禁·移送·統制·規律·逃走·釋放에 관한 미합중국의 기타 모든 법률과 어떠한 방법으로든 수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미합중국의 기타 모든 법률은 캠프에 移送된 收容者에게 적용한다.

(June 25, 1948, c. 645, 62 Stat. 852.)

제4126조 (矯導作業基金, 會計의 利用과 決算) 聯邦矯導作業의 統制에 의한 모든 金錢 또는 그 작업의 生産品과 副産物의 판매수입금 또는 연방재소자의 勞務提供으로 받은 收入金은 미합중국 국고의 矯導作業基金 計定에 예치하거나 납부하며, 일반회계사무소가 발행한 處分狀이나 處分證明書에 의해서만 引出할 수 있다. 위의 基金으로부터 支給할 수 있는 모든 有效한 請求權과 債務는 法人이 인수한다.

政府部處와 施設의 支出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에 의거하여 法人은 基金과 法人에 귀속될 수 있는 모든 收入金을 이 장에 의해 부여된 義務의 수행;

矯導作業用 건물과 설비의 補修·代替·건설·管理;

수용자의 作業上 또는 기타 割當作業에 관계없이 수용자에 대한 職業訓練;

작업에 就業된 수용자와 施設의 管理에 현저한 봉사를 행한 收容者에 대하여 法務長官이 발한 命令과 規則에 의한 補償基金 또는 拘禁施設의 관리에 관련된 활동 또는 作業中 입은 災害에 대한 수용자나 그 扶養者에게의 보상지급 등에 운영자본으로 사용할 수 있다.

法人의 모든 收入과 支出의 會計는 監査院長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決算과 定算을 위하여 일반회계사무소에 제출한다. 會計는 지출된 金額, 資本, 타출처로부터의 收入金을 포함하여 모든 會計去來를 포함해야 한다.

(June 25, 1948, c. 645, 62 Stat. 852; May 24, 1949, c. 139, §64, 63 Stat. 99; Sept. 26, 1961, Pub. L. 87—317, 75 Stat. 681.)

제4127조 (聯邦議會에 대한 矯導作業報告) 聯邦矯導作業의 관리자위원회는 당해 法人의 사업감독과 法人基金의 상황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聯邦議會에 보고한다.

(June 25, 1948, c. 645, 62 Stat. 852.)

§ 4128. Enforcement by Attorney General

In the event of any failure of Federal Prison Industries to act, the Attorney General shall not be limited in carrying out the duties conferred upon him by law.

(June 25, 1948, c. 645, 62 Stat. 853.)

CHAPTER 309 GOOD TIME ALLOWANCES

§ 4161. Computation generally

Each prisoner convicted of an offense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confined in a penal or correctional institution for a definite term other than for life, whose record of conduct shows that he has faithfully observed all the rules and has not been subjected to punishment, shall be entitled to a deduction from the term of his sentence beginning with the day on which the sentence commences to run, as follows:

Five days for each month, if the sentence is not less than six months and not more than one year.

Six days for each month, if the sentence is more than one year and less than three years.

Seven days for each month, if the sentence is not less than three years and less than five years.

Eight days for each month, if the sentence is not less than five years and less than ten years.

Ten days for each month, if the sentence is ten years or more.

When two or more consecutive sentences are to be served, the aggregate of the several sentences shall be the basis upon which the deduction shall be computed.

(June 25, 1948, c. 645, 62 Stat. 853; Sept. 14, 1959, Pub.L. 86-259, 73 Stat. 546.)

§ 4162. Industrial good time

A prisoner may, in the discretion of the Attorney General, be allowed deduction from his sentence of not to exceed three days for each month of actual employment in an industry or camp for the first year or any part thereof, and not to exceed five days for each month of any succeeding year or part thereof.

In the discretion of the Attorney General such allowance may also be made to a prisoner performing exceptionally meritorious service or performing duties of outstanding importance in connection with institutional operations.

Such allowance shall be in addition to commutation of time for good conduct, and under the same terms and conditions and without regard to length

제4128조 (法務長官에 의한 施行) 聯邦矯導作業이 업무를 遂行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法務長官은 법률이 그에게 賦與한 義務를 수행하는데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June 25, 1948, c. 645, 62 Stat. 853.)

제309장 善時控除

제4161조 (一般的 計算) 美合衆國에 대한 犯罪로 有罪判決을 받고 無期刑을 제외한 有期刑으로 矯正施設에 拘禁된 모든 수형자는 그의 行狀記錄에 의할 때 그가 모든 規則을 충실히 준수하였고 懲罰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刑執行이 개시된 날로부터 시작하는 그의 刑期를 다음과 같이 控除받을 자격이 있다:

- 6월이상 1년이하의 宣告刑에 대해서는 매월당 5일
- 1년초과 3년미만의 선고형에 대해서는 매월당 6일
- 3년이상 5년미만의 선고형에 대해서는 매월당 7일
- 5년이상 10년미만의 선고형에 대해서는 매월당 8일
- 10년이상의 선고형에 대해서는 매월당 10일
- 두개이상의 수차 執行刑을 服役하는 경우에는 그 수개의 형의 統合을 控除計算의 기초로 한다.

(June 25, 1948, c. 645, 62 Stat. 853; Sept. 14, 1959, Pub. L. 86-259, 73 Stat. 546.)

제4162조 (作業上의 善時) 受刑者는 최초의 일년 또는 일년미만의 기간동안 作業이나 캠프에 실제로 就業된 각 월당 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수를 法務長官의 裁量에 따라 控除받을 수 있다. 차기의 일년 또는 일년미만의 각 월에 대해서는 월당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施設의 運營에 관련하여 특히 功績있는 奉仕를 하였거나 현저히 중요한 義務를 수행한 수형자에 대하여도 法務長官의 裁量에 따라 위의 공제를 인정할 수 있다.

위의 控除는 善行으로 인한 控除와 병행하며, 刑期에 관계없이 동일한 期間과

of sentence.
(Juen 25, 1948, c. 645, 62 Stat. 853.)

§ 4163. Discharge

Except a hereinafter provided a prisoner shall be released at the expiration of his term of sentence less the time deducted for good conduct. A certificate of such deduction shall be entered on the commitment by the warden or keeper. If such release date falls upon a Saturday, a Sunday, or on a Monday which is a legal holiday at the place of confinement, the prisoner may be released at the discretion of the warden or keeper on the preceding Friday. If such release date falls on a holiday which falls other than on a Saturday, Sunday, or Monday, the prisoner may be released at the discretion of the warden or keeper on the day preceding the holiday.
(June 25, 1948, c. 645, 62 Stat. 853; Sept. 19, 1962, Pub.L. 87-665, 76 Stat. 552.)

§ 4164. Released prisoner as parolee

A prisoner having served his term or terms less good-time deductions shall, upon release, be deemed as if released on parole until the expiration of the maximum term or terms for which he was sentenced less one hundred and eighty days.

This section shall not prevent delivery of a prisoner to the authorities of any State otherwise entitled to his custody.
(June 25, 1948, c. 645, 62 Stat. 853; June 29, 1951, c. 176, 65 Stat. 98.)

§ 4165. Forfeiture for offense

If during the term of imprisonment a prisoner commits any offense or violates the rules of the institution, all or any part of his earned good time may be forfeited.
(June 25, 1948, c. 645, 62 Stat. 854.)

§ 4166. Restoration of forfeited commutation

The Attorney General may restore any forfeited or lost good time or such portion thereof as he deems upon recommendation of the Director of the Bureau of Prisons.
(June 25, 1948, c. 645, 62 Stat. 854.)

條件에 의한다.

(June 25, 1948, c. 645, 62 Stat. 853.)

제4163조 (釋放) 이하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형자는 善行으로 控除된 기간을 감한 刑期의 滿了로 석방된다. 控除의 證明은 所長 또는 矯導官이 제출한다. 釋放日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拘禁場所에서 法定公休日인 월요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자는 所長이나 교도관의 裁量에 따라 그 전의 금요일에 釋放될 수 있다. 석방일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이 아닌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所長이나 矯導官의 裁量에 따라 그 공휴일 전일에 석방될 수 있다.

(June 25, 1948, c. 645, 62 Stat. 853; Sept. 19, 1962, Pub. L. 87-665, 76 Stat. 552.)

제4164조 (假釋放으로 釋放된 受刑者) 善時控除만큼 감한 刑期의 執行을 완료한 수형자는 釋放時에 선고된 最大刑期에서 180일을 감한 기간이 滿了할 때까지는 假釋放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조는 그렇지 아니했더라면 그를 拘禁할 權限이 있는 州당국에의 수형자의 引渡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June 25, 1948, c. 645, 62, Stat. 853; June 29, 1951, c. 176, 65 Stat. 98.)

제4165조 (犯罪로 인한 沒收) 수형자가 受刑期間동안 범죄를 행하거나 施設의 規則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가 얻은 善時의 전부 또는 일부를 沒收할 수 있다.

(June 25, 1948, c. 645, 62 Stat. 854.)

제4166조 (沒收된 減刑의 回復) 法務長官은 몰수되었거나 상실되었던 善時 전부 또는 그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善時 일부를 矯正局長의 추천에 의하여 回復시킬 수 있다.

(June 25, 1948, c. 645, 62 Stat. 854.)

CHAPTER 311 PAROLE

§ 4201. Definitions

As used in this chapter—

(1) "Commission" means the United States Parole Commission;

(2) "Commissioner" means any member of the United States Parole Commission;

(3) "Director" means the Director of the Bureau of Prisons;

(4) "Eligible prisoner" means any Federal prisoner who is eligible for parole pursuant to this title or any other law including any Federal prisoner whose parole has been revoked and who is not otherwise ineligible for parole;

(5) "Parolee" means any eligible prisoner who has been released on parole or deemed as if released on parole under section 4164 or section 4205(f); and

(6) "Rules and regulations" means rules and regulations promulgated by the Commission pursuant to section 4203 and section 553 of title 5, United States Code.

(Added Pub.L. 94-233, § 2, Mar. 15, 1976, 90 Stat. 219.)

§ 4202. Parole Commission created

There is hereby established, as an independent agency in the Department of Justice, a United States Parole Commission which shall be comprised of nine members appointed by the President, by and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Senate. The President shall designate from among the Commissioners one to serve as Chairman. The term of office of a Commissioner shall be six years, except that the term of a person appointed as a Commissioner to fill a vacancy shall expire six years from the date upon which such person was appointed and qualified. Upon the expiration of a term of office of a Commissioner, the Commissioner shall continue to act until a successor has been appointed and qualified, except that no Commissioner may serve in excess of twelve years. Commissioners shall be compensated at the highest rate now or hereafter prescribed for grade 18 of the General Schedule pay rates (5 U.S.C. 5332).

(Added Pub.L. 94-233, § 2, Mar. 15, 1976, 90 Stat. 219.)

§ 4203. Powers and duties of the Commission

(a) The Commission shall meet at least quarterly, and by majority vote shall—

(1) promulgate rules and regulations establishing guidelines for the powers enumerated in subsection (b) of this section and such other rules

제311장 假釋放

제4201조 (定義) 이 장에 사용되는 用語—

1. "委員會"라 함은 미합중국 假釋放委員會를 의미한다.
2. "委員"이라 함은 미합중국 가석방위원회의 구성원을 의미한다.
3. "局長"이라 함은 矯正局長은 의미한다.
4. "適合한 受刑者"라 함은 이 편이나 타의 법률에 의하여 假釋放에 적합한 聯邦受刑者를 의미한다. 이미 假釋放이 取消되었으나 그렇지 않았더라면 가석방에 부적합하지 아니하는 연방수형자를 포함한다.
5. "假釋放者"라 함은 가석방되었거나 제4164조 또는 제4165조(6)에 의하여 가석방된 것으로 간주되는 자를 의미한다.
6. "命令과 規則"이라 함은 미합중국법령집 제5편 제553조와 제4203조에 의거하여 委員會가 공포한 명령과 규칙을 의미한다.

(Added Pub. L. 94—233, § 2, Mar. 15, 1976, 90 Stat. 219.)

제4202조 (假釋放의 設立) 上院의 勸告와 同意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命하는 9인의 委員으로 구성되는 미합중국 假釋放委員會를 法務省의 독립기관으로 설립한다. 대통령은 위원 중에서 의장을 1명 지명한다. 委員의 任期는 6년으로 한다. 단, 公席에 새로이 委員으로 任命된 자의 임기는 그가 임명되어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6년으로 만료한다. 委員의 任期가 滿了된 때에는 前任委員은 후임자가 임명되어 資格을 取得할 때까지 계속 업무를 수행한다. 단, 어느 委員도 12년을 초과하여 在職할 수 없다. 위원은 賃金一般一覽表 (5 U. S. C. 5332)의 18등급에 규정된 最高賃金으로 보수를 받는다.

(Added Pub. L. 94—233, § 2, Mar. 15, 1976, 90 Stat. 219)

제4203조 (委員會의 權限과 義務) ① 委員會는 최소 4분의 1의 出席으로 개회하고 過半数 議決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행한다.

1. 이 조 제2항에 열거한 權限에 대한 指針을 정하는 命令과 規則 및 국가의 假釋放政策 이 장의 目的遂行에 필요한 기타의 명령과 규칙을 발한다.

and regulations as are necessary to carry out a national parole policy and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2) create such regions as are necessary to carry out the provisions of the chapter, but in no event less than five; and

(3) ratify, revise, or deny any request for regular, supplemental, or deficiency appropriations, prior to the submission of the requests to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by the Chairman, which requests shall be separate from those of any other agency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b) The Commission, by majority vote, and pursuant to the procedures set out in this chapter, shall have the power to—

(1) grant or deny an application or recommendation to parole any eligible prisoner;

(2) impose reasonable conditions on an order granting parole;

(3) modify or revoke an order paroling any eligible prisoner; and

(4) request probation officers and other individuals, organizations, and public or private agencies to perform such duties with respect to any parolee as the Commission deems necessary for maintaining proper supervision of and assistance to such parolees; and so as to assure that no probation officers, individuals, organizations, or agencies shall bear excessive caseloads.

(c) The Commission, by majority vote, and pursuant to rules and regulations—

(1) may delegate to any Commissioner or commissioners powers enumerated in subsection (b) of this section;

(2) may delegate to hearing examiners any powers necessary to conduct hearings and proceedings, take sworn testimony, obtain and make a record of pertinent information, make findings of probable cause and issue subpenas for witnesses or evidence in parole revocation proceedings, and recommend disposition of any matters enumerated in subsection (b) of this section, except that any such findings or recommendations shall be based upon the concurrence of not less than two hearing examiners;

(3) may delegate authority to conduct hearings held pursuant to section 4214 to any officer or employee of the executive or judicial branch of Federal or State government; and

(4) may review, or may delegate to the National Appeals Board the power to review, any decision made pursuant to subparagraph (1) of this subsection except that any such decision so reviewed must be reaffirmed, modified or reversed within thirty days of the date the decision is rendered, and, in case of such review, the individual to whom the decision applies shall be informed in writing of the Commission's actions with respect thereto and the reasons for such actions.

2. 이 장의 規定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支部의 設置 단, 5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3. 議長이 管理과 豫算事務所에 요구를 제출하기에 앞서서 定規, 追加 또는 缺損分의 支出에 대한 요구의 裁可, 修正, 拒否를 행한다. 위의 요구는 法務省 타기관의 것과 구별한다.

② 위원회는 과반수 의결로 그리고 이 장에 정한 절차에 의거하여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적합한 受刑者의 假釋放의 신청이나 추천에 대한 承認 또는 拒否
2. 假釋放命令에 대한 합당한 條件의 賦課
3. 적합한 受刑者에 대한 假釋放命令의 변경 또는 취소
4. 保護觀察官과 기타의 개인, 團體, 公·私의 機關에 대하여 假釋放者의 적절한 監視와 그에 대한 援助를 제공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義務의 遂行의 요청;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保護觀察官, 個人, 團體와 機關은 과다한 事件配當을 받지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과반수 의결로, 그리고 명령과 규칙에 의거하여—

1. 이 조 제2항에 열거한 권한을 1인 또는 수인의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假釋放取消節次上 審理와 節次를 지휘하고 宣誓한 證言을 취하고, 적절한 情報를 취재·기록하고, 蓋然原因의 사실인정을 행하고, 證人이나 證人의 召喚狀을 발부하며, 이 조 제2항에 열거한 사항의 처분을 요청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審理檢查官에게 委任할 수 있다. 단, 事實認定과 推薦은 2인이상의 심리검사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해야 한다.
3. 제4214조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審理를 指揮할 권한을 聯邦政府나 주정부의 行政·司法機關의 職員이나 雇傭人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이 항 1문에 의거한 決定을 再審하거나 국립항소위원회에 再審할 권한을 委任할 수 있다. 단, 再審에 회부된 決定은 결정이 행해진 날로부터 30일이내에 再確定, 變更 또는 翻覆하여야 하며, 재심의 경우에 결정의 적용을 받는 자는 委員會의 再審決定과그 이유를 文書로 통지받아야 한다.

(d)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law, any action taken by the Commission pursuant to subsection (a) of this section shall be taken by a majority vote of all individuals currently holding office as members of the Commission which shall maintain and make available for public inspection a record of the final vote of each member on statements of policy and interpretations adopted by it. In so acting, each Commissioner shall have equal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shall have full access to all information relating to the performance of such duties and responsibilities, and shall have one vote.
(Added Pub.L. 94-233, § 2, Mar. 15, 1976, 90 Stat. 220.)

§ 4204. Powers and duties of the Chairman

(a) The Chairman shall—

(1) convene and preside at meetings of the Commission pursuant to section 4203 and such additional meetings of the Commission as the Chairman may call or as may be requested in writing by at least three Commissioners;

(2) appoint, fix the compensation of, assign, and supervise all personnel employed by the Commission except that—

(A) the appointment of any hearing examiner shall be subject to approval of the Commission within the first year of such hearing examiner's employment; and

(B) regional Commissioners shall appoint and supervise such personnel employed regularly and full time in their respective regions as are compensated at a rate up to and including grade 9 of the General Schedule pay rates (5 U.S.C. 5332);

(3) assign duites among officers and employees of the Commission, including Commissioners, so as to balance the workload and provide for orderly administration;

(4) direct the preparation of requests for appropriations for the Commission, and the use of funds made available to the Commission;

(5) designate three Commissioners to serve on the National Appeals Board of whom one shall be so designated to serve as vice chairman of the Commission (who shall act as Chairman of the Commission in the absence or disability of the Chairman or in the event of the vacancy of the Chairmanship), and designate, for each such region established pursuant to section 4203, one Commissioner to serve as regional Commissioner in each such region; except that in each such designation the Chairman shall consider years of service, personal preference and fitness, and no such designation shall take effect unless concurred in by the President, or his designee;

④ 法律에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 제1항에 의거하여 委員會가 취한 모든 決定은 현재 위원회의 委員職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들의 過半数 議決에 의한다. 委員會는 위원회가 채택한 政策主張이나 解釋에 대한 각 구성원의 최종 議決投票의 기록을 보관하고 公衆의 閱覽에 공해야 한다. 議決에 있어 각 委員은 동일한 責任과 權限을 가지며, 그러한 義務와 責任을 수행하는데 관련된 모든 情報에 대한 완전한 接近權을 가지며 한 표를 행사한다. (Added Pub. L. 94—233, § 2, Mar. 15, 1976, 90 Stat. 220.)

제4204조 (議長의 權限과 義務) ① 議長은,

1. 제4203조에 의거한 委員會의 會議와 議長이 요구하거나 3인의 위원이 書面으로 요구한 臨時會議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委員會에 의하여 雇傭된 모든 자를 任命하고, 報酬를 결정하고 業務割當과 감독을 행한다 ; 단,

   (A) 審理檢査官의 任命은 그자를 雇傭한 후 1년이내에 委員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B) 支部의 委員은 그들 각 지부에 賃金一般閱覽表(5 U. S. C. 5332)의 9等級까지의 賃金으로 定規 또는 全時間制로 고용된 職員을 任命하고 감독한다.
3. 擔當業務의 균형을 기하고 秩序있는 管理를 위하여 委員을 포함한 委員會의 모든 職員과 雇傭人들 사이에 의무를 배정한다.
4. 委員會를 위한 豫算申請의 준비와 위원회가 이용할 수 있는 財源의 使用을 감독한다.
5. 3인의 委員에게 國立抗訴委員에서 근무하도록 명한다. 그들중 1인은 委員會의 副議長職을 맡는다(그는 議長의 不在時 또는 의장이 業務를 遂行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의장이 궐위된 경우에 위원회의 의장을 맡는다). 그리고 제4203조에 의거하여 설립한 각 支部에 대하여 支部議員으로 근무할 위원 1인씩을 지명한다. 단, 위의 각 선정시에 議長은 在職年限, 개인적 選好와 適格性을 고려하여야 하며, 대통령이나 被指命人의 同意가 없으면 그러한 지명은 효력이 없다.

(6) serve as spokesman for the Commission and report annually to each House of Congress on the activities of the Commission; and

(7) exercise such other powers and duties and perform such other functions as may be necessary to carry out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or as may be provided under any other provision of law.

(b) The Chairman shall have the power to—

(1) without regard to section 3324(a) and (b) of title 31, enter into and perform such contracts, leases, cooperative agreements, and other transactions as may be necessary in the conduct of the functions of the Commission, with any public agency, or with any person, firm, association, corporation, educational institution, or nonprofit organization;

(2) accept voluntary and uncompensated services,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section 1342 of title 31;

(3) procure for the Commission temporary and intermittent services to the same extent as is authorized by section 3109(b) of title 5, United States Code;

(4) collect systematically the data obtained from studies, research, and the empirical experience of public and private agencies concerning the parole process;

(5) carry out programs of research concerning the parole process to develop classification systems which describe types of offenders, and to develop theories and practices which can be applied to the different types of offenders;

(6) publish data concerning the parole process;

(7) devise and conduct, in various geographical locations, seminars, workshops and training programs providing continuing studies and instruction for personnel of Federal, State and local agencies and private and public organizations working with parolees and connected with the parole process; and

(8) utilize the services, equipment, personnel, information, facilities, and instrumentalities with or without reimbursement therefor of other Federal, State, local, and private agencies with their consent.

(c) In carrying out his functions under this section, the Chairman shall be governed by the national parole policies promulgated by the Commission.

(Added Pub.L. 94-233, § 2, Mar. 15, 1976, 90 Stat. 221, and amended Pub.L. 97-258, § 3(e)(3), (4), Sept. 13, 1982, 96 Stat. 1064.)

§ 4205. Time of eligibility for release on parole

(a) Whenever confined and serving a definite term or terms of more than one

6. 委員會의 代辯人職을 맡고 위원회의 活動에 대하여 聯邦議會에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7. 이 장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규정에 규정된 권한과 의무를 실행하고 기능을 수행한다.

② 議長은 다음의 權限을 가진다.

1. 제31편 제3324조 제1·2항에 관계없이 공공기관이나 個人, 商社組合, 組合, 企業, 教育施設 기타 非營利團體와 위원회의 機能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契約, 賃貸借, 協約 기타 去來를 체결하고 이행한다.
2. 제31편 제13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自發的이고 無報酬의 勞務를 수령한다.
3. 미합중국법령집 제5편 제3109조 (b)항에서 인정된 범위에서 일시적이고 간헐적인 노무를 위원회에 조달한다.
4. 假釋放의 經過에 관한 公共·私設機關의 조사·연구, 經驗的·體驗으로부터 획득한 資料를 체계적으로 수집한다.
5. 犯人의 類型을 평가하는 分類體系를 개발하고 상이한 犯罪人型에 적용시킬 수 있는 理論과 實務를 개발하기 위하여 假釋放經過에 관한 연구프로그램을 시행한다.
6. 가석방경과에 관한 자료를 발간한다.
7. 많은 지방에서 假釋放者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며 假釋放經過에 관련된 聯邦機關, 州와 지방기관 그리고 公共·私設團體의 직원에게 계속적인 研究와 研究를 제공할 學會·研修會와 훈련프로그램을 考案하고 시행한다.
8. 聯邦, 州, 지방기관과 사설기관의 노무·장비·직원·정보·설비와 도구를 그들 기관의 동의하에 費用償還 여부에 관계없이 이용한다.

③ 이 조에 따라 議長의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 의장은 委員會가 公布한 國家假釋放政策의 적용을 받는다.

(Added Pub. L. 94—233, § 2, Mar. 15, 1976, 90 Stat. 221, and amended Pub. L. 97—258, § 3(e)(3),(4), Sept. 13. 1982, 96 Stat. 1064.)

제4205조 (假釋放의 適格時期) ① 拘禁되어 1년 이상의 有期刑의 執行을 받고

year, a prisoner shall be eligible for release on parole after serving one-third of such term or terms or after serving ten years of a life sentence or of a sentence of over thirty years, except to the extent otherwise provided by law.

(b) Upon entering a judgment of conviction, the court having jurisdiction to impose sentence, when in its opinion the ends of justice and best interest of the public require that the defendant be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a term exceeding one year, may (1) designate in the sentence of imprisonment imposed a minimum term at the expiration of which the prisoner shall become eligible for parole, which term may be less than but shall not be more than one-third of the maximum sentence imposed by the court, or (2) the court may fix the maximum sentence of imprisonment to be served in which event the court may specify that the prisoner may be released on parole at such time as the Commission may determine.

(c) If the court desires more detailed information as a basis for determining the sentence to be imposed, the court may commit the defendant to the custody of the Attorney General, which commitment shall be deemed to be for the maximum sentence of imprisonment prescribed by law, for a study as described in subsection (d) of this section. The results of such study, together with any recommendations which the Director of the Bureau of Prisons believes would be helpful in determining the disposition of the case, shall be furnished to the court within three months unless the court grants time, not to exceed an additional three months, for further study. After receiving such reports and recommendations, the court may in its discretion: (1) place the offender on probation as authorized by section 3651; or (2) affirm the sentence of imprisonment originally imposed, or reduce the sentence of imprisonment, and commit the offender under any applicable provision of law. The term of the sentence shall run from the date of original commitment under this section.

(d) Upon commitment of a prisoner sentenced to imprisonment under the provisions of subsections (a) or (b) of this section, the Director, under such regulations as the Attorney General may prescribe, shall cause a complete study to be made of the prisoner and shall furnish to the Commission a summary report together with any recommendations which in his opinion would be helpful in determining the suitability of the prisoner for parole. This report may include but shall not be limited to data regarding the prisoner's previous delinquency or criminal experience, pertinent circumstances of his social background, his capabilities, his mental and physical health, and such other factors as may be considered pertinent. The Commission may make such other investigation as it may deem necessary.

있는 경우에 受刑者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刑期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無期終身刑이나 30년을 초과하는 刑에 있어서는 10년을 경과한 후에 假釋放의 適格이 있다.

② 宣告의 管轄法院은 正義와 最善의 公共福利의 目的上 피고가 1년을 초과하는 自由刑으로 宣告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有罪判決時에

1. 法院이 선고한 최고형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受刑者가 집행를 완료함으로써 假釋放의 適格을 갖추게 될 最低期間을 自由刑의 宣告에서 지정할 수 있고, 또한
2. 法院은 집행될 自由刑의 最高限을 확정시킬 수 있으며, 그 경우에 法院은 委員會가 결정하는 時期에 당해 수형자가 假釋放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③ 法院은 宣告할 刑을 決定하기 위한 근거로 더욱 상세한 資料가 필요한 경우에는 被告를 法務長官下에 拘禁시킬 수 있다. 위의 구금은 이 조의 제4항에 규정된 조사를 위하여 法定最高刑의 宣告를 위한 것으로 간주한다. 調査結果는 矯正局長이 그 사건의 處分을 決定하는 데 有用하다고 인정하는 추천과 함께 법원이 調査의 계속을 위하여 추가로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한 3월이내에 法院에 제출되어야 한다. 法院은 위의 報告와 推薦을 접수한 후에 裁量으로,

1. 犯罪人을 제3651조에서 인정한 保護觀察에 명하거나
2. 본래 선고된 自由刑을 확정하거나 자유형를 減輕하여 적용가능한 法律規定에 따라 拘禁한다. 刑期는 이 조에 의하여 최초로 拘禁된 날로부터 起算한다.

④ 이 조의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自由刑의 宣告를 받은 受刑者가 拘禁된 때에 局長은 法務長官이 제정한 規則에 의거하여 그 수형자에 대한 완전한 조사를 행하여, 그가 당해 수형자의 假釋放適格을 결정하는데 유용하다고 인정하는 추천과 더불어 要約報告書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보고서는 당해 수형자의 前科나 犯罪經歷, 그의 社會的 背景의 관련상황, 才能, 그의 정신적·육체적 健康 그리고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타 要素 등에 관한 資料를 포함할 수 있으나

(e) Upon request of the Commission, it shall be the duty of the various probation officers and government bureaus and agencies to furnish the Commission information available to such officer, bureau, or agency, concerning any eligible prisoner or parolee and whenever not incompatible with the public interest, their views and recommendation with respect to any matter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ommission.

(f) Any prisoner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a term or terms of not less than six months but not more than one year shall be released at the expiration of such sentence less good time deductions provided by law, unless the court which imposed sentence, shall, at the time of sentencing, provide for the prisoner's release as if on parole after service of one-third of such term or terms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section 4164. This subsection shall not prevent delivery of any person released on parole to the authorities of any State otherwise entitled to his custody.

(g) At any time upon motion of the Bureau of Prisons, the court may reduce any minimum term to the time the defendant has served. The court shall have jurisdiction to act upon the application at any time and no hearing shall be required.

(h) Nothing in this chapter shall be construed to provide that any prisoner shall be eligible for release on parole if such prisoner is ineligible for such release under any other provision of law.
(Added Pub.L. 94-233, § 2, Mar. 15, 1976, 90 Stat. 222.)

§ 4206. Parole determination criteria

(a) If an eligible prisoner has substantially observed the rules of the institution or institutions to which he has been confined, and if the Commission, upon consideration of the nature and circumstances of the offense and the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the prisoner, determines:

(1) that release would not depreciate the seriousness of his offense or promote disrespect for the law; and

(2) that release would not jeopardize the public welfar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ubsections (b) and (c) of this section, and pursuant to guidelines promulgated by the Commission pursuant to section 4203(a) (1), such prisoner shall be released.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스스로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기타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委員會가 요구하는 경우에 각급 保護觀察官, 政府部處와 機關은 적격을 갖춘 受刑者나 假釋放 중에 있는 자에 관하여 당해 保護觀察官, 政府部處, 機關이 이용할 수 있는 資料를 위원회에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公益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 委員會의 관할내의 사항에 관하여 그들의 意見과 推薦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⑥ 6월이상 1년이하의 刑期로 自由刑의 宣告를 받은 수형자는 이 선고시에 제4164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해 刑期의 3분의 1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 假釋放되는 것으로, 수형자의 석방에 대하여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률에 규정된 善時控除를 감한 刑期를 만료함으로써 석방된다. 이 항은 假釋放된 자를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를 拘禁할 권한이 있는 州當局에 引渡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⑦ 矯正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法院은 最低刑期를 被告가 이미 執行을 완료한 기간으로 減刑할 수 있다. 法院은 언제든지 신청에 따라 결정할 管轄權이 있으며 審理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⑧ 受刑者가 다른 법률규정에 의하여 假釋放의 適格이 없는 경우에는 이 장의 어떤 규정도 해석상 당해 수형자가 假釋放의 適格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Added Pub. L. 94—233, §2, Mar. 15, 1976, 90 Stat. 222.)

제4206조 (假釋放決定의 基準) ① 適格있는 受刑者가 그가 拘禁되어 있는 施設의 規定을 사실상 준수하였고, 委員會가 범죄의 性質과 環境, 수형자의 經歷과 性格을 고려하여

1. 釋放이 그의 犯罪重大性를 저하시키지 아니하며 法에 대한 輕視를 조장하지 아니한다는 점과,
2. 석방이 公共福祉를 威脅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확정한 경우에는 당해 수형자는 이 조 제2·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리고 위원회가 제4203조 제1항1문에 따라 公布한 指針에 의거하여 석방된다.

(b) The Commission shall furnish the eligible prisoner with a written notice of its determination not later than twenty-one days, excluding holidays, after the date of the parole determination proceeding. If parole is denied such notice shall state with particularity the reasons for such denial.

(c) The Commission may grant or deny release on parole notwithstanding the guidelines referred to in subsection (a) of this section if it determines there is good cause for so doing: *Provided,* That the prisoner is furnished written notice stating with particularity the reasons for its determination, including a summary of the information relied upon.

(d) Any prisoner, serving a sentence of five years or longer, who is not earlier released under this section or any other applicable provision of law, shall be released on parole after having served two-thirds of each consecutive term or terms, or after serving thirty years of each consecutive term or terms of more than forty-five years including any life term, whichever is earlier: *Provided, however,* That the Commission shall not release such prisoner if it determines that he has seriously or frequently violated institution rules and regulations or that there is a reasonable probability that he will commit any Federal, State, or local crime.

(Added Pub. L. 94-233, § 2, Mar. 15, 1976, 90 Stat. 223.)

§ 4207. Information considered

In making a determination under this chapter (relating to release on parole) the Commission shall consider, if available and relevant:

(1) reports and recommendations which the staff of the facility in which such prisoner is confined may make;

(2) official reports of the prisoner's prior criminal record, including a report or record of earlier probation and parole experiences;

(3) presentence investigation reports;

(4) recommendations regarding the prisoner's parole made at the time of sentencing by the sentencing judge;

(5)[1] a statement, which may be presented orally or otherwise, by any victim of the offense for which the prisoner is imprisoned about the financial, social, psychological, and emotional harm done to, or loss suffered by such victim; and

(5)[1] reports of physical, mental, or psychiatric examination of the offender

There shall als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such additional relevant information concerning the prisoner (including information submitted by the prisoner) as may be reasonably available.

3. 委員會는 假釋放決定 節次日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21일 이내에 당해 適格의 수형자에게 그 決定을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假釋放이 拒否된 경우에는 통지에 拒否理由를 특별히 기록하여야 한다.
4. 委員會는 상당한 理由가 있다고 決定한 경우에는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指針에 관계없이 假釋放을 許可 또는 拒否할 수 있다. 단, 수형자가 참고가 된 자료의 槪要를 포함하여 決定의 理由를 특별히 기록한 書面通知를 받아야 한다.
5. 이 조 또는 다른 적용가능한 法律規定에 의하여 전에 釋放된 적이 없이 5년이상의 刑의 宣告를 집행받고 있는 수형자는 각 축차적 기간의 3분의 2를 경과하거나 終身刑을 포함하여 45년이상의 각축차 기간에 대해서는 30년을 경과한 후에 假釋放된다. 단, 委員會가 그자가 중대하게 또는 빈번하게 施設의 規定과 規則을 위반하였음을 확정하거나 그자가 聯邦犯罪나 州, 地方의 犯罪를 범할 것이라는 상당한 可能性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수형자를 석방하지 아니한다.

(Added Pub. L. 94—233, §2, Mar. 15, 1976, 90 Stat. 233.)

제4207조 (資料) 委員會는 이 장(假釋放에 관한)에 따라 決定을 함에 있어 有用하고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수형자가 拘禁되어 있는 施設의 職員이 행한 報告와 推薦
2. 이전의 保護觀察과 假釋放前歷을 포함하여 당해 수형자의 前科記錄에 대한 公式 報告書
3. 陳述調査報告書
4. 宣告時 宣告法官이 행한 당해 수형자의 假釋放에 관한 추천
5. 당해 受刑者가 自由刑에 처해진 범죄의 被害者가 자신이 받은 經濟的 사회적·심리적·感情的 被害 또는 損失에 대하여 구두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한 진술
6. 범죄인의 신체·정신 또는 정신병에 대한 검사보고서

당해 受刑者에 관하여 상당히 유용한 기타의 関聯資料(당해 수형자가 제출한 자료를 포함한다)도 또한 참착하여야 한다.

(Added Pub. L. 94-233, § 2, Mar. 15, 1976, 90 Stat. 224, and amended Pub.L. 98-473, Title II, § 1408(a), Oct. 12, 1984, 98 Stat. 2177).

§ 4208. Parole determination proceeding; time

(a) In making a determination under this chapter (relating to parole) the Commission shall conduct a parole determination proceeding unless it determines on the basis of the prisoner's record that the prisoner will be released on parole. Whenever feasible, the initial parole determination proceeding for a prisoner eligible for parole pursuant to subsections (a) and (b)(1) of section 4205 shall be held not later than thirty days before the date of such eligibility for parole. Whenever feasible, the initial parole determination proceeding for a prisoner eligible for parole pursuant to subsection (b)(2) of section 4205 or released on parole and whose parole has been (b)(2) of section 4205 or released on parole and whose parole has been revoked shall be held not later than one hundred and twenty days following such prisoner's imprisonment or reimprisonment in a Federal institution, as the case may be. An eligible prisoner may knowingly and intelligently waive any proceeding.

(b) At least thirty days prior to any parole determination proceeding, the prisoner shall be provided with (1) written notice of the time and place of the proceeding, and (2) reasonable access to a report or other document to be used by the Commission in making its determination. A prisoner may waive such notice, except that if notice is not waived the proceeding shall be held during the next regularly scheduled proceedings by the Commission at the institution in which the prisoner is confined.

(c) Subparagraph (2) of subsection (b) shall not apply to—

(1) diagnostic opinions which, if made known to the eligible prisoner, could lead to a serious disruption of his institutional program;

(2) any document which reveals sources of information obtained upon a promise of confidentiality; or

(3) any other information which, if disclosed, might result in harm, physical or otherwise, to any person.

If any document is deemed by either the Commission, the Bureau of Prisons, or any other agency to fall within the exclusionary provisions of subparagraphs (1), (2), or (3) of this subsection, then it shall become the duty of the Commission, the Bureau, or such other agency, as the case may be, to summarize the basic contents of the material withheld, bearing in mind the need for confidentiality or the impact on the inmate, or both, and furnish such summary to the inmate.

(d) (1) During the period prior to the parole determination proceeding as provided in subsection (b) of this section, a prisoner may consult, as provided

(Added Pub. L. 94—233, § 2, Mar. 15, 1976, 90 Stat. 224. and amended Pub. L. 98—473, Title Ⅱ, § 1408(a), Oct. 12, 1984, 98 Stat. 2177.)

제4208조 (假釋放決定節次, 時期) ① 委員會는 (가석방에 관한)이 장에 따라 決定를 함에 있어 受刑者의 記錄에 의거하여 당해 수형자를 假釋放한다는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한 假釋放決定節次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205조 제1항과 제2항1문에 따라 假釋放의 適格이 있는 수형자에 대한 최초의 假釋放決定節次는 실행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가석방 適格性을 갖추게 되는 날 30일전까지 개최되어야 한다. 제4205조 제2항2문에 따라 가석방의 適格이 있는 수형자 또는 가석방되었으나 假釋放이 取消된 수형자에 대한 최초의 가석방 결정절차는 실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聯邦施設에 당해 수형자가 拘禁 또는 再拘禁된 후 120일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適格이 있는 수형자는 認知하고 理解함으로써 절차를 포기할 수 있다.

② 적어도 假釋放決定節次 30일전에 수형자는,

1. 절차의 日時와 場所에 대한 書面通知를 받아야 하며,
2. 決定을 함에 있어 委員會가 이용할 報告書 기타 문서에 대하여 합당한 接近權이 인정되어야 한다. 수형자는 위의 통지를 포기할 수 있다. 단, 통지를 포기하지 아니한다면 당해 수형자는 拘禁되어 있는 施設에서 委員會의 차기 規程節次 중에 당해 절차가 개최되어야 한다.

③ 제2항 2문은 다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適格이 있는 受刑者에게 알려진다면 그의 施設內 프로그램에 중대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진단서.
2. 秘密을 약속하고 획득한 資料의 出處를 폭로하는 文書
3. 縣出된다면 어느 자에게 身體上 또는 기타의 害를 끼칠 수 있는 기타 資料

委員會, 矯正局 또는 기타의 機關은 어느 문서가 이 항의 1, 2, 3문의 除外規定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秘密의 必要性이나 수용자에 대한 영향 또는 양자 모두를 고려하면서 保留한 당해 資料의 基本內容을 要約하고 그것을 당해 수용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by the director, with a representative a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2) of this subsection, and by mail or otherwise with any person concerning such proceeding.

(2) The prisoner shall, if he chooses, be represented at the parole determination proceeding by a representative who qualifies under rules and regulations promulgated by the Commission. Such rules shall not exclude attorneys as a class.

(e) The prisoner shall be allowed to appear and testify on his own behalf at the parole determination proceeding.

(f) A full and complete record of every proceeding shall be retained by the Commission. Upon request, the Commission shall make available to any eligible prisoner such record as the Commission may retain of the proceeding.

(g) If parole is denied, a personal conference to explain the reasons for such denial shall be held, if feasible, between the prisoner and the Commissioners or examiners conducting the proceeding at the conclusion of the proceeding. When feasible, the conference shall include advice to the prisoner as to what steps may be taken to enhance his chance of being released at a subsequent proceeding.

(h) In any case in which release on parole is not granted, subsequent parole determination proceedings shall be held not less frequently than:

(1) eighteen months in the case of a prisoner with a term or terms of more than one year but less than seven years; and

(2) twenty-four months in the case of a prisoner with a term or terms of seven years or longer.

(Added Pub.L. 94-233, § 2, Mar. 15, 1976, 90 Stat. 224.)

§ 4209. Conditions of parole

(a) In every case, the Commission shall impose as conditions of parole that the parolee not commit another Federal, State, or local crime and, if a fine was imposed, that the parolee make a diligent effort to pay the fine in accordance with the judgment. The Commission may impose or modify other conditions of parole to the extent that such conditions are reasonably related to—

(1) the nature and circumstances of the offense; and

(2) the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the parolee;

④ 1.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假釋放決定節次 전의 기간 중에 수형자는 局長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항의 2문에 규정된 代理人과 상담할 수 있으며, 우편 등의 방법으로 당해 節次에 관계있는 자와 의논할 수 있다.

2. 受刑者는 代理人을 選任한 경우에는 가석방결정절차에 있어 委員會가 공포한 命令과 規則에 따라 資格이 있는 代理人에 의하여 대표된다. 위의 규정은 그러한 종류로서 辯護士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⑤ 受刑者는 가석방 결정절차에 그 자신을 위하여 出席하고 證言할 수 있다.

⑥ 모든 節次의 전 記錄은 委員會가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節次에 관하여 委員會가 보관하고 있는 記錄을 資格있는 수형자의 이용에 공하여야 한다.

⑦ 假釋放이 拒否된 경우에는 實行이 가능하다면 受刑者와 당해 節次를 수행한 委員 또는 檢事官 사이에 당해 거부이유를 설명하는 個人的 會談을 절차의 결론시에 개최하여야 한다. 회담은 가능하다면 당해 수형자가 次期節次에서 석방될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당해 受刑者에 대한 助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⑧ 假釋放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기의 假釋放決定節次는 다음 기간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1. 1년초과 7년미만 刑期의 수형자에 있어서는 18개월
2. 7년이상 刑期의 수형자에 있어서는 24개월

(Added Pub. L. 94—233, §2, Mar. 15, 1976, 90 Stat. 224.)

제4209조 (假釋放의 條件) ① 모든 경우에 委員會는 假釋放者가 聯邦犯罪나 州 또는 地方의 犯罪를 범하지 아니할 것을 假釋放의 條件으로 부과하여야 하며, 罰金刑이 과해진 경우에는 假釋放者가 判決에 따라 罰金을 納入하기 위하여 성실한 노력을 다할 것을 가석방의 조건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委員會는,

1. 犯罪의 性質과 環境 그리고
2. 假釋放者의 經歷과 性格에 상당한 연관이 있는 범위에서 기타 假釋放條

and may provide for such supervision and other limitations as are reasonable to protect the public welfare.

(b) The conditions of parole should be sufficiently specific to serve as a guide to supervision and conduct, and upon release on parole the parolee shall be given a certificate setting forth the conditions of this parole. An effort shall be made to make certain that the parolee understands the conditions of his parole.

(c) Release on parole or release as if on parole may as a condition of such release require—

(1) a parolee to reside in or participate in the program of a residential community treatment center, or both, for all or part of the period of such parole;

(2) a parolee, who is an addict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4251(a), or a drug dependent person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2(q) of the Public Health Service Act, as amended (42 U.S.C. 201), to participate in the community supervision programs authorized by section 4255 for all or part of the period of parole.

A parolee residing in a residential community treatment center pursuant to subparagraph (1) or (2) of this subsection, may be required to pay such costs incident to residence as the Commission deems appropriate.

(d) (1) The Commission may modify conditions of parole pursuant to this section on its own motion, or on the motion of a United States probation officer supervising a parolee: *Provided,* That the parolee receives notice of such action and has ten days after receipt of such notice to express his views on the proposed modification. Following such ten-day period, the Commission shall have twenty-one days, exclusive of holidays, to act upon such motion or application.

(2) A parolee may petition the Commission on his own behalf for a modification of conditions pursuant to this section.

(3) The provisions of this subsection shall not apply to modifications of parole conditions pursuant to a revocation proceeding under section 4214.

(Added Pub.L. 94-233, § 2, Mar. 15, 1976, 90 Stat. 225, and amended Pub.L. 98-596, § 7, Oct. 30, 1984, 98 Stat. 3138.)

§ 4210. Jurisdiction of Commission

(a) A parolee shall remain in the legal custody and under the control of the

件을 부과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公共福祉를 보호하는데 합당한 監視와 기타의 限界를 設定할 수 있다.

② 假釋放의 條件은 監視와 指導의 指針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구체적이어야 하며, 假釋放者는 가석방시에 그의 假釋放의 條件을 설명하는 證明書를 교부받는다. 가석방자가 그의 가석방의 조건을 이해한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假釋放 또는 假釋放에 간주되는 석방은 그러한 釋放의 條件으로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1. 假釋放의 전기간이나 일부기간 동안 가석방자의 社會內 處遇, 施設內의 居住 또는 社會內 處遇施設의 프로그램에의 참여 또는 양자 모두.
2. 제4251조 제4항의 의미에서의 中毒者이거나 수정된 公衆保健法의 제2조(g)의 의미에서의 藥物中毒者인 假釋放者에 있어서는 가석방의 전기간 또는 일부기간동안 제4255조에 규정된 사회내 감시프로그램에의 참여.

이 항의 제1·2문에 의거하여 社會內 處遇施設에 거주하는 가석방자는 委員會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居住費用의 支給을 요구받을 수 있다.

④ 1. 委員會는 자체의 同意 또는 미합중국 保護觀察官의 동의에 의하여 이 조에 의거한 假釋放의 條件을 變更할 수 있다. 단, 假釋放者는 變更에 대한 通知를 받아야 하며, 통지를 받은 후 10일내에는 제안된 變更案에 대하여 자신의 意見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위의 10일이 경과한 후에 위원회는 공휴일을 제외한 21일이내에 당해 同意나 申請에 대하여 決定을 한다.

2. 假釋放者는 자신을 위하여 이 조에 의거한 條件의 變更을 委員會에 請願할 수 있다.
3. 이 항의 규정은 제4314조의 取消節次에 의한 假釋放條件의 변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Added Pub. L. 94—233, §2, Mar. 15, 1976, 90 Stat. 225, and amended Pub. L. 98—596, §7, Oct. 30, 1984, 98 Stat. 3138.)

제4210조 (委員會의 管轄) ① 假釋放者는 그가 宣告를 받은 最高刑期의 만료

Attorney General, until the expiration of the maximum term or terms for which such parolee was sentenced.

(b)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section, the jurisdiction of the Commission over the parolee shall terminate no later than the date of the expiration of the maximum term or terms for which he was sentenced, except that—

(1) such jurisdiction shall terminate at an earlier date to the extent provided under section 4164 (relating to mandatory release) or section 4211 (relating to early termination of parole supervision), and

(2) in the case of a parolee who has been convicted of a Federal, State, or local crime committed subsequent to his release on parole, and such crime is punishable by a term of imprisonment, detention or incarceration in any penal facility, the Commission shall determin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section 4214(b) or (c), whether all or any part of the unexpired term being served at the time of parole shall run concurrently or consecutively with the sentence imposed for the new offense, but in no case shall such service together with such time as the parolee has proviously served in connection with the offense for which he was paroled, be longer than the maximum term for which he was sentenced in connection with such offense.

(c) In the case of any parolee found to have intentionally refused or failed to respond to any reasonable request, order, summons, or warrant of the Commission or any member or agent thereof, the jurisdiction of the Commission may be extended for the period during which the parolee so refused or failed to respond.

(d) The parole of any parolee shall run concurrently with the period of parole or probation under any other Federal, State, or local sentence.

(e) The parole of any prisoner sentenced before June 29, 1932, shall be for the remainder of the term or terms specified in his sentence, less good time allowances provided by law.

(f) Upon the termination of the jurisdiction of the Commission over any parolee, the Commission shall issue a certificate of discharge to such parolee and to such other agencies as it may determine.

(Added Pub. L. 94-233, § 2, Mar. 15, 1976, 90 Stat. 226)

§ 4211. Early termination of parole

(a) Upon its own motion or upon request of the parolee, the Commission may terminate supervision over a parolee prior to the termination of jurisdiction under section 4210.

(b) Two years after each parolee's release on parole, and at least annually

시까지 法務長官의 법률적 保護와 統制를 받는다.

② 이 조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假釋放者에 대한 委員會의 관할은 그가 宣告를 받은 最高刑期의 滿了日에 종료한다. 단,

1. 제4164조(필요적 석방에 관한) 또는 제4211조 (가석방감시의 조기종료에 관한)에 규정된 범위한도에서는 관할은 조기에 종료한다. 그리고
2. 假釋放者가 석방후에 범한 聯邦犯罪, 州 또는 地方의 犯罪로 인하여 有罪判決을 받은 경우에 당해 범죄가 矯正施設에의 拘禁刑으로 處罰할 수 있다면 委員會는 제4214조 제2항, 제3항에 의거하여 가석방시에 未執行된 刑期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새로운 犯罪로 받은 宣告와 동시에 혹은 축차적으로 집행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위의 執行은 假釋放者가 자신이 假釋放된 범죄와 관련하여 이미 執行을 받은 刑期를 포함하여 그 범죄와 관련하여 宣告를 받은 最高刑을 초과할 수 없다.

③ 假釋放者가 委員會나 위원회의 構成員 또는 代理人의 합리적인 要求, 命令, 召喚 또는 令狀에 대하여 응하기를 거절하거나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委員會의 管轄은 가석방자가 응하기를 거절하거나 응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확장된다.

④ 假釋放은 聯邦, 州 또는 地方의 다른 宣告에 의한 가석방이나 保護觀察의 期間과 동시에 진행한다.

⑤ 1932. 6. 29. 이전에 선고를 받은 受刑者의 가석방은 법률에 규정된 善時控除를 감하고 宣告에서 확정된 刑期의 잔여분에 대하여 행한다.

⑥ 假釋放에 대한 위원회의 管轄이 終了한 때에는 위원회는 가석방자와 그가 決定할 수 있는 다른 기관에게 釋放證明書를 발부하여야 한다.

(Added Pub. L. 94—233, § 2, Mar. 15, 1976, 90 Stat. 226.)

제4211조 (假釋放의 早期終了) ① 委員會는 자체의 同意 또는 당해 假釋放者의 요구에 의하여 제4210조에 따른 管轄의 終了 以前에 가석방자에 대한 監視를 종료할 수 있다.

② 각 가석방자가 假釋放된 지 2년후에 그리고 그후에는 매년 1회씩 委員會는

thereafter, the Commission shall review the status of the parolee to determine the need for continued supervision. In calculating such two-year period there shall not be included any period of release on parole prior to the most recent such release, nor any period served in confinement on any other sentence.

(c) (1) Five years after each parolee's release on parole, the Commission shall terminate supervision over such parolee unless it is determined, after a hearing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prescribed in section 4214(a) (2), that such supervision should not be terminated because there is a likelihood that the parolee will engage in conduct violating any criminal law.

(2) If supervision is not terminated under subparagraph (1) of this subsection the parolee may request a hearing annually thereafter, and a hearing, with procedures as provided in subparagraph (1) of this subsection shall be conducted with respect to such termination of supervision not less frequently than biennially.

(3) In calculating the five-year period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 there shall not be included any period of release on parole prior to the most recent such release, nor any period served in confinement on any other sentence.
(Added Pub. L. 94-233, § 2, Mar. 15, 1976, 90 Stat. 227).

§ 4212. Aliens

When an alien prisoner subject to deportation becomes eligible for parole, the Commission may authorize the release of such prisoner on condition that such person be deported and remain outside the United States.

Such prisoner when his parole becomes effective, shall be delivered to the duly authorized immigration official for deportation.
(Added Pub. L. 94-233, § 2, Mar. 15, 1976, 90 Stat. 227).

§ 4213. Summons to appear or warrant for retaking of parolee

(a) If any parolee is alleged to have violated his parole, the Commission may—

(1) summon such parolee to appear at a hearing conducted pursuant to section 4214; or

(2) issue a warrant and retake the parolee as provided in this section.

(b) Any summons or warrant issued under this section shall be issued by the Commission as soon as practicable after discovery of the alleged violation, except when delay is deemed necessary. Imprisonment in an institution shall not be deemed grounds for delay of such issuance, except that, in the case of any parolee charged with a criminal offense, issuance of a summons or warrant

監視繼續의 必要性을 결정하기 위하여 假釋放者의 地位를 審査한다.
위의 2년의 期間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가장 최근에 받은 현재의 假釋放 이전의 모든 가석방기간과 다른 宣告로 拘禁이 執行된 期間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1. 委員會는 각 가석방자가 假釋放者된 지 5년 후에는 당해 가석방자에 대한 監視를 終了하여야 한다. 단, 제4214조 제1항2문에 규정된 節次에 따라 審理가 행해진 후에 당해 假釋放자가 刑法을 違反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농후하여 監視를 終了해서는 아니된다고 決定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항의 1문에 따라 監視를 終了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假釋放者는 그후 매년 審理를 요구할 수 있다. 심리는 이 항의 1문에 규정된 節次에 의하여 監視의 終了에 관하여 최소 2년마다 1회씩 수행되어야 한다.

④ 1문에 규정된 5년의 期間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가장 최근에 받은 현재의 假釋放 이전의 모든 가석방기간과 기타의 宣告로 拘禁이 執行된 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Added Pub. L. 94—233, § 2, Mar. 15, 1976, 90 Stat. 227.)

제4212조 (外國人) 追放命令을 받은 外國人受刑者가 假釋放의 適格을 갖추게 된 때에는 委員會는 그가 미합중국 밖으로 追放된다는 조건으로 당해 수형자의 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Added Pub. L. 94—233, § 2, Mar. 15, 1976, 90 Stat. 227.)

제4213조 (出席召喚狀 또는 假釋放者의 再逮捕令狀) ① 假釋放자가 그의 가석방을 위반하였다는 嫌疑가 있는 경우에 委員會는,

1. 당해 受刑者를 제4214조에 의해 수행되는 審理에 出席하도록 召喚할 수 있다. 또는
2. 이 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令狀을 發付하여 당해 假釋放者를 다시 逮捕할 수 있다.

② 이 조에 의하여 발부되는 召喚狀이나 令狀은 延期가 필요하다고 認定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반이 사실이 발견된 후 實行可能한 때에 즉시 委員會가

may be suspended pending disposition of the charge.

(c) Any summons or warrant issued pursuant to this section shall provide the parolee with written notice of—

(1) the conditions of parole he is alleged to have violated as provided under section 4209;

(2) his rights under this chapter; and

(3) the possible action which may be taken by the Commission.

(d) Any officer of any Federal penal or correctional institution, or any Federal officer authorized to serve criminal process within the United States, to whom a warrant issued under this section is delivered, shall execute such warrant by taking such parolee and returning him to the custody of the regional commissioner, or to the custody of the Attorney General, if the Commission shall so direct.

(Added Pub. L. 94-233, § 2, Mar. 15, 1976, 90 Stat. 227).

§ 4214. Revocation of parole

(a) (1) Except as provided in subsections (b) and (c), any alleged parole violator summoned or retaken under section 4213 shall be accorded the opportunity to have—

(A) a preliminary hearing at or reasonably near the place of the alleged parole violation or arrest, without unnecessary delay, to determine if there is probable cause to believe that he has violated a condition of his parole; and upon a finding of probable cause a digest shall be prepared by the Commission setting forth in writing the factors considered and the reasons for the decision, a copy of which shall be given to the parolee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except that after a finding of probable cause the Commission may restore any parolee to parole supervision if:

(i) continuation of revocation proceedings is not warranted; or

(ii) incarceration of the parolee pending further revocation proceedings is not warranted by the alleged frequency or seriousness of such violation or violations;

(iii) the parolee is not likely to fail to appear for further proceedings; and

(iv) the parolee does not constitute a danger to himself or others.

(B) upon a finding of probable cause under subparagraph (1) (A), a

발부한다. 施設에의 拘禁은 위의 發付를 延期할 수 있는 근거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단, 刑事犯罪로 起訴된 가석방자에 대해서는 起訴의 處分이 있을 때까지 召喚狀이나 令狀의 發付를 유예할 수 있다.

③ 이 조에 따라 발부된 召喚狀이나 令狀은 당해 假釋放者에게 다음 각호에 대한 書面通知를 하여야 한다.

1. 제4209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가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가석방 조건
2. 이 장에 의한 그의 권리
3. 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가능한 조치

④ 聯邦矯正施設의 職員이나 미합중국 내에서 刑事節次를 수행할 權限이 있는 연방공무원은 이 조에 의하여 발부된 令狀의 送達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假釋放者를 체포하여 支部의 委員에게 또는 委員會가 그렇게 지정한 경우에는 法務長官에게 다시 구금시킴으로써 영장을 집행한다.

(Added Pub. L. 94—233, § 2, Mar. 15, 1976, 90 Stat. 227.)

제4214조 (假釋放의 取消) ① 1. 제2항,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假釋放을 違反한 嫌疑가 있어 제4213조에 따라 召喚 또는 再逮捕된 가석방 위반자는 다음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A) 그가 假釋放의 條件을 위반하였다고 믿을 만한 蓋然的 原因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假釋放 違反嫌疑가 있는 장소나 체포장소에서 또는 그곳에 합리적으로 가까운 장소에서 豫備審理를 받는다.

그리고 蓋然的인 原因이 인정된 때에는 委員會는 당해 決定에 고려된 要素와 決定理由를 설명하는 槪要를 書面으로 준비하여야 하며, 상당한 기간내에 그것의 謄本을 당해 假釋放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蓋然的 原因이 인정된 후 委員會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자에 대하여 假釋放監視를 재개하여야 한다.

(i) 取消節次의 계속이 보장되지 아니하는 경우

(ii) 당해 違反의 頻度나 重大性으로 볼 때 차후의 取消節次時까지 당해 가석방자의 拘禁이 보장되지 아니하는 경우

(iii) 당해 假釋放者가 차후의 節次에 出席하지 아니할 可能性이 거의

revocation hearing at or reasonably near the place of the alleged parole violation or arrest within sixty days of such determination of probable cause except that a revocation hearing may be held at the same time and place set for the preliminary hearing.

(2) Hearings held pursuant to subparagraph (1) of this subsection shall be conducted by the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dures:

(A) notice to the parolee of the conditions of parole alleged to have been violated, and the time, place, and purposes of the scheduled hearing;

(B) opportunity for the parolee to be represented by an attorney (retained by the parolee, or if he is financially unable to retain counsel, counsel shall be provided pursuant to section 3006A) or, if he so chooses, a representative as provided by rules and regulations, unless the parolee knowingly and intelligently waives such representation.

(C) opportunity for the parolee to appear and testify, and present witnesses and relevant evidence on his own behalf; and

(D) opportunity for the parolee to be apprised of the evidence against him and, if he so requests, to confront and cross-examine adverse witnesses, unless the Commission specifically finds substantial reason for not so allowing.

For the purposes of subparagraph (1) of this subsection, the Commission may subpena witnesses and evidence, and pay witness fees as established for the courts of the United States. If a person refuses to obey such a subpena, the Commission may petition a court of the United States for the judicial district in which such parole proceeding is being conducted, or in which such person may be found, to request such person to attend, testify, and produce evidence. The court may issue an order requiring such person to appear before the Commission, when the court finds such information, thing, or testimony directly related to a matter with respect to which the Commission is empowered to make a determination under this section. Failure to obey such an order is punishable by such court as a contempt. All process in such a case may be served in the judicial district in which such a parole proceeding is being conducted, or in which such person may be found.

(b) (1) Conviction for a Federal, State, or local crime committed subsequent to release on parole shall constitute probable cause for purposes of subsection (a) of this section. In cases in which a parolee has been convicted of such a crime and is serving a new sentence in an institution, a parole revocation warrant or summons issued pursuant to section 4213 may be placed against him as a detainer. Such detainer shall be reviewed by the Commission within

없는 경우

(iv) 당해 가석방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 경우

(B) 1문의 (A)문에 따라 蓋然的 原因이 인정된 때에는 豫備審理가 행해진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取消審理가 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蓋然的 原因이 결정된지 60일이내에 假釋放 위반의 嫌疑가 있는 장소나 체포장소에서 또는 그곳에 합리적으로 가까운 장소에서 取消審理를 받는다.

2. 이 항의 1문에 따라 개최되는 審理는 다음 節次에 의거하여 委員會가 수행한다.

(A) 위반의 嫌疑가 있는 假釋放條件과 예정된 審理 日時·場所·目的에 대하여 당해 가석방자에의 통지

(B) 假釋放者가 대리를, 認知的으로 그리고 이해하면서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가석방자가 이미 選任한 또는 그가 財政的으로 辯護人을 選任할 能力이 없을 경우에는 제3006조 A에 의거하여 변호인이 선정된다) 辯護人이나 命令과 규칙에 규정된 바의 代理人에 의하여 代理될 수 있는 기회의 부여.

(C) 假釋放者에게 그 자신을 위하여 出席하고 證言하며, 證人과 관련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의 부여.

(D) 假釋放者가 자신에게 불리한 證據를 通知받고, 委員會가 특히 허가하지 아니할 만한 사실상의 이유가 없는 한 假釋放者의 要求에 의하여 불리한 證人과 대면하여 反對訊問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부여.

이 항의 1문을 위하여 위원회는 證人과 證據를 召喚할 수 있으며, 미합중국 法院에 대하여 인정되는 證人出席手當를 지급할 수 있다.

위의 召喚에 불응한 자에 대하여는 委員會는 당해 假釋放節次가 진행되고 있는 司法管轄地域 또는 그의 現在地의 미합중국 法院에 그가 出席·證言하고 證據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請願을 할 수 있다.

法院은 그러한 資料, 물건 또는 證言이 委員會가 이 조에 따라 決定을 할 權限이 있는 사항에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에게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命令을 발할 수 있다.

one hundred and eighty days of notification to the Commission of placement. The parolee shall receive notice of the pending review, have an opportunity to submit a written application containing information relative to the disposition of the detainer, and, unless waived, shall have counsel as provided in subsection (a) (2) (B) of this section to assist him in the preparation of such application.

(2) If the Commission determines that additional information is needed to review a detainer, a dispositional hearing may be held at the institution where the parolee is confined. The parolee shall have notice of such hearing, be allowed to appear and testify on his own behalf, and, unless waived, shall have counsel as provided in subsection (a) (2) (B) of this section.

(3) Following the disposition review, the Commission may:

(A) let the detainer stand; or

(B) withdraw the detainer.

(c) Any alleged parole violator who is summoned or retaken by warrant under section 4213 who knowingly and intelligently waives his right to a hearing under subsection (a) of this section, or who knowingly and intelligently admits violation at a preliminary hearing held pursuant to subsection (a) (1) (A) of this section, or who is retaken pursuant to subsection (b) of this section, shall receive a revocation hearing within ninety days of the date of retaking. The Commission may conduct such hearing at the institution to which he has been returned, and the alleged parole violator shall have notice of such hearing, be allowed to appear and testify on his own behalf, and, unless waived, shall have counsel or another representative as provided in subection (a) (2) (B) of this section.

(d) Whenever a parolee is summoned or retaken pursuant to section 4213, and the Commission finds pursuant to the procedures of this section and by a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that the parolee has violated a condition of his parole the Commission may take any of the following actions:

(1) restore the parolee to supervision;

(2) reprimand the parolee;

(3) modify the parolee's conditions of the parole;

(4) refer the parolee to a residential community treatment center for all or part of the remainder of his original sentence; or

(5) formally revoke parole or release as if on parole pursuant to this title.

The Commission may take any such action provided it has taken into consideration whether or not the parolee has been convicted of any Federal, State,

위의 命令에 대한 불응은 당해 法院이 侮辱罪로 처벌할 수 있다.
위의 경우에 모든 節次는 당해 가석방절차가 진행 중인 司法管轄地域 또는 그의 現在地의 司法管轄에서 수행될 수 있다.

② 1. 假釋放된 후에 범한 聯邦犯罪나 州, 地方犯罪로 인한 有罪判決은 이 조 제1항에 있어서의 蓋然的인 原因이 된다. 假釋放者가 위와 같은 犯罪로 인하여 有罪判決을 받고 시설에서 새로 宣告된 刑의 執行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4213조에 따라 발부된 假釋放取消令狀이나 召喚狀은 그에 대해서는 拘禁令狀으로 代替될 수 있다. 代替가 위원회에 通知된 지 180일 이내에 위원회는 당해 拘禁令狀을 심사하여야 한다. 당해 假釋放者는 계속 중인 審査에 대하여 通知를 받아야 하며, 당해 拘禁令狀의 처리에 관련이 있는 資料를 담은 書面申請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위의 신청을 준비하는데 있어 그를 助力할 辯護人을 이 조의 제1항 2.(B)에 규정된 바에 따라 選任할 수 있다.

2. 委員會가 拘禁令狀을 심사하기 위해서 추가의 資料가 필요하다고 決定한 경우에는 그 가석방자가 拘禁되어 있는 施設에서 處理를 위한 審理를 개시할 수 있다. 假釋放者는 위의 審理에 대한 通知를 받아야 하고 그 자신을 위하여 出席하여 證言할 수 있으며,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의 제1항 2.(B)에 규정된 바에 따라 辯護人의 助力을 받는다.

3. 처리심사를 거친 후에 위원회는

(A) 당해 拘禁令狀의 效力을 인정하거나

(B) 당해 구금영장을 철회할 수 있다.

③ 假釋放 위반의 嫌疑가 있어 제4213조에 따라 召喚 또는 再逮捕된 자가 이 조 제1항에 의한 審理에 대한 權利를 認知的으로 그리고 理解하면서 拋棄하거나 이 조 제1항 1.(A)에 의거하여 개시되는 豫備審理에서 認知的으로 그리고 이해하면서 위반을 是認한 경우 또는 이 조의 제2항에 의하여 再逮捕된 경우에는 재체포일로부터 90일이내에 取消審理를 받는다. 委員會는 그가 移送된 施設에서 위의 審理를 수행할 수 있으며, 가석방 위반의 혐의가 있는 가석방자는 위의 審理에 대한 通知를 받아야 하고, 그 자신을 위하여 出席證言할 수 있으며,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 제1항 2.(B)에 규정된 바에 따라 辯護

or local crime subsequent to his release on parole, and the seriousness thereof, or whether such action is warranted by the frequency or seriousness of the parolee's violation of any other condition or conditions of his parole.

(e) The Commission shall furnish the parolee with a written notice of its determination not later than twenty-one days, excluding holidays, after the date of the revocation hearing. If parole is revoked, a digest shall be prepared by the Commission setting forth in writing the factors considered and reasons for such action, a copy of which shall be given to the parolee.

(Added Pub. L. 94-233, § 2, Mar. 15, 1976, 90 Stat. 228.)

§ 4215. Appeal

(a) Whenever parole release is denied under section 4206, parole conditions are imposed or modified under section 4209, parole discharge is denied under section 4211(c), or parole is modified or revoked under section 4214, the individual to whom any such decision applies may appeal such decision by submitting a written application to the National Appeal Board not later than thirty days following the date on which the decision is rendered.

(b) The National Appeals Board, upon receipt of the appellant's papers, must act pursuant to rules and regulations within sixty days to reaffirm, modify, or reverse the decision and shall inform the appellant in writing of the decision and the reasons therefor.

人이나 기타 代理人의 助力을 받는다.

④ 假釋放者가 제4213조에 따라 召喚 또는 再逮捕되고, 위원회가 이 조의 절차에 의거하여 證據의 優勢에 따라 가석방자가 그의 假釋放의 條件을 위반하였음을 認定한 때에는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당해 假釋放者에 대한 監視의 再開
2. 당해 假釋放者의 懲戒
3. 당해 가석방자의 假釋放 條件의 變更
4. 당해 가석방자의 原宣告刑의 殘餘分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社會內處遇施設에의 委託 또는
5. 假釋放 또는 이 편에 의하여 가석방으로 간주되는 釋放의 公式取消

委員會는 위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 당해 假釋放者가 가석방된 후에 聯邦犯罪나 州, 地方의 犯罪로 인하여 有罪判決을 받았는가 여부와, 그 犯罪의 重大性 또는당해 假釋放者의 다른 가석방 조건에 대한 위반의 頻度와 重大性으로 볼 때 위의 조치가 正當한 根據가 있는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委員會는 取消審理日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21일 이내에 委員外의 決定을 당해 가석방자에게 書面으로 通知하여야 한다. 假釋放이 取消된 경우에는 委員會는 그러한 決定에 고려된 要素와 決定理由를 설명하는 槪要를 書面으로 준비하여야 하며, 그것의 謄本이 당해 가석방자에게 交付되어야 한다.

(Added Pub. L. 94—233, §2, Mar. 15, 1976, 90 Stat. 228)

제4215조 (抗告) ① 제4206조에 의하여 假釋放이 거부된 경우 제 4209조에 의하여 假釋放條件이 부과되거나 변경된 경우, 제 4211조에 의하여 假釋放 終了가 거부된 경우 또는 제 4214조에 의하여 가석방이 變更되거나 取消된 경우에는 그러한 決定의 適用을 받는 자는 결정이 행해진 날로부터 30일이내에 國立抗訴委員會에 書面申請을 제출함으로써 당해 결정에 대하여 抗告할 수 있다.

② 국립항소위원회는 抗訴人의 書面을 接受한 때에는 命令과 規則에 의거하여 60일 이내에 決定을 確認, 更正 또는 取消하여야 하며, 抗訴人에게 그 決定과 決定理由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國立抗訴委員會는 支部委員의 決定을 결정이 있은 후 30일 이내에 法務長

(c) The National Appeals Board may review any decision of a regional commissioner upon the written request of the Attorney General filed not later than thirty days following the decision and, by majority vote, shall reaffirm, modify, or reverse the decision within sixty days of the receipt of the Attorney General's request. The Board shall inform the Attorney General and the individual to whom the decision applies in writing of its decision and the reasons therefor.
(Added Pub. L. 94-233, § 2, Mar. 15, 1976, 90 Stat. 230, and amended Pub. L. 98-473, Title II, § 1408 (c), Oct. 12, 1984, 98 Stat. 2178.)

§ 4216. Young adult offenders

In the case of a defendant who has attained his twenty-second birthday but has not attained his twenty-sixth birthday at the time of conviction, if, after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previous record of the defendant as to delinquency or criminal experience, his social background, capabilities, mental and physical health, and such other factors as may be considered pertinent, the court finds that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the defendant will benefit from the treatment provided under the Federal Youth Corrections Act (18 U.S.C., chap. 402) sentence may be impos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uch Act.
(Added Pub. L. 94-233, § 2, Mar. 15, 1976, 90 Stat. 230.)

§ 4217. Warrants to retake Canal Zone parole violators

An officer of a Federal penal or correctional institution, or a Federal officer authorized to serve criminal process within the United States, to whom a warrant issued by the Governor of the Canal Zone for the retaking of a parole violator is delivered, shall execute the warrant by taking the prisoner and holding him for delivery to a representative of the Governor of the Canal Zone for return to the Canal Zone.
(Added Pub. L. 94-233, § 2, Mar. 15, 1976, 90 Stat. 231.)

§ 4218. Applicability of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 For purposes of the provisions of chapter 5 of title 5, United States Code, other than sections 554, 555, 556, and 557, the Commission is an "agency" as defined in such chapter.

(b) For purposes of subsection (a) of this section, section 553 (b) (3) (A) of title 5, United States Code, relating to rulemaking, shall be deemed not to include the phrase "general statements of policy".

(c) To the extent that actions of the Commission pursuant to section 4203 (a) (1) are not in accord with the provisions of section 553 of title 5, United States Code, they shall be reviewabl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sections 701 through 706 of title 5, United States Code.

官이 제출한 書面要求에 의하여 審査할 수 있다. 국립항소위원회는 법무장관의 요청을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過半数 議決로써 당해 결정을 확인, 경정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국립항소위원회는 당해 決定의 適用을 받는 자와 법무장관에게 그 決定과 決定理由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Added Pub. L. 94—233, §2, Mar. 15, 1976, 90 Stat. 230 and ameuded Pub. L.98—473, Title Ⅱ, §1408(C), Oct. 12, 1984, 98 Stat. 2178)

제4216조 (青年成人 犯罪者) 有罪判決時에 22회 生日을 경과하고 26회 생일에는 이르지 아니한 被告에 있어서는 法院이 犯罪 또는 犯罪的 經驗에 관한 被告의 前科, 그의 社會的 背景, 才能, 정신적·육체적 건강과 적절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기타의 요소를 고려한 후에 피고가 青年矯正에 관한 聯邦法律(18 U.S.C. 402장)에 규정된 處遇를 받을 만하다고 믿을 수 있는 상당한 根據가 있다고 認定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宣告를 할 수 있다.

(Added Pub. L. 94—233, §2, Mar. 15, 1976, 90 Stat. 230)

제4217조 (파나마 運河地區의 假釋放違反者에 대한 再逮捕令狀) 聯邦矯正施設의 職員 또는 미합중국내에서 刑事節次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聯邦職員은 가석방위반자의 再逮捕를 위하여 파나마 運河地區의 總督이 발부한 令狀의 送達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수형자를 逮捕하고 파나마 運河地區로 歸送시키기 위하여 파나마 운하지구의 總督의 代理人에게 引渡함으로써 令狀을 집행한다.

(Added Pub. L. 94—233, §2, Mar. 15, 1976, 90 Stat 231)

제4218조 (行政訴訟法의 適用) ① 미합중국법령집 제5편 제5장의 규정에 있어서 제554조, 제555조, 제556조, 제557조를 제외하고는 委員會는 위의 장에 규정된 "機關"이다.

② 이 조 제1항을 위하여는 規則制定에 관한 미합중국법령집 제5편의 제553조 ② 3.(A)는 "政策에 대한 일반적인 陳述" 문구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4203조 제1항 1.문에 의거한 委員會의 措置는 미합중국법령집 제5편 제553조의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미합중국법령집 제5편 제701조

(d) Actions of the Commission pursuant to paragraphs (1), (2), and (3) of section 4203 (b) shall be considered actions committed to agency discretion for purposes of section 701 (a) (2) of title 5, United States Code.
(Added Pub. L. 94-233, § 2, Mar. 15, 1976, 90 Stat. 231).

CHAPTER 313 OFFENDERS WITH MENTAL DISEASE OR DEFECT

§ 4241. Determination of mental competency to stand trial

(a) Motion to determine competency of defendant. — At any time after the commencement of a prosecution for an offense and prior to the sentencing of the defendant, the defendant or the attorney for the Government may file a motion for a hearing to determine the mental competency of the defendant. The court shall grant the motion, or shall order such a hearing on its own motion, if there is reasonable cause to believe that the defendant may presently be suffering from a mental disease or defect rendering him mentally incompetent to the extent that he is unable to understand the nature and consequences of the proceedings against him or to assist properly in his defense.

(b)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examination and report. — Prior to the date of the hearing, the court may order that a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examination of the defendant be conducted, and that a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report be filed with the cour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4247 (b) and (c).

(c) Hearing. — The hearing shall be conduct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4247 (d).

(d) Determination and disposition. — If, after the hearing, the court finds by a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that the defendant is presently suffering from a mental disease or defect rendering him mentally incompetent to the extent that he is unable to understand the nature and consequences of the proceedings against him or to assist properly in his defense, the court shall commit the defendant to the custody of the Attorney General. The Attorney General shall hospitalize the defendant for treatment in a suitable facility —

(1) for such a reasonable period of time, not to exceed four months, as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a substantial probability that in the foreseeable future he will attain the capacity to permit the trial to proceed; and

(2) for an additional reasonable period of time until —

내지 제70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審査될 수 있다.

④ 제4203조 제2항의 1, 2, 3문에 의한 委員會의 措置는 미합중국법령집 제5편의 제 701조 ① 2문에 있어서는 期間의 裁量으로 취한 措置로 간주한다.

(Added Pub. L. 94—223, § 2, Mar. 15, 1976, 90 Stat. 231.)

제313장 精神病이나 精神的 缺陷을 지닌 犯罪人

제4241조 (裁判을 받을 精神的 能力에 대한 判定) ① 被告의 能力을 決定하기 위한 申請 — 범죄로 인하여 訴追가 開始된 후 被告에 대한 宣告前에는 언제든지 被告 또는 檢事는 피고의 精神能力을 판정하기 위한 審理를 신청할 수 있다. 法院은 피고가 자신에 대한 訴訟節次의 性質과 結果를 이해할 수 없거나 적절히 자신을 辯護할 수 없을 정도로 그를 정신적으로 無能力하게 만드는 精神的 缺陷이나 精神病를 현재 갖고 있다고 믿을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들이거나 職權으로 위의 審理를 명한다.

② 精神病檢査 또는 心理檢査와 報告 — 審理期日前에 法院은 피고에 대한 精神病檢査 또는 心理檢査를 행할 것과, 정신병 또는 심리보고서를 제4247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法院에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審理 — 심리는 제42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된다.

④ 判定과 處決 — 審理結果를 법원이 證據의 優勢에 의하여 被告가 자신에 대한 訴訟節次의 性質과 結果를 이해할 수 없거나 적절히 자신을 辯護할 수 없을 정도로 그를 精神的 無能力에 처하게 하는 精神病이나 精神的 缺陷을 현재 갖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被告를 法務長官의 監護에 위탁해야 한다. 法務長官은 적당한 施設에 處遇를 위하여 다음의 기간동안 被告를 入院시켜야 한다. —

1. 그가 豫測可能한 장래에 裁判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할 사실상의 可能性이 있는가를 判定하는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으로 4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2. 다음 중 빠른 기간까지의 상당한 追加期間

(A) his mental condition is so improved that trial may proceed, if the court finds that there is a substantial probability that within such additional period of time he will attain the capacity to permit the trial to proceed; or

(B) the pending charges against him are disposed of according to law;

whichever is earlier.

If, at the end of the time period specified, it is determined that the defendant's mental condition has not so improved as to permit the trial to proceed, the defendant i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4246.

(e) Discharge. — When the director of the facility in which a defendant is hospitalized pursuant to subsection (d) determines that the defendant has recovered to such an extent that he is able to understand the nature and consequences of the proceedings against him and to assist properly in his defense, he shall promptly file a certificate to that effect with the clerk of the court that ordered the commitment. The clerk shall send a copy of the certificate to the defendant's counsel and to the attorney for the Government. The court shall hold a hearing, conduct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4247 (d), to determine the competency of the defendant. If, after the hearing, the court finds by a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that the defendant has recovered to such an extent that he is able to understand the nature and consequences of the proceedings against him and to assist properly in his defense, the court shall order his immediate discharge from the facility in which he is hospitalized and shall set the date for trial. Upon discharge, the defendant i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chapter 207.

(f) Admissibility of finding of competency. — A finding by the court that the defendant is mentally competent to stand trial shall not prejudice the defendant in raising the issue of his insanity as a defense to the offense charged, and shall not be admissible as evidence in a trial for the offense charged.

(June 25, 1948, c. 645, 62 Stat. 855; Oct. 12, 1984, Pub. L. 98-473, Title II, § 403(a), 98 Stat. 2057.)

§ 4242. Determination of the existence of insanity at the time of the offense

(a) Motion for pretrial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examination. — Upon the filing of a notice, as provided in Rule 12.2 of the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that the defendant intends to rely on the defense of insanity, the court, upon motion of the attorney for the Government, shall order that a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examination of the defendant be conducted, and that a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report be filed with the court, pursuant to the

(A) 法院이 追加期間內에 그가 裁判을 계속할 수 있는 能力을 획득할 事實上의 可能性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裁判을 계속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정신적 상태가 개선될 때까지 또는

(B) 그에 대한 現 起訴가 법률에 따라 처결될 때까지. 指定된 期間의 만료시에 被告의 精神的 狀態가 裁判을 계속할 수 있을 정도로 改善되지 아니했다고 判定된 경우에는 피고는 제4246조의 규정에 의한다.

④ 釋放 — 제3항에 의하여 被告를 入院시킨 施設의 長은 被告가 그에 대한 訴訟節次의 性質과 結果를 이해할 수 있고 적절히 그 자신을 辯護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하였다고 判定한 경우에는 즉시 그 效果에 대한 證明을 監護를 命했던 法院의 書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기는 그 證明의 謄本을 被告의 護人과 檢事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法院은 被告의 적격 判定하기 위하여 제424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審理를 개시하여야 한다. 法院은, 審理後에 證據의 優勢에 의하여 被告가 그에 대한 訴訟綴字의 性質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고, 적절히 그 자신을 辯護할 수 있을 정도조 회복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가 入院施設로부터 즉시 退院할 것을 命하고, 公期日을 정한다. 退院에 있어서 被告는 제207 장의 규정에 의한다.

⑤ 適格認定의 採擇 — 法院이 被告가 裁判을 받을 수 있는 精神的 能力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被告는 起訴된 犯罪에 대한 防禦로 자신의 精神異常을 제기함에 있어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며, 위의 事實認定은 裁判에서 기소된 범죄에 대한 證據로 채택되지 아니한다.

(June 25, 1948, c.645, 62 Stat. 855; Oct. 12, 1984, Pub. L. 98—473, Title Ⅱ, §403①, 98 Stat. 2057.)

제4242조 (犯罪時 精神異常의 存在에 대한 判定) ① 裁判前의 精神病 檢查 또는 審理檢事에 대한 申請 — 연방 刑事訴訟規則 제12.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피고가 精神異常을 防禦手段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通知를 접수한 때에는 法院은 檢事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精神病檢查 또는 審理檢查를 행할 것과 제 4247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병보고서 또는 심리보

provisions of section 4247(b) and (c).

(b) Special verdict. – If the issue of insanity is raised by notice as provided in Rule 12.2 of the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on motion of the defendant or of the attorney for the Government, or on the court's own motion, the jury shall be instructed to find, or, in the event of a nonjury trial, the court shall find the defendant –

(1) guilty;
(2) not guilty; or
(3) not guilty only by reason of insanity.

(June 25, 1948, c. 645, 62 Stat. 855; Oct. 12, 1984, Pub. L. 98-473, Title II, § 403(a), 98 Stat. 2059.)

§ 4243. Hospitalization of a person found not guilty only by reason of insanity

(a) Determination of present mental condition of acquitted person. – If a person is found not guilty only by reason of insanity at the time of the offense charged, he shall be committed to a suitable facility until such time as he is eligible for release pursuant to subsection (e).

(b)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examination and report. – Prior to the date of the hearing, pursuant to subsection (c), the court shall order that a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examination of the defendant be conducted, and that a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report be filed with the cour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4247 (b) and (c).

(c) Hearing. – A hearing shall be conduct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4247(d) and shall take place not later than forty days following the special verdict.

(d) Burden of proof. – In a hearing pursuant to subsection (c) of this section, a person found not guilty only by reason of insanity of an offense involving bodily injury to, or serious damage to the property of, another person, or involving a substantial risk of such injury or damage, has the burden of proving by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that his release would not create a substantial risk of bodily injury to another person or serious damage of property of another due to a present mental disease or defect. With respect to any other offense, the person has the burden of such proof by a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e) Determination and disposition. – If, after the hearing, the court fails to find by the standard specified in subsection (d) of this section that the person's

고서를 法院에 提出할 것을 명한다.

② 特別評決 — 被告의 신청 또는 정부의 檢事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法院의 職權으로, 聯邦刑事訴訟規則 제 12.2조에 규정된 바의 通知에 따라 精神異常이 쟁점으로 제기된 경우에는 陪審은 피고에게 다음이 인정된다는 說示를 받아야 하며, 非陪審裁判의 경우에는 法院이 被告에 대하여 다음 각호를 인정하여야 한다.

1. 有罪
2. 無罪
3. 단지 精神異常을 이유로 한 無罪

(June 25, 1948, C 645, 62 Stat. 855; Oct. 12, 1984, Pub. L. 98—473, Title Ⅱ, § 403①, 98 Stat. 2059)

제4243조 (精神異常만을 이유로 하여 無罪가 인정된 者의 入院) ① 無罪判決을 받은 자의 현재의 精神狀態의 判定 — 기소된 범죄당시의 精神異常만을 이유로하여 無罪가 認定된 자는 제⑤항에 의한 釋放의 適格을 갖출 때까지 적당한 시설에 監護된다.

② 精神病檢查 또는 心理檢查와 報告 — 제3항에 의한 審理期日前에 法院은 被告에 대한 精神病 檢查 또는 心理檢查를 행할 것과 精神病 또는 心理報告를 제4247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提出할 것을 명한다.

③ 審理 — 審理는 제424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遂行되며 特別評決 후 40일 이내에 행한다.

④ 立證責任 — 이 조 제3항에 의거한 審理에서 他人에 대한 身體的 傷害 또는 타인의 財產에 대한 중대한 損失을 수반하거나 그러한 傷害 또는 損失의 사실상의 위험을 수반하는 犯罪에 대하여 精神異常의 理由만으로 無罪로 인정된 자는 명백하고, 信憑性 있는 證據로써 자신의 釋放이 현재의 精神的 疾病이나 缺陷으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身體的 傷害 또는 타인의 財產에 대한 重大한 損失의 실질적 위험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立證할 責任을 부담한다. 기타의 범죄에 있어서는 證據의 優勢에 의한 立證責任을 진다.

⑤ 判定과 處決 — 審理 후에 法院은 이 조 제4항에 규정된 기준에 의하여 그

release would not create a substantial risk of bodily injury to another person or serious damage of property of another due to a present mental disease or defect, the court shall commit the person to the custody of the Attorney General. The Attorney General shall release the person to the appropriate official of the State in which the person is domiciled or was tried if such State will assume responsibility for his custody, care, and treatment. The Attorney General shall make all reasonable efforts to cause such a State to assume such responsibility. If, notwithstanding such efforts, neither such State will assume such responsibility, the Attorney General shall hospitalize the person for treatment in a suitable facility until —

(1) such a State will assume such responsibility; or

(2) the person's mental condition is such that his release, or his conditional release under a prescribed regimen of medical,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care or treatment, would not create a substantial risk of bodily injury to another person or serious damage to property of another;

whichever is earlier. The Attorney General shall continue periodically to exert all reasonable efforts to cause such a State to assume such responsibility for the person's custody, care, and treatment.

(f) Discharge. — When the director of the facility in which an acquitted person is hospitalized pursuant to subsection (e) determines that the person has recovered from his mental disease or defect to such an extent that his release, or his conditional release under a prescribed regimen of medical,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care or treatment, would no longer create a substantial risk of bodily injury to another person or serious damage to property of another, he shall promptly file a certificate to that effect with the clerk of the court that ordered the commitment. The clerk shall send a copy of the certificate to the person's counsel and to the attorney for the Government. The court shall order the discharge of the acquitted person or, on the motion of the attorney for the Government or on its own motion, shall hold a hearing, conduct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4247(d), to determine whether he should be released. If, after the hearing, the court finds by the standard specified in subsection (d) that the person has recovered from his mental disease or defect to such an extent that —

(1) his release would no longer create a substantial risk of bodily injury to another person or serious damage to property of another, the court shall order that he be immediately discharged; or

(2) his conditional release under a prescribed regimen of medical,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care or treatment would no longer create a

자의 釋放이 현재의 精神的 疾病이나 缺陷으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身體的 傷害 또는 타인의 財産에 대한 중대한 損失의 實質的인 危險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를 法務長官의 監護에 위탁한다.
法務長官은 그의 住所地 또는 裁判이 행하여진 地域의 州가 그에 대한 監護, 治療와 處遇의 責任을 인수하려 하는 경우에는 그를 석방하여 위의 州의 관계 공무원에게 인계한다.
法務長官은 위의 州가 당해 責任을 인수하도록 상당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의 州가 그 責任을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무장관은—

1. 당해 州가 責任을 引受할 때까지 ; 또는
2. 그의 釋放 또는 醫療的·精神病的·心理的 治療 및 處遇에 관한 處方療法을 부과하는 條件附 釋放으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身體的 傷害나 타인의 재산에 대한 중대한 損失의 實質的 危險을 야기하지 아니할 정도로 그 자의 精神的 狀態가 改善될때까지 ;
   그중 빠른 기간까지 그를 處遇를 위하여 적당한 施設에 入院시켜야 한다.
   法務長官은 위의 州가 그에 대한 監護治療 및 處遇의 責任을 引受하도록 상당한 모든 노력을 정기적으로 계속하여야 한다.

⑥ 釋放 — 無罪로 인정된 자가 제5항에 의거하여 入院하고 있는 施設의 長은 그가 석방 또는 醫療的·精神病的·心理的 治療와 處遇의 處方療法, 條件附 釋放으로 인하여 더 이상 타인에 대한 身體的 傷害 또는 타인의 財産에 대한 중대한 損失의 實質的인 危險을 야기하지 않을 정도로 정신적 질병 또는 결함으로부터 회복되었다고 판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效果에 대한 證明書를 監護를 명한 法院의 書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書記는 그의 辯護人과 檢事에게 그 證明의 謄本을 송달하여야 한다. 法院은 無罪가 인정된 그자의 釋放을 명하거나 또는 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그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를 제4247조 제4항에 의거하여 개시하여야 한다. 심리 후에 법원은 제4항에 규정된 기준에 의하여,

1. 그가 釋放으로 인하여 더 이상 타인에 대한 身體的 傷害 또는 타인의 財

substantial risk of bodily injury to another person or serious damage to property of another, the court shall—

(A) order that he be conditionally discharged under a prescribed regimen of medical,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care or treatment that has been prepared for him, that has been certified to the court as appropriate by the director of the facility in which he is committed, and that has been found by the court to be appropriate; and

(B) order, as an explicit condition of release, that he comply with the prescribed regimen of medical,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care or treatment.

The court at any time may, after a hearing employing the same criteria, modify or eleiminate the regimen of medical,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care or treatment.

(g) Revocation of conditional discharge. — The director of a medical facility responsible for administering a regimen imposed on an acquitted person conditionally discharged under subsection (f) shall notify the Attorney General and the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erson of any failure of the person to comply with the regimen. Upon such notice, or upon other probable cause to believe that the person has failed to comply with the prescribed regimen of medical,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care or treatment, the person may be arrested, and, upon arrest, shall be taken without unnecessary delay before the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him. The court shall, after a hearng, determine whether the person should be remanded to a suitable facility on the ground that, in light of his failure to comply with the prescribed regimen of medical,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care or treatment, his continued release would create a substantial risk of bodily injury to another person or serious damage to property of another.

(June 25, 1948, c. 645, 62 Stat. 855; Pub. L. 98-473, Title II, § 403(a), Oct. 12, 1984, 98 Stat. 2059.)

産에 대한 중대한 損失의 실질적인 危險을 야기하지 아니할 정도로 精神的 疾病이나 결함으로부터 회복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를 즉시 釋放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2. 그가 醫療的·精神病的·心理的 治療와 處遇에 관한 處方療法을 부과하는 條件附 釋放으로 인하여 더 이상 타인에 대한 身體的 傷害 또는 타인의 재산에 대한 중대한 損失의 實質的인 危險을 야기하지 아니할 정도로 精神的 疾病이나 결함으로 부터 회복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A) 그가 수용되어 있는 施設의 長이 法院에 대하여 적절한 것이라고 증명하고 法院이 또한 적절하다고 인정한 그에 대하여 마련된 醫療的·정신병적·心理的 治療와 處遇에 관한 處方療法을 부과하여 條件附로 그를 釋放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B) 釋放에 대한 明示的 條件으로 그에게 의료적·정신병적·심리적 치료와 처우에 관한 처방요법에 응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法院은 언제든지 위와 동일한 基準을 사용하는 審理를 거쳐서 醫療的·정신병적·心理的 治療와 處遇에 관한 處方療法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⑦ 條件附 釋放의 取消 — 無罪가 인정되어 제6항에 따라 條件附로 釋放된 자에게 부과된 療法을 집행할 책임이 있는 醫療施設의 長은 그가 요법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法務長官과 그에 대한 管轄法院에 통지하여야 한다.

위의 通知를 받은 경우에 또는 그가 의료적·정신병적·심리적 치료와 處遇에 관한 處方療法에 응하지 아니한다고 믿을만한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를 逮捕할 수 있으며, 逮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를 그에 대한 管轄法院에 인치하여야 한다. 法院은 그가 의료적·정신병적·심리적 치료와 처우에 관한 처방요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때, 그의 계속되는 釋放이 타인에 대한 身體的 傷害 또는 타인의 財産에 대한 중대한 損失의 실질적인 危險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여 그를 적당한 시설에 再收容할 것인가 여부를 審理를 거쳐서 결정하여야 한다.

(June 25, 1948. c. 645, 62 Stat. 855; Pub. L. 98—473, Title II, § 403 ①, Oct. 12. 1984. 98 Stat. 2059.)

§ 4244. Hospitalization of a convicted person suffering from mental disease or defect

(a) Motion to determine present mental condition of convicted defendant. — A defendant found guilty of an offense, or the attorney for the Government, may, within ten days after the defendant is found guilty, and prior to the time the defendant is sentenced, file a motion for a hearing on the present mental condition of the defendant if the motion is supported by substantial information indicating that the defendant may presently be suffering from a mental disease or defect for the treatment of which he is in need of custody for care or treatment in a suitable facility. The court shall grant the motion, or at any time prior to the sentencing of the defendant shall order such a hearing on its own motion, if it is of the opinion that there is reasonable cause to believe that the defendant may presently be suffering from a mental disease or defect for the treatment of which he is in need of custody for care or treatment in a suitable facility.

(b)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examination and report. — Prior to the date of the hearing, the court may order that a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examination of the defendant be conducted, and that a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report be filed with the cour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4247 (b) and (c). In addition to the information required to be included in the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repor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4247 (c), if the report includes an opinion by the examiners that the defendant is presently suffering from a mental disease or defect but that it is not such as to require his custody for care or treatment in a suitable facility, the report shall also include an opinion by the examiner concerning the sentencing alternatives that could best accord the defendant the kind of treatment he does need.

(c) Hearing. — The hearing shall be conduct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4247 (d).

(d) Determination and disposition. — If, after the hearing, the court finds by a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that the defendant is presently suffering from a mental disease or defect and that he should, in lieu of being sentenced to imprisonment, be committed to a suitable facility for care or treatment, the court shall commit the defendant to the custody of the Attorney General. The Attorney General shall hospitalize the defendant for care or treatment in a suitable facility. Such a commitment constitutes a provisional sentence of imprisonment to the maximum term authorized by law for the offense for which the defendant was found guilty.

(e) Discharge. — When the director of the facility in which the defendant is hospitalized pursuant to subsection (d) determines that the defendant has

제4244조 (精神的 疾病이나 缺陷을 갖고 있는 者로서 有罪判決을 받은 者의 入院) ① 有罪判決을 받은 被告人의 현재의 精神的 狀態의 判定을 위한 申請—有罪가 인정된 被告 또는 검사는 피고에게 유죄가 인정된 후 10일 이내에 그리고 그 피고가 선고를 받기 전에 피고가 현재 精神的 疾病이나 결함을 갖고 있어서 治療 또는 處遇를 위하여 적당한 施設에의 監護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실질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被告의 현재의 精神的 狀態에 관한 審理의 申請을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가 현재 精神的 疾病이나 결함을 갖고 있어서 治療 또는 處遇를 위하여 적당한 施設에의 監護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職權으로 그 피고에 대한 宣告 전에 위의 審理를 명하여야 한다.

② 精神病 檢査 또는 心理檢査와 報告 — 審理期日前에 法院은 피고에 대한 精神病 檢査 또는 心理檢査를 행할 것과 정신병 또는 심리에 대한 보고를 제4247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法院에 提出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2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精神病 또는 心理에 관한 報告에 포함되어야 하는 자료와 더불어 추가로 피고가 현재 정신적 질병이나 결함을 갖고 있지만, 治療나 處遇를 위하여 적당한 施設에의 監護가 요구되는 정도는 아니라는 檢査官의 意見이 그 보고에 첨부된 때에는 그 보고는 또한 피고에게 필요로 하는 處遇의 種類를 가장 잘 제공할 수 있는 宣告方案에 관한 檢査官의 意見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③ 審理 — 審理는 제4247조 제4항에 의거하여 수행된다.

④ 判定과 處決 — 法院은 審理를 거친 후에 證據의 優勢에 의하여 피고가 현재 精神的 疾病이나 缺陷을 갖고 있다는 사실과 自由刑의 宣告에 대신하여 治療 또는 處遇를 위한 적당한 시설에 監護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피고를 法務長官의 監護에 위탁하여야 한다.

法務長官은 治療 또는 處遇를 위하여 피고를 적당한 시설에 入院시켜야 한다. 그러한 監護는 당해 피고에게 有罪가 인정된 범죄에 대한 法定最高刑으로 自由刑이 假宣告된 것으로 본다.

⑤ 釋放 — 피고가 제4항에 따라 入院하고 있는 施設의 長은 피고가 더 이상

recovered from his mental disease or defect to such an extent that he is no longer in need of custody for care or treatment in such a facility, he shall promptly file a certificate to that effect with the clerk of the court that ordered the commitment. The clerk shall send a copy of the certificate to the defendant's counsel and to the attorney for the Government. If, at the time of the filing of the certificate, the provisional sentence imposed pursuant to subsection (d) has not expired, the court shall proceed finally to sentencing and may modify the provisional sentence.

(Added Sept. 7, 1949, c. 535, § 1, 63 Stat. 686, and amended Oct. 12, 1984, Pub. L. 98-473, Title II, § 403(a), 98 Stat. 2061.)

§ 4245. Hospitalization of an imprisoned person suffering from mental disease or defect

(a) Motion to determine present mental condition of imprisoned person. — If a person serving a sentence of imprisonment objects either in writing or through his attorney to being transferred to a suitable facility for care or treatment, an attorney for the Government, at the request of the director of the facility in which the person is imprisoned, may file a motion with the court for the district in which the facility is located for a hearing on the present mental condition of the person. The court shall grant the motion if there is reasonable cause to believe that the person may presently be suffering from a mental disease or defect for the treatment of which he is in need of custody for care or treatment in a suitable facility. A motion filed under this subsection shall stay the transfer of the person pending completion of procedures contained in this section.

(b)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examination and report. — Prior to the date of the hearing, the court may order that a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examination of the person may be conducted, and that a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report be filed with the cour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4247 (b) and (c).

(c) Hearing. — The hearing shall be conduct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4247 (d).

(d) Determination and disposition. — If, after the hearing, the court finds by a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that the person is presently suffering from a mental disease or defect for the treatment of which he is in need of custody for care or treatment in a suitable facility, the court shall commit the person to the custody of the Attorney General. The Attorney General shall hospitalize the person for treatment in a suitable facility until he is no longer in need of such custody for care or treatment or until the expiration of the sentence of imprisonment, whichever occurs earlier.

治療 또는 處遇를 위하여 그 시설에 監護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精神的 疾病이나 결함으로부터 회복되었다고 判定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효과에 대한 증명을 監護를 명한 法院의 書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書記는 당해 피고의 辯護人과 檢事에게 그 證明의 謄本을 송달하여야 한다. 증명의 제출시에 제4항에 따라 부과된 假宣告가 만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法院은 최종적으로 宣告를 하여야 하며 假宣告를 변경할 수 있다.

(Added Sept. 7, 1949, c.535, §1, 63 Stat. 686, and amended Oct. 12, 1984, Pub. L. 98—473, Title II, §403①, 98 Stat. 2061.)

제4245조 (精神的 疾病이나 缺陷을 갖고 있는 受刑者의 入院) ① 受刑者의 현재의 精神的 狀態의 判定을 위한 申請—自由刑의 執行을 받고 있는 자가 書面 또는 그의 辯護人을 통하여 治療나 處遇를 위하여 적당한 시설에 移送되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에는 檢事는 그가 拘禁되어 있는 施設의 長의 요구에 의하여 그의 현재의 精神的 狀態에 관한 審理를 당해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管轄法院에 신청할 수 있다.

法院은 그가 현재 精神的 疾病이나 결함을 갖고 있어서 治療나 處遇를 위하여 적당한 시설에 監護될 필요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이 조에 규정된 節次가 終了할 때까지 그의 移送이 연기된다.

② 精神病 檢査 또는 心理檢査와 報告 — 審理期日前에 법원은 그에 대한 精神병검사 또는 심리검사를 행할 것과, 정신병이나 심리에 관한 보고를 제4247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審理 — 審理는 제424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된다.

④ 判定과 處決—法院은 심리를 거친 후에 證據의 優勢에 의하여 그가 현재 정신적 질병이나 결함을 갖고 있어서 治療나 處遇를 위하여 적당한 시설에 監護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를 法務長官의 監護에 위탁하여야 한다. 法務長官은 그가 더 이상 治療나 處遇를 위하여 監護될 필요가 없을 때까지 또는 自由刑의 宣告가 만료할 때까지 양자 중 빠른 기간까지 그의 處遇를 위하여 적당한 施設에 입원시켜야 한다.

(e) Discharge. — When the director of the facility in which the person is hospitalized pursuant to subsection (d) determines that the person has recovered from his mental disease or defect to such an extent that he is no longer in need of custody for care or treatment in such a facility, he shall promptly file a certificate to that effect with the clerk of the court that ordered the commitment. The clerk shall send a copy of the certificate to the person's counsel and to the attorney for the Government. If, at the time of the filing of the certificate, the term of imprisonment imposed upon the person has not expired, the court shall order that the person be reimprisoned until the expiration of his sentence of imprisonment.
(Added Sept. 7, 1949, c. 535, § 1, 63 Stat. 687, and amended Oct. 12, 1984, Pub. L. 98-473, Title II, § 403(a), 98 Stat. 2062.)

§ 4246. Hospitalization of a person due for release but suffering from mental disease or defect.

(a) Institution of proceeding. — If the director of a facility in which a person is hospitalized certifies that a person whose sentence is about to expire, or who has been committed to the custody of the Attorney General pursuant to section 4241 (d), or against whom all criminal charges have been dismissed solely for reasons related to the mental condition of the person, is presently suffering from a mental disease or defect as a result of which his release would create a substantial risk of bodily injury to another person or serious damage to property of another, and that suitable arrangements for State custody and care of the person are not available, he shall transmit the certificate to the clerk of the court for the district in which the person is confined. The clerk shall send a copy of the certificate to the person, and to the attorney for the Government, and, if the person was committed pursuant to section 4241 (d), to the clerk of the court that ordered the commitment. The court shall order a hearing to determine whether the person is presently suffering from a mental disease or defect as a result of which his release would create a substantial risk of bodily injury to another person or serious damage to property of another. A certificate filed under this subsection shall stay the release of the person pending completion of procedures contained in this section.

(b)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examination and report. — Prior to the date of the hearing, the court may order that a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examination of the defendant be conducted, and that a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report be filed with the cour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4247 (b) and (c).

⑤ 釋放 — 그가 제4항에 따라 入院하고 있는 施設의 長은 그가 더 이상 치료 또는 처우를 위하여 그 施設에 監護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신적 질병이나 결함으로부터 회복되었다고 判定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效果에 대한 證明을 監護를 명한 法院의 書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書記는 그의 변호인과 검사에게 그 證明의 謄本을 송달하여야 한다. 증명의 제출시에 그에게 부과된 自由刑의 刑期가 만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法院은 그의 自由刑의 刑期의 만료시까지 그를 再拘禁할 것을 명해야 한다.

(Added Sept. 7, 1949, c. 535, §1, 63 Stat. 687, and amended Oct. 12, 1984, Pub. L. 98-473, Title Ⅱ, §403①, 98 Stat. 2062.)

제4246조 (釋放되어야 할 자로서 精神的 疾病이나 缺陷을 갖고 있는 자의 入院) ①訴訟節次의 開始—刑期의 滿了가 臨迫한 자 또는 제4241조 제4항에 의하여 法務長官의 監護에 위탁된 자 또는 精神的 狀態에 관련된 이유만으로 모든 刑事上의 訴追가 棄却된 자가 入院되어 있는 施設의 長은 그러한 자가 현재 정신적 질병이나 결함을 갖고 있어서 그 결과 그의 釋放이 타인에 대한 身體的 傷害 또는 타인의 財産에 대한 중대한 損失의 실질적인 危險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과, 그에 대한 州의 監護와 治療를 위한 적당한 설비가 이용불가능하다는 점을 證明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을 그가 拘禁되어 있는 지역의 管轄法院의 書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書記는 그와 檢事에게 그리고 그가 제4241조 제4항에 의하여 監護된 경우에는 감호를 명한 法院의 書記에게 그 證明의 謄本을 송달하여야 한다. 법원은 그가 현재 정신적 질병이나 결함을 갖고 있어서 그 결과 그의 釋放이 타인에 대한 身體的 傷害 또는 타인의 財産에 대한 중대한 損失의 실질적인 危險을 야기할 것인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心理를 명하여야 한다. 이 항에 따라 證明이 接受된 때에는 이 조에 규정된 節次가 종료할 때까지 그의 釋放이 연기된다.

② 精神病 檢査 또는 審理檢査와 報告 — 審理期日前에 법원은 그 피고에 대한 精神病 檢査 또는 心理檢査를 행할 것과 精神病이나 심리에 관한 보고를 제4247조 제2항과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法院에 提出할 것을 명할 수 있다.

(c) Hearing. — The hearing shall be conduct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4247 (d).

(d) Determination and disposition. — If, after the hearing, the court finds by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that the person is presently suffering from a mental disease or defect as a result of which his release would create a substantial risk of bodily injury to another person or serious damage to property of another, the court shall commit the person to the custody of the Attorney General. The Attorney General shall release the person to the appropriate official of the State in which the person is domiciled or was tried if such State will assume responsibility for his custody, care, and treatment. The Attorney General shall make all reasonable efforts to cause such a State to assume such responsibility. If, notwithstanding such efforts, neither such State will assume such responsibility, the Attorney General shall hospitalize the person for treatment in a suitable facility, until—

(1) such a State will assume such responsibility; or

(2) the person's mental condition is such that his release, or his conditional release under a prescribed regimen of medical,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care or treatment would not create a substantial risk of bodily injury to another person or serious damage to property of another;

whichever is earlier. The Attorney General shall continue periodically to exert all reasonable efforts to cause such a State to assume such responsibility for the person's custody, care, and treatment.

(e) Discharge. — When the director of the facility in which a person is hospitalized pursuant to subsection (d) determines that the person has recovered from his mental disease or defect to such an extent that his release would no longer create a substantial risk of bodily injury to another person or serious damage to property of another, he shall promptly file a certificate to that effect with the clerk of the court that ordered the commitment. The clerk shall send a copy of the certificate to the person's counsel and to the attorney for the Government. The court shall order the discharge of the person or, on the motion of the attorney for the Government or on its own motion, shall hold a hearing, conduct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4247 (d), to determine whether he should be released. If, after the hearing, the court finds by a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that the person has recovered from his mental disease or defect to such an extent that—

(1) his release would no longer create a substantial risk of bodily injury to another person or serious damage to property of another, the court

③ 審理 — 審理는 제424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된다.

④ 判定과 處決 — 法院은 審理를 거친 후에 명백하고 신빙성 있는 證據에 의하여 그가 현재 精神的 疾病이나 缺陷을 갖고 있어서 그 결과 그의 釋放이 타인에 대한 身體的 傷害 또는 타인의 재산에 대한 重大한 損失의 실질적인 危險을 야기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를 法務長官의 監護에 위탁하여야 한다. 法務長官은 그의 住所地 또는 裁判이 행해졌던 地域의 州가 그에 대한 監護·治療와 處遇의 責任을 인수하려 하는 경우에는 그를 석방하여 그 州의 관계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法務長官은 위의 州가 당해 책임을 인수하도록 상당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의 州가 그 책임을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무장관은,

1. 당해 州가 책임을 인수할 때 까지 또는
2. 그의 釋放 또는 의료적·정신병적·심리적 治療와 處遇에 관한 處方療法을 부과하는 條件附 釋放으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身體的 傷害나 타인의 재산에 대한 중대한 損失의 실질적 危險을 야기하지 아니할 정도로 그의 정신적 狀態가 改善될 때까지.

그중 빠른 기간까지 그를 處遇를 위하여 적당한 施設에 入院시켜야 한다. 法務長官은 위의 州가 그에 대한 監護, 治療와 處遇의 責任을 인수하도록 상당한 모든 노력을 정기적으로 계속하여야 한다.

⑤ 釋放 — 그가 제4항에 의거하여 入院하고 있는 施設의 長은 그의 釋放이 더 이상 타인에 대한 身體的 傷害 또는 타인의 재산에 대한 重大限 損失의 실질적 위험을 야기하지 않을 정도로 정신적 질병이나 결함으로부터 회복되었다고 판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效果에 관한 證明을 監護를 명한 法院의 書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기는 그의 辯護人과 檢事에게 그 증명의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法院은 그의 석방을 명하거나 또는 검사의 申請 또는 職權으로 그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를 제4247조 제4항에 의거하여 개시하여야 한다. 심리를 거친 후에 법원은 증거의 우세에 의하여,

1. 그의 釋放이 더 이상 타인에 대한 身體的 傷害 또는 타인의 재산에 대한

shall order that he be immediately discharged; or

(2) his conditional release under a prescribed regimen of medical,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care or treatment would no longer create a substantial risk of bodily injury to another person or serious damage to property of another, the court shall—

(A) order that he be conditionally discharged under a prescribed regimen of medical,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care or treatment that has been prepared for him, that has been certified to the court as appropriate by the director of the facility in which he is committed, and that has been found by the court to be appropriate; and

(B) order, as an explicit condition of release, that he comply with the prescribed regimen of medical,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care or treatment.

The court at any time may, after a hearing employing the same criteria, modify or eliminate the regimen of medical,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care or treatment.

(f) Revocation of conditional discharge. — The director of a medical facility responsible for administering a regimen imposed on a person conditionally discharged under subsection (e) shall notify the Attorney General and the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erson of any failure of the person to comply with the regimen. Upon such notice, or upon other probable cause to believe that the person has failed to comply with the prescribed regimen of medical,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care or treatment, the person may be arrested, and, upon arrest, shall be taken without unnecessary delay before the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him. The court shall, after a hearing, determine whether the person should be remanded to a suitable facility on the ground that, in light of his failure to comply with the prescribed regimen of medical,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care or treatment, his continued release would create a substantial risk of bodily injury to another person or serious damage to property of another.

(g) Release to state of certain other persons. — If the director of a facility in which a person is hospitalized pursuant to this subchapter certifies to the Attorney General that a person, against whom all charges have been dismissed for reasons not related to the mental condition of the person, is presently suffering from a mental disease or defect as a result of which his release would create a substantial risk of bodily injury to another person or serious damage to property of another, the Attorney General shall release the person to the appropriate official of the State in which the person is domiciled or was tried for the purpose of institution of State proceedings for civil commitment. If neither

重大한 損失의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하지 않을 정도로 그가 精神的 疾病이나 결함으로부터 회복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를 즉시 釋放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2. 그가 의료적·정신병적·心理的 治療와 처우에 관한 處方療法을 부과하는 條件附 釋放으로 인하여 더 이상 타인에 대한 身體的 傷害 또는 타인의 재산에 대한 重大한 損失의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하지 않을 정도로 精神的 疾病이나 결함으로 부터 회복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A) 그가 拘禁되어 있는 施設의 長이 法院에 대하여 적절한 것이라고 증명하고 法院이 또한 적절하다고 인정한 그에 대하여 마련된 醫療的·精神病的 心理的 治療와 處遇에 관한 處方療法을 부과하여 조건부로 그를 석방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B) 釋放에 대한 明示的 條件으로 그에게 의료적·정신병적·심리적 치료와 처우에 관한 처방요법에 응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法院은 언제든지 위와 동일한 基準을 사용하는 心理를 거쳐서 의료적·정신병적·심리적 치료와 처우에 관한 처방요법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⑥ 條件附 釋放의 取消 — 제5항에 따라 條件附로 석방된 자에게 부과된 療法을 집행할 책임이 있는 醫療施設의 長은 그가 요법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法務長官과 그에 대한 管轄法院에 통지하여야 한다.

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또는 그가 의료적·정신병적·심리적 치료와 처우에 관한 처방요법에 응하지 아니한다고 믿을 만한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를 체포할 수 있으며, 체포한 경우에는 불필요한 지체없이 그를 그에 대한 管轄法院에 引致하여야 한다. 法院은 그가 의료적·정신병적·심리적 치료와 처우에 관한 처방요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의 계속되는 釋放이 타인에 대한 身體的 傷害 또는 타인의 재산에 대한 重大한 損失의 위험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여 그를 적당한 시설에 再收容할 것인가 여부를 審理를 거쳐서 결정하여야 한다.

⑦ 其他 一定한 者의 州로의 釋放 — 정신적 상태와 관련이 없는 이유로 인하여 모든 訴追가 棄却된 자를 이 조에 의거하여 入院시키고 있는 施設의 長이

such State will assume such responsibility, the Attorney General shall release the person upon receipt of notice from the State that it will not assume such responsibility, but not later than ten days after certification by the director of the facility.

(Added Sept. 7, 1949, c. 535, § 1, 63 Stat. 687, and amended Oct. 12, 1984, Pub. L. 98-473, Title II, § 403(a), 98 Stat. 2062.)

§ 4247. General provisions for chapter

(a) Definitions. — As used in this chapter—

(1) "rehabilitation program" includes—

(A) basic educational training that will assist the individual in understanding the society to which he will return and that will assist him in understanding the magnitude of his offense and its impact on society;

(B) vocational training that will assist the individual in contributing to, and in participating in, the society to which he will return;

(C) drug, alcohol, and other treatment programs that will assist the individual in overcoming his psychological or physical dependence; and

(D) organized physical sports and recreation programs; and

(2) "suitable facility" means a facility that is suitable to provide care or treatment given the nature of the offense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fendant.

(b)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examination. — A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examination ordered pursuant to this chapter shall be conducted by a licensed or certified psychiatrist or clinical psychologist, or, if the court finds it appropriate, by more than one such examiner. Each examiner shall be designated by the court, except that if the examintion is ordered under section 4245 or 4246, upon the request of the defendant an additional examiner may be selected by the defendant. For the purposes of an examination pursuant to an order under section 4241, 4244, or 4245, the court may commit the person to be examined for a reasonable period, but not to exceed thirty days, and

그가 현재 정신적 질병이나 결함을 갖고 있어서 그 결과 그의 釋放이 타인에 대한 身體的 傷害 또는 타인의 財産에 대한 중대한 損失의 실질적인 危險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을 법무장관에게 증명한 때에는 法務長官은 州의 民事上의 拘禁節次의 開始를 위하여 그의 住所가 있거나 그에 대한 裁判이 행해졌던 州의 관계공무원에게 그를 석방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당해 州가 위의 책임을 인수하려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무장관은 당해 州로부터 위의 책임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접수한 때에 그를 석방하여야 한다. 단, 通知의 接受는 施設의 長의 증명이 있은 후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Added Sept.7, 1949, c. 535, §1, 63 Stat. 687, and amended Oct. 12,1984, Pub. L. 98-473,, Title Ⅱ, §403①, 98 stat. 2062)

제4247조 (이 章의 總則) ① 定義 — 이 장에 사용되는 用語

1. "사회복귀프로그램"이라 함은 다음을 포함한다.

(A) 個人이 그가 復歸할 社會를 이해하고 자신의 犯罪의 重大性과 그것의 사회에 대한 영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초교육훈련.

(B) 個人이 그가 復歸할 社會에 貢獻하고 참여하는데 도움을 주는 職業訓練.

(C) 개인이 자신의 心身的 依存性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약물 알코올 기타에 대한 처우프로그램 ; 그리고

(D) 조직적인 신체적 운동과 오락프로그램

2. "적당한 시설"이라 함은 犯罪의 誠實과 被告의 性格에 따른 治療 또는 處遇를 제공하기에 적당한 시설을 의미한다.

② 精神病調査 또는 心理檢査 — 이 장에 의거하여 명해진 精神病 檢査 또는 心理檢査는 면허를 소지하거나 인가를 받은 精神病 醫師 또는 臨床心理學者가 행한다. 단,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명의 檢査官이 행한다. 각 검사관은 法院이 指名한다. 단, 제4245조 또는 제 4245조에 따라 檢査가 명해진 경우에는 피고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被告가 추가로 1명의 검사관을 지명할 수 있다. 법원은 제4241조, 제4244조, 제4245조하의 명령에 의한 검사를 위해서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상당한 기간동안 그리고 제4242조, 제4243

under section 4242, 4243, or 4246, for a reasonable period, but not to exceed forty-five days, to the custody of the Attorney General for placement in a suitable facility. Unless impracticable, the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examination shall be conducted in the suitable facility closest to the court. The director of the facility may apply for a reasonable extension, but not to exceed fifteen days under section 4241, 4244, or 4245, and not to exceed thirty days under section 4242, 4243, or 4246, upon a showing of good cause that the additional time is necessary to observe and evaluate the defendant.

(c)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reports. — A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report ordered pursuant to this chapter shall be prepared by the examiner designated to conduct the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examination, shall be filed with the court with copies provided to the counsel for the person examined and to the attorney for the Government, and shall include—

(1) the person's history and present symptoms;

(2) a description of the psychiatric, psychological, and medical tests that were employed and their results;

(3) the examiner's findings; and

(4) the examiner's opinions as to diagnosis, prognosis, and—

(A) if the examination is ordered under section 4241, whether the person is suffering from a mental disease or defect rendering him mentally incompetent to the extent that he is unable to understand the nature and consequences of the proceedings against him or to assist properly in his defense;

(B) if the examination is ordered under section 4242, whether the person was insane at the time of the offense charged;

(C) if the examination is ordered under section 4243 or 4246, whether the person is suffering from a mental disease or defect as a result of which his release would create a substantial risk of bodily injury to another person or serious damage to property of another;

(D) if the examination is ordered under section 4244 or 4245, whether the person is suffering from a mental disease or defect as a result of which he is in need of custody for care or treatment in a suitable facility; or

조, 제4246조의 경우에는 45일을 초과하지 않는 상당한 기간동안 적당한 시설에서의 法務長官의 保護下에 檢査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에 가장 근접한 적당한 시설에서 精神病 檢査 또는 心理檢査를 행한다. 施設의 長은 被告를 觀察하고 評價하는데 추가기간이 필요하다는 합당한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제4241조, 제4244조, 제4245조에 있어서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그리고 제4242조, 제4243조, 제42465조에 있어서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상당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精神病 또는 心理에 관한 報告 — 이 장에 의하여 명령된 精神病 또는 心理에 관한 報告는 정신병검사 또는 심리검사를 행하도록 지명된 검사관이 준비하여 검사를 받는 자의 辯護人과 檢事에게 송달할 등본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그자의 經歷과 현재의 症候
2. 사용된 精神病的·心理的·醫療的 檢査와 그 결과에 대한 설명
3. 검사관의 사실인정 그리고
4. 診斷, 豫斷에 관한 檢査官의 意見과,

(A) 제4241조에 의하여 檢査가 명하여진 경우에는 그자가 그에 대한 訴訟節次의 性質과 結果를 이해할 수 없거나 적절하게 그 자신을 辯護할 수 없을 정도로 그를 精神的 無能力에 처하게 하는 정신적 질병이나 결함을 갖고 있는가 여부에 대한 檢査官의 意見.

(B) 제4242조에 의하여 檢査가 명하여진 경우에는 그가 起訴된 범죄 당시에 精神異常이었는가 여부에 대한 檢査官의 意見.

(C) 제4243조 또는 제4246조에 의하여 검사가 명하여진 경우에는 그가 정신적 질병이나 결함을 갖고 있어서 그 결과 그의 釋放이 타인의 身體的 傷害 또는 타인의 재산에 대한 重大한 損失의 실질적 危險을 야기할 것인가 여부에 대한 檢査官의 意見.

(D) 제4244조 또는 제4245조에 의하여 檢査가 명하여진 경우에는 그가 精神的 疾病이나 결함을 갖고 있어서 그 결과 治療나 處遇를 위하여 적당한 시설에 監護될 필요가 있는가 여부에 대한 檢査官의 意見.

(E) if the examination is ordered as a part of a presentence investigation, any recommendation the examiner may have as to how the mental condition of the defendant should affect the sentence.

(d) Hearing. — At a hearing ordered pursuant to this chapter the person whose mental ccondition is the subject of the hearing shall be represented by counsel and, if he is financially unable to obtain adequate representation, counsel shall be appointed for him pursuant to section 3006A. The person shall be afforded an opportunity to testify, to present evidence, to subpoena witnesses on his behalf, and to confront and cross-examine withnesses who appear at the hearing.

(e) Periodic report and information requirements. — (1) The director of the facility in which a person is hospitalized pursuant to—

(A) section 4241 shall prepare semiannual reports; or

(B) section 4243, 4244, 4245, or 4246 shall prepare annual reports concerning the mental condition of the person and containing recommendations concerning the need for his continued hospitalization. The reports shall be submitted to the court that ordered the person's commitment to the facility and copies of the reports shall be submitted to such other persons as the court may direct.

(2) The director of the facility in which a person is hospitalized pursuant to section 4241, 4243, 4244, 4245, or 4246 shall inform such person of any rehabilitation programs that are available for persons hospitalized in that facility.

(f) Videotape record. — Upon written request of defense counsel, the court may order a videotape record made of the defendant's testimony or interview upon which the periodic report is based pursuant to subsection (e). Such videotape record shall be submitted to the court along with the periodic report.

(g) Habeas corpus unimpaired. — Nothing contained in section 4243 or 4246 precludes a person who is committed under either of such sections from establishing by writ of habeas corpus the illegality of his detention.

(E) 檢査가 大陪審의 起訴를 위한 조사의 일부분으로 명하여진 경우에는 피고의 精神的 狀態가 선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한 檢査官의 推薦.

④ 審理 — 이 장에 의하여 명하여진 審理에서 자신의 精神的 狀態가 심리의 대상이 된 자는 辯護人에 의하여 代理되며, 그가 財政的인 사유로 인하여 적당한 대리를 획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006조 A에 의거하여 그에 대한 辯護人이 선정된다. 그는 자신을 위하여 證言하고 證據를 제출하며, 證人을 소환할 수 있는 기회와 審理에 출석한 증인과 대면하여 反對審問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아야 한다.

⑤ 定期報告와 情報 要求—

1. 個人을 入院시키고 있는 施設의 長은

(A) 제4241조에 의거한 경우에는 매 6월마다 보고를 준비하여야 한다.

(B) 제4243조, 제4244조, 제4245조, 제4246조에 의거한 경우에는 그 자의 精神的 狀態에 관한 報告를 그의 계속적인 入院의 必要性에 관한 추천을 포함하여서 매년마다 준비하여야 한다. 보고는 그 시설에의 그의 監護를 명한 法院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報告의 謄本은 法院이 指定하는 기타의 자들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2. 제4241조, 제4243조, 제4244조, 제4245조, 제4246조에의하여 個人을 入院시키고 있는 施設의 長은 그 施設에 入院한 자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사회복귀프로그램을 그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⑥ 비디오테이프기록 — 被告測 변호인의 書面要求가 있는 때에는 法院은 제4항에 의거한 定期報告의 근거가 된 피고의 證言이나 面談에 대하여 비디오테이프로 기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 비디오테이프기록은 정기보고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방해받지 아니하는 人身保護令狀 — 제4243조 또는 제4246조에 규정된 어떤 규정도 그 조항에 따라 拘禁된 자가 人身保護令狀에 의하여 자신의 不法拘禁을 주장함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h) Discharge. – Regardless of whether the director of the facility in which a person is hospitalized has filed a certificate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ubsection (e) of section 4241, 4243, 4244, 4245, or 4246, counsel for the person or his legal guardian may, at any time during such person's hospitalization, file with the court that ordered the commitment a motion for a hearing to determine whether the person should be discharged from such facility, but no such motion may be filed within one hundred and eighty days of a court determination that the person should continue to be hospitalized. A copy of the motion shall be sent to the director of the facility in which the person is hospitalized and to the attorney for the Government.

(i)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the Attorney General. – The Attorney General–

(A) may contract with a State,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ity, or a private agency for the confinement, hospitalization, care, or treatment of, or the provision of services to, a person committed to his custody pursuant to this chapter;

(B) may apply for the civil commitment, pursuant to State law, of a person committed to his custody pursuant to section 4243 or 4246;

(C) shall, before placing a person in a facility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4241, 4343, 4244, 4245, or 4246, consider the suitability of the facility's rehabilitation programs in meeting the needs of the person; and

(D) shall consult with the Secretary of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in the general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and in the establishment of standards for facilities us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is chapter.

(j) This chapter does not apply to a prosecution under an Act of Congress applicable exclusively to the District of Columbia or the 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

(Added Sept. 7, 1949, c. 535, § 1, 63 Stat. 687, and amended Oct 12, 1984, Pub. L. 98-473, Title II, § 403(a), 98 Stat. 2065).

⑧ 釋放 — 개인을 입원시키고 있는 시설의 장이 제4241조, 제4243조, 제4244조, 제4245조, 제4246조 각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證明을 제출하였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그자의 辯護人이나 법률적 後見人은 그가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監護를 명한 法院에 대하여 그가 당해 施設로부터 석방되어야 하는가 여부를 決定하기 위한 心理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그러한 申請은 그가 계속 入院되어 있어야 한다는 法院의 決定이 있은 후 180일 이내에는 제출할 수 없다. 申請의 謄本은 그를 入院시키고 있는 施設의 長과 檢事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⑨ 법무장관의 권한과 책임

1. 法務長官은 —

(A) 이 장에 의하여 그의 保護에 委託된 자의 拘禁, 入院, 治療 또는 處遇와 그에 대한 봉사의 제공을 위하여 州, 下位行政區域, 地方 또는 私設機關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B) 제4243조 또는 제4246조에 의하여 그의 保護에 委託된 자에 대한 州法에 따른 民事拘禁을 신청할 수 있다.

(C) 제4241조, 제4243조, 제4244조, 제4245조, 제4246조의 규정에 따라 個人을 施設에 收監하기 전에 그 시설의 사회복귀프로그램이 그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적당한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D) 이 장의 규정의 일반적인 履行과 이 장을 이행하는데 이용되는 施設에 대한 基準의 정립을 위하여 정립, 保健省長官과 협의하여야 한다.

⑩ 이 장은 콜롬비아 特別區에만 排他的으로 적용되는 聯邦議會의 법률 또는 軍事法務에 관한 통일법령집에 의한 訴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Added Stpt. 7, 1949, c.535, §1, 63 Stat. 687, and amended Oct. 12, 1984, Pub. L. 98—473, Title II, §403①, 98 Stat. 2065.)

PART IV. CORRECTION OF YOUTHFUL OFFENDERS

CHAPTER 401 GENERAL PROVISIONS

§ 5001. Surrender to State authorities; expenses

Whenever any person under twenty-one years of age has been arrested, charged with the commission of an offense punishable in any court of the United States or of the District of Columbia, and , after investigation by the Department of Justice, it appears that such person has committed an offense or is a delinquent under the laws of any State or of the District of Columbia which can and will assume jurisdiction over such juvenile and will take him into custody and deal with him according to the laws of such State or of the District of Columbia, and that it will be to the best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and of the juvenile offender, the United States attorney of the district in which such person has been arrested may forego his prosecution and surrender him as herein provided.

The United States marshal of such district upon written order of the United States attorney shall convey such person to such State or the District of Columbia, or, if already therein, to any other part thereof and deliver him into the custody of the proper authority thereof.

Before any person is conveyed from one State to another or from or to the District of Columbia under this section, he shall signify his willingness to be so returned, or there shall be presented to the United States attorney a demand from the executive authority of such State or the District of Columbia, to which the prisoner is to be returned, supported by indictment or affidavit as prescribed by section 3182 of this title.

The expense incident to the transportation of any such person, as herein authorized. shall be paid from the appropriation "Salaries, Fees, and Expenses, United States Marshals."

(June 25, 1948, c. 645, 62 Stat. 857).

§ 5002. Advisory Corrections Council

There is hereby created an Advisory Corrections Council, composed of one United States circuit judge and two United States district judges designated from time to time by the Chief Justice of the United States, of one member, who shall be Chairman, designated by the Attorney General, and, ex officio, of the Chairman of the Board of Parole, the Chairman of the Youth Division, the Director of the Bureau of Prisons, and the Chief of Probation of the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Courts. The Council shall hold stated meetings to consider problems of treatment and correction of all offenders against the

제4편 少年犯罪人의 矯正

제5001조 (州當局에의 引渡, 費用) 21세 이하의 자가 可罰的인 범죄의 嫌疑로 逮捕되어 美合中國 또는 콜롬비아 特別區의 法院에서 起訴된 경우에 法務省의 조사결과, 그 少年에 대한 管轄權을 引受할 수 있고 또한 인수하여 그를 拘禁하고 당해 州 또는 콜롬비아 특별구의 法에 따라 그를 처리하려고 하는 州 또는 콜롬비아 특별구의 法律에 의할 때 그가 犯罪를 행하였거나 또는 犯人이라고 간주되며, 그렇게 하는 것이 美合衆國과 그 少年犯罪人에게 最善의 利益이 된다고 간주되는 때에는 그가 逮捕된 지역의 미합중국 檢事는 起訴를 포기하고 여기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를 引渡할 수 있다.

그 지역의 美合衆國 執行官은 미합중국 檢事의 書面命令에 의하여 그를 당해 州 또는 콜롬비아특별구에 移送하고, 이미 그곳에 있는 경우에는 그곳의 다른 地域으로 移送하며, 그곳의 관계기관에 그를 인도하여 구금시켜야 한다.

누구든지 이 조에 따라 한 州에서 다른 州로 또는 콜롬비아 특별구로부터 또는 콜롬비아 특별구에로 移送되기에 앞서서, 그 自身이 그러한 歸還에 대한 容認의 表示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수형자는 귀환되어야 하는 州 또는 콜롬비아특별구의 行政當局에 의하여 이장 제3182조에 규정된 바의 起訴狀이나 宣誓陳述書를 첨부한 要求가 미합중국 檢事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許可된 그러한 자의 移送에 부수하는 費用은 "賃金, 手数料와 費用, 美合衆國 執行官"豫算에 의거 지불된다.

(June 25, 1948, c.62 Stat. 857.)

제5002조 (矯正諮問會議) 미합중국 大法院長이 수시로 指名하는 자로서 議長을 맡을 1人, 그리고 當然職으로 假釋放委員會의 議長, 少年局의 局長, 監獄局長, 美合衆國 法院行政處의 保護觀察局長으로 구성되는 矯正諮問會議를 여기에 설치한다.

諮問會議는 모든 美合衆國에 대한 犯人의 處遇와 矯正의 問題를 다루기 위한 定期會議를 개최하고 聯邦議會, 大統領, 美合衆國 法官會議, 그리고 刑事司法

United States and shall make such recommendations to the Congress, the President, the Judicial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 and other appropriate officials as may improve the administration of criminal justice and assure the coordination and integration of policies respecting the disposition, treatment, and correction of all persons convicted of offenses against the United States. It shall also consider measures to promote the prevention of crime and delinquency, suggest appropriate studies in this connection to be undertaken by agencies both public and private. The members of the Council shall serve without compensation but necessary travel and subsistence expenses as authorized by law shall be paid from available appropriations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Added Sept. 30, 1950, c. 1115, § 4, 64 Stat. 1090.)

§ 5003. Custody of State offenders

(a) The Attorney General, when the director shall certify that proper and adequate treatment facilities and personnel are available, is hereby authorized to contract with the proper officials of a State or Territory for the custody, care, subsistence, education, treatment, and training of persons convicted of criminal offenses in the courts of such State or Territory: *Provided,* That any such contract shall provide for reimbursing the United States in full for all costs or other expenses involved.

(b) Funds received under such contract may be deposited in the Treasury to the credit of the appropriation or appropriations from which the payments for such service were originally made.

(c) Unless otherwise specifically provided in the contract, a person committed to the Attorney General hereunder shall be subject to all the provisions of law and regulations applicable to persons committed for violations of laws of the United States not inconsistent with the sentence imposed.

(d) The term "State" as used in this section includes any State, territory, or possession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Canal Zone.

(Added May 9, 1952, c. 253, § 1, 66 Stat. 68, and amended Oct. 19, 1965, Pub.L. 89-267, § 1, 79 Stat. 990.)

CHAPTER 403 JUVENILE DELIQUENCY

§ 5031.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a "juvenile" is a person who has not attained his eighteenth birthday, or for the purpose of proceedings and dis-

의 집행을 개선하고 미합중국에 대한 犯罪로 有罪判決을 받은 모든 者의 處決, 處遇와 矯正에 관한 政策의 一致와 통일을 기할 수 있는 기타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권고를 행한다. 또한 諮問會議는 犯罪와 逸脫의 豫防을 도모할 방안을 강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公·私機關에서 행할 적절한 연구를 제안한다. 諮問會議의 구성원은 無報酬로 직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法律에 의하여 인정된 旅行과 生計의 必要費用은 법무성의 이용가능한 예산에서 지급된다.

(Added Sept. 30, 1950, c.115, §4, 64 Stat. 1090.)

제5003조 (州 犯罪人의 拘禁) ① 施設의 長이 적절하고 적당한 處遇施設과 職員을 이용할 수 있음을 證明한 때에는 法務長官은 어느 州 또는 地域의 法院에서 刑事犯罪로 인하여 有罪判決을 받은 자의 拘禁·保護·生計·敎育·處遇와 訓練을 위하여 당해 州 또는 地域의 관계공무원과 契約을 締結할 권한이 있다. 단, 그 契約은 모든 費用과 기타 포함되는 모든 支出에 대하여 美合衆國에 그 전부를 상환토록 하여야 한다.

② 그 契約에 의하여 收入된 基金은 그러한 業務에 대한 본래의 支出이 행하여졌던 國庫의 計定의 貸邊에 預置할 수 있다.

③ 契約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따라 法務長官下에 拘禁된 者는 그에게 부과된 宣告와 모순되지 아니하는 한 미합중국의 모든 法律과 規則에 따라야 한다.

④ 이 條에서 사용되는 用語의 "州"는 美合衆國의 모든 州와 領土, 屬領 그리고 파나마 運河地區를 포함한다.

(Added May 9, 1952, c.253, §1, 66 Stat. 68, and amended Oct. 19, 1965, Pub. L. 89—267, §1, 79 Stat. 990.)

제403장 少年犯罪

제5031조 (定義) "少年"이라 함은 이 장에 있어서는 아직 18회 生日에 이르지 아니한 자이며, 少年犯罪의 嫌疑가 있는 행위로 인한 이 장의 訴訟節次와 處決

position under this chapter for an alleged act of juvenile delinquency, a person who has not attained his twenty-first birthday, and "juvenile delinquency" is the violation of a law of the United States committed by a person prior to his eighteenth birthday which would have been a crime if committed by an adult. (June 25, 1948, c. 645, 62 Stat. 857; Sept. 7, 1974, Pub.L. 93-415, Title V, § 501, 88 Stat. 1133.)

§ 5032. Delinquency proceedings in district courts; transfer for criminal prosecution.

A juvenile alleged to have committed an act of juvenile delinquency, other than a violation of law committed within the special maritime and territorial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for which the maximum authorized term of imprisonment does not exceed six months, shall not be proceeded against in any court of the United States unless the Attorney General, after investigation, certifies to the appropriate district court of the United States that

(1) the juvenile court or other appropriate court of a State does not have jurisdiction or refuses to assume jurisdiction over said juvenile with respect to such alleged act of juvenile delinquency,

(2) the State does not have available programs and services adequate for the needs of juveniles, or

(3) the offense charged is a crime of violence that is a felony or an offense described in section 841, 952(a), 955, or 959 of title 21, and that there is a substantial Federal interest in the case or the offense to warrant the exeecise of Federal jurisdiction.

If the Attorney General does not so certify, such juvenile shall be surrendered to the appropriate legal authorities of such State.

If an alleged juvenile deliquent is not surrendered to the authorities of a State or the District of Columbia pursuant to this section, any proceedings against him shall be in an appropriate district court of the United States. For such purposes, the court may be convened at any time and place within the district, in chambers or otherwise. The Attorney General shall proceed by information, and no criminal prosecution shall be instituted for the alleged act of juvenile delinquency except as provided below.

A juvenile who is alleged to have committed an act of juvenile delinquency and who is not surrendered to State authorities shall be proceeded against under this chapter unless he has requested in writing upon advice of counsel to be proceeded against as an adult, except that, with respect to a juvenile fifteen years and older alleged to have committed an act after his fifteenth birthday which if committed by an adult would be a felony that is a crime of violence or an of-

에 있어서는 아직 21회 생일에 이르지 아니한 자이다.

"少年犯罪"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가 행한 미합중국의 법률위반으로 成人이 행하였더라면 犯罪가 되었을 행위를 말한다.

(June 25, 1948, c. 645, 62 Stat. 857 ; Sept. 7, 1974, Pub. L. 93—415, Title V, § 501, 88 Stat. 1133.)

제5032조 (地方法院에서의 犯罪訴訟, 刑事訴追 위한 移送) 少年犯罪行爲의 혐의가 있는 少年은 미합중국의 領海와 領土內에서 행하여진 법률위반으로서 自由刑의 法廷最高刑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法務長官의 조사를 거쳐서

1. 少年法院이나 기타 州의 管轄法院이 그 혐의받고 있는 少年犯罪行爲에 관하여 위의 소년에 대한 管轄權이 없거나 관할의 引受를 거절하였다는 점
2. 그 州에는 소년의 필요에 대하여 적당한 이용가능한 프로그램과 設備가 없다는 점 또는
3. 嫌疑를 받고 있는 범죄가 重罪인 폭력범죄이거나 제21편 제841조, 제952조 제1항, 제955조, 또는 제959조에 규정된 犯罪라는 점을 연방의 管轄地方法院에 대하여 증명하고, 그 사건 또는 그 범죄에 있어서 연방 管轄權의 집행을 正當化할 만한 실질적인 聯邦의 利益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미합중국의 聯邦法院에서 起訴되지 아니한다.

法務長官이 그러한 證明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少年은 그 州의 관계 司法當局에 인도되어야 한다.

少年犯罪 被疑者가 이 조에 의거하여 州 또는 콜롬비아 特別區의 당국에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방의 관할 地方法院에서 그에 대한 訴訟節次가 진행된다. 이를 위하여 法院은 언제든지 그 지역내에서 判事室 기타의 장소에서 開庭할 수 있다. 法務長官은 略式起訴에 의하여야 하며, 아래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嫌疑를 받고 있는 少年犯罪行爲에 대한 어떠한 刑事訴追도 개시되지 아니한다. 소년범죄행위를 범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소년은 州當局에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가 辯護人의 助言을 받아 成人으로서 起訴될 것을 書面으로 요구하

fense described in section 841, 952(a), 955, or 959 of title 21, criminal prosecution on the basis of the alleged act may be begun by motion to transfer of the Attorney General in the appropriate district court of the United States, if such court finds, after hearing, such transfer would be in the interest of justice; however, a juvenile who is alleged to have committed an act after his sixteenth birthday which if committed by an adult would be a felony offense that has as an element thereof the use, attempted use, or threatened use of physical force against the person of another, or that, by its very nature, involves a substantial risk that physical force against the person of another may be used in committing the offense, or would be an offense described in section 32, 81, 844(d), (e), (f), (h), (i) or 2275 of this title, and who has previously been found guilty of an act which if committed by an adult would have been one of the offenses set forth in this subsection or an offense in violation of a State felony statute that would have been such an offense if a circumstance giving rise to Federal jurisdiction had existed, shall be transferred to the appropriate district court of the United States for criminal prosecution.

Evidence of the following factors shall be considered, and findings with regard to each factor shall be made in the record, in assessing whether a transfer would be in the interest of justice; the age and social background of the juvenile; the nature of the alleged offense; the extent and nature of the juvenile's prior delinquency record; the juvenile's present intellectural development and psychological maturity; the nature of past treatment efforts and the juvenile's response to such efforts; the availability of programs designed to treat the juvenile's behavioral problems.

Reasonable notice of the transfer hearing shall be given to the juvenile, his parents, guardian, or custodian and to his counsel. The juvenile shall be assisted by counsel during the transfer hearing, and at every other critical stage of the proceedings.

Once a juvenile has entered a plea of guilty or the proceeding has reached the stage that evidence has begun to be taken with respect to a crime or an alleged act of juvenile deliquency subsequent criminal prosecution or juvenile proceedings based upon such alleged act of delinquency shall be barred.

Statements made by a juvenile prior to or during a transfer hearing under this section shall not be admissible at subsequent criminal prosecutions.

Whenever a juvenile transferred to district court under this section is not convicted of the crime upon which the transfer was based or another crime which would have warranted transfer had the juvenile been initially charged with that crime, further proceedings concerning the juvenile shall be conduct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Any proceedings against a juvenile under this chapter or as an adult shall not

지 아니하는 한 이 장에 의하여 起訴된다.
단, 成人이 행하였더라면 暴力犯罪人인 重罪 또는 제21편의 제841조, 952족 제1항, 제955조, 제959조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만 15세 이후에 행하였다는 嫌疑를 받고 있는 15세 이상의 소년에 있어서는 연방 관할 地方法院이 심리를 거쳐서 移送이 正義를 위한 것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에 法務長官의 移送申請에 의하여 그 被疑行爲에 근거한 刑事訴追가 개시될 수 있다.
그러나 成人이 행하였더라면 타인에 대한 物理力의 使用, 使用의 企圖, 使用의 脅迫을 犯罪要素로 하는 重罪 또는 범죄의 本性上 범행에 있어 타인에 대한 물리력이 사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을 내포한 重罪 또는 이 편의 제32조, 제81조, 제844조 제4항, 제5항, 제6항, 제8항, 제9항에 규정된 범죄가 되었을 행위를 만16세 이후에 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소년이, 成人이 행하였더라면 위에서 열거한 범죄 또는 연방 管轄權을 行使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면 그러한 범죄로 되는 것으로서 州의 重罪法令에 위반한 犯罪가 되었을 행위로 하여 有罪가 인정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少年은 刑事訴追를 위하여 연방의 관할地方法院에 移送하여야 한다.
移送이 正義를 위하는 것인가 여부를 評價하는 데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증거가 고려되어야 하며, 각 사항에 관한 事實認定은 記錄되어야 한다. 당해 소년의 연령과 社會的 背景, 被疑犯罪의 性質, 당해 少年의 현재의 知的 發展과 精神的 成熟度, 과거의 處遇努力의 性質과 그 노력에 대한 당해 少年의 反應; 당해 소년의 形態上의 문제를 處遇하기 위하여 고안된 프로그램의 이용가능성.
移送의 審理에 대하역는 당해 少年, 父母, 後見人 또는 管理人에게 그리고 그의 辯護人에게 상당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당해 소년은 移送의 審理가 있는 랍안 그리고 기타 訴訟上 쥬요한 모든 단계에서는 辯護人의 助力을 받는다.
少年이 이미 有罪의 陳述을 시작하였거나 訴訟이 犯罪 또는 被疑少年의 犯罪行爲에 관하여 證據가 採擇되기 시작한 단계에 도달한 때에는 그 피의소년의 범죄행위에 근거한 차후의 刑事訴追 또는 少年犯 訴訟節次는 금지된다.
移送의 審理에 앞서 또는 審理동안에 소년이 행한 陳述은 차후의 刑事訴追에서 원용되지 아니한다.

be commenced until any prior juvenile court records of such juvenile have been received by the court, or the clerk of the juvenile court has certified in writing that the juvenile has no prior record, or that the juvenile's record is unavailable and why it is unavailable.

Whenever a juvenile is adjudged delinquen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the specific acts which the juvenile has been found to have committed shall be described as part of the official record of the proceedings and part of the juvenile's official record.

(June 25, 1948, c. 645, 62 Stat. 857; Sept. 7, 1974, Pub.L. 93-415, Title V, § 502, 88 Stat. 1134; Oct. 12, 1984, Pub.L. 98-473, Title II, § 1201, 98 Stat. 2149.)

§ 5033. Custody prior to appearance before magistrate

Whenever a juvenile is taken into custody for an alleged act of juvenile delinquency, the arresting officer shall immediately advise such juvenile of his legal rights, in language comprehensive to a juvenile, and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Attorney General and the juvenile's parents, guardian, or custodian of such custody. The arresting officer shall also notify the parents, guardian, or custodian of the rights of the juvenile and of the nature of the alleged offense.

The juvenile shall be taken before a magistrate forthwith. In no event shall the juvenile be detained for longer tha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before being brought before a magistrate.

(June 25, 1948, c. 645, 62 Stat. 857; Sept. 7, 1974, Pub.L. 93-415, Title V, § 503, 88 Stat. 1135.)

§ 5034. Duties of magistrate

The magistrate shall insure that the jevenile is represented by counsel before proceeding with critical stages of the proceedings. Counsel shall be assigned to represent a juvenile when the juvenile and his parents, guardian, or custodian are financially unable to obtain adequate representation. In cases where the juvenile and his parents, guardian, or custodian are financially able to obtain adequate

이 조에 따라 地方治院으로 이송된 소년이 移送의 根據가 되었던 犯罪 또는 그 소년이 다른 범죄로 일차적으로 起訴되었더라면 이송에 정당한 근거를 제공하였을 또 다른 범죄로 인하여 有罪判決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소년에 관한 차후의 訴訟節次는 이 장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된다.

이 장에 의한 또는 成人이 된 후에 수행되는 少年에 대한 訴訟節次는 당해 소년에 관한 과거의 少年法院記錄이 그 法院에 전달될 때까지 또는 少年法院의 書記가 당해 소년이 前科가 없음을 書面으로 증명하거나 당해 소년의 記錄이 이용불가능하다는 점과 그 이유를 서면으로 증명할 때까지 개시되지 아니한다.

소년이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有罪로 認定된 때에는 그 소년이 행하였다고 인정된 구체적인 행위를 公式的인 訴訟記錄의 일부로, 그리고 그 少年에 관한 公式記錄의 일부로 기술하여야 한다.

(June 25, 1948, c. 645, 62 Stat. 857; Sept. 7, 1974, Pub. L. 93—415, Title V, § 502, 88 Stat. 1134; Oct. 12. 1984, Pub. L. 97—473, Title II, § 1201, 98 Stat. 2149.)

제5033조 (治安判事에의 出席以前의 拘禁) 少年이 少年犯罪行爲의 嫌疑로 구금된 경우에는 체포한 官吏는 즉시 그 少年에게 소년이 이해할 수 있는 言語로 그의 法的 權利를 고지하여야 하며, 즉시 法務長官과 소년의 父母, 後見人 또는 管理人에게 拘禁事實을 통지하여야 한다. 체포한 官吏는 또한 부모, 후견인 또는 관리인에게 그 소년의 權利와 嫌疑받은 犯罪의 性質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 少年은 즉시 治安判事에게 출석되어야 한다. 소년은 어떠한 경우에도 治安判事에게 출석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초과하여 拘禁되지 아니한다.

(June 25, 1948, c. 645, 62 Stat. 857; Sept. 7, 1974, Pub. L. 93—415, Title V, § 503, 88 Stat. 1135.)

제5034조 (治安判事의 義務) 治安判事는 소년이 決定的인 訴訟段階가 진행되기 이전에 辯護人에 의하여 代理되도록 하여야 한다. 소년과 부모·후견인·관리인이 財政的인 事由로 적절한 代理를 획득할 수 없는 쌀에는 少年을 代理할 辯護人이 선정되어야 한다. 少年과 父母, 後見人 또는 管理人이 財政上으로는 적절한 대리를 획득할 수 있으나 辯護人을 選任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治安判事는

representation but have not retained counsel, the magistrate may assign counsel and order the payment of reasonable attorney's fees or may direct the juvenile, his parents, guardian, or custodian to retain private counsel within a specified period of time.

The magistrate may appoint a guardian ad litem if a parent or guardian of the juvenile is not present, or if the magistrate has reason to believe that the parents or guardian will not cooperate with the juvenile in preparing for trial, or that the interests of the parents or guardian and those of the juvenile are adverse.

If the juvenile has not been discharged before his initial appearance before the magistrate, the magistrate shall release the juvenile to his parents, guardian, custodian, or other responsible party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director of a shelter-care facility upon their promise to bring such juvenile before the appropriate court when requested by such court unless the magistrate determines, after hearing, at which the juvenile is represented by counsel, that the detention of such juvenile is required to secure his timely appearance before the appropriate court or to insure his safety or that of others.

(June 25, 1948, c. 645, 62 Stat. 858; Mar. 31, 1962, Pub.L. 87-428, 76 Stat. 52; Sept. 7, 1974, Pub.L. 93-415, Title V, § 504, 88 Stat. 1135.)

§ 5035. Detention prior to disposition

A juvenile alleged to be delinquent may be detained only in a juvenile facility or such other suitable place as the Attorney General may designate. Whenever possible, detention shall be in a foster home or community based facility located in or near his home community. The Attorney General shall not cause any juvenile alleged to be delinquent to be detained or confined in any institution in which the juvenile has regular contact with adult persons convicted of a crime or awaiting trial on criminal charges. Insofar as possible, alleged delinquents shall be kept separate from adjudicated delinquents. Every juvenile in custody shall be provided with adequate food, heat, light, sanitary facilities, bedding, clothing, recreation, education, and medical care, including necessary psychiatric, psychological, or other care and treatment.

(June 25, 1948, c. 645, 62 Stat. 858; Sept. 7, 1974, Pub.L. 93-415, Title V. § 505, 88 Stat. 1135.)

§ 5036. Speedy trial

If an alleged delinquent who is in detention pending trial is not brought to

辯護人을 선정하고 상당한 辯護士費用의 지불을 명하거나 또는 소년, 그의 부모·후견인·관리인에게 지정된 기간내에 私選辯護人을 選任하도록 명할 수 있다. 治安判事는 그 少年의 父母나 後見人이 없는 경우 또는 부모나 후견인이 裁判을 준비하는데 있어 그 소년에게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거나 父母나 後見人의 利益과 少年의 利益이 반대된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訴訟을 위한 後見人을 選任할 수 있다.

少年이 治安判事에의 최초 출석이전에 아직 釋放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治安判事는 辯護人에 의하여 代理되는 審理를 거쳐서 당해 少年의 拘禁이 管轄法院에의 적시의 출석을 보장하기 위하여 또는 당해 소년이나 타인의 安全을 保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管轄法院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소년을 그 法院에 출두시키겠다는 약속을 받고서 그 소년을 그의 父母·後見人·代理人 또는 기타 責任있는 當事者(避難－保護施設의 長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에게 석방하여야 한다.

(June 25, 1948, c. 645, 62 Stat. 858; Mar. 31, 1962, Pub. L. 87—428, 76 Stat. 52; Sept. 7, 1974, Pub. L. 93—415, Title V, § 594, 88 Stat. 1135.)

제5035조 (處決前의 拘置) 犯罪의 嫌疑를 받고 있는 소년은 少年施設 기타 法務長官이 指定하는 적당한 장소에 한하여 拘置될 수 있다. 가능하다면 고아원 또는 그의 住居가 있는 지역내이거나 그 부근에 위치한 地域社會的 基盤을 가진 施設에 拘置하여야 한다. 法務長官은 犯罪의 嫌疑를 받고 있는 소년을 범죄로 有罪判決을 받았거나 犯罪嫌疑로 재판을 기다리는 成人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施設에 拘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능한 한 嫌疑를 받고 있는 少年犯은 이미 宣告를 받은 소년범과 分離收容하여야 한다. 拘禁된 모든 少年은 적당한 음식·난방·조광·위생시설·침구·의류·오락·교육과, 필요한 精神病的·心理的인 또는 기타의 治療와 處遇를 포함하는 醫療救護를 제공받아야 한다.

(June 25, 1948, c. 645. 62 Stat. 858; Sept. 7, 1974, Pub. L. 93—415, Title V, § 505, 88 Stat. 1135.)

제5036조 (迅速한 裁判) 裁判을 받을 때까지 拘置되어 있는 少年犯被疑者가 그

trial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upon which such detention was begun, the information shall be dismissed on motion of the alleged delinquent or at the derection of the court, unless the Attorney General shows that additional delay was caused by the juvenile or his counsel, or consented to by the juvenile and his counsel, or would be in the interest of justice in the particular case. Delays attributable solely to court calendar congestion may not be considered in the interest of justice. Except in extraordinary circumstances, an information dismissed under this section may not be reinstituted.
(June 25, 1948, c. 645, 62 Stat. 858; Sept. 7, 1974, Pub.L. 93-415, Title V, § 506, 88 Stat. 1136.)

§ 5037. Dispositional hearing

(a) If a juvenile is adjudicated delinquent, a separate dispositional hearing shall be held no later than twenty court days after trial unless the court has ordered further study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c). Copies of the presentence report shall be provided to the attorneys for both the juvenile and the Government a reasonable time in advance of the hearing.

(b) The court may suspend the adjudication of delinquency or the disposition of the delinquent on such conditions as it deems proper, place him on probation, or commit him to the custody of the Attorney General. Probation, commitment, or commitment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c) shall not extend beyond the juvenile's twenty-first birthday or the maximum term which could have been imposed on an adult convicted of the same offense, whichever is sooner, unless the juvenile has attained his nineteenth birthday at the time of disposition, in which case probation, commitment, or commitment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c) shall not exceed the lesser of two years or the maximum term which could have been imposed on an adult convicted of the same offense.

(c) If the court desires more detailed information concerning an alleged or adjudicated delinquent, it may commit him, after notice and hearing at which the juvenile is represented by counsel, to the custody of the Attorney General for observation and study by an appropriate agency. Such observation and study shall be conducted on an outpatient basis, unless the court determines that inpatient observation and study are necessary to obtain the desired information. In the case of an alleged juvenile delinquent, inpatient study may be ordered only with the consent of the juvenile and his attorney. The agency shall make a complete study of the alleged or adjudicated delinquent to ascertain

拘置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裁判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法務長官이 당해 소년이나 그의 辯護人에 의하여 追加的 遲延이 야기되었다는 점 또는 당해소년과 그의 번호인이 추가적 지연에 동의하였다는 점 또는 追加的 지연이 특히 正義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立證하지 아니하는 한 公訴는 少年犯被疑者의 申請또는 法院의 職權으로 기각된다. 法院의 公訴事件 過多만을 이유로 한 遲延은 正義를 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에 의하여 棄却된 公訴는 다시 제기될 수 없다.

(June 25, 1948, c. 645, 62 Stat. 858; Seqt. 7, 1974, Pub. L. 93—415, Title V, § 506, 88 Stat. 1136.)

제5037조 (處決을 위한 審理) ① 少年이 有罪判決을 받은 경우에는 法院이 제3항에 의거하여 조사의 계속을 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裁判후 20公判日 이내에 별도의 處決審理를 개시하여야 한다. 開催報告書의 謄本은 審理以前의 상당한 時期에 소년과 政府 양자의 辯護人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② 法院은 적당하다고 看做하는 條件에 의하여 有罪判決이나 犯人의 處決을 유예하거나 그를 保護觀察에 명하거나 또는 法務長官하에 拘禁시킬 수 있다. 保護觀察, 拘禁 또는 제3항에 의한 구금은 당해 少年의 21회 生日 또는 동일한 犯罪로 有罪判決을 받은 成人에게 과해질 수 있는 最高期間 중 이른 것을 초과하여 연장되지 아니한다. 단, 그 少年이 處決時에 만19세를 넘은 경우에는 保護觀察, 拘禁 또는 제3항에 의거한 구금은 2년 또는 동일한 犯罪로 有罪判決을 받은 成人에게 과해질 수 있는 최고기간중 短期인 것을 초과할 수 없다.

③ 法院은 少年犯被疑者 또는 有罪判決을 받은 少年犯에 관하여 더욱 상세한 자료를 요망하는 경우에는 통지와 辯護人에 의하여 代理되는 審理를 거친 후에 적정한 기관에 의한 觀察과 調査를 위하여 그를 법무장관하에 구금시킬 수 있다. 그러한 관찰과 조사는 法院이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入院觀察과 調査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가 아니면 外來로 수행된다. 被疑者인 少年에 있어서 入院調査는 당해 少年과 그의 辯護人의 同意에 의해서만 명해질 수 있다. 기관은 그 被疑者 또는 有罪判決을 받은 少年犯에 대하여 그의 個人的 特性, 才能, 背景, 前科 또는 犯罪經驗, 정신적·신체적 결함, 그리고 기타 중요한 요소를 확

his personal traits, his capabilities, his background, any previous delinquency or criminal experience, any mental or physical defect, and any other relevant factors. The Attorney General shall submit to the court and the attorneys for the juvenile and the Government the results of the study within thirty days after the commitment of the juvenile, unless the court grants additional time.
(June 25, 1948, c. 645, 62 Stat. 858; Sept. 7, 1974, Pub.L. 93-415, Title V, § 507, 88 Stat. 1136.)

§ 5038. Use of juvenile records

(a) Throughout and upon the completion of the juvenile delinquency proceeding, the records shall be safeguarded from disclosure to unauthorized persons. The records shall be released to the extent necessary to meet the following circumstances:

(1) inquiries received from another court of law;

(2) inquires from an agency preparing a presentence report for another court;

(3) inquiries from law enforcement agencies where the request for information is related to the investigation of a crime or a position within that agency;

(4) inquiries, in writing, from the director of a treatment agency or the director of a facility to which the juvenile has been committed by the court;

(5) inquiries from an agency considering the person for a position immediately and directly affecting the national security; and

(6) inquiries from any victim of such juvenile delinquency, or if the victim is deceased from the immediate family of such victim, related to the final disposition of such juvenile by the court in accordance with section 5037.

Unless otherwise authorized by this section, information about the juvenile record may not be released when the request for information is related to an application for employment, license, bonding, or any civil right or privilege. Responses to such inquiries shall not be different from responses made about persons who have never been involved in a delinquency proceeding.

(b) District courts exercising jurisdiction over any juvenile shall inform the juvenile, and his parent or guardian, in writing in clear and nontechnical language, of rights relating to his juvenile record.

(c) During the course of any juvenile delinquency proceeding, all information and records relating to the proceeding, which are obtained or prepared in the discharge of an official duty by an employee of the court or an employee of any other governmental agency, shall not be disclosed directly or indirectly to

인하는 철저한 조사를 행하여야 한다. 법무장관은 法院이 期間延長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소년의 拘禁후 30일 이내에 調査結果를 소년과 정부의 辯護人 그리고 法院에 제출하여야 한다.

(June 25, 1948, c. 645, 62 Stat. 858; Sept. 7. 1974, Pub. L. 93—415, Title V, § 507, 88 Stat. 1136.)

제5038조 (少年 記錄의 利用) ① 少年犯罪에 대한 前訴訟節次에 걸쳐서 그리고 訴訟 終結時에 記錄은 권한이 없는 자에게 公開되지 아니한다. 기록은 다음의 경우에 응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공개된다;

1. 他法院으로부터의 법률에 대한 照會
2. 他法院에 대한 開催報告를 준비하는 기관으로부터의 照會
3. 資料의 要求가 機関內部의 犯罪나 地位의 調査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法執行機關으로부터의 조회
4. 그 소년이 法院에 의하야 拘禁되어 있는 施設이나 處遇機関의 長으로부터의 서면의 조회
5. 國家의 安全에 긴박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地位의 사람을 고려하는 기관으로부터의 照會
6. 제5037조에 의한 당해 少年에 대한 法院의 最終處決 관련하여 당해 少年犯罪의 被害者 또는 피해자가 死亡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直系家族으로부터의 照會

이 조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少年記錄에 대한 資料는 자료의 요구가 雇傭, 免許, 債務契約 또는 여하한 市民權이나 特權의 申請에 관련된 때에는 公開될 수 없다. 그러한 照會에 대한 回答은 少年犯罪訴訟에 전혀 관계하지 않은 자에 관한 회답과 다르지 아니하다.

② 少年에 대한 管轄權을 행사하는 地方法院은 少年, 그리고 그의 父母나 後見人에게 그의 少年記錄에 관련한 權利를 명확하고 非專門的인 用語를 사용한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法院의 雇傭人이나 他政府機関의 고용인이 公的인 義務를 遂行하면서 획득하였거나 준비한 訴訟에 관련된 모든 資料와 記錄은 少年犯罪에 관한 訴訟進

anyone other than the judge, counsel for the juvenile and the Government, or others entitled under this section to receive juvenile records.

(d) Whenever a juvenile is found guilty of committing an act which if committed by an adult would be a felony that is a crime of violence or an offense described in section 841, 952(a), 955, or 959 of title 21, such juvenile shall be fingerprinted and photographed. Except a juvenile described in subsection (f), fingerprints and photographs of a juvenile who is not prosecuted as an adult shall be made available onl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subsection (a) of this section. Fingerprints and photographs of a juvenile who is prosecuted as an adult shall be made available in the manner applicable to adult defendants.

(e) Unless a juvenile who is taken into custody is prosecuted as an adult neither the name nor picture of any juvenile shall be made public in connection with a juvenile delinquency proceeding.

(f) Whenever a juvenile has on two separate occasions been found guilty of committing an act which if committed by an adult would be a felony crime of violence or an offense described in section 841, 952(a), 955, or 959 of title 21, the court shall transmit to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Identification Division, the information concerning the adjudications, including name, date of adjudication, court, offenses, and sentence, along with the notation that the matters were juvenile adjudications.

(Added Pub.L. 93-415, Title V, § 508, Sept. 7, 1974, 88 Stat. 1137, and amended Pub.L. 95-115, § 8(b), Oct. 3, 1977, 91 Stat. 1060; Pub.L. 98-473, Title II, § 1202, Oct. 12, 1984, 98 Stat. 2150.)

§ 5039. Commitment

No juvenile committed to the custody of the Attorney General may be placed or retained in an adult jail or correctional institution in which he has regular contact with adults incarcerated because they have been convicted of a crime or are awaiting trial on criminal charges.

Every juvenile who has been committed shall be provided with adequate food, heat, light, sanitary facilities, bedding, clothing, recreation, counseling, education, training, and medical care including necessary psychiatric, psychological, or other care and treatment.

Whenever possible, the Attorney General shall commit a juvenile to a foster home or community-based facility located in or near his home community.

(Added Pub.L. 93-415, Title V, § 509, Sept. 7, 1974, 88 Stat. 1138.)

行 중에는 法官, 소년과 정부의 辯護人 기타 이 조에 따라 少年記錄을 받을 權限이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직접 또는 간접으로 公表되지 아니한다.

④ 少年은 成人이 행하였더라면 暴力犯罪인 重罪 또는 제21장의 제841조, 제952조 제1항 제955조, 제959조에 규정된 犯罪行爲로 인하여 有罪가 인정된 경우에는 그 소년에 대한 指紋採取와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제6항에 규정된 少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成人으로서 起訴되지 아니한 少年의 指紋과 寫眞은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서만 이용될 수 있다. 成人으로서 起訴된 少年의 指紋과 寫眞은 成人被告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이용될 수 있다.

⑤ 拘禁된 소년이 成人으로서 起訴되지 아니하는 한 소년의 姓名과 寫眞은 少年犯罪에 관한 訴訟과 관련하여 공개되지 아니한다.

⑥ 소년이 成人이 행하였더라면 暴力犯罪인 重罪 또는 제21장의 제841조, 제952조 제1항, 제955조, 제959조에 규정된 犯罪가 되었을 행위로 인하여 1회에 걸쳐서 별개의 有罪가 인정된 경우에는 法院은 姓名·判決日·法院·犯罪와 宣告를 포함하여 判決에 관한 資料를 사안이 少年判決이었음을 표시하여 연방수사국의 身元課에 제출하여야 한다.

(Added Pub. L. 93—415, Title V, § 508, Sept. 7, 1974, 88 Stat. 1137, and amended Pub. L. 95—115, § 8(b), Oct. 3, 1977, 91 Stat. 1060; Pub. L. 98—473, Title II, § 1202, Oct. 12, 1984, 98 Stat. 2150.)

제5039조 (拘禁) 法務長官下에 拘禁된 少年은 범죄로 인하여 有罪判決을 받았거나 犯罪嫌疑로 재판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수용된 成人과 일상적으로 접촉하게 되는 成人矯導所 또는 成人矯導所에는 收容 내지 拘禁되지 아니한다.

拘禁된 모든 少年은 적당한 음식·난방·조광·위생시설·침구·의류·오락·상담·교육·훈련, 그리고 필요한 精神病的·心理的인 또는 기타 治療와 處遇를 포함하는 醫療救護를 제공받아야 한다.

가능하다면 法務長官은 소년을 고아원 또는 그의 住居가 있는 지역내이거나 그 부근에 위치한 地域社會的 基盤을 가진 施設에 拘禁하여야 한다.

(Added Pub. L. 93—415, Title V, § 509, Sept. 7, 1974, 88 Stat. 1138.)

§ 5040. Support

The Attorney General may contract with any public or private agency or individual and such community-based facilities as halfway houses and foster homes for the observation and study and the custody and care of juveniles in his custody. For these purposes, the Attorney General may promulgate such regulations as are necessary and may use the appropriation for "support of United States prisoners" or such other appropriations as he may designate.
(Added Pub.L. 93-415, Title V, § 510, Sept. 7, 1974, 88 Stat. 1138.)

§ 5041. Parole

A juvenile delinquent who has been committed may be released on parole at any time under such conditions and regulations as the United States Parole Commission deems prope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in section 4206 of this title.
(Added Pub.L. 93-415, Title V, § 511, Sept. 7, 1974, 88 Stat. 1138, and amended Pub.L. 94-233, § 11, Mar. 15, 1976, 90 Stat. 233.)

§ 5042. Revocation of parole or probation

Any juvenile parolee or probationer shall be accorded notice and a hearing with counsel before his parole or probation can be revoked.
(Added Pub.L. 93-415, Title V, § 512, Sept. 7, 1974, 88 Stat. 1138).

제5040조 (支援) 法務長官은 그의 拘禁下에 있는 소년의 觀察과 調査, 拘禁과 保護를 위하여 公·私의 機關, 개인 그리고 지역내의 宿所와 고아원 등의 地域社會的 基盤을 가진 施設과 契約을 締結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법무장관은 필요한 規則을 公布하고"미합중국 재소자에 대한 지원" 計定이나 그가 指定하는 기타의 豫算을 사용할 수 있다.

(Added. Pub. L.93-415, Title IV, §510, Sept. 7, 1974, 88 Stat. 1138.)

제5041조 (假釋放) 拘禁된 少年犯은 이 장 제4206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 假釋放委員會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條件과 規則에 의하여 언제든지 假釋放될 수 있다.

(Added Pub. L. 93-415, Title V, §511, Sept. 7,1974, 88 Stat. 1138, and amended Pub. L.94-233, §11, Mar. 15, 1976, 90 Stat. 233.)

여 백

제3부

카나다

PRISONS AND REFORMATORIES ACT

SHORT TITLE
INTERPRETATION
PART I. GENERAL
PART II. ONTARIO
PART III. QUEBEC
PART IV. NOVA SCOTIA
PART V. NEW BRUNSWICK
PART VI. PRINCE EDWARD ISLAND
PART VII. MANITOBA
PART VIII. BRITISH COLUMBIA
PART IX. NOVA SCOTA, NEW BRUNSWICK AND PRINCE EDWARD ISLAND
PART X. ALBERTA

SHORT TITLE

Short title

1. This Act may be cited as the *Prisons and Reformatories Act*. R.S., c. 217, s.1.

INTERPRETATION

2. In this Act

Definitions "court"

"court" includes a police or stipendiary magistrate, but, except as otherwise defined in this Act, does not include one or more justices of the peace;

"Lieutenant Governor"

"Lieutenant Governor" means the Lieutenant Governor in Council;

"refuge"

"refuge" means any institution for the care of the young or of adult females to which they may by law be sentenced by a court;

"superintendent"

"superintedent" includes the matron, superior or other head or person in charge of any refuge. R.S., c.217, s.2.

矯導所 및 感化院法

略式名稱 (제1조)
解釋 (제2조)
제1장 總則(제3조~제41조)
제2장 온타리오 (제42조~제77조)
제3장 퀘 벡 (제78조~제88조)
제4장 노바 스코티아 (제89조~제105조)
제5장 뉴 부른스위크 (제106조~제127조)
제6장 프린스 애드워드 아일랜드(제128조~제132조)
제7장 마니토바 (제133조~제139조)
제8장 브리티시 콜롬비아 (제140조~제154조)
제9장 노바스코티아, 뉴 부른스위크, 프린스 애드워드 아일랜드(제155조~제168조)
제10장 알버타 (제169조~제174조)

[略式名稱]

제1조 (略式名稱) 이 법은 矯導所 및 感化院法으로 인용한다.

[解釋]

제2조 (定義) 이 법에서

"法院"은 警務 또는 有給 治安判事를 포함하나 이 법에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1인 또는 2인 이상의 名譽治安判事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副知事"는 정부의 부지사를 의미한다.

"保護施設"이란 법원이 法律에 따라 有罪를 선고한 少年 또는 成年女子의 保護를 위한 施設을 의미한다.

"監督者"란 여자수형자감독자, 상급자 기타 保護施設을 관리하는 長 또는 사람을 포함한다.

PART I. GENERAL

Insecure Prisons

Removal of prisoners

3. The Governor in Council or the Lieutenant Governor of the province may, if, from the insecurity or unfitness of any gaol of any county or district for the safe custody of prisoners or for any other cause, he deems it expedient to do so, order any person charged with an indictable offence confined in such gaol, or for whose arrest a warrant has been issued, to be removed to any other place for safe keeping, or to any gaol, which place or gaol shall be named in such order, there to be detained until discharged in due course of law, or removed for the purpose of trial to the gaol of the county or district in which the trial is to take place. R.S., c.217, s.3.

Authority for removal

4. A copy of such order, certified by the clerk of the Queen's Privy Council for Canada, or the clerk of the executive council, or by any person acting as such clerk of the Privy Council or executive council, is sufficient authority to the sheriffs and gaolers of the counties or districts respectively named in such order to deliver over and to receive the person named in such order. R.S., c.217, s.4.

Powers of Governor in Council or Lieutenant Governor

5. (1) The Governor in Council or a Lieutenant Governor may, in any such order, direct the sheriff in whose custody the person to be removed then is, to convey that person to the place or gaol in which he is to be confined, and in case of removal to another county or district shall direct the sheriff or gaoler of such county or district to receive that person, and to detain him until he is discharged in due course of law, or is removed for the purpose of trial to any other county or district.

Idem

(2) The Governor in Council or a Lieutenant Governor may make an order, as hereinbefore provided, in respect of any person under sentence of imprisonment or under sentence of death.

제1장 總 則

[不安全한 矯導所]

제3조 (收容者의 移送) 州知事 또는 副知事는 郡 또는 地區의 교도소가 收容者의 收容에 안전하지 못하거나 不適切한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도소내의 犯罪行爲로 起訴되었거나 逮捕令狀이 발부된 자를 안전한 收容場所 또는 교도소에 移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에는 收容場所 또는 矯導所가 기재되어야 하고, 수용자가 適法節次에 釋放되거나 訴訟이 진행되는 郡 또는 地區의 교도소로 訴訟을 받기 위하여 移送될 때까지 그곳에 수용한다.

제4조 (移送의 權限) 樞密院의 書記, 執行委員會의 서기, 기타 추밀원 또는 집행위원회의 서기로 행위하는 자가 認證한 令狀의 謄本은 영장에 표시된 각 郡 또는 지구의 保安官 또는 矯導官이 令狀에 기재된 자를 引渡하고 引受하기에 충분한 권한이 있다.

제5조 ① (州知事 또는 副知事의 權限) 주지사 또는 부지사는 命令으로 移送될 자를 계호하는 保安官에게 收容할 場所 또는 교도소로 移送할 것을 명할 수 있고, 郡 또는 地區의 보안관 또는 교도관에게 適法節次에 따라 釋放하거나 訴訟을 받기 위하여 다른 군 또는 지구로 이송할 때까지 인수하여 수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同前) 州知事 또는 副知事는 전항과 같이 懲役 또는 死刑이 宣告된 자에게 命令을 발할 수 있다.

In case of death sentence

(3) If such an order is made in respect of a person under sentence of death, the sheriff to whose gaol the prisoner is removed shall obey any direction given by the order or by any subsequent order in council, for the return of the prisoner to the custody of the sheriff by whom the sentence is to be executed. R.S., c. 217, s.5.

Substitution of neighbouring gaol

6. The Lieutenant Governor of any province may, by proclamation published in the official gazette of the province and in the *Canada Gazette,* declare that the common gaol of any district, county or place in such province is insecure, and may name the gaol of any adjoining district, county or place as the gaol to which offenders within such first mentioned district, county or place, may, from and after a time stated, be committed or sentenced. R.S., c.217, s.6.

Transfer of prisoners thereto

7. (1) The Lieutenant Governor may, after the issue of such proclamation, from time to time direct the sheriff to transfer such of the prisoners then confined in such insecure gaol, as the Lieutenant Governor thinks proper, to the gaol so named, as aforesaid.

Authority

(2) Such order is a sufficient authority to the respective sheriffs and officers to deliver and receive, and to the keeper of such lastmentioned gaol to detain therein, any such prisoner according to the exigency of the warrant or sentence under which he was confined in such insecure gaol. R.S., c. 217, s. 7.

Continuing authority

8. (1) During the continuance in force of such proclamation any person who would otherwise be committed to or sentenced to imprisonment in the common gaol so declared insecure, shall be committed to or sentenced to imprisonment in the gaol named in the proclamation for that purpose, and the respective sheriffs and officers have authority to deliver and receive such person.

Warrant

(2) A warrant directed to the gaoler of the insecure gaol is a sufficient authority for the gaoler of the gaol named in such proclamation to detain therein the person named in such warrant, according to the exigency of the warrant, or until he is removed, as hereinafter provided. R.S., c. 217, s.8.

③ (死刑囚) 사형수를 移送받을 矯導所의 保安官은 死刑을 집행할 보안관의 감독하에 이송하기 위한 命令 또는 뒤이은 委員會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6조 (隣近 矯導所에 代替) 副知事는 州의 官報 또는 카나다 官報의 告示에 의하여 이 州의 어떤 군, 지구 또는 장소의 一般矯導所가 안전하지 아니함을 선언하고 처음 지시된 군, 지구 또는 장소내의 犯法者가 일정한 날 이후 處罰받을 교도소로서 인근 군, 지구 또는 장소의 교도소를 지명할 수 있다.

제7조 ① (代替된 矯導所로 移送) 副知事는 그 宣言의 發布後 보안관에게 부지사가 그곳으로 移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不安全한 矯導所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를 指名된 교도소로 移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權限) 이 命令은 令狀 또는 刑의 宣告에 의하여 不安全한 교도소에 拘禁되어 있는 收容者를 영장 또는 형의 선고요건에 따라 각 保安官과 公務員이 인도하고 수령하여 最終으로 기재된 교도소의 矯導官이 수용하기에 충분한 권한이 있다.

제8조 ① (繼続的 權限) 이 宣言이 유효한 동안에는 不安全하다고 인정된 一般矯導所에 拘禁되어 있는 자는 이 이유로 선언에 적시된 교도소에서 구금되어야 하며, 각 保安官과 公務員은 그를 引渡하고 引受할 권한을 가진다.

① (令狀) 불안전한 矯導所의 矯導官에게 송부된 令狀은 이 선언에 摘示된 교도소의 교도관이 令狀의 要件에 따라 또는 前條와 같이 移送될 때까지 영장에 적시된 자를 교도소에서 수용할 충분한 권한이 있다.

Place of trial

9. (1) Every person so confined in the gaol named in such proclamation, may be tried in the district, county or place in the gaol whereof he is confined, unless the judge or other person presiding at the court at which it is proposed to try such person, or a judge of a court having jurisdiction to try the offence, otherwise directs.

Powers of court

(2) The court of general gaol delivery or general sessions of the peace, or other court having like powers, held in such district, county or place, and every judge or other person presiding thereat, has jurisdiction to make, in reference to any person committed in default of sureties for good behaviour or to keep the peace, the like order as such court, judge or other person might make if the court were being held in the district, county or place in which such person was committed. R.S., c.217, s.9.

Proclamation may be cancelled

10. The Lieutenant Governor may, at any time, by proclamation published in the official gazette of the province and in the *Canada Gazette*, declare that any proclamation issued as hereinbefore provided, shall, from and after a time stated, cease to have effect; and such proclamation ceases to have effect accordingly. R.S., c.217, s.10.

Re-transfer of prisoners

11. (1) The Lieutenant Governor may, after the issue of such last-mentioned proclamation, direct the sheriff to transfer so many of the prisoners then confined in the gaol, so named as aforesaid, as the Lieutenant Governor thinks proper, to the gaol of the district, county or place in which, but for the operation of the preceding sections, such prisoners would have been confined.

Authority

(2) Such order is sufficient authority to the respective sheriffs and officers to deliver and receive, and to the keeper of such lastmentioned gaol to detain therein, any such prisoners, according to the exigency of the warrant or sentence under which they were originally confined. R.S., c.217, s.11.

Employment of Prisoners

Subject to

12. (1) Every one who is sentenced to imprisonment in

제9조 ①(訴訟行爲地) 이 宣言에 적시된 교도소에 收容된 자는 수용되어 있는 矯導所, 地區, 郡 또는 장소에서 訴訟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관 또는 그자를 審理하게 될 法廷을 주재하는 자 또는 犯罪行爲를 심리할 권한을 가진 法院의 法官이 달리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法院의 權限) 이 地區, 郡 또는 장소에서 열린 巡廻法院, 地方刑事法院, 기타 동일한 權限이 부여된 法院 그리고 그곳에서 주재하는 法官 기타의 자는 善行 또는 平和를 지키기 위한 保證없이 수용된 모든 收容者에 대하여 만일 그가 수용된 지구, 군 또는 장소에서 法院이 開廷하였다면 그 법원, 법관 또는 기타의 자가 발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命令을 발할 權限을 가진다.

제10조 (取消宣言) 副知事는 어느 때라도 州의 官報와 카나다 관보의 告示에 의하여 前項의 宣言이 정하여진 날로부터 效力이 없음을 宣言할 수 있다. 이 선언은 따라서 효력이 없다.

제11조 ①(收容者의 再移送) 副知事는 前條에서 언급한 宣言의 發布後, 副知事가 移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앞에서 지정된 矯導所에 收容된 많은 數의 收容者를 전조의 적용이 없는 경우 수용자가 수용되었을 지구, 군 또는 장소로 이송할 것을 보안관에게 명할 수 있다.

②(權限) 이 命令은 원래 그에 의하여 수용된 令狀 또는 刑의 宣告의 要件에 따라 그 수용자를 각 保安官과 공무원은 引渡하고 收容하며, 최종으로 摘示된 교도소의 교도관은 그 수용자를 수용할 충분한 권한이 있다.

[收容者의 勞役]

제12조 ①(法令·規則·命令의 遵守義務履行) 矯導所에 수용이 宣告

statutes, rules and regulations

any gaol, or other public or reformatory prison, i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statutes relating to gaol or prison, and to all rules and regulations lawfully made with respect thereto.

Hard labour

(2) Imprisonment in the Central Prison for the Province of Ontario, in the Andrew Mercer Ontario Reformatory for females, and in any reformatory prison for females in the Province of Quebec, shall be with hard labour, whether so directed in the sentence or not. R.S., c. 217, s. 12.

Regulations

13. The Lieutenant Governor of any province may, from time to time, make regulations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escapes and preserving discipline in the case of prisoners in any common gaol or prison employed beyond the limits of such common gaol or prison. R.S., c.217, s.13.

Employment of prisoners outside gaol

14. After such regulations are made, the Lieutenant Governor may, from time to time, direct or authorize the employment, upon any specific work or duty, beyond the limits of any common gaol or prison, of any prisoner who is sentenced to be imprisoned with hard labour in such gaol for any offence against any law of Canada. R.S., c.217, s.14.

Discipline of gaol

15. Every such prisoner is, during such employment, subject to such regulations and to all the rules, regulations and discipline of the gaol or prison, so far as applicable. R.S., c. 217, s.15.

Supervision

16. No such prisoner shall be so employed, except under the strictest care and supervision of officers appointed to that duty. R.S., c. 217, s. 16.

Remission

Statutory remission

17. (1) Every person who is sentenced or committed by a judge, magistrate or justice of the peace to imprisonment for a fixed term in a place of confinement other than a penitentiary shall, upon being received therein, be credited with satutory remission amounting to one-quarter of the fixed term for which he has been sentenced or committed as time off subject

된 자는 矯導所에 관한 法令 그리고 이에 관하여 적법하게 행하여진 모든 規則과 命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重勞動) 온타리오州 중앙교도소, 앤드류 머서 온타리오여자교도소, 퀘벡州 여자교도소의 수용에는 刑의 宣告時의 命令 여부에 불구하고 重勞動이 과하여 진다.

제13조 (命令) 각 州副知事는 일반교도소 外部에서 作業하는 일반 교도소의 收容者에 대하여 逃走를 방지하고 規律을 유지하기 위한 命令을 수시로 발할 수 있다.

제14조 (矯導所 外部에서의 受刑者 勞役) 이 명령이 발하여진 후에 副知事는 카나다법 위반으로 重勞動이 병과되어 교도소에 수용이 선고된 수용자의 일반교도소 외부에서의 特定作業 또는 義務를 지시할 수 있다.

제15조 (矯導所 規律) 모든 수용자는 勞役 중 이 명령과 적용할 수 있는 교도소의 法律·命令·規律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戒護) 戒護職員의 엄격한 注意와 監視없이 수용자가 勞役되어서는 아니된다.

[減刑]

제17조 ① (法定減刑) 법관, 치안판사 또는 명예치안판사에에 의하여 일정기간 感化院 이외의 矯正施設에 수용이 선고된 자는 善行을 條件으로 형이 宣告되거나 收容이 선고된 確定期間의 1／4에 이르는 법정감형을 받는다.

to good conduct.

Forfeiture

(2) Every prisoner who, having been credited with remission pursuant to subsection(1), commits any breach of the prison regulations is, at the discretion of the person by whom the breach is determined to be committed, liable to forfeit, in whole or in part, the statutory remission that stands to his credit.

Forfeiture for escape

(3) Every prisoner who is convicted by a judge, magistrate or justice of the peace of the offence of escape, attempt to escape or being unlawfully at large forthwith forfeits three-quarters of the statutory remission standing to his credit at the time that offence was committed.

Remission of forfeiture

(4) An official designated by the Lieutenant Governor of the province in which a prisoner is confined may, where he is satisfied that it is in the interest of the rehabilitation of the prisoner, remit in whole or in part any forfeiture of statutory remission.

Limitation of remission

(5) Notwithstanding subsection (1), no prisoner shall be credited with statutory remission that would reduce the term of his imprisonment to less than fourteen days. 1968-69, c.38, s.109.

Earned remission

18. (1) Every person who is sentenced or committed by a judge, magistrate or justice of the peace to imprisonment in a place of confinement other than a penitentiary may be credited with three days remission of his sentence in respect of each calendar month during which he has applied himself industriously, a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any rules made by the Lieutenant Governor of the province in which the person is imprisoned, to the program of the place of confinement in which he is imprisoned.

Idem

(2) Upon being committed to a place of confinement, other than a penitentiary, pursuant to section 20 or 21 of the Parole Act, a prisoner shall be credited with earned remission equal to the earned remission that stood to his credit at the time his parole or mandatory supervision was revoked or forfeited. 1968-69, c.38, s.109.

Term to include period of remission

19. Where

(a) under the Parole Act, authority is granted to a prisoner

② (取消) 전항에 의하여 減刑을 받은 수형자가 矯導所規則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여부의 決定權限이 있는 자의 裁量으로 法定減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逃走로 인한 取消) 법관, 치안판사 또는 명예치안판사에 의하여 逃走, 逃走企圖 또는 불법적인 未逮捕를 범한 것으로 선고받은 자는 위반즉시 法定減刑의 3／4을 상실한다.

④ (再取消) 收容者가 수용되어 있는 州의 副知事가 임명한 公務員은 수용자의 社會復歸를 위하여 法定減刑의 전부 또는 일부의 取消를 다시 취소할 수 있다,

⑤ (減刑의 制限) 제1항에 불구하고 收容者는 法定減刑에 의하여 14일 이하로 감형받을 수 없다.

제18조 ① (賞與減刑) 법관, 치안판사 또는 명예치안판사에 의하여 感化院 이외의 收容施設에 수용이 宣告된 자는 그가 수용된 州의 副知事가 제정한 규정에 따라 그가 수용되어 있는 장소의 收容計劃에 성실히 따른 각 歷月의 3일을 감형할 수 있다.

② (同前) 感化院 이외의 收容施設에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는 假釋放法 제20조 혹은 제21조에 따라 假釋放 또는 强制監視가 취소된 경우 신뢰하여 부여된 賞與減刑에 상당하는 상여감형을 받는다.

제19조 (減刑期間을 포함한 期間) ① 假釋放法上 수용기간동안 未逮捕狀態가 허용되거나

to be at large during his term of imprisonment, or

(b) a person who is at large by reason of statutory or earned remission is subject to mandatory supervision under the *Parole Act*,

his term of imprisonment, for all purposes of that Act, includes any period of statutory remission and any period of earned remission standing to his credit when he is released. 1968-69, c.38, s.109.

Escapes and Rescues

Place of work part of gaol

20. Every street, highway or public thoroughfare of any kind along or across which prisoners pass in going to or returning from their work, and every place where they are so employed, shall, while so used, be considered as a portion of the gaol or prison, and any escape or attempt at escape, and any rescue or attempt at rescue, made on such street, highway or thoroughfare, shall be held to have been made within or from such gaol or prison. R.S., c.217, s.22.

Escape or attempt to escape

21. Every one sentenced to imprisonment or to be detained in any reformatory prison, reformatory school, industrial refuge, industrial home or industrial school, who escapes or attempts to escape therefrom, may, at any time, be apprehended without warrant and brought before any magistrate, who, upon proof of his identity and of the escape or attempt to escape, if the escape or attempt to escape is from a reformatory prison or a reformatory school, shall remand him thereto for the remainder of his original term of imprisonment or detention. R.S., c.217, s.23.

Escape from industrial refuge

22. Where the escape or attempt to escape is from an industrial refuge, industrial home or industrial school, the magistrate may remand the offender thereto for the remainder of his original term of imprisonment or detention; or where the officer in charge of such refuge, home or school certifies in writing that the removal of the offender to a place of safer or stricter imprisonment is desirable, and the governing body of such refuge, home or school applies for such removal, and

② 法定減刑 또는 賞與減刑으로 석방 중인 자가 假釋放法上 强制監視되는 경우에 그의 수용기간에는 석방될 때 法定減刑期間 또는 賞與減刑期間이 포함한다.

[逃走와 救助]

제20조 (矯導所의 作業場) 수용자가 作業하러 가거나 되돌아오는 道路·고속도로 또는 公共道路, 그리고 勞役場所는 교도소의 일부로 보고 도로·고속도로상에서의 逃走, 逃走企圖 그리고 救助, 구조기도는 교도소내 또는 교도소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21조 (逃走 또는 逃走企圖) 感化矯導所, 感化院, 산업수용시설, 산업훈련원 또는 산업훈련소에 收容이 宣告된 자가 그곳에서 逃走하거나 逃走企圖하는 경우에는 영장없이 체포되어 治安判事앞에 소환될 수 있다. 逃走 또는 逃走企圖가 감화교도소 또는 갱생교도소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용자의 身元과 도주 또는 도주기도를 입증하여 본래 收容期間의 殘期收容을 위하여 그곳에 再收容한다.

제22조 (職業收容施設에서 逃走) 도주 또는 도주기도가 職業收容施設, 산업훈련원 또는 산업훈련소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치안판사는 원래 收容期間의 殘期收容을 위하여 범죄자를 再收容할 수 있다. 이 수용시설, 훈련원 또는 훈련소의 責任者가 書面으로 더 안전하고 엄격한 收容場所로 이송함이 바람직하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收容施設, 訓練院 또는 訓練所의 管理者는 이송을 청구하고 治安判事가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sufficient cause therefor is shown to the satisfaction of such magistrate, the magistrate may order the offender to be removed to and to be kept imprisoned, for the remainder of his original term of imprisonment or detention, in any reformatory prison, or reformatory school, in which by law such offender might be imprisoned for an indictable offence, and when there is no such reformatory prison or reformatory school, the magistrate may order the offender to be removed to and to be so kept imprisoned in any other place of imprisonment to which the offender may be lawfully committed. R.S., c.217, s.24.

Further imprisonment for escape

23. In the case of any escape or attempt to escape as aforesaid, whether the term of imprisonment or detention has expired or not, the magistrate may sentence the offender to such additional term of imprisonment or detention, as the case may be, not exceeding one year, as to such magistrate seems a proper punishment for the escape or attempt to escape. R.S., c. 217, s.25.

Incorrigible Offenders

Bringing insubordinate prisoner before magistrate

24. Every one sentenced to imprisonment or detention in or ordered to be detained in any industrial refuge, industrial home or industrial school, by reason of incorrigible or vicious conduct, or with reference to the general discipline of the institution, who is beyond the control of the officer in charge of such institution, may, at any time before the expiration of his term of imprisonment or detention, be brought without warrant before any magistrate. R.S., c. 217, s. 26.

Transfer of offender to reformatory or other place

25. Where the officer in charge of such refuge, home or school certifies in writing that the removal of such offender to a place of stricter imprisonment is desirable, and the governing body of the refuge, home or school applies for such removal, and sufficient cause therefor is shown to the satisfaction of such magistrate, he may order the offender to be removed to and to be kept imprisoned, for the remainder of his original term of imprisonment or detention, in any reforma-

본 때에는 치안판사는 법에 따라 違反者가 수용될 수 있는 感化矯導所 또는 更生矯導所, 感化院에서의 본래 수용기간의 殘期收容을 위한 移送을 명할 수 있다. 이러한 감화교도소 또는 감화원이 없는 경우에는 치안판사는 위반자의 적법한 수용장소의 이송과 수용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 (逃走로 인한 再移送) 前條의 逃走 또는 逃走企圖의 경우 收容期間滿了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治安判事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치안판사가 도주 또는 도주기도에 대한 적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하는 附加收容期間을 선고할 수 있다.

[矯正處遇困難者]

제24조 (犯罪者의 治安判事 面前에의 召喚) 職業收容施設, 職業訓練院 또는 職業訓練所에의 收容이 宣告되거나 명하여진 자가 그 시설을 관리하는 公務員의 統制를 벗어난 경우에는 矯正不能行爲 또는 非行을 이유로 또는 施設의 一般規律과 관련하여 수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어느 때라도 令狀없이 治安判事앞에 소환될 수 있다.

제25조 (犯罪者의 矯導所 기타 場所에의 移送) 이 產業收容施設, 訓練院 또는 산업학교의 관리자가 서면으로 범죄자를 보다 엄격한 수용장소에의 이송이 바람직함을 확인한 때 산업수용시설, 산업훈련원 또는 산업학교의 管理者가 이송을 신청하고 治安判事에게 만족할 만한 충분한 원인이 되는 때에는 治安判事는 범죄자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될 少年院 또는 感化院에 범죄자의 본래 수용기간의 殘期收容을 위하여 이

tory prison or reformatory school in which by law such offender may be imprisoned for an indictable offence; and when there is no such reformatory prison or school, the magistrate may order the offender to be removed to and to be kept imprisoned in any other place of imprisonment to which the offender may be lawfully committed. R.S., c.217, s.27.

Additional term of imprisonment

26. The magistrate may, upon conviction for any such incorrigible or vicious conduct, sentence the offender to such additional term of imprisonment, not exceeding one year, as to such magistrate seems a proper punishment for the incorrigible conduct of the offender. R.S., c. 217, s. 28.

Juvenile Offenders and Vagrants

Imprisonment of persons under 16 years

27. Young persons apparently under the age of sixteen years who are

(a) arrested upon any warrant,

(b) committed to custody at any stage of a preliminary inquiry into a charge for an indictable offence,

(c) committed to custody at any stage of a trial, either for an indictable offence or for an offence punishable on summary conviction, or

(d) committed to custody after such trial, but before imprisonment under sentence,

shall be kept in custody separate from older persons charged with criminal offences and separate from all persons undergoing sentences of imprisonment, and shall not be confined in the lock-ups or police stations with older persons charged with criminal offences or with ordinary criminals. R.S., c. 217, s.29.

Imprisonment in reformatory

28. (1) The court or person before whom any offender, whose age at the time of his trial does not in the opinion of the court exceed sixteen years, is convicted whether summarily or otherwise of an offence punishable by imprisonment may sentence such offender to imprisonment in any reformatory prison in the province in which such conviction takes place, subject to any Act respecting imprisonment in such reformatory.

송하고 수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6조 (附加收容期間) 治安判事는 所內 規律違反行爲 또는 逸脫行爲로 인한 有罪判決의 경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치안판사가 犯罪者의 規律違反行爲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라고 생각하는 附加期間을 범죄자에게 선고할 수 있다.

[青少年犯罪者와 浮浪兒]

제27조 (16세 미만자의 收容) 外見上 16세미만인 자로서

1. 令狀에 의하여 逮捕되고,
2. 범죄행위로 起訴되어 예비수사단계에서 拘禁되고,
3. 起訴 가능한 犯罪行爲 또는 略式命令에 의하여 처벌가능한 犯罪行爲로 인한 審理段階에서 구금되거나
4. 審理 후 判決에 의한 拘禁전에 수용된 자는 犯罪行爲로 인하여 起訴된 成人과 收容判決을 받은 자와 분리하여야 하고, 留置場 또는 警察署에서 범죄행위로 起訴된 成人 또는 일반 범죄자와 함께 수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8조 ① (感化矯導所에의 收容) 略式命令 또는 달리 收容에 처하여질 범죄자가 法院의 의견으로 審理時에 16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재판하는 법원 또는 법관은 感化矯導所의 수용에 관한 법에 따라 범죄자를 判決이 선고되는 州의 感化矯導所에 수용을 선고할 수 있다.

Term limited

(2) In no case shall the sentence be less than two years or more than five years confinement in such reformatory prison.

Substitution for other imprisonment

(3) Such imprisonment shall be substituted, in such case, for the imprisonment in the penitentiary or other place of confinement by which the offender would otherwise be punishable under any Act or law relating thereto; but in every case where the term of imprisonment is fixed by law to be more than five years, such imprisonment shall be in the penitentiary.

Labour

(4) Every person imprisoned in a reformatory is liable to perform such labour as is required of such person. R.S., c. 217, s.30.

Vagrants

29. Where provision is made therefor by the laws of the province in which the conviction takes place, any person convicted of being a loose, idle or disorderly person may, instead of being committed to the common gaol or other public prison, be committed to any house of industry or correction, alms-house, workhouse or reformatory prison. R.S., c.217, s.31.

Custody Pending Transfer to Prison, etc.

Detention in gaol pending demand of proper authority

30. Any sheriff or other person having the custody of any offender sentenced to imprisonment in any prison, reformatory, refuge or industrial school, may detain the offender in the common gaol of the county or district in which such offender is sentenced, or other place of confinement in which the offender is, until a person lawfully authorized in that behalf requires the offender's delivery for the purpose of being conveyed to such prison or reformatory. R.S., c.217, s.32.

Where prisoner is in bad health

31. Where any offender sentenced to be confined in any prison or refuge is in such a weak state of health that he cannot safely or conveniently be removed thereto, he may be detained in the common gaol or other place of confinement in which he is, until he is sufficiently recovered to be safely and conveniently removed to such prison or refuge. R.S., c.217, s.33.

② (期間의 制限) 어느 경우에도 감화교도소에의 收容判決은 2년 이하이거나 5년이상이어서는 아니된다.

③ (다른 收容으로의 代替) 이 경우 收容은 범죄자가 法 또는 이에 관한 법에서 달리 處罰할 수 있는 更生矯導所 기타 收容場所로 代替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에 의하여 수용기간이 5년 이상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갱생교도소에 수용하여야 한다.

④ (勞役) 少年院에 수용된 자는 각자에게 요구된 勞役을 행하여야 한다.

제29조 (浮浪兒) 宣告가 행하여지는 州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이완, 나태 또는 무질서한 자라고 선고된 자는 一般矯導所 기타 公共矯導所에 수용하는 대신 產業 또는 矯正施設, 救貧院, 작업장, 감화교도소에 수용을 명할 수 있다.

[矯導所 등에의 移送時까지의 拘禁]

제30조 (교도소 등에 移送時까지의 拘禁) 矯導所, 感化院, 收容施設 또는 產業訓練院에 수용이 선고된 犯罪者를 拘禁하고 있는 保安官 기타의 자는 그 權限을 적법하게 수여받은 자가 矯導所 또는 感化院에 이송을 위하여 犯罪者의 引渡를 요구할 때까지 선고받은 郡 또는 地區의 일반교도소 기타 수용장소에 범죄자를 수용할 수 있다.

제31조 (收容者의 健康衰弱) 矯導所 또는 收容施設에의 수용이 선고된 犯罪者가 건강이 쇠약하여져 안전하고 편안하게 移送될 수 없는 경우에는 矯導所 또는 收容施設에 안전하고 편안하게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그가 수용되어 있는 一般矯導所 기타 收容施設에 수용할 수 있다.

Inability to perform hard labour

32. Where the gaol surgeon, or other medical practitioner acting in that behalf, certifies that any offender sentenced to any prison or refuge is in such a weak state of health that such offender is unable to perform hard labour, the offender may be detained in the common gaol or other place of confinement in which the offender is, until he is sufficiently recovered to be employed at hard labour. R.S., c.217, s.34.

Computation of time

33. The time for which any person, sentenced to imprisonment in any prison or refuge, is held in custody, under section 30, 31 or 32, shall be reckoned in computing the time served by such person in such prison or refuge. R.S., c.217, s.35.

Conveyance of prisoners

34. (1) Any offender who, under this Act, is liable to be removed from any common gaol to any prison or refuge, or from any prison or refuge back to any gaol or to any penitentiary, may be conveyed for that purpose through any county, district or other territorial division in the province in which such offender has been convicted, and shall be deemed to be in lawful custody while being so conveyed.

Authority of officers

(2) Any person lawfully authorized to convey such offender as aforesaid has, until such offender has been delivered to the warden or superintendent, or other head of such prison or refuge, or the warden of the penitentiary, as the case may be, the same authority and power over and with regard to such offender and for preventing escape, and recapturing such offender in case of escape, as the sheriff of the county, district or other territorial division in which the offender was convicted would himself have in conveying such offender from one part of that county, district or other territorial division to another. R.S., c.217, s.36.

Offenders in provisional judicial districts of Ontario

35. (1) The constable or other officer having charge of any person accused or convicted of any offence in any provisional judicial district in the Province of Ontario committed to any common gaol in the Province, and entrusted with his conveyance to any such common gaol, may pass through any county in the Province with such person in his custody.

Custody in transit

(2) The keeper of the common gaol of any county in the Province of Ontario in which it is found necessary to lodge

제32조 (重勞動行爲 불능의 경우) 醫務官 또는 이에 관한 행위를 하는 開業醫는 범죄자가 重勞動行爲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쇠약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重勞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범죄자가 현재 있는 일반교도소 기타 수용장소에 수용할 수 있다.

제33조 (期間算定) 어느 矯導所 또는 收容施設에 收容이 宣告된 자가 제30조, 제31조, 제32조에 따라 拘禁된 기간은 이 矯導所 또는 수용시설의 收容期間算定에 산입된다.

제34조 ① (收容者의 移送) 이 법상 일반교도소에서 교도소 또는 收容施設로, 교도소 또는 수용시설에서 교도소 또는 갱생교도소로 역이송될 범죄자는 유죄선고를 받은 州의 郡, 地區 또는 다른 領域을 통과하여 그 목적으로 이송될 수 있고, 이와 같이 이송 중인 동안에는 적법하게 구금된 것으로 본다.

② (公務員의 權限) 前項에 따라 범죄자를 이송할 권한이 적법하게 인정된 자는 범죄자가 矯導官 또는 護送官 기타 교도소 또는 收容施設의 장 또는 感化院의 職員에게 引渡되기까지, 경우에 따라서 범죄자가 有罪宣告를 받은 군, 지구 또는 다른 지역의 보안관 자신이 군, 지구 또는 다른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이송하는 경우에 동일한 권한과 능력을 범죄자에 대하여 그리고 도주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리고 도주시 범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갖는다.

제35조 ① (온타리오 臨時司法地區에서의 犯罪者) 온타리오州 臨時司法地區에서 범죄행위로 起訴되어 이 州의 一般矯導所에 수용된 자를 戒護하고 일반교도소에의 移送을 委託받은 경찰 기타 공무원은 이 州의 어느 郡도 그를 계호하여 통과할 수 있다.

② (移送 중의 戒護) 戒護아래 이 地區를 통과하여 移送되는 자를 收

for safe keeping any such person so being conveyed through such county in custody, shall receive such person and safely keep and detain him in such common gaol for such period as is reasonable or necessary.

Duty of gaoler

(3) The keeper of any common gaol in the Province, to which any such person is committed as aforesaid, shall receive that person and safely keep and detain him in such common gaol under his custody until discharged in due course of law, or released on bail in cases in which bail may be by law taken. R.S., c.217, s.37.

Temporary Absence

Temporary absence

36. Where, in the opinion of an official designated by the Lieutenant Governor of the province in which a prisoner is confined in a place other than a penitentiary, it is necessary or desirable that the prisoner should be absent, with or without escort, for medical or humanitarian reasons or to assist in the rehabilitation of the prisoner at any time during his period of imprisonment, the absence of the prisoner may be authorized from time to time by such official for an unlimited period for medical reasons and for a period not exceeding fifteen days for humanitarian reasons or to assist in the rehabilitation of the prisoner. 1968-69, c.38, s.110.

Discharge and Recommittal

Prisoner not to be discharged in certain cases

37. (1) No prisoner shall be discharged from any prison, or from any refuge for females at the termination of his or her term of confinement, if then suffering from any contagious or infectious disease, or under any acute or dangerous illness, but he or she shall be permitted to remain in such prison or refuge until he or she recovers from the disease or illness.

To remain under discipline

(2) Any person remaining for any such cause in such prison or refuge shall be under the same discipline and control as if his or her term was still unexpired. R.S., c.217, s.38.

In confinement

38. (1) Any person who, under this Act, is liable to be

容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정된 온타리오州의 一般矯導所의 교도관은 그를 인수받아 상당하고 필요한 기간동안 일반교도소에 수용하여야 한다.

③ (矯導官의 義務) 前條와 같이 수용된 자가 있는 一般矯導所의 교도관은 適法節次에 따라 釋放되거나 법률에 의하여 保釋이 許可된 경우 釋放될 때까지 그를 인수받아 계호아래 일반교도소에 수용하여야 한다.

[臨時出所]

제36조 (臨時出所) 收容者가 感化院 이외의 장소에 수용되어 있는 州의 副知事가 指命한 공무원의 意見으로 醫學的 또는 人道的 理由 또는 수용자의 社會復歸를 돕기 위하여 收容期間 중 어느 때라도 계호아래 또는 계호없이 出所함이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경우에 이 공무원은 때로 이 수용자의 출소를 醫學的 理由로 기간의 제한없이 人道的 理由 또는 수용자의 社會復歸를 돕기 위한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허가할 수 있다.

[釋放과 再收容]

제37조 ① (釋放될 수 없는 경우) 收容者가 收容期間의 만료시 傳染病을 앓거나 중병을 앓는 경우에는 矯導所 또는 女子收容施設에서 석방되어서는 아니되며, 收容者는 疾病이 완치될 때까지 矯導所 또는 保護所에 殘留가 허용된다.

② (規律遵守) 이 원인으로 교도소에 殘留하는 자는 收容期間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한 規律과 統制에 따라야 한다.

제38조 ① (罰金未納으로 인한 收容) 이 法上 矯導所 또는 收容施設에

is for non-payment of fine

removed from any prison or refuge, may be so removed notwithstanding that such imprisonment, or any part thereof, is imposed in default of the payment of a fine or penalty in money, and that such person is entitled to be discharged upon payment of such fine or penalty.

Application of fine

(2) If the fine or penalty is paid after the removal of the offender, the same shall be paid to the proper officer of such prison or refuge, to defray the expenses of the removal of the said offender, and otherwise for the uses of such prison.

Saving

(3) Nothing in this section affects the right of any private person to such fine or penalty, or any part thereof. R.S., c. 217, s.40.

Recommittal

39. The judge of any county court or any police magistrate may, upon satisfactory proof that any boy or girl who was sentenced under any Act of the Parliament of Canada, and who has been discharged on probation, has violated the conditions of his or her discharge, order such boy or girl to be recommitted to the refuge, and thereupon such boy or girl shall be detained therein under his or her original sentence, as if such boy or girl had never been discharged. R.S., c.217, s.41.

Regulations as to discharge

40. The Governor in Council may make such regulations as he considers advisable for the discharge, after the expiration of the fixed term of sentence, of prisoners confined in any refuge under any Act of the Parliament of Canada; and such discharge may be either absolute or upon probation, subject to such conditions as are impos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regulations. R.S., c.217, s.42.

Board of Parole

41. The Lieutenant Governor of the Province of Ontario may appoint a Board of Parole for the Province whose duty it shall be to inquire from time to time into the cases of prisoners sentenced to the Ontario Reformatory, the Andrew Mercer Reformatory or any industrial farm, and where as a result of such inquiry the Board thinks proper, it may permit prisoners serving indeterminate sentences to be paroled under conditions approved of by the Solicitor General of Canada, and when the terms on which such prisoners have been paroled have been complied with, the Board may recom-

서 移送될 수 있는 자는 이 수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罰金 또는 過怠料의 未納으로 인한 경우와 그가 벌금 또는 과태료를 지급하면 釋放될 權利가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이 이송될 수 있다.

② (罰金의 使用) 罰金 또는 過怠料가 범죄자의 移送후에 納付된 경우에는 벌금은 前條 범죄자의 移送費用을 공제하고, 다른 한편 그 교도소의 필요를 위하여 矯導所 또는 收容施設의 적당한 공무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③ (留保條項) 이 조는 私人의 罰金, 過怠料 또는 그 일부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9조 (再收容) 地區 法院判事 또는 治安判事는 카나다 制定法上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執行猶豫된 소년 또는 소녀가 釋放條件을 위반했다는 충분한 證據가 있는 경우 그 소년 또는 소녀를 收容施設에 再收容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곳에서 소년 또는 소녀는 석방되지 아니했던 것같이 본래 선고에 따라 수용된다.

제40조 (釋放에 관한 命令) 州知事는 刑期滿了후 카나다 議會法에 의하여 수용시설에 수용된 受刑者의 釋放에 대하여 有益하다고 판단하는 命令을 발할 수 있다. 이 석방은 命令權에 의하여 부과된 조건에 따라 절대적 또는 조건부일 수 있다.

제41조 (假釋放委員會) 온타리오州 副知事는 州假釋放委員을 任命할 수 있는데, 그의 임무는 온타리오更生院, 앤드류머서갱생원 또는 產業開放矯導所에 수용된 收容者를 수시로 調査하는 것이고, 그 조사결과 위원회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不定期刑의 宣告를 받아 복역중인 受刑者를 카나다 법무부장관이 승인한 조건에 의하여 假釋放할 수 있고, 그가 가석방 조건을 준수하면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그의 終局的인

mend for the consideration of the Solicitor General the final discharge of such prisoners. R.S., c.217, s.43; 1966-67, c.25, s.37.

PART II. ONTARIO

Application of Part

Ontario

42. This Part applies only to the Province of Ontario, R.S., c.217, s.44.

Interpretation

"Training school"

43. In this Part "training school" means any training school provided or authorized by the Lieutenant Governor of the Province of Ontario under *The Training Schools Act, 1965,* and includes for all the purposes of this Act, the Ontario Reformatory for Boys. R.S., c.217, s.45. [See also 1965 Ont. c.132]

The Reformatory for the Province of Ontario

Imprisonment in Ontario Reformatory

44. Every court in the Province of Ontario, before which any male person is convicted for an offence against the laws of Canada, punishable by imprisonment in the common gaol for the term of three months, or for any longer time, may sentence such person to imprisonment for a term of not less than three months and for an indeterminate period thereafter of not more than two years less one day in the Ontario Reformatory instead of the common gaol of the county or judicial district where the offence was committed or was tried. 1968-69, c.38, s.112.

Transfer to Reformatory or Farm

45. (1) Every person confined in any one of the common gaols of the Province under sentence of imprisonment for any offence against the laws of Canada may, by warrant signed by an officer authorized by the Lieutenant Governor in that

釋放을 고려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2장 온타리오

[一部適用]

제42조 (온타리오) 이 장은 온타리오주에만 적용된다.

[解釋]

제43조 (訓練學校) 이 편에서 訓練學校는 1965년 訓練學校法에 의하여 온타리오주 副知事가 세우거나 承認한 훈련학교를 의미하고, 이 법의 목적상 온타리오少年更生院을 포함한다.

[온타리오州 更生院]

제44조 (온타리오更生院에의 수용) 카나다법에 위반한 犯罪行爲로 3년 또는 그 보다 장기의 一般矯導所에 수용이 처해질 수 있는 남자를 審理하는 온타리오州法院은 범죄행위가 행해지거나 審理되는 郡 또는 地區의 일반교도소 대신 3개월이상 2년 이내의 不定期間동안 그의 수용을 명할 수 있다.

제45조 ① (更生院 또는 産業開放矯導所에 移送) 카나다법에 위반되어 刑의 宣告를 받고 州一般矯導所에 수용된 자는 州副知事로부터 이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은 공무원이 承認한 令狀에 의하여 일반교도소에서

behalf, be transferred from such common gaol to the Ontario Reformatory or to an industrial farm, there to be imprisoned for the unexpired portion of the term of imprisonment to which such person was originally sentenced.

Custody for remainder of term

(2) Such person shall thereupon be imprisoned in the Ontario Reformatory or industrial farm for the residue of such term unless in the meantime he is lawfully discharged or removed, and is subject to all the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Ontario Reformatory or industrial farm, as the case may be. R.S., c.217, s.47.

Offender to be received

46. The Superintendent of the Custodial Branch of the Ontario Reformatory or the superintendent of an industrial farm, as the case may be, shall receive every offender so transferred and every offender legally certified to him as sentenced to imprisonment therein, and shall detain him subject to all the rules, regulations and discipline of their respective institutions until the term for which he has been sentenced is completed or until he is otherwise paroled or discharged in due course of law. R.S., c.217, s.48.

Employment of offenders

47. (1) The Lieutenant Governor may, from time to time, authorize, direct or sanction the employment upon any specific work or duty outside or beyond the limits of the Ontario Reformatory or an industrial farm of any of the prisoners confined or sentenced to be imprisoned therein or transferred thereto, as herein provided.

Discipline

(2) All such prisoners are, during the employment mentioned in subsection (1), subject to such rules, regulations and discipline as are approved by the Lieutenant Governor in that behalf. R.S., c.217, s.49.

Transfer of offenders

48. Any officer authorized by the Lieutenant Governor in that behalf may, from time to time, by warrant, direct the removal of any offender from the Ontario Reformatory to an industrial farm, or to the common gaol of the county in which he was sentenced, or to any other gaol, or from an industrial farm to the Ontario Reformatory, or the common gaol of the county in which he was sentenced, or to any other industrial farm or gaol. R.S., c.217, s.50.

온타리오갱생원 또는 산업개방교도소로 이송될 수 있고 그곳에서 원래 선고받은 收容期間중 만료되지 아니한 기간동안 수용된다.

② (殘餘期間의 收容) 收容者는 중도에 적법하게 釋放 또는 移送되지 아니하는 온타리오更生院 또는 산업개방교도소에 수용되고, 경우에 따라 온타리오更生院 또는 산업개방교도소의 規則과 命令이 적용된다.

제46조 (犯罪者의 引受) 온타리오更生院의 監視課의 戒護者 또는 産業開放矯導所의 계호자는 경우에 따라 이와 같이 移送된 犯罪者, 그리고 적법하게 그곳에서 收容을 宣告받은 犯罪者를 인수하고, 刑期가 종료하거나 適法節次에 따라 假釋放되거나 석방될 때까지 각 시설의 規則, 命令, 規律에 따라 그자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47조 ① (犯罪者의 勞役) 副知事는 수시로 온타리오更生院 또는 産業開放矯導所 이외에 이 법에 따라 수용되어 있거나 이곳에 收容宣告를 받거나 移送宣告를 받은 범죄자를 特定作業 또는 義務에 관한 勞役의 權限을 부여하고 명하고 또는 승인할 수 있다.

② (規律) 前項의 勞役期間중 모든 수용자는 副知事가 이에 관하여 정한 규칙·명령·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8조 (犯罪者의 移送) 副知事로부터 이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은 수시로 令狀에 의하여 온타리오更生院에서 産業開放矯導所, 형이 선고된 郡의 일반교도소 기타 교도소 또는 산업개방교도소에서 온타리오갱생원 또는 형이 선고된 지구의 일반교도소 기타 산업개방교도소 또는 교도소로 범죄자의 이송을 명할 수 있다.

Training School for Boys

Boys under 16 years

49. Where any boy, who, at the time of his trial, appears to the court to be under the age of sixteen years, is convicted of an offence against a law of Canada for which a sentence of imprisonment for a period of three months or longer, but less than five years, may be imposed upon an adult convicted of the like offence, and the court before which such boy is convicted is satisfied that a due regard for the material and moral welfare of the boy manifestly requires that he be committed to a training school, then such court may sentence the boy to be imprisoned in any training school, for such term as the court thinks fit, not being greater than the term of imprisonment which could be imposed upon an adult for the like offence; and may further sentence the boy to be kept in such training school for an indefinite time after the expiration of such fixed term; but the whole period of confinement in the training school shall not exceed five years from the commencement of his imprisonment. R.S., c.217, s.51.

Additional imprisonment for purposes of reform

50. Where any boy, apparently under the age of sixteen years, is convicted of an offence against a law of Canada punishable on summary conviction, and thereupon is sentenced and committed to prison in any common gaol for a period not less than fourteen days, any judge of any one of the superior courts, or any judge of a county court, in any case occurring within his county, may examine and inquire into the circumstances of such case and conviction, and when he considers that the material and moral welfare of the boy requires such sentence, he may, as an additional sentence for such offence, sentence such boy to be sent either forthwith or at the expiration of his imprisonment in such gaol, to any training school, to be there detained for the purpose of his industrial and moral education, for an indefinite period, not exceeding in the whole five years, from the commencement of his imprisonment in the common gaol. R.S., c.217, s.52.

Transfer to training schools

51. The Governor General, by warrant under his hand, may, at any time in his discretion, the consent of the Provincial Secretary of Ontario having been first obtained,cause any

[少年訓練學校]

제49조 (16세 미만의 소년) 少年이 審理時에 외관상 16세 미만이고 동일한 犯罪를 범한 成人에게 3개월이상 5년이하의 收容宣告가 내려질 수 있는 카나다법 위반으로 有罪宣告가 내려질 수 있고, 이 소년에게 有罪宣告하는 法院이 物質的 그리고 道德上 福祉를 고려하여 訓練學校에 이송할 것이 명백히 요구된다고 판단한 경우에 法院은 동일한 범죄에 成人에게 과하는 기간보다 長期가 아닌 기간동안 그를 訓練學校에 수용할 것을 宣告할 수 있다. 나아가 法院은 收容期間 만료 후 그에게 훈련학교에 殘留하기를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훈련학교의 전 수용기간은 수용개시 후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0조 (矯正目的의 補充收容) 少年이 외견상 16세 이하이고 略式命令에 의하여 카나다법 위반으로 有罪를 宣告할 수 있고, 곧 14일 이상의 일반교도소에 收容宣告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郡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上級法院의 判事 또는 郡法院判事는 각 사건의 상황과 유죄선고를 조사할 수 있고, 소년의 物質的 그리고 精神的 福祉가 이 선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판사는 그를 이 범죄에 대한 追加宣告로 즉시 또는 수용기간 만료시 訓練學校로 移送하여 일반교도소에 수용개시후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不定期間동안 産業上 그리고 道德的 敎育目的을 위하여 수용할 것을 선고할 수 있다.

제51조 (訓練學校에 移送) 州知事는 署名한 영장에 의하여 온타리오 主務長官의 동의가 먼저 있은 후 裁量으로 카나다법 위반으로 有罪宣

boy who is imprisoned in a reformatory or gaol in the Province, under sentence for any offence against a law of Canada, and who is certified by the court, judge or magistrate by whom he was tried to have been, in the opinion of such court, judge or magistrate, at the time of his trial, of or under the age of thirteen years, to be transferred for the remainder of his term of imprisonment to a training school in the Province. R.S., c.217, s.53.

Boys under 13 years

52. (1) Where, under any law of Canada, any boy is convicted, whether summarily or otherwise, of any offence punishable by imprisonment, and the court, judge,stipendiary or police magistrate by whom he is so convicted is of opinion that such boy does not exceed the age of thirteen years, such court, judge or magistrate may sentence the boy to imprisonment in a training school for any term not exceeding five years and not less than two years; but no such boy shall be detained in any training school beyond the age of seventeen years.

Public notice of school

(2) No boy shall be sentenced to any such school, unless public notice has been given in the official gazette of Ontario, and has not been countermanded, that such school is ready to receive and maintain the boys sentenced under the laws of Canada. R.S., c.217, s.54.

Detention

53. Every boy sentenced or transferred to a training school shall be detained therein until the expiration of the fixed term, if any, of his sentence, unless sooner discharged by lawful authority, and thereafter shall, subject to the provisions hereof and to any regulations made, as hereinbefore provided, be detained in such training school, for a period not to exceed five years from the commencement of his imprisonment, for the purpose of his industrial and moral education. R.S., c.217, s.55.

Commitment of boy to gaol until sent to training school

54. A copy of the sentence of the court, duly certified by the proper officer, or the warrant or order of the judge or other magistrate by whom any boy is sentenced to confinement in such training school, is a sufficient authority to the sheriff, constable or other officer who is directed, verbally or

告를 받아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고 審理한 法院, 法官 또는 治安判事에 의하여 13세 또는 그 이하임이 확인된 소년은 殘餘期間의 收容을 위하여 州訓練學校에 이송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2조 ① (13세 미만의 소년) 카나다법상 略式命令 또는 기타 소년이 收容判決을 받고, 유죄선고를 내린 法院, 法官, 有給治安判事 또는 名譽治安判事가 이 소년이 13세 이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 법원, 법관 또는 치안판사는 그를 2년이상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訓練學校에 收容할 것을 宣告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17세를 초과하여서는 訓練學校에 수용될 수 없다.

② (學校의 公示) 온타리오 官報에 이 학교가 카나다법상 有罪가 宣告된 소년을 引受하고 收容함을 公示되고 그것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는 이 학교에의 수용이 선고될 수 없다.

제53조 (收容) 訓練學校에의 收容이 宣告되거나 移送된 소년은 宣告의 確定期間의 만료시까지 適法한 權限에 의하여 일찍 석방되지 아니하는 한 수용된다. 그리고 상기 法律과 命令에 따라 그는 産業上 그리고 道德上 目的을 위하여 수용개시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이 훈련학교에 수용된다.

제54조 (訓練學校에 移送될 때까지 矯導所에 少年의 收容) 자격있는 공무원이 정당히 확인한 法院判決文의 등본, 소년의 訓練學校에의 수용을 선고한 法官 기타 治安判事의 令狀 또는 命令은 적법하게 권한을 받은 자가 訓練學校에 移送을 위하여 소년의 인도를 요구할 때까지 口

otherwise, to do so, to convey such boy to the common gaol of the county where such sentence is pronounced, and for the gaoler of such gaol to receive and detain such boy, until a person who is lawfully authorized requires the delivery of such boy for removal to the training school. R.S., c.217, s.56.

Reformatory for Females

When females may be sentenced to a reformatory

55. Every court before which any female is convicted of an offence against the laws of Canada, punishable by imprisonment in the common gaol for a term of two months or for any longer time, may sentence such female to imprisonment for an indefinite period not exceeding two years in a reformatory for females, hereafter in this section and in sections 56 to 61 referred to as "the Reformatory", instead of the common gaol of the county or judicial district where the offence was committed or was tried. 1968-69, c.38, s.113.

Transfer of females

56. (1) Any female, from time to time confined in any common gaol under sentence of imprisonment for any offence against the laws of Canada, may, by warrant signed by an officer authorized by the Lieutenant Governor in that behalf, be transferred from such common gaol to the Reformatory or to an industrial farm, there to be imprisoned for the unexpired portion of the term of imprisonment to which such female was originally sentenced or committed to the common gaol.

For residue of term

(2) Such female shall thereupon be imprisioned in the Reformatory or industrial farm for the residue of the said term, unless in the meantime she is lawfully discharged or removed, and she is subject to all the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Reformatory or industrial farm, as the case may be. R.S., c.217, s.58.

Term of imprisonment in certain cases

57. (1) Whenever any female is convicted under the Criminal Code of being a loose, idle or disorderly person or vagrant, or is convicted of an offence under the sections thereof relating to the summary trial of indictable offences, she may be sentenced to the Reformatory for an indefinite term less than two years.

頭 또는 달리 명령을 받은 保安官, 경찰 기타 공무원이 선고한 郡의 일반교도소에 이 소년을 이송하고 그 교도소의 교도관이 그를 수용하기 위한 충분한 권한이 있다.

[女子更生院]

제55조 (女子가 更生院에 收容될 수 있는 경우) 2개월 또는 그 이상 기간동안 一般矯導所에 수용될 수 있는 카나다법 위반을 선고받은 여자를 審理하는 法院은 범죄가 행하여 지거나 審理된 郡 또는 司法地區의 일반교도소대신 이 조와 다음 제56조부터 제61조에 更生院이라고 기재된 女子更生院에 여자를 2년을 초과 아니하는 不定期間동안 수용을 선고할 수 있다.

제56조 ① (女子의 移送) 때로 카나다법 위반으로 收容宣告를 받고 一般矯導所에 수용된 자는 이에 관하여 副知事로부터 권한을 받은 공무원이 署名한 令狀에 의하여 일반교도소에서 更生院 또는 産業開放矯導所로 수용자가 원래 一般矯導所에서 선고받은 收容期間 중 殘餘期間의 수용을 위하여 이송될 수 있다.

② (收容) 收容者는 향후 중도에 適法하게 釋放 또는 移送되지 아니하는 한 更生院 또는 産業開放矯導所에 수용되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 갱생원 또는 산업개방교도소의 規則과 命令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7조 ① (特定한 경우 收容期間) 수용자가 刑法上 방탕, 나태, 非行性 또는 방탕벽이 있는 것으로 선고되거나 범죄행위의 略式審理에 관한 條文에 違反한 것으로 선고된 경우에는 그는 2년이하의 不定期間동안 更生院에 수용이 선고될 수 있다.

② (罰金)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선고되면 벌금이 병과

Fine

(2) If any term exceeding six months is imposed, no fine shall be imposed in addition. R.S., c.217, s.59.

Conveyance of prisoners

58. Any officer appointed by the Lieutenant Governor, or other officer or person, by his direction or by direction of the court or other lawful authority, may convey to the Reformatory any convict sentenced, or liable to be imprisoned therein, and deliver her to the superintendent or keeper thereof, without any further warrant than a copy of the sentence taken from the minutes of the court by which the offender was tried, and certified by a judge or the clerk or acting clerk of such court. R.S., c.217, s.60.

Female offender to be received

59. (1) The Superintendent of the Reformatory or the superintendent of an industrial farm, as the case may be, shall receive every offender so transferred, and every offender legally certified to him as sentenced to imprisonment therein, and shall there detain her, subject to all the rules, regulations and discipline of their respective institutions, until the term for which she has been sentenced is completed or until she is paroled or discharged in due course of law.

Employment of offenders

(2) The Lieutenant Governor may from time to time authorize, direct or sanction the employment upon any specific work or duty outside or beyond the limits of the Reformatory or industrial farm of any female confined or sentenced to be imprisoned or transferred thereto as herein provided.

Discipline

(3) All such prisoners shall, during the employment mentioned in subsection (2), be subject to such rules, regulations and discipline as are approved by the Lieutenant Governor in that behalf. R.S., c.217, s.61.

Transfer

60. Any officer authorized by the Lieutenant Governor in that behalf, may, from time to time, by warrant, direct the removal of any female from the Reformatory to an industrial farm or to the common gaol of the county in which she was sentenced, or to any other gaol, or from an industrial farm to the Reformatory or the common gaol of the county in which she was sentenced, or to any other industrial farm or gaol. R.S., c.217, s.62.

될 수 없다.

제58조 (收容者의 移送) 副知事에 의하여 임명된 公務員 또는 副知事의 지휘아래 있거나 法院 기타 법률상 권한있는 자의 지휘아래 있는 公務員 또는 사람은 범죄자를 審理한 法院의 記錄에서 취하고 法官, 書記, 法院의 書記로 행위하는 자가 확인한 判決文의 謄本 이외의 令狀이 필요없이 수용이 선고된 자 또는 수용될 수 있는 자를 更生院에 이송하거나 矯導官 또는 所長에게 인도할 수 있다.

제59조 ① (女子犯罪者의 引受) 更生院의 院長 또는 産業開放矯導所의 所長은 이와같이 移送된 犯罪者 또는 그곳에 收容이 宣告된 것으로 법률상 확인된 범죄자를 인수하고, 그에게 선고된 기간이 완성하거나 그가 적법절차에 따라 假釋放되거나 釋放될 때까지 각 施設의 規則, 命令 그리고 規律에 따라 수용하여야 한다.

② (犯罪者의 勞役) 副知事는 수시로 收容되어 있거나 수용이 선고되거나 이법에 따라 이곳으로 移送된 수용자를 更生院 또는 産業開放矯導所의 이외에서 특정한 作業 또는 義務勞役을 부여하거나 지시 또는 제재를 할 수 있다.

③ (規律) 모든 犯罪者는 前 2항에 규정된 勞役期間 중 副知事에 의하여 이에 관한 승인된 規則, 命令 그리고 規律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0조 (移送) 副知事로부터 이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公務員은 수시로 令狀에 의하여 更生院에서 産業開放矯導所 또는 수용된 선고된 地區의 일반교도소 또는 기타 교도소로, 산업개방교도소에서 갱생원 또는 수용이 선고된 일반교도소 기타 산업개방교도소 또는 교도소로 女子의 移送을 명할 수 있다.

Delivery of offender

61. The Superintendent of the Reformatory, the superintendent of an industrial farm, or the keeper of any common gaol, having the custody of any offender ordered to be removed, shall, when required to do so, deliver up to the constable or other officer or person who produces the said warrant, such offender, together with a copy, attested by the said superintendent or keeper, of the sentence and date of conviction as given on the reception of the offender into the custody of such superintendent or keeper. R.S., c.217, s.63.

Industrial Refuge for Girls

Girls under 14 years

62. Where any girl who at the time of her trial appears to the court to be under the age of fourteen years is convicted of an offence for which a sentence of imprisonment for a term of one month or longer, but less than five years, may be imposed upon an adult convicted of the like offence, and the court before which the girl is convicted is satisfied that a due regard for her material and moral welfare manifestly requires that she should be committed to the Industrial Refuge for Girls of Ontario, the court may sentence that girl to be imprisoned therein, for such fixed term as the court thinks fit, not being greater than the term of imprisonment that could be imposed upon an adult for the like offence, and may further sentence the said girl to be kept in such Industrial Refuge for an indefinite time after the expiration of such fixed term; but the whole term of confinement in the Industrial Refuge shall not exceed five years from the commencement of her imprisonment. R.S., c.217, s.64.

Additional imprisonment for purposes of reform

63. Where any girl, apparently under the age of fourteen years, is convicted of any offence punishable by law on summary conviction, and thereupon is sentenced and committed to prison in any common gaol for a term of not less than fourteen days, any judge of one of the superior courts, or any judge of a county court, in any case occurring within his county, may examine and inquire into the circumstances of such case and conviction, and if he considers the material and moral welfare of the girl requires it, he may, as an addi-

제61조 (犯罪者의 引渡) 移送命令을 받은 범죄자를 戒護하고 있는 更生院의 院長, 산업개방교도소의 所長 또는 일반교도소의 矯導官은 필요한 때 원장 또는 교도관의 계호아래 犯罪者를 인수하도록 한 前條의 원장 또는 교도관이 확인한 判決文, 判決日字가 기재된 謄本과 함께 범죄자를 警察 기타 公務員 또는 전기의 영장을 제시하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女子産業收容施設]

제62조 (14세 미만의 少女) 법원에 14세 미만으로 보이는 소녀가 동일한 犯罪로 有罪가 宣告될 수 있는 成人에게 1개월이상 5년미만 수용선고가 부과될 수 있는 범죄를 범한 경우, 그리고 그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法院이 物質的 그리고 道德的 福祉를 정당히 고려하여 온타리오 소녀산업수용시설에 수용함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法院은 동일한 범죄로 成人에게 부과될 수 있는 收容期間보다 많지 않은 법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確定期間동안 그를 그곳에 수용할 것을 선고할 수 있다. 나아가 確定期間 종료후 불확정한 기간동안 전기 收容者의 계속 수용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産業收容施設에서의 전수용기간은 수용개시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3조 (敎化目的의 附加的 收容) 略式命令으로 처벌가능한 犯罪行爲로 선고된 외견상 14세미만의 소녀가 14일이상의 일반교도소에의 수용이 선고된 경우에는 上級法院 중 법관 또는 地區法院의 法官은 자신의 지구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이 事件內容과 狀況判決을 조사할 수 있고, 그의 物質的 그리고 精神的 福祉가 필요하다고 보는 때에는 이 犯罪에 대한 附加宣告로서 그를 즉시 또는 矯導所에서의 收容滿了時 여자산업

tional sentence for such offence, sentence such girl to be sent either forthwith, or at the expiration of her imprisonment in such gaol, to the Industrial Refuge for Girls, to be detained there for the purpose of her industrial and moral education for an indefinite period, not exceeding in the whole five years from the commencement of her imprisonment in the common gaol. R.S., c.217, s.65.

Detention in Refuge

64. Every girl so sentenced shall be detained in the Refuge until the expiration of the fixed term of her sentence, unless discharged sooner by lawful authority; and such girl thereafter shall, and every girl sentenced under section 63 shall, subject, in both cases, to the provisions of this Part, and to any regulations made as in this Part hereafter provided, be detained in the Refuge for a term not exceeding five years from the commencement of her imprisonment, for the purpose of her industrial and moral education. R.S., c.217, s.66.

Apprenticeship

Authorization

65. (1) Where any respectable and trustworthy person is willing to undertake the charge of any boy committed to any training school, when such boy is over the age of twelve years, or of any girl committed to the Industrial Refuge for Girls, as an apprentice to the trade or calling of such person, or for the purpose of domestic service, and such boy or girl is confined in the training school or Refuge by virtue of a sentence or order pronounced under the authority of any Act of the Parliament of Canada, the superintendent of the training school or Refuge may, with the consent and in the name of the Lieutenant Governor of Ontario, bind the said boy or girl to such person for any term not to extend, without his or her consent, beyond a term of five years, from the commencement of his or her imprisonment.

Discharge

(2) The Lieutenant Governor shall thereupon order that such boy or girl shall be discharged from the said school or Refuge on probation, to remain so discharged, if his or her conduct during the residue of the term of five years, from the commencement of his or her imprisonment, continues

수용시설로 이송하고 총계가 一般矯導所에서 수용개시 후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불확정 기간동안 産業上 그리고 道德的 目的으로 그곳에 수용할 것을 선고할 수 있다.

제64조 (保護施設에 收容) 이와같이 수용된 收容者는 刑期滿了時까지 적법한 권한에 의하여 일찍 석방되지 아니하는 한 保護施設에 수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本條의 수용자와 제63조에 따라 선고받은 수용자는 이 장의 규정과 이 편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진 規則을 적용하며, 産業的 그리고 道德的 敎育의 목적상 수용개시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保護施設에 수용된다.

[見習]

제65조 ① (權限) 존경 또는 신망받는 자가 12세를 초과하여 訓練學校에 수용된 少年 또는 소녀산업수용시설에 수용된 少女를 자신의 去來, 職業 또는 家事目的으로 徒弟로 見習시키고자 할 때, 이들이 카나다 制定法에 의하여 발하여진 宣告 또는 命令에 의하여 訓練學校 또는 收容施設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훈련학교 또는 수용시설의 소장은 온타리오 副知事의 동의와 동 수용자를 그들의 동의없이 收容開始時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이 사람에게 委託할 수 있다.

② (釋放) 收容開始時부터 5년의 殘期동안 수용자의 행위가 충실하면 副知事는 수용자가 전조의 學校 또는 收容施設에서 假釋放되어 釋放된 상태로 있을 것을 명할 수 있고, 수용자는 이에 따라 석방된다.

to be good, and such boy or girl shall be discharged accordingly.

Wages

(3) Any wages reserved in any indenture of apprenticeship made under this section shall be payable to such boy or girl, or to some other person for his or her benefit. R.S., c. 217, s.67.

Other Provisions as to Juvenile Offenders

Discharge on probation

66. No boy or girl shall be discharged under section 65, except on probation, as aforesaid, until after the fixed term of his or her sentence has elapsed, unless by the authority of the Governor General. R.S., c.217, s.68.

Child under 14 years

67. Where any child, appearing to the court or justice before whom the child is tried, to be under the age of fourteen years, is convicted of any offence against the law of Canada, whether indictable or punishable on summary conviction, such court or justice, instead of sentencing the child to any imprisonment provided by law in such case, may order that the child shall be committed to the charge of any home for destitute or neglected children, or to the charge of any children's aid society duly organized and approved by the Lieutenant Governor of Ontario, or to any training school. R.S., c.217, s.69.

Boy under 12 years and girl under 13

68. (1) Whenever an information or complaint is laid or made against any boy under the age of twelve years, or any girl under the age of thirteen years, for the commission of an offence against the law of Canada, whether indictable or punishable on summary conviction, the court or justice seized thereof shall give notice thereof in writing to the director of the children's aid society, if there is one in the county, and shall allow him opportunity to investigate the charges made, and may also notify the parents of the child, or either of them, or other person apparently interested in the welfare of the child.

Consultation

(2) The court or justice may advise and counsel with the said officer and with the parents or such other person, and

③ (賃金) 이 조의 見習契約에서 정하여진 賃金은 수용자의 利益을 위하여 당해 수용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青少年犯罪者에 관한 其他 規定]

제66조 (假釋放) 州知事의 權限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느 수용자도 刑期終了前에는 前 제65조에 의하여 석방될 수 없다.

제67조 (14세 미만의 兒童) 審理되고 있는 法院에서 외관상 14세 미만으로 보이는 자가 略式命令에 의하여 起訴가능하거나 처벌될 수 있는 카나다법 위반행위로 有罪가 宣告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 또는 판사는 兒童에게 이 사건에서 법이 정한 收容判決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빈곤아동 또는 遺棄된 아동의 收容所에의 委託 또는 온타리오 州副知事에 따라 정식으로 조직되고 승인된 兒童救助組合에 委託 또는 기타 훈련학교에 수용할 것을 선고할 수 있다.

제68조 ① (12세미만의 少年과 13세미만의 少女) 起訴될 수 있거나 카나다법 위반행위로 略式命令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는 12세미만의 少年 또는 13세미만의 少女에 대하여 通告 또는 起訴가 된 경우에는 係爭 중인 法院 또는 法官은 만일 地區에 있는 경우에 少年保護協會의 관리자에게 통고하고, 訴訟에 대하여 調査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아동의 부모 또는 그중의 1인 또는 兒童의 福祉에 명백히 관계하는 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② (諮問) 法院 또는 法官은 前條의 공무원, 양친 또는 기타 자에게 권고하고 상기의 공무원이 訴訟에 대하여 제출한 報告書를 조사할 수

may consider any report made by the said officer upon the charges.

Powers of judge

(3) Where, after such consultation and advice, and upon consideration of any report so made, and after hearing the matter of information or complaint, the court or justice is of opinion that the public interest and the welfare of the child will be best served thereby, then, instead of committing the child for trial or sentencing the child, as the case may be, the court or justice may, by order,

(a) authorize the said officer to take the child and, under the law of Ontario, bind the child out to some suitable person until the child has attained the age of twenty-one years, or any less age;

(b) place the child in an approved fosterhome;

(c) impose a fine not exceeding ten dollars;

(d) suspend sentence for a definite period or for an indefinite period; or

(e) if the child has been found guilty of the offence charged or is shown to be wilfully wayward and unmanageable, commit the child to a training school, or to the Ontario Reformatory for Boys, or to the Refuge for Girls, as the case may be, and in such cases, the report of the said officer shall be attached to the warrant of commitment. R.S., c.217, s.70.

Law of Ontario to apply

69. Whenever an order has been made under either section 67 or 68, the child may thereafter be dealt with under the law of the Province of Ontario, in the same manner, in all respects, as if such order had been lawfully made in respect of a proceeding instituted under the authority of a statute of the Province of Ontario. R.S., c.217, s.71.

Religion of child to be respected

70. Except in the case of children cared for in a shelter or temporary home established under the Act of the Legislature of the Province of Ontario, passed in the year 1893, entitled *An Act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d better Protection of Children,* in a municipality in which there is only one children's aid society, no Protestant child shall, under section 67, 68 or 69, be committed to the care of any Roman Catholic children's aid society, or be placed in any Roman Catholic family as its foster-home; nor shall any Roman Catholic child,

있다.

③ (法官의 權限) 諮問과 勸告 후 제출된 報告書의 조사 후 通告 또는 訴訟事件의 청문후 法院 또는 法官이 公益과 아동의 福祉上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아동을 起訴하거나 刑을 宣告하지 아니하고 경우에 따라서 법원 또는 법관은 명령으로

1. 상기의 공무원에게 兒童을 引受하고 온타리오법상 아동이 21세 또는 그 이하에 이를 때까지 兒童을 적당한 자에게 委託하고.
2. 承認된 兒童養育院에 아동을 수용하고,
3. 10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罰金을 부과하고,
4. 확정기간 또는 불확정한 기간동안 선고를 연기하고, 또는
5. 兒童이 不順縱하고 통제할 수 없음이 立證되거나 起訴된 犯罪行爲로 유죄임이 발견된 경우에는 아동을 訓練學校 또는 온타리오少年更生院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少女保護施設에 이송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공무원의 報告書가 拘束令狀에 첨부되어야 한다.

제69조 (온타리오法의 適用) 제68조 또는 제69조 따라서 命令이 발하여진 때에 아동은 그 이후에는 동 명령은 온타리오州法에 따라 提訴된 訴訟에 관하여 적법하게 발하여진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온타리오州法에 의하여 다루어질 수 있다.

제70조 (兒童의 宗教尊重) 1개의 아동보호소만이 있는 도시에서는 虐待行爲禁止와 아동보호를 위한 법의 표제하의 1893년 통과된 온타리오州法上 설립된 保護施設 또는 臨時保護所에 수용된 아동의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改新教徒의 아동도 제67조, 제69조, 또는 제69조하에서 가톨릭아동보호소 또는 兒童養育院으로서 카톨릭가정에 수용하여서는 아니된다. 前條의 규정상 가톨릭아동은 개신교아동보호소 또는 아동양육

under the said sections, be committed to the care of any Protestant children's aid society, or be placed in any Protestant family as its foster-home. R.S., c.217, s.72.

Houses of Refuge for Females

Committal of females to house of refuge

71. (1) All females sentenced to, or confined from time to time in any of the common gaols of the Province of Ontario, under sentence of imprisonment by a police magistrate of any city, for any offence against any Act of the Parliament of Canada may be committed to any refuge situated in the county or union of counties, city or town in which such females respectively were convicted, or may be transferred, by order of such police magistrate, from such common gaol to such refuge, to be there respectively imprisoned for the whole or the unexpired portions of the terms of imprisonment for which such females were originally sentenced or committed respectively to such common gaol.

Imprisonment

(2) Such females shall thereupon be imprisoned in such refuges for the whole or the residue of their respective terms of imprisonment, and they are subject to all the rules and regulations of such refuges respectively.

Protestants and Roman Catholics

(3) No Protestant female shall, under this Part, be committed or transferred to a Roman Catholic institution, and no Roman Catholic to a Protestant institution. R.S., c. 217, s. 73.

Transfer to gaols

72. The police magistrate may, from time to time, direct the removal of any such offender from any house of refuge to the common gaol, to which such offender had been originally sentenced, or from which she had been previously removed, or to any other place of imprisonment to which the offender may be removed according to law. R.S., c. 217, s. 74.

Copy of sentence sufficient warrant

73.. Any officer to whom the magistrate's warrant in that behalf is directed, may convey to the house of refuge for females named in his warrant in that behalf, any offender liable to be imprisoned therein, and deliver her to the superintendent without any further warrant than a copy of the sentence or warrant of commitment against such offender from

원으로서 개신교도가정에 수용되어서는 안된다.

[女子保護施設]

제71조 ①(保護施設에 女子收容) 카나다 制定法 위반행위로 市治安判事에 의하여 收容宣告를 받고 온타리오주 一般矯導所에 수용이 선고되었거나 때로는 온타리오주의 일반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여자는 각각 有罪가 宣告된 郡 또는 聯合郡, 大都市 또는 小都市에 위치한 保護所에 수용이 선고될 수 있고, 또는 治安判事의 命令에 의하여 일반교도소에서 보호시설에 이송되어 그가 원래 형이 선고되었거나 일반교도소에 각각 수용된 기간중 전부 또는 잔여기간을 각각 그곳에 수용될 수 있다.

②(收容) 收容者는 이후 각 收容期間의 전부 또는 殘餘期間 保護施設에 수용되어야 하고, 보호시설의 規則과 命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改信教徒와 카톨릭教徒) 이 장에서 여자개신교도는 카톨릭시설에 수용되거나 이송되어서는 안되고, 여자카톨릭교도는 개신교시설에 수용되어서도 아니된다.

제72조(收容施設에서 矯導所로의 移送) 警務治安判事 수시로 犯罪者를 保護施設로부터 범죄자가 원래 형이 선고되었거나 이전에 그곳에서 이송된 일반교도소 또는 범죄자가 법에 따라 收容될 수 있는 기타 수용장소로 이송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제73조(判決文 謄本의 令狀代用) 治安判事의 令狀에 의하여 이에 관하여 지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안에 수용될 수 있는 犯罪者를 영장에 적시된 女子保護施設에 移送할 수 있고 이 여자를 지시되어 있는 矯導官의 署名에 의하여 확인된, 권한이 있는 法院의 그에 대한 判決文의

the proper court in that behalf, certified under the hand of the gaoler to whom the same is directed. R.S., c. 217, s. 75.

Superintendent or gaoler to deliver up prisoners

74. The superintendent of the refuge, or the keeper of any common gaol, having the custody of any offender ordered to be removed from a refuge to a common gaol or other place of imprisonment, or from the common gaol to a refuge, shall, when required to do so, deliver up to the constable or other officer or person who produces the said warrant, the offender named therein, together with a copy certified by him or her, of the warrant of commitment of the offender, or of the copy thereof as given him or her on the reception of the offender into his or her custody. R.S., c. 217, s. 76.

Receipt for prisoners

75. The officer or other person aforesaid shall give a receipt to the said superintendent or gaoler for the offender, and shall thereupon, with all convenient speed, convey and deliver up the offender with the said certified copy of the warrant into the custody of the superintendent of the refuge or keeper of the gaol or other place of imprisonment mentioned in the warrant, who shall give a receipt in writing for every offender so received into his or her custody to such officer or other person as his or her discharge; and the offender shall be kept in custody in the refuge or gaol or other place of imprisonment to which she may have been so removed, until the termination of her sentence or until her pardon or release or discharge by law, unless she is in the meantime again removed under competent authority. R.S., c. 217, s. 77.

Recapture of escaped prisoners

76. Any offender who escapes from any such refuge before her sentence therein has expired, may be again arrested without any warrant by any sheriff, sheriff's bailiff or constable of the county, city, town or village in which she may be found and conveyed to the refuge from which she escaped, or to the county gaol of the county from which she was first removed, and she shall there be confined in such refuge or gaol for the balance of the period of her sentence that remained unexpired at the time of her escape. R.S., c. 217, s. 78.

Consent of superintendent

77. No prisoner shall be committed to any refuge without

謄本 또는 拘束令狀 이외의 다른 謄本없이 所長에게 인도할 수 있다.

제74조 (收容者를 引渡하는 所長 또는 矯導官) 保護施設에서 一般矯導所 기타 수용장소 또는 일반교도소에서 보호시설로 이송이 명하여진 범죄자를 수용하고 있는 保護施設의 長 또는 일반교도소의 矯導官은 경찰관, 기타 공무원 또는 상기의 令狀을 提示하는 자에게 그에 의하여 확인된 拘束令狀의 등본 또는 계호하고 있는 범죄자를 인수하면서 받은 令狀의 謄本과 함께 영장에 기재된 범죄자를 인도하여야 한다.

제75조 (收容者의 引受) 公務員 또는 기타 前條의 자는 前條의 所長 또는 교도관에게 犯罪者引受證을 주어야 하고, 영장의 상기의 확인된 謄本과 함께 범죄자를 保護施設의 장 또는 교도소 기타 令狀에 기재된 收容場所의 교도관의 계호아래 이송하고 인도하여야 한다. 소장 또는 교도관은 석방을 위하여 공무원 기타 자의 戒護아래 인수한 범죄자에 대한 引受證을 주어야 한다. 범죄자는 適法한 權限에 의하여 중도에 다시 석방되지 아니하는 한 刑의 滿了時까지 또는 法律에 의하여 赦免, 假釋放 또는 釋放될 때까지 이와같이 이송된 보호시설 또는 교도소 기타 수용장소에서 收容되어야 한다.

제76조 (逃走한 收容者의 逮捕) 宣告期間이 종료하기 전에 그 收容施設로부터 도주한 범죄자는 그가 발견된 郡, 大都市, 小都市 또는 地方의 保安官, 保安官의 執行官 또는 警察官에 의하여 영장없이 다시 체포되어 그가 도주한 保護所 또는 처음 移送되기 전의 郡의 郡矯導所로 이송할 수 있다. 그는 이 보호소 또는 교도소에서 逃走時에 미경과한 宣告期間동안 수용된다.

제77조 (所長의 同意) 收容者는 所長의 동의없이 保護施設에 이송될

the consent of the superintendent thereof in that behalf. R.S., c. 217, s. 79.

PART III. QUEBEC

Application of Part

Quebec

78. This Part applies only to the Province of Quebec. R.S., c. 217, s. 80.

Reformatory Schools for Boys

Offenders under 16 years

79. Every person apparently under the age of sixteen years, who is convicted before any court of criminal jurisdiction or before any judge of the sessions of the peace, recorder, district or police magistrate, of any offence for which he would be liable to imprisonment, may be sentenced, on such conviction, to be detained in a certified reformatory school for any term not less than two years and not more than five years, or he may be sentenced to be first imprisoned in the common gaol for a term not in any case exceeding three months, and at the expiration of his sentence, to be sent to a certified reformatory school, and to be there detained for a term of not less than two years and not more than five years. R.S., c. 217, s. 81.

Power to discharge

80. The Lieutenant Governor may, at any time in his discretion, order that any offender detained in such reformatory school, under a summary conviction, be discharged. R.S., c. 217, s. 82.

Detention previous to trial

81. (1) A person apparently under the age of sixteen years, arrested on a charge of having committed any offence not capital shall not, while awaiting trial for such offence be detained in any common gaol, if there is a certified reformatory school within three miles of such gaol, but shall be detained in such reformatory school while awaiting trial.

수 없다.

제3장 퀘 벡

[適用]

제78조 (퀘벡) 이 장은 퀘벡州에만 적용된다.

[少年感化院]

제79조 (16세 미만의 犯罪者) 拘禁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刑事管轄法院, 巡廻法院判事 또는 治安判事에 의하여 외견상 16세미만의 자는 2년 이상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公認된 感化院에 수용이 宣告될 수 있고, 또는 어느 경우에는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一般矯導所에 먼저 수용될 수 있고, 刑의 終了時에 公認된 感化院에 이송되어 2년이상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그곳에 수용될 수 있다.

제80조 (釋放權限) 副知事는 어느 때라도 裁量으로 感化院에 수용된 범죄자의 석방을 略式命令에 의하여 명할 수 있다.

제81조 ① (審理前의 收容) 死刑에 처할 만한 犯罪가 아닌 犯罪行爲로 체포되어 起訴된 외견상 16세미만의 자는 동 범죄행위로 審理를 기다리는 동안 교도소의 3마일 이내에 公認된 感化院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교도소에 수용하여서는 안되고 審理를 기다리는 동안 感化院에 수용되어야 한다.

Nearest reformatory school

(2) If there is more than one such school within such distance, the person so charged shall be detained in the one that is conducted most nearly in accordance with the religious belief to which his parents belong, or in which he has been educated. R.S., c. 217, s. 83.

Punishment for breaking the rules

82. (1) Every offender detained in a certified reformatory school, who wilfully neglects or refuses to conform to the rules thereof, shall, on summary conviction before a justice of the peace having jurisdiction in the place or district in which the school is situated, be imprisoned with hard labour, for any term not exceeding three months.

Return to school

(2) At the expiration of the term of his imprisonment, he shall, by and at the expense of the managers of the school, be brought back to the school from which he was taken, there to be detained during a period equal to so much of his period of detention as remained unexpired at the time of his being sent to the prison. R.S., c. 217, s. 84.

Reformatory Prisons for Females

Establishment of reformatory prisons

83. Whenever the Lieutenant Governor of the Province of Quebec has declared, by proclamation published in the official gazette of the Province, that suitable arrangements have been made in any district in the Province, for the detention and proper government and discipline of female convicts in any separate building or separate portion of the common gaol in such district, as a reformatory prison for such convicts, and has, by such proclamation, declared that such separate building or portion of a common gaol shall be a reformatory prison for the purposes hereof, any female person convicted in the said Province of any offence, not capital, and for which she would without this Part, be punishable by imprisonment for any term not less than two years, but not exceeding seven years, shall be punishable by imprisonment in the female reformatory prison for any term less than seven, but not less than five years, and she may be sentenced to such imprisonment accordingly, although she would not be liable to imprisonment in the penitentiary for so long a term as that for

② (가장 가까운 感化院) 지역내에 1개 이상의 학교가 있으면 起訴된 자는 父母의 宗教的 信念과 가장 합치되어 관리되거나 그가 교육을 받은 학교에 수용되어야 한다.

제82조 ① (規則違反에 대한 處罰) 感化院의 規則의 준수를 惡意로 태만히 하거나 거부한 公認된 感化院에 수용된 범죄자는 감화원이 위치한 場所 또는 地區에서 管轄權을 가지는 치안판사 面前에서의 略式命令에 의하여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强制勞役을 과하여 수용될 수 있다.

② (感化院에 復歸) 收容期間 만료시 感化院長의 費用으로 수용자는 교도소에 이송될 당시에 만료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동안 그곳에 수용을 위하여 원래 이송되었던 감화원으로 再移送될 수 있다.

[女子保護所]

제83조 ① (女子保護所의 設立) 퀘벡주 副知事가 州官報에 州안에 女受刑者를 위한 保護所로서 지구내에 일반교도소와 독립된 건물 또는 부속된 건물에 수용하고 적절히 管理·規律하기 위한 적당한 시설이 설치되었음과, 동 일반교도소와 독립된 건물 또는 부속된 건물이 동 목적을 위한 保護所임을 告示한 때에는 死刑에 처할만한 범죄가 아닌 犯罪行爲로 유죄가 선고되고, 이 편이 없으면 2년이상 7년미만의 기간동안 처벌받을 여자는 5년이상 7년미만 수용이 선고되어야 하고, 女保護所에 수용이 선고될 수 있는 기간동안 感化院에 수용이 선고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收容宣告가 내려질 수 있다.

which she may be so sentenced to imprisonment in the female reformatory prison. R.S., c. 217, s. 85.

Committal by consent in certain cases

84. (1) Where, after such proclamation, any female is convicted of any indictable offence punishable by imprisonment for any term less than two years, or of being a loose, idle or disorderly person or vagrant under the *Criminal Code,* then, unless it is proved that she has been previously convicted and imprisoned twice or oftener as aforesaid, such convict shall be asked, by the judge, recorder, judge of the sessions of the peace, commissioner of police, district police, or stipendiary magistrate, mayor, warden or the two justices of the peace, or other functionary before whom the conviction is had, whether she consents, instead of the imprisonment to which she is otherwise liable, to be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a term of five years in the female reformatory prison.

If no consent

(2) If she refuses to give such consent, sentence shall be passed upon her as if this Part had not been passed, but if she gives such consent, or it is proved that she has been twice convicted as aforesaid, the fact shall be duly recorded or entered on the proceedings in the case, and she shall be sentenced accordingly to imprisonment in the female reformatory prison for a term of five years. R.S., c. 217, s. 86.

In what prison sentence is carried out

85. Where, at the time of the passing of any such sentence, there is more than one female reformatory prison in the Province, the imprisonment under such sentence shall be in that one of such reformatory prisons that is in the same district as the place at which the sentence is passed, or if there is no reformatory prison in such district, then in the reformatory prison nearest to such place; but if there is not more than one such reformatory prison in the Province, then such imprisonment shall be in it. R.S., c. 217, s. 87.

Such prison a house of correction

86. Each such female reformatory prison as aforesaid, is a house of correction and a public reformatory prison, within the meaning of the sixth enumeration of section 92 of the *British North America* Act, 1867, and subject to such laws as the Legislature of the Province makes with respect to the establishment, maintenance and management thereof. R.S., c.

제84조 ①(同意에 의한 收容의 경우) 告示 후 여자가 2년미만 수용에 처하여 질 수 있는 起訴 가능한 犯罪行爲 또는 형법상 방종, 나태, 난폭 또는 부랑 등으로 有罪決定을 받는 경우, 이전에 유죄가 선고되었거나 2번 또는 상기와 같이 자주 수용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되는 한, 法官, 市裁判官, 治安判事, 法院判事, 경찰국장, 지구경찰 또는 유급치안판사, 市長, 矯導官 또는 사건을 관할하는 공무원은 그녀가 본래 받아야 할 징역 대신에 5년 간 女子保護所에의 수용을 받기로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물어야 한다.

②(同意하지 않은 경우) 그가 同意를 거절하면 이 장이 없었던 것처럼 선고가 되어야 하고, 동의를 하거나 상기와 같이 2회 有罪가 宣告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실이 訴訟節次에 기록되어야 하고, 따라서 5년동안 女子保護所에 수용이 선고되어야 한다.

제85조 (刑이 執行되는 矯導所) 宣告時에 州내에 2개 이상의 여자보호소가 있는 경우에는 宣告 장소와 동일한 地區에 있는 保護所들 중 하나에 수용되어야 하고, 이 地區에 保護所가 없는 경우에는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보호소에 수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州내에 하나의 보호소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곳에 수용되어야 한다.

제86조 (保護矯導所) 前條의 女子保護所는 矯導所이고, 1867년 英領 북아메리카법의 제92조의 6항내의 公共保護所이고 州議會가 그 설치, 유지 및 관리에 관하여 정한 법이 적용된다.

217, s. 88.

Employment of Prisoners

Hard labour inside or outside the walls

87. (1) Every sheriff or gaoler in the Province of Quebec, being thereunto authorized by the Lieutenant Governor, or in such manner as any Act of the Legislature of the Province provides, and under such regulations as the Legislature makes or authorizes to be made in that behalf, may employ any male convict sentenced to hard labour in such prison, at hard labour outside the walls or precincts of the prison, and may exercise the same powers of restraint and discipline, and for preventing escape, while the convict is so outside the walls or precincts, as if he were inside the same, and whether his labour is so employed directly by the Government of the Province or by any contractor to whom such labour is let or hired out by the Government, or by any competent authority.

Included in sentence

(2) The sentence of any such male convict shall be understood to include such employment as aforesaid.

Computation of time served

(3) Any time during which a convict is so employed shall be reckoned as part of the term for which he was sentenced to be confined in such prison. R.S., c. 217, s. 89.

Common Gaols

Houses of correction

88. Every common gaol shall be a house of correction, reformatory prison and place of detention. R.S., c. 217, s. 90.

PART IV. NOVA SCOTIA

Application of Part

Nova Scotia

89. This Part applies only to the Province of Nova Scotia. R.S., c. 217, s. 91.

[受刑者의 勞役]

제87조 ①（矯導所내 또는 施設外 重勞動） 副知事로부터 權限이 부여되거나 州議會法이 정하는 方式 또는 의회가 권한을 부여하거나 制定한 명령하에 있는 퀘벡주의 保安官 또는 矯導官은 교도소내·외에서 重勞動이 선고된 남자수형자를 勞役시킬 수 있고, 수형자가 교도소외에 있는 경우에도 矯導所 내와 동일하게 制限하고 規律하는 權限과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노동은 州政府에 의하여 직접 勞役되거나 정부 또는 권한있는 機關, 雇傭契約을 한 계약자에 의하여 勞役될 수 있다.

②（宣告에 포함） 남자수형자의 宣告는 前條의 勞役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③（受刑期間에의 算入） 수형자의 勞役期間은 교도소 受刑期間에 산입되어야 한다.

[一般矯導所]

제88조（矯正施設） 모든 일반교도소는 矯正施設, 保護所 그리고 拘禁場所이어야 한다.

제4장 노바 스코티아

[適用]

제89조（노바 스코티아） 이 장은 노바 스코티아州에만 적용된다

Interpretation

Definitions "child"

90. (1) In this Part

"child" means a child as defined by section 2 of the *Juvenile Delinquents Act;*

"reformatory institution"

"reformatory institution" means any one of the following:

(a) the Maritime Home for Girls, at Truro,

(b) the Good Shepherd Industrial Refuge, at Halifax,

(c) the Halifax Industrial School, at Halifax,

(d) St. Patrick's Home, at Halifax,

(e) the Nova Scotia School for Boys.

Child sentenced to reformatory

(2) Where any child is convicted of an offence against the laws of Canada for which a sentence of imprisonment may be imposed upon an adult convicted of a like offence, the court or magistrate before which the child is convicted may sentence such child to be imprisoned in a reformatory institution for such fixed term, not less than three months nor more than three years, as the court or magistrate thinks fit.

Religious faith of child to be ascertained

(3) Every court or magistrate before whom any such child is convicted before passing sentence upon such child shall make due inquiries to ascertain the religious denomination to which the child belongs; and no child of the Protestant faith shall be sentenced to any Roman Catholic institution and no child of the Roman Catholic faith shall be sentenced to any Protestant institution.

Reformatories for Roman Catholic and Protestant children

(4) Girls of the Protestant faith shall be sentenced to the Maritime Home for Girls at Truro and girls of the Roman Catholic faith shall be sentenced to the Good Shepherd Industrial Refuge at Halifax; boys of the Protestant faith shall be sentenced to the Halifax Industrial School at Halifax or the Nova Scotia School for Boys and boys of the Roman Catholic faith shall be sentenced to St. Patrick's Home at Halifax or to the Nova Scotia School for Boys.

Child sentenced to prison or gaol

(5) Where any child is convicted in Nova Scotia of an offence against the laws of Canada and is sentenced and committed to prison or to the county gaol, any judge of the Supreme Court of Nova Scotia in any case occurring within the Province, or any judge of the county court in any case occurring within his district, may summarily examine and inquire

[解釋]

제90조 定義 ① (兒童) 이 장에서 兒童이라 함은 青少年犯罪者法 제2조에 정의된 아동을 의미한다.

(保護施設) 保護施設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트루노에 있는 소녀해양훈련원
2. 핼리팩스에 있는 그리스도재활원
3. 핼리팩스에 있는 핼리팩스산업학교
4. 핼리팩스에 있는 성패트릭훈련원

② (更生院에 收容이 宣告된 兒童) 兒童이 동일한 犯罪行爲를 범한 成人에게 收容宣告를 할 수 있는 카나다법 위반행위로 유죄가 선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아동을 심리하는 법원 또는 치안판사는 3월이상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확정된 기간동안 보호시설에 수용을 선고할 수 있다.

③ (兒童의 宗教確認) 유죄가 선고될 수 있는 兒童을 審理하는 법원 또는 치안판사는 아동에게 선고를 하기 전에 아동이 속한 宗教의 종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改新教徒인 兒童은 가톨릭시설에의 수용이 선고될 수 없고 카톨릭교도인 아동은 改新教施設에 수용이 선고될 수 없다.

④ (카톨릭教徒와 改新教導東童을 위한 更生院) 개신교신앙을 가진 소녀는 트루노에 있는 少女海洋訓練院에 이송되어야 하고 카톨릭신앙을 가진 소년은 핼리팩스에 있는 그리스도재활원에 이송되어야 한다. 改新教信仰을 가진 소년은 핼리팩스에 있는 핼리팩스산업학교 또는 노바 스코티아소년학교에 이송되어야 하고 카톨릭신앙을 가진 소년은 핼리팩스에 있는 성패트릭훈련원 또는 노바 스코티아소년학교에 이송되어야 한다.

⑤ (矯導所에 收容이 宣告된 兒童) 아동이 카나다법 違反行爲로 노바 스코티아에서 有罪가 宣告되어 교도소 또는 지구교도소에 수용된 경우

into the circumstances of such conviction, and may quash the sentence to the said prison or county gaol, and in substitution thereof sentence the child under this section.

Sentence to be served in reformatory institution

(6) Every child sentenced under this section shall be detained in a reformatory institution until the expiration of the fixed term of the child's sentence, unless sooner discharged by lawful authority, and every child after having served such fixed term shall, subject to the laws and regulations enacted by the Legislature of the Province of Nova Scotia governing reformatory institutions, be detained for an indefinite period not to exceed three years from the commencement of the child's imprisonment in the said reformatory institution.

Apprenticeship

(7) If any responsible and trustworthy person is willing to undertake the charge of any child committed to a reformatory institution under this section, the superintendent of such reformatory institution may, with the consent and approval of the Superintendent of Neglected and Delinquent Children for the Province of Nova Scotia, indenture the child to such person for any term not to extend beyond the time when the child reaches the age of twenty-one years.

After 3 years

(8) Every child sentenced to a reformatory institution shall within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the child's reception in such reformatory institution, unless discharged under this section, be given over to the custody of the child's parents or guardians or be placed in a foster home under indenture for any term not to extend beyond the time when such child reaches the age of twenty-one years, as the superintendent of such reformatory institution with the consent of the Superintendent of Neglected and Delinquent Children for the Province of Nova Scotia, may deem advisable.

Child may be returned to reformatory institution

(9) After a child has been so given over to the custody of the child's parents or guardians or has been placed in a foster home under indenture not to extend beyond the time when the child reaches the age of twenty-one years, the Superintendent of Neglected and Delinquent Children for the Province of Nova Scotia may, if he deems it in the interest of the child, order the child to be returned to such reformatory institution, there to be detained for any indefinite period; but the total period of confinement for the child in such reformatory institution shall not exceed five years.

에는 州內에서 발생한 사건을 審理하는 노바 스코티아 大法院의 法官 또는 지구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審理하는 地區法院의 법관은 약식으로 有罪宣告事實을 조사하고 상기의 교도소 또는 지구교도소에의 수용선고를 破棄하고 이 선고를 대신하여 아동에게 이 조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⑥ (保護施設에서 아동의 收容期間) 이 조에 따라 宣告된 아동은 이전에 적법한 權限있는 자에 의하여 釋放되지 아니하는 한 확정된 아동의 宣告期間의 종료시까지 保護施設에 수용되고, 그 확정기간을 服役한 후에 아동은 노바 스코티아주의 立法府가 保護施設에 관하여 제정한 法律과 命令에 따라 아동의 상기의 保護施設에의 수용개시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불확정한 기간동안 수용되어야 한다.

⑦ (見習) 책임있고 신용있는 자가 이 조에 의하여 保護施設에 수용된 아동을 委託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 보호시설의 장은 노바 스코티아주의 遺棄되고 非行를 범한 아동의 관리자는 아동이 21세에 도달하는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아동을 이 자에게 見習로 위탁할 수 있다.

⑧ (3년후) 保護施設에 收容이 선고된 아동은 保護施設에 수용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아동의 부모 또는 後見人에게 保護委託하거나 노바 스코티아주에 遺棄되고 非行을 범한 兒童管理者의 동의하에 보호시설의 소장이 勸告할 수 있는 때에는 아동이 21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보호시설에 수용되어야 한다.

⑨ (兒童의 保護施設에의 復歸) 아동이 부모 또는 後見人에게 保護委託되거나 아동이 21세에 달하는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保護施設에 위탁된 후에 노바 스코티아주의 遺棄되고 非行을 범한 兒童管理者는 아동의 利益이라고 판단한 때에는 아동을 보호시설에 수용하여 그곳에서 不確定한 기간동안 수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보호시설에 아동의 全收容期間은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Discharge on probation upon being apprenticed

(10) The Superintendent of Neglected and Delinquent Children for the Province of Nova Scotia shall thereupon order that such child be discharged from such reformatory institution on probation, to remain so discharged provided the child's conduct during the term of said indenture continues to be good, and such child shall be discharged accordingly, subject, however, to be returned on an order of the Superintendent of Neglected and Delinquent Children for the Province of Nova Scotia to such reformatory institution for an indefinite period; but the total period of confinement in a reformatory institution shall not exceed five years.

Payment of wages

(11) Any wages reserved in any indenture under this section shall be paid to such child or to some person for such child's benefit.

Penalty for counselling, etc., child to leave

(12) Any person who induces or attempts to induce, aids, assists, abets, counsels or procures any child to leave the person with whom such child is placed under this section, is liable on summary conviction to a penalty not exceeding one hundred dollars, or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six months.

Authority for discharge

(13) No child shall be discharged from a reformatory institution until the expiration of the fixed term of the child's sentence except under this section, unless by authority of the Governor General.

Supervision of child after discharge

(14) The Superintendent of Neglected and Delinquent Children for the Province of Nova Scotia shall, subject to the laws of the Province of Nova Scotia, exercise and maintain supervision over every child after the child's discharge from a reformatory institution under this section.

Escape

(15) Where a child sentenced to a reformatory institution under this section escapes from such reformatory institution the child may at any time be apprehended without warrant and brought back to such reformatory institution there to be detained under the original commitment.

Abetting escape

(16) Every person who aids, assists or abets any child in such escape is liable on summary conviction to a penalty not exceeding one hundred dollars or to imprisonment for a period not to exceed six months.

⑩ (假釋放) 노바 스코티아주에 遺棄되고 非行을 범한 아동관리자는 상기의 委託期間동안 아동의 행위가 계속 善良할 것을 조건으로 석방된 상태로 있게 하기 위하여 保護施設로부터 석방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 아동은 노바 스코티아주의 유기되고 비행을 범한 兒童의 管理者의 명령에 의하여 재수용되지 아니하는 한 석방된다. 그러나 이 保護所에서의 전수용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⑪ (賃金의 支給) 이 조에 따른 見習契約에서 정하여진 賃金은 兒童 또는 아동을 代理하는 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⑫ (아동의 逃走援助에 대한 制裁) 이 조에 의하여 委託된 아동과 함께 도주하기 위하여 아동을 誘因·幇助·助言하거나 초래한 자는 略式命令으로 100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罰金 또는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拘禁할 수 있다.

⑬ (釋放權限) 이 조를 제외하고 州知事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아동의 宣告確定期間 만료전에는 保護施設에서 석방되어서는 아니된다.

⑭ (釋放후 아동의 監督) 노바 스코티아주에 遺棄되고 非行을 범한 아동관리자는 노바 스코티아주의 법에 따라 이 조에 의한 保護施設로부터 아동의 釋放후 모든 아동에 대한 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⑮ (逃走) 이 條에 의하여 收容施設에 수용된 아동이 保護施設에서 도주한 경우에는 아동은 어느 때라도 令狀없이 逮捕하여 본래 拘禁을 위한 保護施設에 再收容할 수 있다.

⑯ (逃走敎唆) 兒童의 逃走를 援助·幇助·敎唆한 자는 略式命令으로 100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罰金 또는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收容할 수 있다.

Laws regulating reformatory institutions

(17) Reformatory institutions mentioned in this section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enacted by the Legislature of Nova Scotia respecting such reformatory institutions.

Form of commitment

(18) The form set out in Schedule I for commitment to reformatory institutions under this section may be used for the purpose thereof, or forms of a like effect, and when in use are good and sufficient for such purposes in law.

Transfer of boys from one institution to another

(19) The Attorney General for Nova Scotia may order the person in charge of any reformatory institution to transfer any boy detained therein pursuant to this section to any other reformatory institution to which a boy may be sentenced under this section; but no boy of the Protestant faith shall be transferred to St. Patrick's Home and no boy of the Roman Catholic faith shall be transferred to the Halifax Industrial School; the order of the Attorney General is sufficient authority to the persons in charge of such reformatory institutions and their agents to transfer the boy and detain him according to the exigencies of his sentence and this section and he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sentenced to the reformatory institution to which he has been so transferred. R.S., c.217, s.92.

Inspection

91. The Industrial School shall, at all times, be open to inspection by the mayor and aldermen and the stipendiary magistrate of the city of Halifax, or any of them. R.S., c. 217, s. 93.

Boys educated and taught trades

92. The Committee of the Industrial School are bound to teach and instruct each boy so sentenced and detained as aforesaid, in reading and writing, and in arithmetic as far as the rule of three, and also to teach each such boy such one of the trades or occupations that are, from time to time, taught in the school, as the Committee deems most adapted to his capabilities. R.S., c. 217, s. 94.

Refusal of prisoners

93. (1) The Superintendent of the Home may at any time notify the mayor, warden or other chief magistrate of any municipality that no prisoners, beyond those already under sentence in the Home, will be received therein.

⑰ (保護施設을 規制하는 法規) 이 조에서 설명된 보호시설은 保護施設에 관하여 노바 스코티아 立法機関이 제정한 法規에 따라 규율되어야 한다.

⑱ (拘禁令狀의 形式) 이 조에 의한 保護施設에 수용을 위하여 附則 Ⅰ에 規定된 形式은 그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고, 이에 상당한 형식은 그것이 사용된 때에 법률상 목적을 위하여 유효하고 충분하다.

⑲ (한 施設에서 다른 施設로의 移送) 노바 스코티아 法務部長官은 保護施設을 管理하고 있는 자에게 이 조에 따라 收容된 少年을 소년이 이 조에 의하여 수용될 수 있는 다른 保護施設로의 移送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改新教信仰을 가진 소년은 성패트릭양육원에 이송되어서는 안되고 카톨릭신앙을 가진 소년은 핼리팩스산업훈련원에 이송되어서는 안된다. 法務部長官의 命令은 이 보호시설을 관리하는 자 그리고 그 代理人이 소년을 移送하고, 선고와 同 條의 要件에 따라 그를 수용하기 위한 충분한 權限이 있고 移送된 保護施設에의 수용이 선고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91조 (調査) 市長, 副市長, 그리고 핼리팩스 有給治安判事 또는 이들 중 누구라도 어느 때라도 産業訓練院을 조사할 수 있다.

제92조 (少年教育과 職業教育) 산업훈련소위원회는 前條의 형이 선고되어 수용된 아동에게 읽기, 쓰기 그리고 산수를 比例法까지 교육하여야 하고 또한 委員會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학교에서 교육되는 직업중 하나를 교육하여야 한다.

제93조 ① (收容拒否) 성패트릭훈련원의 원장은 어느 때라도 市長, 道知事 또는 기타 수석행정관에게 訓練院에 이미 수용된 자를 제외하고 더 이상 수형자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겠다고 通告할 수 있다.

No sentences until further notice

(2) After such notification no boy shall be sentenced in such municipality to be detained in the Home until notice has been received by such mayor, warden or chief magistrate, from the Superintendent, that prisoners will again be received in the Home. R.S., c. 217, s. 95.

Inspection

94. The Home shall, at all times, be open to inspection by any officer appointed by the Governor in Council to inspect the same, and, when and so long as any pecuniary aid is received from the city of Halifax, it shall be open to inspection by the mayor, aldermen and stipendiary magistrate of the city, or any of them. R.S., c. 217, s. 96.

Boys educated and taught trades

95. The governing body of the Home is bound to teach and instruct each boy so sentenced and detained as aforesaid in reading and writing, and in arithmetic to the end of the rule of three, and also to teach each such boy such one of the trades or occupations that are, from time to time, taught in the Home, as such governing body deems most adapted to his capabilities. R.S., c. 217, s. 97.

Licence to be at large

96. (1) Where any boy so sentenced and detained in the Home has, in the opinion of the governing body of the Home, so conducted himself during a term of six consecutive months by good behaviour, diligence and industry as to warrant his being set at large and no longer detained in the Home, the Solicitor General of Canada, or such person as he appoints to issue such licences, may issue a licence to such boy to be at large in the Province of Nova Scotia, or in such part thereof as is specified in the licence.

Revocation

(2) The licence may be revoked or altered at pleasure by the Solicitor General, or by such person as he appoints as aforesaid.

Regulations

(3) The Solicitor General may make such regulations as he sees fit as to the form of such licences, and conditions of enjoyment and forfeiture thereof, and for ascertaining that the conditions are duly complied with.

If licence contravened

(4) Upon information on oath that the holder of any such licence has contravened any of the conditions thereof, the police court or stipendiary magistrate of the city of Halifax

② (새로운 通告까지 收容不能) 이 通告 후에는 市長, 道知事 또는 首席行政官이 院長으로부터 성패트릭훈련원에 다시 수형자를 받아들이겠다는 통고를 받을 때까지는 어느 소년도 訓練院에 수용이 선고될 수 없다.

제94조 (調査) 道知事로부터 성패트릭양육원을 調査하기 위하여 任命된 공무원은 어느 때라도 그를 방문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시설이 金錢上의 支援을 받는 때 그리고 그 한에는 市長, 副市長, 유급치안판사, 그들중 누구라도 조사를 할 수 있다.

제95조 (少年敎育과 職業敎育) 성패트릭양육원의 원장은 형이 선고되어 前條와 같이 收容된 少年에게 읽기, 쓰기, 그리고 比例法까지의 算術을 교육하여야 하고 또한 管理者는 소년의 능력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양육원에서 수시로 교육되고 있는 직업중 하나를 그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제96조 ① (釋放許可) 성패트릭양육원의 원장은 그곳에 수용된 소년이 6월동안 계속 善行·勤勉·努力하여 행동하였고, 석방되어 시설에 더 이상 수용되지 아니해도 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카나다 檢察總長 또는 검찰총장이 임명한 자는 이 소년에게 노바 스코티아州에서의 또는 허가서에서 특정한 이 州의 特定地域에서의 석방허가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取消) 검찰총장 또는 前項과 같이 檢察總長에 의하여 任命된 자는 임의로 동 허가를 取消 또는 變更할 수 있다.

③ (命令) 檢察總長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規制方法으로 許可證의 形式, 享有하기 위한 條件, 失效條件 그리고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④ (許可의 違反) 許可證의 所持者가 그에 관한 조건중 하나를 위반

may issue a warrant for his arrest, wherever in Canada he may be, and cause him to be brought before such court or magistrate, and upon conviction of such contravention, shall remand him to the Home, there to serve the remainder of his original sentence, with such additional term, not exceeding one year, as to the court or magistrate seems proper. R.S., c.217, s.98; 1966-67, c. 25, s. 37.

Good Shepherd Reformatory for Females

Roman Catholic females over 16 sentenced to reformatory

97. Every judge, stipendiary magistrate or magistrate in the Province before whom any female person being a Roman Catholic above the age of sixteen is convicted of an offence against the law of Canada, punishable by imprisonment in a city prison or common gaol for the term of two months or for any longer time, may sentence such female person to an extended or substituted imprisonment in the Good Shepherd Reformatory at Halifax, subject to the following conditions:

(a) if such female person is under the age of twenty-one years, such extended imprisonment may be until she attains the age of twenty-one years or for any shorter or longer term, not less than two and not more in the whole than four years; and

(b) if such female person is of the age of twenty-one years or upwards, such extended imprisonment may be for any term not less than one year and not more than two years. R.S., c. 217, s. 99.

Where sentenced to prison or gaol

98. Where any female person who is a Roman Catholic is convicted in Nova Scotia of an offence against the law of Canada, and is sentenced and committed to a city prison or common gaol, any judge of the Supreme Court of Nova Scotia in any case arising in the Province of Nova Scotia, or any judge of a County Court in any case arising within his county or district, may summarily examine and inquire into the circumstances of such conviction, and may quash sentence to the city prison or common gaol, and in substitution thereof sentence such female person under section 97. R.S., c. 217, s. 100.

하였음을 宣誓로 통고받은 즉시 경찰, 법원 또는 핼리팩스시의 有給治安判事는 그가 카나다 어디에 있든지 逮捕令狀을 발할 수 있고, 법원 또는 치안판사앞에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위반에 대한 有罪宣告時에는 원래 수용기간의 나머지와 함께 법원 또는 치안판사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附加期間동안 그 자를 再收容하여야 한다.

[그리스도女子更生院]

제97조 (16세를 초과한 여자카톨릭신자의 更生院에의 收容) 카나다법 違反行爲로 2월 또는 그 이상 市矯導所 또는 일반교도소에 수용될 수 있는 16세를 초과한 여자카톨릭신자를 審理하는 法官, 유급치안판사 또는 州의 치안판사는 여자를 이하의 조건에 따라 핼리팩스에 있는 그리스도갱생원에 延長收容 또는 代替收容을 명할 수 있다.

① 여자가 21세미만의 경우에는 이 延長收容은 21세에 이를 때까지 또는 2년이상 총 4년이하의 기간동안 이 보다 短期 또는 長期間 일 수 있다.

② 여자가 21세 또는 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수용은 1년이상 2년이하일 수 있다.

제98조 (矯導所에 收容이 宣告된 경우) 카톨릭신자인 여자가 노바 스코티아에서 카나다법 違反行爲로 有罪를 선고받고 市矯導所 또는 일반교도소에 수용된 경우에는 노바 스코티아주에서 발생하는 사건에서는 노바 스코티아 大法院의 법관, 군 또는 지구에서 발생하는 사건에서 郡法院의 法官은 이 선고의 상황을 조사할 수 있고, 市矯導所 또는 일반교도소에의 宣告를 無效로 할 수 있고 이에 代替하여 제97조에 따른 여자의 수용을 선고할 수 있다.

Certain offences

99. (1) Any female Roman Catholic, convicted under the *Criminal Code* of being a loose, idle or disorderly person or vagrant, or convicted of an offence under the sections thereof relating to the summary trial of indictable offences, may be sentenced to the Reformatory for any term less than two years.

No fine

(2) If any term exceeding six months is imposed, no fine shall be imposed in addition. R.S., c. 217, s. 101.

Copy of sentence sufficient warrant

100. Any officer appointed by the Lieutenant Governor, or other officer or person, by his direction or by direction of the judge, stipendiary magistrate, magistrate or other lawful authority, may convey to the Reformatory any convict sentenced, or liable to be imprisoned therein, and deliver her to the Superintendent, without any further warrant than a copy of the sentence, taken from the minutes of the court before which the offender was tried and certified by a judge, magistrate or justice, or the clerk or acting clerk of such court. R.S., c. 217, s. 102.

Conditions of reception and detention

101. Subject to the provisions hereinafter contained, the Superintendent of the Reformatory shall receive into the Reformatory every offender legally certified to her as sentenced to imprisonment therein, and shall there detain her, subject to all the rules, regulations and discipline thereof, until the term for which she has been sentenced is completed, or until she is otherwise discharged in due course of law. R.S., c. 217, s. 103.

Transfer from Reformatory to prison

102. The Lieutenant Governor may, from time to time, by warrant signed by the Provincial Secretary, or by such other officer as is authorized by the Lieutenant Governor in that behalf, direct the removal from the Reformatory back to the city prison or common gaol, or to any other gaol in Nova Scotia, of any person removed to the Reformatory under this Part. R.S., c. 217, s. 104.

Delivery of offender by Superintendent

103. The Superintendent of the Reformatory, or the keeper of a city prison or common gaol, having the custody of any offender ordered to be removed, shall, when required to

제99조 ①(特定한 犯罪行爲) 刑法上 방종, 나태 또는 난폭, 부랑자로 起訴되거나 범죄행위의 略式審理에 관한 條文에 의하여 有罪가 선고된 여자카톨릭신자는 2년미만 保護所에 이 수용이 선고될 수 있다.
②(罰金併科禁止) 6월을 초과하는 기간이 부과된 경우에는 罰金이 병과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00조 (判決文의 謄本은 충분한 令狀임) 副知事가 임명한 公務員 또는 副知事의 지휘아래 있거나 기타 法官의 지휘아래 있는 공무원 또는 사람, 有給治安判事, 名譽治安判事 또는 기타 권한있는 관청은 수용이 선고되거나 수용이 선고될 수 있는 여자범죄자를, 범죄자를 審理한 法院의 法官, 치안판사 또는 명예치안판사, 서기 또는 法院의 書記로 행위하는 자가 확인한 判決文의 謄本 이외의 다른 영장이 없이 移送하여 소장에게 인도할 수 있다.

제101조 (引受條件과 收容) 이하의 규정에 따라 更生院의 원장은 그곳에 수용이 선고된 것으로 法律上 확인되어 更生院에 인도된 여자 犯罪者를 인수하여 선고된 기간이 종료하거나 適法節次에 따라 釋放될 때까지 이에 관한 規則, 規定 그리고 規律에 따라 그곳에 수용하여야 한다.

제102조 (更生院에서 矯導所로의 移送) 副知事는 수시로 州의 長官 또는 副知事로부터 이에 관한 권한을 받은 기타 공무원이 署名한 令狀에 의하여 이 편에 의하여 移送된 자를 更生院에서 시교도소 또는 일반교도소로 또는 노바 스코티아에 있는 기타 교도소로 再移送할 수 있다.

제103조 (所長에 의한 犯罪者 引渡) 移送이 명하여진 犯罪者를 수용하고 있는 更生院의 院長, 市矯導所 또는 일반교도소의 矯導官은 경찰 기

do so, deliver up to the constable or other officer or person who produces the said warrant, such offender, together with a copy, attested by the Superintendent, or keeper, of the sentence and date of conviction of such offender, as given on the reception of the offender into the custody of the Superintendent or keeper. R.S., c.217, s. 105.

Provisions Applicable to Reformatory and Refuge

Refusal of prisoners

104. (1) The Superintendent of the Good Shepherd Reformatory or of the Good Shepherd Industrial Refuge may at any time notify the mayor, warden or other chief magistrate of any city, town or other municipality, that no prisoners beyond those already under sentence in the Reformatory or Industrial Refuge will be received therein from such municipality.

No sentences until further notice

(2) After such notification no person shall be sentenced in such municipality to be detained in the Reformatory or Industrial Refuge until notice has been received by such mayor, warden or chief magistrate, from the Superintendent, that prisoners will again be received in the Reformatory or Refuge. R.S., c. 217, s. 106.

Licence to be at large

105. (1) Where any girl sentenced and detained in the Good Shepherd Reformatory or the Good Shepherd Industrial Refuge, has, in the opinion of the Superintendent thereof so conducted herself during a term of six consecutive months by good behaviour, diligence and industry as to warrant her being set at large and no longer detained in the Refuge, and the police court or stipendiary magistrate of the city of Halifax concurs with the Superintendent in recommending the issue of a licence to such girl to be at large, then the Solicitor General of Canada, or such person as he appoints to issue such licence, may issue a licence to such girl to be at large in the Province of Nova Scotia, or in such part thereof as is specified in the licence.

Revocation

(2) The licence may be revoked or altered at pleasure by the Solicitor General, or by such person as he appoints as aforesaid.

타 공무원 또는 前條 令狀을 제시하는 자에게 범죄자를 소장 또는 교도관이 인수할 때에 받은 소장 또는 교도관이 확인한 범죄자의 判決內容과 선고일자가 기재된 등본과 함께 범죄자를 인도하여야 한다.

[更生院·收容施設에 적용할 수 있는 規定]

제104조 ① (受刑者의 拒否) 그리스도更生院 또는 그리스도재활원의 장은 수시로 市, 小都市 또는 기타 都市의 市長, 道知事 또는 수석행정관에게 更生院 또는 産재활원에 이미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 이외에 그 도시로부터 모는 收容者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통고할 수 있다.

② (새로운 通告까지 收容禁止) 이 통고후 市長, 道知事 또는 首席行政官이 이 更生院 또는 재활원에 수용자를 다시 收容하겠다는 通告를 受領할 때까지 어느 수형자도 이 도시의 갱생원 또는 재활원에 수용될 수 없다.

제105조 ① (釋放權限) 그리스도更生院 또는 그리스도 재활원의 장이 시설에 수용된 여자가 계속 6월동안 善行·勤勉으로 석방되어 더 이상 收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소장의 釋放許可書의 發行權告에 핼리팩스의 治安법원 또는 유급치안판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카나다 법무부장관 또는 허가서 발행을 指名받은 자는 노바 스코티아주 또는 許可書에 명시한 주에서 소녀를 석방하여 체포하지 아니하는 석방허가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前條와 같이 任命한 자는 임의로 釋放許可를 취소 또는 개정할 수 있다.

Regulations

(3) The Solicitor General may make such regulations as he sees fit as to the form of such licences, the conditions of enjoyment and forfeiture thereof, and for ascertaining that such conditions are duly complied with.

Contravention of licence

(4) Upon information on oath that the holder of any such licence has contravened any of the conditions thereof, a judge or stipendiary magistrate may issue a warrant for her arrest, wherever in Canada she may be, and cause her to be brought before such judge or magistrate, and, upon conviction of such contravention, shall remand her to such industrial refuge, there to serve the remainder of her original sentence, with such additional term, not exceeding one year, as to such judge or magistrate seems proper. R.S., c. 217, s. 107; 1966-67, c. 25, s. 37.

PART V. NEW BRUNSWICK

Application of Part

New Brunswick

106. This Part applies only to the Province of New Brunswick. R.S., c. 217, s. 108.

Interpretation

"Court"

107. In the sections of this Part relating to the Good Shepherd Reformatory at Halifax, in the Province of Nova Scotia, "court" includes a police or stipendiary magistrate or justice of the peace. 1959, c. 31, s. 1.

Industrial Home for Boys

Boys under 16 years

108. Where any boy, who, at the time of his trial, appears to the court to be under the age of sixteen years, is convicted of an offence for which a sentence of imprisonment for a period of three months or longer may be imposed upon an adult convicted of the like offence, the court before whom

③ (規定) 법무부장관은 許可形式, 享有條件, 失權, 그리고 조건의 遵守與否를 확인하는 방법에 관하여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④ (許可違反) 許可書所持者가 이에 관한 조건을 위반하였음을 宣誓에 의한 通告를 받은 때 法官 또는 有給治安判事는 許可違反者가 어느 곳에 있든지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법관 또는 치안판사앞에 出席하게 할 수 있다. 위반에 대한 有罪宣告時에 법관 또는 유급치안판사는 그 許可違反者를 재활원에 이송하여 원래 刑期의 殘期에 법관 또는 치안판사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附加期間동안 그곳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뉴 부룬스위크

[適用]

제106조 (뉴 부룬스위크) 이 장은 뉴 부른수위크州에만 적용한다.

[解釋]

제107조 (法院) 노바 스코티아주의 핼리팩스에 있는 그리스도更生院에 관한 이 장의 諸條項에서 法院은 警務 또는 유급치안판사 또는 명예치안판사를 포함한다.

[少年職業訓練院]

제108조 (16세미만의 少年) 심리시 법원에게 외견상 16세미만인 소년이 成人에 대하여 3월 또는 그 이상의 收容宣告가 과하여질 수 있는 犯罪行爲로 有罪가 宣告된 경우에 유죄가 선고된 소년을 審理하는 法院은 소년의 物質的, 道德的 福祉上 州에 설치된 소년산업훈련원에 수용하

such boy is convicted may, if satisfied that a due regard for the material and moral welfare of the boy manifestly requires that he be committed to the Boys' Industrial Home, established in the Province, sentence the boy to be imprisoned in the Boys' Industrial Home for such term as the court thinks fit, not being greater than the term of imprisonment that could be imposed upon an adult for the like offence, and may further sentence the boy to be kept in the Boys' Industrial Home for an indefinite time after the expiration of the fixed term; but the whole period of confinement in the Boys' Industrial Home shall not exceed five years from the commencement of his imprisonment. 1955, c. 40, s. 1.

Additional imprisonment for purposes of reform

109. Where any boy, apparently under the age of sixteen years, is convicted of an offence punishable by law on summary conviction, and thereupon is sentenced and committed to prison in any common gaol for a period of not less than fourteen days, any judge of the Supreme Court or a county court, in any case occurring within the county or counties for which he is such judge, may examine and inquire into the circumstances of such case and conviction, and when he considers that the material and moral welfare of the boy requires such sentence, he may, as an additional sentence for such offence, sentence such boy, either forthwith or at the expiration of his imprisonment in such gaol, to the Boys' Industrial Home, to be detained there for the purpose of his industrial and moral education for an indefinite period, not exceeding in the whole five years from the commencement of his imprisonment in the common gaol. 1955, c. 40, s. 1.

Parole Committee

110. The Lieutenant Governor may appoint a Parole Committee whose duty it shall be to inquire from time to time into the cases of prisoners sentenced to the Boys' Industrial Home, and where as a result of such inquiry the Parole Committee thinks proper, it may permit prisoners serving sentences in the Boys' Industrial Home to be discharged on parole under conditions approved by the Solicitor General of Canada. 1955, c. 40, s. 1; 1966-67, c. 25, s. 37.

는 것이 명백히 요구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法院은 동일한 犯罪行爲로 成人에게 과하여질 수 있는 收容期間보다 많지 않은 법원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기간동안 少年産業訓練院에 소년의 수용을 선고할 수 있고, 나아가 確定期間 終了 후에 불확정한 기간동안 소년을 소년산업훈련원에 수용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소년산업훈련소에의 全收容期間은 수용개시후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09조 (矯正目的의 附加收容) 외견상 16세 미만인 少年이 법률에 의하여 處罰받을 수 있는 犯罪行爲로 略式命令에 의하여 유죄가 선고되어 14일이상 일반교도소에 수용이 선고된 경우에 最高法院 또는 地區法院의 법관은 자신이 법관으로 있는 하나의 地區 또는 복수의 地區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事件內容과 宣告의 狀況을 조사할 수 있고, 일반교도소의 수용개시후 전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불확정한 기간동안 産業上 그리고 道德的 目的上 수용하기 위하여 즉시 또는 교도소의 收容滿了時 소년을 소년산업훈련원에 수용을 선고할 수 있다.

제110조 (假釋放委員會) 副知事는 少年産業訓練院에 수용이 선고된 受刑者의 狀況을 수시로 조사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假釋放委員會를 임명할 수 있다. 조사결과 委員會가 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假釋放委員會는 소년산업훈련원에 수용되는 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Clergymen visitors

111. The clergymen of all religious denominations shall, at all convenient hours and subject to the rules or regulations governing the Boys' Industrial Home, be admitted therein for the purpose of giving spiritual advice and instruction to the inmates therein of their respective denominations. 1955, c. 40, s. 1.

Chairman's warrant

112. (1) The chairman of the advisory board of the Boys' Industrial Home may issue a warrant under his official seal requiring the sheriff or a constable or other officer to deliver any boy sentenced to be confined therein to the Superintendent of the Boys' Industrial Home.

Copy of sentence sufficient warrant

(2) A copy of the sentence of the court, duly certified by the proper officer, or the warrant or order of the judge or magistrate by whom the boy is sentenced to such confinement, is sufficient authority to the sheriff, constable or other officer, if he is directed verbally or otherwise so to do, to convey the boy to the common gaol of the county where the sentence is pronounced, and for the gaoler of such gaol to receive the boy and retain him until such warrant is presented to the gaoler. 1955, c. 40, s. 1.

Binding as apprentice

113. (1) Where any respectable or trustworthy person is willing to undertake the charge of any boy committed to the Boys' Industrial Home, when such boy is over the age of twelve years, as an apprentice to the trade or calling of such person, and such boy is confined in the Boys' Industrial Home by virtue of a sentence or order pronounced under the authority of any Act of the Parliament of Canada, the Parole Committee may, with the consent of the parent or guardian of the boy, and in the name of the advisory board of the Boys' Industrial Home, bind the said boy to such person for any term not to extend without his consent, beyond a term of five years from the commencement of his imprisonment.

Discharge on probation

(2) The said advisory board shall thereupon order that such boy shall be discharged from the Boys' Industrial Home on probation, to remain so discharged, if his conduct during the residue of the term of five years, from the commencement of his imprisonment, continues to be good, and such boy shall be discharged accordingly.

제111조 (聖職者 또는 訪問者) 모든 宗派의 聖職者는 적당한 시간에 少年産業訓練院을 規律하는 規則 또는 規定에 따라 각 종파의 수형자에게 宗教的인 勸告와 指導를 할 목적으로 방문함이 허용되어야 한다.

제112조 ① (院長의 令狀) 少年産業訓練院의 院長은 보안관, 경찰 또는 기타 공무원에게 그곳에 수용이 선고된 소년을 소년산업훈련원의 所長에게 引渡할 것을 명하는 公式的인 署名이 든 令狀을 발행할 수 있다.
② (判決文의 謄本은 충분한 令狀임) 권한을 받은 공무원이 정당하게 확정한 法院의 判決文의 등본 또는 치안판사의 令狀 또는 命令은 보안관, 경찰 또는 기타 공무원이 口頭 또는 달리 指示를 받은 경우에는 선고를 한 지구의 일반교도소에 소년을 이송하고, 이송할 교도소의 矯導官은 令狀이 교도관에게 제시될 때까지 소년을 인수하여 수용할 충분한 권한이 있다.

제113조 ① (見習) 존경 또는 신망받는 자가 少年産業訓練院에 수용된 12세를 초과한 소년을 委託받고자 하고, 소년이 카나다制定法의 권한에 의하여 내려진 宣告 또는 命令에 따라 소년산업훈련원에 수용된 경우에는 仮釋放委員會는 소년의 부모 또는 後見인의 동의를 얻어 소년산업훈련원의 諮問委員會의 이름으로 상기의 소년을 收容開始 후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의없이 그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假釋放) 수용개시후부터 나머지 5년의 기간동안 소년의 행위가 계속하여 모범적이면, 前條의 자문위원회는 釋放을 위하여 소년산업훈련원에서의 仮釋放을 명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소년은 석방된다.

Wages

(3) Any wages reserved in any indenture of apprenticeship made under this section are payable to such boy, or to some other person for his benefit. 1955, c. 40, s. 1.

Recommittal for violation of parole

114. The judge of any county court or of a juvenile court or a magistrate may, upon satisfactory proof that any boy who was sentenced under any Act of the Parliament of Canada, and who has been discharged on parole, has violated the conditions of his discharge, order such boy to be recommitted to the Boys' Industrial Home, and thereupon such boy shall be detained therein under his original sentence as if he had never been discharged. 1955, c. 40, s. 1.

Transfer from Dorchester Penitentiary to Boys' Industrial Home

115. The Governor General, by warrant under his hand, may, at any time in his discretion, on the application of the Attorney General of the Province of New Brunswick, cause any boy who is imprisoned in the Dorchester Penitentiary, or in any gaol in the Province, for an offence against the law of Canada, and who is certified by any judge of the Supreme Court, or of the county court, to have been, in the opinion of such judge, at the time of his trial under the age of fifteen years, to be transferred to the Boys' Industrial Home in the Province, for the remainder of his term of imprisonment, and for such further term in addition thereto as the Governor General, on the report and recommendation of such judge, deems expedient; but the whole term of imprisonment shall not exceed five years from the commencement of the imprisonment in such penitentiary or gaol. 1955, c. 40, s. 1.

Transfer from Home to penitentiary

116. The Governor General, by warrant under his hand, may, at any time in his discretion, on the application of the Attorney General of the Province of New Brunswick, cause any boy who is imprisoned in the Boys' Industrial Home under sentence for an offence against any law of Canada, and for a term of years for which he might have been sentenced to imprisonment in the penitentiary, to be transferred to the Dorchester Penitentiary for the remainder of his term of imprisonment. 1955, c. 40, s. 1.

③ (賃金) 이 법에 의한 見習契約에서 규정된 賃金은 소년 또는 그 代理人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14조 (誓約違反으로 인한 再收容) 地區法院 또는 少年法院의 법관 또는 치안판사는 카나다 少年法上 유죄가 선고되어 假釋放된 소년이 釋放條件을 위반하였다는 충분한 證據에 의하여 소년을 소년산업훈련원에 再收容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 때 소년은 석방되지 아니했던 것처럼 본래 선고에 따라 수용된다.

제115조 (도체스터感化院에서 少年產業訓練院으로 移送) 州知事는 수시로 자신이 署名한 令狀에 의하여 뉴 부른수위크주 법무부장관의 신청에 따라 카나다법 違反行爲로 도체스터감화원 또는 이 州의 어느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고 最高法院 또는 地區法院의 법관이 자신의 판단으로는 소년이 審理時에 16세 미만임을 확인한 소년을 收容期間중 殘期 그리고 이 法官의 報告書와 勸告에 의하여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附加期間동안 州의 少年產業訓練院에 이송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수용기간은 感化院 또는 矯導所에서의 수용개시후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16조 (訓練院에서 感化院으로의 移送) 州知事는 수시로 자신이 署名한 令狀에 의하여 뉴 부룬스위크주의 법무부장관의 신청에 따라 카나다법 違反行爲으로 有罪가 선고되어 少年產業訓練院에 수용된 소년을 그리고 감화원에 수용이 선고될 수 있었던 기간동안 收容期間의 殘期를 위하여 도체스터감화원에 이송하게 할 수 있다.

New Brunswick Central Reformatory

Transfer to Central Reformatory

117. (1) Every person confined in any one of the common gaols of the Province under sentence of imprisonment for any offence against the laws of Canada may, by warrant signed by the Inspector of Penal Institutions or by such other officer as is authorized by the Lieutenant Governor in that behalf, be transferred from such common gaol to the New Brunswick Central Reformatory, there to be imprisoned for the unexpired portion of the term of imprisonment to which such person was originally sentenced.

Custody

(2) Such person shall thereupon be imprisoned in the New Brunswick Central Reformatory for the residue of such term unless in the meantime he is lawfully discharged or removed and is subject to all the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New Brunswick Central Reformatory. 1955, c. 40, s. 1.

Offender to be received

118. The Superintendent of the New Brunswick Central Reformatory shall receive every offender so transferred and every offender legally certified to him as sentenced to imprisonment therein, and shall detain him, subject to all the rules, regulations and discipline of the institution, until the term for which he has been sentenced is completed or until he is otherwise paroled or discharged in due course of law. 1955, c. 40, s. 1.

Employment

119. (1) The Lieutenant Governor may, from time to time, authorize, direct or sanction the employment upon any specific work or duty outside or beyond the limits of the New Brunswick Central Reformatory of any of the prisoners confined or sentenced to be imprisoned therein or transferred thereto, as herein provided.

Discipline

(2) All such prisoners are, during the employment mentioned in subsection (1), subject to such rules, regulations and discipline as are approved by the Lieutenant Governor in that behalf. 1955, c. 40, s. 1.

Transfer of offenders

120. The Inspector of Penal Institutions, or such other officer as is authorized by the Lieutenant Governor, may, from time to time by warrant, direct the removal of any

[뉴 부른스위크 中央更生院]

제117조 ①(中央更生院으로의 移送) 카나다법 위반행위로 州의 일반교도소에 收容된 자는 刑事施設檢査官 또는 副知事로부터 이에 관한 權限을 附與받은 기타 공무원이 署名한 令狀에 의하여 원래 선고된 收容期間의 종료되지 아니한 기간동안 그곳에의 수용을 위하여 일반교도소에서 뉴 부른스위크 中央更生院으로 이송될 수 있다.

②(監視) 收容者는 중간에 適法하게 釋放되거나 移送되지 아니하는 한 이 기간의 잔기동안 뉴 부른스위크中央更生院에 수용되고 뉴 부른스위크의 모든 規則과 規定이 적용된다.

제118조(犯罪者의 收容) 뉴 부른스위크中央更生院의 원장은 이와 같이 移送된 모든 犯罪者와 그곳에 수용이 선고되고 適法하게 확인된 모든 범죄자를 인수하며, 宣告期間이 만료할 때까지 또는 適法節次에 따라 假釋放되거나 석방될 때까지 시설의 모든 規則, 規程 그리고 법률에 따라 수용하여야 한다.

제119조 ①(勞役) 副知事는 수시로 모든 수용되어 있거나 이곳에 수용이 선고되었거나 이곳에 이송된 범죄자의 이 법에 따른 뉴 부른스위크中央更生院외에서의 특정한 作業 또는 義務를 부과하거나 지사하거나 허가할 수 있다.

②(規律) 모든 收容者는 전 제1항의 勞役期間동안 副知事가 이에 관하여 규정한 規則, 規程 그리고 規律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0조(犯罪者의 移送) 刑事施設檢査官 또는 副知事에 의하여 권한을 받은 기타 公務員은 수시로 令狀에 의하여 收容者를 뉴 부른스위크中央更生院에서 州일반교도소로 또는 州일반교도소에서 다른 州일반교도소로 移送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offender from the New Brunswick Central Reformatory to any common gaol of the Province, or from any common gaol of the Province to any other common gaol of the Province. 1955, c. 40, s.1.

Good Shepherd Reformatory, Halifax

Roman Catholic females

121. Whenever any woman or girl, who is a Roman Catholic, is convicted in the Province of New Brunswick of an offence against any law of Canada punishable by imprisonment for a maximum term of less than two years, the court may sentence such woman or girl to imprisonment in the Good Shepherd Reformatory in the city of Halifax in the Province of Nova Scotia instead of the common gaol or other prison. 1959, c. 31, s. 2.

Imprisonment in Good Shepherd Reformatory

122. (1) Every judge, stipendiary magistrate or magistrate before whom any female person being a Roman Catholic is convicted in the Province of New Brunswick of an offence against the law of Canada punishable by imprisonment in a city prison or common gaol for a term of two months or for any longer term, may sentence such female person to an extended or substituted imprisonment in the Good Shepherd Reformatory in the city of Halifax in the Province of Nova Scotia, subject to the following conditions:

(a) if such female person in under the age of twenty-one years, such extended imprisonment may be until she attains the age of twenty-one years, or for any shorter or longer term not less than two and not more in the whole than four years; and

(b) if such female person is of the age of twenty-one years or upwards, such extended imprisonment may be for any term not less than one year and not more than two years.

Where sentenced to prison or gaol

(2) Where any female person who is a Roman Catholic is convicted in the Province of New Brunswick of an offence against the law of Canada and is sentenced and committed to a city prison or common gaol, any judge of the Supreme Court of New Brunswick in any case occurring in his province, or any judge of a county court in any case occurring within his

[핼리팩스그리스도更生院]

제121조 (카톨릭여자신도) 카톨릭信徒인 여자 또는 소녀가 뉴 부른스위크州에서 장기 2년미만의 수용이 선고될 수 있는 카나다법 違反行爲로 有罪가 宣告된 경우에는 法院은 일반교도소 또는 기타 교도소 대신 노바 스코티아주에 있는 그리스도更生院에 여자 또는 소녀를 수용할 것을 선고할 수 있다.

제122조 ① (그리스도更生院에 收容) 2월 또는 그 이상의 기간동안 市矯導所 또는 一般矯導所에의 수용이 선고될 수 있는 카나다법 違反行爲로 뉴 부룬스위크州에서 有罪가 宣告된 카톨릭신자인 여자를 審理하는 모든 법관, 유급치안판사, 명예치안판사는 이하의 조건에 따라 여자를 노바 스코티아주 핼리팩스시에 있는 그리스도更生院에 延長 또는 代替收容을 선고할 수 있다.

1. 수용자가 21세미만인 경우에는 延長收容은 21세에 이를 때까지 또는 2년이상 합계 4년이하의 短期 또는 長期間일 수 있다.
2. 수용자가 21세 또는 그 이상인 경우에는 延長收容은 1년이상 그리고 2년이하의 기간일 수 있다.

② (矯導所에의 收容이 宣告된 경우) 카톨릭신자인 여자가 뉴 부룬스위크州에서 카나다법 위반행위으로 有罪가 宣告되어 市矯導所 또는 일반교도소에의 수용이 선고된 경우에는 주에서 발생하는 사건에서 뉴 부룬스위크大法院의 法官, 郡 또는 地區에서 발생하는 사건에서 地區法

county or district, may summarily examine and inquire into the circumstances of such conviction and may quash such sentence to the said city prison or common gaol, and, in substitution thereof, sentence such female person under this section.

Escape

(3) Where any female person, sentenced to the Good Shepherd Reformatory under this section, escapes from such institution, she may at any time be apprehended without warrant and brought back to the said institution, there to be detained under the original commitment. R.S., c. 217, s. 122; 1959, c. 31, s. 3.

Refusal of prisoners

123. The Superintendent or Keeper of the Good Shepherd Reformatory may at any time notify the mayor, warden or other chief magistrate of any municipality within the Province of New Brunswick, that no such female persons, beyond those already under sentence in the Good Shepherd Reformatory, will be received therein, and after such notification, no such female person shall be sentenced in such municipality to the Good Shepherd Reformatory until notice has been received by such mayor, warden or chief magistrate from the Superintendent or Keeper that persons will be again received in the Good Shepherd Reformatory. R.S., c. 217, s. 123.

Removal from reformatory to prison

124. The Attorney General of New Brunswick may from time to time on application from the Superintendent or Keeper of the Good Shepherd Reformatory, by order, direct the removal from that Reformatory of any female person committed thereto under this Act from the Province of New Brunswick, back to a city prison or common gaol for the balance of the unexpired portion of the maximum sentence originally imposed on such female. R.S., c. 217, s. 124.

Certain offences under *Criminal Code*

125. (1) Whenever any such woman or girl is convicted in the city or county of Saint John, under the *Criminal Code,* of

(a) keeping a common bawdy house or of being found in a common bawdy house, without lawful excuse, or of being an inmate of a common bawdy house,

(b) being a loose, idle or disorderly person or vagrant, or

院의 法官은 略式으로 이 선고의 상황을 조사하고 상기 市矯導所 또는 일반교도소에의 收容宣告를 無效로 하고 이에 대체하여 이 조에 의하여 여자의 수용을 선고할 수 있다.

③ (逃走) 이 조에 의하여 그리스도更生院에 수용이 선고된 자가 시설에서 도주하는 경우에는 그자는 본래 선고에 따른 그곳에 수용을 위하여 어느 때라도 令狀없이 체포되어 前條의 시설에 再收容할 수 있다.

제123조 (收容拒否) 그리스도更生院의 院長 또는 管理者는 어느 때라도 뉴 부룬스위크주에 있는 市長, 管理者 또는 首席行政官에게 그리스도更生院에 이미 수용이 선고된 자 이외의 어느 收容者도 引受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할 수 있고, 통지후에는 다시 그리스도갱생원에 수용자를 인수하겠다는 통지가 所長 또는 管理者로부터 市場, 管理者 또는 首席行政官에게 수령될 때까지 어느 수용자도 이 도시에서 그리스도更生院에 수용이 선고될 수 없다.

제124조 (更生院에서 矯導所로의 移送) 뉴 부룬스위크의 법무부장관은 수시로 그리스도更生院의 院長 또는 管理者의 신청에 따라 이 법에 의하여 수용이 선고되고 그리고 뉴 부룬스위크주에서 移入되는 수용자를 更生院에서 이 수용자에게 본래 부과된 最長宣告期間의 미경과한 기간과의 균형을 위하여 市矯導所 또는 일반교도소에의 再移送을 命令으로 지시할 수 있다.

제125조 ① (刑法違反行爲) 女子 또는 少女가 세인트존市 또는 地區에서 刑法上의

1. 一般淪落街에 있거나 적법한 원인없이 一般淪落街에 있음이 발견되거나 일반윤락가에 居住하거나
2. 품행이 나쁘거나 나태하거나 난폭한 자 또는 부랑자로

(c) any offence triable under the sections of the *Criminal Code* relating to summary trial of indictable offences,

she may be sentenced to imprisonment in the Good Shepherd Reformatory for any term less than two years.

Fine

(2) If a term exceeding six months is imposed, no fine shall be imposed in addition. R.S., c. 217, s. 125.

Conveyance of convicts

126. Any officer appointed by the Lieutenant Governor, or other officer or person by his direction or by direction of the court or other lawful authority, may convey to the Good Shepherd Reformatory any convict sentenced to be imprisoned therein, and deliver her to the Superintendent or Keeper thereof, without any further warrant than a copy of the sentence, taken from the minutes of the court before which the offender was tried and certified by a judge, or the clerk, or acting clerk of such court, together with a certificate from a duly qualified medical practitioner that such female person is free from infectious and contagious diseases, and the Superintendent or Keeper thereof may refuse to admit any convict sentenced to be imprisoned in the Good Shepherd Reformatory under this Act unless such medical certificate accompanies the copy of the sentence. R.S., c. 217, s. 126.

Superintendent to receive offenders

127. The Superintendent or Keeper of the Good Shepherd Reformatory shall receive therein every offender legally certified to her as sentenced to imprisonment therein, and shall detain her there, subject to all the rules, regulations and discipline thereof, until the term for which she has been sentenced is completed, or until she is otherwise discharged in due course of law. R.S., c. 217, s. 127.

PART VI. PRINCE EDWARD ISLAND

Application of Part

P.E.I.

128. This Part applies only to the Province of Prince Edward Island. R.S., c. 217, s. 128.

3. 범죄행위의 略式審理에 관한 刑法條文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는 犯罪行爲로 유죄가 선고된 경우에는 그 여자는 2년미만의 기간동안 그리스도갱생원에 수용이 선고될수 있다.

② 6월을 초과하는 기간이 부과되면 벌금을 병과할 수 없다.

제126조 (犯罪者의 移送) 副知事에 의하여 任命된 公務員 기타 副知事의 지휘아래 있는 공무원 또는 사람, 法院 기타 적법한 官庁의 지휘를 받는 공무원 또는 사람은 그곳에의 收容이 선고된 犯罪者를 그리스도更生院에 移送할 수 있고, 그가 傳染病이 없다는 정당히 권한을 부여받은 開業醫의 確認書와 함께 범죄자를 心理한 法院의 書記로 행위하는 자가 확인한 判決文의 謄本 이외의 令狀이 필요없이 원장 또는 관리자에게 그를 이송할 수 있다.

그리고 원장 또는 관리자는 醫師의 確認書가 判決文의 등본과 함께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이 법에 의하여 그리스도갱생원에 수용이 선고된 女子犯罪者의 收容을 거부할 수 있다.

제127조 (院長의 犯罪者 引受) 그리스도갱생원의 원장 또는 管理者는 그곳에 수용이 선고되었다는 法的 確認書와 함께 범죄자를 인수하고 선고기간이 만료하거나 適法節次에 따라 釋放될 때까지 그에 관한 規則, 規定, 法律에 따라 그곳에 수용하여야 한다.

제6장 프린스 애드워드 아일랜드

[適用]

제128조 (프린스 애드워드 아일랜드) 이 장은 프린스 애드워드 아일랜드에만 적용된다.

Reformatory for Juvenile Offenders

Prisoners under 16 years

129. (1) As soon as a proclamation has been issued by the Lieutenant Governor of the Province of Prince Edward Island declaring that a reformatory for juvenile offenders has been established and made ready for the confinement of prisoners, any person, apparently under the age of sixteen years, who is convicted in the Province before the Supreme Court or a stipendiary magistrate, of any offence for which, by law, he is liable to imprisonment, may, by the Court or stipendiary magistrate, be sentenced to be detained in that reformatory for any term not exceeding five years and not less than two years, as to the Court or magistrate appears proper.

Use of industrial schools and reformatories outside the Province

(2) Until an industrial school or reformatory is established in the Province, the Lieutenant Governor of the Province may arrange for the use of industrial schools or reformatories in other provinces, and thereupon, so far as relates to delinquents and offenders in the Province of Prince Edward Island, the industrial school referred to in the *Juvenile Delinquents Act*, means the industrial school or reformatory so arranged for outside the Province. R.S., c. 217, s. 129.

Offenders awaiting trial

130. Any person apparently under the age of sixteen years who is thereafter arrested on a charge of having committed any offence within the Province, not capital, shall not, while awaiting trial for such offence, be detained in any common gaol, but shall be detained in such reformatory. R.S., c. 217, s. 130.

Punishment for violating rules

131. Where any offender, detained in such reformatory, wilfully neglects to conform to the rules thereof, he may, upon summary conviction, be imprisoned in the common gaol, with hard labour, for any term not exceeding three months; and at the expiration of his term of imprisonment he shall be brought back to the reformatory, there to be detained during a term equal to so much of his term of imprisonment as remained unexpired at the time of his being sent to the prison. R.S., c. 217, s. 131.

[青少年犯罪者 更生院]

제129조 ① (16세 미만의 收容者) 少年保護所가 설치되어 收容者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宣言하는 프린스 애드워드 아일랜드 副知事의 공표후에는 법률에 의하여 收容이 가능한 범죄행위로 最高法院 또는 有給治安判事에 의하여 州에서 有罪가 宣告된 외견상 16세미만인 자는 법원 또는 유급치안판사에 의하여 2년이상 5년이하의 법원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기간동안 少年院에 수용이 선고될 수 있다.

② (州밖의 産業訓練院과 更生院의 利用) 産業訓練院과 更生院이 이 州에 설치되기까지 이 州의 副知事는 다른 주의 산업훈련원 또는 갱생원의 利用協定를 체결할 수 있고, 이 때 프린스 애드워드 아일랜드주에서 범죄자와 위반자에 대해서 青少年犯罪者法에 있어서의 산업훈련원은 이와같이 州밖에서 협정를 체결한 산업훈련원 또는 更生院을 의미한다.

제130조 (審理를 待期하는 犯罪者) 州에서 死刑이 아닌 범죄행위로 起訴되어 구속된 외견상 16세미만인 자는 裁判을 기다리는 동안 일반교도소에 수용되어야 한다.

제131조 (規則違反에 대한 處罰) 更生院에 수용된 범죄자가 故意로 이에 관한 規則을 遵守하기를 게을리하는 때에는 略式命令으로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一般矯導所에 强制勞役이 병과되어 수용될 수 있다. 收容期間의 滿了時 교도소에 이송된 때 미경과한 收容期間에 상당하는 기간동안 그곳에 수용을 위하여 更生院에 再移送되어야 한다.

Transfer of Offenders

Transfer of offenders

132. The Deputy Attorney General of Prince Edward Island or such other Crown officer of the Province as is authorized by the Lieutenant Governor of the Province, may from time to time by warrant, direct the transfer of any offender from any common gaol, prison farm or correctional institution of the Province to any other common gaol, prison farm or correctional institution of the Province. 1968-69, c. 38, s. 114.

PART VII. MANITOBA

Application of Part

Manitoba

133. This Part applies only to the Province of Manitoba. R.S., c. 217, s. 135.

Reformatory for Boys and Girls

Boys and girls under 16 years

134. Where any boy or girl, who, at the time of his or her trial, appears to the court to be under the age of sixteen years, is convicted of an offence for which a sentence of imprisonment for a period of three months or longer may be imposed upon an adult convicted of the like offence, the court before which such boy or girl is convicted may, if satisfied that a due regard for the material and moral welfare of the boy or girl manifestly requires that he or she should be committed to some reformatory or industrial home for boys or girls in the Province of Manitoba, sentence the boy or girl to be imprisoned in any such reformatory or industrial home duly established as such by and under the authority of the Legislature of the Province or approved as such reformatory or industrial home by proclamation of the Lieutenant Governor under the said authority for such term as the court thinks fit, not being greater than the term of imprisonment that could be imposed upon an adult for the like offence, and may

[犯罪者 移送]

제132조 (犯罪者의 移送) 프린스 애드워드 아일랜드 法務部次官 또는 州 副知事에 의하여 權限을 附與받은 기타 공무원은 수시로 令狀에 의하여 범죄자를 州의 일반교도소, 開放矯導所 또는 矯正施設로 이송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장 마니토바

제133조 (마니토바) 이 장은 마니토바州에만 적용된다.

[少年少女更生院]

제134조 (16세미만의 少年少女) 審理時에 法院이 외견상 16세미만인 자가 동일한 犯罪行爲로 起訴된 成人에 대하여 3월 또는 그 이상 收容이 선고된 犯罪行爲로 有罪가 宣告된 경우에는 소년 또는 소녀의 有罪를 宣告한 法院은 소년 또는 소녀의 物質的 그리고 道德的 福祉를 정당히 고려하여 마니토바주의 소년 또는 소녀를 위한 갱생원 또는 산업훈련원에의 수용이 명백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년 또는 소녀를 州議會의 권한에 의하여 정당히 설립되거나 상기의 권한에 의하여 副知事의 公表에 의하여 更生院 또는 産業訓練院으로 승인된 갱생원 또는 산업훈련원에, 동일한 犯罪行爲로 成人에게 부과될 수 있는 기간보다 길지 아니한 법원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기간동안 수용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更生院 또는 産業訓練院에의 전수용기간은 수용개시후 5년을 초과할수 없다.

further sentence such boy or girl to be kept in such reformatory or industrial home for an indefinite time after the expiration of such fixed term; but the whole period of confinement in such reformatory or industrial home shall not exceed five years from the commencement ofthe imprisonment. R.S., c. 217, s. 136.

Additional imprisonment in a reformatory or industrial home

135. Where any boy or girl apparently under the age of sixteen years is convicted of an offence punishable by law on summary conviction, and thereupon is sentenced and committed to prison in any common gaol for a period of not less than fourteen days, any judge of any one of the superior courts, or any judge of the county court of the judicial district in which the conviction is had, may examine and inquire into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and conviction, and may, as an additional sentence for such offence, when he considers that the material and moral welfare of the boy or girl so requires, sentence such boy or girl to be sent either forthwith or at the expiration of his or her imprisonment in such gaol, to any such reformatory or industrial home, to be detained there for the purpose of his or her industrial and moral education, for an indefinite period, not exceeding in the whole five years from the commencement of his or her imprisonment in the common gaol. R.S., c. 217, s. 137

Period of detention

136. Every boy or girl so sentenced shall be detained in the reformatory or industrial home until the expiration of the fixed term, if any, of his or her sentence, unless discharged sooner by lawful authority, and thereafter shall, subject to the provisions hereof and to any regulations made as hereinbefore provided, be detained in the reformatory or industrial home for a period not to exceed five years from the commencement of his or her imprisonment, for the purpose of his or her industrial and moral education. R.S., c. 217, s. 138.

Females convicted may be sent to a reformatory or industrial home

137. Where any girl or woman is convicted in Manitoba of any offence under the *Criminal Code* for which a sentence of imprisonment for a period of three months or longer may be imposed, and the court before which such girl or woman is convicted is satisfied that a due regard for the material and

제135조 (更生院 또는 産業訓練院에로의 追加收容) 외견상 16세미만인 자가 略式命令上 법률에 의하여 處罰가능한 犯罪行爲로 유죄가 선고된 경우에는 上級法院의 法官 또는 선고할 관할지역의 地區法院의 法官은 사건내용과 선고상황을 조사할 수 있고, 소년 또는 소녀의 물질적 그리고 도덕적 복지상 이와같이 요구된다고 판단하면, 범죄행위에 대한 追加宣告로서 소년 또는 소녀를 산업상 그리고 道德上의 敎育目的으로 일반교도소에서의 收容開始後 합계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이곳에서의 수용을 위하여 향후 또는 矯導所에서의 宣告滿了時에 갱생원 또는 산업훈련원에 이송할 것을 선고할 수 있다.

제136조 (收容期間) 선고를 받은 소년 또는 소녀는 만일 收容期間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適法한 權限에 의하여 곧 釋放되지 아니하는 한 선고받은 확정기간의 종료시까지 갱생원 또는 産業訓練院에 수용되어야 하고, 이후에는 이 條項의 상기의 규정에 따라 産業上 그리고 道德的 敎育의 目的上 수용개시후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갱생원 또는 산업훈련원에 수용되어야 한다.

제137조 (宣告받은 女子更生院 또는 産業訓練院에의 移用) 소녀 또는 여자가 3월 또는 그 이상 收容宣告가 부과될 수 있는 刑法上의 犯罪行爲로 마니토바에서 유죄가 선고될 수 있고, 그 소녀 또는 여자를 有罪

moral welfare of the girl or woman manifestly requires that she should be committed to some reformatory or industrial home for girls or women in the Province, then such court may, notwithstanding any provisions of the *Criminal Code* as to the duration of the term of imprisonment for such offence, sentence the girl or woman to be imprisoned in any such reformatory or industrial home in Manitoba duly established as such by and under the authority of the Legislature of the Province, or approved as such reformatory or industrial home by proclamation of the Lieutenant Governor under such authority for such term as the court thinks fit, not exceeding in all three years. R.S., c. 217, s. 139.

Imprisonment of offenders until sent to reformatory or industrial home

138. A copy of the sentence of the court, duly certified by the proper officer, or the warrant or order of the judge or other magistrate by whom any woman or boy or girl is sentenced to confinement in the reformatory or industrial hom, is sufficient authority to the sheriff, constable or other officer who is directed, verbally or otherwise, to do so, to convey such woman or boy or girl to such reformatory or industrial home, or to the common gaol of the county where the sentence is pronounced, and for the gaoler of such gaol to receive and detain such woman or boy or girl until a person, lawfully authorized, requires the delivery of the woman or boy or girl for removal to the reformatory or industrial home. R.S., c. 217, s. 140.

Transfer of offenders

139. (1) The Attorney General of Manitoba or his deputy may direct by warrant the removal of a person imprisoned for the commission of an indicatable offence in any common gaol in the Province to any other common gaol in the Province, whenever he deems it expedient to do so, and a person transferred pursuant to this section shall be detained in the common gaol to which he is transferred for the unexpired portion of the term of imprisonment to which he was originally sentenced, unless in the meantime he is again transferred or is lawfully discharged.

Delivery of offender

(2) The keeper of any common gaol, having the custody of any offender ordered to be removed under this section, shall, when required to do so, deliver up to the constable

宣告한 法院이 소녀 또는 여자의 物質上 그리고 道德上 福祉를 정당히 고려하여 州의 소녀 또는 여자를 위한 更生院 또는 産業訓練院에 수용함이 명백히 요구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法院은 소녀 또는 여자를 범죄행위로 인한 收容期間의 존속에 관한 刑法條文에 불구하고 州議會의 權限에 의하여 정당히 설립 또는 이 권한에 따라 부지사에 의하여 갱생원 또는 산업훈련원으로 승인된 갱생원 또는 산업훈련원에 3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기간동안 수용할 것을 선고할 수 있다.

제138조 (更生院 또는 産業訓練院에 이송할 때까지 犯罪者의 收容) 權限있는 공무원에 의하여 정당히 확인된 법원의 判決文 등본, 여자·소년 또는 소녀의 更生院 또는 産業訓練院에의 수용을 선고한 法官 또는 治安判事의 令狀 또는 命令은 保安官, 警察 기타 口頭 또는 다른 방법으로 移送하도록 지시를 받은 公務員이 여자·소년 또는 소녀를 갱생원 또는 산업훈련원에 또는 선고가 내려진 郡의 一般矯導所에 이송하고, 적법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갱생원 또는 산업훈련원에의 이송을 위하여 여자, 소년 또는 소녀의 인도를 요구할 때까지 矯導所의 矯導官이 여자·소년 또는 소녀를 인수하고 수용할 충분한 권한이 있다.

제139조 ① (犯罪者의 移送) 마니토바 법무부장관 또는 法務部次長은 범죄행위로 州의 一般矯導所에 수용된 자를 移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州의 다른 일반교도소에 移送할 것을 令狀에 의하여 指示할 수 있고, 이 條에 의하여 移送된 자는 중간에 다시 이송되거나 適法하게 釋放되지 아니하는 한 본래 형이 선고된 기간의 未經過한 기간동안 이송된 일반교도소에 수용되어야 한다.

② (犯罪者의 引渡) 이 條에 의하여 移送이 명하여진 犯罪者를 戒護하고 있는 일반교도소의 교도관은 犯罪者의 引渡를 요구받은 때에는

or other officer or person who produces the warrant, such offender, together with a copy, attested by the keeper, of the sentence and date of conviction of the offender as given on the reception of the offender into the custody of the keeper. 1959, c. 31, s. 4.

PART VIII. BRITISH COLUMBIA

Application of Part

British Columbia

140. This Part applies only to the Province of British Columbia. R.S., c. 217, s. 141.

Girls under 16 years

141. Where any girl who, at the time of her trial, appears to the court to be under the age of sixteen years, is convicted of an offence against the laws of Canada for which a sentence of imprisonment for a term of one month or longer but less than five years may be imposed upon an adult convicted of the like offence, and the court before which the girl is convicted is satisfied that a due regard for her material and moral welfare requires that she be committed to the Industrial Home for Girls of British Columbia, such court may sentence such girl to be imprisoned therein for such fixed term as the court thinks fit, not being greater than the term of imprisonment which could be imposed upon an adult for the like offence. R.S., c. 217, s. 142.

Additional imprisonment for purposes of reform

142. Where any girl, apparently under the age of sixteen years, is convicted of any offence against the laws of Canada punishable on summary conviction, and thereupon is sentenced and committed to prison in any common gaol for a term of not less than fourteen days, any judge of one of the superior courts, or any judge of a county court, may examine and inquire into the circumstances of such case and conviction, and if he considers the material and moral welfare of the girl requires it, he may, as an additional sentence for such offence, sentence such girl to be sent either forthwith or at the expiration of her imprisonment in such gaol, to the Industrial Home for Girls, to be detained there for the purpose

敎導官이 犯罪者를 引受할 때 받은 교도관이 확인한 범죄자의 判決內容과 宣告日字가 기재된 등본과 함께 警察 또는 公務員 令狀을 제시하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8장 브리티시 콜롬비아

[適用]

제140조 (브리티시 콜롬비아) 이 장은 브리티시 콜롬비아州에만 적용된다

제141조 (16세미만의 소녀) 審理時에 법원이 외견상 16세 미만인 소녀가 동일한 犯罪行爲를 한 成人에게 1월 또는 그이상 5년미만기간의 收容宣告가 부과될 수 있는 카나다법 違反行爲로 有罪가 宣告되고, 소녀에게 유죄를 선고한 法院이 소녀에게 物質的 그리고 道德的 福祉를 정당히 고려하여 브리티시 콜롬비아 소녀를 위한 産業訓練院에 수용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 법원은 소녀를 동일한 犯罪行爲로 成人에게 부과될 수 있는 收容期間보다 장기가 아닌 법원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확정된 기간동안 이곳에 수용할 것을 선고할 수 있다.

제142조 (矯正目的의 追加收容) 외견상 16세 미만인 자가 카나다법 위반행위로 略式命令에 의해 有罪가 宣告되고 14일 이상 일반교도소에 수용이 선고된 경우에는 上級法院의 법관 또는 群法院의 法官은 事件內容과 宣告의 狀況를 조사하고, 소녀의 物質的 그리고 道德的 福祉上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 犯罪行爲에 대한 追加宣告로서 소녀를 향후 또는 이 교도소의 수용기간 만료시에 産業訓練院으로 移送하여 一般矯導所 수용개시후 합계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산업상 그리고 道德的 敎育의 목적상 그곳에 수용을 선고할 수 있다.

of her industrial and moral education for an indefinite period, not exceeding in the whole five years from the commencement of her imprisonment in the common gaol. R.S., c. 217, s. 143.

Period of detention

143. Every girl so sentenced shall be detained in the Industrial Home for Girls until the expiration of the fixed term of her sentence, unless discharged sooner by lawful authority; and such girl thereafter shall, and every girl sentenced under section 142 shall, subject, in both cases, to this Part, and to any regulations made as in this Part hereafter provided, be detained in the Home for a term not exceeding five years from the commencement of her imprisonment, for the purpose of her industrial and moral education. R.S., c. 217, s. 144.

Discharge

144. The Lieutenant Governor may at any time in his discretion order that any girl detained in such Industrial Home for Girls under a summary conviction be discharged. R.S., c. 217, s. 145.

Apprenticing of certain girls

145. (1) Where any respectable and trustworthy person is willing to undertake the charge of any girl committed to the Industrial Home for Girls as an apprentice to the trade or calling of such person, or for the purpose of domestic service, and such girl is confined in the Industrial Home for Girls by virtue of a sentence or order pronounced under the authority of any Act of the Parliament of Canada, the superintendent or other chief officer of the Industrial Home for Girls, with the consent of the Attorney General of British Columbia, may bind the said girl to such person for any term not to extend without her consent beyond a term of five years from the commencement of her imprisonment.

Discharge on probation

(2) The Attorney General of British Columbia shall thereupon order that such girl shall be discharged from the Industrial Home for Girls on probation, to remain so discharged provided her conduct during the residue of the term of five years from the commencement of her imprisonment continues to be good, and such girl shall be discharged accordingly.

Wages

(3) Any wages reserved in any indenture of apprentice-

제143조 (收容期間) 이와같이 선고를 받은 소녀는 곧 적법한 權限에 의하여 釋放되지 아니하는 한 宣告된 確定期間 만료시까지 少女産業訓練院에 수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소녀는 이후 그리고 제142조에 의하여 선고받은 모든 소녀는 두 경우 모두에 이 장과 그리고 금후 이 장에 따라 制定된 규정에 따라 産業上 그리고 道德上 敎育의 目的을 위하여 수용개시후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訓練院에 收容되어야 한다.

제144조 (釋放) 副知事는 어느 때라도 裁量으로 略式命令에 의하여 少女産業訓練院에 수용된 소녀의 釋放을 명할 수 있다.

제145조 ① (少女의 見習委託) 존경 또는 신망받는 사람이 職業 또는 業務의 見習 또는 家事目的으로 소녀산업훈련원에 수용되어 있는 소녀의 인수를 원하고, 카나다制定法에 의하여 발하여진 宣告 또는 命令에 의하여 소녀가 수용된 경우에는 少女産業訓練院의 院長 또는 기타 首席公務員은 브리티시 콜롬비아 法務部長官의 동의를 얻어 수용개시후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소녀의 동의없이 委託할 수 있다.

② (假釋放) 브리티시 콜롬비아 法務部長官은 이때 수용개시후 5년의 殘期동안의 소녀의 행위가 계속 모범적일 것을 조건으로 소녀의 少年産業訓練院에서의 釋放을 지시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서 이 소녀는 석방된다.

③ (賃金) 이 條에 의한 見習契約에서 정하여진 賃金은 소녀 또는 그 代理人에게 지급될 수 있다.

ship made under this section are payable to such girl or to some person for her benefit.

No other discharge

(4) No girl shall be discharged under this section, except on probation as aforesaid, until after the fixed term of her sentence has elapsed, unless by the authority of the Governor in Council. R.S., c. 217, s. 146.

Transfer from gaol to Industrial Home

146. (1) Any girl confined in any common gaol of the Province under sentence of imprisonment for any offence against the laws of Canada may, by the direction of the Attorney General of British Columbia, be transferred from such common gaol to the Industrial Home for Girls, to be imprisoned there for the unexpired portion of the term of imprisonment to which such girl was originally sentenced.

Term

(2) Such girl shall thereupon be imprisoned in the Industrial Home for Girls for the residue of such term unless in the meantime she is lawfully discharged or removed, and shall be subject to all the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institution. R.S., c. 217, s. 147.

Remission of sentence for good conduct

147. In order to encourage good behaviour and industry among the girls in the Industrial Home for Girls, the Lieutenant Governor may make rules under which any girl imprisoned in the Industrial Home for Girls shall be entitled, by good conduct and industry, to earn a remission of a portion of the time for which she is sentenced. R.S., c. 217, s. 148.

Recommittal for misbehaviour

148. The judge of any county court or any police or stipendiary magistrate may, on satisfactory proof that any girl who has been discharged on probation, or has been apprenticed, has violated the conditions of her discharge or the provisions of the indenture of apprenticeship, order such girl to be recommitted to the Industrial Home for Girls, there to be confined under her original sentence. R.S., c. 217, s. 149.

Apprehension for escape, neglect or absence

149. (1) Where a girl escapes from the Industrial Home for Girls, or neglects to attend thereat, or absents herself without consent from the service of the person to whom she may have been apprenticed, she may at any time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of detention or apprenticeship, as

④ (그외 釋放禁止) 어느 少女도 前2條 假釋放을 제외하고 선고의 確定基幹이 종료할 때까지 州知事의 權限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條에 의하여 釋放될 수 없다.

제146조 ① (矯導所에서 産業訓練으로의 移送) 카나다법 違反行爲로 수용이 宣告되어 州一般敎導所에 수용된 소녀는 브리티시 콜롬비아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본래 소녀에게 수용이 선고된 收容期間의 미경과 기간동안 그곳에 수용을 위하여 一般矯導所에서 少女産業訓練院으로 이송될 수 있다.

② (期間) 소녀가 이때 중간에 適法하게 釋放되거나 移送되지 아니하는 한 이 기간의 殘期동안 少女産業訓練院에 수용되어야 하고 施設의 모든 規則과 規程이 적용된다.

제147조 (善行으로 인한 收容期間의 短縮) 소녀산업훈련원에 있는 소녀의 善行과 勤勉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 規則에 의하여 少女産業訓練院에 수용된 소녀가 선행과 근면에 의하여 宣告된 期間의 일부의 短縮權限을 가지는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제148조 (非行으로 인한 再收容) 郡法院의 法官 또는 警務 또는 有給治安判事는 假釋放 또는 見習으로 위탁된 소녀가 釋放條件 또는 見習委託條項을 위반하였다는 충분한 證據에 의하여 少女産業訓練院에의 원래 선고기간동안 수용하기 위하여 소녀의 再移送을 명할 수 있다.

제149조 ① (逃走, 懈怠, 缺席으로 인한 逮捕) 소녀가 少年産業訓練院에서 도주하거나 그곳에 出席을 게을리하거나 見習으로 委託된 자의 업무에 동의없이 缺席하는 경우에는 소녀는 경우에 따라 收容 또는 見習

the case may be, be apprehended without warrant, and may be brought back to the said institution or such person, there to be detained during a period equal to so much of her period of detention or apprenticeship as remained unexpired at the time of her escape.

Aiding or abetting

(2) Every person who aids or abets any girl in such escape is liable, upon summary conviction, to a penalty not exceeding twenty-five dollars. R.S., c. 217, s. 150.

Persons under 22 years

150. Every court in the Province of British Columbia, before which any person apparently under the age of twenty-two years is convicted of an offence against the laws of Canada, punishable by imprisonment in the common gaol for a term of three months, or for any longer term, may sentence such person to imprisonment for a term of not less than three months and for an indeterminate period thereafter of not more than two years less one day.

(a) in the case of a male person apparently under the age of eighteen years, in Haney Correctional Institution,
(b) in the case of any other male person to whom this section applies, in Oakalla Prison Farm or in New Haven, or
(c) in the case of a female person to whom this section applies, in a place designated by the Lieutenant Governor for such female persons

instead of the common gaol of the county or judicial district where the offence was committed or was tried, and such person shall thereupon be imprisoned accordingly until he is lawfully discharged or paroled pursuant to section 151 or transferred according to law, and shall be subject to all the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institution as may be approved from time to time by the Lieutenant Governor in that behalf. 1952-53, c. 7, s. 2; 1968-69, c. 38, s. 115.

Board of Parole

151. The Lieutenant Governor may appoint a Board of Parole for the Province of British Columbia whose duty it is to inqurie from time to time into the cases of prisoners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indeterminate periods, and where the Board thinks proper, it may permit prisoners serving

期間의 종료이전에 어느 때라도 令狀없이 逮捕될 수 있고, 逃走중 경과하지 아니한 收容基幹 또는 見習期間과 동일한 기간동안 상기 施設에 수용하기 위하여 시설 또는 사람에게 再委託될 수 있다.

② (幇助) 소녀의 도주를 방조한 자는 略式命令으로 25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罰金이 과하여질 수 있다.

제150조 (22세미만의 자) 3월 또는 그 이상 기간동안 수용이 선고될 수 있는 카나다법 違反行爲로 有罪가 宣告된 외견상 22세미만의 자를 審理한 法院은 다음의 경우 3월이상 2년미만의 不確定한 기간동안 犯罪行爲가 행하여지거나 審理된 郡 또는 法院管轄의 일반교도소에 대신하여 다음의 장소에 수용을 선고할 수 있다.

1. 외견상 18세미만인 남자에게는 해니 교정시설
2. 이 조가 적용되는 남자에게는 오아카라 開放矯導所 또는 뉴 헤이븐
3. 이 조가 적용되는 여자에 대하여서는 副知事가 그를 위하여 指定한 場所

따라서 그가 제 151조에 따라서 釋放 또는 假釋放되거나 법에 따라서 移送될 때까지 수용되어야 하고 副知事에 의하여 수시로 承認될 수 있는 規則과 規程이 적용된다.

제151조 (假釋放委員會) 副知事는 불확정한 기간동안 수용이 선고된 수형자의 사건 을 수시로 調査하는 것이 義務인 브리티시 콜롬비아州 假釋放委院會를 수시로 임명할 수 있고, 委員會는 적당하다고 판단한

such sentences to be paroled under conditions approved by the Solicitor General of Canada, and when the terms on which such prisoners were paroled have been complied with, the Board may recommend for the consideration of the Solicitor General of Canada the final discharge of such prisoners. 1952-53, c. 7, s. 2; 1966-67, c. 25, s. 37; 1968-69, c. 38, s. 115.

Transfer of offenders

152. (1) The Inspector of Gaols or such other officer as is authorized by the Lieutenant Governor in that behalf from time to time may by warrant direct the removal of a person imprisoned in Oakalla Prison Farm to New Haven, or of a person imprisoned in New Haven to Oakalla Prison Farm, whenever he deems it expendient to do so, and a person transferred pursuant to this section shall be detained in the prison or institution to which he is transferred for the unexpired portion of the term of imprisonment to which he was originally sentenced unless in the meantime he is again transferred or is lawfully discharged.

"Term of imprisonment"

(2) In this section the expression "term of imprisonment" includes the definite term of imprisonment and the indefinite period thereafter to which a person was originally sentenced.

Transfer of offenders

(3) The Inspector of Gaols, or such other person as is authorized by the Lieutenant Governor for that purpose from time to time, may direct by warrant the removal of a person imprisoned in any of the common gaols of the Province to the prison known as the Haney Correctional Institution, or of a person imprisoned in the Haney Correctional Institution to any other common gaol in the Province, whenever he deems it expedient to do so, and a person transferred pursuant to this subsection shall be detained in the prison or institution to which he is transferred for the unexpired portion of the term of imprisonment to which he was originally sentenced, unless in the meantime he is again transferred or is lawfully discharged. 1952-53, c. 7, s. 2; 1957, c. 34, s. 1. 1968-69, c. 38, s. 115.

Juveniles

153. Sections 150, 151 and 152 do not apply to a child as defined in the *Juvenile Delinquents Act* unless the child has under section 9 of the *Juvenile Delinquents Act* been ordered to be proceeded against by indictment in the ordinary courts. 1952-53, c. 7, s. 2.

때에는 카나다 법무부장관이 承認한 條件에 따라 수형자의 假釋放宣告를 허용할 수 있다. 이 수용자가 假釋放條件을 준수하는 때에는 委員會는 카나다 법무부장관에게 그의 最終的 釋放을 고려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52조 ①(犯罪者의 移送) 矯導所의 檢査官 또는 기타 副知事에 의하여 이에 관한 權限을 부여받은 公務員은 수시로 令狀에 의하여 그가 적당하다고 判斷할 때에는 오아카라 開放矯導所에 수용된 자를 뉴 헤이븐 또는 뉴 헤이븐에 收容된 자를 오아카라 개방교도소에 移送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조에 따라 移送된 자는 중간에 다시 이송되거나 適法하게 釋放되지 아니한 한 본래 刑이 宣告된 기간의 未經過한 기간을 위하여 移送된 矯導所 또는 施設에서 수용되어야 한다.

②(收容期間) 이 조에서 收容期間이라 함은 본래 宣告받은 한정된 收容期間과 不限定된 수용기간을 포함한다.

③(犯罪者의 移送) 矯導所의 檢査官 또는 副知事로부터 이 목적을 위하여 權限을 부여받은 기타 사람은 移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수시로 令狀에 의하여 州의 一般矯導所에 수용된 자를 하니矯正施設로 알려진 교도소 또는 하니교정시설에 수용된 자를 州의 기타 一般矯導所 移送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조에 따라 移送된 자는 중간에 다시 收容되거나 適法하게 釋放되지 아니한 한 원래 선고된 收容期間의 未經過期間을 위하여 교도소 또는 시설에 수용되어야 한다.

제153조 제150조, 제151조, 제152조는 아동이 兒童犯罪者法 제9조에서 一般法院에서 裁判하도록 명하여 지지 아니하는 한 아동범죄자법에서 定義된 兒童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New Haven"

154. In this Part the expression "New Haven" means the institution established in British Columbia for the reclamation of juvenile offenders known as New Haven and situated on Lot 164, Group 1, New Westminster District in that Province. 1952-53, c. 7, s. 2.

PART IX. NOVA SCOTA, NEW BRUNSWICK AND PRINCE EDWARD ISLAND

Application of certain sections

155. Sections 156 to 161 apply to the Provinces of New Brunswick and Prince Edward Island only; sections 162 to 168 apply to the Provinces of Nova Scotia, New Brunswick and Prince Edward Island. R.S., c. 217, s. 155.

Protestant girls under 16 years

156. Where any girl who is a Protestant, and who at the time of her trial appears to the court to be under the age of sixteen years, is convicted of an offence against the laws of Canada, for which a sentence of imprisonment for a term of one month or longer, but less than five years, may be imposed upon an adult convicted of a like offence, the court before which the girl is convicted may sentence such girl to be imprisoned in the Maritime Home for Girls at Truro for such fixed term as the court thinks fit, not being greater than the term of imprisonment that can be imposed upon an adult for a like offence, and may further sentence the said girl to be kept in the Maritime Home for Girls for an indefinite time after the expiration of such fixed term; but the whole term of confinement in the Maritime Home for Girls shall not exceed five years from the commencement of her imprisonment. R.S., c. 217, s. 156.

Additional imprisonment for purposes of reform

157. Where any girl who is a Protestant, and who at the time of her trial appears to the court to be under the age of sixteen years, is convicted of an offence against the laws of Canada punishable on summary conviction, and thereupon is sentenced and committed to prison in any common gaol for a term of not less than fourteen days, any judge of the Supreme Court of New Brunswick or Prince Edward Island,

제154조 (뉴 헤이븐) 이 장에서 뉴 헤이븐이라는 表現은 뉴 헤이븐이라 알려진 兒童犯罪者의 敎化를 위하여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 설치되고 이 州 Lot 164, Group 1, New Westminster District 에 위치한 施設을 의미한다.

제9장 노바 스코티아, 뉴 부른스위크, 프린스 애드워드 아일랜드

제155조 (條文의 適用) 제156조에서 제161조는 뉴 부른스위크州에만 적용된다. 제162조에서 제168는 노바 스코티아, 뉴 부른스위크, 프린스 애드워드 아일랜드州에만 적용된다.

제156조 (16세미만의 改新敎徒) 審理時에 法院이 외견상 16세미만인 改新敎信者인 소녀가 동일한 犯罪를 행한 成人에게 1월 또는 그 이상 5년 미만의 收容宣告가 내려질 수 있는 카나다법 違反行爲로 유죄가 宣告된 경우에는 소녀에게 法院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確定期間동안 투루노해양소녀訓練院에 收容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유사한 犯罪를 행한 成人에게 선고되는 收容期間보다 長期이어서는 안된다. 또 법원은 상기 소녀에게 確定收容期間간 만료후 불한정한 기간동안 海洋少女訓練院에 수용이 선고될 수 있다. 그러나 해양소녀훈련원에의 全收容期間은 수용개시후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57조 (敎化目的의 追加收容) 審理時에 法院이 외견상 16세미만인 改新敎信者인 소녀가 略式宣告로 처벌될 수 있는 카나다법 違反行爲로 유죄가 선고되어 14일이상 기간동안 一般敎導所에의 수용이 선고된 경우에는 뉴 브른스위크 또는 프린스 애드워드 아일랜드 最高法院의 法官은 자신의 州에서 발생하는 사건에서 또는 郡法院의 法官은 郡 또는 地區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事件內容과 宣告의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respectively, in any case occurring in his province, or any judge of a county court, in any case occurring within his county, or district, may examine and inquire into the circumstances of such case and conviction, and may, as an additional sentence for such offence, sentence such girl to be sent either forthwith, or at the expiration of her imprisonmet in such gaol, to the Maritime Home for Girls, to be detained there for the purpose of her industrial and moral education for an indefinite period; but the whole term of confinement in the Maritime Home for Girls shall not exceed five years from the commencement of her imprisonment in the common gaol. R.S., c. 217, s. 157.

Period of detention

158. Every girl so sentenced shall be detained in the Maritime Home for Girls until the expiration of the fixed term of her sentence, unless discharged sooner by lawful authority; and every girl thereafter shall, and every girl sentenced under section 157 shall, subject in both cases to this Part, and to any regulations made as in this Part hereinafter provided, be detained in the Maritime Home for Girls for a term not exceeding five years from the commencement of her imprisonment for the purpose of her industrial and moral education. R.S., c. 217, s. 158.

Apprenticing of certain girls

159. (1) Where any respectable and trustworthy person is willing to undertake the charge of any girl committed to the Maritime Home for Girls, as an apprentice to the trade or calling of such person, or for the purpose of domestic service, the Superintendent of the Maritime Home for Girls may, with the consent and in the name of the Superintendent of Neglected Children or other officer named by the government of the province in which the said girl was convicted, bind the said girl to such person for any term not to extend, without her consent, beyond a term of five years from the commencement of her imprisonment.

Discharge on probation

(2) The Superintendent of Neglected Children or other officer named by the government of the province from which the said girl was committed shall thereupon order that such girl be discharged from the Maritime Home for Girls on probation, to remain so discharged; if her conduct during the

그리고 이 犯罪行爲에 대한 追加宣告로서 그를 불확정한 기간동안 産業上 그리고 道德的 敎育을 위하여 海洋少女訓練院에 수용하기 위하여 향후 또는 그 교도소에서의 收容滿了後 그곳으로의 이송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海洋少女訓練院의 전수용기간은 一般矯導所의 수용개시 후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58조 (收容期間) 이와 같이 收容이 선고된 少女는 곧 適法한 權限에 의하여 석방되지 아니하는 한 선고될 確定期間의 만료시까지 海洋少女訓練院에 수용되어야 한다. 모든 소녀와 제157조에 의하여 유죄가 선고된 모든 소녀는 모두 이 장과 이하의 이 장에 의하여 制定된 규정에 따라 産業上 그리고 道德的 敎育의 목적을 위하여 수용개시후 5년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海洋産業訓練院에 수용되어야 한다.

제159조 ① (少女의 見習委託) 존경 또는 신망있는 자가 海洋少女訓練院에 수용된 소녀를 職業, 業務 또는 家事目的으로 견습시키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양소녀훈련원의 원장은 遺棄된 兒童의 管理者 또는 상기 소녀가 유죄가 선고된 州政府가 任命한 공무원의 동의와 이름으로 收容開始후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그의 동의없이 이 矯導所에 委託할 수 없다.

② (假釋放) 遺棄된 兒童管理者 또는 상기 소녀를 위탁한 州政府가 任命한 기타 공무원은 이 때 이 소녀의 海洋少女訓練院에서의 假釋放과 釋放된 상태에 있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수용개시후 5년의 殘期동안 소녀의 행위가 계속하여 모범적이며, 遺棄된 아동의 管理者 또는 유죄가 선고된 상기 소녀의 州政府가 任命한 기타 公務員의 命令에 따라 본래 收容期間의 미경과 기간동안 해양소녀훈련원에 還送될 수 있다는

residue of the term of five years from the commencement of her imprisonment continues to be good, and such girl shall be discharged accordingly, subject however to be returned to the Maritime Home for Girls for the unexpired portion of the term of her original commitment on order of the Superintendent of Neglected Children or other officer named by the government of the province in which the said girl was convicted.

Wages

(3) Any wages reserved in any indenture of apprenticeship made under this section are payable to such girl or to some other person for her benefit. R.S., c. 217, s. 159.

No other discharge

160. No girl shall be discharged under section 159, except on probation, as aforesaid, until after the fixed term of her sentence has elapsed, unless by the authority of the Governor General. R.S., c. 217, s. 160.

Education

161. The Superintendent of the Maritime Home for Girls, and the other persons in charge thereof, are bound to teach and instruct each girl so sentenced and detained in the Maritime Home for Girls as aforesaid, in reading and writing and in arithmetic to the end of simple proportion, and also to teach each such girl such one of the trades or occupations taught in the Maritime Home for Girls as they deem most adapted to her capabilities. R.S., c. 217, s. 161.

Protestant woman over 16 years

162. (1) Every judge, stipendiary magistrate or magistrate before whom any female person being a Protestant above the age of sixteen is convicted of an offence against the law of Canada punishable by imprisonment in a city prison or common gaol for the term of two months or for any longer term, may sentence such female person to an extended or substituted imprisonment in the Inter-Provincial Home for Young Women at Coverdale, in the County of Albert in the Province of New Brunswick, subject to the following conditions:

(a) if such female person is under the age of twenty-one years, such extended imprisonment may be until she attains the age of twenty-one years, or for any shorter or longer term not less than two and not more in the whole than

조건아래 이 소녀는 석방되어야 한다.

③ (賃金) 이 條하의 委託契約에서 약정된 賃金은 소녀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지급될 수 있다.

제160조 (釋放禁止) 州知事의 權限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느 소녀도 宣告期間이 만료하기 전에는 상기의 條件附가 아니면 제159조에 의하여 석방되지 못한다.

제161조 (敎育) 海洋少女訓練院의 院長 또는 그의 指示를 받는 기타 자는 상기와 같이 해양소녀훈련원에 收容이 宣告된 각 소녀에게 읽기, 쓰기 그리고 單純比例의 끝까지의 算術을 敎育하고 각 소녀에게 그의 능력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海洋少年訓練院에서 교육되는 職業 또는 業務 중 하나를 교육하여야 한다.

제162조 ① (16세를 초과한 女子改新敎徒) 2월 또는 그 이상 市矯導所 또는 一般矯導所에 수용되어 처벌될 수 있는 카나다법 違反行爲로 유죄가 선고된 16세를 초과한 改新敎徒인 여자를 심리한 法官, 有給治安判事 또는 治安判事는 다음 조건에 따라 뉴 부른스위크州 알버트郡, 코버데일에 있는 州少女保護院에 延長收容 또는 代替收容을 선고할 수 있다.

1. 여자가 21세 미만인 경우에는 延長收容은 그가 21세 이르기까지 또는 2년이상 합계 4년이하의 短期間 또는 長期間일 수 있다.

four years; and

(b) if such female person is of the age of twenty-one years or upwards, such extended imprisonment may be for any term not less than one year and not more than two years.

Judge may examine into conviction and sentence

(2) Where any female person, who is a Protestant, is convicted in Nova Scotia, New Brunswick or Prince Edward Island of an offence against the law of Canada and is sentenced and committed to a city prison or to the county gaol, any judge of the Supreme Court of Nova Scotia, New Brunswick or Prince Edward Island, respectively, in any case occurring in his province, or any judge of a county court in any case occurring within his county or district, may summarily examine and inquire into the circumstances of such conviction and may quash such sentence to the said city prison or county gaol and in substitution thereof, sentence such female person under this section.

Escape and apprehension

(3) Where any female person, sentenced to the Inter-Provincial Home for Young Women under this section, escapes from such institution, she may at any time be apprehended without warrant and brought back to the said institution, there to be detained under the original commitment. R.S., c. 217, s.162.

Refusal of prisoners

163. The Superintendent or Manager of the said Inter-Provincial Home for Young Women may, at any time, notify the mayor, warden or other chief magistrate of any municipality within either the Province of New Brunswick or Prince Edward Island, that no such female persons, beyond those already under sentence in the Inter-Provincial Home for Young Women, will be received therein, and after such notification, no such female person shall be sentenced in such municipality to the Inter-Provincial Home for Young Women, until notice has been received by such mayor, warden or chief magistrate from the Superintendent that prisoners will be again received in the Inter-Provincial Home for Young Women. R.S., c. 217, s. 163.

Conveyance of prisoners

164. Any police officer or any person whom the court or magistrate may direct, may convey to the Inter-Provincial

2. 여자가 21세 또는 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수용은 1년이상 2년미만일 수 있다.

②(有罪宣告를 調査할 法官의 權限) 노바 스코티아, 뉴 부룬위스크 또는 프린스 애드워드 아일랜드주에서 카나다법 違反行爲로 유죄가 선고된 改新教徒인 여자가 市矯導所 또는 郡矯導所에 수용이 선고된 경우에는 노바 스코티아, 뉴 부른스위크 또는 프린스 애드워드 아일랜드 最高法院의 法官은 각각 자기州에서 발생하는 사건에서 또는 郡法院의 法官은 자기州 또는 地區에서 발생하는 사건에서 略式으로 그 宣告의 狀況을 조사하고 상기의 矯導所 또는 郡矯導所로의 선고를 취소하고 이에 대체하여 이 조에 따라 그의 수용를 선고할 수 있다.

③(逃走와 逮捕) 이 조에 의하여 州少女保護院에 수용이 선고된 女子가 이 施設로부터 逃走하는 경우에는 그는 어느 때라도 令狀없이 逮捕되어 본래 宣告期間동안 그곳에서의 수용을 위하여 상기의 施設에 移送될 수 있다.

제163조 (收容者의 拒否) 前條의 州 少女保護院의 院長 또는 管理者는 어느 때라도 뉴 부룬스위크의 원장 또는 프린스 애드워드 아일랜드주내에 있는 市長, 責任者 또는 기타 首席行政官에게 州少女保護院에 이미 宣告되어 수용된 이외에는 더이상 引受하지 않겠다고 通知할 수 있고, 수용자를 州소녀보호원에 다시 인수하겠다는 통지가 원장으로부터 市長, 責任者 또는 首席行政官에게 수령될 때까지 州少女保護院에 선고될 수 없다.

제164조 (收容者의 移送) 警察官, 法院 또는 治安判事가 指示하는 기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州少女保護院에 수용이 선고된 여자를 이곳으로

Home for Young Women any female person sentenced to imprisonment therein under this Act and deliver her to the Superintendent thereof, with a warrant of commitment, as by this Act provided, together with a certificate from a duly qualified medical practitioner that such female person is free from infections and contagious diseases and the Superintendent of the Inter-Provincial Home for Young Women may refuse to admit any female person sentenced under this Act unless such medical certificate accompanies the warrant of commitment. R. S., c. 217, s. 164.

Inspection of Home

165. The Inter-Provincial Home for Young Women shall be opened to inspection at all reasonable times by any officer designated for that purpose by the Lieutenant Governor of New Brunswick, Nova Scotia or Prince Edward Island, and the Board of Management of the Inter-Provincial Home for Young Women shall be bound to teach and instruct all such female persons, sentenced and detained in the Inter-Provincial Home for Young Women under this Act, and to teach such trades or occupations as may from time to time be taught in the institution, with a view to the reformation of such female persons. R.S., c. 217, s. 165.

Attorney General may order removal

166. The Attorney General of Nova Scotia, New Brunswick or Prince Edward Island may, from time to time, on application from the Superintendent of the Inter-Provincial Home for Young Women, by order, direct the removal from the Inter-Provincial Home for Young Women of any female person committed thereto under this Act from the province of which he is Attorney General, back to a city prison or common gaol for the balance of the unexpired portion of the maximum sentence originally imposed on such female. R.S., c. 217, s. 166.

Licence to be at large

167. (1) If any female person sentenced and detained in the Inter-Provincial Home for Young Women has, in the opinion of the Superintendent thereof, so conducted herself during a term of six consecutive months by good behaviour, diligence and industry as to warrant her being set at large and no longer being detained in the said Home, and if the magistrate or deputy magistrate for the County of Albert concurs with the

移送할 수 있고, 그가 傳染病이 없다는 정당한 자격있는 開業醫의 確認書와 이 법에 규정된 收容令狀과 함께 院長에게 引渡할 수 있고, 州소녀보호원의 원장은 醫師確認書가 수용영장에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이 법에 의하여 수용을 거부할 수 있다.

제165조 (保護院의 調査) 州少女保護院은 뉴 부룬스위크, 노바 스코티아 또는 프린스 애드워드 아일랜드 副知社가 이 목적으로 임명한 공무원에 의한 모든 상당한 時期의 조사에 開放되어야 하고, 주소녀보호원의 理事會는 이 법에 의하여 州女子保護院에 收容宣告된 女子를 교육하여야 하고, 教化目的으로 이 시설에서 때로 교육되는 職業 또는 業務를 교육하여야 한다.

제166조 (法務部長官의 移送命令) 노바 스코티아, 뉴 부룬스위크 또는 프린스 애드워드 아일랜드의 法務部長官은 州女子保護院長의 신청에 따라 이 법에 의하여 자신이 法務部長官인 州에서 그곳에 수용된 자를 少女保護院에서 그에게 본래 선고된 最長期間의 未經過期間과의 균형을 위하여 市矯導所 또는 一般矯導所로 再移送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제167조 ① (假釋放) 州少女保護院에 收容이 宣告된 자가 원장의 판단으로 釋放되어 상기 保護院에 더 이상 수용하지 아니할 것을 담보할 만큼 善行·勤勉·誠實하게 연속된 10개월동안 행동하고, 알버트군의 治安判事 또는 副治安判事가 그의 釋放許可書를 발행하는데 있어 원장에게 동의하는 경우에는 카나다 법무부장관 또는 그로 부터 이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는 자는 그의 노바 스코티아주, 뉴 부룬스위크주 또는 프린

Superintendent in recommending the issue of a licence to such female person to be at large, the Solicitor General of Canada or any person authorized by him in that behalf may issue a licence to such female person to be at large in the Province of Nova Scotia, New Brunswick or Prince Edward Island, or in any part thereof specified in the licence.

Revocation

(2) Any licence issued pursuant to subsection (1) may be revoked or altered at pleasure by the Solicitor General, or by any person authorized by him in that behalf.

Regulations

(3) The Solicitor General may make such regulations as he sees fit, prescribing the form of licences, the conditions of enjoyment and forfeiture thereof, and for ascertaining that such conditions are duly complied with.

Contravention of ticket of leave

(4) Upon information on oath that any female person who is licensed under subsection (1) to be at large has contravened any of the conditions of such licence, any judge, stipendiary magistrate or magistrate in Canada may issue a warrant for her arrest, wherever in Canada she may be, and cause her to be brought before such judge, stipendiary magistrate or magistrate for trial; if convicted of such contravention she shall be remanded to the Inter-Provincial Home for Young Women, to serve there the remainder of her original sentence, with such additional term, not exceeding one year, as to the judge, stipendiary magistrate or magistrate seems proper. R.S., c. 333, s. 1; 1966-67, c. 25, s. 37.

Form of commitment

168. The form set out in Schedule II for commitment to the Inter-Provincial Home for Young Women under this Act, may be used for the purposes thereof, or a form of like effect, and when in use is good and sufficient for such purposes in law. R.S., c. 217, s. 167.

PART X. ALBERTA

Application of Part

Alberta

169. This Part applies only to the Province of Alberta. R.S., c. 217. s. 168.

스 애드워드 아일랜드주안에서의 또는 허가서에 명시된 지역에서의 석방되어 체포되지 아니하는 허가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取消) 제1항에 의하여 발행한 許可書는 法務部長官 또는 그가 이에 관한 權限을 부여한 자에 의하여 取消 또는 變更될 수 있다.

③ (規定) (副知事는 許可形式, 享有條件과 그 取消를 규정하고 이 條件이 확실히 준수되게 하기위하여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規定을 제정할 수 있다.

④ (釋放許可 條件違反) 제1항에 의하여 釋放된 자가 許可條件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였음을 宣誓에 의한 通知를 받은 경우에는 法官, 有給治安判事 또는 治安判事는 그가 카나다 어느 곳에 있든지 逮捕令狀을 발행, 재판을 위하여 법관, 유급치안판사 또는 치안판사 앞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된 경우에는 그는 원래의 宣告期間의 殘期와 법관, 유급치안판사 또는 치안판사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附加期間동안의 수용을 위하여 州少女保護院에 환송되어야 한다.

제168조 (收容形式) 부록Ⅱ에 규정된 이 법에 의한 州少女保護院에의 收容令狀의 形式 또는 유사한 效果를 가진 형식은 이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이것이 이용되는 경우에는 이 형식은 法律上 이 목적을 위하여 有效하고 충분하다.

제10장 알버타

[適用]

제169조 (알버타) 이 장은 알버타州에만 적용된다.

Interpretation

"Certified institution"

170. In this Part "certified institution" means any industrial school or other institution in the Province of Alberta certified under *The Gaols and Prisons Act* of the Province of Alberta as a gaol, reformatory or other institution. R.S., c. 217, s. 169.

The Bowden Institution

Imprisonment in Bowden Institution

171. (1) Every person confined in any one of the common gaols of the Province under sentence of imprisonment for any offence against the laws of Canada or of the Province may, by warrant signed by the inspector of gaols or by such other officer as is authorized by the Lieutenant Governor in that behalf, be transferred from such common gaol to the Bowden Institution or to a certified institution, to be imprisoned there for the unexpired portion of the term of imprisonment to which such person was originally sentenced.

Custody there

(2) Such person shall thereupon be imprisoned in the Bowden Institution or other certified institution for the residue of such term unless in the meantime he is lawfully discharged or removed, and shall be subject to all the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Bowden Institution or other certified institution, as the case may be. R.S., c. 217, s. 170.

Offender to be received

172. The superintendent or warden of the Bowden Institution or other certified institution, as the case may be, shall receive every offender so tranferred and every offender legally certified to him as sentenced to imprisonment therein, and shall detain him subject to all the rules and regulations and discipline of their respective institutions until the term for which he has been sentenced is completed or until he is otherwise paroled or discharged according to law. R.S., c. 217, s. 171.

Employment of offenders

173. The Lieutenant Governor may, from time to time, authorize, direct or sanction the employment upon any specific work or duty outside or beyond the limits of the Bowden

[解釋]

제170조 (權限이 부여된 施設) 이 장에서 權限이 부여된 施設이라 함은 라버타州의 行刑法에 의하여 矯導所, 保護所 또는 기타 施設이라고 선언된 알버타州내의 産業訓練院 또는 기타 施設을 의미한다.

[보우덴시설]

제171조 ① (보우덴施設에 收容) 카나다 또는 州法律 위반행위로 收容宣告에 의하여 一般矯導所의 어느 곳에 수용된 자는 矯導所 調査官 또는 副知事로부터 이에 관한 權限을 부여받은 기타 公務員이 署名한 令狀에 의하여 그에게 본래 선고된 收容期間의 미경과 기간을 그곳에 收容을 위하여 일반교도소에서 보우덴施設 또는 權限이 부여된 施設에 이송될 수 있다.

② (이곳에서의 收容) 이 자는 이 때부터 중간에 適法하게 釋放되거나 移送되지 아니하는 한 이 期間의 殘期를 위하여 보우덴施設 또는 기타 權限이 부여된 施設에 수용되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 보우덴施設 또는 기타 權限이 부여된 施設의 모든 規則과 規定이 적용된다.

제172조 (犯罪者의 收容) 보우덴施設 또는 權限이 부여된 施設의 長 또는 矯導官은 경우에 따라 이와같이 移送된 犯罪者와 그곳에 收容宣告된 것이 적법하게 확인된 犯罪者를 引受하여야 하고 收容宣告된 기간이 종료되거나 기타 假釋放 또는 법에 따라 釋放될 때까지 각 施設의 모든 規則과 規定 그리고 規律에 따라 그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73조 (收容者의 勞役) 副知事는 수시로 이곳 규정된 바와 같이 收容되었거나 그곳에서의 수용이 宣告되었거나 그곳으로의 移送된 犯罪者 누구에게나 보우덴施設 또는 기타 권한이 인정된 시설의 밖에서 특수

Institution or other certified institution of any of the prisoners confined or sentenced to be imprisoned therein or transferred thereto, as herein provided. R.S., c. 217, s. 172.

Transfer of offenders

174. The inspector of gaols, the superintendent or warden of the Bowden Institution or other certified institution, or such other officer as is authorized by the Lieutenant Governor, as the case may be, may from time to time, by warrant, direct the removal of any offender from the Bowden Institution or other certified institution to any of the common gaols of the Province or to any other certified institution within the Province. R.S., c. 217, s. 173.

한 作業 또는 義務·勞役의 권한을 부여·지시 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174조 (犯罪者의 移送) 矯導所의 調査官, 보우덴시설 또는 기타 權限이 부여된 시설의 所長, 管理者 또는 副知事로부터 권한이 부여된 기타 公務員은 경우에 따라 수시로 犯罪者를 보우덴施設 또는 기타 권한이 부여된 시설에서 州의 一般矯導所의 어느 곳 또는 州안의 기타 權限이 부여된 施設에 移送할 것을 指示할 수 있다.

第110輯　外國 矯正關係法令集 (II)

1988. 12. 5 印刷
1988. 12. 20 發行

非賣品

編輯및
發　行　**法務部矯政局**

印　刷　**永登浦矯導所**

政刊委審議畢

GOVP1199221725

法務資料 第111輯

外國 矯正關係法令集(Ⅲ)

寄贈
一九85年1月13日
寄贈本

法　務　部

目次

◇ 英　國 行刑法　3
◇ 西　獨 行刑法　51
◇ 스위스 矯正關係法令　167

CONTENTS

PART I. ENGLAND

THE PRISON ACT 1952

Central administration 2
Visting committees and boards of visitors 4
Prison officers 6
Confinement and treatment of prisoners 10
Length of Sentence, release on licence and temporary discharge 16
Discharged prisoners 20
Provision, maintenance and closing of prisons 20
Offences 26
Remand centres, detention centres and Borstal institutions 28
Rules for the management of prisons and other institutions. 36
Miscellaneous 38
Supplemental 40

PART II. GERMANY

STRAFVOLLZUGSGESETZ

Erster Abschnitt Anwendungsbereich 50
Zweiter Abschmitt Vollzug der Freiheitsserafe 50
Ester Titel Grundsätze 50
Zweiter Titel Planung des Vollzuges 52
Dritter Titel Unterbringung und Ernährung des Gefangenen 58
Viertel Titel Besuche, Schriftwechsel Sowie Urlanb, Ausgang und Ausfuhrüng aus besonderem Anlaß 62
Fünftel Titel Arbeit, Ausbildung und Weiterbildung 72

目　　次

제 1 부　英　　國

行　刑　法

제 1 장　中央行政 …… 3
제 2 장　巡廻委員會와 訪問者委員會 …… 5
제 3 장　矯導官 …… 7
제 4 장　收容者의 拘禁과 處遇 …… 9
제 5 장　有罪判決의 期間, 許可證釋放, 一時的釋放 …… 17
제 6 장　釋放된 收容者 …… 21
제 7 장　矯導所의 準備·維持·廢鎖 …… 21
제 8 장　違反行爲 …… 27
제 9 장　少年拘置所, 少年短期教化院, 보스탈施設 …… 29
제10장　矯導所 其他 施設管理를 위한 規則 …… 37
제11장　雜　則 …… 39
補　則 …… 41

제 2 부　西　　獨

行　刑　法

제 1 장　適用範圍 …… 51
제 2 장　自由刑의 執行 …… 51
　제 1 절　執行의 原則 …… 51
　제 2 절　執行計劃의 樹立 …… 53
　제 3 절　受刑者의 收容 및 給食 …… 59
　제 4 절　特別한 原因에 의한 休假, 外出 및 同伴外出과 接見, 文書交換 …… 63
　제 5 절　作業·教育 및 補習教育 …… 73

Sechster Titel Religionsausübung 84
Siebter Titel Gesundheitsfürsorge 84
Achter Titel Freizeit 90
Neunter Titel Soziale Hilfe 92
Zehnter Titel Besondere Vorschriften für den Frauenstrafvollzug 94
Elfter Titel Sicherheit und Ordnung 96
Zwölfter Titel Unmittelbarer Zwang 104
Dreizehnter Titel DisziplinarmaBnahmen 108
Vierzehnter Titel Rechtsbehelfe 114
Fünfzehnter Titel Strafvollstreckung und Undersuchungshaft 122
Sechzehnter Titel Sozialtherapeutische Anstalten 124
Dritter Abschnitt Besondere Vorschriften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126
Erster Titel Sicherungsverwahrung 126
Zweiter Titel Unterbringung in einem psychiatrischen Krankenhaus und in einer Entziehungsanstalt 128
Vierter Abschnitt Vollzugsbehören 130
Erster Titel Arten und Einrichtung der Justizvollzugsanstalten 130
Zweiter Titel Aufsicht über die Justizvollzugsanstalten 134
Dritter Titel Innerer Aufbau der Justizvollzugsanstalten 136
Vierter Titel Anstaltsbeiräte 140
Fünfter Titel Kriminologische Forschung im Strafvollzug 140
Fünter Abschnitt Schlußvorschriften 142
Erster Titel Vollzug des Strafarrestes in Justizvollzugsanstalten 142
Zweiter Titel Vollzug von Ordnungs-, Sicherungs-, Zwangs- und Erzwingungshaft 144
Dritter Titel Arbeitsentgelt in Jugendstrafanstalten und im Vollzug der Untersuchungshaft 144
Vierter Titel Unmittelbarer Zwang in Justizvollzugsanstalten 146
Fünfter Titel Anpassung des Bundesrechts 148
Sechster Titel Sozial-und Arbeitslosenversicherung 148

제 6 절 宗教行使 ……85
제 7 절 衛生保護 ……85
제 8 절 自由時間 ……91
제 9 절 社會的 扶助 ……93
제10절 女子의 刑執行을 위한 特則 ……95
제11절 安全 및 秩序 ……97
제12절 直接強制 ……105
제13절 懲罰措置 ……109
제14절 法律上의 救濟手段 ……115
제15절 刑執行 및 未決拘禁 ……123
제16절 社會治療施設 ……125

제 3 장 自由를 剝奪하는 矯正 및 保安處分의 執行에 관한 特別規定 ……127
제 1 절 保安拘禁 ……127

제 2 절 精神病院收容 ……129
제 4 장 執行官廳 ……131
제 1 절 矯導所의 種類 ……131
제 2 절 矯導所 監督 ……135
제 3 절 矯導所의 內部構成 ……137
제 4 절 矯導所 顧問會 ……141
제 5 절 行刑上의 刑事學研究 ……141
제 5 장 雜 則 ……143
제 1 절 矯導所에서의 留置執行 ……143

제 2 절 秩序拘禁, 保護拘禁, 強制拘禁 및 強制를 위한 拘禁의 執行 ……145

제 3 절 少年院 및 未決拘禁執行에 있어서의 勞賃 ……145
제 4 절 矯導所에의 直接強制 ……147
제 5 절 聯邦法의 調和 ……149
제 6 절 社會保險 및 失業保險 ……149

Siebter Titel Einschränkung von Grundrechten. Berlin-Klausel. Inkrafttreten 148

Verordnung über die Vergütungsstufen des Arbeitsentgelts und der Ausbildungsbeihilfe nach dem Strafvollzugsgesetz 158

PART III. SWISS

STRAFVOLLZUG

Bundesgesetz über die Leistungen des Bundes für den Straf- und Massnahmenvollzug 166

1. Abschnitt: Zweck 166
2. Abschnitt: Baubeiträge 166
3. Abschnitt: Betriebsbeiträge 170
4. Abschnitt: Beiträge an Modellversuche 172
5. Abschnitt: Gemeinsame Bestimmungen 172
6. Abschnitt: Organisation und Verfahren 174
7. Abschnitt: Information, Dokumentation und Statistik. 176
8. Abschnitt: Schlussbestimmungen 176

Verordnung über die Leistungen des Bundes für den Straf- und Massnahmenvollzug 180

1. Abschnitt: Baubeiträge 181
2. Abschnitt: Betriebsbeiträge 182
3. Abschnitt: Beiträge an Modellversuche 186
4. Abschnitt: Bemessung der Beiträge 186
5. Abschnitt: Im Sozialverhalten erheblich gestörte Kinder und Jugendliche 188
6. Abschnitt: Organisation und Verfahren 190
7. Abschnitt: Schlussbestimmungen 194

Konkordat über die Kosten des Strafvollzugs 196

Erster Teil: Allgemeine Grundsätze 196

I. Kostentragung bei Freibeitsstrafen 196

제 7 절 基本權의 制限, 베르린條項 施行 ……149

行刑法에 의거한 勞賃 및 職業養成期間 중 特別扶養手當의 報酬等級에 관한 規則 ……159

제3부 스 위 스

矯正關係法令

刑罰 및 處分의 執行을 위한 聯邦給付에 관한 聯邦法律……167

제1장 目的 ……167
제2장 建築分擔金 ……167
제3장 經營分擔金 ……171
제4장 模型試驗分擔金 ……173
제5장 共通規定 ……173
제6장 組織 및 節次 ……175
제7장 情報提供, 文書 및 統計……177
제8장 經過規定 ……177

刑罰 및 處分의 執行을 위한 聯邦給付에 관한 命令 ……181

제1장 建築分擔金 ……181
제2장 經營分擔金 ……183
제3장 模型試驗分擔金 ……187
제4장 分擔金算定定 ……187
제5장 社會的 行態가 철저히 跛行的인 兒童 및 少年 ……189
제6장 組織 및 節次 ……191
제7장 經營規定 ……195

行刑費用에 관한 政教條約 ……197

제1장 總 則 ……197
제1절 自由刑執行의 費用負擔 ……197

II. Kostenverteilung bei Massnahmen 198
Zweiter Teil: Ermittlungs- und Berechnungsgrundsätze 202
Dritter Teil: Verfahren und Handhabung des Konkordates 204
I. Urteil, Vollzug der Massnahmen und Kostenabrechnung 204
II. Handhabung des Konkordates 208
Vierter Teil: Schlussbestimmungen 210

Vereinbarung
der Kantone Zürich, Glarus, Schaffhausen, Appenzell A. Rh., Appenzell I. Rh., St. Gallen, Graubünden und Thurgau
über den Vollzug freiheitsentziehender Strafen und Massnahmen gemäss Schweizerischem Strafgesetzbuch und Versorgungen gemäss eidgenössischem und kantonalem Recht 214
I. Organization 214
II. Aufteilung der Vollzugsaufgaben 216
III. Durchführung der Vereinbarung 224
IV. Schlussbestimmungon 226

Konkordat
über den Vollzug von Strafen und Massnahmen nach dem Schweizerischen Strafgesetzbuch und dem Recht der Kantone der Nordwest- und Innerschweiz 230
I. Geltungsbereich 230
II. Konkordatsanstalten 232
A. Die Vorhandenen Konkordatsanstalten 232
B. Die Vorgesehenen Konkordatsanstalten 234
C. Weitere Konkordatsanstalten 234
III. Einweisung und Aufnahme der Verurteilten 234
IV. Einweisungsverfahren 236
V. Der vollzug in den Konkordatsanstalten 236
VI. Konferenz der Kantone der Region 240
VII. Weitere Bestimmungen 240

제2절 處分執行의 費用負擔 ……199
제2장 調査 및 算定原則 ……203
제3장 條約의 節次後 運營 ……205
제1절 判決, 處分의 執行 및 費用減額 ……205
제2절 條約의 運營 ……209
제4장 終結規定 ……211

스위스 刑法에 따른 自由剝奪刑 및 處分의 執行과 聯邦法 및 州法에 따른 援護에 관한 쮜리히, 그라루스, 샤프하우젠, 아펜젤 A.R.h., 아펜젤I.R.h., 갈렌, 그라우뷔덴 및 투르고우州 協定 ……215

제1장 組 織 ……215
제2장 執行職務의 分配 ……217
제3장 協定의 施行 ……225
제4장 終結規定 ……227

스위스 刑法과 西部 및 中部 스위스法에 의한 刑罰 및 處分의 執行에 관한 政教條約 ……231

제1장 適用範圍 ……231
제2장 條約上의 施設 ……233
제1절 現存하는 條約上의 施設 ……235
제2절 豫見되는 條約上의 施設 ……235
제3절 其他 條約上의 施設 ……235
제3장 有罪判決 받은 자의 配定 및 收容 ……235
제4장 配定節次 ……237
제5장 條約上 施設에서의 執行 ……237
제6장 地域州 會議 ……241
제7장 其他規定 ……241

Westschweizerisches Konkordat über den Vollzug der Strafen und Massnahmen gegenüber Erwachsenen 244

I. Anwendungsbereich 244

II. Konkordatsanstalten 246

A. Bestehende Anstalten 246

B. Geplante Anstalten 246

C. Wie die bestehenden Anstalten auszurusten sind 250

D. Strafen und Massnahmen, deren Vollzug nicht unter dieses Konkordat fallen 250

III. Einweisung und Aufnahme der Verurteilten 252

IV. Einweisungsverfahren 252

V. Straf-und Massnahmenvollzug in den Konkordatsantalten 254

VI. Westschweizerische Konferenz der in Gefängnisengelegenheiten zuständigen Kantonalen Behörden 258

VII. Verschiedene Bestimmungen 260

VIII. Teilweiser Beitritt des Kantons Tessin 260

Nachtrag zum Westschweizer Konkordat vom 21 November 1963 über den Vollzug von Strafen und Massnahmen gegenüber Erwachsenen . . . 264

成人에 대한 刑罰 및 處分의 執行에 관한 西스위스條約……245

제1장 適用範圍 ……245
제2장 條約上 施設 ……247
제1절 現存하는 施設 ……247
제2절 計劃된 諸施設 ……249
제3절 現存施設의 裝備 ……251
제4절 그 執行이 이 條約의 對象이 아닌 刑罰과 處分 ……251

제3장 有罪判決을 받은 者의 配定 및 收容……253
제4장 配定節次 ……253
제5장 條約上 施設에서의 刑罰 및 處分의 執行……255
제6장 矯導所事務의 州管轄局間의 西스위스會議 ……259

제7장 罰 則 ……261
제8장 테씬州의 部分加入 ……261

成人에 대한 刑罰 및 處分의 執行에 관한 西스위스條約……265

제 1 부

英國

THE PRISON ACT 1952

(15 & 16 Geo. 6 and 1 Eliz. 2C. 52)

Central administration
Visiting committees and boards of visitors
Prison officers
Confinement and treatment of prisoners
Length of sentence, release on licence and temporary discharge
Discharged prisoners
Provision, maintenance and closing of prisons
Offences
Remand centres, detention centres and Borstal institutions
Rules for the management of prisons and other institutions
Miscellaneous
Supplemental

Central administration

1. General control over prisons

All powers and jurisdiction in relation to prisons and prisoners which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Prison Act, 1877 were exercisable by any other authority shall,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ct, be exercisable by the Secretary of State.

2. *(Rep. by the Prison Commissioners Dissolution Order* 1963, *S.I.* 1963 No. 597.)

3. Officers and servants of Prison Commissioners

(1) The Secretary of State [may,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appoint such officers and servants as he] may, with the sanction of the Treasury as to number determine.

(2) There shall be paid out of moneys provided by Parliament to [the officers and servants appointed under this section] such salaries as the Secretary of State may with the consent of the Treasury determine.

4. General duties of Prison Commissioners

(1)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have the general superintendence of

行 刑 法

제1장 中央行政 (제1조～제5조)
제2장 巡廻委員會와 訪問者委員會 (제6조)
제3장 矯導官 (제7조～제11조)
제4장 收容者의 拘禁과 處遇 (제12조～제23조)
제5장 有罪判決의 期間, 許可證釋放, 一時的 釋放 (제24조～제28조)
제6장 釋放된 收容者 (제29조～제30조)
제7장 矯導所의 準備·維持·廢鎖 (제33조～제38조)
제8장 違反行爲 (제39조～제42조)
제9장 少年拘置所, 少年短期教化院, 보스탈施設 (제43조～제46조)
제10장 矯導所 其他 施設管理를 위한 規則 (제47조)
제11장 雜 則 (제48조～제50조)
補 則 (제51조～제55조)

제1장 中央行政

제1조(矯導所에 대한 一般的 統制) 1877년의 行刑法施行 이전에 다른 機關에 의하여 行使되었던 矯導所와 收容者에 관한 모든 權限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해 內務相이 행사한다.

제2조 (1963년의 矯導所監督官 解散命令 제1조에 의해 廢止)

제3조 (矯導所監督官의 管理와 雇傭人) ① 內務相은 이 법의 적용을 위하여 財務省의 認可에 따라 결정한 数의 官吏와 雇傭人을 任命할 수 있다.

② 이 조에 의하여 任命된 官吏와 雇傭人에게는 內務相이 財務省의 同意를 얻어 결정한 俸給을 의회가 설치한 費用에서 지급된다.

제4조 (矯導所監督官의 一般的 義務) ① 內務相은 교도소에 대한 一般的 監督

prisons and shall make the contracts and do the other acts necessary for the maintenance of prisons and the maintenance of prisoners.

(2) [Officers of the Secretary of State duly authorised in that behalf] shall visit all prisons and examine the state of buildings, the conduct of officers, the treatment and conduct of prisoners and all other matters concerning the management of prisons and shall ensure that the provisions of this Act and of any rules made under this Act are duly complied with.

(3) [The Secretary of State and his officers] may exercise all powers and jurisdiction exercisable at common law, by Act of Parliament, or by charter by visiting justices of a prison.

5. Annual report of Prison Commissioners

[(1)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issue an annual report on every prison and shall lay every such report before Parliament.]

(2) The report shall contain—

(a) a statement of the accommodation of each prison and the daily average and highest number of prisoners confined therein;

(b) such particulars of the work done by prisoners in each prison, including the kind and quantities of articles produced and the number of prisoners employed, as may in the opinion of the Secretary of State give the best information to Parliament;

(c) a statement of the punishments inflicted in each prison and of the offences for which they were inflicted ...

Visting committees and boards of visitors

6. Visiting committees and boards of visitors

(1) Rules made under section forty-seven of this Act shall provide for the constitution, for prisons to which persons may be committed directly by a court, of visiting committees consisting of justices of the peace appointed at such times, in such manner and for such periods as may be prescribed by the rules, by such courts of quarter sessions for counties or benches of magistrates for boroughs as the Secretary of State may by order direct.

(2)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appoint for every prison other than a prison

權을 가지며 矯導所의 維持와 收容者의 給養에 필요한 契約을 締結하고 기타 이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

② 適法하게 權限을 부여받은 內務相의 官吏는 모든 矯導所를 訪問하여 건물의 상태, 官吏의 行爲, 收容者의 處遇와 行爲 그리고 矯導所의 官吏에 관한 그밖의 모든 사항을 檢査하며, 이 법 및 이 법에 의해 제정된 規則의 規定이 적법하게 遵守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內務相과 그의 官吏는 普通法과 議會의 制定法 또는 교도소 巡廻判事의 判決書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모든 權限과 管轄權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조 (矯導所의 年例報告書) ① 內務相은 각 矯導所에 관한 年例報告書를 발행하여 이를 議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당해 報告書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각 교도소의 收容能力 그 안에 拘禁된 收容者의 일일 평균수 및 최고 收容者数에 관한 陳述
2. 각 矯導所에서 생산된 品目의 種類와 数量 그리고 作業한 收容者의 数를 포함하여 內務相의 意見에 비추어 議會에 최선의 情報를 提供할 수 있는 收容者가 행하는 作業의 細目
3. 각 矯導所에서 施行한 處罰과 당해 처벌을 받은 違反行爲에 관한 陳述

제2장 巡廻委員會와 訪問者委員會

제6조 (巡廻委員會와 訪問者委員會) ① 이 법 제47조에 의하여 制定된 規則은 사람들이 法院에 의해 직접적으로 拘禁될 수 있는 矯導所을 위하여 그 規則에 規定된 와 方法 그리고 기간동안 내무상이 命令으로써 指示할 수 있는 州下級法院이나 特別市 行政長官에 의하여 임명된 治安判事로서 구성되는 巡廻委員會의 구성을 規定하여야 한다.

② 內務相은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矯導所 이외의 교도소을 위하여 최소한 2인

mentioned in subsection (1) of this section a board of visitors of whom not less than two shall be justices of the peace.

(3) Rules made as aforesaid shall prescribe the functions of visiting committees and boards of visitors and shall among other things require members to pay frequent visits to the prison and hear any complaints which may be made by the prisoners and report to the Secretary of State any matter which they consider it expedient to report; and any member of a visiting committee or board of visitors may at any time enter the prison and shall have free access to every part of it and to every prisoner.

(4) Rules made as aforesaid may require the board of visitors appointed for any prison to consider periodically the character, conduct and prospects of each of the prisoners sentenced to corrective training or preventive detention and to report to [the Secretary of State] on the advisability of his release on licence.

Prison officers

7. Prison officers

(1) Every prison shall have a governor, a chaplain and a medical officer and such other officers as may be necessary.

(2) Every prison in which women are received shall have a sufficient number of women officers; and if women only are received in a prison the governor shall be a woman.

(3) A prison which in the opinion of the Secretary of State is large enough to require it may have a deputy governor or an assistant chaplain or both.

(4) The chaplain and any assistant chaplain shall be a clergyman of the Church of England and the medical officer shall be duly registered under the Medical Acts.

(5) *(Rep. by the Prison Commissioners Dissolution Order* 1963, *S.I. 1963* No. 597.)

8. Powers of prison officers

Every prison officer while acting as such shall have all the powers, authority, protection and privileges of a constable.

이상이 治安判事로 구성되는 訪問者委員會를 任命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제47조에 의하여 制定된 規則은 巡廻委員會와 방문자위원회의 職務를 規定하며, 특히 委員들에게 교도소에의 빈번한 巡廻訪問과 수용자들의 不滿聽取 및 그들이 급박하게 報告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事項을 內務相에게 보고를 요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巡廻나 訪問者委員會의 委員은 누구나 언제라도 矯導所에 出入할 수 있으며, 교도소의 모든 施設 및 각 收容者에게 자유로이 接近할 수 있다.

④ 앞서와 같이 制定된 規則은 矯導所을 위하여 任命된 訪問者委員會에 대하여 矯正訓練이나 豫防拘禁에 처하여진 收容者 개개인의 性格·行動 그리고 可能性을 週期的으로 고찰하여 內務相에게 釋放許可證의 권장에 관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矯 導 官

제7조 (矯導官吏) ① 모든 矯導所에는 所長, 敎誨師, 醫療官吏 기타 필요한 官吏를 두어야 한다.

② 女子가 收容된 모든 矯導所는 충분한 数의 女子官吏를 保有하여야 하며 所長은 여자이어야 한다.

③ 內務省의 意見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判斷될 정도의 큰 矯導所에는 副所長이나 敎誨師補 또는 이들 양자 모두를 둘 수 있다.

④ 敎誨師와 敎誨師補는 영국 國敎會의 牧師이어야 하며 醫療官吏는 醫療法에 따라 적법하게 登錄되어 있어야 한다.

⑤ 1963년의 矯導所監督官 解散命令 제1조에 의하여 廢止

제8조 (矯導官吏의 權限) 모든 矯導官吏는 그가 官吏로서 행위하는 한 警官의 모든 權限·權威·保護 그리고 特權을 갖는다.

9. Exercise of officer of chaplain

(1) A person shall not officiate as chaplain of two prisons unless the prisons are within convenient distance of each other and are together designed to receive not more than one hundred prisoners.

(2) Notice of the nomination of a chaplain or assistant chaplain to a prison shall, within one month after it is made, be given to the bishop of the diocese in which the prison is situate; and the chaplain or assistant chaplain shall not officiate in the prison except under the authority of a licence from the bishop.

10. Appointment of prison ministers

(1) Where in any prison the number of prisoners who belong to a religious denomination other than the Church of England is such as in the opinion of the Secretary of State to require the appointment of a minister of that denomination, the Secretary of State may appoint such a minister to that prison.

(2) The Secretary of State may pay a minister appointed under the preceding subsection such remuneration as he thinks reasonable.

(3) [The Secretary of State] may allow a minister of any denomination other than the Church of England to visit prisoners of his denomination in a prison to which no minister of that denomination has been appointed under this section.

(4) No prisoner shall be visited against his will by such a minister as is mentioned in the last preceding subsection; but every prisoner not belonging to the Church of England shall be allowed, in accordance with the arrangements in force in the prison in which he is confined, to attend chapel or to be visited by the chaplain.

(5) The governor of a prison shall on the reception of each prisoner record the religious denomination to which the prisoner declares himself to belong, and shall give to any minister who under this section is appointed to the prison or permitted to visit prisoners therein a list of the prisoners who have declared themselves to belong to his denomination; and the minister shall not be permitted to visit any other prisoners.

11. Ejectment of prison officers and their families refusing to quit

(1) Where any living accommodation is provided for a prison officer or his family by virtue of his office, then, if he ceases to be a prison officer or is suspended from office or dies, he, or, as the case may be, his family, shall quit the accommodation when required to do so by notice of [the Secretary of State].

제9조 (敎誨師職務의 遂行) ① 2개 교도소가 서로 근접한 거리내에 있지 아니하고 또한 收容者가 1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께 設計된 경우가 아닌 한 1인이 2개의 矯導所의 敎誨師가 될 수 없다.

② 敎誨師나 敎誨師補의 任命 후 1개월내에 당해 矯導所가 위치하고 있는 管區의 主敎에게 그 任命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교회사나 교회사보는 主敎로부터 許可를 받지 아니하면 당해 矯導所에서 職務遂行을 하지 못한다.

제10조 (非英國 國敎會 聖職者의 任命) ① 어느 矯導所에 英國 國敎會 아닌 다른 宗派 소속의 收容者의 数가 內務相의 의견에 비추어 그 宗派 聖職者의 任命을 요구할 정도라면 內務相은 당해 교도소에 그러한 聖職者를 任命할 수 있다.

② 內務相은 전항에 의해 任命된 聖職者에게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報酬를 지급할 수 있다.

③ 內務相은 英國國敎會 아닌 宗派의 聖職者에게 이 조에 의해 任命된 당해 宗派의 성직자가 없는 矯導所의 訪問을 허용할 수 있다.

④ 어느 收容者도 自己意思에 반하여 전항에 언급된 聖職者의 訪問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英國 國敎誨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收容者는 당해 矯導所에서 效力을 갖고 있는 규정에 따라 敎誨師의 禮拜에 참여하거나 그의 訪問을 받을 수 있다.

⑤ 矯導所長은 각 收容者의 接受를 받아 그가 속하는 宗派를 記錄하여야 하며 이 조에 의하여 任命되거나 수용자 방문이 허용된 聖職者에게 그의 宗派에 속한다고 언명한 收容者名簿를 넘겨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성직자는 他宗派의 收容者를 訪問할 수 없다.

제11조 (退去를 不應하는 矯導官吏와 그 家族의 强制退去) ① 矯導官吏나 그 가족이 公職을 이유로 生活施設을 제공받은 경우에, 그가 官職을 辭職하거나 停職되거나 死亡한다면 그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은 內務相의 通知에 의해 그 施設에서 退去하도록 要求받은 때에는 당해 施設에서 退去하여야 한다.

(2) Where a prison officer or the family of a prison officer refuses or neglects to quit the accommodation forty-eight hours after the giving of such a notice as aforesaid, any two justices of the peace, on proof made to them of the facts authorising the giving of the notice and of the service of the notice and of the neglect or refusal to comply therewith, may, by warrant under their hands and seals, direct any constable, within a period specified in the warrant, to enter by force, if necessary, into the accommodation and deliver possession of it to [a person acting on behalf of the Secretary of State].

Confinement and treatment of prisoners

12. Place of confinement of prisoners

(1) A prisoner, whether sentenced to imprisonment or committed to prison on remand or pending trial or otherwise, may be lawfully confined in any prison.

(2) Prisoners shall be committed to such prisons as the Secretary of State may from time to time direct; and may by direction of the Secretary of State be removed during the term of their imprisonment from the prison in which they are confined to any other prison.

(3) A writ, warrant or other legal instrument addressed to the governor of a prison and identifying that prison by its situation or by any other sufficient description shall not be invalidated by reason only that the prison is usually known by a different description.

13. Legal custody of prisoner

(1) Every prisoner shall be deemed to be in the legal custody of the governor of the prison.

(2) A prisoner shall be deemed to be in legal custody while he is confined in, or is being taken to or from, any prison and while he is working, or is for any other reason, outside the prison in the custody or under the control of an officer of the prison [and while he is being taken to any place to which he is required or authorised by or under this Act to be taken, or is kept in custody in pursuance of any such requirement or authorisation].

② 矯導官吏나 그 家族이 전항의 通知를 받은 후 48시간내 에 施設에서 退去하기를 拒否하거나 懈怠한 경우에는 2인의 [illegible]는 누구나 通知가 정당하다는 事實과 통지가 행하여졌다는 사실 그리고 거기에 따르기를 거부 내지 해태하였다는 사실이 證明되면, 그들 判事의 署名捺印에 의한 令狀에 의해 警官에게 당해 令狀에 명시된 기간내에 필요하다면 강제로 그 시설에 들어가 그 所有權을 내무상을 代理하는 자에게 讓渡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장 收容者의 拘禁과 處遇

제12조 (拘禁場所) ① 拘禁을 宣告받거나 再拘束 또는 訴訟契約이나 기타 어떤 理由이거나를 불문하고 收容者는 어떠한 矯導所에라도 合法的으로 수용될 수 있다.

② 收容者들은 때때로 內務相이 指示하는 矯導所에 수용되어야 한다. 또한 內務相의 지시에 의하여 그들의 拘禁期間동안 구금되어 있던 矯導所에서 다른 矯導所로 移送될 수 있다.

③ 矯導所의 位置나 기타 다른 충분한 記載事項에 의해 당해 矯導所임을 증명하는 교도소장에게 송부된 令狀, 保證書 기타 다른 法律文書는 당해 교도소가 통상 다른 설명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理由만으로 無效가 되지는 아니한다.

제13조 (收容者의 法的 拘禁) ① 각 收容者는 矯導所長의 法的 拘禁下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② 收容者가 矯導所에 拘禁되어 있거나 교도소로 또는 교도소로부터 移送 중인 동안 그리고 作業中이거나 다른 理由로 교도소 밖에서 矯導官吏의 拘禁 또는 統制하에 있는 동안 그리고 이 법에 의해 移送이 要求되는 장소에로의 이송 중이거나 그러한 요구에 따라 拘禁中인 동안에는 收容者는 法的 拘禁下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4. Cells

(1)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satisfy himself from time to time that in every prison sufficient accommodation is provided for all prisoners.

(2) No cell shall be used for the confinement of a prisoner unless it is certified by an inspector that its size, lighting, heating, ventilation and fittings are adequate for health and that it allows the prisoner to communicate at any time with a prison officer.

(3) A certificate given under this section in respect of any cell may limit the period for which a prisoner may be separately confined in the cell and the number of hours a day during which a prisoner may be employed therein.

(4) The certificate shall identify the cell to which it relates by a number or mark and the cell shall be marked by that number or mark placed in a conspicuous position; and if the number or mark is changed without the consent of an inspector the certificate shall cease to have effect.

(5) An inspector may withdraw a certificate given under this section in respect of any cell if in his opinion the conditions of the cell are no longer as stated in the certificate.

(6) In every prison special cells shall be provided for the temporary confinement of refractory or violent prisoners.

15. *(Rep. by the Criminal Justice Act* 1967, s. 66 (2), s. 103 (2) *and Sch. 7, Part I.)*

16. Photographing and measuring of prisoners

The Secretary of State may make regulations as to the measuring and photographing of prisoners and such regulations may prescribe the time or times at which and the manner and dress in which prisoners shall be measured and photographed and the number of copies of the measurements and photographs of each prisoner which shall be made and the persons to whom they shall be sent.

17. Painful tests

The medical officer of a prison shall not apply any painful tests to a prisoner

제14조 (居室) ① 內務相은 각 矯導所에 모든 收容者를 위하여 충분한 施設이 준비되어 있는 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居室의 크기, 밝기, 溫度, 換氣狀態 그리고 內部施設이 건강에 적절하며 또한 收容者가 언제라도 矯導官吏와 通話할 수 있다는 것이 調査官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居室도 拘禁에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어떤 居室에 관하여 이 조에 의해 발행된 確認書는 수용자가 당해 居室에 獨居收容될 수 있는 期間과 그 안에서 보낼 수 있는 1일 時間数를 제한할 수 있다.

④ 確認書는 號数나 符號에 의하여 당해 確認書가 효력을 미치는 居室을 밝혀야 하며, 당해 居室은 현저하게 표시된 號数나 符號에 의해 구분되어야 한다. 또한 호수나 부호가 調査官의 승락없이 變更된다면 그 確認書는 效力을 상실하게 된다.

⑤ 調査官은 그의 意見에 비추어 어떤 居室의 상태가 더 이상 確認書에 기재된 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조에 의해 당해 居室에 관하여 발행된 確認書를 철회할 수 있다.

⑥ 각 矯導所에는 處遇하기가 힘들거나 포악한 收容者들의 一時的 拘禁을 위하여 特別居室이 준비되어야 한다.

제15조 1967년의 刑事司法法 제66조 제2항, 제103조 제2항 및 제1부 〈표7〉에 의하여 폐지

제16조 (收容者의 写眞撮影과 身體檢査) 內務相은 수용자의 写眞撮影과 身體檢査에 관한 內規를 制定할 수 있으며, 그러한 內規에는 수용자가 신체검사를 받거나 사진촬영을 할 時期와 回數, 方法, 服裝 그리고 각 수용자에 관하여 작성되어야 할 身體檢査表와 사진의 매수 및 그것이 우송되어야 할 사람이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제17조 (苦痛테스트) 矯導所의 醫療官吏는 內務相이나 巡廻委員會 또는 경

for the purpose of detecting malingering or for any other purpose except with the permission of [the Secretary of State] or the visiting committee or, as the case may be, board of visitors.

18. *(Rep. by the Criminal Justice Act* 1967, s. 65, s. 103 (2) *and Sch. 7, Part I.)*

19. Right of justice to visit prison

(1) A justice of the peace for any county or borough may at any time visit any prison in that county or borough and any prison in which a prisoner is confined in respect of an offence committed in that county or borough, and may examine the condition of the prison and of the prisoners and enter in the visitors' book, to be kept by the governor of the prison, any observations on the condition of the prison or any abuses.

(2) Nothing in the preceding subsection shall authorise a justice of the peace to communicate with any prisoner except on the subject of his treatment in the prison, or to visit any prisoner under sentence of death.

(3) the governor of every prison shall bring any entry in the visitor's book to the attention of the visiting committee or the board of visitors at their next visit.

20. Duty of governor to deliver calendar of prisoners

The governor of every prison in which persons committed for trial before a court of assize or quarter sessions are confined shall deliver to that court a calendar of those persons.

21. Expenses of conveyance to prison

A prisoner shall not in any case be liable to pay the cost of his conveyance to prison.

22. Removal of prisoners for judicial and other purposes

(1) Rules made under section forty-seven of this Act may provide in what manner an appellant within the meaning of [Part I of the Criminal Appeal Act 1968], when in custody, is to be taken to, kept in custody at, and brought back from, any place at which he is entitled to be present for the purposes of that

우에 따라서는 訪問者委員會의 許可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병발견이나 기타 다른 목적을 위하여 수용자에게 어떠한 고통테스트도 실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1967년의 刑事司法法 제65조, 제103조 제2항 그리고 제1항 〈표7〉에 의해 폐지

제19조 (判事의 矯導所訪問權) ① 州나 特別市의 治安判事는 언제라도 당해 州나 特別市에 있는 矯導所와 당해 주나 특별시에서 犯하여진 犯罪로 인하여 수용자가 拘禁되어 있는 교도소를 訪問할 수 있으며, 그 矯導所와 收容者들의 狀態를 檢査하여 矯導所長이 보관하고 있는 訪名錄에 교도소의 상태에 관한 意見이나 弊害를 기록할 수 있다.

② 前項의 경우에 治安判事는 교도소에서의 處遇에 관한 問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收容者와 對話를 하거나 死刑宣告를 받은 어떠한 수용자를 訪問할 權限은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다.

③ 각 矯導所長은 訪名錄에 기록된 사항을 巡廻委員會나 訪問者委員會의 차기 訪問時 그들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 (矯導所長의 收容者 日程傳達義務) 巡廻裁判所나 下級法院에서의 裁判을 위해 拘禁된 자들이 구금되어 있는 矯導所의 所長은 당해 法院에 이들의 日程을 전달하여야 한다.

제21조 (移送費用) 收容者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의 移送費用을 지불할 責任이 없다.

제22조 (司法的 其他 目的을 위한 收容者의 移送) ① 이 법 제47조에 의하여 制定된 規則은 1968년의 刑事抗訴法 제1장의 의미에 포함되는 抗訴人이 拘禁될 때와 拘禁中에 있을 때, 위 법의 목적을 위해 出席할 權利가 있는 장소나,

Act, or any place to which the Court of Criminal Appeal or any judge thereof may order him to be taken for the purpose of any proceedings of that court.

(2) The Secretary of State may—

(a) . . .

(b) if he is satisfied that a person so detained requires medical or surgical treatment of any description, direct him to be taken to a hospital or other suitable place for the purpose of the treatment;

and where any person is directed under this subsection to be taken to any place he shall, unless the Secretary of State otherwise directs, be kept in custody while being so taken, while at that place, and while being taken back to the prison in which he is required in accordance with law to be detained.

23. Power of constable etc. to act outside his jurisdiction

For the purpose of taking a person to or from any prison under the order of any authority competent to give the order a constable or other officer may act outside the area of his jurisdiction and shall notwithstanding that he is so acting have all the powers, authority, protection and privileges of his office.

Length of sentence, release on licence and temporary discharge

24. Calculation of term of sentence

(1) In any sentence of imprisonment the word "month" shall, unless the contrary is expressed, be construed as meaning calendar month.

(2) *(Rep. by the Criminal Justice Act* 1961, s. 41 (2) *and Sch.* 5; *see now the Criminal Justice Act* 1961, s. 23 (3), p. 863, post.)

25. Remission for good conduct and release on licence of persons sentenced to terms of imprisonment

(1) Rules made under section forty-seven of this Act may make provision whereby, in such circumstances as may be prescribed by the rules, a person

刑事抗訴法院 또는 그 소속 法官이 당해 法院의 節次를 위해 移送할 것을 명한 장소에로의 移送이나 그러한 장소로부터의 出所를 어떠한 方法으로 할 것인가를 規定할 수 있다.

② 內務相은,

1. …
2. 만약 그와같이 拘禁된 자가 어떠한 종류의 內科的 또는 外科的 治療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한다면 內務相은 그러한 治療를 위하여 病院이나 기타 적절한 장소에로의 移送을 指示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항에 의하여 어떤 자가 어떤 장소에로의 移送을 指示받은 경우에 그는 內務相이 달리 指示하지 아니하는 한 移送 중인 동안 및 그 장소에 있는 동안 그리고 법에 따라 拘禁되어져야 할 矯導所로 되돌아가는 동안 拘禁되어 있어야 한다.

제23조 (管轄區域 밖에서 職務遂行 警官 등의 權限) 命令權限이 있는 官庁의 命令에 따라 矯導所로 또는 矯導所로부터 사람을 移送하기 위하여 警官이나 그밖의 官吏는 자기의 管轄區域 밖에서 행위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일지라도 그들은 自己職責上의 모든 權限·權威·保護 및 特權을 갖는다.

제5장 有罪判決의 期間, 許可證釋放, 一時的 釋放

제24조 (有罪判決期間의 計算) ① 拘禁에 處하는 判決에 있어서 "月"이라는 말은 反對의 言及이 없는 한 月歷上의 月을 의미하는 것으로 解釋된다.

② 1961년의 刑事司法法 제41조 제2항 및 〈표5〉에 의하여 폐지, 현재는 동법 제23조 제3항을 참조.

제25조 (拘禁에 處하여진 者의 善行을 理由로 한 免除와 許可證에 의한 釋放) ① 이 법 제47조에 의하여 制定된 規則은 당해 規則에 規定된 상황하에

serving a sentence of imprisonment for such a term as may be so prescribed may be granted remission of such part of that sentence as may be so prescribed on the ground of his industry and good conduct, and on the discharge of a person from prison in pursuance of any such remission as aforesaid his sentence shall expire.

(2)–(6) *(Rep. by the Criminal Justice Act* 1967, s. 103 (2) *and Sch. 7, Part I.)*

[(7) A person who is committed to prison in default of payment of a sum adjudged to be paid by a conviction shall be treated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1) of this section, but not for the purpose of subsection (2) thereof, as undergoing a sentence of imprisonment for the term for which he is committed, and consecutive terms of imprisonment shall be treated for all purposes of this section as one term.]

26, 27. *(Rep. by the Criminal Justice Act* 1967, s. 103 (2) *and Sch. 7, Part I.)*

28. Power of Secretary of State to discharge prisoners temporarily on account of ill health

(1) If the Secretary of State is satisfied that by reason of the condition of a prisoner's health it is undesirable to detain him in prison, but that, such condition of health being due in whole or in part to the prisoner's own conduct in prison, it is desirable that his release should be temporary and conditional only, the Secretary of State may, if he thinks fit, having regard to all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by order authorise the temporary discharge of the prisoner for such period and subject to such conditions as may be stated in the order.

(2) Where an order of temporary discharge is made in the case of a prisoner not under sentence, the order shall contain conditions requiring the attendance of the prisoner at any further proceedings on his case at which his presence may be required.

(3) Any prisoner discharged under this section shall comply with any conditions stated in the order of temporary discharge, and shall return to prison at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stated in the order, or of such extended period as may be fixed by any subsequent order of the Secretary of State, and if the prisoner fails so to comply or return, he may be arrested without warrant and taken back to prison.

(4) Where a prisoner under sentence is discharged in pursuance of an order of temporary discharge, the currency of the sentence shall be suspended from

서 그렇게 규정된 기간동안 宣告받은 拘禁을 服役한 자는 勤勉과 善行을 이유로 규정된 당해 有罪判決 부분의 免除를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할 수 있고 또한 前述의 免除에 의하여 矯導所에서 釋放된 경우에는 그의 有罪判決은 效力을 상실한다.

②—⑥ 1967년의 刑事司法法 제103조 제2항 및 제1장 〈표7〉에 의해 폐지

⑦ 罰金刑의 宣告를 받았으나 이를 納付하지 아니하여 矯導所에 留置된 자는 이 條 제2항의 目的이 아닌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그가 留置된 期間동안 拘禁刑의 執行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연속적인 拘禁期間들은 이 조를 위하여는 하나의 기간으로 간주된다.

제26조, 제27조 1967년의 刑事司法法 제103조 제2항 및 제1장 〈표7〉에 의하여 폐지

제28조 (收容者의 健康惡化로 인한 內務相의 一時的 釋放權限) ① 內務相이 收容者의 健康狀態를 이유로 矯導所에서의 拘禁이 바람직하지는 아니하나 그러한 건강상태가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矯導所에서의 收容者 자신의 行爲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釋放은 단지 一時的으로 그리고 條件을 붙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경우, 內務相은 그 경우의 모든 狀況을 존중하여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 命令에 의해 당해 명령에 언급된 기간동안의 一時的釋放을 許可하고 언급된 條件에 따르게 할 수 있다.

② 一時的 釋放命令이 有罪判決을 받지 아니한 收容者의 경우에 내려진 때에는 그 命令은 당해 수용자의 出席이 要求되는 後續節次에의 그의 출석을 요구하는 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이 조에 의해 釋放된 釋容者는 一時的 釋放命令에 언급된 條件에 따라야 하며, 당해 命令에 언급된 기간의 終了 또는 內務相의 後續命令에 정하여진 延長期間의 終了 후에는 矯導所에 복귀하여야 한다. 수용자가 조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복귀하지 아니하면 令狀없이 逮捕하거나 收容될 수 있다.

④ 有罪判決을 받은 收容者가 一時的 釋放命令에 따라 釋放된 경우 당해 有罪

the day on which he is discharged from prison under the order to the day on which he is received back into prison, so that the former day shall be reckoned and the latter shall not be reckoned as part of the sentence.

(5) 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affect the duties of the medical officer of a prison in respect of a prisoner whom the Secretary of State does not think fit to discharge under this section.

Discharged prisoners

29. *(Rep. by the Criminal Justice Act* 1961, ss. 21, 41 (2) *and Sch. 5.)*

30. Payments for discharged prisoners

The Secretary of State may make such payments to or in respect of persons released or about to be released from prison as he may with the consent of the Treasury determine.]

Provision, maintenance and closing of prisons

33. Power to provide prisons, etc.

(1) The Secretary of State may with the approval of the Treasury alter, enlarge or rebuild any prison and build new prisons.

(2) The Secretary of State may provide new prisons by declaring to be a prison any building or part of a building built for the purpose or vested in him or under his control.

(3) A declaration under this section may with respect to the building or part of a building declared to be a prison make the same provisions as an order under the next following section may make with respect to an existing prison.

(4) A declaration under this section may at any time be revoked by the Secretary of State.

判決의 效力은 그 命令에 따라 그가 矯導所에 釋放된 날로부터 矯導所로 복귀한 날까지 정지되며 그 경우에 釋放된 날은 有罪判決 부분에 算入되나 복귀한 날은 이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⑤ 이 조에 있어서 內務相이 이 조에 의한 釋放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수용자에 대한 矯導所의 醫療官吏의 義務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6장 釋放된 收容者

제29조 1961년의 刑事司法法 제21조, 제41조 제2항 및 〈표5〉에 의하여 폐지

제30조 (釋放收容者를 위한 支拂) 內務相은 矯導所에서 釋放되었거나 석방되려는 자에게 또는 그러한 자에 관하여 財務省의 同意를 얻어 決定할 수 있는 金額을 지불할 수 있다.

제7장 矯導所의 準備·維持, 廢鎖

제33조 (矯導所 등의 準備할 權限) ① 內務相은 財務省의 許可를 얻어 矯導所를 變更·擴張 또는 改築할 수 있으며 새로운 矯導所를 建築할 수 있다.

② 內務相은 矯導所로 사용하기 위하여 建築되었거나 自己에게 歸屬되어 있거나 또는 자기의 統制下에 있는 建物 혹은 건물의 一部分을 矯導所로 한다고 宣言함으로써 새로운 교도소를 준비할 수 있다.

③ 이 조에 의한 宣言은 제34조에 의한 命令이 現存의 矯導所에 관하여 規定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規定을 교도소로 하기로 宣言된 建物이나 건물의 一部分에 관하여 規定할 수 있다.

④ 이 조에 의한 宣言은 內務相에 의하여 언제라도 撤回될 수 있다.

(5) A declaration under this section shall not be sufficient to vest the legal estate of any building in the [Secretary of State].

34. Jurisdiction of sheriff, etc.

(1) The transfer under the Prison Act, 1877 of prisons and of the powers and jurisdiction of prison authorities and of justices in sessions assembled and visiting justices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ffected the jurisdiction of any sheriff or coroner or, except to the extent of that transfer, of any justice of the peace or other officer.

(2) The Secretary of State may by order direct that, for the purpose of any enactment, rule of law or custom dependent on a prison being the prison of any county or place, any prison situated in that county or in the county in which that place is situated, or any prison provided by him in pursuance of this Act, shall be deemed to be the prison of that county or place.

35. Prison property

(1) Every prison and all real and personal property belonging to a prison shall be vested in the Secretary of State and may be disposed of in such manner as the Secretary of State, with the consent of the Treasury, may determine.

(2)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be deemed to be a corporation sole.

(3) Any instrument in connection with the acquisition, management or disposal of any property to which this section applies may be executed on behalf of the Secretary of State by an Under-Secretary of State or any other person authorised by the Secretary of State in that behalf; and any instrument purporting to have been so executed on behalf of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be deemed, until the contrary is proved, to have been so executed on his behalf.

(4) The last foregoing subsection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the execution of any such instrument as aforesaid, or of any other instrument, on behalf of the Secretary of State in any other manner authorised by law.]

36. Acquisition of land for prisons

(1) [The Secretary of State may purchase by agreement or] compulsorily, any land required for the alteration, enlargement or rebuilding of a prison or for establishing a new prison or for any other purpose connected with the management of a prison (including the provision of accommodation for officers or servants employed in a prison).

[(2) The Acquisition of Land (Authorisation Procedure) Act 1946 shall

⑤ 이 조에 의한 宣言이 어떤 建物의 法的 所有物을 內務相의 所有로 귀속시키는데 충분한 것은 아니다.

제34조 (執行官 등의 管轄) ① 1877년의 行刑法에 의한 矯導所의 移轉과 행형당국의 權限 및 管轄의 移轉 그리고 下級裁判所와 巡廻裁判所의 移轉은 執行官이나 調査官 또는 당해 이전의 범위를 제외하고 治安判事나 다른 官吏의 管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內務相은 어떤 州나 地域의 교도소에 종속된 法規定이나 慣習 또는 法令을 위하여 당해 州 또는 당해 地域이 존재하고 있는 州에 위치하고 있는 矯導所나 이 법에 따라 內務相에 의하여 준비된 矯導所이 당해 州 또는 地域의 교도소로 간주된다는 것을 命令에 의하여 指示할 수 있다.

제35조 (矯導所의 財産) ① 각 矯導所 및 교도소에 속한 모든 不動産과 動産은 內務相의 소유에 속하며, 財務省의 同意를 얻어 內務相이 결정한 방법으로 處分될 수 있다.

②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內務相은 單獨法人으로 간주된다.

③ 이 조가 적용되는 財産의 取得·管理 또는 處分에 관한 文書는 內務相을 대신하여 內務次官이나 內務相을 위해 그에 의하여 權限이 부여된 他人에 의하여 작성될 수 있다. 그리고 內務相을 代身하여 이와같이 작성된 취지로 되어 있는 文書는 反證이 없는 한 內務相을 대신하여 작성된 것으로 간주된다.

④ 전항은 法에 의하여 許可된 다른 방법으로 內務相을 대신한 전술과 같은 文書나 기타 문서의 작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6조 (矯導所를 위한 土地의 獲得) ① 內務相은 교도소의 變更·增築 또는 改築이나 교도소의 新設을 위하여 또는 矯導所의 管理(교도소에 雇傭된 官吏 기타 고용인을 위한 施設의 設備를 포함하여)에 관련된 기타의 目的을 위하여 필요한 土地를 同意를 얻거나 강제적으로 買入할 수 있다.

② 1946년의 土地取得法 제1조 제1항에 언급되어 있는 것 가운데 土地의 强制

apply to the compulsory purchase of land by the Secretary of State under this section as if such a purchase were included among those referred to in subsection (1) of section one of that Act.]

(3) In relation to the purchase of land by agreement under this section [the provisions of Part I of the Compulsory Purchase Act 1965 (so far as applicable) other than sections 4 to 8, section 10, and section 31, shall apply].

37. Closing of prisons

(1) Subject to the next following subsection, the Secretary of State may by order close any prison.

(2) Where a prison is the only prison in the county,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not make an order under this section in respect of it except for special reasons, which shall be stated in the order.

(3) In this section the expression "county" means a county at large.

(4) For the purposes of this and the next following section a prison shall not be deemed to be closed by reason only of its appropriation for use as a remand centre, detention centre or Borstal institution.

38. Re-conveyance of closed prisons

(1) Where a prison existing before the first day of April, eighteen hundred and seventy-eight is closed,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serve notice on the appropriate authority that he will, if the authority so requests within such period, not being less than six months, from the service of the notice as may be stated in the notice, cause the prison to be conveyed to the authority on payment by them into the Exchequer of an amount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s (4) and (5) of this section together with an amount equal to the compensation, if any, which the authority to which the prison belonged immediately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Prison Act, 1877 may have received out of moneys provided by Parliament in respect of their having provided a prison more than adequate for the accommodation of the prisoners belonging to them.

(2) Where the appropriate authority does not request as aforesaid or fails to pay or to secure to the satisfaction of the Secretary of State the payment of the amounts mentioned in the preceding subsection,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cause the prison to be sold and shall apply the proceeds, after deducting the expenses of the sale, by paying into the Exchequer the amounts mentioned

買入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이 조에 따라서 內務相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土地의 强制買入에 동법이 적용된다.

③ 이 조에 따른 同意에 의한 土地의 買入에 관하여는 (적용될 수 있는 한) 1965년의 强制買入法 제1장의 규정이 제4조 내지 제8조, 제10조 그리고 제31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제37조 (矯導所의 廢鎖) ① 제2항에 따라 內務相은 命令으로써 어떠한 矯導所을 廢鎖할 수 있다.

② 矯導所 당해 州에 오직 하나뿐인 경우에는 內務相은 특별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이 조에 따른 命令을 해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理由는 당해 命令에 기술되어져야 한다.

③ 이 조에 있어서 "州"라는 표현은 一般的인 州를 의미한다.

④ 이 조 및 제38조의 적용에 있어서 교도소이 少年拘置所나 少年短期敎化院 또는 보스탈식 施設로서의 사용을 위해 充當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교도소이 廢鎖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38조 (廢鎖된 矯導所의 再讓渡) ① 1878년 4월1일 이전에 존재하던 矯導所이 廢鎖되는 경우 內務相은 적당한 官庁에 대하여 만약 그 관청이 通知의 送達로부터 6개월이상으로 그 通知에 언급된 期間內에 요구를 한다면 당해 관청이 이 조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計算된 金額에 1877년의 行刑法시행 이전에 당해 矯導所이 직접적으로 속했던 官庁이 자기가 收容할 수 있는 적절한 收容能力 이상으로 교도소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理由로 하여 議會에 의해 設置된 費用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면 報償과 동일한 金額을 합한 금액을 財務省에 지불하는 것을 條件으로 당해 관청에게 그 矯導所를 양도하겠다는 通知를 발하여야 한다.

② 적당한 官庁이 앞서 언급한 要求를 하지 아니하거나 전항에 언급된 金額을 內務相이 납득하도록 지불하지 아니하거나 保證하지 아니하는 경우, 內務相은 당해 교도소를 賣却하여 賣却費用을 공제한 후 전항에 언급된 금액을 財務省

in the preceding subsection and by paying the balance, if any, to the appropriate authority.

(3) *(Rep. with saving by the National Loans Act* 1968, s. 24 (2) *and Sch. 6, Part II.)*

(4) Subject to the next following subsection, the first amount mentioned in subsection (1) of this section shall be equal to one hundred and twenty pounds multiplied by the number of prisoners belonging to the prison authority mentioned in that subsection for whom separate cell accommodation was provided in the prison on the twelfth day of July, eighteen hundred and seventy-seven.

(5) Where the prison was not the only prison belonging on the said day to the said prison authority and separate cell accommodation could have been provided on that day in any other such prison for prisoners of that authority, then if the number of prisoners for whom cell accommodation could then have been so provided is equal to or exceeds the average daily number of prisoners maintained at the expense of the authority (whether in their own or any other prisons) during the five years immediately preceding the first day of January, eighteen hundred and seventy-seven, no sum shall be payable by the authority in respect of the first amount mentioned in subsection (1) of this section, and if the first-mentioned number is less than the said average number, the amount specified in subsection (4) of this section shall be reduced proportionately.

(6) Any sum payable by an appropriate authority in pursuance of this section shall be a debt due to the Crown.

(7) In this section the expression "the appropriate authority" means, in relation to any prison which immediately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Prison Act, 1877, belonged to the City of London or a municipal borough, the common council of the City of London or the council of that borough respectively, and in relation to any prison which then belonged to any other authority, the council of the county to which the property of that authority was transferred by the Local Government Act, 1888.

Offences

39. Assisting prisoner to escape

Any person who aids any prisoner in escaping or attempting to escape from a prison or who, with intent to facilitate the escape of any prisoner, conveys any

에 지불하고 만약 殘額이 있다면 적당한 官庁에 지불함으로써 그 收入金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1968년의 國家貸付法 제24조 제2항 및 제2장 〈표6〉에 의하여 留保됨으로써 폐지

④ 제5항을 條件으로 하여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첫번째 금액은 120파운드에 1877년 7월 12일에 당해 矯導所에서 獨居施設이 제공된 제1항에 언급된 官庁當局에 속하는 收容者의 수를 곱한 金額과 동일하여야 한다.

⑤ 당해 矯導所가 전기의 날에 당해 矯導所官庁에 속하는 유일한 矯導所가 아니고 獨居施設이 그 날 다른 교도소에서 당해 교도소관청의 收容者에게 제공된 경우에는, 만약 그 날 그렇게 독거시설이 제공될 수 있는 수용자의 수가 1877년 1월1일 이전의 바로 5년동안 관청의 費用으로 給養되는(그 자신내에서든 다른 교도소내에서든) 收容者의 1일 평균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한다면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첫번째 금액에 관하여 당해 官庁은 어떠한 금액도 지불할 수 없으며, 그리고 만약 전술한 수 가 전기의 평균수 이하라면 이 조 제4항에 규정된 金額은 比率에 따라 감소되어야 한다.

⑥ 이 조에 따라 적당한 官庁에 의해 支拂될 수 있는 金額은 國王이 지불하여야 할 부채가 된다.

⑦ 이 조에 있어서 "適當한 官庁"이라는 표현은 1877년의 行刑法의 시행 이전에 직접적으로 런던市나 自治特別市에 속하였던 교도소에 관하여는 각각 런던市의 市議會나 당해 特別市의 議會를 의미하며, 그밖의 다른 官庁에 속하였던 교도소에 관하여는 1888년의 지방정부법에 의해 그 관청의 財産이 이전되었던 主議會를 의미한다.

제8장 違反行爲

제39조 (逃走援助) 收容者의 교도소으로부터의 逃走나 逃走試圖를 돕는 자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할 意圖로 어떤 물건을 矯導所내에 또는 수용자에게 전달

thing into a prison or to a prisoner or places any thing anywhere outside a prison with a view to its coming into the possession of a prisoner, shall be guilty of felony and liable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five years].

40. Unlawful conveyance of spirits or tobacco into prison, etc.

Any person who contrary to the regulations of a prison brings or attempts to bring into the prison or to a prisoner any spirituous or fermented liquor or tobacco, or places any such liquor or any tobacco anywhere outside the prison with intent that it shall come into the possession of a prisoner, and any officer who contrary to those regulations allows any such liquor or any tobacco to be sold or used in the prison, shall be liable on summary conviction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six months or a fine not exceeding twenty pounds or both.

41. Unlawful introduction of other articles

Any person who contrary to the regulations of a prison conveys or attempts to convey and letter or any other thing into or out of the prison or to a prisoner or places it anywhere outside the prison with intent that it shall come into the possession of a prisoner shall, where he is not thereby guilty of an offence under either of the two last preceding sections, be liable on summary conviction to a fine not exceeding ten pounds.

42. Display of notice of penalties

The Prison Commissioners shall cause to be affixed in a conspicuous place outside every prison a notice of the penalties to which persons committing offences under the three last preceding sections are liable.

Remand centres, detention centres and Borstal institutions

43. Remand centres, detention centres and Borstal institutions

(1) The Secretary of State may provide—

(a) remand centres, that is to say places for the detention of persons not less than fourteen but under twenty-one years of age who are remanded or committed in custody for trial or sentence;

(b) detention centres, that is to say places in which persons not less than fourteen but under twenty-one years of age who are ordered to be detained in such centres under the Criminal Justice Act, 1948 [or the Criminal Justice Act, 1961], may be kept for short periods

하거나 수용자의 手中에 들어가게 할 의도로 어떤 물건을 矯導所밖에 放置한 자는 重罪로 되며 5년 이하의 拘禁에 처하여 진다.

제40조 (酒類나 담배의 矯導所 등에의 不法傳達) 矯導所의 規則에 違反하여 교도소내 또는 수용자에게 알콜이 함유되거나 興奮시키는 液體 또는 담배를 전달하거나 하려고 한 자 또는 그러한 액체나 담배를 收容者의 手中에 들어가게 할 意圖로 교도소밖에 放置한 자 그리고 교도소의 規則에 위반하여 그러한 液體나 담배가 교도소내에서 販賣되거나 사용되게 한 官吏는 略式有罪宣告에 의해 6개월 이하의 拘禁이나 20파운드 이하의 罰金 또는 이들 양자에 처한다.

제41조 (其他 品目의 不法傳達) 矯導所 規則에 위반하여 書信이나 다른 물건을 矯導所內로 또는 矯導所밖으로 또는 收容者에게 傳達하거나 하려고 한 자 또는 그것을 收容者의 手中에 들어가게 할 意圖로 교도소밖에 放置한 자는 전 2조의 規定에 의해 有罪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略式有罪宣告에 의해 10파운드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제42조 (罰則通知의 揭示) 矯導所監督官은 矯導所밖의 현저한 場所에 違反行爲를 한 사람이 전3조에 의해 宣告받은 罰則의 通知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장 少年拘置所, 少年短期敎化院, 보스탈式 施設

제43조 (少年拘置所, 少年短期敎化院, 보스탈式 施設) ① 內務相은 아래의 것을 設置할 수 있다.

1. 少年拘置所, 즉 審理나 有罪判決을 위해 拘禁되어 있거나 再留置된 14세 이상 21세 미만인 자의 拘禁을 위한 장소와
2. 少年敎化院, 즉 1948년 및 1961년의 刑事司法法에 의해 그러한 장소에 拘

under discipline suitable to persons of their age and description; and

(c) Borstal institutions, that is to say places in which offenders not less than [fifteen] but under twenty-one years of age may be detained and given such training and instruction as will conduce to their reformation and the prevention of crime.

(2)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provide in remand centres facilities for the observation of any person detained therein on whose physical or mental condition a medical report may be desirable for the assistance of the court in determining the most suitable method of dealing with his case.

(3) The following provisions, that is to say—

(a) section six of the Prevention of Crimes Act, 1871 (which relates to the registration of prisoners);

(b) subsections (2) and (3) of section six, section sixteen, ..., and sections twenty-two and thirty-six of this Act. and

(c) subject as provided in the next following subsection,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Act preceding this section,

shall apply to remand centres, detention centres and Borstal institutions and to persons detained therein as they apply to prisons and prisoners.

(4) The application as aforesaid of the provisions mentioned in paragraph (c) of the preceding subsection shall be subject to the following exceptions, adaptations and modifications:—

(a) subsection (1) of section six, [section twenty-eight] and subsection (2) of section thirty-seven shall not so apply;

(b) subsections (1) and (7) of section twenty-five shall not apply to ... Borstal institutions;

(c) subsection (4) of section six shall not apply to remand centres and detention centres, and shall apply to persons detained in Borstal institutions as it applies to persons sentenced to corrective training or preventive detention; but the report required by that subsection, as so applied, shall be made on the advisability of their release under supervision;

(d) the provisions mentioned in paragraph (c) of the last preceding subsection other than those specified in paragraphs (a) to (c) hereof shall apply as aforesaid subject to such adaptations and modifications as may be made by rules of the Secretary of State.

(5) References in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ct to imprisonment shall, so far as those provisions apply to institutions provided under this section, be construed as including detention in those institutions.

禁되도록 되어 있는 14세 이상 21세 미만의 자가 그러한 年齡과 種類의 者에게 적합한 訓育을 받으며 단기간 拘禁될 수 있는 場所, 그리고

3. 보스탈式 施設, 즉 15세이상 21세 미만의 非行者를 拘禁하여 그들의 改善과 犯罪豫防에 기여하도록 訓練과 敎育을 시킬 수 있는 장소

② 內部相은 少年拘置所에 拘禁된 者의 肉體的 또는 精神的 狀態에 관한 醫學的 報告書가 法院이 그의 事件을 다룰 가장 적합한 方法을 決定함에 있어 法院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바람직할 수 있는 그러한 자의 觀察을 위한 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아래의 규정들, 즉

1. (收容者의 登錄에 관한) 1871년의 犯罪豫防法 제6조
2. 이 조 제6조 제2항 및 제3항, 제16조, …, 그리고 제22조와 제36조
3. 제4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조건으로 이 조에 앞선 이 법의 다른 규정들,

이상의 규정들은 그 규정들이 矯導所과 收容者들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이 少年拘置所, 少年短期敎化院 그리고 보스탈식 시설 및 그 안에 拘禁된 자에게 적용된다.

④ 전항 3호에 언급된 규정들의 전술한 것과 같은 적용은 아래의 例外, 變更 그리고 修正을 조건으로 한다.

1. 제6조 제1항, 제28조 그리고 제37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제25조 1항과 제7항은 보스탈식 시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6조 제4항은 少年拘置所와 少年短期敎化院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동항이 矯正訓練이나 豫防拘禁이 선고된 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이 보스탈식 시설에 拘禁된 자에게는 적용된다. 그러나 동항에 의해 요구되는 報告書는 監督部 釋放의 勸奬을 위해 작성되어야 한다.
4. 이 항의 1호 내지 3호에 상술된 規定 이외에 전항 3호에 언급된 규정들은 內部相의 規則에 의해 이루어지는 變更과 修正에 따라 적용된다.

⑤ 이 법의 앞서 規定들에 있어서 拘禁에 관한 언급은 이 조에 의해 設置된 施設에 그들 앞서의 규정들이 適用되는 한 이 조의 施設에서의 拘禁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4. Transfers from prison to Borstal institution and vice versa

(1) If the Secretary of State is satisfied that a person serving a sentence of imprisonment is under twenty-one years of age and might with advantage be detained in a Borstal institution he may, after consultation where practicable with the judge or presiding chairman of the court which passed the sentence [transfer that person] to a Borstal institution; and the provisions of the next following section shall thereupon apply to him as if he had on the date of the transfer been sentenced to Borstal training:

Provided that if on that date the unexpired term of his sentence is less than [two years] those provisions shall apply to him as if he had been sentenced to Borstal training [two years] before the expiration of that term.

(2) If a person detained in a Borstal institution is reported to the Secretary of State by the board of visitors to be incorrigible, or to be exercising a bad influence on the other inmates of the institution, the Secretary of State may commute the unexpired part of the term for which the said person is then liable to be detained in a Borstal institution to such term of imprisonment as the Secretary of State may determine, not exceeding the said unexpired part; and for the purpose of this Act [and of the Criminal Justice Act, 1961] the said person shall be treated as if he had been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that term.

45. Release of persons sentenced to Borstal training

(1) A person sentenced to Borstal training shall be detained in a Borstal institution, and after his release therefrom shall be subject to supervision,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is section; subject, however, to the power of the Secretary of State under subsection (2) of the last preceding section to commute in certain cases the unexpired part of the term for which a person is liable to be so detained to a term of imprisonment.

[(2) A person sentenced to Borstal training shall be detained in a Borstal institution for such period, not extending beyond two years after the date of his sentence and not being less than six months from that date, as the Secretary of State may determine, and shall then be released:

Provided that the Secretary of State may, if he thinks fit, direct that any such person shall be released from a Borstal institution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said six months.]

(3) A person shall, after his release from a Borstal institution and until the expiration of [two years from the date of his release], be under the supervision of such society or person as may be specified in a notice to be given to

제44조 (矯導所로부터 보스탈식 施設으로의 移送과 그 逆送) ① 만약 內務相이 拘禁刑을 服役하고 있는 자가 21세 미만으로서 그를 보스탈식 施設에서 拘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한다면 內務相은 判決을 선고한 法院의 判事나 裁判長과 협의한 후에 그 자를 보스탈식 施設로 移送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 마치 그 자가 移送된 날에 보스탈식 訓練에 처하는 判決을 宣告받은 것처럼 제45조의 규정들이 그자에게 적용된다.

단, 後送된 날을 基準으로 그의 有罪判決의 殘余期間이 2년 미만이라면 그러한 규정들은 마치 그 자가 당해 기간의 종료전에 2년의 보스탈식 訓練에 처하여진 것처럼 그에게 적용된다.

② 보스탈식 施設에 拘禁된 자가 訪問委員會에 의하여 內務相에게 矯正不可能이라든가 또는 당해 施設의 다른 收容者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報告된다면, 內務相은 전기의 자가 보스탈식 施設에서 拘禁되어야 할 殘余期間을 그 殘余期間을 초과하지 아니고 內務相이 決定할 수 있는 기간의 拘禁刑으로 代替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법과 1961년의 刑事司法法을 위하여 전기의 자는 마치 그가 당해 기간동안 拘禁刑에 처하여진 것처럼 취급된다.

제45조 (보스탈식 訓練에 處하여진 者의 釋放) ① 보스탈식 訓練에 처하여진 자는 보스탈식 施設에 拘禁되며 그곳으로부터의 釋放후에는 이 조의 다음 규정에 따라 監督에 服從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보스탈식 施設에 拘禁되어야 할 殘余期間을 拘禁刑 期間으로 대신하는 전조 제2항에 의한 內務相의 權限에 따라야 한다.

② 보스탈식 訓練에 처하여진 자는 內務相이 決定할 수 있는 期間, 즉 判決宣告일로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보스탈식 施設에 구금되어야 하며 그런 후에 석방된다.

단, 內務相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 전기 6개월의 終了前에 보스탈식 施設에서의 釋放을 指示할 수 있다.

③ 보스탈식 施設에서 釋放된 자는 釋放日로부터 2년이 經過될 때까지 그의 釋放時에 內務相이 그에게 발한 通知에 규정된 團體나 사람의 監督을 받으며

him by the [Secretary of State] on his release, and shall, while under that supervision, comply with such requirements as may be so specified:

Provided that the [Secretary of State] may at any time modify or cancel any of the said requirements or order that a person who is under supervision as aforesaid shall cease to be under supervision.

(4) If before the expiration of [two years from the date of his release] the [Secretary of State is] satisfied that a person who is under supervision after his release from a Borstal institution under subsection (2) of this section has failed to comply with any requirement for the time being specified in the notice given to him under subsection (3) of this section, [Secretary of State] may by order recall him to a Borstal institution; and thereupon he shall be liable to be detained in the Borstal institution until the expiration of [two years] from the date of his sentence, or the expiration of six months from the date of his being taken into custody under the order, whichever is the later, and, if at large, shall be deemed to be unlawfully at large:

Provided that—

(a) any such order shall, at the expiration of [two years from the date of his release] cease to have effect unless the person to whom it relates is then in custody thereunder; and

(b) the [Secretary of State] may at any time release a person who is detained in a Borstal institution under this subsection [and the provisions of subsection (3) of this section and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subsection shall apply on his release under this paragraph as they apply in the case of his original release, except that the references to the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of his release shall be construed as references to the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of his original release] .

(5) If any person while under superivision, or after his recall to a Borstal institution, as aforesaid [or after being ordered to be returned to a Borstal institution under section twelve of the Criminal Justice Act, 1961] , is sentenced by a court in any part of Great Britain to corrective training or Borstal training, his original sentence of Borstal training shall cease to have effect.

(6) The [Secretary of State] in exercising [his] functions under this section shall consider any report made to [him] by a board of visitors on the advisability of releasing a person from a Borstal institution.

46. Temporary detention of persons liable to detention in a Borstal institution

A person who is required to be taken to a Borstal institution may, until

그러한 감독을 받는 동안 그는 당해 通知에 규정된 要求條件에 따라야 한다. 단, 內務相은 언제라도 앞서의 要求條件 중의 어느 것을 變更하거나 取消할 수 있고, 또한 전술과 같은 監督下에 있는 자가 監督을 免하도록 命令할 수 있다.

④ 이 조 제2항에 의하여 보스탈식 施設로부터 釋放된 후에 監督下에 있는 자가 一時的으로 이 조 제3항에 의하여 자기에게 행하여진 通知에 규정된 要求條件을 따르지 아니했음을 그 釋放日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內務相이 확인한다면 내무상은 命令에 의해 그를 보스탈식 施設로 召喚할 수 있다. 그후 즉시 그는 有罪判決日로부터 2년 또는 內務相의 命令에 의해 拘禁된 날로부터 6개월 중 長期間인 것이 경과될 때까지 보스탈식 施設에 拘禁되어야 하며, 逮捕되지 아니하고 있다면 그것은 不法的으로 체포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1. 그러한 命令은 관계 당사자가 그것에 의해 拘禁되지 아니하는 한 그의 釋放日로부터 2년이 경과함으로써 效力을 喪失한다.
2. 內務相은 이 항에 의하여 보스탈식 施設에 拘禁되어 있는 자를 언제라도 釋放할 수 있으며 제3항의 규정과 이 항에 善行하는 규정들은 그의 釋放日로부터 2년의 기간에 대한 언급이 그의 최초 釋放日로부터 2년의 기간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그 規定들이 그의 최초의 釋放의 경우에 適用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호에 의한 석방에도 적용된다.

⑤ 어떤 자가 전술한 바의 監督下에 있는 동안이나 보스탈식 施設에로 召喚을 받는 후 또는 1961년의 刑事司法法 제12조에 의한 보스탈식 施設에로의 復歸를 命令받은 후에 英國法院에 의하여 矯正訓練이나 보스탈식 訓練에 처하여진다면 그의 최초 보스탈식 訓練判決은 效力을 상실한다.

⑥ 內務相은 이 조에 의한 職務를 修行함에 있어서 訪問委員會에 의해 그에게 작성 교부된 보스탈식 施設로부터의 釋放勸奬에 관한 報告書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46조 (보스탈식 施設에 拘禁되어야 할 者의 一時的 拘禁) 보스탈식 施設에

arrangements can be made for taking him there, be temporarily detained elsewhere.

Rules for the management of prisons and other institutions

47. Rules for the management of prisons, remand centres, detention centres and Borstal institutions

(1) The Secretary of State may make rules for the regulation and management of prisons, remand centres, detention centres and Borstal institutions respectively, and for the classification, treatment, employment, discipline and control of persons required to be detained therein.

(2) Rules made under this section shall make provision for ensuring that a person who is charged with any offence under the rules shall be given a proper opportunity of presenting his case.

(3) Rules made under this section may provide for the training of particular classes of persons and their allocation for that purpose to any prison or other institution in which they may lawfully be detained.

(4) Rules made under this section shall provide for the special treatment of the following persons whilst required to be detained in a prison, that is to say—

(a)–(c) *(rep. by the Criminal Justice Act* 1967, ss. 66 (5), 103 (2) *and Sch. 7, Part I.)*

(d) any . . . person detained in a prison, not being a person serving a sentence or a person imprisoned in default of payment of a sum adjudged to be paid by him on his conviction [or a person committed to custody on his conviction].

(5) Rules made under this section may provide for the temporary release of persons [detained in a prison, borstal institution, or detention centre, not being persons committed in custody for trial at assizes or quarter sessions or committed to be sentenced or otherwise dealt with by quarter sessions or remanded in custody by any court].

收容되어야 할 자는 그곳에 그를 收容하기 위한 施設이 만들어질 때까지 一時的으로 다른 場所에 拘禁될 수 있다.

제10장 矯導所 其他 施設의 管理를 위한 規則

제47조 (矯導所, 少年拘置所, 少年短期教化院, 보스탈식 施設의 管理를 위한 規定) ① 內務相은 矯導所, 少年拘置所, 少年短期教化院, 보스탈식 施設 각각의 規制와 管理 그리고 그곳에 拘禁되어질 자의 分類·處遇·作業·訓育 및 統制를 위한 規則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이 조에 의하여 制定된 規則은 그 規則違反으로 責任을 지는 자에게 그의 事情을 설명할 적절한 機會가 주어질 것을 保障하는 規定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이 조에 의하여 制定된 規則은 특별한 部類의 자들의 訓練과 그 目的을 위하여 그들을 合法的으로 拘禁할 수 있는 矯導所이나 기타 施設에의 그들의 分離收容을 규정할 수 있다.

④ 이 조에 의하여 制定된 規則은 矯導所에 拘禁되는 동안 다음의 자에 대한 특별한 處遇를 규정하여야 한다. 즉,

1—3. 1967년의 형사사법법 제66조 제5항, 제103조 제2항 및 제1장 〈표7〉에 의해 폐지

4. 有罪宣告를 받아 服役하는 자나 罰金刑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納入하지 아니하여 留置된 자 또는 有罪判決에 의하여 拘禁에 처해진 자 등이 아닌데도 矯導所에 구금되어 있는 자

⑤ 이 조에 의하여 제정된 규칙은 巡廻裁判所나 下級法院에서의 審理를 위하여 拘禁되거나 有罪判決을 받아 拘禁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下級法院에 의해 審理를 받거나 또는 法院에 의해 再拘禁된 자 등이 아니면서 矯導所, 보스탈식 施設 또는 少年短期教化院에 拘禁되어 있는 자의 一時的 釋放을 규정할 수 있다.

Miscellaneous

48. *(Rep. by the Criminal Justice Act* 1961, s. 41 (2), (3) *and Sch. 5.)*

49. Persons unlawfully at large

(1) Any person who, having been sentenced to imprisonment, ... or Borstal training or ordered to be detained in a detention centre, or having been committed to a prison or remand centre, is unlawfully at large, may be arrested by a constable without warrant and taken to the place in which he is required in accordance with law to be detained.

(2) Where any person sentenced to imprisonment . . . or Borstal training, or ordered to be detained in a *remand home or* detention centre, is unlawfully at large at any time during the period for which he is liable to be detained in pursuance of the sentence or order, then, unless the Secretary of State otherwise directs, no account shall be taken, in calculating the period for which he is liable to be so detained, of any time during which he is absent from the prison, Borstal institution, *remand home,* or detention centre, as the case may be:

Provided that—

(a) this subsection shall not apply to any period during which any such person as aforesaid is detained in pursuance of the sentence or order or in pursuance of any other sentence of any court [in the United Kingdom] in a prison, Borstal institution, *remand home* or detention centre;

(b) this subsection shall not apply to a person who is unlawfully at large from a Borstal institution by reason only that he has been recalled thereto under section forty-five of this Act; . . .

(3) The provisions of the last preceding subsection shall apply to a person who is detained in custody in default of payment of any sum of money as if he were sentenced to imprisonment.

(4)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a person who, after being temporarily released in pursuance of rules made under subsection (5) of section forty-seven of this Act, is at large at any time during the period for which he is liable to be detained in pursuance of his sentence shall be deemed to be unlawfully at large if the period for which he was temporarily released has expired or if an order recalling him has been made by the [Secretary of State] in pursuance of the rules.

제11장 雜 則

제48조 1961년의 형사사법법 제41조 제2항 및 제3항 그리고 〈표5〉에 의해 폐지

제49조 (不法하게 未逮捕中인 者) ① 拘禁刑 또는 보스탈식 訓練에 처하여 졌거나 少年短期敎化院에 拘禁되도록 命令되었거나 또는 矯導所나 少年拘置所에 구금되도록 되어 있으나 不法하게 未逮捕 중인 자는 令狀없이 警官에 의해 逮捕되어 법에 따라 拘禁되어져야 할 場所에 수용될 수 있다.

② 拘禁刑 또는 보스탈식 訓練에 처하여 지거나 州 또는 特別市의 議會에 의한 少年拘置所나 少年短期敎化院에 拘禁되도록 命令된 자가 당해 判決이나 命令에 따라 拘禁되어야 할 기간동안에 어느 때라도 不法하게 未逮捕 중에 있는 경우에 內務相이 달리 指定하지 아니하는 한 그가 拘禁되어야 할 期間을 計算함에 있어서 각 경우에 따라 당해 矯導所, 보스탈식 施設, 州 또는 特別市의 議會에 의한 少年拘置所 또는 少年短期敎化院에 수용되어 있지 아니하는 기간은 전혀 고려되지 아니한다. 단,

1. 이 항은 당해 判決이나 命令 또는 英國法院의 그밖의 判決에 따라서 陳述者가 어떤 矯導所, 보스탈식 施設, 州 또는 特別市의 議會에 의한 少年拘置所 또는 少年短期敎化院에 拘禁되어 있는 동안의 기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이 항은 제45조에 의해 그가 보스탈식 施設에 召喚되어져 있다는 理由만으로 보스탈식 施設로부터 불법하게 未逮捕 중인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전항의 規定들은 어떤 金額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마치 그가 拘禁刑에 처하여진 것처럼 留置되어 있는 자에게 적용된다.

④ 이 조의 적용에 있어 제47조 제5항에 의하여 制定된 規則에 따라 一時的으로 釋放된 후 그에 대한 判決에 따라 拘禁되어야 할 기간동안에 어느 때라도 未逮捕 중에 있는 자는 그가 一時的으로 釋放된 期間이 경과되었거나 그를 召喚하는 命令이 당해 規則에 따라 內務相에 의해 발하여져 있다면 그 자는 不

50. Application of certain provisions to remand homes and attendance centres

Subsection (1) of section eighteen of this Act shall apply to attendance centres as it applies to prisons *and subsection (2) of section twenty-two of this Act shall apply to persons detained in remand homes as it applies to persons detained in prison.*

Supplemental

51. Payment of expenses out of moneys provided by Parliament

All expenses incurred in the maintenance of prisons and in the maintenance of prisoners and all other expenses of the Secretary of State . . . incurred under this Act shall be defrayed out of moneys provided by Parliament.

52. Exercise of power to make orders, rules and regulations

(1) Any power of the Secretary of State to make rules or regulations under this Act and the power of the Secretary of State to make an order under section thirty-four or section thrity-seven of this Act shall be exercisable by statutory instrument.

(2) Any statutory instrument containing regulations made under section sixteen or an order made under section thrity-seven of this Act, . . . shall be laid before Parliament.

(3) The power of the Secretary of State to make an order under section six or section thirty-four of this Act shall include power to revoke or vary such an order.

53. Interpretation

(1) In this Act the following expressions have the following meanings:—

"Attendance center" means a centre provided by the Secretary of State under subsection (2) of section forty-eight of the Criminal Justice Act, 1948;

"Prison" does not include a naval, military or air force prison;

"Remand home" means premises established or used by the council of a

法하게 未逮捕 중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50조 (州 또는 特別市에 의한 少年拘置所와 出席施設에 대한 몇몇 規定들의 適用) 이 법 제18조 제1항은 동항이 矯導所에 適用되는 것과 같이 出席施設에 적용되고 제22조 제2항은 동항이 矯導所에 拘禁된 자에게 適用되는 것과 같이 州 또는 特別市의 議會에 의한 少年拘置所에 拘禁된 자에게 적용된다.

補 則

제51조 (議會에 의해 設置된 金額으로부터의 費用의 支出) 矯導所의 維持와 收容者의 給養에 소요되는 모든 費用과 이 법에 의해 발생하는 內務相의 그밖의 모든 費用은 議會에 의하여 설치된 金額으로부터 지출된다.

제52조 (命令, 規則 및 內規를 制定할 權限의 行使) ① 이 법에 의하여 規則이나 內規를 제정할 內務相의 權限과 제34조나 제37조에 의하여 命令을 발할 內務相의 權限은 成文의 文書에 의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② 이 법 제16조에 의하여 制定된 內規나 제37조에 의하여 제정된 命令을 담고 있는 成文의 文書는 議會에 제출되어야 한다.

③ 이 법 제6조나 제34조에 의하여 命令을 발할 內務相의 權限은 그러한 명령을 撤回하거나 變更할 권한을 포함한다.

제53조 (用語의 定義) ① 이 법에 있어서 用語의 意味는 다음과 같다.

"出席施設"은 1948년의 刑事司法法 제48조 제2항에 의하여 內務相이 설치한 施設을 의미한다.

"矯導所"는 陸·海·空軍矯導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州 또는 議會에 의한 少年拘置所"는 1933년의 兒童 및 靑少年法 제 77조의 규정에 의하여 州議會나 特別市議會에 의해 設立되었거나 使用되는 施設

county or county borough under the provisions of section seventy-seven of the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33.

(2)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the maintenance of a prisoner shall include all necessary expenses incurred in respect of the prisoner for food, clothing, custody and removal from one place to another, from the period of his committal to prison until his death or discharge from prison.

(3) References in this Act to the Church of England shall be construed as including references to the Church in Wales.

(4) References in this Act to any enactment shall be construed as references to that enactment as amended by any other enactment.

54. Consequential amendments, repeals and savings

(1) The enactments mentioned in the Third Schedule to this Act shall have effect subject to the amendments specified therein, being amendments consequential on the provisions of this Act.

(2) The enactments specified in the Fourth Schedule to this Act are hereby repealed to the extent specified in the third column of that Schedule.

(3) Nothing in this repeal shall affect any rule, order, regulation or declaration made, direction or certificate given or thing done under any enactment repealed by this Act and every such rule, order, regulation, direction, certificate or thing shall, if in force at the commencement of this Act, continue in force and be deemed to have been made, given or done under the corresponding provision of this Act.

(4) Any document referring to any Act or enactment repealed by this Act shall be construed as referring to this Act or to the corresponding enactment in this Act.

(5) The mention of particular matters in this section shall not be taken to affect the general application to this Act of section thirty-eight of the Interpretation Act, 1889 (which relates to the effect of repeals).

55. Short title, commencement and extent

(1) This Act may be cited as the Prison Act, 1952.

을 의미한다.

② 이 법의 적용에 있어 收容者의 給養은 矯導所로의 그 收容期間으로부터 死亡 또는 矯導所로부터의 釋放時까지 食糧, 衣服, 拘禁과 移送을 위하여 수용자에 관하여 발생한 모든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

③ 이 법에 있어서 英國 國敎會에 관한 언급은 웨일스에 있는 敎會에 관한 언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④ 이 법에 있어서 어떠한 法令에 관한 언급은 다른 법령에 의해 改正되는 당해 법령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제54조 (附隨的인 改正·廢止 및 留保) ① 이 법에 관하여 〈표3〉에 언급된 法令들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되는 改正이기 때문에 그 표에 상술된 改正에 따른 效力을 갖는다.

② 이 법에 관하여 〈표5〉에 상술된 法令들은 그 표의 세번째 칸에 상술된 範圍에서 이에 의하여 廢止된다.

③ 이 법에 의하여 廢止된 法令에 따라 制定된 規則, 命令, 內規 또는 宣言과 이들 法令에 따라 발하여진 指示나 確認書 또는 이들 廢止된 法令에 따라 행하여진 事項은 이러한 폐지로 인하여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또한 그러한 모든 규칙, 명령, 내규, 지시, 확인서 또는 사항은 만약 이 법의 效力發生時에 그것들이 有效하다면 계속 유효하며 이 법의 해당 조항에 의하여 制定, 發布 또는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한다.

④ 이 법에 의하여 廢止된 法 또는 法令에 관련된 文書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규정된 해당 法令에 관련된 문서로 해석된다.

⑤ 특별한 사항들에 관한 이 조에서의 언급은 (廢止의 效果에 관한) 1889년의 解釋法 제38조가 이 법에 일반적으로 適用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5조 (略稱, 效力發生, 適用範圍) ① 이 법은 1952년의 行刑法으로 引用될 수 있다.

(2) This Act shall come into operation on the first day of October, nineteen hundred and fifty-two.

(3) Subsection (2) of section twenty-two, . . . and Part II of the Fourth Schedule to this Act shall extend to Scotland, . . .

(4) Except as provided in the last preceding subsection or [the Criminal Justice Act, 1961], this Act shall not extend to Scotland.

(5) This Act shall not extend to Northern Ireland.

② 이 법은 1952년 10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③ 제22조 제2항과 이 법에 관한 〈표4〉의 제2장은 스코틀랜드까지 효력을 미친다.

④ 전항이나 1961년의 刑事司法法에 규정된 바와 같은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은 스코틀랜드까지 效力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⑤ 이 법은 북아일랜드까지 효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여 백

제2부

西獨

STRAFVOLLZUGSGESETZ (StVollzG)

Vom 16. März 1976 (BGBI. I S. 581, 2088, 1977 S. 436) (BGBI. III 312-9-1)

Erster Abschnitt Anwendungsbereich.
Zweiter Abschmitt Vollzug der Freiheitsserafe.
Ester Titel Grundsätze.
Zweiter Titel Planung des Vollzuges.
Dritter Titel Unterbringung und Ernährung des Gefangenen.
Viertel Titel Besuche, Schriftwechsel Sowie Urlanb, Ausgang und Aüsführung aus besonderem Anlaβ.
Fünftel Titel Arbeit, Ausbildung und Weiterbildung.
Sechster Titel Religionsausübung.
Siebter Titel Gesundheitsfürsorge.
Achter Titel Freizeit.
Neunter Titel Soziale Hilfe.
Zehnter Titel Besondere Vorschriften für den Frauenstrafvollzug.
Elfter Titel Sicherheit und Ordnung.
Zwölfter Titel Unmittelbarer Zwang.
Dreizehnter Titel DisziplinarmaBnahmen.
Vierzehnter Titel Rechtsbehelfe.
Fünfzehnter Titel Strafvollstreckung und Undersuchungshaft.
Sechzehnter Titel Sozialtherapeutische Anstalten.
Dritter Abschnitt Besondere Vorschriften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entziehenden MaB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Erster Titel Sicherungsverwahrung.
Zweiter Titel Unterbringung in einem psychiatrischen Krankenhaus und in einer Entziehungsanstalt
Vierter Abschnitt Vollzugsbehoren.
Erster Titel Arten und Einrichtung der Justizvollzugsanstälten.
Zweiter Titel Aufsicht über die Justizuollzugsanstälten.
Dritter Titel Innerer Aufbau der Justizvollzugsanstälten.
Vierter Titel Anstaltsbeiräte.
Fünfter Titel Kriminologische Forschung im Strafvollzug.
Fünfter Abschnitt Schluβvorschriften
Erster Titel Vollzug des Strafarrestes in Justizvollzugsanstalten
Zweiter Titel Vollzug von Ordnungs-, Sicherungs-, Zwängs- und Erzwingungshaft.
Dritter Titel Arbeitsentgelt in Jugendstrafanstalten und im Vollzug der Untersuchungshaft.

行 刑 法

1976. 3. 16 발효(BGBl. IS. 581, 2088, 1977S. 436) (BGBI. Ⅲ 312-9-1)

제 1 장 適用範圍(제 1 조)
제 2 장 自由刑의 執行
제 1 절 執行의 原則(제 2 조~제 4 조)
제 2 절 執行計劃의 樹立(제 5 조~제16조)
제 3 절 受刑者의 收容 및 給食(제17조~제22조)
제 4 절 特別한 原因에 의한 休假, 外出 및 同伴外出과 接見, 文書交換(제23조~제36조)
제 5 절 作業·教育 및 補習教育(제37조~제52조)
제 6 절 宗教行使(제53조~제55조)
제 7 절 衛生保護(제56조~제66조)
제 8 절 自由時間(제67조~제70조)
제 9 절 社會的 扶助(제71조~제75조)
제10절 女子의 刑執行을 위한 特則(제76조~제80조)
제11절 安全 및 秩序(제81조~제93조)
제12절 直接強制(제94조~제101조)
제13절 懲罰措置(제102조~제107조)
제14절 法律上의 救濟手段(제108조~제121조)
제15절 刑執行 및 未決拘禁(제122조)
제16절 社會治療施設 (제123조~제128조)
제 3 장 自由를 剝奪하는 矯正 및 保安處分의 執行에 관한 特別規定
제 1 절 保安拘禁(제129조~제130조)
제 2 절 精神病院收容(제131조~제138조)
제 4 장 執行官廳
제 1 절 矯導所의 種類(제139조~제150조)
제 2 절 矯導所 監督(제151조~제153조)
제 3 절 矯導所의 內的構成(제154조~제161조)
제 4 절 矯導所 顧問會(제162조~제166조)
제 5 장 雜則
제 1 절 矯導所에서의 留置執行(제167조~제170조)
제 2 절 秩序拘禁, 保護拘禁, 強制拘禁 및 強制를 위한 拘禁의 執行(제171조~제174조)
제 3 절 少年院 및 夫決拘禁執行에 있어서의 勞賃(제176조~제177조)

Vierter Titel Unmittelbarer Zwang in Justizvollzugsanstalten.
Fünfter Titel Anpassung des Bundesrechtts
Sechster Titel Sozial-und Arbeitslosenversicherung.
Sebter Titel Einschränkung von Grundrechten. berlin-kla usel. Inkrafttreten.

Der Bundestag hat mit Zustimmung des Bundesrates das folgende Gesetz beschlossen:

Erster Abschnitt Anwendungsbereich

§1

Dieses Gesetz regelt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in Justizvollzugsanstalten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β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Zweiter Abschmitt Vollzug der Freiheitsserafe

Erster Titel Grundsätze

§2 **Aufgaben des Vollzuges**

Im Vollzug der Freiheitsstrafe soll der Gefangene fähig werden, künftig in sozialer Verantwortung ein Leben ohne Straftaten zu führen (Vollzugsziel). Der Vollzug der Freiheitsstrafe dient auch dem Schutz der Allgemeinheit vor weiteren Straftaten.

§3 **Gestaltung des Vollzuges**

(1) Das Leben im Vollzug soll den allgemeinen Lebensverhältnissen soweit als möglich angeglichen werden.

(2) Schädlichen Folgen des Freiheitsentzuges ist entgegenzuwirken.

(3) Der Vollzug ist darauf auszurichten, daβ er dem Gefangenen hilft, sich in das Leben in Freiheit einzugliedern.

§4 **Stellung des Gefangenen**

(1) Der Gefangene wirkt an der Gestaltung seiner Behandlung und an der Erreichung des Vollzugszieles mit. Seine Bereitschaft hierzu ist zu wecken und zu fördern.

제 4 절 矯導所에서의 直接強制(제175조～제179조)
제 5 절 聯邦法의 調和(제179조～제189조)
제 6 절 社會保險 및 失業保險(제190조～제194조)
제 7 절 基本權의 制限(제196조～제201조)

聯邦議會는 聯邦參議院의 동의로써 다음의 法律을 可決하였다.

제1장 適用範圍

제1조 이 법은 교도소에서의 自由刑 및 自由를 박탈하는 矯正·保安處分의 집행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2장 自由刑의 執行

제1절 執行의 原則

제2조 (執行時의 遵守事項) 自由刑을 執行함에는 수형자가 장래 社會的 責任하에 再犯을 하지 아니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유형의 집행은 또한 그 이상의 범행에 대하여 公共을 保護하는데 기여하도록 한다.

제3조 (執行의 狀態) ① 受刑中의 생활은 가능한 한 일반인의 生活狀態와 유사하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自由剝奪에 의한 有害한 결과는 방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執行은 수형자에게 자유생활로의 復歸에 도움이 되도록 행사되어야 한다.

제4조 (受刑者의 姿勢) ① 수형자는 그의 處遇의 具體化 및 執行目的의 달성

(2) Der Gefangene unterliegt den in diesem Gesetz vorgesehenen Beschränkungen seiner Freiheit. Soweit das Gesetz eine besondere Regelung nicht enthält, dürfen ihm nur Beschränkungen auferlegt werden, die zur Aufrechterhaltung der Sicherheit oder zur Abwendung einer schwerwiegenden Störung der Ordnung der Anstalt unerläßlich sind.

Zweiter Titel Planung des Vollzuges

§5 Aufnahmeverfahren

(1) Beim Aufnahmeverfahren dürfen andere Gefangene nicht zugegen sein.

(2) Der Gefangene wird über seine Rechte und Pflichten unterrichtet.

(3) Nach der Aufnahme wird der Gefangene alsbald ärztlich untersucht und dem Leiter der Anstalt oder der Aufnahmeabteilung vorgestellt.

§6 Behandlungsuntersuchung. Beteiligung des Gefangenen

(1) Nach dem Aufnahmeverfahren wird damit begonnen, die Persönlichkeit und die Lebensverhältnisse des Gefangenen zu erforschen. Hiervon kann abgesehen werden, wenn dies mit Rücksicht auf die Vollzugsdauer nicht geboten erscheint.

(2) Die Untersuchung erstreckt sich auf die Umstände, deren Kenntnis für eine planvolle Behandlung des Gefangenen im Vollzuge und für die Eingliederung nach seiner Entlassung notwendig ist.

(3) Die Planung der Behandlung wird mit dem Gefangenen erörtert.

§7 Vollzugsplan

(1) Auf Grund der Behandlungsuntersuchung (§6) wird ein Vollzugsplan erstellt.

(2) Der Vollzugsplan enthält Angaben mindestens über folgende Behandlungsmaß-nahmen:

1. die Unterbringung im geschlossenen oder offenen Vollzug,
2. die Verlegung in eine sozialtherapeutische Anstalt,
3. die Zuweisung zu Wohngruppen und Behandlungsgruppen,
4. den Arbeitseinsatz sowie Maßnahmen der beruflichen Ausbildung, Fortbildung oder Umschulung,
5. die Teilnahme an Veranstaltungen der Weiterbildung,
6. besondere Hilfs-und Behandlungsmaßnahmen,

에 협력한다. 이를 위해서 수형자의 注意를 喚起하고 촉진하여야 한다

② 수형자는 이 법에 규정된 그의 自由制限에 복종한다.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矯導所의 安全維持 또는 중대한 秩序의 破壞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제한만을 수형자에게 과하여야 한다.

제2절 執行計劃의 樹立

제5조 (收容節次) ① 수용절차에는 다른 수형자가 참여하지 못한다.

② 수형자는 그의 權利와 義務에 관하여 告知를 받는다.

③ 수용 후에 수형자는 즉시 醫師의 檢診을 받도록 하며 교도소장 또는 수용담당관을 면접하도록 한다.

제6조 (處遇調査, 受刑者의 參與) ① 수용절차 후에 수형자의 人性檢査 및 生活狀態의 調査를 개시한다. 執行期間을 고려하여 이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그 調査는 집행중에 있는 수형자의 豫定된 處遇를 위하여 그리고 그의 석방 후에 社會復歸를 위하여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까지 미친다.

③ 處遇計劃은 수형자와 상의하여 한다.

제7조 (執行計劃) ① 수용절차를 근거로 하여(제6조) 집행계획이 수립된다.

② 집행계획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처우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폐쇄 또는 개방집행에의 수용
2. 사회치료시설로의 이송
3. 수용집단 및 처우집단의 할당
4. 직업교육, 계속교육 또는 재교육조치 및 작업배치
5. 평생교육과정의 참여
6. 특별지원조치 및 처우조치

7. Lockerungen des Vollzuges und
8. notwendige Maßnahmen zur Vorbereitung der Entlassung.

(3) Der Vollzugsplan ist mit der Entwicklung des Gefangenen und weiteren Ergebnissen der Persönlichkeitserforschung in Einklang zu halten. Hierfür sind im Vollzugsplan angemessene Fristen vorzusehen.

§8 Verlegung. Überstellung

(1) Der Gefangene kann abweichend vom Vollstreckungsplan in eine andere fü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zuständige Anstalt verlegt werden,

1. wenn die Behandlung des Gefangenen oder seine Eingliederung nach der Entlassung hierdurch gefördert wird oder
2. wenn dies aus Gründen der Vollzugsorganisation oder aus anderen wichtigen Gründen erforderlich ist.

(2) Der Gefangene darf aus wichtigem Grund in eine andere Vollzugsanstalt überstellt werden.

§9 Verlegung in eine sozialtherapeutische Anstalt

(1) Ein Gefangener kann mit seiner Zustimmung in eine sozialtherapeutische Anstalt verlegt werden, wenn die besonderen therapeutischen Mittel und sozialen Hilfen dieser Anstalt zu seiner Resozialisierung angezeigt sind. Er kann wieder zurückverlegt werden, wenn mit diesen Mitteln und Hilfen dort voraussichtlich kein Erfolg erzielt werden kann. Die §§ 8 und 85 bleiben unberührt.

(2) Die Verlegung bedarf der Zustimmung des Leiters der sozialtherapeutischen Anstalt.

§10 Offener und geschlossener Vollzug

(1) Ein Gefangener soll mit seiner Zustimmung in einer Anstalt oder Abteilung des offenen Vollzuges untergebracht werden, wenn er den besonderen Anforderungen des offenen Vollzuges genügt und namentlich nicht zu befürchten ist, daß er sich dem Vollzug der Freiheitsstrafe entziehen oder die Möglichkeiten des offenen Vollzuges zu Straftaten mißbrauchen werde.

(2) Im übrigen sind die Gefangenen im geschlossenen Vollzug unterzubringen. Ein Gefangener kann auch dann im geschlossenen Vollzug untergebracht oder dorthin zurückverlegt werden, wenn dies zu seiner Behandlung notwendig ist.

§11 Lockerungen des Vollzuges

(1) Als Lockerung des Vollzuges kann namentlich angeordnet werden, daß

7. 집행의 완화
8. 석방준비를 위한 필요한 조치

③ 집행계획은 수형자의 改善程度 및 人性調査의 결과와 조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집행계획에는 상당한 기간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8조 (移送, 引渡) ① 수형자는 집행계획과는 달리 自由刑의 執行을 위하여 다음의 경우 다른 권한 있는 교도소로 이송될 수 있다.

1. 수형자의 處遇 또는 釋放 후의 그의 사회복귀가 이송에 의해 증진되는 경우
2. 이송이 집행기관의 사정 또는 기타 중요한 사유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

② 수형자는 중요한 사유에 의해서 다른 교도소로 인도될 수 있다.

제9조 (다른 사회치료시설로의 移送) ① 수형자의 再社會化를 위하여 특별한 治療手段 및 이러한 시설의 社會的 支援이 제시되는 경우 수형자는 그의 동의에 의하여 社會治療施設로 이송될 수 있다. 이러한 手段 및 支援이 그 시설에서 아무런 成果가 없을 것으로 豫見되는 경우에는 수형자는 再收容될 수 있다. 제8조 및 제85조는 이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移送에는 社會治療施設의 長의 동의을 필요로 한다.

제10조 (開放 및 閉鎖執行) ① 수형자가 開放執行의 特別要件을 충족하고 특히 수형자가 自由刑의 執行을 면하거나 범죄행위에 대한 開放執行의 가능성을 濫用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수형자는 자신의 동의에 의하여 開放矯導所 또는 開放矯正局에 수용되어야 한다.

② 그밖에는 수형자는 閉鎖執行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수형자의 處遇에 필수적인 경우에 수형자는 폐쇄집행으로 수용되거나 그곳으로 再移送될 수 있다.

제11조 (執行의 緩和) ① 집행의 완화로써 다음과 같은 것이 특히 지시될 수 있다.

der Gefangene

1. außerhalb der Anstalt regelmäßig einer Beschäftigung unter Aufsicht (Außenbeschäftigung) oder ohne Aufsicht eines Vollzugsbediensteten (Freigang) nachgehen darf oder
2. für eine bestimmte Tageszeit die Anstalt unter Aufsicht (Ausführung) oder ohne Aufsicht eines Vollzugsbediensteten (Ausgang) verlassen darf.

(2) Diese Lockerungen dürfen mit Zustimmung des Gefangenen angeordnet werden, wenn nicht zu befürchten ist, daß der Gefangene sich dem Vollzug der Freiheitsstrafe entziehen oder die Lockerungen des Vollzuges zu Straftaten mißbrauchen werde.

§12 Ausführung aus besonderen Gründen

Ein Gefangener darf auch ohne seine Zustimmung ausgeführt werden, wenn dies aus besonderen Gründen notwendig ist.

§13 Urlaub aus der Haft

(1) Ein Gefangener kann bis zu einundzwanzig Kalendertagen in einem Jahr aus der Haft beurlaubt werden. § 11 Abs. 2 gilt entsprechend.

(2) Der Urlaub soll in der Regel erst gewährt werden, wenn der Gefangene sich mindestens sechs Monate im Strafvollzug befunden hat.

(3) Ein zu lebenslanger Freiheitsstrafe verurteilter Gefangener kann beurlaubt werden, wenn er sich einschließlich einer vorhergehenden Untersuchungshaft oder einer anderen Freiheitsentziehung zehn Jahre im Vollzug befunden hat oder wenn er in den offenen Vollzug überwiesen ist.

(4) Gefangenen, die sich für den offenen Vollzug eignen, aus besonderen Gründen aber in einer geschlossenen Anstalt untergebracht sind, kann nach den für den offenen Vollzug geltenden Vorschriften Urlaub erteilt werden.

(5) Durch den Urlaub wird die Strafvollstreckung nicht unterbrochen.

§14 Weisungen, Aufhebung von Lockerungen und Urlaub

(1) Der Anstaltsleiter kann dem Gefangenen für Lockerungen und Urlaub Weisungen erteilen.

(2) Er kann Lockerungen und Urlaub widerrufen, wenn

1. er auf Grund nachträglich eingetretener Umstände berechtigt wäre, die Maßnahmen zu versagen,
2. der Gefangene die Maßnahmen mißbraucht oder
3. der Gefangene Weisungen nicht nachkommt.

1. 수형자가 교도소 밖에서 規則的으로 교도관의 감독하에 (外部勞役) 또는 감독없이(自由勞役) 勞役에 專念할 수 있도록 한다.
2. 수형자가 하루중 어느 特定時刻에 교도관의 감독하에(同伴外出) 또는 감독없이(單獨外出) 교도소를 떠나 있을 수 있도록 한다.

② 이러한 緩和는 수형자가 自由刑의 執行을 면하거나 범죄행위에 대한 집행의 완화를 남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 수형자의 동의에 의하여 지시될 수 있다.

제12조 (특별한 事由에 의한 同伴外出) 특별한 사유로 이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또한 수형자는 그의 동의없이 同伴外出될 수 있다.

제13조 (拘禁中의 休暇) ① 수형자는 1년중 21일 한도 내에서 구금 중에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 제2항은 이에 준용한다.

② 휴가는 원칙적으로 수형자가 최소한 6개월이상의 형집행 중에 있었던 경우에 허가되어야 한다.

③ 無期刑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선행하는 未決拘禁 또는 기타의 自由剝奪을 포함하여 10년간의 집행중에 있었던 경우 또는 開放執行으로의 移送된 경우에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開放執行이 적합한 수형자가 특별한 이유로 閉鎖矯導所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방집행을 위해 적용하는 규정에 의거하여 휴가를 허가받을 수 있다.

⑤ 휴가에 의하여 형집행이 중단되지 아니한다.

제14조 (執行의 緩和 및 休暇의 指示·取消) ① 교도소장은 執行의 緩和 및 休暇를 위하여 수형자에게 지시를 발할 수 있다.

② 교도소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緩和 및 休暇를 취소할 수 있다.

1. 교도소장이 追後에 발생한 사정에 기초하여 그 조치를 撤回할 權限이 있는 경우
2. 수형자가 그 조치를 남용한 경우
3. 수형자가 그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r kann Lockerungen und Urlaub mit Wirkung für die Zukunft zurücknehmen, wenn die Voraussetzungen für ihre Bewilligung nicht vorgelegen haben.

§15 Entlassungsvorbereitung

(1) Um die Entlassung vorzubereiten, soll der Vollzug gelockert werden (§ 11).

(2) Der Gefangene kann in eine offene Anstalt oder Abteilung (§ 10) verlegt werden, wenn dies der Vorbereitung der Entlassung dient.

(3) Innerhalb von drei Monaten vor der Entlassung kann zu deren Vorbereitung Sonderurlaub bis zu einer Woche gewährt werden. § 11 Abs. 2, § 13 Abs. 5 und § 14 gelten entsprechend.

(4) Freigängern (§ 11 Abs. 1 Nr. 1) kann innerhalb von neun Monaten vor der Entlassung Sonderurlaub bis zu sechs Tagen im Monat gewährt werden. § 11 Abs. 2, § 13 Abs. 5 und § 14 gelten entsprechend. Absatz 3 Satz 1 findet keine Anwendung.

§ 16 Entlassungszeitpunkt

(1) Der Gefangene soll am letzten Tag seiner Strafzeit möglichst frühzeitig, jedenfalls noch am Vormittag entlassen werden.

(2) Fällt das Strafende auf einen Sonnabend oder Sonntag, einen gesetzlichen Feiertag, den ersten Werktag nach Ostern oder Pfingsten oder in die Zeit vom 22. Dezember bis zum 2. Januar, so kann der Gefangene an dem diesem Tag oder Zeitraum vorhergehenden Werktag entlassen werden, wenn dies nach der Länge der Strafzeit vertretbar ist und fürsorgerische Gründe nicht entgegenstehen.

(3) Der Entlassungszeitpunkt kann bis zu zwei Tagen vorverlegt werden, wenn dringende Gründe dafür vorliegen, daß der Gefangene zu seiner Eingliederung hierauf angewiesen ist.

Dritter Titel Unterbringung und Ernährung des Gefangenen

§ 17 Unterbringung während der Arbeit und Freizeit

(1) Die Gefangenen arbeiten gemeinsam. Dasselbe gilt für Berufsausbildung, berufliche Fortbildung, Umschulung sowie arbeitstherapeutische und sonstige Beschäftigung während der Arbeitszeit.

교도소장은 執行의 緩和 및 休暇의 許可을 위한 前提條件이 없었던 경우에는 장래에 대한 效果로써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제15조 (釋放의 準備) ① 석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집행이 완화되어야 한다(제11조).

② 釋放의 準備에 도움이 되는 경우 수형자는 開放矯導所 또는 開放矯正局(제10조)으로 이송될 수 있다.

③ 석방전 3월내에 釋放의 準備를 위하여 1주일의 한도내에서 特別休暇가 허가될 수 있다. 제11조 제2항, 제13조 제5항 및 제14조는 이에 준용한다.

④ 自由勞役者(제11조제1항 1호)는 석방전 9월내에 월중 6일의 한도내에서 釋放準備를 위한 특별휴가를 허가받을 수 있다. 제11조제2항, 제13조제5항 및 제14조는 이에 준용한다. 제3항1호는 그 적용이 없다.

제16조 (釋放時期) ① 수형자는 그의 刑期의 終了日의 가능한 한 이른 時刻에 그 경우에도 오전 중에 석방되어야 한다.

② 그 刑期가 토요일 또는 일요일, 법정공휴일, 부활절 또는 오순절 후의 최초의 평일 또는 12월22일부터 1월2일까지의 기간에 끝나도록 宣告되는 경우 그것이 刑期로서 代替할 수 있는 것이고 달리 고려할 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 수형자는 이러한 휴일 또는 이 기간의 전에 있는 평일에 석방될 수 있다.

③ 釋放時期는 수형자가 그의 社會復歸를 위해 早期釋放이 필요하다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일의 한도내에서 앞당길 수 있다.

제3절 受刑者의 收容 및 給食

제17조 (作業時間 및 自由時間 중의 收容) ① 수형자들은 공동으로 작업을 한다. 作業時間 중에 근로치료적인 그리고 기타의 勞役과 아울러 職業敎育, 직업상의 平生敎育, 再敎育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2) Während der Freizeit können die Gefangenen sich in der Gemeinschaft mit den anderen aufhalten. Für die Teilnahme an gemeinschaftlichen Veranstaltungen kann der Anstaltsleiter mit Rücksicht auf die räumlichen, personellen und organisatorischen Verhältnisse der Anstalt besondere Regelungen treffen.

(3) Die gemeinschaftliche Unterbringung während der Arbeitszeit und Freizeit kann eingeschränkt werden,

1. wenn ein schädlicher Einfluß auf andere Gefangene zu befürchten ist,
2. wenn der Gefangene nach § 6 untersucht wird, aber nicht länger als zwei Monate,
3. wenn es die Sicherheit oder Ordnung der Anstalt erfordert oder
4. wenn der Gefangene zustimmt.

§ 18 Unterbringung während der Ruhezeit

(1) Gefangene werden während der Ruhezeit allein in ihren Hafträumen untergebracht. Eine gemeinsame Unterbringung ist zulässig, sofern ein Gefangener hilfsbedürftig ist oder eine Gefahr für Leben oder Gesundheit eines Gefangenen besteht.

(2) Im offenen Vollzug dürfen Gefangene mit ihrer Zustimmung während der Ruhezeit gemeinsam untergebracht werden, wenn eine schädliche Beeinflussung nicht zu befürchten ist. Im geschlossenen Vollzug ist eine gemeinschaftliche Unterbringung zur Ruhezeit außer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nur vorübergehend und aus zwingenden Gründen zulässig.

§ 19 Ausstattung des Haftraumes durch den Gefangenen und sein persönlicher Besitz

(1) Der Gefangene darf seinen Haftraum in angemessenem Umfang mit eigenen Sachen ausstatten. Lichtbilder nahestehender Personen und Erinnerungsstücke von persönlichem Wert werden ihm belassen.

(2) Vorkehrungen und Gegenstände, die die Übersichtlichkeit des Haftraumes behindern oder in anderer Weise Sicherheit oder Ordnung der Anstalt gefährden, können ausgeschlossen werden.

§ 20 Kleidung

(1) Der Gefangene trägt Anstaltskleidung. Für die Freizeit erhält er eine besondere Oberbekleidung.

(2) Der Anstaltsleiter gestattet dem Gefangenen, bei einer Ausführung eigene Kleider zu tragen, wenn zu erwarten ist, daß er nicht entweichen wird. Er kann dies auch sonst gestatten, sofern der Gefangene für Reinigung, Instandsetzung und regelmäßigen Wechsel auf eigene Kosten sorgt.

② 自由時間 중에 수형자는 다른 수형자들과 함께 체류할 수 있다. 共同集會에 참가를 위하여 교도소장은 교도소의 空間的, 人的 그리고 組織上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특별한 규정을 할 수 있다.

③ 作業時間 및 自由時間 중의 混居收容은 다음의 경우 제한될 수 있다.

1. 다른 수형자에 대하여 해로운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
2. 수형자가 제6조에 의하여 2개월 이내의 조사를 받는 경우
3. 교도소의 安全 또는 秩序에 필요한 경우
4. 수형자가 동의하는 경우

제18조 (휴식시간 중의 수용) ① 수형자는 휴식시간 중에는 그의 居室 안에만 수용된다. 수형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수형자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서 混居收容이 허용된다.

② 開放執行에서는 수형자는 해로운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는 경우 휴식시간 중 그의 동의에 의하여 混居收容될 수 있다. 閉鎖執行에서는 제1항의 경우 이외에는 일시적으로 그리고 부득이한 이유로서만 휴식시간의 混居收容이 허용된다.

제19조 (수형자 및 그의 個人所有物에 의한 居室의 裝飾) ① 受刑者는 자신의 물건으로 상당한 정도로 그의 居室을 장식할 수 있다. 친밀한 사람들의 사진 및 개인적으로 가치있는 기념물은 그에게 간직되도록 한다.

② 居室의 시찰에 지장을 주거나 다른 방법으로 교도소의 安全 또는 秩序를 위태롭게 하는 가리개 및 물건은 제외될 수 있다.

제20조 (服裝) ① 수형자는 矯導所制服을 착용한다. 자유시간을 위하여 수형자는 특별한 外衣를 받는다.

② 矯導所長은 수형자가 도주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同伴外出時에 자신의 服裝을 착용하도록 허가한다. 교도소장은 수형자가 세탁, 수선 및 규칙적인 갈아입기를 自辨으로 행하는 한 이를 또한 허가할 수 있다.

§ 21 Anstaltsverpflegung

Zusammensetzung und Nährwert der Anstaltsverpflegung werden ärztlich überwacht. Auf ärztliche Anordnung wird besondere Verpflegung gewährt. Dem Gefangenen ist zu ermöglichen, Speisevorschriften seiner Religionsgemeinschaft zu befolgen.

§ 22 Einkauf

(1) Der Gefangene kann sich von seinem Hausgeld (§ 47) oder von seinem Taschengeld (§ 46) aus einem von der Anstalt vermittelten Angebot Nahrungs- und Genußmittel sowie Mittel zur Körperpflege kaufen. Die Anstalt soll für ein Angebot sorgen, das auf Wünsche und Bedürfnisse der Gefangenen Rücksicht nimmt.

(2) Gegenstände, die die Sicherheit oder Ordnung der Anstalt gefährden, können vom Einkauf ausgeschlossen werden. Auf ärztliche Anordnung kann dem Gefangenen der Einkauf einzelner Nahrungs-und Genußmittel ganz oder teilweise untersagt werden, wenn zu befürchten ist, daß sie seine Gesundheit ernsthaft gefährden. In Krankenhäusern und Krankenabteilungen kann der Einkauf einzelner Nahrungs-und Genußmittel auf ärztliche Anordnung allgemein untersagt oder eingeschränkt werden.

(3) Verfügt der Gefangene ohne eigenes Verschulden nich über Haus-oder Taschengeld, wird ihm gestattet, in angemessenem Umfang vom Eigengeld einzukaufen.

Viertel Titel Besuche, Schriftwechsel Sowie Urlaub, Ausgang und Ausführüng aus besonderem Anlaß

§ 23 Grundsatz

Der Gefangene hat das Recht, mit Personen außerhalb der Anstalt im Rahmen der Vorschriften dieses Gesetzes zu verkehren. Der Verkehr mit Personen außerhalb der Anstalt ist zu fördern.

§ 24 Recht auf Besuch

(1) Der Gefangene darf regelmäßig Besuch empfangen. Die Gesamtdauer beträgt mindestens eine Stunde im Monat. Das Weitere regelt die Hausordnung.

(2) Besuche sollen darüber hinaus zugelassen werden, wenn sie die Behandlung oder Eingliederung des Gefangenen fördern oder persönlichen, rechtlichen oder geschäftlichen Angelegenheiten dienen, die nicht vom Gefangenen schriftlich erledigt, durch Dritte wahrgenommen oder bis zur Entlassung des Gefangenen aufgeschoben werden können.

제21조 (矯導所의 給食) 교도소 給食의 內容 및 營養價는 의사의 감독을 받는다. 의사의 지시로 特別給食이 제공된다. 수형자에게 그의 宗敎集團의 식사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許容한다.

제22조 (購入) ① 수형자는 그의 扶養家族給付金 (제47조) 또는 그의 용돈(제46조)으로 교도소가 주선한 供給品으로부터 신체건강을 위한 물품과 아울러 食料品 및 嗜好品을 구입할 수 있다. 교도소는 수형자의 希望과 필요를 고려하여 공급품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교도소의 安全 또는 秩序를 위태롭게 하는 물건은 이를 購入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다. 수형자의 개별적인 食料品 및 嗜好品의 購入이 진정으로 그의 健康을 위태롭게 할 염려가 있을 경우 醫師의 지시에 의하여 이를 금지할 수 있다. 病院 및 醫務室에서는 개별적인 식료품 및 기호품의 구입이 일반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③ 수형자가 자신의 過失없이 扶養家族給付金 또는 용돈을 任意로 處分하지 못하는 경우 상당한 범위내에서 自辨으로 구입하는 것이 허용된다.

제4절 特別한 原因에 의한 休暇, 外出 및 同伴外出과 接見, 文書交換

제23조 (原則) 수형자는 이 법의 범위내에서 矯導所外部에 있는 사람과 交通할 權利가 있다. 교도소 밖에 있는 사람과의 交通은 助長되어야 한다.

제24조 (接見權) ① 受刑者는 정기적으로 接見를 받을 수 있다. 그 전체 接見時間은 최소한 月에 1시간으로 한다. 그 이외에 대해서는 矯導所規則으로 정한다.

② 接見은 그것이 수형자의 處遇 또는 社會復歸에 도움이 되거나 수형자에 의한 書面解決 또는 제3자에 의해 代理解決이 불가능하거나 수형자의 釋放時까지 연기될 수 없는 個人的, 法的 또는 營業的인 用務에 소용이 되는 경우에는

(3) Aus Gründen der Sicherheit kann ein Besuch davon abhängig gemacht werden, daß sich der Besucher durchsuchen läßt.

§ 25 Besuchsverbot

Der Anstaltsleiter kann Besuche untersagen,

1. wenn die Sicherheit oder Ordnung der Anstalt gefährdet würde,
2. bei Besuchern, die nicht Angehörige des Gefangenen im Sinne des Strafgesetzbuches sind, wenn zu befürchten ist, daß sie einen schädlichen Einfluß auf den Gefangenen haben oder seine Eingliederung behindern würden.

§ 26 Besuche von Verteidigern, Rechtsanwälten und Notaren

Besuche von Verteidigern sowie von Rechtsanwälten oder Notaren in einer den Gefangenen betreffenden Rechtssache sind zu gestatten. § 24 Abs. 3 gilt entsprechend. Eine inhaltliche Überprüfung der vom Verteidiger mitgeführten Schriftstücke und sonstigen Unterlagen ist nicht zulässig. § 29 As. 1 Satz 2 und 3 bleibt unberührt.

§ 27 Überwachung der Besuche

(1) Die Besuche dürfen aus Gründen der Behandlung oder der Sicherheit oder Ordnung der Anstalt überwacht werden. Die Unterhaltung ist nur dann zu überwachen, wenn es aus diesen Gründen geboten ist.

(2) Ein Besuch darf abgebrochen werden, wenn Besucher oder Gefangene gegen die Vorschriften dieses Gesetzes oder die auf Grund dieses Gesetzes getroffenen Anordnungen trotz Abmahnung verstoßen. Die Abmahnung unterbleibt, wenn es unerläßlich ist, den Besuch sofort abzubrechen.

(3) Besuche von Verteidigern werden nicht überwacht.

(4) Gegenstände dürfen beim Besuch nur mit Erlaubnis übergeben werden. Dies gilt nicht für die bei dem Besuch des Verteidigers übergebenen Schriftstücke und sonstigen Unterlagen sowie für die bei dem Besuch eines Rechtsanwalts oder Notars zur Erledigung einer den Gefangenen betreffenden Rechtssache übergebenen Schriftstücke und sonstigen Unterlagen; bei dem Besuch eines Rechtsanwalts oder Notars kann die Übergabe aus Gründen der Sicherheit oder Ordnung der Anstalt von der Erlaubnis abhängig gemacht werden. § 29 Abs. 1 Satz 2 und 3 bleibt unberührt.

이 기간에 관계없이 허용되어야 한다.

③ 안전상의 이유에서 接見者가 檢索을 받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접견이 행해질 수 있다.

제25조 (接見의 禁止) 矯導所長은 다음의 경우 接見을 금지할 수 있다.

1. 교도소의 安全 또는 秩序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경우
2. 그 接見이 수형자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거나 수형자의 社會復歸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때에 刑法上 수형자의 親族이 아닌 접견자인 경우

제26조 (辯護人, 辯護士 및 公證人의 接見) 受刑者와 관계있는 法律事件에 관계하고 있는 辯護人의 接見 및 변호사 또는 공증인의 접견은 허용되어야 한다. 제24조 제3항은 이에 준용한다. 변호인이 반입한 書類 및 기타 證憑書類의 내용에 대한 檢査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29조제1항2호 및 3호는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7조 (接見의 監視) ① 接見은 교도소의 處遇, 安全 또는 秩序의 理由에서 감시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그 對話가 감시된다.

② 接見은 接見者 또는 수형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中止要請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근거하여 규정된 命令에 위반하는 경우 중단될 수 있다. 그 中止要請은 그 접견을 즉시 중단시키는데 불가피한 경우 이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辯護人의 接見은 감시를 받지 아니한다.

④ 물건은 接見時 허가에 의하여만 授受할 수 있다. 辯護人의 접견시 授受한 서류 및 기타 증빙서류, 변호사 또는 公證人의 接見, 수형자와 관련되어 있는 法律事件의 해결을 위하여 수수한 書類 및 기타 證憑書類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변호사 또는 공증인의 접견시에는 교도소의 安全 또는 秩序上의 理由로 그 書類의 授受는 허가에 의해서 행해질 수 있다. 제29조 제1항2문 및 3문은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28 Recht auf Schriftwechsel

(1) Der Gefangene hat das Recht, unbeschränkt Schreiben abzusenden und zu empfangen.

(2) Der Anstaltsleiter kann den Schriftwechsel mit bestimmten personen untersagen,

1. wenn die Sicherheit oder Ordnung der Anstalt gefährdet würde,
2. bei Personen, die nicht Angehörige des Gefangenen im Sinne des Strafgesetzbuches sind, wenn zu befürchten ist, daß der Schriftwechsel einen schädlichen Einfluß auf den Gefangenen haben oder seine Eingliederung behindern würde.

§ 29 Überwachung des Schriftwechsels

(1) Der Schriftwechsel des Gefangenen mit seinem Verteidiger wird nicht überwacht. Liegt dem Vollzug der Freiheitsstrafe eine Straftat nach § 129 a des Strafgesetzbuches zugrunde, gelten § 148 Abs. 2, § 148 a der Strafprozeßordnung entsprechend; dies gilt nicht, wenn der Gefangene sich in einer Einrichtung des offenen Vollzuges befindet oder wenn ihm Lockerungen des Vollzuges gemäß § 11 Abs. 1 Nr. 1 oder 2 zweiter Halbsatz oder Urlaub gemäß § 13 oder § 15 Abs. 3 gewährt worden sind und ein Grund, der den Anstaltsleiter nach § 14 Abs. 2 zum Widerruf oder zur Zurücknahme von Lockerungen und Urlaub ermächtigt, nicht vorliegt. Satz 2 gilt auch, wenn gegen einen Strafgefangenen im Anschluß an die dem Vollzug der Freiheitsstrafe zugrundeliegende Verurteilung eine Freiheitsstrafe wegen einer Straftat nach § 129 a des Strafgesetzbuches zu vollstrecken ist.

(2) Nicht überwacht werden ferner Schreiben des Gefangenen an Volksvertretungen des Bundes und der Länder sowie an deren Mitglieder, soweit die Schreiben an die Anschriften dieser Volksvertretungen gerichtet sind und den Absender zutreffend angeben, sowie an die Europäische Kommission für Menschenrechte.

(3) Der übrige Schriftwechsel darf aus Gründen der Behandlung oder der Sicherheit oder Ordnung der Anstalt überwacht werden.

§ 30 Weiterleitung von Schreiben. Aufbewahrung

(1) Der Gefangene hat Absendung und Empfang seiner Schreiben durch die Anstalt vermitteln zu lassen, soweit nichts anderes gestattet ist.

(2) Eingehende und ausgehende Schreiben sind unverzüglich weiterzuleiten.

(3) Der Gefangene hat eingehende Schreiben unverschlossen zu verwahren, sofern nichts anderes gestattet wird; er kann sie verschlossen zu seiner Habe geben.

§ 31 Anhalten von Schreiben

(1) Der Anstaltsleiter kann Schreiben anhalten,

제28조 (文書受發權) ① 수형자는 제한없이 文書를 受發할 權利가 있다.

② 교도소장은 다음의 경우 特定人과의 文書受發을 금지할 수 있다.

1. 교도소의 安全 또는 秩序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경우
2. 그 書信受發이 受刑者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거나 그의 社會復歸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때에 刑法上 수형자의 親族이 아닌 자의 경우

제29조 (文書受發의 檢閱) ① 수형자의 辯護人과의 文書受發은 檢閱를 받지 아니한다. 범죄행위가 刑法 제129 a 조에 의한 범죄행위가 自由刑執行의 기초가 되는 경우 刑事訴訟法 148조제2항, 제148 a 조가 이에 준용된다. 그러나 수형자가 開放執行施設에 있거나 제11조제1항1문 또는 2문 후단에 의거하여 수형자에게 執行의 緩和가 허용되었거나 제14조제2항에 의거하여 교도소장에게 執行의 緩和 및 休暇의 取消 또는 撤回의 權限에 의할 수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항 2문은 旣決囚에 대한 自由刑執行의 근거가 되는 判決과 관련하여 형법 제129 a 조에 의한 犯罪行爲를 이유로 자유형이 집행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그 적용이 있다.

② 聯邦 및 州의 議會, 그 議會議員에 대한 수형자의 書信는 그 서신이 이러한 議會를 受信人으로 하여 發信된 것이고 發信人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는 경우 및 유럽人權委員會를 受信人으로 하는 것일 경우에는 아무런 檢閱도 받지 아니한다.

③ 기타 書信의 受發은 處遇 또는 교도소의 安全이나 秩序를 이유로 하는 경우 檢閱을 받는다.

제30조 (書信의 送付·領置) ① 수형자는 달리 許可를 받지 아니하는 한 교도소에 의해서 그의 書信受發을 허가받아야 한다.

② 受發하는 書信은 지체없이 送付되어야 한다.

③ 수형자는 달리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한 受領한 書信을 開封된 채로 보관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형자는 그 書信을 封印하여 그의 소유물로 할 수 있다.

제31조 (書信의 押留) ① 교도소장은 다음의 경우 서신을 압류할 수 있다.

1. wenn das Ziel des Vollzuges oder die Sicherheit oder Ordnung der Anstalt gefährdet würde,
2. wenn die Weitergabe in Kenntnis ihres Inhalts einen Straf-oder Bußgeldtatbestand verwirklichen würde,
3. wenn sie grob unrichtige oder erheblich entstellende Darstellungen von Anstaltsverhältnissen enthalten,
4. wenn sie grobe Beleidigungen enthalten,
5. wenn sie die Eingliederung eines anderen Gefangenen gefährden können oder,
6. wenn sie in Geheimschrift, unlesbar, unverständlich oder ohne zwingenden Grund in einer fremden Sprache abgefaßt sind.

(2) Ausgehenden Schreiben, die unrichtige Darstellungen enthalten, kann ein Begleitschreiben beigefügt werden, wenn der Gefangene auf der Absendung besteht.

(3) Ist ein Schreiben angehalten worden, wird das dem Gefangenen mitgeteilt. Angehaltene Schreiben werden an den Absender zurückgegeben oder, sofern dies unmöglich oder aus besonderen Gründen untunlich ist, behördlich verwahrt.

(4) Schreiben, deren Überwachung nach § 29 Abs. 1 und 2 ausgeschlossen its, dürfen nicht angehalten werden.

§ 32 Ferngespräche und Telegramme

Dem Gefangenen kann gestattet werden, Ferngespräche zu führen oder Telegramme aufzugeben. Im übrigen gelten für Ferngespräche die Vorschriften über den Besuch und für Telegramme die Vorschriften über den Schriftwechsel entsprechend.

§ 33 Pakete

(1) Der Gefangene darf dreimal jährlich in angemessenen Abständen ein Paket mit Nahrungs-und Genußmitteln empfangen. Die Vollzugsbehörde kann Zeitpunkt und Höchstmengen für die Sendung und für einzelne Gegenstände festesetzen. Der Empfang weiterer Pakete oder solcher mit anderem Inhalt bedarf ihrer Erlaubnis. Für den Ausschluß von Gegenständen gilt § 22 Abs. 2 entsprechend.

(2) Pakete sind in Gegenwart des Gefangenen zu öffnen. Ausgeschlossene Gegenstände können zu seiner Habe genommen oder dem Absender zurückgesandt werden. Nicht ausgehändigte Gegenstände, durch die bei der Versendung oder Aufbewahrung Personen verletzt oder Sachschäden verursacht werden können, dürfen vernichtet werden. Die hiernach getroffenen Maßnahmen werden dem Gefangenen eröffnet.

1. 執行目的 또는 교도소의 安全이나 秩序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경우
2. 그 書信送付가 내용의 認知로 犯罪構成要件 또는 罰金刑構成要件을 實現할 수 있는 경우
3. 그 서신이 교도소의 諸般事情에 관하여 현저히 不當하거나 대단히 歪曲하는 陳述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4. 그 서신이 명백한 모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5. 그 서신이 다른 수형자의 社會復歸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경우
6. 그 서신이 暗號로 읽기 어렵고 理解할 수 없게 작성되거나 뚜렷한 이유없이 外國語로 작성된 경우

② 부당한 陳述을 포함하고 있는 發送書信은 수형자가 발송을 주장하는 경우 添書가 동봉될 수 있다.

③ 書信이 押留된 경우 이를 수형자에게 통지한다. 押留된 書信은 發信人에게 返送되거나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특별한 事由로 이의 실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교도소에 領置한다.

④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檢閱이 終結된 서신은 押留할 수 없다.

제32조 (장거리 通話 및 電報) 수형자에게 장거리 通話를 하거나 電報를 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기타 접견에 관한 규정이 장거리 통화에 준용되며 文書受發에 관한 규정이 電報에 준용된다.

제33조 (小包) ① 수형자는 적절한 간격으로 연 3회 食料品 및 嗜好品의 小包를 수령할 수 있다. 교도소는 發送時期 및 個別目的物의 최고한도량을 規定할 수 있다. 기타의 소포 또는 다른 내용물이 있는 소포는 矯導所의 許可를 필요로 한다. 제외되는 物件에 대하여는 제22조제2항이 준용된다.

② 小包는 수형자의 面前에서 開封되어야 한다. 제외된 물건은 수형자의 所有物에 귀속시키거나 發信人에게 반송할 수 있다. 發送 또는 保管時에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의 損傷을 초래할 수 있는 引渡되지 아니한 물건은 廢棄할 수 있다. 이에 의해 취해진 조치는 수형자에게 통지된다.

③ 소포의 수령은 이것이 교도소의 安全이나 秩序를 위태롭게 할 이유가 있

(3) Der Empfang von Paketen kann vorübergehend versagt werden, wenn dies wegen Gefährdung der Sicherheit oder Ordnung der Anstalt unerläßlich ist.

(4) Dem Gefangenen kann gestattet werden, Pakete zu versenden. Die Vollzugsbehörde kann ihren Inhalt aus Gründen der Sicherheit oder Ordnung der Anstalt überprüfen.

§ 34 Verwertung von Kenntnissen

(1) Kenntnisse aus der Überwachung der Besuche oder des Schriftwechsels dürfen nur verwertet werden.

1. soweit dies notwendig ist, um die Sicherheit oder Ordnung der Anstalt zu wahren oder Straftaten oder Ordnungswidrigkeiten zu verhüten, zu unterbinden oder zu verfolgen oder
2. soweit dies aus Gründen der Behandlung geboten ist; der Gefangene soll gehört werden.

(2) Die Kenntnisse dürfen nur den zuständigen Vollzugsbediensteten sowie den zuständigen Gerichten und den Behörden mitgeteilt werden, die zuständig sind, Straftaten oder Ordnungswidrigkeiten zu verhüten, zu unterbinden oder zu verfolgen.

§ 35 Urlaub, Ausgang und Ausführung aus wichtigem Anlaß

(1) Aus wichtigem Anlaß kann der Anstaltsleiter dem Gefangenen Ausgang gewähren oder ihn bis zu sieben Tagen beurlauben; der Urlaub aus anderem wichtigen Anlaß als wegen einer lebensgefährlichen Erkrankung oder wegen des Todes eines Angehörigen darf sieben Tage im Jahr nicht übersteigen. § 11 Abs. 2, § 13 Abs. 5 und § 14 gelten entsprechend.

(2) Der Urlaub nach Absatz 1 wird nicht auf den regelmäßigen Urlaub angerechnet.

(3) Kann Ausgang oder Urlaub aus den in § 11 Abs. 2 genannten Gründen nicht gewährt werden, kann der Anstaltsleiter den Gefangenen ausführen lassen. Die Aufwendungen hierfür hat der Gefangene zu tragen. Der Anspruch ist nicht geltend zu machen, wenn dies die Behandlung oder die Eingliederung behindern würde.

§ 36 Gerichtliche Termine

(1) Der Anstaltsleiter kann einem Gefangenen zur Teilnahme an einem gerichtlichen Termin Ausgang oder Urlaub erteilen, wenn anzunehmen ist, daß er der Ladung folgt und keine Entweichungs-oder Mißbrauchsgefahr (§ 11 Abs. 2) besteht. § 13 Abs. 5 und § 14 gelten entsprechend.

(2) Wenn ein Gefangener zu einem gerichtlichen Termin geladen ist und Ausgang oder Urlaub nicht gewährt wird, läßt der Anstaltsleiter ihn mit seiner

는 불가피한 경우 일시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다.

④ 수형자에게 小包의 發送은 허용된다. 교도소는 교도소의 안전이나 질서를 이유로 하여 그 내용을 검사할 수 있다.

제34조 (知得事項의 利用) ① 接見 또는 文書受發의 檢閱로부터 알게 된 知得事項은 다음의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1. 교도소의 安全이나 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또는 犯罪行爲나 秩序違反行爲를 豫防, 防止 또는 訴追하기 위하여 이것이 필수적인 경우
2. 이것이 處遇의 理由에서 필요한 경우 그러나 이 경우 수형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② 知得事項은 당해 矯導官 및 당해 法院과 犯罪行爲 또는 秩序違反行爲를 예방, 방지 또는 소추할 권한이 있는 官庁에만 통지될 수 있다.

제35조 (休暇, 外出 및 중요한 事由에 의한 同伴外出) ①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도소장은 수형자에게 外出을 許可하거나 7일의 한도내에서 休暇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생명에 위험이 있는 疾病을 사유로 하거나 親族의 死亡을 사유로 하는 것외에 다른 중요한 사유에 의한 휴가는 연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 제2항, 제13조 제5항 및 제14조는 이에 準用된다.

② 제1항에 의한 休暇는 定期休暇로 계산되지 아니한다.

③ 제11조제2항에 열거된 사유에 의하여 外出 또는 休暇가 허가될 수 없는 경우에 교도소장은 수형자를 同伴外出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한 비용은 수형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處遇 또는 社會復歸에 지장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구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36조 (法院의 召喚) ① 교도소장은 수형자가 그 召喚을 준수하고 逃走 또는 濫用의 危險 (제11조 2항)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法院의 소환에 참석하도록 수형자에게 外出 또는 休暇를 허가할 수 있다. 제13조제5항 및 제14조는 이에 준용된다.

② 수형자가 法院의 期日에 소환되었고 外出 또는 休暇를 허가 받지 못하는 경

Zustimmung zu dem Termin ausführen, sofern wegen Entweichungs-oder Mißbrauchsgefahr (§ 11 Abs. 2) keine überwiegenden Gründe entgegenstehen. Auf Ersuchen eines Gerichts läßt er den Gefangenen vorführen, sofern ein Vorführungsbefehl vorliegt.

(3) Die Vollzugsbehörde unterrichtet das Gericht über das Veranlaßte.

Fünftel Titel Arbeit, Ausbildung und Weiterbildung

§ 37 Zuweisung

(1) Arbeit, arbeitstherapeutische Beschäftigung, Ausbildung und Weiterbildung dienen insbesondere dem Ziel, Fähigkeiten für eine Erwerbstätigkeit nach der Entlassung zu vermitteln, zu erhalten oder zu fördern.

(2) Die Vollzugsbehörde soll dem Gefangenen wirtschaftlich ergiebige Arbeit zuweisen und dabei seine Fähigkeiten, Fertigkeiten und Neigungen berücksichtigen.

(3) Geeigneten Gefangenen soll Gelegenheit zur Berufsausbildung, beruflichen Fortbildung, Umschulung oder Teilnahme an anderen ausbildenden oder weiterbildenden Maßnahmen gegeben werden.

(4) Kann einem arbeitsfähigen Gefangenen keine wirtschaftlich ergiebige Arbeit oder die Teilnahme and Maßnahmen nach Absatz 3 zugewiesen werden, wird ihm eine angemessene Beschäftigung zugeteilt.

(5) Ist ein Gefangener zu wirtschaftlich ergiebiger Arbeit nicht fähig, soll er arbeitstherapeutisch beschäftigt werden.

§ 38 Unterricht

(1) Für geeignete Gefangene, die den Abschluß der Hauptschule nicht erreicht haben, soll Unterricht in den zum Hauptschulabschluß führenden Fächern oder ein der Sonderschule entsprechender Unterricht vorgesehen werden. Bei der beruflichen Ausbildung oder Umschulung ist berufsbildender Unterricht vorzusehen; dies gilt auch für die berufliche Fortbildung, soweit die Art der Maßnahme es erfordert.

(2) Unterricht soll während der Arbeitszeit stattfinden.

§ 39 Freies Beschäftigungsverhältnis, Selbstbeschäftigung

(1) Dem Gefangenen soll gestattet werden, einer Arbeit, Berufsausbildung,

우 교도소장은 逃走 또는 남용의 위험(제11조 제2항)을 이유로 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한 수형자에게 그의 동의에 의하여 同伴外出을 시킨다. 법원의 요청에 의하여 교도소장은 拘引令狀이 있는 경우 수형자를 구인시킨다.

③ 교도소는 法院에 추후 발생한 사항을 보고한다.

제5절 作業·敎育 및 補習敎育

제37조 (割當) ① 作業, 作業療法的인 노역, 교육 및 보습교육은 특히 釋放 후에 就業을 위한 능력을 周旋, 維持 또는 增進할 목적에 기여하도록 한다.

② 矯導所는 수형자에게 經濟的으로 利益이 되는 작업을 割當해 주며 이 경우 수형자의 能力, 熟練度 및 素質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능력있는 수형자는 職業敎育, 직업적인 補習敎育, 再敎育 기타 교육 또는 보습교육 조치에 참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④ 勤勞能力 있는 수형자에게 經濟的으로 利益이 되는 作業 또는 제3항의 조치에 참가가 지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受刑者에게 상당한 勞役을 割當하여야 한다.

⑤ 受刑者가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作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형자는 作業療法에 전념토록 하여야 한다.

제38조 (講義) ① 中等學校를 졸업하지 못한 능력있는 수형자를 위하여 中等學校 卒業에 중요한 과목의 講義 또는 特殊學校에 준하는 강의가 마련되어야 한다. 職業敎育 또는 再敎育의 경우에는 직업교육강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 價値의 性質上 그것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직업상의 平生敎育에 대해서도 또한 이것이 적용된다.

② 講義는 作業時間 중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39조 (任意的 作業條件, 自發的 作業) ① 執行計劃의 범위내에서 釋放 후

beruflichen Fortbildung oder Umschulung auf der Grundlage eines freien Beschäftigungsverhältnisses außerhalb der Anstalt nachzugehen, wenn dies im Rahmen des Vollzugsplanes dem Ziel dient, Fähigkeiten für eine Erwerbstätigkeit nach der Entlassung zu vermitteln, zu erhalten oder zu fördern und nicht überwiegende Gründe des Vollzuges entgegenstehen. § 11 Abs. 1 Nr. 1, Abs. 2 und § 14 bleiben unberührt.

(2) Dem Gefangenen kann gestattet werden, sich selbst zu beschäftigen.

(3) Die Vollzugsbehörde kann verlangen, daß ihr das Entgelt zur Gutschrift für den Gefangenen überwiesen wird.

§ 40 Abschlußzeugnis

Aus dem Abschlußzeugnis über eine ausbildende oder weiterbildende Maßnahme darf die Gefangenschaft eines Teilnehmers nicht erkennbar sein.

§ 41 Arbeitspflicht

(1) Der Gefangene ist verpflichtet, eine ihm zugewiesene, seinen körperlichen Fähigkeiten angemessene Arbeit, arbeitstherapeutische oder sonstige Beschäftigung auszuüben, zu deren Verrichtung er auf Grund seines körperlichen Zustandes in der Lage ist. Er kann jährlich bis zu drei Monaten zu Hilfstätigkeiten in der Anstalt verpflichtet werden, mit seiner Zustimmung auch darüber hinaus. Die Sätze 1 und 2 gelten nicht für Gefangene, die über 65 Jahre alt sind, und nicht für werdende und stillende Mütter, soweit gesetzliche Beschäftigungsverbote zum Schutze erwerbstätiger Mütter bestehen.

(2) Die Teilnahme an einer Maßnahme nach § 37 Abs. 3 bedarf der Zustimmung des Gefangenen. Die Zustimmung darf nicht zur Unzeit widerrufen werden.

(3) Die Beschaftigung in einem von privaten Unternehmen unterhaltenen Betriebe (§ 149 Abs. 4) bedarf der Zustimmung des Gefangenen. Der Widerruf der Zustimmung wird erst wirksam, wenn der Arbeitsplatz von einem anderen Gefangenen eingenommen werden kann, spätestens nach sechs Wochen.

§ 42 Freistellung von der Arbeitspflicht

(1) Hat der Gefangene ein Jahr lang zugewiesene Tätigkeit nach § 37 oder Hilfstätigkeiten nach § 41 Abs. 1 Satz 2 ausgeübt, so kann er beanspruchen, achtzehn Werktage von der Arbeitspflicht freigestellt zu werden. Zeiten, in denen der Gefangene infolge Krankheit an seiner Arbeitsleistung verhindert war, werden auf das Jahr bis zu sechs Wochen jährlich angerechnet.

(2) Auf die Zeit der Freistellung wird Urlaub aus der Haft (§§ 13,35)

의 就業을 위한 능력을 周旋, 維持 또는 增進시키는 목적에 부합하며 執行의 중대한 이유에 背致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任意的 作業條件 위에 矯導所 外部에서 作業, 직업교육, 직업상의 補習敎育 또는 再敎育에 전념하도록 수형자에게 허용되어야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14조는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수형자에게는 자발적으로 작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될 수 있다.

③ 矯導所는 報酬를 수형자의 矯導所計定에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40조 (卒業證書) 敎育 또는 補習敎育 조치에 관한 卒業證書에는 참가자의 拘禁狀態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제41조 (作業義務) ① 수형자는 그의 身體狀態를 감안하여 그가 달성해 낼 수 있는 자기에게 할당되고 자기의 身體的 能力에 적합한 作業, 作業療法的인 또는 기타의 勞役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수형자는 연 3월의 한도내에서 교도소에서 補助作業을 하여야 하며 그의 同意가 있는 경우 그 이상의 기간도 보조작업을 할 수 있다. 동항 1문 및 2문은 65세 이상인 수형자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으며 就業 중인 母의 保護를 위한 法的인 勞役禁止가 존재하는 경우 妊娠 중인 婦女 및 授乳 중인 부녀에 대하여 그 적용이 없다.

② 제37조제3항에 의한 조치에의 참여는 수형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그 동의는 적절한 시기에 철회될 수 있다.

③ 私企業에 의하여 운영되는 營業(제149조제4항)에서의 作業은 수형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同意의 撤回는 작업장소가 다른 수형자에 의하여 대신할 수 있는 경우 늦어도 6주간 후에는 효력을 발생한다.

제42조 (作業義務의 免除) ① 수형자가 1년 동안 제37조에 의거하여 割當받은 作業 또는 제41조제2항에 의한 補助作業을 수행한 경우, 수형자는 18일의 勤勞日을 작업의무로부터 면제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수형자가 疾病의 결과 그의 作業遂行에 지장이 있었던 시간은 연6주의 한도내에서 당해 年度에 算入된다.

angerechnet, soweit er in die Arbeitszeit fällt und nicht wegen einer lebensgefährlichen Erkrankung oder des Todes eines Angehörigen erteilt worden ist.

(3) Der Gefangene erhält für die Zeit der Freistellung seine zuletzt gezahlten Bezüge weiter.

(4) Urlaubsregelungen der Beschäftigungsverhältnisse außerhalb des Strafvollzuges bleiben unberührt.

§ 43 Arbeitsentgelt

(1) Übt der Gefangene eine zugewiesene Arbeit, sonstige Beschäftigung oder eine Hilfstätigkeit nach § 41 Abs. 1 Satz 2 aus, so erhält er ein Arbeitsentgelt. Der Bemessung des Arbeitsentgelts ist der in § 200 bestimmte Satz des durchschnittlichen Arbeitsentgelts aller Versicherten der Rentenversicherung der Arbeiter und Angestellten ohne Auszubildende des vorvergangenen Kalenderjahres zugrunde zu legen (Eckvergütung). Ein Tagessatz ist der zweihundertfünfzigste Teil der Eckvergütung; das Arbeitsentgelt kann nach einem Stundensatz bemessen werden.

(2) Das Arbeitsentgelt kann je nach der Leistung des Gefangenen und der Art der Arbeit gestuft werden. 75 vom Hundert der Eckvergütung dürfen nur dann unterschritten werden, wenn die Arbeitsleistungen des Gefangenen den Mindestanforderungen nicht genügen.

(3) Übt ein Gefangener zugewiesene arbeitstherapeutische Beschäftigung aus, erhält er ein Arbeitentgelt, soweit dies der Art seiner Beschäftigung und seiner Arbeitsleistung entspricht.

(4) Das Arbeitsentgelt ist dem Gefangenen schriftlich bekanntzugeben.

§ 44 Ausbildungsbeihilfe

(1) Nimmt der Gefangene an einer Berufsausbildung, Umschulung, beruflichen Fortbildung oder an einem Unterricht teil und ist er zu diesem Zweck von seiner Arbeitspflicht freigestellt, so erhält er eine Ausbildungsbeihilfe, soweit ihm keine Leistungen zum Lebensunterhalt zustehen, die freien Personen aus solchem Anlaß gewährt werden. Der Nachrang der Sozialhilfe nach § 2 Abs. 2 des Bundessozialhilfegesetzes wird nicht berührt.

(2) Für die Bemessung der Ausbildungsbeihilfe gilt § 43 Abs. 1 und 2 entsprechend.

(3) Nimmt der Gefangene während der Arbeitszeit stunden-oder tageweise

② 휴가가 作業時間에 들어있고 生命에 위험을 주는 疾病 또는 親族의 死亡을 사유로 許與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금 중의 휴가(제13조, 제35조)는 免除 期間에 算入된다.

③ 수형자는 免除期間 동안에도 그가 최종적으로 支給받은 給料를 계속하여 받는다.

④ 刑事執行 이외에 勞役條件上의 休暇規定은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3조 (勞賃) ① 수형자가 제41조1항2문에 의거하여 割當받은 作業, 기타의 勞役 또는 補助作業을 이행하는 경우 수형자는 勞賃을 받는다. 勞賃의 算定에는 다음해의 피교육자를 제외한 근로자 및 피고용자의 전체 연금보험피보험자의 평균노임에 대한 제200조에 규정된 率이 그 기초가 되어야 한다(受刑者標準勞賃). 日當金額은 受刑者標準勞賃의 250분의 1로 한다. 그러나 勞賃은 時間比率에 의하여 산정될 수 있다.

② 勞賃은 수형자의 作業成果 및 作業의 種類에 따라 等級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형자의 作業成果가 最低要求水準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受刑者標準勞賃의 75퍼센트에 미달할 수 있다.

③ 수형자가 할당받은 作業療法的인 노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그의 勞役의 種類 및 作業成果에 상응하는 한 그는 勞賃을 받는다.

④ 勞賃은 수형자에게 書面으로 통지되어야 한다.

제44조 (職業養成期間 중의 特別扶養手當) ① 수형자가 職業敎育, 再敎育, 직업상의 補習敎育 또는 講義에 참가하는 경우 및 수형자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그의 作業義務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수형자는 그러한 사유로 自由人이 받게 되는 生計費를 위한 給付가 그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는 한 수형자는 職業養成期間 중의 特別扶養手當을 받는다. 聯邦社會扶助法 제2조 제2항에 의거한 社會扶助의 순서는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職業養成期間 중의 特別扶養手當의 산정에는 이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이 준용된다.

am Unterricht oder an anderen zugewiesenen Maßnahmen gemäß § 37 Abs. 3 teil, so erhält er in Höhe des ihm dadurch entgehenden Arbeitsentgelts eine Ausbildungsbeihilfe.

§ 45 Ausfallentschädigug

(1) Kann einem arbeitsfähigen Gefangenen aus Gründen, die nicht in seiner Person liegen, länger als eine Woche eine Arbeit oder Beschäftigung im Sinne des § 37 Abs. 4 nicht zugewiesen werden, erhält er eine Ausfallentschädigung.

(2) Wird ein Gefangener nach Beginn der Arbeit oder Beschäftigung infolge Krankheit länger als eine Woche an seiner Arbeitsleistung verhindert, ohne daß ihn ein Verschulden trifft, so erhält er ebenfalls eine Ausfallentschädigung. Gleiches gilt für Gefangene, die eine Ausbildungsbeihilfe nach § 44 oder Ausfallentschädigung nach Absatz 1 bezogen haben.

(3) Werdende Mütter, die eine Arbeit oder Beschäftigung im Sinne des § 37 nicht verrichten, erhalten Ausfallentschädigung in den letzten sechs Wochen vor der Entbindung und bis zum Ablauf von acht Wochen, bei Früh-und Mehrlingsgeburten bis zu zwölf Wochen nach der Entbindung.

(4) Die Ausfallentschädigung darf 60 vom Hundert der Eckvergütung nach § 43 Abs. 1 nur dann unterschreiten, wenn der Gefangene das Mindestentgelt des § 43 Abs. 2 vor der Arbeitslosigkeit oder Krankheit nicht erreicht hat.

(5) Ausfallentschädigung wird unbeschadet der Regelung nach Absatz 3 insgesamt bis zur Höchstdauer von sechs Wochen jährlich gewährt. Eine weitere Ausfallentschädigung wird erst gewährt, wenn der Gefangene erneut wenigstens ein Jahr Arbeitsentgelt oder Ausbildungsbeihilfe bezogen hat.

(6) Soweit der Gefangene nach § 566 Abs. 2 der Reichsversicherungsordnung Übergangsgeld erhält, ruht der Anspruch auf Ausfallentschädigung.

§ 46 Taschengeld

Wenn ein Gefangener wegen Alters oder Gebrechlichkeit nicht mehr arbeitet oder ihm eine Ausfallentschädigung nicht oder nicht mehr gewährt wird, erhält er ein angemessenes Taschengeld, falls er bedürftig ist. Gleiches gilt für Gefangene, die für eine Beschäftigung nach § 37 Abs. 5 kein Arbeitsentgelt erhalten.

③ 수형자가 作業時間 중에 講義 또는 제37조 제3항에 의거한 기타 割當받은 조치에 時間當 또는 日當으로 참가하는 경우 수형자는 이에 의해서 그가 상실하게 되는 勞賃의 정도에 따라 職業養成期間 중의 特別扶養手當을 받는다.

제45조 (缺損補償金) ① 근로능력 있는 수형자에게 수형자의 歸責事由가 아닌 사유로 제37조제4항에 의한 作業 또는 勞役이 1주일 이상 할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형자는 缺損補償金을 받는다.

② 수형자가 作業 또는 勞役의 개시 후 그의 歸責事由 없이 疾病의 결과 1주일 이상 그의 作業遂行에 지장을 받게 되는 경우 수형자는 역시 缺損補償金을 받는다. 제44조에 의한 職業養成期間 중의 特別扶養手當 또는 前條 제1항에 의한 결손보상금을 받은 수형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③ 제37조의 作業 또는 勞役을 수행하지 못하는 妊娠 중인 부녀는 分娩 전 최종 6주간 및 분만 후 8주간의 경과시까지 初産 및 다태아출산시에는 12주간까지 결손보상금을 받는다.

④ 缺損補償金은 수형자가 失職 또는 疾病 전에 제43조제2항의 최저보수에 미달한 경우에만 제43조제1항에 의거한 受刑者標準勞賃의 60퍼센트에 미달할 수 있다.

⑤ 결손보상금은 전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산하여 최고 연 6주간까지 허용된다. 기타 缺損補償金은 수형자가 새로 최소한 1년동안 勞賃 또는 職業養成期間 중의 特別扶養手當을 받은 경우에만 허용된다.

⑥ 수형자가 라이히보험법 제566조제2항에 의거하여 移轉金을 받는 경우에는 결손보상금에 대한 청구가 중단된다.

제46조 (용돈) 수형자가 年齡 또는 身體的 缺陷으로 더 이상 作業이 불가능하거나 수형자에게 缺損補償金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더 이상 이를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형자는 그의 필요에 상당한 정도의 용돈을 받는다. 제37조제5항에 의한 勞役에 대하여 아무런 勞賃을 받지 못하는 수형자에 대해서도 또한 동일하게 적용된다.

§ 47 Hausgeld

(1) Der Gefangene darf von seinen in diesem Gesetz geregelten Bezügen mindestens dreißig Deutsche Mark monatlich (Hausgeld) und das Taschengeld (§ 46) für den Einkauf (§ 22 Abs. 1) oder anderweit verwenden.

(2) Der Mindestbetrag des Hausgeldes erhöht sich um jeweil zehn vom Hundert der dreihundert Deutsche Mark übersteigenden monatlichen Bezüge. Die Vollzugsbehörde kann höhere Beträge von der Höhe des Überbrückungsgeldes abhängig machen.

(3) Für Gefangene, die in einem freien Beschäftigungsverhältnis stehen (§ 39 Abs. 1) oder denen gestattet ist, sich selbst zu beschäftigen (§ 39 Abs. 2), wird aus ihren Bezügen ein angemessenes Hausgeld festgesetzt.

§ 48 Rechtsverordnung

Der Bundesminister der Justiz wird ermächtigt, im Einvernehmen mit dem Bundesminister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mit Zustimmung des Bundesrates zur Durchführung der §§ 43 bis 45 Rechtsverordnungen über die Vergütungsstufen zu erlassen.

§ 49 Unterhaltsbeitrag

(1) Auf Antrag des Gefangenen ist zur Erfüllung einer gesetzlichen Unterhaltspflicht aus seinen Bezügen an den Berechtigten oder einen Dritten ein Unterhaltsbeitrag zu zahlen.

(2) Reichen die Einkünfte des Gefangenen nach Abzug des Hausgeldes und des Unterhaltsbeitrages nicht aus, um den Haftkostenbeitrag zu begleichen, so wird ein Unterhaltsbeitrag nur bis zur Höhe des nach § 850 c der Zivilprozeßordnung unpfändbaren Betrages gezahlt. Bei der Bemessung des nach Satz 1 Maßgeblichen Betrages wird die Zahl der unterhaltsberechtigten Personen um eine vermindert.

§ 50 Haftkostenbeitrag

(1) Von den in diesem Gesetz geregelten Bezügen und von den Bezügen der Gefangenen, die in einem freien Beschäftigungsverhältnis stehen (§ 39 Abs. 1), darf ein Haftkostenbeitrag in Höhe des Betrages einbehalten werden, der nach § 160 Abs. 2 der Reichsversicherungsordnung durchschnittlich zur Bewertung der Sachbezüge festgesetzt ist. Der Bundesminister der Justiz stellt den Durchschnittsbetrag für jedes Kalenderjahr nach den am 1. Oktober des vorhergehenden Jahres geltenden Bewertungen der Sachbezüge fest und macht ihn im Bundesanzeiger bekannt. Der Haftkostenbeitrg darf auch von dem unpfändbaren Teil der Bezüge, jedoch nicht zu Lasten des Hausgeldes oder des Unterhaltsbeitrages

제47조 (受刑者의 扶養家族 給付金) ① 수형자는 이 법에 규정된 給料로부터 최소 월 30마르크(受刑者扶養家族給付金)및 購入(제22조제1항) 또는 기타의 용도를 위한 용돈(제46조)을 사용할 수 있다.

② 受刑者扶養家族給付金의 최저액은 300마르크를 초과하는 月 給料에 대하여 그때마다 100분의 10을 인상한다. 교도소는 更生補助金의 크기에 따라서 그 이상의 금액을 인상할 수 있다.

③ 任意的 勞役條件에 있거나(제39조제1항) 또는 自發的 勞役을 할 수 있도록(제39조제2항) 허용받은 수형자에게 그의 給料에서 상당한 정도의 受刑者扶養家族給付金이 정해진다.

제48조 (法規命令) 연방법무부장관은 연방 노동사회부장관과 협의 및 聯邦參議院의 동의에 의하여 제43조 내지 제45조의 시행을 위한 報酬等級에 관한 法規命令을 발할 권한이 있다.

제49조 (扶助金) ① 수형자의 신청으로 法的 扶養義務의 이행을 위하여 그의 給料에서 被扶養權利者 또는 제3자에게 扶助金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수형자의 所得이 拘禁費用을 지급하기 위하여 受刑者扶養家族給付金 및 生活扶助金의 공제 후에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生活扶助金은 민사소송법 제850c조에 의거한 押留할 수 없는 금액의 한도에서만 지급된다. 전조 1문에 의거한 標準的인 金額算定의 경우에 被扶養權利가 있는 자의 수는 1인이 감소한다.

제50조 (拘禁費用) ① 이 법에 규정된 給料 및 任意的 勞役條件에 있는(제39조제1항) 수형자의 給料로부터는 라이히보험법 제160조 제2항에 의거한 現物給與의 評価를 평균한 금액의 한도에서 拘禁費用이 留保되어 질 수 있다. 연방법무부장관은 전년도 10월1일에 적용하고 있는 現物給與 評価基準에 의한 매년도 平均勞賃을 확정하여 이를 聯邦官報에 공고한다. 拘禁費用은 또한 押留할 수 없는 給料의 일부에서 그러나 受刑者扶養家族給付金 또는 生活扶助金의 부담으로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angesetzt werden.

(2) Die Selbstbeschäftigung (§ 39 Abs. 2) kann davon abhängig gemacht werden, daß der Gefangene den Haftkostenbeitrag monatlich im voraus entrichtet.

§ 51 Überbrückungsgeld

(1) Aus den in diesem Gesetz geregelten Bezügen und aus den Bezügen der Gefangenen, die in einem freien Beschäftigungsverhältnis stehen (§ 39 Abs. 1) oder denen gestattet ist, sich selbst zu beschäftigen (§ 39 Abs. 2), ist ein Überbrückungsgeld zu bilden, das den notwendigen Lebensunterhalt des Gefangenen und seiner Uhterhaltsberechtigten für die ersten vier Wochen nach seiner Entlassung sichern soll.

(2) Das Überbrückungsgeld wird dem Gefangenen bei der Entlassung in die Freiheit ausgezahlt. Die Vollzugsbehörde kann es auch ganz oder zum Teil dem Bewährungshelfer oder einer mit der Entlassenenbetreuung befaßten Stelle überweisen, die darüber entscheiden, wie das Geld innerhalb der ersten vier Wochen nach der Entlassung an den Gefangenen ausgezahlt wird. Der Bewährungshelfer und die mit der Entlassenenbetreuung befaßte Stelle sind verpflichtet, das Überbrückungsgeld von ihrem Vermögen gesondert zu halten. Mit Zustimmung des Gefangenen kann das Überbrückungsgeld auch dem Unterhaltsberechtigten überwiesen werden.

(3) Der Anstaltsleiter kann gestatten, daß das Überbrückungsgeld für Ausgaben in Anspruch genommen wird, die der Eingliederung des Gefangenen dienen.

(4) Der Auspruch auf Auszhlung des Überbrückungsgeldes ist unpfändbar. Erreicht es nicht die in Absatz 1 bestimmte Höhe, so ist in Höhe des Unterschiedsbetrages auch der Anspruch auf Auszhlung des Eigengeldes unpfändbar. Bargeld des entlassenen Gefangenen, an den wegen der nach Satz 1 oder Satz 2 unpfändbaren Ansprüche Geld ausgezahlt worden ist, ist für die Dauer von vier Wochen seit der Entlassung insoweit der Pfändung nicht unterworfen, als es dem Teil der Ansprüche für die Zeit von der Pfändung bis zum Ablauf der vier Wochen entspricht.

(5) Absatz 4 gilt nicht bei einer Pfändung wegen der in § 850 d Abs. 1 Satz 1 der Zivilprozeßordnung bezeichneten Unterhaltsansprüche. Dem entlassenen Gefangenen ist jedoch so viel zu belassen, als er für seinen notwendigen Unterhalt und zur Erfüllung seiner sonstigen gesetzlichen Unterhaltspflichten für die Zeit von der Pfändung bis zum Ablauf von vier Wochen seit der Entlassung bedarf.

§ 52 Eigengeld

Bezüge des Gefangenen, die nicht als Hausgeld, Haftkostenbeitrag, Unterhaltsbeitrag oder Uberbruckungsgeld in Anspruch genommen werden, sind dem Gefangenen zum Eigengeld gutzuschreiben.

② 受刑者가 拘禁費用을 매월 사전에 지급한 것과는 별도로 自發的作業(제39조 제2항)이 행해질 수 있다.

제51조 (更生補助金) ① 이 법에 규정된 報酬 및 任意的 勤勞條件에 있거나 (제39조제1항) 또는 自發的 勞役을 할 수 있도록(제39조제2항) 허가받은 수형자의 給料로부터 수형자의 釋放 후 처음 4주간 동안 수형자 및 그의 被扶養子의 기본적인 生活扶助를 확실히 할 수 있는 更生補助金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更生補助金은 釋放時에 수형자에게 지급된다. 교도소는 그 갱생보조금이 석방후 처음 4주간 이내에 수형자에게 支給되는 方法을 결정하는 保護觀察者 또는 保釋과 관련있는 職責에 있는 자에게 그 更生補助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보호관찰자 및 보석과 관련있는 職責에 있는 자는 更生補助金을 그의 財産에서 구분해 유지할 의무가 있다. 수형자의 동의에 의하여 갱생보조금은 또한 被扶養權利者에게 양도될 수 있다.

③ 교도소장은 그 更生補助金이 수형자의 社會復歸에 도움이 되는 支出을 위하여 청구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④ 更生補助金의 지급청구는 이를 押留할 수 없다. 갱생보조금이 제1항에 규정된 정도에 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差額을 한도로 私的인 資金에 대한 지급 청구도 이를 押留하지 못한다. 1문 및 2문에 의거하여 압류할 수 없는 청구를 이유로 金錢을 지급받은 석방된 수형자의 現金은 그것이 4주간의 경과시까지 押留時期를 위한 청구의 일부에 해당하더라도 釋放 이후 4주간의 기간동안 압류되지 아니한다.

⑤ 前項 제4항은 민사소송법 제850ｄ조 제1항1호에 열거된 扶養請求를 이유로 하는 押留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석방된 수형자에게는 그의 석방후 4주간의 경과시까지 押留時期를 위하여 그의 필수적인 生計 및 기타 그의 法的인 扶養義務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만큼은 남겨두어야 한다.

제52조 私的인 資金, 受刑者家族扶養給付金, 拘禁費用, 生活扶助金 또는 更生補助金으로서 청구되지 아니하는 수형자의 給料는 수형자에게 私的인 資金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Sechster Titel Religionsausübung

§ 53 Seelsorge

(1) Dem Gefangenen darf religiöse Betreuung durch einen Seelsorger seiner Religionsgemeinschaft nicht versagt werden. Auf seinen Wunsch ist ihm zu helfen, mit einem Seelsorger seiner Religionsgemeinschaft in Verbindung zu treten.

(2) Der Gefangene darf grundlegende religiose Schriften besitzen. Sie dürfen ihm nur bei grobem Mißbrauch entzogen werden.

(3) Dem Gefangenen sind Gegenstände des religiösen Gebrauchs in angemessenem Umfange zu belassen.

§ 54 Religiöse Veranstaltungen

(1) Der Gefangene hat das Recht, am Gottesdienst und an anderen religiösen Veranstaltungen seines Bekenntnisses teilzunehmen.

(2) Zu dem Gottesdienst oder zu religiösen Veranstaltungen einer anderen Religionsgemeinschaft wird der Gefangene zugelassen, wenn deren Seelsorger zustimmt.

(3) Der Gefangene kann von der Teilnahme am Gottesdienst oder anderen religiösen Veranstaltungen ausgeschlossen werden, wenn dies aus überwiegenden Gründen der Sicherheit oder Ordnung geboten ist; der Seelsorger soll vorher gehört werden.

§ 55 Weltanschauungsgemeinschaften

Für Angehörige weltanschaulicher Bekenntnisse gelten die §§ 53 und 54 entsprechend.

Siebter Titel Gesundheitsfürsorge

§ 56 Allgemeine Regeln

(1) Für die körperliche und geistige Gesundheit des Gefangenen ist zu sorgen. § 101 bleibt unberührt.

(2) Der Gefangene hat die notwendigen Maßnahmen zum Gesundheitsschutz und zur Hygiene zu unterstützen.

§ 57 Maßnahmen zur Früherkennung von Krankheiten

Die Gefangenen haben zur Sicherung der Gesundheit Anspruch auf folgende

제6절 宗教行事

제53조 (司祭職) ① 수형자에게 그의 宗教團體의 司祭를 통한 종교적인 保護가 거부되지 아니한다. 수형자의 希望에 의하여 그의 종교단체의 사제와 交通할 수 있도록 수형자를 도와주어야 한다.

② 수형자는 기본적인 宗教書籍를 소유할 수 있다. 그 宗教書籍은 중대한 濫用의 경우에만 수형자에게서 박탈될 수 있다.

③ 수형자에게는 상당한 정도로 宗教的 用途의 물건이 許與되어야 한다.

제54조 (宗教行事) ① 수형자는 禮拜 및 그의 宗派의 기타의 宗教行事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② 宗教團體의 司祭가 동의하는 경우 예배 또는 다른 종교단체의 행사에 대하여 수형자는 이의 참가가 허용된다.

③ 수형자는 그것이 安全 또는 秩序上의 중대한 이유에서 禁止된 경우 그러한 禮拜 또는 기타의 宗教行事에 대한 참가가 배제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司祭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제55조 (世界觀團體) 世界觀的인 宗派의 所属員에게 제53조 및 제54조가 준용되다.

제7절 衛生保護

제56조 (總則) ① 수형자의 身體的·精神的 健康은 보호되어야 한다. 제101조는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수형자는 衛生保護 및 健康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57조 (疾病의 早期發見을 위한 措置) 수형자는 健康의 保全을 위하여 질

Maßnahmen zur Früherkennung von Krankheiten:

1. Frauen von Beginn des dreißigsten Lebensjahres an einmal jährlich auf eine Untersuchung zur Früherkennung von Krebserkrankungen,
2. Männer von Beginn des fünfundvierzigsten Lebensjahres an einmal jährlich auf eine Untersuchung zur Früherkennung von Krebserkrankungen,
3. Frauen für ihre Kinder, die mit ihnen in der Vollzugsanstalt untergebracht sind, bis zur Vollendung des vierten Lebensjahres auf Untersuchungen zur Früherkennung von Krankheiten, die eine normale körperliche oder geistige Entwicklung des Kindes im besonderen Maße gefährden.

§ 58 Krankenpflege

Der Gefangene erhält Krankenpflege vom Beginn der Krankheit an; sie umfaßt insbesondere

1. ärztliche und zahnärztliche Behandlung,
2. Versorgung mit Arznei-, Verband-, Heilmitteln und Brillen,
3. Körperersatzstücke, orthopädische und andere Hilfsmittel,
4. Zuschüsse zu den Kosten für Zahnersatz und Zahnkronen oder Übernahme der gesamten Kosten.
5. Belastungserprobung und Arbeitstherapie, soweit die Belange des Vollzuges dem nicht entgegenstehen.

§ 59 Art und Umfang der Leistungen

Für die Art der Untersuchungen zur Früherkennung von Krankheiten sowie für den Umfang der Leistungen zur Früherkennung von Krankheiten und zur Krankenpflege gelten die entsprechenden Vorschriften der Reichsversicherungsordnung und die auf Grund dieser Vorschriften getroffenen Regelungen.

§ 60 Krankenpflege im Urlaub

Während eines Urlaubs oder Ausgangs hat der Gefangene gegen die Vollzugsbehörde nur einen Anspruch auf ärztliche Behandlung und Pflege in der für ihn zuständigen Vollzugsanstalt.

§ 61 Ausstattung mit Hilfsmitteln

Der Gefangene hat Anspruch auf Ausstattung mit Körperersatzstücken, orthopädischen und anderen Hilfsmitteln, die erforderlich sind, um einer drohenden Behinderung vorzubeugen, den Erfolg der Heilbehandlung zu sichern oder eine körperliche Behinderung auszugleichen, sofern dies nicht mit Rücksicht auf die Kürze des Freiheitsentzuges ungerechtfertigt ist. Der Anspruch umfaßt auch die notwendige Änderung, Instandsetzung und Ersatzbeschaffung sowie die Ausbildung im Gebrauch der Hilfsmittel, soweit die Belange des Vollzuges dem nicht entgegenstehen.

병의 早期發見를 위한 다음의 조치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1. 30세가 된 여자에 있어서 癌의 早期發見을 위한 연 1회의 검진
2. 45세가 된 남자에 있어서 癌의 早期發見을 위한 연 1회의 검진
3. 여자에 있어서 자기와 함께 收容되어 있는 子女가 만 4세가 될 때까지 자녀의 정상적인 身體的 또는 精神的인 成長에 특히 障害가 되는 疾病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제58조 (疾病時의 保護) 수형자는 질병의 시작때부터 보호를 받는다. 그 보호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1. 의사 및 치과의사의 치료
2. 약품, 붕대, 치료제 및 안경 등의 공급
3. 신체부착물, 정형외과 및 기타의 보조물
4. 의치 및 치관을 위한 비용의 보조금지급 또는 총비용의 인수
5. 집행의 범위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유전성질병검사 및 작업은행

제59조 (給付의 種類 및 範圍) 疾病의 早期發見을 위한 檢診의 種類 및 질병의 早期發見과 질병시의 保護를 위한 給付의 範圍에 대하여는 라이히보험법의 당해 규정과 이 규정을 근거로 이루어진 規則을 적용한다.

제60조 (休暇 중 疾病의 保護) 休暇 또는 外出 중에는 수형자는 교도소에 대하여 자기에 대해 權限있는 교도소에서 醫師의 治療 및 保護請求權만을 갖는다.

제61조 (補助物의 供給) 수형자는 自由剝奪刑의 단축을 고려하여 인정되는 경우 절박한 障害의 豫防, 예방치료의 成功保障 또는 신체적 障碍除去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신체부착물, 整形外科的 및 기타의 보조물의 장비에 대한 請求權이 있다. 그 청구권은 집행의 범위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필수적인 改造, 修繕 및 瑕疵補修와 그러한 보조물의 사용에 대한 교육의 경우도 포함한다.

§ 62 Zuschüsse zu Zahnersatz und Zahnkronen

Die Landesjustizverwaltungen bestimmen durch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en die Höhe der Zuschüsse zu den Kosten für Zahnersatz und Zahnkronen. Sie können bestimmen, daß die gesamten Kosten übernommen werden.

§ 63 Ärztliche Behandlung zur sozialen Eingliederung

Mit Zustimmung des Gefangenen soll die Vollzugsbehörde ärztliche Behandlung, namentlich Operationen oder prothetische Maßnahmen durchführen lassen, die seine soziale Eingliederung fördern. Er ist an den Kosten zu beteiligen, wenn dies nach seinen wirtschaftlichen Verhältnissen gerechtfertigt ist und der Zweck der Behandlung dadurch nicht in Frage gestellt wird.

§ 64 Aufenthalt im Freien

Arbeitet ein Gefangener nicht im Freien, so wird ihm täglich mindestens eine Stunde Aufenthalt im Freien ermöglicht, wenn die Witterung dies zu der festgesetzten Zeit zuläßt.

§ 65 Verlegung

(1) Ein kranker Gefangener kann in ein Anstaltskrankenhaus oder in eine für seine Pflege besser geeignete Vollzugsanstalt verlegt werden.

(2) Kann die Krankheit eines Gefangenen in einer Vollzugsanstalt oder einem Anstaltskrankenhaus nicht erkannt oder behandelt werden oder ist es nicht möglich, den Gefangenen rechtzeitig in ein Anstaltskrankenhaus zu verlegen, ist dieser in ein Krankenhaus außerhalb des Vollzuges zu bringen. Ist während des Aufenthalts des Gefangenen in einem Krankenhaus die Strafvollstreckung unterbrochen worden, hat der Versicherte nach den Vorschriften der gesetzlichen Krankenversicherung Anspruch auf die erforderlichen Leistungen.

§ 66 Benachrichtigung bei Erkrankung oder Todesfall

(1) Wird ein Gefangener schwer krank, so ist ein Angehöriger, eine Person seines Vertrauens oder der gesetzliche Vertreter unverzüglich zu benachrichtigen. Dasselbe gilt, wenn ein Gefangener stirbt.

(2) Dem Wunsche des Gefangenen, auch andere Personen zu benachrichtigen, soll nach Möglichkeit entsprochen werden.

제62조 (義齒 및 齒冠을 위한 補助金) 州法務部는 일반행정규정에 의하여 義齒 및 齒冠의 비용에 대한 補助金 한도를 정한다. 주법무부는 전체비용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제63조 (社會復歸를 위한 醫師의 治療) 수형자의 동의에 의하여 교도소는 社會復歸를 증진시키는 醫師의 治療, 특히 手術 또는 人工補助裝具措置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형자는 이것이 그의 經濟狀態에서 볼 때 인정될 수 있고 그 治療의 目的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64조 (領外滯留) 수형자가 領外에서 일하는 경우 일정한 시간의 日氣가 적절한 경우 수형자에게 매일 1시간 이상을 영외에 체류하도록 할 수 있다.

제65조 (移送) ① 질병이 있는 수형자는 矯導所醫務室 또는 醫療保護를 위해 더 좋은 시설이 있는 교도소로 이송될 수 있다.

② 수형자의 疾病이 교도소 또는 교도소의무실에서 발견 또는 치료될 수 없거나 그 수형자를 適時에 교도소의무실로 이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수형자는 교도소 外部의 病院으로 보내져야 한다. 수형자가 병원에 체류하는 동안 刑執行이 중단된 경우에는 法的 醫療保險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는 필요한 給付에 대한 請求權이 있다.

제66조 (疾病 또는 死亡의 通知) ① 수형자가 重病인 경우 家族, 信任者 또는 法定代理人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수형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타의 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가능한 한 수형자의 희망에 부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Achter Titel Freizeit

§ 67 Allgemeines

Der Gefangene erhält Gelegenheit, sich in seiner Freizeit zu beschäftigen. Er soll Gelegenheit erhalten, am Unterricht einschließlich Sport, an Fernunterricht, Lehrgängen und sonstigen Veranstaltungen der Weiterbildung, an Freizeitgruppen, Gruppengesprächen sowie an Sportveranstaltungen teilzunehmen und eine Bücherei zu benutzen.

§ 68 Zeitungen und Zeitschriften

(1) Der Gefangene darf Zeitungen und Zeitschriften in angemessenem Umfang durch Vermittlung der Anstalt beziehen.

(2) Ausgeschlossen sind Zeitungen und Zeitschriften, deren Verbreitung mit Strafe oder Geldbuße bedroht ist. Einzelne Ausgaben oder Teile von zeitungen oder Zeitschriften können dem Gefangenen vorenthalten werden, wenn sie das Ziel des Vollzuges oder die Sicherheit oder Ordnung der Anstalt erheblich gefährden würden.

§ 69 Hörfunk und Fernsehen

(1) Der Gefangene kann am Hörfunkprogramm der Anstalt sowie am gemeinschaftlichen Fernsehempfang teilnehmen. Die Sendungen sind so auszuwählen, daß Wünsche und Bedürfnisse nach staatsbürgerlicher Information, Bildung und Unterhaltung angemessen berücksichtigt werden. Der Hörfunk-und Fernsehempfang kann vorübergehend ausgesetzt oder einzelnen Gefangenen untersagt werden, wenn dies zur Aufrechterhaltung der Sicherheit oder Ordnung der Anstalt unerläßlich ist.

(2) Eigene Hörfunkgeräte werden unter den Voraussetzungen des § 70, eigene Fernsehgeräte nur in begründeten Ausnahmefällen zugelassen.

§ 70 Besitz von Gegenständen für die Freizeitbeschäftigung

(1) Der Gefangene darf in angemessenem Umfange Bücher und andere Gegenstände zur Fortbildung oder zur Freizeitbeschäftigung besitzen.

(2) Dies gilt nicht, wenn der Besitz, die Überlassung oder die Benutzung des Gegenstands

1. mit Strafe oder Geldbuße bedroht wäre oder
2. das Ziel des Vollzuges oder die Sicherheit oder Ordnung der Anstalt gefährden würde.

(3) Die Erlaubnis kann unter den Voraussetzungen des Absatzes 2 widerrufen werden.

제8절 自由時間

제67조 (總則) 수형자는 그의 自由時間을 享有할 기회를 갖는다. 수형자는 스포츠를 포함하는 강의, 통신강의 敎科課程 및 기타 계속교육의 개최, 자유시간을 위한 모임, 集團對話와 운동경기 등에 참가하고 藏書를 이용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제68조 (新聞 및 雜誌) ① 수형자는 상당한 범위에서 矯導所의 周旋으로 新聞 및 雜誌를 구독할 수 있다.

② 刑罰 및 罰金으로 배포를 억제하는 新聞 및 雜誌는 제외된다. 신문 또는 잡지의 하나 또는 그 일부가 刑執行의 目的 또는 교도소의 安全이나 秩序를 아주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는 수형자로부터 이것이 留置될 수 있다.

제69조 (라디오 및 텔레비젼) ① 수형자는 교도소의 라디오프로그램 및 공동의 텔레비젼시청에 참여할 수 있다. 放送은 국민의 情報, 敎養 및 娛樂에 대한 希望과 必要性을 알맞게 고려해서 선택하도록 한다. 라디오수신 및 텔레비젼 시청은 이것이 안전 또는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중지되거나 각각의 수형자에게 금지시킬 수 있다.

② 私有의 라디오 수신장치는 제70조의 조건하에 私有의 텔레비젼 수상기는 특별한 근거가 있는 예외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제70조 (自由時間 享有를 위한 物件의 所有) ① 수형자는 상당한 범위내에서 補習敎育 또는 自由時間 향유를 위한 圖書 및 기타의 물건을 소유할 수 있다.

② 그 물건의 所有, 讓渡 또는 利用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형벌 또는 벌금으로 금지되어 있는 경우
2. 집행의 목적, 교도소의 안전 또는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

③ 그 허가는 제2항의 조건하에 철회될 수 있다.

Neunter Titel Soziale Hilfe

§ 71 Grundsatz

Der Gefangene kann die soziale Hilfe der Anstalt in Anspruch nehmen, um seine persönlichen Schwierigkeiten zu lösen. Die Hilfe soll darauf gerichtet sein, den Gefangenen in die Lage zu versetzen, seine Angelegenheiten selbst zu ordnen und zu regeln.

§ 72 Hilfe bei der Aufnahme

(1) Bei der Aufnahme wird dem Gefangenen geholfen, die notwendigen Maßnahmen für hilfsbedurftige Angehörige zu veranlassen und seine Habe außerhalb der Anstalt sicherzustellen.

(2) Der Gefangene ist über die Aufrechterhaltung einer Sozialversicherung zu beraten.

§ 73 Hilfe während des Vollzuges

Der Gefangene wird in dem Bemühen unterstützt, seine Rechte und Pflichten wahrzunehmen, namentlich sein Wahlrecht auszuüben sowie für Unterhaltsberechtigte zu sorgen und einen durch seine Straftat verursachten Schaden zu regeln.

§ 74 Hilfe zur Entlassung

Um die Entlassung vorzubereiten, ist der Gefangene bei der Ordnung seiner persönlichen, wirtschaftlichen und sozialen Angelegenheiten zu beraten. Die Beratung erstreckt sich auch auf die Benennung der für Sozialleistungen zuständigen Stellen. Dem Gefangenen ist zu helfen, Arbeit, Unterkunft und persönlichen Beistand für die Zeit nach der Entlassung zu finden.

§ 75 Entlassungsbeihilfe

(1) Der Gefangene erhält, soweit seine eigenen Mittel nicht ausreichen, von der Anstalt eine Beihilfe zu den Reisekosten sowie eine Überbrückungsbeihilfe und erforderlichenfalls ausreichende Kleidung.

(2) Bei der Bemessung der Höhe der Überbrückungsbeihilfe sind die Dauer des Freiheitsentzuges, der persönliche Arbeitseinsatz des Gefangenen und die Wirtschaftlichkeit seiner Verfügungen über Eigengeld und Hausgeld während der Strafzeit zu berücksichtigen. § 51 Abs. 2 Satz 2 und 3 gilt entsprechend. Die Überbrükkungsbeihilfe kann ganz oder teilweise auch dem Unterhaltsberechtigten überwiesen werden.

(3) Der Anspruch auf Beihilfe zu den Reisekosten und die ausgezahlte

제9절 社會的 扶助

제71조 (原則) 수형자는 그의 개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도소에 社會的 扶助를 청구할 수 있다. 그 扶助는 수형자의 立志를 改善하고, 그의 當面問題를 스스로 정리 및 조정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72조 (收容時의 扶助) ① 수용시에는 수형자는 扶助를 요하는 家族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矯導所 外部의 그의 財産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다.

② 수형자는 社會保險의 계속 여부에 관하여 諮問을 받을 수 있다.

제73조 (執行 중의 扶助) 수형자는 그의 權利와 義務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認知할 수 있도록 특히 그의 選擧權의 行使, 被扶養者의 보호 및 범죄행위로 야기된 損害의 調整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扶助를 받아야 한다.

제74조 (釋放을 위한 扶助) 釋放을 준비하기 위하여 수형자는 그의 個人的, 經濟的 및 社會的 當面問題의 정리시 諮問을 받을 수 있다. 그 諮問은 社會福祉施設의 명칭을 가지는 職責에 까지 미친다. 수형자는 석방 후를 위하여 職場, 宿所 및 개인적인 後援者를 찾아낼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75조 (釋放補助金) ① 수형자는 그 자신의 資力이 충분하지 아니하는 한 교도소로부터 歸住旅費를 위한 補助金과 아울러 更生補助金 및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한 衣服을 받는다.

② 更生補助金의 算定時에는 自由剝奪의 期間, 수형자의 개인적 作業配置 및 刑期동안 私的인 資金 및 受刑者家族扶養給付金에 대한 그의 처분의 경제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51조 2항제 2문 및 제3문은 이에 준용된다. 갱생보조금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피부양권리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③ 歸住旅費를 위한 보조금청구권 및 支給된 귀주보조금은 押留할 수 없다.

Reisebeihilfe sind unpfändbar. Für den Anspruch auf Überbrückungsbeihilfe und für Bargeld nach Auszahlung einer Überbrückungsbeihilfe and den Gefangenen gilt § 51 Abs. 4 Satz 1 und 3, Abs. 5 entsprechend.

Zehnter Titel Besondere Vorschriften für den Frauenstrafvollzug

§ 76 Mutterschaftshilfe

(1) Bei einer Schwangeren oder einer Gefangenen, die unlängst entbunden hat, ist auf ihren Zustand Rücksicht zu nehmen. Die Vorschriften des Gesetzes zum Schutze der erwerbstätigen Mutter über die Gestaltung des Arbeitsplatzes sind entsprechend anzuwenden.

(2) Die Gefangene hat während der Schwangerschaft und nach der Entbindung Anspruch auf ärztliche Betreuung und auf Hebammenhilfe in der Vollzugsanstalt. Zur ärztlichen Betreuung während der Schwangerschaft gehören insbesondere Untersuchungen zur Feststellung der Schwangerschaft sowie Vorsorgeuntersuchungen einschließlich der laborärztlichen Untersuchungen.

(3) Zur Entbindung ist die Schwangere in ein Krankenhaus außerhalb des Vollzuges zu bringen. Ist dies aus besonderen Gründen nicht angezeigt, so ist die Entbindung in einer Vollzugsanstalt mit Entbindungsabteilung vorzunehmen. Bei der Entbindung wird Hilfe durch eine Hebamme und, falls erforderlich, durch einen Arzt gewährt.

§ 77 Arznei-, Verband-und Heilmittel

Bei Schwangerschaftsbeschwerden und im Zusammenhang mit der Entbindung werden Arznei-, Verband- und Heilmittel geleistet.

§ 78 Art und Umfang der Mutterschaftshilfe

Dei §§ 59, 60 und 65 gelten für die Leistungen der Mutterschaftshilfe entsprechend.

§ 79 Geburtsanzeige

In der Anzeige der Geburt an den Standesbeamten dürfen die Anstalt als Geburtsstätte des Kindes, das Verhältnis des Anzeigenden zur Anstalt und die Gefangenschaft der Mutter nicht vermerkt sein.

§ 80 Mütter mit Kindern

(1) Ist das Kind einer Gefangenen noch nicht schulpflichtig, so kann es mit Zustimmung des Inhabers des Aufenthaltbestimmungsrechts in der Vollzug-

수형자에 대한 更生補助金의 지급 후에 갱생보조금청구권 및 현금에 대하여는 제51조제4항1문 및 3문, 제5항이 준용된다.

제10절 女子의 刑執行을 위한 特則

제76조 (母權保護) ① 최근에 出產한 妊產婦 또는 여자수형자에 대하여는 그녀의 身體狀態가 고려되어야 한다. 作業場의 상황에서의 근로능력 있는 婦女의 保護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이에 준용되어야 한다.

② 여자수형자는 妊娠中 및 出產後에 교도소에서 醫師의 보호조치 및 助產員의 助力에 대한 請求權을 갖는다. 임신중의 保護措置에는 특히 妊娠確認檢診 및 직업상의 의료검진을 포함한 출산준비검진이 이에 속한다.

③ 出產을 위하여 임신부는 교도소 外部病院으로 옮겨져야 한다. 이것이 특별한 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출산은 產婦人科가 있는 교도소에서 행해져야 한다. 출산시에는 助產員의 助力 및 필요한 경우 醫師의 助力을 받는다.

제77조 (藥品·붕대 및 治療製) 임신중의 苦痛 및 出產과 관련하여 약품·붕대 및 치료제가 공급된다.

제78조 (母權保護의 種類 및 範囲) 제59조, 제60조 및 제65조는 母權保護의 이행에 준용된다.

제79조 (出生申告) 戶籍公務員에 대한 出生申告에 있어서 그 교도소를 그 子女의 출생장소로, 신고인과 교도소와의 관계 및 母의 受刑狀態를 표시하지 아니 하도록 할 수 있다.

제80조 (子女가 있는 婦女) 여자수형자의 자녀가 아직 義務敎育年齡에 달하지 아니한 경우 子女의 利益에 적합한 때는 滯留決定權者의 동의에 의하여 그의

sanstalt untergebracht werden, in der sich seine Mutter befindet, wenn dies seinem Wohle entspricht. Vor der Unterbringung ist das Jugendamt zu hören.

(2) Die Unterbringung erfolgt auf Kosten des für das Kind Unterhaltspflichtigen. Von der Geltendmachung des Kostenersatzanspruchs kann abgesehen werden, wenn hierdurch die gemeinsame Unterbringung von Mutter und Kind gefährdet würde.

Elfter Titel Sicherheit und Ordnung

§ 81 Grundsatz

(1) Das Verantwortungsbewußtsein des Gefangenen für ein geordnetes Zusammenleben in der Anstalt ist zu wecken und zu fördern.

(2) Die Pflichten und Beschränkungen, die dem Gefangenen zur Aufrechterhaltung der Sicherheit oder Ordnung der Anstalt auferlegt werden, sind so zu wählen, daß sie in einem angemessenen Verhältnis zu ihrem Zweck stehen und den Gefangenen nicht mehr und nicht länger als notwendig beeinträchtigen.

§ 82 Verhaltensvorschriften

(1) Der Gefangene hat sich nach der Tageseinteilung der Anstalt (Arbeitszeit, Freizeit, Ruhezeit) zu richten. Er darf durch sein Verhalten gegenüber Vollzugsbediensteten, Mitgefangenen und anderen Personen das geordnete Zusammenleben nicht stören.

(2) Der Gefangene hat die Anordnungen der Vollzugsbediensteten zu befolgen, auch wenn er sich durch sie beschwert fühlt. Einen ihm zugewiesenen Bereich darf er nicht ohne Erlaubnis verlassen.

(3) Seinen Haftraum und die ihm von der Anstalt überlassenen Sachen hat er in Ordnung zu halten und schonend zu behandeln.

(4) Der Gefangene hat Umstände, die eine Gefahr für das Leben oder eine erhebliche Gefahr für die Gesundheit einer Person bedeuten, unverzüglich zu melden.

§ 83 Persönlicher Gewahrsam, Eigengeld

(1) Der Gefangene darf nur Sachen in Gewahrsam haben oder annehmen, die ihm von der Vollzugsbehörde oder mit ihrer Zustimmung überlassen werden. Ohne Zustimmung darf er Sachen von geringem Wert von einem anderen Gefangenen annehmen; die Vollzugsbehörde kann Annahme und Gewahrsam

모가 있는 교도소에 수용하도록 할 수 있다. 그 수용전에 少年保護局에 통지해야 한다.

② 그 수용은 그 자녀에 대한 扶養義務者의 비용으로 한다. 이에 의해서 모와 자녀의 混居收容이 어려워질 경우 교도소의 費用補償請求權 주장은 배제될 수 있다.

제11절 安全 및 秩序

제81조 (原則) ① 교도소에서의 질서있는 共同生活을 위하여 수형자의 責任意識을 高揚·增進하여야 한다.

② 교도소의 安全 또는 秩序維持를 위하여 수형자에 부과되는 義務 및 制限은 그것이 그 목적에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필요한 것 이상 이어서는 아니되며 장기적으로 수형자의 權利를 侵害하지 아니하는 정도이어야 한다.

제82조 (行動規則) ① 수형자는 교도소의 日課時間表(근로시간, 자유시간, 휴식시간)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형자는 그의 행동에 의해서 矯導官, 同僚受刑者 및 기타의 자에 대하여 질서있는 共同生活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② 수형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矯導官의 指示에 복종하여야 한다. 수형자는 허가없이 그에게 지시된 범위를 이탈하지 말아야 한다.

③ 수형자는 그의 居室 및 矯導所에서 그에게 부여한 물건을 정돈하고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

④ 수형자는 생명에 대한 위험 또는 사람의 건강에 대한 현저한 위험을 나타내는 상황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83조 (私的인 保管, 私的인 資金) ① 수형자는 矯導所가 자기에게 授與하였거나 교도소의 동의에 의하여 수여받은 물건만을 保管하거나 受領할 수 있다. 동의없이 수형자는 다른 수형자로부터 價格이 얼마 안되는 물건을 수령할 수

auch dieser Sachen von ihrer Zustimmung abhängig machen.

(2) Eingebrachte Sachen, die der Gefangene nicht in Gewahrsam haben darf, sind für ihn aufzubewahren, sofern dies nach Art und Umfang möglich ist. Geld wird ihm als Eigengeld gutgeschrieben. Dem Gefangenen wird Gelegenheit gegeben, seine Sachen, die er während des Vollzuges und für seine Entlassung nicht benötigt, abzusenden oder über sein Eigengeld zu verfügen, soweit dieses nicht als Überbrückungsgeld notwending ist.

(3) Weigert sich ein Gefangener, eingebrachtes Gut, dessen Aufbewahrung nach Art und Umfang nicht möglich ist, aus der Anstalt zu verbringen, so ist die Vollzugsbehörde berechtigt, diese Gegenstande auf Kosten des Gefangenen aus der Anstalt entfernen zu lassen.

(4) Aufzeichnungen und andere Gegenstände, die Kenntnisse über Sicherungsvorkehrungen der Anstalt vermitteln, dürfen von der Vollzugsbehörde vernichtet oder unbrauchbar gemacht werden.

§ 84 Durchsuchung

(1) Der Gefangene, seine Sachen und die Hafträume dürfen durchsucht werden. Bei der Durchsuchung mannlicher Gefangener dürfen nur Männer, bei der Durchsuchung weiblicher Gefangener nur Frauen anwesend sein. Das Schamgefühl ist zu schonen.

(2) Nur bei Gefahr im Verzuge oder auf Anordnung des Anstaltsleiters im Einzelfall ist es zulässig, eine mit einer Entkleidung verbundene körperliche Durchsuchung vorzunehmen. Sie muß in einem geschlossenen Raum durchgeführt werden. Andere Gefangene dürfen nicht anwesend sein.

(3) Der Anstaltsleiter kann allgemein anordnen, daß Gefangene bei der Aufnahme nach Absatz 2 und nach jeder Abwesenheit von der Anstalt zu durchsuchen sind.

§ 85 Sichere Unterbringung

Ein Gefangener kann in eine Anstalt verlegt werden, die zu seiner sicheren Unterbringung besser geeignet ist, wenn in erhöhtem Maße Fluchtgefahr gegeben ist oder sonst sein Verhalten oder sein Zustand eine Gefahr für die Sicherheit oder Ordnung der Anstalt darstellt.

§ 86 Erkennungsdienstliche Maßnahmen

(1) Zur Sicherung des Vollzuges sind als erkennungsdienstliche Maßnahmen zulässig

1. die Abnahme von Figner- und Handflächenabdrücken,

있다. 교도소는 그의 동의에 의하여 이 물건의 수령 및 보관을 할 수 있다.
② 수형자가 보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搬入된 물건은 이것이 方法 및 範圍上 가능한 한 수형자를 위하여 보관되어져야 한다. 金錢은 私的인 資金으로서 수형자의 計定에 기입된다. 수형자에게는 이것이 更生補助金으로서 필수적인 것이 아닌 한 수형자가 執行 중에 그리고 그의 석방에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발송하거나 그의 私的인 資金을 처분할 기회가 주어진다.
③ 수형자가 그 方法 및 範圍上 그것의 保管이 불가능하게 반입된 물건을 교도소로부터 返送되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교도소는 이 목적물을 수형자의 비용으로 교도소로부터 제거되도록 할 권한이 있다.
④ 교도소의 安全豫防措置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전달하는 文書 및 그 物件은 교도소가 이를 폐기하거나 無用化시킬 수 있다

제84조 (檢診) ① 수형자는 그의 물건 및 거실을 검진받을 수 있다. 남자수형자의 검진시에는 남자만이 여자수형자의 검진시에는 여자만이 이에 참석한다. 수치감은 존중되어야 한다.
② 그것을 지체하면 위험이 있을 경우나 각각의 사항에 대한 矯導所長의 指示가 있는 경우에만 脫衣한 채로 身體檢査를 실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 검사는 폐쇄된 거실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다른 수형자는 참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교도소장은 제2항에 의한 入所時 및 수형자가 교도소로부터 不在였던 후에 檢診받도록 할 것을 일반적으로 지시할 수 있다.

제85조 (安全收容) 수형자는 고도로 逃走危險이 있거나 기타 그의 行動 또는 그의 狀態가 교도소의 안전 또는 질서에 위험이 되는 경우에는 수형자의 安全收容에 더 도움이 되는 교도소로 이송될 수 있다.

제86조 (犯人鑑識事務措置) ① 집행의 안전을 위하여 犯人鑑識事務措置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허용된다.

1. 지문 및 수문의 채취

2. die Aufnahme von Lichtbildern,
3. die Feststellung äußerlicher körperlicher Merkmale,
4. Messungen.

(2) Die gewonnenen erkennungsdienstlichen Unterlagen werden zu den Gefangenenpersonalakten genommen. Sie können auch in kriminalpolizeilichen Sammlungen verwahrt werden.

(3) Personen, die auf Gurnd des Absatzes 1 erkennungsdienstlich behandelt worden sind, können nach der Entlassung aus dem Vollzug verlangen, daß die gewonnenen erkennungsdienstlichen Unterlagen vernichtet werden, sobald die Vollstreckung der richterlichen Entscheidung, die dem Vollzug zugrunde gelegen hat, abgeschlossen ist. Sie sind über dieses Recht spätestens bei der Entlassung zu belehren.

§ 87 Festnahmerecht

Ein Gefangener, der entwichen ist oder sich sonst ohne Erlaubnis außerhalb der Anstalt aufhält, kann durch die Vollzugsbehörde oder auf ihre Veranlassung hin festgenommen und in die Anstalt zurückgebracht werden.

§ 88 Besondere Sicherungsmaßnahmen

(1) Gegen einen Gefangenen können besondere Sicherungsmaßnahmen angeordnet werden, wenn nach seinem Verhalten oder auf Grund seines seelischen Zustandes in erhöhtem Maße Fluchtgefahr oder die Gefahr von Gowaltätigkeiten gegen Personen oder Sachen oder die Gefahr des Selbstmordes oder der Selbstverletzung besteht.

(2) Als besondere Sicherungsmaßnahmen sind zulässig:
1. der Entzug oder die Vorenthaltung von Gegenständen,
2. die Beobachtung bei Nacht,
3. die Absonderung von anderen Gefangenen,
4. der Entzug oder die Beschränkung des Aufenthalts im Freien,
5. die Unterbringung in einem besonders gesicherten Haftraum ohne gefährdende Gegenstände und
6. die Fesselung.

(3) Maßnahmen nach Absatz 2 Nr. 1, 3 bis 5 sind auch zulässig, wenn die Gefahr einer Befreiung oder eine erhebliche Strörung der Anstaltsordnung anders nicht vermieden oder behoben werden kann.

(4) Bei einer Ausführung, Vorführung oder beim Transport ist die Fesselung auch dann zulässig, wenn aus anderen Gründen als denen des Absatzes 1 in erhöhtem Maße Fluchtgefahr besteht.

2. 사진촬영
3. 외모특징의 확인
4. 체위측정

② 그 획득된 犯罪鑑識事務에 의한 증거는 受刑者身分台帳에 첨부되어야 한다. 그것은 또한 捜査警察署의 서류 속에 보관될 수 있다.

③ 제1항을 근거로 하여 犯罪鑑識事務의 대상으로 취급받은 자는 執行으로부터 釋放된 후에 그 집행에 기초가 되었던 法官의 判決의 執行이 종결된 즉시 그 획득된 범인감식사무에 의한 證據를 廢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수형자는 늦어도 석방시에는 이러한 權利에 관하여 告知받아야 한다.

제87조 (逮捕權) 도주했거나 허가없이 교도소 밖에 滯留하고 있는 수형자는 교도소 의하여 또는 교도소의 지시로 체포되어 교도소로 다시 수용하게 할 수 있다.

제88조 (特別安全措置) ① 수형자가 그의 行動에 의하여 그의 精神狀態를 기초로 하여 高度로 逃走危險,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暴行의 危險, 自殺이나 自害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特別安全措置가 지시될 수 있다.

② 특별안전조치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허용된다.

1. 목적물의 박탈 또는 유치
2. 야간관찰
3. 다른 수형자와의 격리
4. 개방수용의 박탈 또는 제한
5. 위험물이 없는 특별안전장치된 구금실에의 수용
6. 포박조치

③ 제2항제1호, 제3호 내지 제5호에 의한 조치는 自由時의 危險 또는 矯導所秩序의 중대한 侵害가 달리 회피될 수 없거나 제거될 수 없을 경우에도 또한 허용된다.

④ 同伴外出, 拘人 또는 移送時에 제1항의 사유 이외에 다른 사유에 의한 고도의 도주위험이 있는 때에도 또한 포박조치가 허용된다.

(5) Besondere Sicherungsmaßnahmen dürfen nur soweit aufrechterhalten werden, als es ihr Zweck erfordert.

§ 89 Einzelhaft

(1) Die unausgesetzte Absonderung eines Gefangenen (Einzelhaft) ist nur zulässig, wenn dies aus Gründen, die in der Person des Gefangenen liegen, unerläßlich ist.

(2) Einzelhaft von mehr als drei Monaten Gesamtdauer in einem Jahr bedarf der Zustimmung der Aufsichtsbehörde. Diese Frist wird nicht dadurch unterbrochen, daß der Gefangene am Gottesdienst oder an der Freistunde teilnimmt.

§ 90 Fesselung

In der Regel dürfen Fesseln nur an den Händen oder an den Füßen angelegt werden. Im Interesse des Gefangenen kann der Anstaltsleiter eine andere Art der Fesselung anordnen. Die Fesselung wird zeitweise gelockert, soweit dies notwendig ist.

§ 91 Anordnung besonderer Sicherungsmaßnahmen

(1) Besondere Sicherungsmaßnahmen ordnet der Anstaltsleiter an. Bei Gefahr im Verzuge können auch andere Bedienstete der Anstalt diese Maßnahmen vorläufig anordnen. Die Entscheidung des Anstaltsleiters ist unverzüglich einzuholen.

(2) Wird ein gefangener ärztlich behandelt oder beobachtet oder bildet sein seelischer Zustand den Anlaß der Maßnahme, ist vorher der Arzt zu hören. Ist dies wegen Gefahr im Verzuge nicht möglich, wird seine Stellungnahme unverzüglich eingeholt.

§ 92 Ärztliche Überwachung

(1) Ist ein Gefangener in einem besonderen gesicherten Haftraum untergebracht oder gefesselt (§ 88 Abs. 2 Nr. 5 und 6), so sucht ihn der Anstaltsarzt alsbald und in der Folge möglichst täglich auf. Dies gilt nicht bei einer Fesselung während einer Ausführung, Vorführung oder eines Transportes (§ 88 Abs. 4).

(2) Der Arzt ist regelmäßig zu hören, solange einem Gefangenen der tägliche Aufenthalt im Freien entzogen wird.

§ 93 Ersatz von Aufwendungen

(1) Der Gefangene ist verpflichtet, der Vollzugsbehörde Aufwendungen zu ersetzen, die er durch eine vorsätzliche oder grob fahrlässige Selbstverletzung

⑤ 特別安全措置는 그 목적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

제89조 (獨居收容) ① 계속적인 수형자의 獨居收容은 수형자 개인에 있는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② 1년에 총합 3개월 이상의 獨居拘禁은 감독관청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 기간은 수형자가 禮拜 또는 自由時間에 참가하는 것을 이유로 중단되지 아니한다.

제90조 (捕縛措置) 원칙적으로 捕縛은 손 또는 발에만 행해진다. 수형자를 위하여 교도소장은 다른 捕縛措置方法을 지시할 수 있다. 이 捕縛措置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시행된다.

제91조 (特別安全措置의 指示) ① 특별안전조치는 矯導所長이 지시한다. 위험시에는 지체없이 교도소의 기타 矯導官들도 이러한 조치를 임시로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교도소장의 결정을 얻어야 한다.

② 수형자가 醫師의 治療 또는 檢診을 받거나 그의 精神狀態가 그러한 措置의 原因이 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것이 지체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에는 醫師의 意見을 지체없이 얻도록 한다.

제92조 (醫師의 巡視) ① 수형자가 특별한 安全裝置가 된 거실에 수용되어 있거나 捕縛措置되어 있는 경우에는(제88조제2항5호 및 6호) 교도소 醫師는 즉시 그리고 계속해서 가능한 한 매일 그 수형자를 巡視하여야 한다. 이것은 同伴外出, 拘人 또는 호송 중의 捕縛措置(제88조제4항)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수형자가 日常의 開放收容이 박탈되어 있는 한 醫師는 규칙적으로 이를 通知받아야 한다.

제93조 (費用의 賠償) ① 수형자는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에 의한 自害 또는 다른 수형자의 負傷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교도소에 賠償할 義務가 있다.

oder Verletzung eines anderen Gefangenen verursacht hat. Ansprüche aus sonstigen Rechtsvorschriften bleiben unberührt.

(2) Bei der Geltendmachung dieser Forderungen kann auch der den Mindesbetrag übersteigende Teil des Hausgeldes (§ 47) in Anspruch genommen werden.

(3) Für die in Absatz 1 genannten Forderungen ist der ordentliche Rechtsweg gegeben.

(4) Von der Aufrechnung oder Vollstreckung wegen der in Absatz 1 genannten Forderungen ist abzusehen, wenn hierdurch die Behandlung des gefangenen oder seine Eingliederung behindert würde.

Zwölfter Titel Unmittelbarer Zwang

§ 94 Allegemeine Voraussetzungen

(1) Bedienstete der Justizvolzugsantalten dürfen unmittelbaren Zwang anwenden, wenn sie Vollzugs- und Sicherungsmaßnahmen rechtmäßig durch führen und der damit verfolgte Zweck auf keine andere Weise erreicht werden kann.

(2) Gegen andere Personen als Gefangene darf unmittelbarer Zwang angewendet werden, wenn sie es unternehmen, Gefangene zu befreien oder in den Anstaltsbereich widerrechtlich einzudringen, order wenn sie sich unbefugt darin aufhalten.

(3) Das Recht zu unmittelbarem Zwang auf Grund anderer Regelungen bleibt unberührt.

§ 95 Begriffsbestimmungen

(1) Unmittelbarer Zwang ist die Einwirkung auf Personen oder Sachen durch körperliche Gewalt, ihre Hilfsmittel und durch Waffen.

(2) Körperliche Gewalt ist jede unmittelbare körperliche Einwirkung auf Personen oder Sachen.

(3) Hilfsmittel der körperlichen Gewalt sind namentlich Fesseln.

(4) Waffen sind die dienstlich zugelassenen Hieb-und Schußwaffen sowie Reizstoffe.

§ 96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1) Unter mehreren möglichen und geeigneten Maßnahmen des unmittelbaren Zwanges sind diejenigen zu wählen, die den Einzelnen und die Allgemeinheit voraussichtlich am wenigsten beeinträchtigen.

(2) Unmittelbarer Zwang unterbleibt, wenn ein durch ihn zu erwartender

기타 법규정으로부터의 請求權은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이러한 請求의 主張時에는 受刑者家族扶養給付金(제47조)의 最低金額을 초과하는 부분이 또한 청구될 수 있다.

③ 제1항에 열거된 청구에 대하여 正常的 訴訟手段이 주어져 있다.

④ 이에 의하여 수형자의 處遇 또는 그의 社會復歸가 지장을 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열거된 청구를 사유로 하는 賠償 또는 執行은 배제되어야 한다.

제12절 直接强制

제94조 (一般要件) ① 교도소의 교도관은 執行 및 安全措置를 합법적으로 실시하고 다른 방법으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直接强制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수형자 이외의 자가 수형자의 釋放을 위하여 또는 不法的으로 교도소내에 侵入하려고 企圖하거나 권한없이 교도소내에 滯留하는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直接强制가 사용될 수 있다.

③ 다른 규정상의 直接强制를 위한 법은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5조 (槪念定義) ① 直接强制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하여 身體的인 힘, 그 補助手段 또는 武器에 의하여 작용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② 身體的인 힘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모든 직접의 身體的 作用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③ 신체적인 힘의 補助手段이라 함은 특히 手匣을 말한다.

④ 武器라 함은 직무상 허용된 刀劍類, 銃砲類 및 刺戟物質을 말한다.

제96조 (比例의 原則) ① 直接强制의 여러 가능하고 적절한 조치중에서 그 個別性과 一般性에 비추어 최소한의 침해가 되는 조치가 선택되어야 한다.

② 직접강제는 그에 의해 豫見되는 侵害가 그 행사로 인한 效果와의 比例를 逸

Schaden erkennbar außer Verhältnis zu dem angestrebten Erfolg steht.

§ 97 Handeln auf Anordnung

(1) Wird unmittelbarer Zwang von einem Vorgestzten oder einer sonst befugten Person angeordnet, sind Vollzugsbedienstete verpflichtet, ihn anzuwenden, es sei denn, die Anordnung verletzt die Menschenwürde oder ist nicht zu dienstlichen Zwecken erteilt worden.

(2) Die Anordnung darf nicht befolgt werden, wenn dadurch eine Straftat begangen würde. Befolgt der Vollzugsbedienstete sie trotzdem, trifft ihn eine Schuld nur, wenn er erkennt oder wenn es nach den ihm bekannten Umständen offensichtlich ist, daß dadurch eine Straftat begangen wird.

(3) Bedenken gegen die Rechtmäßigkeit der Anordnung hat der Vollzugsbedienstete dem Anordnenden gegenüber vorzubringen, soweit das nach den Umständen möglich ist. Abweichende Vorschriften des allgemeinen Beamtenrechts über die Mitteilung solcher Bedenken an einen Vorgesetzten (§ 38 Abs. 2 und 3 des Beamtenrechtsrahmengesetzes) sind nicht anzuwenden.

§ 98 Androhung

Unmittelbarer Zwang ist vorher anzudrohen. Die Androhung darf nur dann unterbleiben, wenn die Umstände sie nicht zulassen oder unmittelbarer Zwang sofort angewendet werden muß, um eine rechtswidrige Tat, die den Tatbestand eines Strafgesetzes erfüllt, zu verhindern oder eine gegenwärtige Gefahr abzuwenden.

§ 99 Allgemeine Vorschriften für den Schußwaffengebrauch

(1) Schugwaffen dürfen nur gebraucht werden, wenn andere Maßnahmen des unmittelbaren Zwanges bereits erfolglos waren oder keinen Erfolg versprechen. Gegen Personen ist ihr Gebrauch nur zulässig, wenn der Zweck nicht durch Waffenwirkung gegen Sachen erreicht wird.

(2) Schußwaffen dürfen nur die dazu bestimmten Vollzugsbediensteten gebrauchen und nur, um angriffs-oder fluchtunfähig zu machen. Ihr Gebrauch unterbleibt, wenn dadurch erkennbar Unbeteiligte mit hoher Wahrscheinlichkeit gefährdet würden.

(3) Der Gebruach von Schußwaffen ist vorher anzudrohen. Als Androhung gilt auch ein Warnschuß. Ohne Androhung dürfen Schußwaffen nur dann gebraucht werden, wenn das zur Abwehr einer gegenwärtigen Gefahr für Leib oder Leben erforderlich ist.

脫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지된다.

제97조 (指示에 의한 行爲) ① 직접강제가 上官 또는 기타 權限있는 자에 의하여 指示된 경우 교도관은 그 지시가 사람의 品位를 損傷하거나 職務上의 목적으로 발해지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시에 服從할 義務가 있다.
② 그 지시는 그것이 犯罪行爲가 되는 경우 이에 服從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矯導官이 이에 복종하는 경우 그것이 犯罪行爲가 된다는 사실을 認識하고 있거나 또는 그가 상당히 알고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그에게 책임이 있다.
③ 그 지시의 合法性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교도관은 그 指示者에 대하여 사정상 가능한 한 이를 開陳하여야 한다. 上官에 대한 그러한 의심의 告知에 관하여 一般公務員法의 相異한 규정(공무원대강법 제38조제2항 및 제3항)은 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98조 (豫告) 直接强制는 사전에 豫告되어야 한다. 예고는 刑法上의 構成要件을 충족하는 법률위반 행위를 방지하거나 현재의 危險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상황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즉시 直接强制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9조 (銃砲類 사용에 대한 一般規定) ① 銃砲溜는 直接强制의 다른 조치가 이미 效力을 喪失하였거나 아무런 效果도 期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사람에 대한 총포의 사용은 물건에 대한 武器의 效力으로 그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② 총포류는 이의 사용이 특정된 矯導官만이 攻擊 또는 逃走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총포류의 사용은 제3자가 이의 사용으로 위험에 처할 것이 認識되는 더 큰 蓋然性이 있는 경우에는 중지된다.
③ 銃砲類의 사용은 사전에 예고되어야 한다. 警告發射 또한 豫告로서 유효하다. 총포류는 身體나 生命의 현재의 危險을 防止하기 위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예고없이 사용될 수 있다.

§ 100 Besondere Vorschriften für den Schußwaffengebrauch

(1) Gegen Gefangene dürfen Schußwaffen gebraucht werden.

1. wenn sie eine Waffe oder ein anderes gefährliches Werkzeug trotz weiderholter Aufforderung nicht ablegen,
2. wenn sie eine Meuterei (§ 121 des Strafgesetzbuches) unternehmen oder
3. um ihre Flucht zu vereiteln oder um sie wiederzuergreifen.

Um die Flucht aus einer offenen Anstalt zu vereiteln, dürfen keine Schußwaffen gebraucht werden.

(2) Gegen andere Personen dürfen Schußwaffen gebraucht werden, wenn sie es unternehmen, Gefangene gewaltsam zu befreien oder gewaltsam in eine Anstalt einzudringen.

§ 101 Zwangsmaßnahmen auf dem Gebiet der Gesundheitsfürsorge

(1) Medizinische Untersuchung und Behandlung sowie Ernährung sind zwangsweise nur bei Lebensgefahr, bei schwerwiegender Gefahr für die Gesundheit des Gefangenen oder bei Gefahr für die Gesundheit anderer Personen zulässig; die Maßnahmen müssen für die Betiligten zumutbar und dürfen nicht mit erheblicher Gefahr für Leben oder Gesundheit des Gefangenen verbunden sein. Zur Durchführung der Maßnahmen ist die Vollzugsbehörde nicht verpflichtet, solange von einer freien Willensbestimmung des Gegangenen ausgegangen werden kann.

(2) Zum Gesundheitsschutz und zur Hygiene ist die zwangsweise körperliche Untersuchung außer im Falle des Absatzes 1 zulässig, wenn sie nicht mit einem körperlichen Eingriff verbunden ist.

(3) Die Maßnahmen dürfen nur auf Anordnung und unter Leitung eines Arztes durchgeführt werden, unbeschadet der Leistung erster Hilfe für den Fall, daß ein Arzt nicht rechtzeitig erreichbar und mit einem Aufschub Legensgefahr verbunden ist.

Dreizehnter Titel DisziplinarmaBnahmen

§ 102 Voraussetzungen

(1) Verstößt ein Gefangener schuldhaft gegen Pflichten, die ihm durch dieses

제100조 (銃砲類 사용에 대한 特別規定) ① 수형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총포류가 사용될 수 있다.

1. 반복된 권유에도 불구하고 武器 또는 기타 위험한 道具를 버리지 아니하는 경우
2. 수형자가 暴動(형법 제121조)을 기도하는 경우
3. 수형자의 逃走를 좌절시키거나 수형자를 다시 生捕하기 위한 경우. 단 開放執行으로부터의 도주를 좌절시키기 위하여는 여하한 총포류도 사용될 수 없다.

② 기타의 자가 수형자를 暴力으로 釋放시키려고 기도하든가 폭력으로 矯導所에 侵入하려고 기도하는 경우에는 그 기타의 자에 대하여 銃砲類를 사용할 수 있다.

제101조 (健康保護分野에 대한 强制措置) ① 의료적인 檢診, 治療 및 營養供給은 생명의 위험시, 수형자의 건강에 대한 중대한 危險時 또는 기타의 자의 건강에 대한 위험시에만 强制的으로 행해지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當事者를 위하여 타당하고 수형자의 生命 또는 健康에 대한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수형자의 자유로운 意思決定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한 그러한 조치의 실행에 대하여 矯導所는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외의 强制的 身體檢査는 신체침해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健康保護 및 衛生을 위하여 허용된다.

③ 그 조치는 醫師가 適時에 도착할 수 없으며 그것을 延期함으로써 生命의 危險을 초래하는 경우의 應急措置와는 별도로 醫師의 指示에 따라 의사의 지휘하에서만 실행될 수 있다.

제13절 懲罰措置

제102조 (要件) ① 수형자가 이 法에 의하여 또는 이 法上의 사유로 수형자에

Gesetz oder auf Grund dieses Gesetzes auferlegt sind, kann der Anstaltsleiter gegen ihn Disziplinarmaßnahmen anordnen.

(2) Von einer Disziplinarmaßnahme wird abgesehen, wenn es genügt, den Gefangenen zu verwarnen.

(3) Eine Disziplinarmaßnahme ist auch zulässig, wenn wegen derselben Verfehlung ein Straf-oder Bußgeldverfahren eingeleitet wird.

§ 103 Arten der Disziplinarmaßnahmen

(1) Die zulässigen Disziplinarmaßnahmen sind:

1. Verweis,
2. die Beschränkung oder der Entzug der Verfügung über das Hausgeld und des Einkaufs bis zu drei Monaten,
3. die Beschränkung oder der Entzug des Lesetsoffs bis zu zwei Wochen sowie des Hörfunk- und Fernsehempfangs bis zu drei Monaten; der gleichzeitige Entzug jedoch nur bis zu zwei Wochen,
4. die Beschränkung oder der Entzug der Gegenstände für eine Beschäftigung in der Freizeit oder der Teilnahme an gemeinschaftlichen Veranstaltungen bis zu drei Monaten,
5. die getrennte Unterbringung während der Freizeit bis zu vier Wochen,
6. der Entzug des täglichen Aufenthalts im Freien bis zu einer Woche,
7. der Entzug der zugewiesenen Arbeit oder Bechäftigung bis zu vier Wochen unter Wegfall der in diesem Gesetz geregelten Bezüge,
8. die Beschränkung des Verkehrs mit Personen außerhalb der Anstalt auf dringende Fälle bis zu drei Monaten,
9. Arrest bis zu vier Wochen,

(2) Arrest darf nur wegen schwerer oder mehrfach wiederholter Verfehlungen verhängt werden.

(3) Mehrere Disziplinarmaßnahmen können miteinander verbunden werden.

(4) Die Maßnahmen nach Absatz 1 Nr. 3 bis 8 sollen moglichst nur angeordnet werden, wenn die Verfehlung mit den zu beschränkenden oder zu entziehenden Befugnissen im Zusammenhang steht. Dies gilt nicht bei einer Verbindung mit Arrest.

§ 104 Vollzug der Disziplinarmaßnahmen, Aussetzung zur Bewährung

(1) Disziplinarmaßnahmen werden in der Regel sofort vollstreckt.

(2) Eine Disziplinarmaßnahme kann ganz oder teilweise bis zu sechs Monaten

게 賦課된 義務를 故意·過失로 위반한 경우에는 矯導所長은 그에 대하여 懲罰措置를 지시할 수 있다.

② 수형자에게 警告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에는 징벌조치가 배제된다.

③ 징벌조치는 동일한 違反事項을 이유로 하여 刑事節次 또는 罰金節次가 개시되는 경우에도 허용된다.

제103조 (懲罰措置의 種類) ① 허용되는 징벌조치에는 다음과 같다.

1. 譴責
2. 受刑者扶養家族給付金 處分權 및 3개월이내의 購入權의 制限 또는 剝奪
3. 2주 이내의 讀書物의 制限 또는 剝奪 및 3개월 이내의 라디오 및 텔레비젼 시청의 制限 또는 剝奪
4. 3개월 이내의 自由時間의 享有를 위한 물건 또는 共同行使에 대한 참가의 制限 또는 剝奪
5. 4주 이내의 自由時間 동안의 隔離收容
6. 1주 이내의 주간의 野外滯留의 剝奪
7. 이법에 규정된 給料의 中斷下에 4주 이내의 割當된 作業 또는 勞役의 剝奪
8. 긴급한 경우 矯導所 外部人과의 3개월 이내의 交通權의 制限
9. 4주 이내의 拘留

② 拘留는 더 중한 違反 또는 수회 반복된 위반을 이유로 하여서만 決定될 수 있다.

③ 다수의 징벌조치는 서로 병합될 수 있다.

④ 제1항3호 내지 8호에 의한 措置는 가능한 한 그 違反이 制限될 수 있거나 剝奪될 수 있는 權限과 관계있는 경우에만 지시되어야 한다. 이것은 拘留와 관계되어 있는 경우 그 적용이 없다.

제104조 (懲罰措置의 執行, 保護觀察을 위한 中斷) ① 懲罰措置는 원칙적으로 즉시 집행된다.

zur Bewährung ausgesetzt werden.

(3) Wird die Verfügung über das Hausgeld beschränkt oder entzogen, ist das in dieser Zeit anfallende Hausgeld dem Überbrückungsgeld hinzuzurechnen.

(4) Wird der Verkehr des Gefangenen mit Personen außerhalb der Anstalt eingeschränkt, ist ihm Gelegenheit zu geben, dies einer Person, mit der er im Schriftwechsel steht oder die ihn zu besuchen pflegt, mitauteilen. Der Schriftwechsel mit den in §29 Abs. 1 und 2 genannten Empfängern, mit Gerichten und Justizbehörden in der Bundesrepublik sowie mit Rechtsanwälten und Notaren in einer den Gefangenen betreffenden Rechtssache bleibt unbeschränkt.

(5) Arrest wird in Einzelhaft vollzogen. Der Gefangene kann in einem besonderen Arrestraum untergebracht werden, der den Anforderungen entsprechen muß, die an einen zum Aufenthalt bei Tag und Nacht bestimmten Haftraum gestellt werden. Soweit nichts anderes angeordnet wird, ruhen die Befugnisse des Gefangenen aus den § § 19, 20, 22, 37, 38, 68 bis 70.

§ 105 Disziplinarbefugnis

(1) Disziplinarmaßnahmen ordnet der Anstaltsleiter an. Bei einer Verfehlung auf dem Wege in eine andere Anstalt zum Zwecke der Verlegung ist der Leiter der Bestimmungsantalt zuständig.

(2) Die Aufsichtsbehörde entscheidet, wenn sich die Verfehlung des Gefangenen gegen den Anstaltsleiter richtet.

(3) Disziplinarmaßnahmen, die gegen einen Gefangenen in einer anderen Vollzugsanstalt oder während einer Untersuchungshaft angeordnet worden sind, werden auf Ersuchen vollstreckt. § 104 Abs. 2 bleibt unberührt.

§ 106 Verfahren

(1) Der Sachverhalt ist zu klären. Der Gefangene wird gehört. Die Erhebungen werden in einer Niederschrift festgelegt; die Einlassung des Gefangenen wird vermerkt.

(2) Bei schweren Verstößen soll der Anstaltsleiter sich vor der Entscheidung in einer Konferenz mit Personen besprechen, die bei der Behandlung des Gefangenen mitwirken. Vor der Anordnung einer Disziplinarmaßnahme gegen einen Gefangenen, der sich in ärztlicher Behandlung befindet, oder gegen eine Schwangere oder eine stillende Mutter ist der Anstaltsarzt zu hören.

② 징벌조치는 6개월 이내에 保護觀察을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수 있다.

③ 受刑者家族扶養給付金에 대한 處分權이 제한되거나 박탈되는 경우 이 기간에 생기는 受刑者家族扶養給付金은 更生補助金에 가산되어야 한다.

④ 교도소 外部人과 수형자간에 交通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 수형자가 文書受發을 하고 있거나 수형자를 接見하던 자에게 이를 通知할 기회가 수형자에게 주어져야 한다. 이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열거된 受信人, 연방공화국의 法院, 法務部 및 수형자가 관계되어 있는 법률사건의 辯護士 및 公證人과의 文書受發은 제한되지 아니한다.

⑤ 拘留는 獨居拘禁으로 집행된다. 수형자는 주간 및 야간의 滯留를 위하여 규정된 拘禁室이 설치되어 있는 特別拘留에 수용될 수 있다.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37조, 제38조, 제68조 내지 제70조의 수형자의 권한은 정지한다.

제105조 (懲罰權限) ① 懲罰措置는 교도소장이 指示한다. 移送의 目的으로 다른 교도소로 移送途中에서의 위반에 대해서는 目的地矯導所의 소장이 관할한다.

② 수형자의 違反行爲가 교도소장에 대하여 행해진 경우에는 監督管이 이를 결정한다.

③ 다른 교도소에 收容되어 있거나 또는 未決拘禁 중인 수형자에 대하여 지시된 懲罰措置는 의뢰에 의하여 집행된다. 제104조제2항은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6조 節次 ① 事實関係는 疏明되어야 한다. 수형자는 陳述한다. 訴의 提起는 調書에서 확정된다. 수형자의 應訴는 기재된다.

② 중대한 違反時에는 교도소장은 會議에서의 決定에 앞서 수형자의 處遇에 있어서 협력하는 자들과 相議하여야 한다. 醫師의 治療를 받고 있는 수형자 또는 임신부나 授乳 중인 부녀에 대한 懲罰措置의 지시에 앞서 교도소 醫師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Die Entscheidung wird dem Gefangenen vom Anstaltsleiter mündlich eröffnet und mit einer kurzen Begründung schriftlich abgefaßt.

§ 107 Mitwirkung des Arztes

(1) Bevor der Arrest vollzogen wird, ist der Arzt zu hören. Während des Arrestes steht der Gefangene unter ärztlicher Aufsicht.

(2) Der Vollzug des Arrestes unterbleibt oder wird unterborchen, wenn die Gesundheit des Gefangenen gefährdet würde.

Vierzehnter Titel Rechtsbehelfe

§ 108 Beschwerderecht

(1) Der Gefangene erhält Gelegenheit, sich mit Wünschen, Anregungen und Beschwerden in Angelegenheiten, die ihn selbst betreffen, an den Anstaltsleiter zu wenden. Regelmäßige Sprechstunden sind einzurichten.

(2) Besichtigt ein Vertreter der Aufsichtsbehörde die Anstalt, so ist zu gewährleisten, daß ein Gefangener sich in Angelegenheiten, die ihn selbst betreffen, an ihn wenden kann.

(3) Die Möglichkeit der Dienstaufsichtsbeschwerde bleibt unberührt.

§ 109 Antrag auf gerichtliche Entscheidung

(1) Gegen eine Maßnahme zur Regelung einzelner Angelegenheiten auf dem Gebiete des Strafvollzuges kann gerichtliche Entscheidung beantragt werden. Mit dem Antra gkann auch die Verpflichtung zum Erlaß einer abgelehnten oder unterlassenen Maßnahme begehrt werden.

(2) Der Antrag auf gerichtliche Entscheidung ist nur zulässig, wenn der Antragsteller geltend macht, durch die Maßnahme oder ihre Ablehnung oder Unterlassung in seinen Rechten verletzt zu sein.

(3) Das Landesrecht kann vorsehen, daß der Antrag erst nach vorausgegangenem Verwaltungsvorverfahren gestellt werden kann.

§ 110 Zuständigkeit

Über den Antrag entscheidet die Strafvollstreckungskammer, in deren Bezirk die beteiligte Vollzugsbehörde ihren Sitz hat. Durch die Entscheidung in einem Verwaltungsvorverfahren nach § 109 Abs. 3 ändert sich die Zuständigkeit der Strafvollstreckungskammer nicht.

③ 그 결정은 교도소장이 수형자에게 먼저 구두로 통지하고 간단한 이유있는 서면으로 작성한다.

제107조 (醫師의 協力) ① 拘留가 집행되기 전에 醫師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拘留 중에는 수형자는 의사의 감독을 받는다.
② 수형자의 건강이 위태로운 경우에는 拘留의 執行을 중지 또는 중단한다.

제14절 法律上의 救濟手段

제108조 (抗告權) ① 수형자는 그 자신이 관련되어 있는 사건에서 그의 所望事項, 提案事項 및 異議事項을 가지고 교도소장에게 請願할 기회를 갖는다. 정기적인 面談時間은 배정되어야 한다.
② 監督官庁의 代表者가 교도소를 巡視하는 경우에는 수형자가 그 자신이 관련되어 있는 사건을 그 代表者에게 請願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③ 職務監督 抗告의 가능성은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9조 (司法判決申請) ① 刑事執行上의 개별적인 業務處理를 위한 조치에 대하여는 司法判決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신청과 함께 却下 또는 中斷된 조치의 發動義務도 또한 요구할 수 있다.
② 司法判決에 대한 신청은 申請人이 그 조치 또는 조치의 却下 내지 중단에 의하여 그의 權利가 侵害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③ 州法律은 사전의 行政前置節次 후에야 비로소 신청을 提起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제110조 (管轄) 그 지구에 관련 矯導所가 그 주소를 두고 있는 刑事執行部가 그 신청에 관하여 결정한다. 제 109조제3항에 의거한 行政前置節次에서의 결정에 의하여 형사집행부의 관할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 111 Beteiligte

(1) Beteiligte des gerichtlichen Verfahrens sind

1. der Antragsteller
2. die Vollzugsbehörde, die die angefochtene Maßnahme angeordnet oder die beantragte abgelehnt oder unterlassen hat.

(2) In dem Verfahren vor dem Oberlandesgericht oder dem Bundesgerichtshof ist Beteiligte nach Absatz 1 Nr. 2 die zuständige Aufsichtsbehörde.

§ 112 Antragsfrist. Wiedereinsetzung

(1) Der Antrag muß binnen zwei Wochen nach Zustellung oder schriftlicher Bekanntgabe der Maßnahme oder ihrer Ablehnung schriftlich oder zur Niederschrift der Geschäftsstelle des Gerichts gestellt werden. Soweit ein Verwaltungsvorverfahren (§ 109 Abs. 3) durchzuführen ist, beginnt die Frist mit der Zustellung oder schriftlichen Bekanntgabe des Widerspruchsbescheides.

(2) War der Antragsteller ohne Verschulden verhindert, die Frist einzuhalten, so ist ihm auf Antrag Wiedereinsetzung in den vorigen Stand zu gewähren.

(3) Der Antrag auf Wiedereinsetzung ist binnen zwei Wochen nach Wegfall des Hindernisses zu stellen. Die Tatsachen zur Begründung des Antrags sind bei der Antragstelung oder im Verfahren über den Antrag glaubhaft zu machen. Innerhalb der Antragsfrist ist die versäumte Rechtshandlung nachzuholen Ist dies geschehen, so kann die Wiedereinsetzung auch ohne Antrag gewährt werden.

(4) Nach einem Jahr seit dem Ende der versäumten Frist ist der Antrag auf Wiedereinsetzung unzulässig, außer wenn der Antrag vor Ablauf der Jahresfrist infolge höherer Gewalt unmöglich war.

§ 113 Vornahmeantrag

(1) Wendet sich der Antragsteller gegen das Unterlassen einer Maßnahme, kann der Antrag auf gerichtliche Entscheidung nicht vor Ablauf von drei Monaten seit dem Antrag auf Vornahme der Maßnahme gestellt werden, es sei denn, daß eine frühere Anrufung des Gerichts wegen besonderer Umstände des Falles geboten ist.

(2) Liegt ein zureichender Grund dafür vor, daß die beantragte Maßnahme noch nicht erlassen ist, so setzt das Gericht das Verfahren bis zum Ablauf einer von ihm bestimmten Frist aus. Die Frist kann verlängert werden. Wird die beantragte Maßnahme in der gesetzten Frist erlassen, so ist der Rechtsstreit in der Hauptsache erledigt.

(3) Der Antrag nach Absatz 1 ist nur bis zum Ablauf eines Jahres seit der Stellung des Antrags auf Vornahme der Maßnahme zulässig, außer wenn die

제111조 (當事者) ① 私法節次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제기인
2. 취소조치를 지시하거나 신청을 각하 내지 중단한 교도소

② 고등법원 또는 연방법원에서의 절차에 있어서 제1항2호에 의거한 당사자는 당해 감독관청이다.

제112조 (申請期間, 原狀回復) ① 신청은 그 조치의 送達, 書面公告 또는 그 조치의 却下 후 2주간내에 서면 또는 法院書記課의 調書에 의하여 제기되어야 한다. 行政前置節次(제109조3항)가 실행되어야 하는 경우 送達 또는 異議決定의 書面公告와 더불어 기간이 개시된다.

② 申請提起人이 고의·과실없이 期限의 遵守에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에게 原狀回復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원상회복 신청은 妨害의 中止 후 2주간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申請理由에 대한 요건은 申請提起時 또는 그 申請에 관한 節次 중에 확정되어야 한다. 신청기간내에는 欠缺된 法律行爲가 보충되어야 한다. 補充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은 또한 신청없이도 허용될 수 있다.

④ 遲滯期間의 종결로부터 1년의 경과 후에는 原狀回復申請은 그 신청이 1년 기간의 경과전에 더 큰 强制力의 결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외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13조 (措置의 着手申請) ① 申請提起人이 조치의 중지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경우에는 司法判決申請은 法院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 召喚을 하지 아니하는 한 조치의 着手申請 이후 3개월의 경과 전에는 제기되어 질 수 있다.

② 그 申請된 措置를 시행하지 아니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法院은 법원이 정한 期間의 경과시까지 그 節次를 中止한다.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그 신청된 조치가 정해진 기간내에 시행되는 경우에는 本案에 대한 訴訟이 중지된다.

③ 제1항에 의한 신청은 그 申請提起가 1년기간의 경과전에 더 큰 强制力의 결과 불가능하거나 개별적인 경우 특별한 조건하에서 중지되지 아니하는 한 그

Antragstellung vor Ablauf der Jahresfrist infolge höherer Gewalt unmöglich war oder unter den besonderen Verhältnissen des Einzelfalles unterblieben ist.

§ 114 Aussetzung der Maßnahme

(1) Der Antrag auf gerichtliche Entscheidung hat keine aufschiebende Wirkung.

(2) Das Gericht kann den Vollzug der angefochtenen Maßnahme aussetzen, wenn die Gefahr besteht, daß die Verwirklichung eines Rechts des Antragstellers vereitelt oder wesentlich erschwert wird und ein höher zu bewertendes Interesse an dem sofortigen Vollzug nicht entgegensteht. Das Gericht kann auch eine einstweillige Anordnung erlassen; § 123 Abs. 1 der Verwaltungsgerichtsordnung ist entsprechend anzuwenden. Die Entscheidungen sind nicht anfechtbar; sie können vom Gericht jederzeit geändert oder aufgehoben werden.

(3) Der Antrag auf eine Entscheidung nach Absatz 2 ist schon vor Stellung des Antrags auf gerichtliche Entscheidung zulässig.

§ 115 Gerichtliche Entscheidung

(1) Das Gericht entscheidet ohne mündliche Verhandlung durch Beschluß.

(2) Soweit die Maßnahme rechtswidrig und der Antragsteller dadurch in seinen Rechten verletzt ist, hebt das Gericht die Maßnahme und, soweit ein Verwaltungsvorverfahren vorhergegangen ist, den Widerspruchsbescheid auf. Ist die Maßnahme schon vollzogen, kann das Gericht auch aussprechen, daß und wie die Vollzugsbehörde die Vollziehung rückgängig zu machen hat, soweit die Sache spruchreif ist.

(3) Hat sich die Maßnahme vorher durch Zurücknahme oder anders erledigt, spricht das Gericht auf Antrag aus, daß die Maßnahme rechtswidrig gewesen ist, wenn der Antragsteller ein berechtigtes Interesse an dieser Feststellung hat.

(4) Soweit die Ablehnung oder Unterlassung der Maßnhame rechtswidrig und der Antragsteller dadurch in seinen Rechten verletzt ist, spricht das Gericht die Verpflichtung der Vollzugbehörde aus, die beantragte Amtshandlung vorzunehmen, wenn die Sache spruchreif ist. Anderenfalls spricht es die Verpflichtung aus, den Antragsteller unter Beachtung der Rechtsauffassung des Gerichts zu bescheiden.

(5) Soweit die Vollzugsbehörde ermächtigt ist, nach ihrem Ermessen zu handeln, prüft das Gericht auch, ob die Maßnahme oder ihre Ablehnung oder Unterlassung rechtswidrig ist, weil die gesetzlichen Grenzen des Ermessens überschritten sind oder von dem Ermessen in einer dem Zweck der Ermächtigung nicht entsprechenden Weise Gebrauch gemacht ist.

§ 116 Rechstbeschwerde

(1) Gegen die gerichtliche Entscheidung der Strafvollstreckungskammer ist

조치의 着手申請 제기 후 1년의 경과시까지만 허용된다.

제114조 (措置의 中止) ① 私法判決申請은 연기의 효력이 없다.

② 法院은 신청제기인의 權利實現이 좌절되거나 중대하게 妨害받고 있으며 즉각적인 執行에 대하여 더 높이 평가될 수 있는 利害関係가 존재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그 取消措置의 執行을 중지할 수 있다. 법원은 또한 잠정적인 지시를 발할 수 있다. 行政法院法 제123조제1항은 이에 준용된다. 判決은 取消될 수 없다. 단, 判決은 法院에 의하여 항상 變更 또는 廢棄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판결신청은 司法判決申請提起前에 허용된다.

제115조 (司法判決) ① 法院은 口頭辯論없이 결정으로써 판결한다.

② 그 조치가 위법하고 申請提起人이 이에 의하여 그의 權利를 侵害받은 경우에는 法院은 그 조치를 무효로 하며 行政前置節次가 선행되어진 경우 異議決定을 폐기한다. 그 조치가 이미 집행된 경우 법원은 그 事案의 審理終結 후 교도소가 그 집행을 철회할 것과 그 방법을 선언할 수 있다.

③ 그 措置가 사전에 撤回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解決된 경우에는 法院은 申請提起人이 이에 대한 정당한 확인의 利益이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위법한 것이었음을 신청에 의하여 선언할 수 있다.

④ 그 조치의 却下 또는 中止가 違法하고 申請提起人이 이로 인하여 그의 權利를 침해받은 경우에는 法院은 그 事案의 終結후 신청받은 職務行爲의 착수의 무를 교도소에 선언한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法院이 법원의 法律的 所見을 고려하여 신청제기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선언한다.

⑤ 교도소가 裁量으로 처리할 수 있는 權限이 있는 경우에는 法院은 그 措置, 조치의 却下 또는 中止가 裁量의 法的 限界를 일탈했거나 또는 裁量에 의하여 權限의 目的에 상응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위법한지의 여부를 조사한다.

제116조 (法의 違反을 理由로 하는 抗告) ① 法院刑事執行部의 司法判決에 대하여 權利의 補充 또는 일관성 있는 判決의 保障을 위한 再檢討를 가능케 하

die Rechtsbeschwerde zulässig, wenn es geboten ist, die Nachprüfung zur Forbildung des Rechts oder zur Sicherung einer einheitlichen Rechtsprechung zu ermöglichen.

(2) Die Rechtsbeschwerde kann nur darauf gestützt werden, daß die Entscheidung auf einer Verletzung des Gesetzes beruhe. Das Gesetz ist verletzt, wenn eine Rechtsnorm nicht oder nicht richtig angewendet worden ist.

(3) Die Rechtsbeschwerde hat keine aufschiebende Wirkung. § 114 Abs. 2 gilt entsprechend.

(4) Für die Rechtsbeschwerde gelten die Vorschriften der Strafprozeßordnung uber die Beschwerde entsprechend, soweit dieses Gesetz nichts anderes bestimmt.

§ 117 Zuständigkeit für die Rechtsbeschwerde

Über die Rechtsbeschwerde entscheidet ein Strafsenat des Oberlandesgerichts, in desen Bezirk die Strafvollstreckungskammer ihren Sitz hat.

§ 118 Form. Frist. Begründung

(1) Die Rechtsbeschwerde muß bei dem Gericht, dessen Entscheidung angefochten wird, binnen eines Monats nach Zustellung der gerichtlichen Entscheidung eingelegt werden. In dieser Frist ist außerdem die Erklärung abzugeben, inwieweit die Entscheidung angefochten und ihre Aufhebung beantragt wird. Die Anträge sind zu begründen.

(2) Aus der Begründung muß hervorgehen, ob die Entscheidung wegen Verletzung einer Rechtsnorm über das Verfahren oder wegen Verletzung einer anderen Rechtsnorm angefochten wird. Ersterenfalls müssen die den Mangel enthaltenden Tatsachen angegeben werden.

(3) Der Antragsteller als Beschwerdeführer kann dies nur in einer von einem Rechtsanwalt unterzeichneten Schrift oder zur Niederschrift der Geschäftsstelle tun.

§ 119 Entscheidung über die Rechtsbeschwerde

(1) Der Strafsenat entscheidet ohne mündliche Verhandlung durch Beschluß.

(2) Seiner Prüfung unterliegen nur die Beschwerdeanträge und, soweit die Rechtsbeschwerde auf Mängel des Verfahrens gestützt wird, nur die Tatsachen, die in der Begründung der Rechtsbeschwerde bezeichnet worden sind.

(3) Der Beschluß, durch den die Beschwerde verworfen wird, bedarf keiner Begründung, wenn der Strafsenat die Beschwerde einstimmig für unzulässig oder

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법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抗告가 허용된다.

② 法의 違反을 이유로 하는 抗告는 法律의 違反을 이유로 하는 것만을 그 근거로 할 수 있다. 法律은 法規가 적용되지 아니하였거나 올바르게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 위반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③ 法의 違反을 이유로 하는 抗告는 延期의 效力이 없다. 제114조제2항은 이에 준용된다.

④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法의 違反을 이유로 하는 抗告를 위하여는 항고에 관한 刑事訴訟法規定을 준용한다.

제117조 (法의 違反을 理由로 하는 抗告의 管轄) 법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抗告는 法院의 刑事執行部가 그곳에 주소를 두고 있는 高等法院의 刑事部가 판결한다.

제118조 (形式, 期間, 理由) ① 법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抗告는 그 判決을 취소한 法院에 대하여 司法判決의 송달 후 1개월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이 기간 중에 그 判決의 取消 및 廢棄가 신청되는 한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신청서는 이유있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그 이유로부터 判決이 節次에 관한 法規違反 또는 기타의 법규위반을 이유로 취소되었는지의 여부가 판명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흠결이 있는 法律要件이 적시되어야 한다.

③ 抗告人인 신청제기인은 辯護士가 서명한 文書 또는 法院書記課의 調書에 의해서만 이를 할 수 있다.

제119조 (法의 違反을 理由로 하는 抗告에 관한 判決) ① 刑事部는 구두변론 없이 決定으로써 判決한다.

② 刑事部의 審査에는 抗告申請書만이 그 기초가 되며 그 법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抗告가 節次의 欠缺을 理由로 하는 한에 있어서 법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抗告理由書에 적시되어 있는 法律要件만이 그 기초가 된다.

③ 抗告의 却下決定은 형사부가 그 항고를 滿場一致로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für offensichtlich unbegründet erachtet.

(4) Soweit die Rechtsbeschwerde für begründet erachtet wird, ist die angefochtene Entscheidung aufzuheben. Der Strafsenat kann an Stelle der Strafvollstreckungskammer entscheiden, wenn die Sache spruchreif ist. Sonst ist die Sache zur neuen Entscheidung an die Strafvollstreckungskammer zurückzuverweisen.

(5) Die Entscheidung des Strafsenats ist endgültig.

§ 120 Entsprechende Anwendung anderer Vorschriften

(1) Soweit sich diesem Gesetz nichts anderes ergibt, sind die Vorschriften der Strafprozeßordnung entsprechend anzuwenden.

(2) Auf die Bewilligung des Armenrechts sind die Vorschriften der Zivilprozeßordnung entsprechend anzuwenden.

§ 121 Kosten des Verfahrens

(1) In der das Verfahren abschließenden Entscheidung ist zu bestimmen, von wem die Kosten des Verfahrens und die notwendigen Auslagen zu tragen sind.

(2) Soweit der Antragsteller unterliegt oder seinen Antrag zurucknimmt, trägt er die Kosten des Verfahrens und die notwendigen Auslagen. Hat sich die Maßnahme vor einer Entscheidung nach Absatz 1 in anderer Weise als durch Zurücknahme des Antrags erledigt, so entscheidet das Gericht über die Kosten des Verfahrens und die notwendigen Auslagen nach billigem Ermessen.

(3) Absatz 2 Satz 2 gilt nicht im Falle des § 115 Abs. 3.

(4) Im übrigen gelten die §§ 464 bis 473 der Strafprozeßordnung entsprechend.

(5) Für die Kosten des Verfahrens nach den §§ 109 ff. kann auch ein dreißig Deutsche Mark übersteigender Teil des Hausgeldes (§ 47) in Anspruch genommen werden.

Fünfzehnter Titel Strafvollstreckung und Undersuchungshaft

§ 122

(1) Wird Untersuchungshaft zum Zwecke der Strafvollstreckung unterbrochen oder wird gegen einen Strafgefangenen in anderer Sache Untersuchungshaft angeordnet, so unterliegt der Gefangene abweichend von § Abs. 2 auch denjeni-

보든가 또는 명백히 理由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④ 法의 違反을 이유로 하는 抗告가 이유 있는 것으로 보는 한 取消된 判決은 폐기되어야 한다. 刑事部는 그 事案이 審理終結된 경우 刑事執行部를 대신하여 판결할 수 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그 사안이 새로이 判決되도록 刑事執行部로 환송되어야 한다.

⑤ 형사부의 판결은 終局判決이 된다.

제120조 (其他 規定의 準用) ① 이 법에 달리 규정 없는 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② 法律救助權의 承認에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121조 (訴訟費用) ① 結審公判에서 누가 訴訟費用 및 必要經費를 부담하여야 하는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신청제기인이 敗訴하거나 자기의 申請을 撤回하는 경우에는 신청제기인이 訴訟費用 및 必要經費를 부담한다. 그 조치가 신청의 철회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제1항의 決定前에 종결된 경우에는 法院은 訴訟費用 및 必要經費를 합리적인 평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2항2문은 제115조 제2항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그밖에는 형사소송법 제464조 내지 제473조가 준용된다.

⑤ 제109조에 의한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또한 受刑者家族扶養給付金(제47조) 가운데 30마르크를 상회하는 부분에서 청구될 수 있다.

제15절 刑執行 및 未決拘禁

제122조 ① 未決拘禁이 刑執行의 목적을 위하여 중단되거나 刑事拘禁者에 대하여 다른 事案으로 未決拘禁이 지시되는 경우에는 수형자는 제4조제2항과는 달

gen Beschränkungen seiner Freiheit, die der Zweck der Untersuchungshaft erfordert. Die notwendigen Maßnahmen ordnet der nach § 126 der Strafprozeßordnung zuständige Richter an. § 119 Abs. 6 Satz 2 und 3 der Strafprozeßordnung gilt entsprechend.

(2) § 148 Abs. 2, § 148 a der Strafprozeßordnung sind anzuwenden.

Sechzehnter Titel Sozialtherapeutische Anstalten

§ 123 Sozialtherapeutische Anstalten und Abteilungen

(1) Für den Vollzug nach § 9 sind von den übrigen Vollzugsantalten getrennte sozialtherapeutische Anstalten vorzusehen.

(2) Aus besonderen Gründen können auch sozialtherapeutische Abteilungen in anderen Vollzugsanstalten eingerichtet werden. Für diese Abteilungen gelten die Vorschriften über die sozialtherapeutische Anstalt entsprechend.

§ 124 Urlaub zur Vorbereitung der Entlassung

(1) Der Anstaltsleiter kann dem Gefangenen zur Vorbereitung der Entlassung Sonderurlaub bis zu sechs Monaten gewähren. § 11 Abs. 2 und § 13 Abs. 5 gelten entsprechend.

(2) Dem Beurlaubten sollen für den Urlaub Weisungen erteilt werden. Er kann insbesondere angewiesen werden, sich einer von der Anstalt bestimmten Betreuungsperson zu unterstellen und jeweils für kurze Zeit in die Anstalt zurückzukehren.

(3) § 14 Abs. 2 gilt entsprechend. Der Urlaub wird widerrufen, wenn dies für die Behandlung des Gefangenen notwendig ist.

§ 125 Aufnahme auf freiwilliger Grundlage

(1) Ein früherer Gefangener kann auf seinen Antrag vorübergehend wieder in die sozialtherapeutische Anstalt aufgenommen werden, wenn das Ziel seiner Behandlung gefährdet und ein Aufenthalt in der Anstalt aus diesem Grunde gerechtfertigt ist. Die Aufnahme ist jederzeit widerruflich.

(2) Gegen den Aufgenommenen dürfen Maßnahmen des Vollzuges nicht mit unmittelbarem Zwang durchgesetzt werden.

(3) Auf seinen Antrag ist der Aufgenommene unverzüglich zu entlassen.

리 未決拘禁의 목적에 필요한 수형자의 自由制限에 부족한다. 필요한 조치는 刑事訴訟法 제126조에 의거한 권한있는 法官이 지시한다. 형사소송법 제119조 제6항2호 및 3호는 이에 준용된다.

② 형사소송법 제148조제2항, 제148a조는 이에 준용되어야 한다.

제16절 社會治療施設

제123조 (社會治療施設 및 部署) ① 제9조에 의한 執行을 위하여 교도소와는 별도로 社會治療施設을 규정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타의 교도소내에 社會治療部署 설치할 수 있다. 이 部署에 대하여는 社會治療施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제124조 (釋放準備를 위한 休暇) ① 社會治療施設의 장은 수형자에게 釋放準備를 위하여 6개월 이내의 特別休暇를 허용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 및 제13조 제5항은 이에 준용된다.

② 休暇者에 대하여는 休暇命令書가 교부되어야 한다. 휴가자는 특히 社會治療施設이 지정한 보호자의 감독하에 있을 것과 一時 社會治療施設에 귀소할 것을 指示받을 수 있다.

③ 제14조제2항은 이에 준용된다. 休暇는 이것이 수형자의 處遇上 불가피한 경우 철회된다.

제125조 (任意的·自發的 原則에 의한 收容) ① 원래의 수형자는 그의 신청으로 그의 處遇目的에 장해가 되고 그 시설에서의 滯留가 이러한 사유로 是認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다시 社會治療施設에 수용될 수 있다. 이 수용은 언제나 철회될 수 있다.

② 수용자에 대하여는 執行措置가 直接强制에 의하여 실행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수용자는 지체없이 석방되어야 한다.

§ 126 Nachgehende Betreuung

Die Zahl der Fachkräfte für die sozialtherapeutische Anstalt ist so zu bemessen, daß auch eine nachgehende Betreuung der Gefangenen gewährleistet ist soweit diese anderweitig nicht sichergestellt werden kann.

§§ 127 und 128 (aufgehoben)

Dritter Abschnitt Besondere Vorschriften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entziehenden MaB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Erster Titel Sicherungsverwahrung

§ 129 Ziel der Unterbringung

Der Sicherungsverwahrte wird zum Schutz der Allgemeinheit sicher untergebracht. Ihm soll geholfen werden, sich in das Leben in Freiheit einzuglidern.

§ 130 Anwendung anderer Vorschriften

Für die Sicherungsverwahrung gelten die Vorschriften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 3 bis 126) entsprechend, soweit im folgenden nichts anderes bestimmt ist.

§ 131 Ausstattung

Die Ausstattung der Sicherungsanstalten, namentlich der Hafträume, und besondere Maßnahmen zur Förderung und Betreuung sollen dem Untergebrachten helfen, sein Leben in der Anstalt sinnvoll zu gestalten, und ihn vor Schäden eines langen Freiheitsentzuges bewahren. Seinen persönlichen Bedürfnissen ist nach Möglichkeit Rechnungzu tragen.

§ 132 Kleidung

Der Untergebrachte darf eigene Kleidung, Wäsche und eigenes Bettzeug benutzen, wenn Gründe der Sicherheit nicht entgegenstehen und der Untergebrachte für Reinigung, Instandsetzung und regelmäßigen Wechsel auf eigene Kosten sorgt.

제126조 (後續의 保護) 社會治療施設을 위한 專門家의 수는 수형자가 다른 방법으로 保護될 수 없는 한 수형자의 후속하는 보호가 보장되는 정도로 割當되어야 한다.

제127조 (削除)

제128조 (削除)

제3장 自由를 剝奪하는 矯正 및 保安處分의 執行에 관한 特別規定

제1절 保安拘禁

제129조 (收容目的) 保安拘禁者는 一般公衆의 保護를 위하여 안전하게 수용된다. 이는 보안구금자가 자유생활로의 복귀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0조 (其他 規定의 適用) 保安拘禁을 위하여는 이에 관한 다른 규정이 없는 한 自由刑의 執行에 관한 법률(제3조 내지 제12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1조 (設備) 保安拘禁施設 특히 구금실의 設備 및 改善과 保護를 위한 特別措置는 수용자가 그의 施設에서의 생활이 중요한 意味를 形成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고 오랜 自由剝奪의 被害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保安拘禁者의 개인적인 요구사항은 가능한 한 고려되어야 한다.

제132조 (服裝) 수용자는 安全上의 理由에 반하지 아니하고 수용자가 自辨으로 세탁·수선 및 정기적인 갈아입기를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복장, 세면도구 및 침구를 이용할 수 있다.

§ 133 Selbstbeschäftigung. Taschengeld

(1) Dem Untergebrachten wird gestattet, sich gegen Entgelt selbst zu beschäftigen, wenn dies dem Ziel dient, Fähigkeiten für eine Erwerbstätigkeit nach der Entlassung zu vermitteln, zu erhalten oder zu fördern.

(2) Das Taschengeld (§ 46) darf dreißig Deutsche Mark im Monat nicht unterschreiten.

§ 134 Entlassungsvorbereitung

Um die Entlassung zu erproben und vorzubereiten, kann der Vollzug gelockert und Sonderurlaub bis zu einem Monat gewährt werden. Bei Untergebrachten in einer sozialtherapeutischen Anstalt bleibt § 124 unberührt.

§ 135 Sicherungsverwahrung in Frauenanstalten

Die Sicherungsverwahrung einer Frau kann auch in einer fü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bestimmten Frauenanstalt durchgeführt werden, wenn diese Anstalt für die Sicherungsverwahrung eingerichtet ist.

Zweiter Titel Unterbringung in einem psychiatrischen Krankenhaus und in einer Entziehungsanstalt

§ 136 Unterbringung in einem psychiatrischen Krankenhaus

Die Behandlung des Untergebrachten in einem psychiatrischen Krankenhaus richtet sich nach ärztlichen Gesichtspunkten. Soweit möglich, soll er geheilt oder sein Zustand soweit gebessert werden, daß er nicht mehr gefährlich ist. Ihm wird die nötige Aufsicht, Betreuung und Pflege zuteil

§ 137 Unterbringung in einer Entziehungsanstalt

Ziel der Behandlung des Untergebrachten in einer Entziehungsanstalt ist es, ihn von seinem Hang zu heilen und die zugrunde liegende Fehlhaltung zu beheben.

§ 138 Anwendung anderer Vorschriften

(1) Die Unterbringung in einem psychiatrischen Krankenhaus oder in einer Entziehungsanstalt richtet sich nach Landesrecht, soweit Bundesgesetz nichts anderes bestimmen.

(2) Für die Unterbringung gelten § 51 Abs. 4 und 5, § 75 Abs. 3 und die §§ 109 bis 121 entsprechend.

제133조 (自發的 勞役, 용돈) ① 수용자에게는 이것이 釋放 후에 就業을 위한 능력을 周旋, 유지 또는 증진할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報酬를 받고 자발적인 勞役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② 용돈(제46조)은 월 30마르크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134조 (釋放準備) 釋放을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執行을 緩和하여 1개월 이내의 特別休暇를 허용할 수 있다. 社會治療施設에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제124조는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5조 (女子矯導所에의 保安拘禁) 여자의 保安拘禁은 이 시설이 보안구금을 위해 설치된 경우 自由刑의 執行을 위하여 지정된 여자시설에서 실행될 수 있다.

제2절 精神病院 및 禁斷治療施設에의 收容

제136조 (精神病院收容) 정신병원 수용자의 處遇는 醫師의 見解에 따르도록 한다. 가능한 한 그가 더이상 위험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까지 治療를 받고 그의 상태가 好轉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용자에게는 필요한 감독, 보호 및 간호가 許與된다.

제137조 (禁斷治療施設 收容) 禁斷治療施設 수용자에 대한 處遇의 目的은 그의 常習性을 치료하고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잘못된 태도를 제거함에 있다.

제138조 (其他 規定의 適用) ① 精神病院 또는 禁斷治療施設에의 수용은 聯邦法律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州法에 따른다.

② 수용에는 제51조제4항 및 제5항, 제75조 제3항 및 제109조 내지 제121조가 준용된다.

Vierter Abschnitt Vollzugsbehören

Erster Titel Arten und Einrichtung der Justizvollzugsanstälten

§ 139 Justizvollzugsanstalten

Die Freiheitsstrafe sowie die Unterbringung in der Sicherungsverwahrung werden in Anstalten der Landesjustizverwaltungen (Justizvollzugsanstalten) vollzogen.

§ 140 Trennung des Vollzuges

(1) Die Unterbringung in der Sicherungsverwahrung wird in getrennten Anstalten oder in getrennten Abteilungen einer fü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bestimmten Vollzugsanstalt vollzogen.

(2) Frauen sind getrennt von Männern in besonderen Frauenanstalten unterzubringen. Aus besonderen Grünnden können für Frauen getrennte Abteilungen in Anstalten für Männer vorgesehen werden.

(3) Von der getrennten Unterbringung nach den Absätzen 1 und 2 darf abgewichen werden, um dem Gefangenen die Teilnahme an Behandlungsmaßnahmen in einer anderen Anstalt oder in einer anderen Abteilung zu ermöglichen.

§ 141 Differenzierung

(1) Fü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sind Haftplätze vorzusehen in verschiedenen Anstalten oder Abteilungen, in denen eine auf die unterschiedlichen Bedürfnisse der Gefangenen abgestimmte Behandlung gewährleistet ist.

(2) Anstalten des geschlossenen Vollzuges sehen eine sichere Unterbringung vor, Anstalten des offenen Vollzuges keine oder nur verminderte Vorkehrungen gegen Entweichungen.

§ 142 Einrichtungen für Mütter mit Kindern

In Anstalten für Frauen sollen Einrichtungen vorgesehen werden, in denen Mütter mit ihren Kindern untergebracht werden können.

§ 143 Größe und Gestaltung der Anstalten

(1) Justivollzugsantalten sind so zu gestalten, daß eine auf die Bedürfnisse des einzelnen abgestellte Behandlung gewahrleistet ist.

(2) Die Vollzugsanstalten sind so zu gliedern, daß die Gefangenen in überschaubaren Betreuungs- und Behandlungsgruppen zusammengefaßt werden können.

(3) Die für sozialtherapeutische Anstalten und für Justizvollzugsanstalten fur

제4장 執行官廳

제1절 矯導所의 種類 및 設置

제139조 矯導所 自由刑 및 保安拘禁에의 收容은 州司法行政施設(교도소)에서 집행되어진다.

제140조 (執行의 隔離) ① 保安拘禁에 있어서의 수용은 분리된 矯導所 또는 自由刑의 執行을 위하여 특정하게 분리된 실에서 집행되어진다.

② 女子는 男子와 분리되어 특별한 女子矯導所에 수용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男子矯導所 내에 여자를 위하여 분리된 部署를 둘 수 있다.

③ 受刑者에게 다른 矯導所 또는 다른 部署에서의 處遇措置에 대한 참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한 分離收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1조 (差別) ① 自由刑의 집행을 위하여는 수형자의 相異한 要求事項에 적합한 處遇가 보장되는 별개의 矯導所 또는 部署에 구금장소를 두어야 한다.

② 閉鎖執行矯導所는 안전한 수용을 대비하고 開放執行矯導所는 逃走防止策을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최소한의 對備策만을 규정한다.

제142조 (子女가 있는 婦女를 위한 施設) 여자교도소에는 子女가 있는 婦女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3조 (矯導所의 規模와 形態) ① 矯導所는 개개인의 要求事項에 적합한 處遇가 보장될 수 있을 정도로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② 교도소는 수형자가 改善可能 保護集團 및 處遇集團에 포함될 수 있도록 편제되어야 한다.

③ 社會治療施設 및 여자를 위한 司法執行施設로서 마련된 收容施設은 200석

Frauen vorgesehene Belegung soll zweihundert Plätze niche übersteigen.

§ 144 Größe und Ausgestaltung der Räume

(1) Räume für den Aufenthalt während der Ruhe- und Freizeit sowie Gemeinschaftsund Besuchsräume sind wohnlich oder sonst ihrem Zweck entsprechend auszugestalten. Sie müssen hinreichend Luftinhalt haben und für eine gesunde Lebensführung ausreichend mit Heizung und Lüftung, Boden- und Fensterfläche ausgestattet sein.

(2) Der Bundesminister der Justiz wird ermächtigt, mit Zustimmung des Bundesrates durch Rechtsverordnung Näheres über den Luftinhalt, die Lüftung, die Boden- und Fensterfläche sowie die Heizung und Einrichtung der Räume zu bestimmen.

§ 145 Festsetzung der Belegungsfähigkeit

Die Aufsichtsbehörde setzt die Belegungsfähigkeit für jede Anstalt so fest, daß eine angemessene Unterbringung während der Ruhezeit (§ 18) gewährleistet ist. Dabei ist zu berücksichtigen, daß eine ausreichende Anzahl von Plätzen für Arbeit, Ausbildung und Weiterbildung sowie von Räumen für Seelsorge, Freizeit, Sport, therapeutische Maßnahmen und Besuche zur Verfügung steht.

§ 146 Verbot der Überbelegung

(1) Hafträume dürfen nicht mit mehr Personen als zugelassen belegt werden.

(2) Ausnahmen hiervon sind nur vorübergehend und nur mit Zustimmung der Aufsichtsbehorde zülassig.

§ 147 Einrichtungen für die Entlassung

Um die Entlassung vorzubereiten, sollen den geschlossenen Anstalten offene Einrichtungen angegliedert oder gesonderte offene Anstalten vorgesehen werden.

§ 148 Arbeitsbeschaffung, Gelegenheit zur beruflichen Bildung

(1) Die Vollzugsbehörde soll im Zusammenwirken mit den Vereinigungen und Stellen des Arbeits- und Wirtschaftslebens dafür sorgen, daß jeder arbeitsfähige Gefangene wirtschaftlich ergiebige Arbeit ausüben kann, und dazu beitragen, daß er beruflich gefördert, beraten und vermittelt wird.

(2) Die Vollzugsbehörde stellt durch geeignete organisatorische Maßnahmen sicher, daß die Bundesanstalt für Arbeit die ihr obliegenden Aufgaben wie Berufsberatung, Arbeitsberatung und Arbeitsvermittlung durchführen kann.

규모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제144조 (室內의 크기와 形態) ① 休暇期間 및 自由時間 동안을 위한 실 및 團體生活室과 接見室은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각각의 목적에 상응할 정도로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실내는 충분한 通風이 되어야 하며 건강한 生活營爲를 위하여 난방시설, 通風施設, 밑바닥면적 및 창문면적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聯邦參議院의 동의에 의하여 通風에 관한 세부시행령을 통하여 通風施設, 밑바닥면적, 창문면적 및 실내의 난방시설과 설치물에 대하여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제145조 (收容能力의 確定) 監督官庁은 휴식시간(제18조)동안 적정한 收容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각 교도소의 收容能力을 확정한다. 이 경우 作業, 教育 및 再教育을 위한 충분한 수의 장소와 아울러 기도, 자유시간, 운동, 치료조치 및 접견을 위한 시설의 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46조 (過密收容의 禁止) ① 거실에는 허용된 숫자 이상의 인원이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

② 이에 대한 예외는 단지 一時的으로 監督官庁의 동의에 의해서만 허용된다.

제147조 (釋放을 위한 施設) 석방준비를 위하여 閉鎖矯導所를 개방시설에 편입하거나 特別開放施設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8조 (勤勞의 振興, 職業教育을 위한 機會) ① 교도소는 勤勞 및 經濟團體 및 部署의 협력하에 모든 근로능력 있는 수형자가 經濟的 利益이 있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수형자가 職業上의 支援, 諮問 및 斡旋받을 수 있는데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도소는 적절한 組織上의 조치에 의하여 聯邦勞動部가 직업상담, 근로상담 및 근로알선과 같은 그에 부과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149 Arbeitsbetreibe, Einrichtungen zur beruflichen Bildung

(1) In den Anstalten sind die notwendigen Betriebe für die nach §37 Abs. 2 zuzuweisenden Arbeiten sowie die erforderlichen Einrichtungen zur beruflichen Bildung (§ 37 Abs. 3) und arbeitstherapeutischen Beschäftigung (§37 Abs. 5) vorzusehen.

(2) Die in Absatz 1 genannten Betriebe und sonstigen Einrichtungen sind den Verhältsen außerhalb der Anstalten anzugleichen. Die Arbeitsschutz- und Unfallverhütungs-vorschriften sind zu beachten.

(3) Die berufliche Bildung und die arbeitstherapeutische Beschäftigung können auch in geeigneten Einrichtungen privater Unternehmen erfolgen.

(4) In den von privaten Unternehmen unterhaltenen Betrieben und sonstigen Einrichtungen kann die technische und fachliche Leitung Angehörigen dieser Unternehmen übertragen werden.

§ 150 Vollzugsgemeinschaften

Für Vollzugsanstalten nach den §§ 139 bis 149 können die Länder Vollzugsgemeinschaften bilden.

Zweiter Titel Aufsicht über die Justizvollzugsanstalten

§ 151 Aufsichtbehörden

(1) Die Landesjustizverwaltungen führen die Aufsicht über die Justizvollzugsanstalten. Sie können Aufsichtsbefugnisse auf Justizvollzugsämter übertragen.

(2) An der Aufsicht über das Arbeitswesen sowie über die Sozialarbeit, die Weiterbildung, die Gesundheitsfürsorge und die sonstige fachlich begründete Behandlung der Gefangenen sind eigene Fachkräfte zu beteiligen.

§ 152 Vollstreckungsplan

(1) Die Landesjustizverwaltung regelt die örtliche und sachliche Zuständigkeit der Justizvollzugsanstalten in einem Vollstrekkungsplan.

(2) Der Vollstreckungsplan sieht vor, welche Verurteilten in eine Einweisungsanstalt oder -abteilung eingewiesen werden. Über eine Verlegung zum weiteren Vollzug kann nach Gründen der Behandlung und Eingliederung entschieden werden.

(3) Im übrigen ist die Zuständigkeit nach allgemeinen Merkmalen zu bestimmen.

제149조 (作業의 運營, 職業敎育을 위한 施設) ① 교도소는 제37조제2항에 의거하여 割當된 作業을 위한 필수적인 營業場 및 職業敎育을 위한 필요한 시설(제37조제3항)과 作業療法的인 勞役(제37조 제5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營業場 및 기타의 시설은 교도소 외부의 조건과 똑같이 한다. 勤勞保護規定 및 産災防止規定은 준수되어야 한다.

③ 職業敎育 및 作業療法的인 노역은 또한 私企業의 적절한 시설에서 행해질 수 있다.

④ 私企業에 의해 운영되는 營業場 및 기타 시설에서의 技術指導 및 專門指導는 그 企業의 종업원에게 委託할 수 있다.

제150조 (矯導所聯合會) 各州는 제139조 내지 제149조에 의거하여 교도소를 위하여 矯導所聯合會를 구성할 수 있다.

제2절 矯導所 監督

제151조 (監督官庁) ① 州法務部는 교도소에 관하여 監督한다. 州矯正局에 감독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② 勤勞事項에 대한 監督 및 수형자의 社會的 困境支援, 再敎育, 衛生保護와 기타 전문적인 處遇에 대한 감독은 각각의 專門家가 담당하여야 한다.

제152조 (執行計劃書) ① 州法務部는 집행계획서에 교도소 장소적, 물적 관할을 규정한다.

② 집행계획서는 어느 旣決囚를 指定矯導所 또는 指定矯導部署로 지정할 것인가를 규정한다. 기타의 執行을 위한 移送에 관해서는 處遇 및 收容의 事由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③ 기타 管轄權에 대하여는 일반적 기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153 Zuständigkeit für Verlegungen

Die Landesjustizverwaltung kann sich Entscheidungen über Verlegungen vorbehalten oder sie einer zentralen Stelle übertragen.

Dritter Titel Innerer Aufbau der Justizvollzugsanstalten

§ 154 Zusammenarbeit

(1) Alle im Vollzug Tätigen arbeiten zusammen und wirken daran mit, die Aufgaben des Vollzuges zu erfüllen.

(2) Mit den Behörden und Stellen der Entlassenenfürsorge, der Bewährungshilfe, den Aufsichtsstellen für die Führungsaufsicht, den Arbeitsämtern, den Trägern der Sozialversicherung und der Sozialhilfe, den Hilfeeinrichtungen anderer Behörden und den Verbänden der freien Wohlfahrtspflege ist eng zusammenzuarbeiten. Die Vollzugsbehörden sollen mit Personen und Vereinen, deren Einfluß die Eingliederung des Gefangenen förden kann, zusammenarbeiten.

§ 155 Vollzugsbedienstete

(1) Die Aufgaben der Justizvollzugsanstalten werden von Vollzugsbeamten wahrgenommen. Aus besonderen Gründen können sie auch anderen Bediensteten der Justizvollzugsanstalten sowie nebenamtlichen oder vertraglich verpflichteten Personen übertragen werden.

(2) Für jede Anstalt ist entsprechend ihrer Aufgabe die erforderliche Anzahl von Bediensteten der verschiedenen Berufsgruppen, namentlich des allgemeinen Vollzugsdienstes, des Verwaltungsdienstes und des Werkdienstes, sowie von Seelsorgern, Ärzten, Pädagogen, Psychologen und Sozialarbeitern vorzusehen.

§ 156 Anstaltsleitung

(1) Für jede Justizvollzugsanstalt ist ein Beamter des höheren Dienstes zum hauptamtlichen Leiter zu bestellen. Aus besonderen Gründen kann eine Anstalt auch von einem Beamten des gehobenen Dienstes geleitet werden.

(2) Der Anstaltsleiter vertritt die Anstalt nach außen. Er trägt die Verantwortung für den gesamten Vollzug, soweit nicht bestimmte Aufgabenbereiche der Verantwortung anderer Vollzugsbedienste oder ihrer gemeinsamen Verantwortung übertragen sind.

(3) Die Befugnis, die Durchsuchung nach § 84 Abs. 2, die besonderen Sicherungsmaßnahmen nach § 88 und die Disziplinarmaßnahmen nach § 103 anzuordnen , darf nur mit Zustimmung der Aufsichtsbehordë übertragen werden.

제153조 (移送을 위한 管轄) 주법무부는 移送을 위한 決定을 留保하거나 이를 中央部署에 위임할 수 있다.

제3절 矯導所의 內部構成

제154조 (共同作業) ① 모든 수형자는 공동으로 작업을 하며 執行任務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한다.

② 釋放扶助를 위한 官庁 및 部署, 保護觀察, 行狀監視를 위한 감독부서, 노동관서, 社會保險 및 社會扶助의 담당자, 기타 관청의 救恤施設 및 福祉事業團體는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교도소는 수형자의 수용에 있어서 그들의 영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람 및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155조 (矯導官) ① 矯導所의 業務는 矯導官에 의하여 수행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업무는 교도소의 기타 교도관 및 겸직하고 있거나 契約上義務가 있는 자에게 委任할 수 있다.

② 각각의 교도소에 대하여 그 業務에 따라 相異한 職務集團의 公務員 数, 다시 말해서 일반교도관, 행정담당관 및 작업담당관 및 목사, 의사, 교육자, 심리학자 및 사회복지담당관의 수를 규정하여야 한다.

제156조 (矯導所의 監督) ① 각각의 교도소에는 職務 監督을 위한 次上級職責 공무원이 임명되어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도소는 上位職責의 공무원에 의하여 지휘될 수 있다.

② 矯導所長은 對外的으로 교도소를 代表한다. 교도소장은 다른 교도관의 특정한 責任業務領域이 아니거나 다른 교도관의 共同責任으로 위임된 사항이 아닌 한 전체의 執行業務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제82조제2항에 의한 검사, 제88조에 의한 특별한 安全措置 및 제103조에 의한 懲罰措置를 지시하는 권한은 監督官庁의 동의에 의해서만 委任할 수 있다.

§ 157 Seelsorge

(1) Seelsorger werden im Einvernehmen mit der jeweiligen Religionsgemeinschaft im Hauptamt bestellt oder vertraglich verpflichtet.

(2) Wenn die geringe Zahl der Angehörigen einer Religionsgemeinschaft eine Seelsorge nach Absatz 1 nicht rechtfertigt, ist die seelsorgerische Betreuung auf andere Weise zuzulassen.

(3) Mit Zustimmung des Anstaltsleiters dürfen die Anstaltsseelsorger sich freier Seelsorgehelfer bedienen und für Gottesdienste sowie für andere religiöse Veranstaltungen Seelsorger von außen zuziehen.

§ 158 Ärztliche Versorgung

(1) Die ärztliche Versorgung ist durch hauptamtliche Ärzte sicherzustellen. Sie kann aus besonderen Gründen nebenamtlichen oder vertraglich verpflichteten Ärzten übertragen werden.

(2) Die Pflege der Kranken soll von Personen ausgeübt werden, die eine Erlaubnis nach dem Krankenpflegegesetz besitzen. Solange Personen im Sinne von Satz 1 nicht zur Verfügung stehen, können auch Bedienstete des allgemeinen Vollzugsdienstes eingesetzt werden, die eine sonstige Ausbildung in der Krankenpflege erfahren haben.

§ 159 Konferenzen

Zur Aufstellung und Überprüfung des Vollzusplanes und zur Vorbereitung wichtiger Entscheidungen im Vollzuge führt der Anstaltsleiter Konferenzen mit an der Behandlung maßgeblich Betiligten durch.

§ 160 Gefangenenmitverantwortung

Den Gefangenen und Untergebrachten soll ermöglicht werden, and der Verantwortung für Angelegenheiten von gemeinsamem Interesse teilzunehmen, die sich ihrer Eigenart und der Aufgabe der Anstalt nach für ihre Mitwirkung eignen.

§ 161 Hausordnung

(1) Der Anstaltsleiter erläßt eine Hausordnung. Sie bedarf der Zustimmung der Aufsichtsbehörde.

(2) In die Hausordnung sind namentlich die Anordnungen aufzunehmen über

1. die Besuchszeiten, Häufigkeit und Dauer der Besuche,
2. die Arbeitszeit, Frezeit und Ruhezeit sowie
3. die Gelegenheit, Anträge und Beschwerden anzubringen, order sich an

제157조 (司祭職) ① 司祭는 그때그때 宗教共同體와의 協議로 中央部署 안에 임명되거나 契約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② 宗教共同體 소속원의 一部가 제1항에 의한 司祭職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司祭의 保護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③ 교도소장의 동의에 의하여 矯導所司祭는 任意의 補助司祭를 둘 수 있으며 禮拜 및 기타 宗教行事를 위하여 외부로부터 司祭를 초빙할 수 있다.

제158조 (醫療扶助) ① 醫療扶助는 專任醫師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한다. 醫療扶助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兼任醫 또는 契約에 의하여 義務가 있는 醫師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자의 간호는 疾病看護法에 의하여 허가를 얻은 자가 실행하여야 한다. 제1문상의 자가 임의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기타의 疾病看護 기타의 教育經歷이 있는 一般矯導官 중에서도 또한 任命될 수 있다.

제159조 (會議) 執行計劃書의 樹立 및 調査 그리고 중요한 집행상의 決定에 대한 準備를 위하여 교도소장은 處遇에 決定權이 있는 당사자와의 會議를 개최한다.

제160조 (受刑者共同責任) 수형자 및 수용자가 그의 個性과 矯導所의 業務에 비추어 協力에 적합한 共同利益業務를 위하여 그 책임을 다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1조 (矯導所規則) ① 교도소장은 矯導所規則을 발한다. 이에는 감독관청의 동의를 요한다.

② 所規則에는 특히 다음의 지시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접견시간, 접견의 회수 및 기간
2. 작업시간, 자유시간 및 휴식시간
3. 신상, 신청 및 이의의 제출 또는 감독관청의 장에 대한 청원

einen Vertreter der Aufsichtsbehörde zu wenden.

(3) Ein Abdruck der Hausordnung ist in jedem Haftraum auszulegen.

Vierter Titel Anstaltsbeiräte

§ 162 Bildung der Beiräte

(1) Bei den Justizvollzugsanstalten sind Beiräte zu bilden.

(2) Vollzugsbedienstete dürfen nicht Mitglieder der Beiräte sein.

(3) Das Nähere regeln die Länder.

§ 163 Aufgabe der Beiräte

Die Mitglieder des Beirats wirken bei der Gestaltung des Vollzuges und bei der Betreuung der Gefangenen mit. Sie unterstützen den Anstaltsleiter durch Anregungen und Verbesserungsvorschläge und helfen bei der Eingliederung der Gefangenen nach der Entlassung.

§ 164 Befugnisse

(1) Die Mitglieder des Beirats können namentlich Wünsche, Anregungen und Beanstandungen entgegennehmen. Sie können sich über die Unterbringung, Beschäftigung, berufliche Bildung, Verpflegung, ärztliche Versorgung und Behandlung unterrichten sowie die Anstalt und ihre Einrichtungen besichtigen.

(2) Die Mitglieder des Beirats können die Gefangenen und Untergebrachten in ihren Räumen aufsuchen. Aussprache und Schriftwechsel werden nicht überwacht.

§ 165 Pflicht zur Verschwiegenheit

Die Mitglieder des Beirats sind verpflichtet, außerhalb ihres Amtes über alle Angelegenheiten, die ihrer Natur nach vertraulich sind, besonders über Namen und Persönlichkeit der Gefangenen und Untergebrachten, Verschwiegenheit zu bewahren. Dies gilt auch nach Beendigung ihres Amtes.

Fünfter Titel Kriminologische Forschung im Strafvollzug

§ 166

Dem kriminologischen Dienst obliegt es, in Zusammenarbeit mit den Einrich-

③ 所規則의 인쇄물은 모든 居室에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제4절 矯導所 顧問會

제162조 (顧問會의 設置) ① 교도소에는 顧問會가 설치되어야 한다.
② 矯導官은 고문회의 構成員이 될 수 없다.
③ 細部事項은 各州가 정한다.

제163조 (顧問會의 任務) 고문회의 구성원은 執行의 形態 및 수형자의 保護에 협력한다. 고문회의 구성원은 激勵와 改善의 助言으로 교도소장을 後援하며 석방 후 수형자의 社會復歸에 도움을 준다.

제164조 (顧問會의 權限) ① 顧問會의 構成員은 특히 所願事項, 격려사항 및 異議事項을 받아들일 수 있다. 고문회의 구성원은 수용, 노역, 직업교육, 급양, 의료보호 및 處遇에 대하여 報告를 받을 수 있고 矯導所 및 그 施設을 검열할 수 있다.
② 고문회의 구성원은 수형자 및 수용자를 그들의 구금실에서 接見할 수 있다. 意見開陳과 文書受發은 감시받지 아니한다.

제165조 (秘密維持의 義務) 顧問會의 구성원은 그 성질상 秘密로 하여야 하는 모든 업무, 특히 수형자 및 수용자의 성명과 인적사항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그의 직무 밖에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5절 行刑上의 刑事學研究

제166조 刑事學研究部는 연구조직들과 협조하여 執行, 특히 處遇方法을 학문

tungen der Forschung den Vollzug, namentlich die Behandlungsmethoden, wissenschaftlich fortzuentwickeln und seine Ergebnisse für Zwecke der Strafrechtspflege nutzbar zu machen.

Fünfter Abschnitt Schlußvorschriften

Erster Titel Vollzug des Strafarrestes in Justizvollzugsanstalten

§ 167 Grundsatz

Für den Vollzug des Strafarrestes in Justizvollzugsanstalten gelten die Vorschriften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 2 bis 122) entsprechend, soweit im folgenden nichts anderes bestimmt ist.

§ 168 Unterbringung, Besuche und Schriftverkehr

nen zulässig. Dies gilt nicht, wenn Strafarrest in Unterbrechung und Ruhezeit (§§ 17 und 18) ist nur mit Einwilligung des Gefangenen zulässig. Dies gilt nicht, wenn Strafarrest in Unterbrechung einer Strafhaft oder einer Unterbringung im Vollzuge ein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 der Besserung und Sicherung vollzogen wird.

(2) Dem Gefangenen soll gestattet werden, einmal wöchentlich Besuch zu Erzwingungshaft.

(3) Besuche und Schriftwechsel dürfen nur untersagt oder überwacht werden, wenn dies aus Gründen der Sicherheit oder Ordnung der Anstalt notwendig ist.

§ 169 Kleidung, Wäsche und Bettzeug

Der Gefangene darf eigene Kleidung, Wäsche und eigenes Bettzeug benutzen, wenn Gründe der Sicherheit nicht entgegenstehen und der Gefangene für Reinigung, Instandsetzung und regelmäßigen Wechsel auf eigene Kosten sorgt.

§ 170 Einkauf

Der Gefangene darf Nahrungs- und Genußmittel sowie Mittel zur Körperpflege in angemessenem Umfang durch Vermittlung der Anstalt auf eigene Kosten erwerben.

적으로 계속 發展시켜 나갈 義務가 있으며 刑事裁判의 목적을 위하여 그 결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제5장 雜 則

제1절 矯導所에의 留置執行

제167조 (原則) 교도소에의 留置執行에 대하여는 이하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自由刑의 執行(제2조 내지 제122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8조 (收容, 接見 및 文書受發) ① 작업, 자유시간 및 휴식시간(제17조 및 제18조) 중의 共同收容은 수형자의 事前同意에 의하여 허용된다. 刑事拘禁 또는 自由를 박탈하는 矯正 및 保安處分의 집행의 중단 중에 留置가 執行되어지는 경우에는 이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수형자에게는 매주 1회의 接見이 허용되어야 한다.

③ 接見 및 文書受發은 교도소의 安全 또는 秩序의 理由上 이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금지될 수 있거나 감시를 받을 수 있다.

제169조 (衣類, 洗濯物 및 寢具) 수형자는 安全上의 理由에 반하지 아니하고 수형자가 自辨으로 세탁, 수선 및 규칙적으로 옷을 갈아입는 경우에는 자신의 의류, 세탁물 및 자신의 침구를 사용할 수 있다.

제170조 (購入) 수형자는 식료품, 기호품 및 상당한 정도의 건강식품을 矯導所의 周旋을 통하여 自辨取得 할 수 있다.

Zweiter Titel Vollzug von Ordnungs-, Sicherungs-, Zwangs- und Erzwingungshaft

§ 171 Grundsatz

Für den Vollzug einer gerichtlich angeordneten Ordnungs-, Sicherungs-, Zwangs- und Erzwingungshaft gelten die Vorschriften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 § 3 bis 122) entsprechend, soweit nicht Eigenart und Zweck der Haft entgegenstehen oder im folgenden etwas anderes bestimmt ist.

§ 172 Unterbringung

Eine gemeinsame Unterbringung während der Arbeit, Freizeit und Ruhezeit (§§17 und 18) ist nur mit Einwilligung des Gefangenen zulässig. Dies gilt nicht, wenn Ordnungshaft in Unterbrechung einer Strafhaft oder einer Unterbringung im Vollzuge ein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 der Besserung und Sicherung vollzogen wird.

§ 173 Kleidung, Wäsche und Bettzeug

Der Gefangene darf eigene Kleidung, Wäsche und eigenes Bettzeug benutzen, wenn Gründe der Sicherheit nicht entgegenstehen und der Gefangene für Reinigung, Instandsetzung und regelmäßigen Wechsel auf eigene Kosten sorgt.

§ 174 Einkauf

Der Gefangene darf Nahrungs- und Genußmittel sowie Mittel zur Körperpflege in angemessenem Umfang durch Vermittlung der Anstalt auf eigene Kosten erwerben.

§ 175 Arbeit

Der Gefangene ist zu einer Arbeit, Beschäftigung oder Hilfstätigkeit nicht verpflichtet.

Dritter Titel Arbeitsentgelt in Jugendstrafanstalten und im Vollzug der Untersuchungshaft

§ 176 Jugendstrafanstalten

(1) Übt ein Gefangener in einer Jugendstrafanstalt eine ihm zugewiesene Arbeit aus, so erhält er unbeschadet der Vorschriften des Jugendarbeitsschutzgesetzes über die Akkord- und Fließarbeit ein nach § 43 Abs. 1 und 2 zu bemessendes Arbeitsentgelt. Übt er eine sonstige zugewiesene Beschäftigung oder Hilf-

제2절 秩序拘禁, 保護拘禁, 强制拘禁 및 强制를 위한 拘禁의 執行

제171조 (原則) 法院이 命令한 秩序拘禁, 保全拘禁, 强制拘禁, 강제를 위한 구금에 대하여는 拘禁의 本質 및 目的에 반하지 아니하거나 이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 自由刑의 執行(제3조 내지 제122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2조 (收容) 작업, 자유시간 및 휴식시간(제17조 및 제18조)중의 共同收容은 수형자의 事前同意에 의하여만 허용된다. 禁錮刑의 중단 또는 자유를 박탈하는 矯正 및 保安處分의 집행 중에 秩序拘禁이 집행되는 경우에는 이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73조 (衣類, 洗濯物 및 寢具) 수형자는 안전상의 이유에 반하지 아니하고 수형자가 세탁, 수선 및 규칙적인 갈아입기를 自辨하는 경우에는 수형자는 자신의 의류, 세탁물 및 침구를 사용할 수 있다.

제174조 (購入) 수형자는 식료품 및 기호품과 아울러 건강식품을 상당한 범위에서 自辨으로 교도소의 周旋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다.

제175조 (作業) 수형자는 作業, 勞役 또는 補助業務를 부담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3절 少年院 및 未決拘禁執行에 있어서의 勞賃

제176조 (少年院) ① 소년원에 있는 수형자가 그에게 割當된 作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형자는 都給作業 및 一貫作業에 관한 少年勞動保護法의 규정에 관계없이 이 법 제43조제1항 및 2항에 의거 상당한 賃金을 받는다. 수형자가 기타 그에게 割當된 勞役 또는 補助業務를 수행하는 경우 수형자는 이것이 그

stätigkeit aus, so erhält er ein Arbeitsentgelt nach Satz 1, soweit dies der Art seiner Beschäftigung und seiner Arbeitsleistung entspricht.

(2) Arbeitsfähige Gefangene, denen aus Gründen, die nicht in ihrer Person liegen, Arbeit nicht zugewiesen werden kann, erkrankte Gefangene, bei denen die Voraussetzungen des § 45 Abs. 2 vorliegen, und werdende Mütter, die eine Arbeit nicht verrichten, erhalten eine Ausfallentschädigung. Höhe und Dauer der Ausfallentschädigung sind nach § 45 Abs. 3 bis 6 zu bestimmen.

(3) Gefangene, die wegen Gebrechlichkeit nicht arbeiten oder denen eine Ausfallentschädigung nicht oder nicht mehr gewährt wird, erhalten ein angemessenes Taschengeld, falls sie bedürftig sind. Gleiches gilt für Gefangene, die für eine Beschäftigung oder Hilfstätigkeit nach Absatz 1 Satz 2 kein Arbeitsentgelt erhalten.

(4) Im übrigen gelten § 44 und die §§ 49 bis 52 entsprechend.

§ 177 Untersuchungshaft

Übt der Untersuchungsgefangene eine ihm zugewiesene Arbeit, Beschäftigung oder Hilfstätigkeit aus, so erhält er ein nach § 43 zu bemessendes Arbeitsentgelt.

Vierter Titel Unmittelbarer Zwang in Justizvollzugsanstälten

§ 178

(1) Die §§ 94 bis 101 über den unmittelbaren Zwang gelten nach Maßgabe der folgenden Absätze auch für Justizvollzugsbedienstete außerhalb des Anwendungsbereichs des Strafvollzugsgesetzes (§ 1).

(2) Beim Vollzug der Untersuchungshaft und der einstweiligen Unterbringung nach § 126 a der Strafprozeßordnung bleibt § 119 Abs. 5 und 6 der Strafprozeßordnung unberührt.

(3) Beim Vollzug des Jugendarrestes, des Strafarrestes sowie der Ordnungs-, Siche-rungs, Zwangs- und Erzwingungshaft dürfen zur Vereitelung einer Flucht oder zur Wiederergreifung (§ 100 Abs. 1 Nr. 3) keine Schußwaffen gebraucht werden. Dies gilt nicht, wenn Strafarrest oder Ordnungs-, Sicherungs-, Zwangs- oder Erzwingungshaft in Unterbrechung einer Untersuchungshaft, einer Strafhaft oder einer Unterbringung im Vollzuge ein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 der Besserung und Sicherung vollzogen wird.

(4) Das Landesrecht kann, namentlich beim Vollzug der Jugendstrafe, weitere Einschränkungen des Rechtes zum Schußwaffengebrauch vorsehen.

의 노역 및 작업의 종류에 부합하는 한 본항1문에 의한 賃金을 받는다.
② 그 자신에 있지 아니한 사유로 인하여 作業을 割當받지 못한 勤勞能力있는 수형자, 그에게 제45조제2항의 요건이 있는 病者인 수형자 및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妊娠 중의 母는 缺損補償金을 받는다. 결손보상금의 價額 및 기간은 이 법 제45조제3항 내지 6항에 의거하여 별도로 규정한다.
③ 不具를 이유로 하여 작업을 하지 못하거나 그에게 缺損報償金 또는 그 이상 어느 것도 받지 못한 수형자는 필요한 경우 상당한 정도의 용돈을 받는다. 본조 1항2문에 의한 勞役 및 補助業務에 대하여 勞賃을 받지 못하는 수형자에 대하여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④ 기타 이 법 제44조 및 제49조 내지 제52조가 준용된다.

제177조 (未決拘禁) 未決受刑者가 그에게 割當된 作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는 제43조에 상당한 勞賃을 받는다.

제4절 矯導所에서의 直接强制

제178조 ① 直接强制에 관한 본법 제94조 내지 제101조는 다음 항에 의하여 行刑法(제1조)의 적용범위 이외에 矯導官에 대하여도 그 적용이 있다.
② 未決拘禁의 執行 및 형사소송법 제126a조에 의한 一般的인 收容의 執行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9조제5항 및 제6항은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소년구금, 형벌구금 및 질서구금, 보호구금, 강제구금, 강제를 위한 구금의 집행에 있어서는 逃走의 防止 또는 再逮捕(제100조제1항3호)를 위하여 銃砲가 사용될 수 없다. 미결구금, 형사구금 또는 자유를 박탈하는 矯正 및 保安處分의 執行으로 인한 수용의 중단에 있어서 형벌구금 또는 질서구금, 보호구금, 강제구금, 강제를 위한 구금이 집행되어지는 경우에는 이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州法은 특히 少年刑事犯의 집행에 있어서 銃砲使用權의 제한을 규정할 수 있다.

Fünfter Titel Anpassung des Bundesrechts

(§§ 179 bis 189 betreffen Änderungen der nachstehend aufgeführten Gesetze; die Änderungen sind jeweils unter den in Klammern angegebenen Fundstellen eingearbeitet: Gerichtsverfassungsgesetz [II B 10], Einführungsgesetz zum Gerichtsverfassungsgesetz [II B 9], Strafprozeßordnung [II B 70], Einführungsgesetz zum Strafgesetzbuch[II G 2 b], Einführungsgesetz zum Wehrstrafgesetz [I P 24 a], Bundeswehrvollzugsordnung [I P 24 c], Gesetz über das gerichtliche Verfahren bei Freiheitsentziehungen [II G 16], Zivilprozeßordnung [II B 20], Gerichtskostengesetz [II B 90], Bundesgebührenordnung für Rechtsanwälte [II B 93], Verordnung über Kosten im Bereich der Justizverwaltung [II B 97].)

Sechster Titel Sozial-und Arbeitslosenversicherung

(§§ 190 bis 194 betreffen Änderungen der nachstehend aufgeführten Gesetze; die Änderungen sind jeweils unter den in Klammern angegebenen Fundstellen eingearbeitet: Reichsversicherungsordnung [V E 1, V E 23, V E 50], Angestelltenversicherungsgesetz [V E 9, V E 24], Reichsknappschaftsgesetz [V E 2, V E 25], Gesetz über die Krankenversicherung der Landwirte [V E 56], Arbeitsförderungsgesetz [V D 21].)

§ 195 Einbehaltung von Beitragsteilen

Soweit die Vollzugsbehörde Beiträge zur Kranken- und Rentenversicherung sowie zur Bundesanstalt für Arbeit zu entrichten hat, kann sie von dem Arbeitsentgelt, der Ausbildungsbeihilfe oder der Ausfallentschädigung einen Betrag einbehalten, der dem Anteil des Gefangenen am Beitrag entsprechen würde, wenn er diese Bezüge als Arbeitnehmer erhielte.

Siebter Titel Einschränkung von Grundrechten. berlin-klausel. Inkrafttreten

§ 196 Einschränkung von Grundrechten

Durch dieses Gesetz werden die Grundrechte aus Artikel 2 Abs. 2 Satz 1 und

제5절 聯邦法의 調和

〔(제179조 내지 제189조는 다음에 소개하는 法律의 改正에 관련되어 있다.; 개정은 괄호 안에 제시되는 法令集에서 수시로 찾아볼 수 있다. 법원조직법(Ⅱ2 b), 법원조직법을 위한 시행법(Ⅱ B 9), 형사소송법(Ⅱ B 70), 형법을 위한 시행법(Ⅱ G 2 b), 군형법을 위한 시행법(IP 24 a), 연방국방집행법(IP 24 C), 자유박탈에 있어서 사법절차에 관한 법률(Ⅱ G 16), 민사소송법(Ⅱ B 20), 법원비용법(Ⅱ B 90), 연방변호사수수료법(Ⅱ93), 사법행정분야에 있어서의 비용에 관한 명령(Ⅱ B 97)〕

제6절 社會保險 및 失業保險

〔(제190조 내지 제194조는 다음에 소개하는 法律의 改正에 관련되어 있다.; 개정은 괄호 안에 제시되는 법령집에서 수시로 찾아 볼 수 있다; 라이히보험법(VE 1, VE 23, VE 50), 피용자보험법(VE 9, VE 24), 라이히광부조합법(VE 2, VE 25), 농장의 의료보험에 관한 법률(VE 56), 노동진흥법(VD 21)〕

제195조 (寄與金의 留保) 執行官庁이 의료보험, 연금보험 및 연방노동시설을 위하여 寄與金을 出捐해야 하는 한 집행관청은 수형자가 고용인으로서 勞賃, 職業養成期間 중의 特別扶養手當 또는 缺損補償金 報酬를 받은 경우는 기여금에 대한 수형자의 出資分에 상당하는 기여금을 이들 보수에서 유보할 수 있다.

제7절 基本權의 制限, 베를린條項, 施行

제196조 (基本權의 制限) 이 법에 의하여 基本法 제2조 제2항1호 및 2호(사람

2 (Körperliche Unversehrtheit und Freiheit der Person) und Artikel 10 Abs. 1 (Brief-, Post-, und Fernmeldegeheimnis) des Grundegesetzes eingeschränkt.

§ 197 Berlin-Klausel

Dieses Gesetz gilt nach Maßgabe des § 13 Abs. 1 des Dritten Überleitungsgesetzes vom 4. Januar 1952 (BGBI. I S. 1) auch im Land Berlin. Rechtsverordnungen, die auf Grund dieses Gesetzes erlassen werden, gelten im Land Berlin nach § 14 des Dritten Überleitungsgesetzes.

§ 198 Inkrafttreten

(1) Dieses Gesetz tritt unbeschadet der §§ 199 und 201 am 1. Januar 1977 in Kraft, soweit die Absätze 2 und 3 nichts anderes bestimmen.

(2) 1. Am 1. Januar 1980 treten folgende Vorschriften in Kraft:
§ 37 – Arbeitszuweisung –
§ 39 Abs. 1 – Freies Beschäftigungsverhältnis –
§ 41 Abs. 2 – Zustimmungsbedürftigkeit bei weiterbildenden Maßnahmen –
§ 42 – Freistellung von der Arbeitspflicht –
§ 149 Abs. 1 – Arbeitsbetriebe, Einrichtungen zur beruflichen Bildung –
§ 162 Abs. 1 – Beiräte –.

2. und 3. (gestrichen)

(3) Durch besonderes Bundesgesetz werden in Kraft gesetzt:
§ 5 Abs. 1 – Trennung im Aufnahmeverfahren –
§ 41 Abs. 3 – Zustimmungsbedürftigkeit bei Beschäftigung in Unternehmerbetrieben –
§ 45 – Ausfallentschädigung –
§ 46 – Taschengeld –
§ 47 – Hausgeld –
§ 49 – Unterhaltsbeitrag –
§ 50 – Haftkostenbeitrag –
§ 65 Abs. 2 Satz 2 – Krankenversicherungsleistungen bei Krankenhausaufenthalt –
§ 93 Abs. 2 – Inanspruchunahme des Hausgeldes –
§ 176 Abs. 2 und 3 – Ausfallentschädigung und Taschengeld im Jugendstrafvollzug –
§ 189 – Verordnung über Kosten –
§ 190 Nr. 1 bis 10 und 13 bis 18, §§ 191 bis 193 – Sozialversicherung –.

의 身體의 不可侵 및 自由) 및 제10조제1항(書信, 郵便 및 通信의 秘密)은 그 적용이 제한된다.

제197조 (베를린條項) 제3경과조치법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이 법은 1952년 1월4일부터 베를린州에도 그 적용이 있다. 이 법에 근거하여 발해지는 法令은 제3 경과조치법 제14조에 의하여 베를린州에서 그 적용이 있다.

제198조 (施行) ① 이 법은 동조 제2항 및 제3항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제199조 및 제201조에 관계없이 197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1. 다음의 규정은 198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37조 : 作業割當

제39조 제1항 : 任意的 作業條件

제41조 제2항 : 재교육 조치시에 있어서의 동의 필요성

제149조 제1항 : 作業의 運營, 職業敎育을 위한 施設

제162조 제1항 : 顧問會

2. 및 3. (삭제)

③ 다음의 규정은 特別聯邦法에 의하여 시행되어진다.

제5조제1항 : 수용절차상의 격리

제41조제3항 : 기업체에서의 作業時 동의 필요성

제45조 : 결손보상금

제46조 : 용돈

제47조 : 受刑者家族扶養給付金

제49조 : 생활비

제50조 : 구금비용

제65조 : 제2항1호 병원체류시의 醫療保險給付

제93조 : 제2항 受刑者家族扶養給付金의 징발

제176조 : 제2항 및 제3항 少年刑執行에 있어서의 缺損報償金 및 용돈

제189조 : 비용에 관한 명령

제190조 : 1호 내지 10호, 및 13호 내지 18호, 제191조 내지 제193조 사회보험

(4) Über das Inkrafttreten des § 41 Abs. 3 – Zustimmungsbedürftigkeit bei Beschäftigung in Unternehmerbetrieben – wird zum 31. Dezember 1983, über das Inkrafttreten des § 5 Abs. 1 – Trennung im Aufnahmeverfahren – und über die Fortgeltung des § 201 Nr. 1 – Unterbringung im offenen Vollzug – wird zum 31. Dezember 1985 befunden.

§ 199 Übergangsfassungen

(1) Vom 1. Januar 1977 bis zum Ablauf des 31. Dezember 1979 gilt folgendes:

1. § 42 – Freistellung von der Arbeitspflicht – erhält folgende Fassung:
"(1) Hat der Gefangene ein Jahr lang zugewiesene Tätigkeit oder Hilfstatigkeiten nach § 41 Abs. 1 Satz 2 ausgeübt, so kann er achtzehn Werktage von der Arbeitspflicht freigestellt werden.
(2) Auf die Zeit der Freistellung wird Urlaub aus der Haft (§§ 13, 35) angerechnet, soweit er in die Arbeitszeit fällt und nicht wegen einer lebensgefährlichen Erkrankung oder des Todes eines Angehörigen erteilt worden ist.
(3) Der Gefangene erhält für die Zeit der Freistellung seine zuletzt gezahlten Bezüge weiter.
(4) Urlaubsregelungen der Beschäftigungsverhältnisse außerhalb des Strafvollzuges bleiben unberührt."
2. § 156 Abs. 1 erhält folgenden Satz 3:
"Für nichtselbständige Vollzugsanstalten kann als Leiter auch ein Richter oder Staatsanwalt bestellt werden, und zwar für nichtselbständige Vollzugsanstalten am Sitz eines Landgerichts in erster Linie der Oberstaatsanwalt, für solche am Sitz eines Amtsgerichts, der nicht zugleich Sitz eines Landgerichts ist, der Vorstand des Amtsgerichts."
3. § 162 Abs. 1 – Beiräte – erhält folgende Fassung:
"(1) Bei den Justizvollzugsanstalten sollen Beiräte gebildet werden."

(2) Vom 1. Januar 1977 bis zum Inkrafttreten des besonderen Bundesgesetzes nach § 198 Abs. 3 gilt folgendes:

1. § 46 – Taschengeld – erhält folgende Fassung:
"Wenn ein Gefangener ohne sein Verschulden kein Arbeitsentgelt und keine Ausbildungsbeihilfe erhält, wird ihm ein angemessenes Taschengeld gewährt, falls er bedürftig ist."
2. § 47 – Hausgeld – erhält folgende Fassung:
"(1) Der Gefangene darf von seinen in diesem Gesetz geregelten Bezügen zwei Drittel monatlich (Hausgeld) und das Taschengeld (§ 46) für den Einkauf (§ 22 Abs. 1) oder anderweit verwenden.

④ 제41조 제3항 (企業體에서의 作業時 同意必要性)의 시행에 관하여는 1983년 12월31일까지, 제5조 제1항 收容節次上의 격리시행 및 제201조1호ㅡ開放執行에 있어서의 수용의 계속 적용에 관하여는 1985년 12월31일까지 인정된다.

제199조 (經過文措置) ① 1977년 1월1일부터 1979년 12월31일까지는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1. 제42조 作業義務의 免除는 다음의 문언을 포함한다.

"① 수형자가 제41조 제1항2문에 의하여 1년의 기간으로 割當받은 作業 또는 補助業務를 수행한 경우에 수형자는 작업의무 중에 18일의 근무일을 면제받을 수 있다.

② 休暇가 作業時間에 들어있고 生命에 위험을 주는 疾病 또는 親族의 死亡을 사유로 하여 許與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拘禁 중의 휴가(제13조, 제35조)는 免除期間에 산입된다.

③ 수형자는 免除期間 동안에도 그가 최종적으로 지급받은 給料를 계속하여 받는다.

④ 刑事執行 이외에 노역조건상의 休暇規定은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제156조 제1항에는 다음의 3문을 포함한다.

"非獨立矯導所의 長으로서 法官 또는 檢事가 임명될 수 있는데 州法院 소재지에 있는 비독립교도소에는 먼저 檢事長이 임명되고 州法院이 소재하고 있지 아니한 주법원 소재지의 비독립교도소에는 구법원장이 임명된다."

3. 제162조제1항 顧問會에는 다음의 문언을 포함한다.

"① 矯導所에는 고문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② 1977년 1월1일부터 特別聯邦法의 시행시까지는 제198조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1. 제46조 용돈에는 다음의 문언을 포함한다.

"수형자가 그의 故意·過失없이 勞賃 및 職業養成期間 중의 特別扶養手當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가 필요로 하는 경우 그에게 상당한 용돈이 주어진다."

(2) Für Gefangene, die in einem freien Beschäftigungsverhältnis stehen (§ 39 Abs. 1) oder denen gestattet ist, sich selbst zu beschäftigen (§ 39 Abs. 2), wird aus ihren Bezügen ein angemessenes Hausgeld festgesetzt."

3. § 50 – Haftkostenbeitrag – erhält folgende Fassung:
"(1) Von Gefangenen, die Bezüge nach diesem Gesetz erhalten, werden Haftkosten nicht erhoben.
(2) Von Gefangenen, die in einem freien Beschäftigungsverhältnis stehen (§ 39 Abs. 1), darf ein Haftkostenbeitrag in Höhe des Betrages erhoben werden, der nach § 160 Abs. 2 der Reichsversicherungsordnung durchschnittlich zur Bewertung der Sachbezüge festgesetzt ist. Der Bundesminister der Justiz stellt den Durchschnittsbetrag für jedes Kalenderjahr nach den am 1. Oktober des vorhergehenden Jahres geltenden Bewertungen der Sachbezüge fest und macht ihn im Bundesanzeiger bekannt. Der Haftkostenbeitrag darf auch von dem unpfändbaren Teil der Bezüge, jedoch nicht zu Lasten des Hausgeldes oder des Unterhaltsbeitrages angesetzt werden.
(3) Die Selbstbeschäftigung (§ 39 Abs. 2) kann davon abhängig gemacht werden, daß der Gefangene einen Haftkostenbeitrag bis zur Höhe des in Absatz 2 genannten Satzes monatlich im voraus entrichtet."

4. § 93 Abs. 2 – Inanspruchnahme des Hausgeldes – erhält folgende Fassung:
"(2) Bei der Geltendmachung dieser Forderungen kann auch ein dreißig Deutsche Mark übersteigender Teil des Hausgeldes (§ 47) in Anspruch genommen werden."

5. § 176 Abs. 3 – Taschengeld im Jugendstrafvollzug – erhält folgende Fassung:
"(3) Wenn ein Gefangener ohne sein Verschulden kein Arbeitsentgelt und keine Ausbildungsbeihilfe erhält, wird ihm ein angemessenes Taschengeld gewährt, falls er bedürftig ist."

6. Für die Beiträge zur Bundesanstalt für Arbeit sind die Vorschriften der Reichsversicherungsordnung und des Angestelltenversicherungsgesetzes, die auch für diese Beiträge maßgebend sind, in der Fassung der §§ 190 und 191 anzuwenden.

§ 200 Höhe des Arbeitsentgelts

(1) Der Bemessung des Arbeitsentgelts nach § 43 sind fünf vom Hundert des

2. 제47조 受刑者家族扶養給付金에는 다음의 文言을 포함한다.

"① 수형자는 매월 이 법에 규정된 報酬의 3분의 2(受刑者家族扶養給付金) 및 용돈(제46조)을 購入(제22조제1항) 또는 기타의 用途에 사용할 수 있다.

② 任意的 勞役條件에 있거나(제39조1항) 自發的 勞役을 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제39조제2항) 수형자에게는 그의 報酬에서 상당한 정도의 受刑者家族扶養給付金이 정해진다."

3. 제50조 拘禁費用에는 다음의 문언을 포함한다.

"① 이 법에 의하여 報酬를 받은 수형자로부터 拘禁費用이 징수되지 아니한다.

② 任意的 勞役條件에 있는(제39조제1항) 수형자로부터는 라이히보험법 제160조2항에 의하여 現物給與의 評價를 평균하여 확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拘禁費用을 징수할 수 있다. 연방법무부장관은 전년도 10월1일에 적용하는 現物給與評価基準에 의한 매년도 平均勞賃을 확정하여 이를 聯邦官報에 공고한다. 구금비용은 報酬 중에 押留할 수 없는 부분으로부터도 징수할 수 있지만 그것은 受刑者家族扶養給付金 또는 生活扶助金의 부담분으로 하지 아니한다.

③ 自發的 勞役(제39조제2항)은 본 조 2항에 열거된 문의 범위내에서 수형자가 拘禁費用을 미리 支給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행하여질 수 있다."

4. 제93조제2항 受刑者家族扶養給付金의 徵發은 다음의 문언을 포함한다.

"② 이러한 요구를 주장함에 있어서는 受刑者家族扶養給付金(제47조)을 초과하는 부분에서 30독일마르크가 또한 청구될 수 있다."

5. 제176조제3항 少年刑事執行에서의 용돈은 다음의 문언을 포함한다.

"③ 수형자가 그의 故意·過失없이 勞賃 및 職業養成期間 중의 特別扶養手當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가 필요하는 경우 그에게 상당한 정도의 용돈이 주어진다."

6. 聯邦勞動施設을 위한 分擔金에 대하여는 이 분담금에 대하여 그 기준이 되는 라이히保險法 및 被容者保險法의 규정이 제190조 및 제191조의 文言 속에 적용되어야 한다.

제200조 (勞賃의 範圍) ① 제43조에 의한 勞賃의 算定은 다음년도의 被敎育者

durchschnittlichen Arbeitsentgelts aller Versicherten der Rentenversicherung der Arbeiter und Angestellten ohne Auszubildende des vorvergangenen Kalenderjahrs zugrunde zu legen.

(2) Über eine Erhöhung des Anteils von dem in Absatz 1 bezeichneten Arbeitsentgelt wird zum 31. Dezember 1980 befunden.

§ 201 Übergangsbestimmungen für bestehende Anstalten

Für Anstalten, mit deren Errichtung vor Inkraftreten dieses Gesetzes begonnen wurde, gilt folgendes:

1. Abweichend von § 10 dürfen Gefangene ausschließlich im geschlossenen Vollzug untergebracht werden, solange die räumlichen, personellen und organisatorischen Anstaltsverhältnisse dies erfordern.
2. Abweichend von § 17 kann die gemeinschaftliche Unterbringung während der Arbeitszeit und Freizeit auch eingeschränkt werden, wenn und solange die räumlichen, personellen und organisatorischen Verhältnisse der Anstalt dies erfordern; die gemeinschaftliche Unterbringung während der Arbeitszeit jedoch nur bis zum Ablauf des 31. Dezember 1988.
3. Abweichend von § 18 dürfen Gefangene während der Ruhezeit auch gemeinsam untergebracht werden, solange die räumlichen Verhältnisse der Anstalt dies erfordern. Eine gemeinschaftliche Unterbringung ist nur bis zum Ablauf des 31. Dezember 1985 zulässig.
4. Abweichend von § 143 Abs. 1 und 2 sollen Justizovllzugsanstalten so gestaltet und gegliedert werden, daß eine auf die Bedürfnisse des einzelnen abgestellte Behandlung gewährleistet ist und daß die Gefangenen in überschaubaren Betreuungs- und Behandlungsgruppen zusammengefaßt werden können.
5. Abweichend von § 145 kann die Belegungsfähigkeit einer Anstalt nach Maßgabe der Nummern 2 und 3 festgesetzt werden.

를 제외하고 근로자 및 피고용자의 전체 연금보험피보험자의 平均勞賃에 대하여 5퍼센트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제시된 勞賃의 持分의 증액에 대하여는 1980년 12월31일까지 효력이 인정된다.

제201조 (旣存矯導所를 위한 經過規定) 이 법의 효력발생전에 그 設立이 개시된 矯導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1. 공간적, 인적 및 조직적인 교도소의 상황이 이를 필요로 하는 한 제10조와는 별도로 수형자는 閉鎖矯導所에만 수용될 수 있다.
2. 공간적, 인적 및 조직적인 교도소의 상황이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제17조와는 별도로 作業時間 및 自由時間 중에 共同收容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작업시간 중의 공동수용은 1988년 12월31일까지만 제한될 수 있다.
3. 교도소의 공간적인 상황이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제18조와는 별도로 수형자는 휴식시간 중에도 공동으로 수용될 수 있다. 공동수용은 1985년 12월31일까지만 허용된다.
4. 제143조제1항 및 제2항과는 별도로 矯導所는 개별적으로 시정된 處遇의 必要性 가운데서 어느 하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수형자가 전망있는 保護集團 및 處遇集團 속에 포함될 수 있도록 組織되고 分類되어야 한다.
5. 제145조와는 별도로 교도소의 收容能力은 본조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정해 질 수 있다.

Verordnung über die Vergütungsstufen des Arbeitsentgelts und der Ausbildungsbeihilfe nach dem Strafvollzugsgesetz — Strafvollzugsvergütungsordnung (StVollzVergO) —

Vom 11. Januar 1977 (BGBl. IS. 57; BGBl. III 312-9-1-1)

Auf Grund des § 48 Gesetzes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 Strafvollzugsgesetz (StVollzG) — vom 16. März 1976 (BGBl. I S. 581, 2088), geändert durch Gesetz vom 18. August 1976 (BGBl. I S. 2181), wird im Einvernehmen mit dem Bundesminister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und mit Zustimmung des Bundesrates verordnet:

§ 1 Grundlohn

(1) Der Grundlohn des Arbeitsentgelts (§ 43 Abs. 1 des Strafvollzugsgesetzes) wird nach folgenden Vergütungsstufen festgesetzt:

Vergütungsstufe I = Arbeiten einfacher Art, die keine Vorkenntnisse und nur eine kurze Einweisungszeit erfordern und die nur geringe Anforderungen an die körperliche oder geistige Leistungsfähigkeit oder an die Geschicklichkeit stellen.

Vergütungsstufe II = Arbeiten der Stufe I, die eine Einarbeitungszeit erfordern.

Vergütungsstufe III = Arbeiten, die eine Anlernzeit erfordern und durchschnittliche Anforderungen an die Leistungsfähigkeit und die Geschicklichkeit stellen.

Vergütungsstufe IV = Arbeiten, die die Kenntnisse und Fähigkeiten eines Facharbeiters erfordern oder gleichwertige Kenntnisse und Fähigkeiten voraussetzen.

Vergütungsstufe V = Arbeiten, die über die Anforderungen der Stufe IV hinaus ein besonderes Maß an Können, Einsatz und Verantwortung erfordern.

(2) Der Grundlohn beträgt in der

Vergütungsstufe I	75 vom Hundert,
Vergütungsstufe II	88 vom Hundert,
Vergütungsstufe III	100 vom Hundert,
Vergütungsstufe IV	112 vom Hundert,

行刑法에 의거한 勞賃 및 職業養成期間 중 特別扶養手當의 報酬等級에 관한 規則

1977. 1. 11(BGBl. IS. 57:BGBl. Ⅲ 312-9-1)

1976년 3월 16일의 自由刑 및 自由를 剝奪하는 矯正·保安處分에 관한 法律(行刑法)제48조에 의거하여 1976년 8월18일의 法律(BGBL. IS. 2181)에 의하여 改正하고 聯邦勞動社會部長官과 協議 및 聯邦參議院의 동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조 (基本給) ① 勞賃의 基本給(行刑法 제43조제1항)은 다음의 報酬等級에 의하여 정해진다.

1等級 : 事前知識이 필요없으며 단기간의 作業期間을 요하고 육체적·정신적 作業遂行能力 또는 熟練度에 있어서 별다른 條件을 요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종류의 作業

2等級 : 實習期間을 요하는 1等級의 作業

3等級 : 速成敎育期間을 요하고 作業遂行能力 및 熟練度에 있어서 평균인의 條件을 요하는 作業

4等級 : 專門的 知識 및 能力을 요하거나 또는 동일한 정도의 知識 및 能力이 전제가 되는 作業

5等級 : 4等級의 條件을 초과하여 能力·位置·責任에 있어서 특별한 정도를 요하는 作業

② 基本給은 行刑法 제43조 제1항2호에 의거한 受刑者標準勞賃에 대한 다음의 比率에 달하도록 한다.

1等級 : 75 %

2等級 : 88 %

3等級 : 100 %

4等級 : 112 %

5等級 : 125 %

Vergütungsstufe V 125 vom Hundert
der Eckvergütung nach § 43 Abs. 1 Satz 2 des Strafvollzugsgesetzes.

(3) Der Grundlohn nach Absatz 2 kann unterschritten werden, wenn die Arbeitsleistung den Anforderungen der jeweiligen Vergütungsstufe nicht genügt. Während einer Einarbeitungs-oder Anlernzeit darf der Grundlohn um höchstens 20 vom Hundert verringert werden. § 43 Abs. 2 Satz 2 des Strafvollzugsgesetzes bleibt unberührt.

§ 2 **Zulagen**

(1) Zum Grundlohn können Zulagen gewährt werden.

1. für Arbeiten unter arbeitserschwerenden Umgebungseinflüssen, die das übliche Maß erheblich übersteigen, bis zu fünf vom Hundert des Grundlohnes,
2. für Arbeiten zu ungünstigen Zeiten bis zu fünf vom Hundert des Grundlohnes,
3. für Zeiten, die über die festgesetzte Arbeitszeit hinausgehen, bis zu 25 vom Hundert des Grundlohnes.

(2) Eine Leistungszulage kann im Zeitlohn bis zu 30 vom Hundert, im Leistungslohn bis zu 15 vom Hundert des Grundlohnes gewährt werden, wenn die individuelle Arbeitsleistung dies rechtfertiget. Bei der Bemessung der Leistungszulage können berücksichtigt werden:

1. Im Zeitlohn die Arbeitsmenge, die Arbeitsgüte, der Umgang mit Betriebsmitteln und Arbeitsmaterialien, die Leistungsbereitschaft und keine oder nur geringe Fehlzeiten,
2. im Leistungslohn die Arbeitsgüte sowie der Umgang mit Betriebsmitteln und Arbeitsmaterialien.

§ 3 **Arbeitsentgelt für arbeitstherapeutische Beschäftigung**

Soweit ein Arbeitsentgelt nach § 43 Abs. 3 des Strafvollzugsgesetzes zu zahlen ist, beträgt es in der Regel 75 vom Hundert des Grundlohnes der Vergütungsstufe I.

§ 4 **Ausbildungsbeihilfe**

(1) Die Ausbildungsbeihilfe (§44 Abs. 1 des Strafvollzugsgesetzes) wird vorbehaltlich der Absätze 2 und 3 nach der Vergütungsstufe III gewährt.

(2) Nach der Hälfte der Gesamtdauer der Maßnahme kann die Ausbildungsbeihilfe nach der Vergütungsstufe IV gewährt werden, wenn der Ausbildungsstand des Gefangenen dies rechtfertigt.

(3) Für die Teilnahme an einem Unterricht nach § 38 Abs. 1 Satz 1 des Strafvollzugsgesetzes oder an Maßnahmen der Berufsfindung kann die Ausbildungsbeihilfe nach der Vergütungsstufe II gewährt werden, wenn dies wegen der Kürze oder des Ziels der Maßnahmen gerechtfertigt ist.

(4) Für die Gewährung von besonderen Zulagen gilt § 2 entsprechend.

③ 제2항에 의한 基本給은 作業遂行에 있어 각각의 等級이 요구하는 條件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減額될 수 있다. 實習期間 또는 速成敎育期間 중에는 基本給은 20% 까지 減額될 수 있다. 行刑法 제43조 제2항2문은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조 (手當) ① 基本給에 다음과 같은 手當을 인정할 수 있다.

1. 통상의 정도를 현저히 초과하는 作業上 어려운 環境 여건하에서의 作業에 대한 基本給의 5% 이내의 手當
2. 불리한 時間帶의 作業에 대한 基本給의 5% 이내의 手當
3. 규정된 作業時間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基本給의 25% 이내의 手當

② 개인적인 作業成果가 이를 충족하는 경우 業績手當은 基本給의 30% 이내의 時間給 및 基本給의 15% 이내의 業績給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時間給에는 作業의 量, 作業의 質과, 營業資産 및 作業設備와의 関聯性, 잠재적 作業能力 및 缺損作業時間 정도가 고려된다.
2. 業績給에는 作業의 質과 營業資産 및 作業設備와의 관련성이 고려된다.

제3조 (作業療法的인 勞役에 대한 勞賃) 行刑法 제43조제3항에 의거한 勞賃을 支給하여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等級 基本給의 75%에 달하도록 한다.

제4조 (職業養成期間 중의 特別扶養手當) ① 職業養成期間 중의 特別扶養手當(行刑法 제44조제1항)은 제2항 및 제3항을 條件으로 3等級에 준하여 인정된다.

② 受刑者의 敎育狀態가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措置의 全期間 중 절반이 경과한 후 職業養成期間 중의 特別扶養手當은 4等級에 준하여 인정된다.

③ 行刑法 제38조 제1항1문에 의한 講義 또는 職業紹介計劃에의 참여에 대하여 그러한 措置의 短期性 또는 目的을 이유로 이것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職業養成期間 중의 特別扶養手當은 2等級에 준하여 인정된다.

④ 特別手當의 인정에 대하여는 제2조가 준용된다.

§ 5 Berlin-Klausel

Diese Verordnung gilt nach § 14 des Dritten Überleitungsgesetzes vom 4. Januar 1952 (BGBl. I S. 1) in Verbindung mit § 197 des Strafvollzugsgesetzes auch im Land Berlin.

§ 6 Inkrafttreten

Diese Verordnung tritt am 1. Februar 1977 in Kraft.

제5조 (베를린條項) 이 규정은 行刑法 제197조 및 1952년 1월 4일의 第3經過措置法(BGBL. IS 1)에 의하여 베를린州에서도 그 적용이 있다.

제6조 (施行日) 이 규정은 1977년 2월1일에 效力을 발생한다.

여 백

제3부

스위스

Bundesgesetz über die Leistungen des Bundes für den Straf- und Massnahmenvollzug

vom 5. Oktober 1984

1. Abschnitt: Zweck
2. Abschnitt: Baubeiträge
3. Abschnitt: Betriebsbträge
4. Abschnitt: Beiträge an Modellversuche
5. Abschnitt: Gemeinsame Bestimmungen
6. Abschnitt: Organisation und Verfahren
7. Abschnitt: Inforation, Dokumentation und Statistik
8. Abschnitt: Schlussbestimmungen

Die Bundesversammlung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gestützt auf Artikel 64bis der Bundesverfassung,
nach Einsicht in eine Botschaft des Bundesrates vom 28. September 1981,
beschliesst:

1. Abschnitt: Zweck

Art. 1 Die in diesem Gesetz vorgesehenen Leistungen sollen dazu beitragen:
a. die Anwendung der Vorschriften und Grundsätze des Straf- und Massnahmenvollzugsrechts zu erleichtern;
b. Grundlagen für Neuerungen auf diesem Gebiet bereitzustellen.

2. Abschnitt: Baubeiträge

Art. 2 Geltungsbereich
1. Der Bund gewährt Beiträge an den Neu-, Aus- und Umbau folgender öffen-

刑罰 및 處分의 執行을 위한 聯邦給付에 관한 聯邦法律

(1984. 10. 5 公布)

제1장 目的 (제1조)
제2장 建築分擔金(제2조~제4조)
제3장 經營分擔金(제5조~제7조)
제4장 模型試驗分擔金(제8조~제10조)
제5장 共通規定(제11조~제12조)
제6장 組織 및 節次(제13조~제16조)
제7장 情報提供, 文書 및 統計(제17조~제18)
제8장 經過規定(제19~제21조)

스위스 聯邦議會는 연방헌법 제64조의 2에 근거하고 1981. 9. 28의 聯邦參議院의 報告書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決意한다.

제1장 目 的

제1조 이 법에 규정된 給付는

① 行刑法의 諸規定과 諸原則의 適用을 용이하게 하고,

② 이 분야의 改革을 위한 土臺를 마련하는데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2장 建築分擔金

제2조 (適用範圍) ① 연방은 다음의 共同施設 및 私的施設의 신축, 증축 및 개

tlicher und privater Einrichtungen:

a. Anstalten für den Vollzug von Zuchthaus- und Gefängnisstrafen (Art. 37 StGB):
b. Anstalten und spezialisierte Anstaltsabteilungen für kurze Freiheitsstrafen (Art. 37bis und 39 StGB);
c. Anstalten für sichernde Massnahmen, die einer für den Straf- und Massnahmenvollzug zuständigen Behörde unterstellt sind (Art. 42-44 StGB);
d. Arbeitserziehungsanstalten für junge Erwachsene (Art. 100bis StGB);
e. spezialisierte Abteilungen für strafrechtlich Eingewiesene in Anstalten, die nicht einer für den Straf- und Massnahmenvollzug zuständigen Behörde unterstellt sind (Art. 40, 42-44 und 100bis StGB);
f. spezialisierte Einrichtungen für bedingt oder probeweise aus einer Freiheitsstrafe oder Massnahme Entlassene und für bedingt Verurteilte (Art. 38, 41 und 45 StGB);
g. Heime für Kinder und Jugendliche, in denen mindestens ein Drittel der Aufenthaltstage auf strafrechtlich Eingewiesene entfällt oder die für den Vollzug strafrechtlicher Massnahmen unerlässlich sind (Art. 82 ff. und 89 ff. StGB).

2. Der Bund kann Beiträge gewähren an den Neu-, Aus- und Umbau spezialisierter Einrichtungen für Kinder und Jugendliche, die in ihrem Sozialverhalten erheblich gestört sind, sofern diese Einrichtungen auch strafrechtlich Eingewiesene aufnehmen.

Art. 3 Voraussetzungen

1. Beiträge werden unter den folgenden Voraussetzungen gewährt:

a. Eine kantonale oder interkantonale Planung des Straf- und Massnahmenvollzugs oder der Jugendhilfe weist den Bedarf für die Einrichtung nach;
b. ein Aus- oder Umbau ist Teil einer Gesamtplanung der Einrichtung;
c. die Einrichtung steht Eingewiesenen aus verschiedenen Kantonen offen;
d. die Bauvorhaben bewirken Verbesserungen im Sinne von Artikel 1, die in einem angemessenen Verhältnis zu den finanziellen Aufwendungen stehen;
e. das Betriebskonzept und die Trägerschaft gewährleisten, dass der Zweck der Einrichtung erreicht wird.

2. Sofern nicht ein Kanton Bauherr ist, treten folgende Voraussetzungen hinzu:

a. bei privaten Einrichtungen ist der Träger eine juristische Person mit gemeinnützigem Charakter; einer ihrer Hauptzwecke liegt im Anwendungsbereich dieses Gesetzes;
b. die kantonale Behörde befürwortet das Bauvorhaben;
c. die Finanzierung des Bauvorhabens und des Betriebs der Einrichtung ist gesichert;

축의 分擔金을 지급한다.

1. 重懲役刑 및 輕懲役刑의 집행시설(형법 제37조)
2. 短期自由刑의 집행시설 및 그 特別部局(형법 제37조의 그 및 제39조)
3. 교정당국의 관할아래에 있는 保安處分의 執行施設(형법 제42조 내지 제44조)
4. 靑年勤勞矯正院(형법 제100조의 2)
5. 교정당국의 관할밖의 시설에 있는 刑法上의 被指示處分者를 위한 特別部局(형법 제40조, 제42조 내지 제44조 및 제100조의 2)
6. 自由刑 또는 處分의 條件附免除者 및 조건부 判決받은 자를 위한 特別施設(형법 제38조, 제41조)
7. 형법상의 被指示處分者에 부과된 滯留日의 최소한 3분의 1을 그곳에서 보내거나 형법상의 처분에 불가결한 少年院

② 연방은 社會的 行態가 현저히 破行的인 移動 및 소년에 대비한 特別施設이 형법상의 피지시처분자도 收容할 경우 이들 시설의 신축, 증축 및 개축의 분담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要件) ① 分擔金은 다음의 요건하에서 支給한다.

1. 1개의 州 또는 州間의 行刑計劃이나 少年援助가 시설의 필요성을 명시할 것
2. 施設의 增築 또는 改築은 시설의 全計劃의 일부일 것
3. 시설은 여러 州로부터 오는 被指示處分者에 대하여 개방적일 것
4. 設立企圖는 제1조에서 말하는 改善을 실현하며, 財政上의 支出과 적절한 比例關係에 있을 것
5. 經營計劃 및 이행이 시설의 目的達成을 보증할 것

② 州가 設立州가 아닌 때에는 다음의 요건이 부가된다.

1. 私設費의 경우에 경영자는 公益的 性格을 띤 法人이며 주목적이 이 법률의 적용범위 내에 있을 것
2. 州當局이 設立計劃을 추천할 것
3. 시설의 建築企圖 및 經營을 위한 융자가 확보될 것

d. kantonale Beiträge von mindestens 40 Prozent der anerkannten Baukosten sind gesichert.

Art. 4 Höhe der Beiträge

1. Der Beitrag beläuft sich auf 50 Prozent der anerkannten Baukosten.
2. Er wird entsprechend herabgesetzt, wenn;
a. die Einrichtung nur teilweise Aufgaben nach Artikel 2 erfüllt;
b. ein Baubeitrag aus der Invalidenversicherung gewährt werden kann; Artikel 75 Absatz 2 des Bundesgesetzes über die Invalidenversicherung gilt nicht.
3. Von den Kosten eines jeden Bauvorhabens wird vorweg ein Betrag von 200,000 Franken als nicht beitragsberechtigt abgezogen. Bundesbeiträge von weniger als 50,000 Franken werden nicht ausgerichtet.

3. Abschnitt: Betriebsbeiträge

Art. 5 Geltungsbereich

1. Der Bund gewährt Betriebsbeiträge an besondere erzieherische Aufwendungen öffentlicher und privater gemeinnütziger Einrichtungen, die;
a. junge Erwachsene zur Arbeitserziehung aufnehmen (Art. 100bis StGB);
b. sich verpflichten, Kinder und Jugendliche in Anwendung von Artikel 82 ff. und 89 ff. StGB aufzunehmen, und überwiegend solche oder erziehungsschwierige oder erheblich gefährdete Zöglinge aufzunehmen.
2. Der Bund kann Beiträge gewähren an den Betrieb von Einrichtungen nach Artikel 2 Absatz 2.

Art. 6 Voraussetzungen

1. Der Bundesrat bestimmit in sinngemässer Anwendung von Artikel 3 die Voraussetzungen für die Ausrichtung der Beiträge.
2. Er kann die Gewährung von weitern Voraussetzungen abhängig machen oder mit Auflagen verbinden.

Art. 7 Höhe der Beiträge

1. Der Beitrage beläuft sich auf höchstens 40 Prozent der anerkannten Kosten für das erzieherisch tätige Personal.

4. 승인된 設立費用의 최저한 40％에 관해 州의 分擔金이 확보될 것

제4조 (分擔金의 額数) ① 부담금은 승인된 建築費用의 50％로 한다.

② 분담금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감액된다.

1. 시설이 제2조에 정한 任務를 부분적으로만 遂行하는 경우
2. 건축분담금이 廢疾保險에서 지급될 수 없는 경우, 이때 폐질보험에 관한 연방법률 제75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각 建築計劃의 費用 중에서 200,000 프랑의 금액을 分擔金 受給權이 없는 것으로 하여 미리 공제한다. 연방분담금은 5만 프랑이하로 집행될 수 없다.

제3장 經營分擔金

제5조 (適用範圍) ① 연방은 公共施設 및 私人이 설립한 公益的 施設의 특별한 교육적 이용에 經營分擔金을 지급한다.

1. 勤勞矯正을 위해 청년을 수용하는 施設(행법 제100조의 2)
2. 刑法 제82조 이하 및 제89조 이하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兒童 및 少年의 수용을 義務로 하며, 또 그러한 또는 矯正이 어렵거나 현저히 위험성이 있는 生徒들을 수용하는 것을 주된 의무로 하는 시설

② 연방은 제2조를 제2항에 정한 施設의 運營에 분담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要件) ① 연방參議院은 分擔金의 지급요건을 제3조의 적절한 적용을 통해 규정한다.

② 聯邦參議院은 분담금의 지급에 그밖의 요건을 그 전제로 하거나 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

제7조 (分擔金의 額数) ① 分擔金은 矯正從事者들을 위한 승인된 費用의 최고 40％로 한다.

2. Der Bundesrat bestimmt die beitragsberechtigten Kosten und die Bemessungsgrundsätze für die Beiträge.

3. Artikel 75 Absatz 2 des Bundesgesetzes über die Invalidenversicherung gilt nicht.

4. Abschnitt: Beiträge an Modellversuche

Art. 8 Geltungsbereich

1. Der Bund kann Beiträge gewähren an die Entwicklung und Erprobung neuer Methoden und Konzeptionen;

a. im Straf- und Massnahmenvollzug, einschliesslich Versuche mit Vollzugsformen, die vom Strafgesetzbuch abweichen (Art. 397bis Abs. 4 StGB);

b. für spezialisierte Einrichtungen und Vorkehrungen für Kinder und Jugendliche, die in ihrem Sozialverhalten erheblich gestört sind.

2. Die Beiträge können für eine Versuchsdauer von höchstens fünf Jahren gewährt werden.

3. Beiträge können auch an die Kosten der Auswertung solcher Versuche gewährt werden.

Art. 9 Voraussetzungen

1. Beiträge werden unter folgenden Voraussetzungen gewährt:

a. der Träger, die Organisation und die mit der Durchführung des Versuchs beauftragten Personen bieten Gewähr, dass dieser zielgerichtet durchgeführt und systematisch ausgewertet wird;

b. die Finanzierung ist für den Versuch und die Auswertung gesichert.

2. Der Bundesrat kann den Beitrag von weiteren Voraussetzungen abhängig machen.

Art. 10 Höhe der Beiträge

Der Beitrag beläuft sich auf höchstens 80 Prozent der anerkannten Projektkosten, bei bestehenden Einrichtungen auf höchstens 80 Prozent der projektbedingten Mehrkosten.

5. Abschnitt: Gemeinsame Bestimmungen

Art. 11 Verwendung der Beiträge

Das Bundesamt für Justiz (Bundesamt) prüft, ob die Beitragsvoraussetzungen

② 연방참의원은 分擔金의 支給費用과 분담금의 割當原則을 정한다.

③ 廢疾保險에 관한 聯邦法律 제75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4장 模型試驗分擔金

제8조 (適用範囲) ① 연방은

1. 刑法典의 규정과 상이한 執行方式의 試驗을 포함한 刑 및 處分의 執行과
2. 社會的 行態가 현저히 跛行的(교관적)인 아동 및 소년을 위한 特別施設과 豫防手段의 새로운 方式과 構想의 展開 및 試驗에 분담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분담금은 최고 5년의 시험기간동안 지급될 수 있다.

③ 분담금은 試驗의 許可費用으로도 지급될 수 있다.

제9조 (要件) ① 분담금은 다음의 요건아래에서 지급된다.

1. 經營者, 組織 및 試驗履行을 위탁받은 자가 支給을 요청하고 이들이 目的指向的으로 관철되고 또 체계적으로 허가받을 것
2. 金融이 위 試驗 및 許可를 위해 확보되었을 것.

② 연방참의원은 分擔金의 支給을 기타 요건에 의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分擔金의 額数) 分擔金은 승인된 프로젝트비용의 최고 80%로 하며, 현존 시설의 경우에는 프로젝트상의 비용을 초과한 액수의 최고 80%로 한다.

제5장 共通規定

제11조 (分擔金의 利用) 聯邦法務局은 분담금의 支給要件이 충족되는지 또는 시설이 目的指向的으로 운영되는지 또는 모델시험이 정당하게 시행되었는지

eingehalten werden, die Einrichtung zielgerichtet betrieben oder der Modellversuch richtig durchgeführt wird.

Art. 12 Rückerstattung von Beiträgen

1. Beiträge sind zurückzuerstatten, wenn sie zu Unrecht ausbezahlt worden sind oder wenn der Empfänger sie trotz Mahnung nicht zweckentsprechend verwendet.

2. Stellt eine Emrichtung, für die Baubeiträge ausgerichtet worden sind, innerhalb von 20 Jahren nach der Schlusszahlung ihren Betrieb ein oder wird sie für einen andern Zweck verwendet, so sind für jedes verbleibende Jahr 5 Prozent des Beitrags zurückzuerstatten.

3. Der Anspruch auf Rückerstattung verjährt fünf Jahre nach seiner Entstehung.

6. Abschnitt: Organisation und Verfahren

Art. 13 Beitragsgesuche

1. Beitragsgesuche kantonaler Behörden sind vor Beginn des Baus oder des Modellversuchs mit den erforderlichen Unterlagen dem Bundesamt einzureichen.

2. Andere Beitragsgesuche sind vor Beginn des Baus oder des Modellversuchs mit den erforderlichen Unterlagen der kantonalen Behörde einzureichen. Diese prüft die Gesuche und leitet sie mit ihrer Stellungnahme an das Bundesamt weiter. Gesuche um Beiträge nach Artikel 8 sind direkt dem Bundesamt einzureichen, wenn sie bloss die Entwicklung neuer Konzeptionen bezwecken.

Art. 14 Beitragsverfügung

Das Eidgenössische Justiz- und Polizeidepartement verfügt die Zusicherung, Auszahlung und Rückerstattung von Beiträgen.

Art. 15 Änderung der Voraussetzungen

1. Werden Projekte wesentlich geändert oder erweitert, so ist ein Ergänzungsgesuch zu stellen. Das Ergänzungsgesuch ist nach Artikel 13 einzureichen und zu behandeln.

2. Ein zugesicherter Beitrag kann aufgrund der Schlussabrechnung erhöht werden, wenn während der Bauausführung oder der Durchführung des Versuchs infolge Teuerung oder anderer nicht voraussehbarer Umstände Mehrkosten ent-

여부를 심사한다.

제12조 (分擔金의 償還) ① 분담금이 不法的으로 지급되었거나 수령인이 警告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合目的的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② 建築分擔金이 지급된 시설이 殘金支給 후 20년이내에 그 경영을 중단하였거나 다른 목적으로 분담금을 사용한 때에는 잔여기간에 분담금의 5%를 상환하여야 한다.

③ 償還請求權은 그 성립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완성한다.

제6장 組織 및 節次

제13조 (分擔金의 申請) ① 州當局의 분담금신청서는 建築 또는 模型試驗의 개시전에 필요한 증거물과 함께 聯邦官庁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밖의 分擔金申請書를 건축 또는 모델시험의 개시전에 필요한 證據物과 함께 州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당국은 이 申請書를 심사하고 이에 대한 意見書를 첨부하여 이를 연방관청에 송부한다. 제8조의 의한 신청과 분담금은 이들이 新構想의 단순한 展開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이를 직접 聯邦官庁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分擔金에 관한 措置) 연방 법무경찰부는 분담금의 보증, 지급 및 상환에 관한 조치를 행한다.

제15조 (要件의 變更) ① 프로젝트가 본질적으로 변경 또는 확대되는 때에는 補完申請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보완신청서는 제13조에 의하여 제출되고 또 처리되어야 한다.

② 確約된 分擔金은 建築局 또는 試驗實施 기간중에 物價上昇 기타 예상할 수 없는 사정의 결과로 費用이 초과한 때에는 최종계산에 의해 증액할 수 있다.

standen sind. Ein Ergänzungsgesuch ist nicht erforderlich.

Art. 16 Auszahlung der Beiträge. Vorschüsse

1. Das Bundesamt setzt den endgültigen Beitrag aufgrund der Schlussabrechnung fest und veranlasst die Auszahlung der Beiträge:
   a. für Bauten nach Prüfung der Bauabrechnung und der Abrechnungsbelege sowie nach Zusicherung der kantonalen Beiträge;
   b. für Modellversuche nach Prüfung der periodischen Abrechnungen und der Abrechnungsbelege.
2. Das Bundesamt kann auf Gesuch hin Vorschüsse im Umfang von höchstens 80 Prozent der zugesicherten Beiträge gewähren.

7. Abschnitt: Information, Dokumentation und Statistik

Art. 17 Information und Dokumentation

Das Bundesamt sammelt zur Unterstützung der Anstrengungen, die Bund und Kantone nach Artikel 1 unternehmen, Erfahrungen und Erkenntnisse des In- und Auslandes und informiert darüber die Organe der Kantone und der Einrichtungen sowie die interessierten Organisationen. Es kann auch beratende Aufgaben übernehmen.

Art. 18 Statistik

1. Der Bundesrat veranlasst für die Aufgaben nach Artikel 1 Statistiken über Einrichtungen zum Vollzug von Strafen und Massnahmen, ihre Insassen und andere Personen im Straf- und Massnahmenvollzug. Er kann die Kantone und private Einrichtungen mit der Erhebung der Daten beauftragen und sie verpflichten, in eigener Kompetenz beschaffte statistische Angaben zur Verfügung zu stellen.
2. Die beschafften Personendaten dürfen nur für Statistiken nach Absatz 1 verwendet werden; sie dürfen nicht bekanntgegeben werden.

8. Abschnitt: Schlussbestimmungen

Art. 19 Vollzug

Der Bundesrat vollzieht dieses Gesetz und erlässt die Ausführungsbestimmungen.

이에 補完申請書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제16조 (分擔金의 支給, 先給) ① 연방관청은 最終淸算에 의하여 終局的인 분담금을 확정하고

1. 建築控除와 淸算典據의 심사후 및 州분담금의 확약후에 건축물을 위하여
2. 定期淸算 및 淸算典據의 심사후에 모형의 시험을 위하여 분담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② 연방관청은 確約한 分擔金의 최고 80 % 의 범위내에서 신청에 의하여 先給할 수 있다.

제7장 情報提供, 文書作成 및 統計

제17조 (情報提供 및 文書作成) 연방관청은 聯邦과 州가 제1조에 따라 행하는 諸努力을 원조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經驗과 知識을 수집하고 이에 관하여 州 및 諸施設의 機関 및 이해관계 있는 組織體에 정보를 제공한다. 연방관청은 諮問任務도 맡을 수 있다.

제18조 (統計) ① 연방참의원은 제1조에 정한 임무를 위하여 行刑施設, 그 수용자 및 행형종사자들에 관한 統計를 작성한다. 연방참의원은 州 및 私施設에게 테이타의 檢證을 委任할 수 있으며 이들은 독자의 권한으로 입수한 統計書를 조치할 의무를 진다.

② 入手한 人的資料는 전항의 統計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이를 공개해서 아니된다.

제8장 經過規定

제19조 (執行) 연방참의원은 이 法律을 집행하고 施行規則을 발표한다.

Art. 20 Aufhebung bisherigen Rechts

Das Bundesgesetz vom 6. Oktober 1966 über Bundesbeiträge an Strafvollzugsund Erziehungsanstalten wird aufgehoben.

Art. 21 Übergangsbestimmung

Nach dem bisherigen Recht werden gewährt:

a. Baubeiträge, sofern das Beitragsgesuch vor dem Inkrafttreten des Gesetzes eingereicht worden und der Baubeginn spätestens zweieinhalb Jahre nach Inkrafttreten erfolgt ist;
b. Beiträge and Bildungsstätten bis zum 31. Dezember 1986;
c. Betriebsbeiträge fur Einrichtungen, die im Zeitpunkt des Inkrafttretens beitragsberechtigt sind, bis zum 31. Dezember 1989.

Art. 22 Referendum und Inkrafttreten

1. Dieses Gesetz untersteht dem fakultativen Referendum.
2. Der Bundesrat bestimmt das Inkrafttreten.

Datum des Inkrafttretens: 1. Januar 1987

제20조 (現行 法律의 廢止) 矯正施設에의 연방분담금에 관한 1966년 10월6일의 연방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21조 (經過規定) 다음의 분담금은 종래의 법에 따라 지급한다.

1. 分擔金申淸書가 이 법률이 시행전에 제출되었고 建築開始가 이 법률의 시행 후 늦어도 2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행하여진 때의 건축분담금
2. 1986.12.31일까지의 교정시설에의 분담금
3. 이 법의 시설시에 1989.12.31까지의 분담금의 受取權이 있는 시설에 대한 經營分擔金

제22조 (國民投票 및 施行日) ① 이 법은 選擇的 國民投票의 대상이 된다.

② 시행일은 연방참의원이 정한다.

시행일 : 1987.1.1

Verordnung über die Leistungen des Bundes für den Straf- und Massnahmenvollzug

vom 29. Oktober 1986

1. Abschnitt: Baubeiträge
2. Abschnitt: Betriebsbeiträge
3. Abschnitt: Beiträge an Modellversuche
4. Abschnitt: Bemessung der Beiträge
5. Abschnitt:
Im Sozialverhalten erheblich gestörte Kinder und Jugendliche
6. Abschnitt: Organisation und Verfahren
7. Abschnitt: Schlassbestimmungen

Der Schweizerische Bundesrat,
gestützt auf Artikel 19 des Bundesgesetzes vom 5. Oktober 1984 über die Leistungen des Bundes für den Straf- und Massnahmenvollzug (Gesetz),
verordnet:

1. Abschnitt: Baubeiträge

Art. 1 Baukosten

1. Als anerkannte Baukosten (Art. 4 Abs. 1 Gesetz) gelten die notwendigen Kosten für:

a. Neu-, Aus- oder Umbau von Gebäuden, einschliesslich der betrieblich unerlässlichen Personalunterkünfte;
b. den Erwerb und die Erschliessung von Grundstücken;
c. Vorbereitungs- und Umgebungsarbeiten;
d. Sport- und Freizeitanlagen;
e. die erstmalige Betriebseinrichtung und Ausstattung.

2. Die Baukosten für einen landwirtschaftlichen oder gewerblichen Betrieb sind anrechenbar, soweit er für die Ausbildung oder Beschäftigung der Eingewiesenen unerlässlich ist.

刑罰 및 處分의 執行을 위한 聯邦給付에 관한 命令

1986. 10. 29. 제정

제 1 장 建築分擔金(제 1 조～제 2 조)
제 2 장 經營分擔金(제 3 조～제 5 조)
제 3 장 模型試驗分擔金(제 6 조)
제 4 장 分擔金算定(제 7 조～제 8 조)
제 5 장 社會的 行態가 철저히 跛行的인 兒童 및 少年(제 9 조)
제 6 장 組織 및 節次(제10조～제14조)
제 7 장 經營規定(제15조～제17조)

스위스 聯邦參議院은 刑罰 및 處分의 執行에 관한 연방의 給付에 관한 1984. 10. 5 제정의 연방법률 제19조에 의거 하여 다음사항을 규정한다.

제1장 建築分擔金

제1조 (建築費用) ① 다음사항을 위하여 필수적인 비용은 承認된 建築費用(법 제4조 제1항)으로 간주한다.

1. 經營上 필수불가결의 職員宿所를 포함한 건축물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
2. 토지의 획득 및 개발
3. 준비작업 및 환경작업
4. 운동장 및 휴게실
5. 최초의 경영시설 및 장비

② 農業 또는 實業經營을 위한 건축비용은 위 경영이 被指示處分者의 敎育 및 雇傭에 불가결한 때에 한하여 이를 신청할 수 있다.

3. Baunebenkosten und Kosten für Unterhaltsarbeiten gelten nicht als Baukosten.

4. Im übrigen gelten die Richtlinien des Amtes für Bundesbauten für die Ermittlung der anrechenbaren Kosten bei Bauten, die vom Bund subventioniert werden.

5. Von den anerkannten Baukosten werden vorweg 200,000 Franken abgezogen (Art. 4 Abs. 3 Gesetz).

Art. 2 Nachträgliche Gewährung und Rückerstattung von Beiträgen

1. Der Bund kann Baubeiträge auch nachträglich gewähren, wenn:

a. eine Einrichtung nach einer Zweckänderung ganz oder teilweise im Sinne von Artikel 2 des Gesetzes verwendet wird und der Träger deshalb Baubeiträge nach anderen Bundesgesetzen zurückerstatten muss;

b. die Gründe für eine Herabsetzung (Art. 4 Abs. 2 Gesetz) oder Rückerstattung (Art. 12 Abs. 2 Gesetz) dahinfallen.

2. Der Beitragsempfänger muss Baubeiträge anteilmässig zurückerstatten (Art. 12 Abs. 2 Gesetz), wenn:

a. die Einrichtung teilweise zweckentfremdet wird;

b. ein für die Beitragsberechnung massgeblicher Sachverhalt, insbesondere der Anteil der anerkannten Aufenthaltstage, sich wesentlich geändert hat.

3. Das Eidgenössische Justiz- und Polizeidepartement (Departement) kann verlangen, dass der Empfänger von Baubeiträgen für eine private Einrichtung die Rückerstattungsansprüche des Bundes durch Grundpfandverschreibungen in der Höhe der Beiträge sichert.

2. Abschnitt: Betriebsbeiträge

Art. 3 Voraussetzungen

1. Der Bund gewährt Betriebsbeiträge (Art. 5 Gesetz) an Einrichtungen für Kinder und Jugendliche und an Arbeitserziehungsanstalten (Heime) unter den folgenden Voraussetzungen:

a. Eine kantonale oder interkantonale Planung des Straf- und Massnahmenvollzugs oder der Jugendhilfe weist den Bedarf für das Heim nach;

b. das Heim steht Eingewiesenen aus verschiedenen Kantonen offen;

③ 建築附帶費用과 生計勤勞費用은 건축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그밖에 聯邦建設庁의 方針은 연방에 補助金을 지급하는 建築物에 있어서의 신청 가능한 費用의 調査에 적용된다.

⑤ 승인된 建築費用 중에서 미리 200,000프랑을 공제한다(법 제4조 제3항).

제2조 (分擔金의 追加支給 및 償還) ① 연방은 다음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도 建築分擔金을 지급할 수 없다.

1. 시설이 법 제2조에 정한 목적의 전부 또는 부분적인 변경에 의하여 이용되고 그로 인하여 施設經營者가 다른 聯邦法律에 따라 建築分擔金을 상환하여야 하는 경우
2. 減額(법 제4조, 제2조) 또는 償還(법 제12조 제2항)의 이유가 소멸한 경우

② 分擔金受領者는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분담금을 按分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1. 시설이 부분적으로 목적을 벗어난 때
2. 分擔金算定에 기준이 되는 사태, 특히 승인된 滯在日의 몫이 본질적으로 변경된 때

③ 聯邦法務警察部는 私的 施設의 건축분담금의 受領人이 연방의 償還請求權을 분담금의 액수에 상응하는 土地擔保證書에 의하여 보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經營分擔金

제3조 (要件) ① 연방은 다음의 요건하에서 兒童 및 少年을 위한 시설과 勤勞矯正院 경영분담금(법 제5조)을 지급한다.

1. 1개의 州 또는 州간의 行刑計劃이나 少年援助가 교정시설의 필요성을 명시할 것
2. 矯正施設은 여러 州에서 오는 被指示處分者에 대하여 開放的일 것

c. Trägerschaft, Betriebsorganisation und Betriebskonzept, der Bestand an ausgebildetem Personal sowie die baulichen und betrieblichen Einrichtungen gewährleisten den zweckmässigen und langfristigen Betrieb des Heimes.

2. Private Heime müssen zusätzlich folgende Voraussetzungen erfüllen:

a. Der Träger ist eine juristische Person mit gemeinnützigem Charakter; einer seiner Hauptzwecke liegt in der Führung eines Heimes für Kinder und Jugendliche, die strafrechtlich eingewiesen oder in ihrem Sozialverhalten erheblich gestört sind;

b. der Kanton anerkennt das Heim und leistet, allenfalls zusammen mit anderen Kantonen, einen angemessenen Beitrag an den Betrieb;

c. die Finanzierung des Betriebes ist gesichert.

Art. 4 Höhe der Beiträge

1. Der Beitrag (Art. 7 Abs. 1 Gesetz) beläuft sich auf:

a. 35 Prozent der beitragsberechtigten Kosten für Schulentlassenenheime und Heime, die der Beobachtung und Abklärung von Kindern und Jugendlichen dienen;

b. 30 Prozent für andere Heime.

2. Der Beitrag erhöht sich um 5 Prozent, wenn das Heim für drei Zöglinge mindestens einen Erzieher im Sinne von Artikel 5 Absatz 1 Buchstabe a Ziffern 1 und 2 beschäftigt. Die Anzahl der Zöglinge wird nach der Summe der Aufenthaltstage im Vorjahr berechnet.

3. Das Departement kann weitere Voraussetzungen für die Erhöhung des Beitragssatzes festlegen, wenn dies geeignet ist, strukturelle Lücken in der Heimerziehung zu schliessen, insbesondere die Aufnahme bestimmter Gruppen von Eingewiesenen zu fördern oder besondere Programme in den Bereichen Erziehung, Schulung, Berufsausbildung und Betreuung zu unterstützen.

Art. 5 Beitragsberechtigte Kosten

1. Beitragsberechtigte Kosten (Art. 7 Abs. 2 Gesetz) sind Besoldungen, andere Entgelte, Sozialleistungen und Arbeitgeberbeiträge des vorangehenden Kalenderjahres für:

a. erzieherisch tätige Mitarbeiter, die

1. eine Ausbildung in Heimerziehung abgeschlossen haben, die ein Praktikum von mindestens sechs Monaten in einem Heim einschliesst;

2. eine andere für ihre Aufgabe im Heim geeignete Ausbildung abgeschlossen haben und über mindestens ein Jahr Berufserfahrung in einem Heim verfügen;

3. über mindestens drei Jahre Berufserfahrung in einem Heim verfügen und eine ihrer Aufgabe entsprechende Zusatzausbildung nachweisen können oder

3. 遂行, 經營組織, 경영계획, 피교육자의 現人員 및 건축물과 경영설비가 위 시설의 合目的이고 장기간의 經營을 保證할 것

② 私設費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하여야 한다.

1. 경영자는 公益的 性格을 띤 法人이어야 하며, 그 주목적이 아동 및 소년, 형법상의 被指示處分者 또는 그 社會的 行態가 현저하게 攪亂的인 자를 위한 矯正施設의 운영에 있을 것
2. 州가 矯正施設을 承認하고 필요한 때에는 경영분담금을 지급할 것
3. 경영을 위한 융자가 확보될 것

제4조 (分擔金의 額数) ① 분담금(법 제7조 제1조)은

1. 學業卒業院 및 少年觀察敎化院을 위한 분담금 受給權者의 비용의 35%
2. 기타 敎化院을 위한 비용의 30%로 한다.

② 분담금은 3인의 生徒들을 위한 敎化院에 제5조 제1항 a의 1호 및 2호에서 말하는 敎師를 교육한 때에는 5%를 증액한다. 생도의 숫자는 전년도의 滯在日의 會計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연방 법무경찰부는 院內敎育에 있어서의 構造的 缺陷을 보정하고, 특히 被指示 處分者의 일정집단의 收容을 장려하거나 敎育, 訓育, 職業敎育 및 保護의 分野에서의 개개의 프로그램을 援助하는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담금의 증액을 위한 그밖의 요건을 확정할 수 있다.

제5조 (分擔金의 支給費用) ① 分擔金의 支給費用(법 제7조 제2항)은 다음의 자에 대한 전년도의 給料, 기타 報酬, 社會的 給付 및 雇傭主分擔金이다.

1. a. 최소한 6월의 院內 實習을 포함하는 원내교육에서의 수양이 완료되었거나
   b. 기타 院內에서의 그들의 任務에 적합한 敎養이 완료되었고 최소한 1년의 원내에서의 職務經驗이 있었거나
   c. 최소한 3년 원내에서의 職務經驗을 하였고 또 그들의 任務에 상응하는 補充敎育을 증명할 수 있거나
   d. 직무에 附隨하거나 實務者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정한 교육을 이수한

4. berufsbegleitend oder als Praktikanten eine Ausbildung nach Ziffer 1 oder 2 absolvieren;

b. in der schulischen oder beruflichen Ausbildung tätige Mitarbeiter, die
1. eine ihrer Aufgabe entsprechende Ausbildung als Lehrer, Werklehrer oder Lehrmeister abgeschlossen haben;
2. eine ihrer Aufgabe entsprechende Berufsausbildung abgeschlossen haben und über mindestens drei Jahre Berufserfahrung verfügen oder
3. als Lehrlingsausbildner kantonal anerkannt sind;

c. Mitarbeiter, die besondere Abklärungs-, Beratungs-, Betreuungs- und Behandlungsaufgaben wahrnehmen sowie Praxisberater und Supervisoren, wenn sie
1. eine ihrer Aufgabe entsprechende Ausbildung abgeschlossen haben oder
2. eine Grundausbildung in Heimerziehung, Pädagogik oder Sozialarbeit sowie eine ihrer Aufgabe im Heim entsprechende Weiterbildung abgeschlossen haben.

2. Der Bund leistet Betriebsbeiträge nur für Mitarbeiter, die im Rahmen ihrer Tätigkeit im Heim überwiegend Aufgaben nach Absatz 1 wahrnehmen.

3. Einkaufssummen für Personalvorsorgeeinrichtungen gelten nicht als beitragsberechtigte Kosten.

3. Abschnitt: Beiträge an Modellversuche

Art. 6

1. Der Bund Beiträge an Modellversuche (Art. 8 Gesetz) insbesondere gewähren, wenn die Versuche zum Ziel haben, wesentliche und zur allgemeinen Anwendung bestimmte Grundlagen für Neuerungen im Straf- und Massnahmenvollzug sowie in der Jugendhilfe bereitzustellen.

2. Das Departement legt die anerkannten Projektkosten im Einzelfall fest.

3. Es knüpft an die Beiträge Bedingungen und Auflagen, die eine zweckmässige Verwendung und eine zuverlässige Auswertung der Versuche sichern.

4. Abschnitt: Bemessung der Beiträge

Art. 7 Baubeiträge an Anstalten für Erwachsene

Die Baubeiträge an Anstalten für Erwachsene berechnen sich nach dem Anteil

矯正活動의 공동종사자

2. a. 그들의 임무에 상응하는 敎師, 匠人으로서의 교육을 완료하였거나
   b. 그들의 임무에 상응하는 職業敎育을 履修하였고 또한 최소한 3년의 직무경험을 하였거나
   c. 州의 徒弟敎育者로서 승인받은 學校敎育 또는 職業敎育의 공동종사자
3. a. 그들의 임무에 상응하는 職業敎育을 완료하였거나
   b. 病院矯正, 敎育學 또는 사회근로에 있어서의 基本敎養 및 그들의 院內任務에 상응하는 기타 교육을 완료한 자들로서 敎化, 保護 및 使役任務의 공동종사자 및 실무조사자와 감독자

② 연방은 院內活動의 범위 내에서 주로 제1항에 정한 임무를 행하는 공동종사자에 대하여 經營分擔金을 지급한다.

③ 職員保護施設의 구입총액은 분담금지급 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장 模型試驗分擔金

제6조 ① 연방은 그 試驗이 刑罰 및 處分의 執行과 소년원조의 改革을 위하여 본질적이고 또 일반적인 적용을 위한 일정한 基礎提供을 목적으로 하는 模型시험(법 제18조에 특히 분담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당국은 개별적인 경우의 승인된 프로젝트비용을 확정한다.

③ 위 試驗의 合目的的 使用과 확실한 許可를 보증하는 條件과 負擔을 분담금에 부과한다.

제4장 分擔金 算定

제7조 (成人用 施設分擔金) 成人用 시설을 위한 建築分擔金은 형법상의 被指示處分者, 條件附 判決받은 자 및 조건부 석방자가 滯在하여야 할 日数에 따

der Aufenthaltstage, die auf strafrechtlich Eingewiesene, bedingt Verurteilte und bedingt oder probeweise Entlassene entfallen (Art. 4 Abs. 2 Bst. a Gesetz).

Art. 8 Bau- und Betriebsbeiträge an Heime

1. Die Bau- und Betriebsbeiträge an Heime berechnen sich nach dem Anteil der Aufenthaltstage, die auf strafrechtlich eingewiesene oder im Sozialverhalten gestörte Personen entfallen (Art. 4 Abs. 2 und Art. 7 Abs. 2 Gesetz).

2. Bei Heimen für Kinder und Jugendliche werden nur Personen berücksichtigt, die mehr als 7, aber noch nicht 25 Jahre alt sind, und bei Arbeitserziehungsanstalten nur Personen, die mehr als 17, aber noch nicht 30 Jahre alt sind.

3. Für die Beitragsberechnung fallen Personen ausser Betracht, deren Verhaltensstörungen zu Bau- und Betriebsbeiträgen der Invalidenversicherung berechtigen oder für die Tarifvereinbarungen mit der Invalidenversicherung gelten.

4. Kinder und Jugendliche, die weder strafrechtlich eingewiesen noch in ihrem Sozialverhalten erheblich gestört sind, werden mitgezählt, wenn ihr Anteil weniger als 10 Prozent der Aufenthaltstage aller Kinder und Jugendlichen beträgt, die nicht unter Absatz 3 fallen.

5. Erreichen die massgeblichen Aufenthaltstage nicht 10 Prozent der Aufenthaltstage aller betreuten Personen, so wird kein Beitrag ausgerichtet.

6. Für die Berechnung der Betriebsbeiträge sind die Aufenthaltstage des vorangehenden Kalenderjahres massgeblich.

5. Abschnitt: Im Sozialverhalten erheblich gestörte Kinder und Jugendliche

Art. 9

1. Als in ihrem Sozialverhalten erheblich gestört, erziehungsschwierig oder erheblich gefährdet (Art. 2 Abs. 2 und Art. 5 Gesetz) gelten Kinder und Jugendliche:

a. die nach Artikel 310 in Verbindung mit Artikel 314*a* oder nach Artikel 405*a* des Schweizerischen Zivilgesetzbuches eingewiesen werden;
b. die von den Eltern zu einer längerfristigen Betreuung in ein Heim eingewiesen werden, vorausgesetzt dass ein Fachgutachten die Einweisung empfiehlt und eine in der Jugendhilfe tätige Behörde zugestimmt hat oder.
c. deren Verhaltensstörung eine stationäre Abklärung erfordert.

라 산정된다(법 제4조 제2항 a 호).

제8조 (矯正院의 建築·經營分擔金) ① 矯正院의 建築 및 經營分擔金은 형법상의 被指示處分者 또는 社會的 行態가 현저히 교란적(파행적)인 자가 滯在하여야 할 일수에 따라 산정된다(법 제4조 제2항 및 제7조 제2항).

② 少年院의 경우에는 7세 이상 25세 미만의 자만을, 勤勞矯正院의 경우에는 17세 이상 30세미만의 자만이 고려된다.

③ 分擔金算定에 있어서 그 行態偏向이 廢疾保險의 건축·경영분담금을 정당화하는 자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④ 형법상의 指示處分을 받지도 아니하였고, 또 그 社會的 行態가 현저히 파행적이지도 아니한 아동 및 소년의 경우에 그들의 滯在日数가 제3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모든 아동 및 소년의 체재일수의 10% 이하인 때에는 함께 계산된다.

⑤ 標準的인 滯在日이 모든 被保護者의 체재일의 10%에 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어떠한 분담금도 지급될 수 없다.

⑥ 경영분담금의 산정에는 전년도의 체재일이 기준이 된다.

제5장 社會的 行態가 현저히 跛行的인 兒童 및 少年

제9조 ① 1. 스위스 民法典 제314 조 a 와 함께 제310조에 의해서 또는 제405조 a에 의하여 指示處分을 받았거나

2. 專門家의 鑑定이 指示를 권유하고 또한 少年援助를 담당하는 관청의 동의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兩親에 의하여 장기간의 院內保護가 지시되었거나

3. 그 행위의 跛行性이 영속적인 敎化를 필요로 하는 아동 및 소년은 그 社會的 行態가 현저히 跛行的이거나 矯正이 어려운 또는 현저히 위험성이 있는(법 제2조제2항 및 제5조) 자로 본다.

2. Gleichgestellt sind Kinder und Jugendliche, die aufgrund von Artikel 8 des Bundesgesetzes über die Invalidenversicherung infolge von Verhaltensstörungen eingewiese werden.

6. Abschnitt: Organisation und Verfahren

Art. 10 Anerkennung von Heimen

1. Bau- und Betriebsbeiträge werden nur an Heime ausgerichtet, die das Departement als beitragsberechtigt anerkennt (Anerkennungsverfügung).

2. Die Beitragsberechtigung für Betriebsbeiträge beginnt in der Regel mit dem Monat der Anerkennung und endet mit der Betriebseinstellung oder dem Widerruf der Anerkennung.

3. Das Department knüpft and die Anerkennung die Bedingungen und Auflagen, die den zweckmässigen Betrieb des Heimes sichern.

4. In der Anerkennungsverfügung hält das Departement den Anteil der im Heim betreuten Kinder und Jugendlichen fest, die weder strafrechtlich eingewiesen noch in ihrem Sozialverhalten erheblich gestört sind. Dieser Anteil wird jeweils für fünf Jahre festgelegt.

5. Das Heim teilt jede Änderung in den tatsächlichen oder rechtlichen Verhältnissen, die für die Anerkennung massgeblich waren, dem Bundesamt für Justiz (Bundesamt) unverzüglich schriftlich mit.

6. Das Departement passt die Anerkennungsverfügung an, wenn sich die Verhältnisse wesentlich geändert haben. Es widerruft die Anerkennung, wenn die Beitragsvoraussetzungen nicht mehr erfüllt sind oder der Empfänger Bedingungen oder Auflagen trotz Mahnung nicht einhält. Es kann die Anerkennung entziehen, wenn der Empfänger Beiträge durch Vorspiegelung oder Verheimlichung von Tatsachen erwirkt hat.

7. Die Anerkennung fällt dahin, wenn während dreier aufeinanderfolgender Jahre der Mindestanteil der Aufenthaltstage (Art. 8 Abs. 5) nicht erreicht worden ist.

Art. 11 Einreichung der Gesuche, Anmeldung von Bauprojekten

1. Gesuche um Baubeiträge sind spätestens sechs Monate vor Baubeginn dem Bundesamt einzureichen. Übersteigen die voraussichtlichen Baukosten 2 Millionen Franken, so muss der Gesuchsteller das Vorhaben vor Erteilung eines Projektierungsauftrages dem Bundesamt anmelden sowie die Grundkonzeption und das Raumprogramm mit dem Bundesamt bereinigen.

② 廢疾保險에 관한 연방법률 제8조에 의하여 지시받은 아동 및 소년은 행위의 跛行性 때문에 지시받은 아동 및 소년과 동일시된다.

제6장 組織 및 節次

제10조 (矯正院의 承認) ① 建築 및 經營分擔金은 당국이 분담금의 受給權이 있다고 승인한(승인처분) 교정원에만 지급된다.

② 운영분담금의 受給權은 원칙적으로 승인한 달에 개시하여 運營中斷 또는 承認의 撤回가 있은 때에 소멸한다.

③ 연방 法務警察部는 矯正院의 합목적적 운영을 保證하는 條件과 負擔을 위 승인에 부과한다.

④ 연방법무경찰부는 刑法上의 指示를 받지도 또한 그 社會的 行態가 현저히 파행적이 아닌 한 院內保護를 받은 아동 및 소년의 몫을 위 承認處分에 포함시킨다.

⑤ 위 矯正院은 承認의 기준이 된 事實上 또는 法律上의 상태의 모든 변경사항을 연방법무국에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한다.

⑥ 연방법무경찰부는 사정이 本質的으로 변경된 때에는 承認處分을 조정한다. 分擔金의 支給要件이 충족되지 아니하거나 受領人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부과된 條件이나 負擔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승인을 철회한다. 수령인이 사실을 欺罔 또는 隱蔽하여 분담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⑦ 위 승인은 3년 연속하여 滯在日의 최소한의 몫(제8조 제5항)이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철회한다.

제11조 (申請書 및 建築計劃書의 提出) ① 建築分擔金의 신청서는 늦어도 건축개시 6월내에 연방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의 豫想費用이 2백만 프랑이나 초과하는 때에는 申請者는 프로젝트의 委託前에 그 計劃書를 연방관청에 신고하고 基本構想과 空間計劃을 연방관청과 함께 수정하여야 한다.

2. Die übrigen Gesuche sind ebenfalls dem Bundesamt einzureichen, und zwar für:

a. die Anerkennung von Heimen bis zum 1. März oder 1. September;

b. Betriebsbeiträge bis zum 1. Juni;

c. Beiträge an Modellversuche bis zum 1. März oder 1. September.

3. Private Einrichtungen müssen ihre Gesuche oder die Anmeldung von Bauvorhaben mit den erforderlichen Unterlagen der zuständigen kantonalen Behörde einreichen; ausgenommen sind Gesuche um Beiträge an die Entwicklung neuer Konzeptionen (Art. 13 Abs. 2 Gesetz). Die kantonale Behörde prüft die Gesuche oder Vorhaben und leitet sie mit ihrer Stellungnahme an das Bundesamt weiter.

4. Das Bundesamt räumt in diesen Fällen den kantonalen Behörden die Möglichkeit ein, an den Verhandlungen über das Gesuch teilzunehmen und bringt ihnen entsprechende Korrespondenzen zur Kenntnis.

Art. 12 Teilzusicherung von Baubeiträgen

Reichen die jährlichen Kredite für die Zusicherung von Baubeiträgen nicht aus, so kann das Departement die Zusicherung von Baubeiträgen auf mehrere Jahre verteilen.

Art. 13 Auszahlung der Betriebsbeiträge; Vorschüsse

1. Die Betriebsbeiträge werden in der Regel bis zum 31. Oktober des Beitragsjahres ausbezahlt.

2. Das Bundesamt kann auf Gesuch hin Vorschüsse von höchstens 80 Prozent des im Vorjah ausbezahlten Beitrages leisten.

Art. 14 Mitwirkung der Beitragsempfänger

1. Die Beitragsempfänger weisen die Bundesbeiträge in der Bilanz und Betriebsrechnung der Einrichtung jährlich gesondert aus (Art. 11 Gesetz).

2. Sie erteilen dem Bundesamt alle Auskünfte, die für die Beitragsgewährung von Bedeutung sind; sie gewähren auf Verlangen Einblick in die Bücher, Belege und anderen Dokumente und geben diese heraus.

3. Das Bundesamt kann Inspektionen vornehmen oder die zuständige kantonale Behörde damit beauftragen.

② 기타의 申請書도 연방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1. 矯正院 承認申請書는 3월1일 또는 9월1일까지
2. 경영분담금 신청서는 6월 1일까지
3. 模型試驗 분담금은 3월 1일 또는 9월 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私設費의 건축분담신청서 또는 건축계획의 신청은 필요한 證據物과 함께 관할 州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새로운 構想의 展開에 대한 분담금의 신청서는 제외된다(법 제13조 제2항). 州당국은 申請書 또는 計劃書를 심사하고 이에 意見書를 첨부하여 연방관청에 이를 송부한다.

④ 위의 경우에 연방관청은 申請書에 대한 審理에 당국이 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認容하고 그에 알맞은 서한을 통해 이를 통지한다.

제12조 (建築分擔金의 分割保證) 建築分擔金의 보증을 위한 年間信用이 족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국은 건축분담금의 保證을 다년간으로 分割할 수 있다.

제13조 (經營分擔金의 支給, 先拂) ① 經營分擔金은 원칙적으로 경영제도의 10월31일까지 지급한다.

② 연방관청은 신청에 의하여 전년도에 지급된 분담금의 최고 80%를 先拂할 수 있다.

제14조 (分擔金受領人의 協力) ① 분담금의 受領人은 매년 별도로 시설의 貸借對照表上에 연방분담금을 명시한다(법 제11조).

② 위 수령인은 分擔金支給을 위하여 중요한 모든 情報를 연방관청에 알려야 한다. 수령인은 요구가 있으면 책, 證據物 기타 文書들을 열람하게 하고 또 이들을 인도한다.

③ 연방관청은 이들을 檢査하거나 관할 州당국에 위임할 수 있다.

7. Abschnitt: Schlussbestimmungen

Art. 15 Aufhebung bisherigen Rechts

Es werden aufgehoben:

a. die Verordnung vom 14. Februar 1973 über Beiträge an Strafvollzugs- und Erziehungsanstalten;

b. die Verordnung des Eidgenössischen Justiz- und Polizeidepartementes vom 24. Oktober 1984 über Beiträge an Strafvollzugs- und Erziehungsanstalten.

Art. 16 Übergangsbestimmungen

1. Das Verfahren für die Ausrichtung von Betriebsbeiträgen an Heime, für die bis zum 31. Dezember 1989 Beiträge nach dem früheren Recht gewährt werden (Art. 21 Bst. c Gesetz), richtet sich nach dem neuen Recht. Die Beitragsgesuche sind jedoch wie bisher über die kantonalen Verbindungsstellen einzureichen, wenn nicht der Kanton die Zuständigkeit im Sinne von Artikel 11 Absatz 3 neu regelt.

2. Die kantonalen oder interkantonalen Planungen (Art. 3 Abs. 1 Bst. a) für Heime, die nach dem 31. Dezember 1989 Betriebsbeiträge beanspruchen, sind bis zum 31. Dezember 1988 dem Bundesamt einzureichen.

Art. 17 Inkrafttreten

Diese Verordnung tritt am 1. Januar 1987 in Kraft.

제7장 經營規定

제15조 (現行法의 廢止)

1. 矯正施設에의 分擔金에 관한 1973. 2. 14의 명령
2. 교정시설에의 분담금에 관한 1984. 10. 24의 스위스 연방 법무경찰부의 명령은 폐지한다.

제16조 (經過規定) ① 矯正院의 經營分擔金의 支給節次는 신법에 따른다. 단 1989. 12. 31까지이 분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법에 따라 지급한다(법 제21조(호). 분담금신청서는 州가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管轄權을 새로이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과 같이 州聯合庁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② 1989. 12. 31이후에 경영분담금을 청구하는 家屋에 대한 州 또는 州間의 계획서 제3조 제1항 a호)은 1988. 12. 31까지 연방관청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17조 이 命令은 1987. 1. 1부터 시행한다.

Konkordat über die Kosten des Strafvollzugs

Vom Bundesrat genehmigt am 23. Juni 1944
Datum des Inkrafttretens: 1. Juli 1944

Erster Teil: Allgemeine Grundsätze
I. Kostentragung bei Freiheitsstrafen
II. Kostenvertillung bei Massnahmen
Zweiter Teil: Ermittlungs-und Berechnungsgrundsätze
Dritter Teil: Verfahren und Handhabung des Konkordates
I. Urteil, Vollzug der Massnahmen und Kostenabrechnung
II. Handhabung des Konkordates
Vierter Teil: Schlussbestimmungen

In Ausführung der Artikel 368, 373 und 374 des Schweizerischen Strafgesetzbuches vereinbaren die dem vorliegenden Konkordat beigetretenen Kantone in bezug auf die Tragung der Vollzugskosten für Freiheitsstrafen und Massnahmen, die auf Grund des Schweizerischen Strafgesetzbuches ausgesprochen werden, folgende Regelung:

Erster Teil: Allgemeine Grundsätze

I. Kostentragung bei Freiheitsstrafen

Art. 1

1. Als Strafen im Sinne dieses Konkordates gelten die auf Grund der Artikel 35, 36 und 39 sowie der Artikel 87 und 95 des Schweizerischen Strafgesetzbuches ausgesprochenen Freiheitsstrafen.

2. Diese Strafen werden nach Artikel 374 des Schweizerischen Strafgesetzbuches durch den Kanton vollzogen, dessen Behörde das Urteil gefällt hat. Vorbehalten bleibt die vertragliche Unterbringung des Verurteilten in der Anstalt eines andern Kantons (Pensionärsystem).

行刑費用에 관한 政教條約

(1944. 6. 23.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받음 시행일 : 1944. 7. 1.)

제1장 總 則
제1절 自由刑執行의 費用負擔(제1조～제2조)
제2절 處分執行의 費用負擔(제3조～제7조)
제2장 調査 및 算定原則(제8조～제11조)
제3장 條約의 節次後 運營
제1절 判決, 處分의 執行 및 費用減額(제12조～제20조)
제2절 條約의 運營(제21조～제25조)
제4장 終結規定(제26조～제27조)

이 政教條約에 가입한 諸州는 스위스 州法典 제368조, 제373조 및 제374조를 집행함에 있어 스위스 형법전에 규정한 自由刑 및 處分의 執行費用의 부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장 總 則

제1절 自由刑執行의 費用負擔

제1조 ① 제35조, 제36조와 제39조와 제87조와 제95조에 규정한 自由刑은 이 條約에서 말하는 형벌로 본다.

② 위 형벌은 스위스 형법 제374조에 따라 그 당국이 判決을 선고한 州가 집행한다. 有罪宣告를 받은 자의 他州에의 條約上의 강제수용은 유보한다.

Art. 2

Jeder Kanton trägt die Vollzugskosten der von seinen Behörden ausgesprochenen Freiheitsstrafen selbst, ohne Rücksicht auf Heimatangehörigkeit und Wohnort des Verurteilten. Es steht ihm, andere Vereinbarung vorbehalten, kein Rückforderungsrecht gegenüber dem Heimat- und dem Wohnkanton zu.

II. Kostenverteilung bei Massnahmen

Art. 3

Als Massnahmen im Sinne dieses Konkordates gelten die Verwahrung, Behandlung und Versorgung Unzurechnungsfähiger und vermindert Zurechnungsfähiger (Art. 14 und 15 StGB), die sichernden Massnahmen (Art. 42-45 StGB), die Versorgung von Kindern und Jugendlichen in einer Erziehungsanstalt oder in einer Familie, die besondere Behandlung von Kindern und Jugendlichen und die nachträgliche Versetzung eines Jugendlichen in eine Strafanstalt (Art. 84, 85, 91, 92 und 93 Abs. 2 StGB).

Art. 4

1. Jede Massnahme wird durch den Kanton vollzogen, dessen Behörde sie angeordnet hat (Urteilskanton).

2. Der Heimatkanton und im Falle der Beitragspflicht des Wohnkantons auch dieser haben jedoch das Recht, den Vollzug der Massnahme selbst zu übernehmen. Wenn beide Kantone die Übernahme begehren, so hat der Kanton den Vorzug, der den höhern Beitrag zu leisten hat, und bei gleicher Beteiligung der Heimatkanton.

Art. 5

Die Kosten der Massnahmen gegenüber Schweizerbürgern werden wie folgt unter den Urteils-, den Heimat- und den Wohnkanton verteilt:

1) Der Urteilskanton trägt die Kosten der Massnahmen für die Dauer der ausgesprochenen, jedoch durch die Massnahme ersetzten oder aufgeschobenen Strafe allein (Art. 14 Abs. 2, 15 Abs. 2 und 42-45 StGB). Für Massnahmen gegen Unzurechnungsfähige (Art. 14 und 15 StGB) sowie für Behandlung und Versorgung von Kindern und Jugendlichen (Art. 84, 85, 91, 92 und 93 Abs. 2 StGB) trägt der Urteilskanton keine Kosten.
2) Soweit die Kosten nicht gemäss Ziffer 1 vom Urteilskanton zu tragen sind, haben der Heimat- und der Wohnkanton dafür gemeinsam aufzukommen. Der Anteil dieser Kantone bestimmt sich nach der Wohndauer, die der zu

제2조 각 州는 有罪宣告 받은 자의 州籍 및 居所에 관계없이 당해 州의 당국이 선고한 自由刑의 執行費用을 부담한다. 위 주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州籍地의 州 및 居所地의 주에 대한 費用償還請求權을 갖지 아니한다.

제2절 處分執行의 費用分擔

제3조 責任無能力者 및 限定責任能力者의 監護, 處置, 및 援護 (형법제14조 및 제15조), 保安處分(형법 제42조 내지 제45조, 아동 및 소년의 矯正院 또는 家庭에서의 保護, 아동 및 소년의 特別處遇 및 교도소에의 소년의 轉置(형법 제84조, 제85조, 제91조, 제92조, 및 제93조 제2항)는 이 조약에 말하는 처분으로 본다.

제4조 ① 모든 處分은 그 당국이 이를 命令한 州가 집행한다(判決州).

② 州籍地州 및 居住州가 분담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州도 처분 자체의 執行을 引受할 권리를 가진다. 위 兩州가 인도를 희망하는 때에는 보다 고액의 分擔金을 지급한 州가 집행을 하며, 동일한 분담금으로 참여한 때에는 州籍地州가 집행한다.

제5조 스위스 國民에 대한 處分의 執行費用은 判決地州, 州籍地州 및 居州地 중에서 다음과 같이 분담한다.

① 판결지주는 선고는 되었으나 처분으로 代替되었거나 유예된 형(형법 제14조 제2항, 제15조 제2항 및 제42조 내지 제45조의 기간동안 처분의 執行費用을 부담한다. 責任無能力者에 대한 처분(행법 제14조 및 제15조) 및 아동 및 소년의 處置 및 援護(형법 제84조, 제85조, 제91조, 제92조 및 제93조 제2항)에 대하여는 判決州는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제1호에 따라 判決州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州籍地州 및 居住地州가 공동으로 이를 부담하여야 하다. 이들 州에 할당되는 몫은 거주

Versorgende im Wohnkanton aufweist, wie folgt:

a. Bei einer Wohndauer unter 4 Jahren trägt der Heimatkanton die Konsten allein.
b. Bei einer Wohndauer von 4 bis 10 Jahren trägt der Wohnkanton einen Viertel der Kosten.
c. Bei einer Wohndauer von 10 bis 20 Jahren trägt der Wohnkanton die Hälfte der Kosten.
d. Bei einer Wohndauer von über 20 Jahren trägt der Wohnkanton drei Viertel der Kosten.

Der Wohnkanton ist jedoch nicht beitragspflichtig, wenn er dem Verurteilten infolge des zu vollziehenden Strafurteils oder wegen Unterstützungsbedürftigkeit gemäss Artikel 45 der Bundesverfassung die Niederlassung entzogen hat.

Bei Verwahrungen fällt die Beitragspflicht des Wohnkantons für Verurteilte, deren Wohndauer 10 Jahre nicht erreicht, nach 2 Jahren, für Verurteilte, deren Wohndauer 20 Jahre nicht erreicht, nach 5 Jahren und für Verurteilte mit längerer Wohndauer nach 10 Jahren dahin.

3) Ein Kanton, der in mehreren Eigenschaften am Vollzug beteiligt ist, hat in jeder derselben als Urteils-, Heimat- oder Wohnkanton an die Vollzugskosten beizutragen.

Art. 6

1. Muss im Anschluss an eine Massnahme nachträglich die aufgeschobene Strafe ganz oder teilweise vollzogen werden, so geschieht dies ordentlicherweise im Urteilskanton, auch wenn der Heimat- oder der Wohnkanton den Vollzug der Massnahme übernommen hatte. Die beteiligten Kantone können jedoch im Einzelfall durch Vereinbarung eine andere Regelung treffen.

2. Die Kosten des nachträglichen Strafvollzuges werden in gleicher Weise unter die beteiligten Kantone verteilt, wie wenn die Massnahme fortgesetzt würde.

Art. 7

Die Kosten der gegen Ausländer ausgesprochenen Massnahmen trägt, unter Vorbehalt abweichender staatsvertraglicher Vereinbarungen, der Urteilskanton.

지주에 있는 援護對象의 居住期間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거주기간이 4년미만인 때에는 州籍地州만이 비용을 부담한다.
2. 거주기간이 4년이상 10년이하인 때에는 居住地州가 비용의 4분의 1을 부담한다.
3. 거주기간이 10년이상 20년이하인 때에는 거주지주가 비용의 반년을 부담한다.
4. 거주기간이 20년이상인 때에는 거주지주가 비용의 4분의 3을 부담한다.

그러나 居住地主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同州가 刑事判決의 집행을 위하여 연방헌법 제45조에 의한 扶助의 필요성 때문에 거주지를 박탈한 경우에는 分擔金 支給義務를 지지 아니한다.

교도소의 경우에 居州地州의 分擔金支給義務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거주기간이 10년미만인 때에는 2년, 20년미만인 때에는 5년, 그리고 20년이상인 때에는 10년간 진다.

③ 다수의 資格으로 처분의 집행에 관여한 州는 각각의 동일한 경우에 判決地州, 州籍地州 또는 居住地州로서 집행비용을 분담한다.

제6조 ① 處分과 관련하여 사후에 猶豫된 형이 전부 또는 일부 집행되어야 할 때에는 이 형은 州籍地州 또는 居住地州가 처분의 집행을 인수한 경우에도 判決地州에서 통상의 방법으로 집행한다. 그러나 관련되는 州는 개별적인 경우에 協定을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刑의 事後執行의 비용은 處分의 執行이 계속될 때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관련 州 중에서 분담한다.

제7조 외국인에 대하여 宣告된 處分의 집행비용은 국가간 條約에 다른 約定이 없는 한 判決州가 부담한다.

Zweiter Teil: Ermittlungs- und Berechnungsgrundsätze

Art. 8

1. Als Heimatkanton ist der Kanton beitragspflichtig, dessen Bürger der Verurteilte zur Zeit der Rechtskraft des Urteils ist.

2. Ist der Verurteilte Bürger mehrerer Kantone, so bestimmt sich der Heimatkanton nach Artikel 22 des Schweizerischen Zivilgesetzbuches.

Art. 9

1. Als Wohnkanton ist der Kanton beitragspflichtig, in welchem der Verurteilte sich zur Zeit der Rechtskraft des Urteils seit mindestens vier Jahren dauernd aufgehalten hat.

2. Ist jedoch der Verurteilte schon vor der Rechtskraft des Urteils in Haft genommen worden, so ist für die Bestimmung des Wohnkantons der Zeitpunkt des Haftbefehls massgebend.

3. Für Ehefrauen und Unmündige bestimmen sich Wohndauer und Wohnkanton selbständig.

Art. 10

1. Als Beginn der Wohndauer gilt der Zeitpunkt der polizeilichen Anmeldung, wenn der Aufenthalt nicht nachweislich früher oder später begonnen hat.

2. In die Wohndauer darf die Zeit nicht eingerechnet werden, während welcher sich der Verurteilte zur Erstehung einer Strafe oder Massnahme, zur Versorgung, Behandlung oder Heilung ausserhalb des Wohnkantons in einer Anstalt aufgehalten hat. Einzurechnen ist jedoch die Dauer eines solchen Aufenthalts, wenn ein Urteil oder eine Verwaltungsverfügung des Wohnkantons ihn angeordnet hat und wenn ein Urteil oder eine Verfügung eines andern Kantons in einer Anstalt des Wohnkantons vollzogen wird.

3. Hat der Verurteilte schon früher im gegenwärtigen Wohnkanton gewohnt, so wird bei der Kostenverteilung die frühere Wohndauer mitgezählt, sofern sie ununterbrochen mindestens zehn Jahre betrug und die Abwesenheit nicht länger als zwei Jahre gedauert hat.

Art. 11

1. Die Vollzugskosten werden nach dem Preis berechnet, der für Bürger, Einwohner oder Pensionäre gilt.

2. Der Preis für Pensionäre darf denjenigen, der für Kantonsbürger berechnet wird, nicht unangemessen übersteigen.

제2장 調査 및 算定原則

제8조 ① 有罪判決을 받은 자가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市民인 당해 州는 州籍地州로서 분담의무를 진다.

② 유죄판결받은 자가 多数州의 市民인 경우에는 스위스 민법 제22조에 따라 州籍地州를 정한다.

제9조 ① 有罪判決을 받은 자가 判決이 확정된 때에 최소한 4년을 거주해 온 주가 居州地州로서 분담의무를 진다.

② 有罪判決을 받은 자가 判決의 확정전에 이미 拘禁 중인 때에는 居住地州의 決定은 구금상의 집행시를 기준으로 한다.

③ 부인과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居住期間과 居州地州을 독자적으로 규정한다.

제10조 ① 居住가 개시된 날이 언제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警察上의 申告가 있은 날을 거주개시일로 본다.

② 有罪判決을 받은 자가 刑 또는 處分의 成立時까지 거주지주의 바깥에서 扶養, 處置 또는 治療를 위해 일정한 시설에 滯在한 기간은 거주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다만 居住地州의 判決 또는 行政處分이 그에게 명해진 경우와 다른 州의 판결 또는 처분이 거주지주의 시설에서 집행되는 경우에는 위의 滯在期間은 거주기간에 산입된다.

③ 有罪判決을 받은 자가 이전부터 현재의 居住地州에서 거주한 때에는 이전의 居住期間이 중단됨이 없이 최소한 10년에 이르고 또한 不在期間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費用分擔時에 이를 합산한다.

제11조 ① 執行費用은 市民, 住民 또는 恩給受領人에 사용된 경비에 따라 산정된다.

② 恩給受領人을 위한 비용은 住民을 위해 산정된 經費로서 부적정하게 초과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3. Als Vollzugskosten dürfen auch die notwendigen Auslagen für Bekleidung und Ausrüstung sowie für ärztliche Pflege verrechnet werden.

Dritter Teil: Verfahren und Handhabung des Konkordates

I. Urteil, Vollzug der Massnahmen und Kostenabrechnung

Art. 12

1. Der Urteilskanton hat dem Heimat- und dem Wohnkanton ein Urteil oder einen Beschluss, der ine Massnahme anordnet, spätestens 20 Tage, nachdem es sich entschieden hat, eine das Urteil in Rechtskraft erwachse, zur Kenntnis zu bringen.

2. Dabei hat er ihnen mitzuteilen, wo er die Massnahme zu vollziehen gedenkt, und sie zur Erklärung aufzufordern, ob sie die Übernahme des Vollzugs beanspruchen.

3. Gleichzeitig gibt er, gestützt auf seine Feststellungen über Heimat und Wohndauer, seine Vorschläge über die Kostenverteilung bekannt.

Art. 13

1. Den Anspruch auf Übernahme des Vollzugs haben der Heimat- und der Wohnkanton innert 20 Tagen nach Empfang des Urteils oder Beschlusses zu erheben.

2. Erfolgt innert dieser Frist keine Erklärung, so ist der Anspruch verwirkt.

3. Erkennt der Urteilskanton einen rechtzeitig erhobenen Übernahmeanspruch nicht an, so hat er dies dem Ansprecher unter Hinweis auf Artikel 22 unverzüglich mitzuteilen.

Art. 14

1. Innert der nämlichen Frist von 20 Tagen (Art. 13) haben der Heimat - und der Wohnkanton allfällige Einwendungen gegen die Kostenverteilung geltend zu machen.

2. Der Urteilskanton hat ihnen nach Eingang ihrer Einwendungen oder nach Ablauf der Frist unter Hinweis auf Artikel 22 seine Ansprüche mitzuteilen.

③ 衣服 및 裝備 그리고 醫療救護를 위해 필요한 支出費用도 집행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다.

제3장 條約의 節次後 運營

제1절 判決, 處分執行 및 費用減額

제12조 ① 처분을 명한 判決地州는 判決書 또는 決定書를 판결의 確定力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심판된 후 늦어도 20일내에 州籍地州와 居住地州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判決地州는 처분이 집행될 것으로 인정되는 곳으로 判決事項 또는 決定事項을 통지하고 執行引受의 신청여부를 밝힐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③ 동시에 판결지주는 州籍 및 居住期間의 확정에 의거하여 비용분담에 관한 同州의 제안을 고지한다.

제13조 ① 州籍地州 및 居住地州는 判決書 또는 決定書를 수령한 후 20일 이내에 집행인수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기간 중에 어떠한 意思의 表明도 없는 때에는 申請權을 상실한다.

③ 判決地州가 適時에 제기된 引受申請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을 교부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① 州籍地州 및 居住地州는 비용분담에 관한여 異議가 있으면 동일한 20일 이내에(제13조)가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判決地州는 전항의 異議書의 접수 후 또는 전항의 기간의 경과 후에 제22조의 규정을 교부하여 그 신청사항을 이들 州에 통지하여야 한다.

Art. 15

1. Die Überführung des der Massnahme Unterworfenen vom Urteils- in den Vollzugskanton ist Sache des übernehmenden Kantons, der auch die Kosten der Überführung trägt.

2. Für die Zeit zwischen dem Urteil oder Beschluss und dem Vollzug der Massnahme im übernehmenden Kanton ordnet der Urteilskanton eine zweckmässige Uterbringung an. Die Kosten derselben gelten als Kosten des Vollzugs der Massnahme.

Art. 16

1. Der Vollzug der Massnahmen erfolgt nach den im Vollzugskanton geltenden Bestimmungen.

2. Die Bürger anderer Kantone dürfen in bezug auf Verdienstanteil, Verpflegung und Behandlung nicht anders gehalten werden als die Bürger des eigenen Kantons.

Art. 17

Die nach den Bestimmungen des Schweizerischen Strafgesetzbuches der zuständigen Behörde oder dem Richter vorbehaltenen Entscheidungen (wie endgültige oder bedingte Entlassung, Aufhebung von Massnahmen, Wiedereinweisung, Schutzaufischt, nachträglicher Vollzug der Strafe) sind von den Behörden des Urteilskantons zu treffen.

Art. 18

Der Vollzugskanton hat der zuständigen Behörde des Urteilskantons mindestens jährlich einmal über den Vollzug zu berichten und ihr oder dem Richter des Urteilskantons von allen Umständen Kenntnis zu geben, die zu Entscheidungen nach Artikel 17 Anlass geben können.

Art. 19

1. Die Schutzaufsicht wird ordentlicherweise vom Vollzugskanton durchgeführt. Nimmt der unter Schutzaufsicht Gestellte in einem andern Kanton Aufenthalt oder kehrt er an seinen früheren Wohnort zurück, so wird die Schutzaufsicht dem neuen Kanton übertragen.

2. Die Kosten werden, andere Abmachungen vorbehalten, vom ursprünglicen Vollzugskanton getragen.

Art. 20

1. Über jeden diesem Konkordat unterworfenen Fall rechnet der Urteilskanton mit den beteiligten Kantonen einheitlich für den ganzen Vollzug ab, auch wenn bestimmte Massnahmen (wie die Schutzaufsicht) in einem andern Kanton vollzogen werden.

2. Die Abrechnung erfolgt nach Abschluss des Vollzuges, sofern die beteiligten Kantone sich bei länger dauernden Massnahmen nicht auf periodische Teilabrechnung verständigen.

제15조 ① 處分에 服從하는 자를 判決地州에서 집행지주에로 護送하는 것은 집행을 인수하는 州의 직무이며 이 주는 護送費用도 부담한다.

② 판결지주는 判決 또는 決定과 刑執行을 인수하는 州에서의 處分의 執行 사이의 시각에 合目的的인 收容을 명한다. 그 비용은 처분의 집행비용으로 본다.

제16조 ① 처분의 집행은 執行地州의 현행규정에 따라 행한다.

② 다른 州의 市民은 給料, 給養 및 處遇에 관하여 당해 州의 시민과 달리 취급되지 아니한다.

제17조 스위스 刑法의 규정에 의하여 管轄官庁 또는 法官에게 留保된 裁判(종국적 또는 조건부석방, 처분의 취소, 재지시, 보호감독, 형의 추가집행 등)은 判決地州의 당국이 행한다.

제18조 執行地州는 판결지주의 관할관청에 적어도 매년 1회이상 執行에 관하여 보고하고, 또한 판결지주의 관할관청 또는 法官에게 제17조에 따른 裁判의 動因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알려야 한다.

제19조 ① 保護監督은 통상 집행지주에서 시행한다. 被保護監督者가 다른 주에서 체재하고 있거나 이전의 거주지에로 送還될 때에는 보호감독은 새로운 주에 委託된다.

② 費用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원래의 執行地州에서 부담한다.

제20조 ① 이 條約에 의해 規律되는 모든 경우에 관하여 判決地州는(보호감독과 같이)일정한 處分이 다른 州에서 집행되는 경우에도 관련되는 州와 함께 통일적으로 전집행에 대한 총산정을 한다.

② 總算定은 관련되는 州가 보다 장기간의 처분의 경우에 정기적인 部分算定을 약정하지 아니하는 한 집행의 종료후에 행한다.

II. Handhabung des Konkordates

Art. 21

1. In jedem Konkordatskanton übt der Regierungsrat die Oberaufsicht über die Handhabung des Konkordates aus.

2. Er bezeichnet die Behörden, die mit der Durchführung betraut sind und den Verkehr mit den andern Kantonen besorgen.

Art. 22

1. Gegen jeden Entscheid über die Anwendung des Konkordates, den ein Kanton einem andern unter ausdrücklichem Hinweis auf diesen Artikel zustellt, kann der Empfänger binnen 20 Tagen seit dem Empfang den Entscheid des Vorstehers des Eidgenössischen Justiz- und Polizeidepartements anrufen.

2. Ist an dem Entscheid ein weiterer Kanton unmittelbar beteiligt, so ist er von Amtes wegen zu dem Streitverfahren beizuziehen.

3. Das Eidgenössische Justiz- und Polizeidepartement kann in einem Vorentscheid auf Antrag verfügen, was einstweilen zu geschehen oder zu unterbleiben habe.

4. Es ist an die Parteianbringen nicht gebunden und kann von den Parteien weitere Auskünfte, Feststellungen oder die Beibringung weiterer Belege verlangen, ohne Rücksicht auf die Beweislast.

5. Das Eidgenössische Justiz- und Polizeidepartement entscheidet endgültig (unter Vorbehalt von Art. 23) und kostenfrei.

6. Die kantonalen Entscheide, gegen die keiner der beteiligten Kantone innert der festgesetzten Frist das Departement angerufen hat, gelten als anerkannt.

Art 23

Ein rechtskräftig erledigter Fall kann von neuem anhängig gemacht werden, wenn auf Grund von neu entdeckten Tatsachen oder von Beweismitteln, die vorher nicht geltend gemacht werden konnten, seine Erledigung als offensichtlich unrichtig erscheint.

Art. 24

Vorbehalten bleibt die staatsrechtliche Beschwerde von Angehörigen der Konkordatskantone gemäss Artikel 175 Ziffer 3 des Bundesgesetzes vom 22. März 1893 über die Organisation der Bundesrechtspflege.

제2절 條約의 運營

제21조 ① 모든 締約州에서 參事官은 조약의 시행을 감독한다.

② 參事官이란 條約의 시행을 委託받고 다른 주와 交通하는 관청을 말한다.

제22조 ① 1개의 州가 이 條項의 규정을 명문으로 명시하여 송달한 이 條約의 적용에 관한 모든 裁判書에 대하여 수령인은 수령후 20일이내에 연방 법무경찰부장관의 심판을 구할 수 있다.

② 그밖의 州가 위 裁判에 관여한 경우에는 장관이 職權으로 이송절차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연방 法務警察部는 신청에 의하여 先決審判에서 가집행 또는 일시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연방 법무경찰부는 당사자의 異議에 구속되지 아니하며, 또한 立證責任에 관계없이 그밖의 증거의 교제시, 확인 또는 제출을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연방 법무경찰부는 종국적으로(단 제23조의 경우에는 예외) 그리고 無料로 심판한다.

⑥ 州의 재판은 관련된 州가 정해진 기간내에 政府當局에 이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認諾된 것으로 본다.

제23조 확정적으로 종료된 사건이 새로이 발견된 사실이나 종래에는 주장될 수 없었던 證據方法에 의하여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종료된 사건은 새로운 사실에 관하여 訴訟이 계속될 수 있다.

제24조 1983. 3. 22 공포된 聯邦司法組織에 관한 연방법률 제175조 제3호에 따른 締約州의 住民의 국법상의 不服申請은 이를 유보한다.

Art. 25

Das Eidgenössische Justiz- und Polizeidepartement wird nach Bedarf Konferenzen der zuständigen Departemente der Konkordatskantone einberufen. An diesen Konferenzen können Fragen der Auslegung und Anwendung des vorliegenden Konkordates behandelt und durch Mehrheitsbeschluss entschieden werden.

Vierter Teil: Schlussbestimmungen

Art. 26

1. Der Bundesrat bestimmt den Zeitpunkt des Inkrafttretens dieses Konkordates.

2. Ebenso setzt er den Zeitpunkt des Wirkungsbeginns für Kantone fest, die dem Konkordat später beitreten.

3. Die Bestimmungen des Konkordates finden keine Anwendung auf Urteile, die im Zeitpunkt des Inkrafttretens oder des Wirkungsbeginns im einzelnen Kanton bereits rechtskräftig geworden sind.

Art. 27

1. Jeder Vertragskanton kann unter Beobachtung einer sechsemonatigen Kündigungsfrist je auf den 1. Januar vom Konkordat zurücktreten.

2. Mitteilungen über Beitritt und Kündigung sind an den Bundesrat zu richten, der sie den Konkordatskantonen zur Kenntnis bringt.

Das Konkordat ist heute verbindlich

für die Kantone:	*seit:*
Zürich	1. Juni 1976
Bern	1. Juli 1944
Luzern	1. Januar 1945
Uri	1. April 1945
Schwyz	1. März 1945
Obwalden	1. Juli 1944
Nidwalden	1. April 1946
Zug	1. Juli 1944
Solothurn	1. November 1945
Basel-Stadt	1. Juli 1944
Basel-Landschaft	1. Juli 1944

제25조 연방法務警察部는 필요에 따라 州間 協約擔當部署會議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서는 현행 協約의 適用 및 解釋問題를 議題로 하여 多數決로써 결정할 수 있다.

제4장 終結規定

제26조 ① 연방參議院은 이 條約의 시행일을 정한다.

② 이 條約에 추후 가입하는 州에 대한 效力發生日도 연방참의원이 함께 정한다.

③ 이 조약의 제규정은 개개의 州에서 施行時期 또는 效力發生時期에 이미 확정된 판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7조 ① 각 締約州는 6월의 廢業通告期間을 준수하여 매년 1월1일로 조약에서 탈피할 수 있다.

② 條約에의 加入 및 廢業通告에 관한 통지는 연방참의원에 하며, 연방참의원은 締約州들에게 이를 알린다.

이 條約은 현재 다음 諸州에 대하여서 발효 중이다.

州 發效開始日

취리히……1976. 6. 1

베른……1944. 7. 1

루제른……1945. 1. 1

우리……1945. 4. 1

슈비쯔……1945. 3. 1

옵발덴……1944. 7. 1

니드발덴……1946. 4. 1

쭈크……1944. 7. 1

졸로투른……1945. 11. 1

바젤스타트……1944. 7. 1

바젤란트샤프트……1944. 7. 1

Schaffhausen	1. August 1966
Appenzell A. Rh.	1. Oktober 1983
Appenzell I. Rh.	1. Juli 1944
St. Gallen	1. November 1952
Graubünden	1. Juli 1953
Aargau	1. April 1947
Thurgau	1. Juli 1944
Tessin	1. April 1945
Waadt	1. Juli 1944
Neuenburg	1. August 1944
Jura (Nachfolge)	1. Januar 1979

샤프하우젠…1966. 8. 1
아펜젤 A.……1983. 10. 1
아펜젤 I.……1944. 7. 1
갈덴……1952. 11. 1
그라우뷔덴……1953. 7. 1
아~르고우……1947. 4. 1
투르고오……1944. 7. 1
테씬……19454. 1
바아트……1944. 7. 1
노이엔부르크……1944. 8. 1
유라……1979. 1. 1

Vereinbarung

der Kantone Zürich, Glarus, Schaffhausen, Appenzell A. Rh., Appenzell I. Rh., St. Gallen, Graubünden und Thurgau über den Vollzug freiheitsentziehender Strafen und Massnahmen gemäss Schweizerischem Strafgesetzbuch und Versorgungen gemäss eidgenössischem und kantonalem Recht

vom 19. Juni 1975
Vom Bundesrat genehmigt am 31. März 1976

I. Organization
II. Aufteilung der Vollzugsaufgaben
III. Durchfuhrung der vereinbarung
IV. Schlussbestimmungon

Im Bestreben, im Bereich der Ostschweiz den Vollzug der Strafen und Massnahmen gemäss den Grundsätzen des Schweizerischen Strafgesetzbuches[2] (StGB) durchzuführen, wird von den Kantonen Zürich, Glarus, Schaffhausen, Appenzell A. Rh., Appenzell 1. Rh., St. Gallen, Graubünden und Thurgau, in Anwendung von Artikel 7 der Bundesverfassung[3] und Artikel 383 Absatz 2 StGB,

folgendes vereinbart:

I. Organisation

Art. 1

Strafvollzugskommission

Oberstes Organ der Vereinbarung ist die ostschweizerische Strafvollzugskommission, bestehend aus je einem Vertreter der Regierungen der beteiligten Kantone.

Der Strafvollzugskommission obliegt die Aufsicht über die Handhabung der Vereinbarung. Sie erlässt die Ausführungsbestimmungen, bestellt die notwendigen Organe, fasst die aus der Anwendung der Vereinbarung sich ergebenden Beschlüsse

스위스 刑法에 따른 自由剝奪刑 및 處分의 執行과 聯邦法 및 州法에 따른 援護에 관한 쮜리히, 그라루스, 샤프하우젠, 아펜젤A.R.h., 아펜젤I.R.h., 갈렌, 그라우뷔덴 및 투르고우州 協定

(1975. 6. 19. 調印 1976. 3. 31. 연방참의원의 동의없음)

제1장 組 織(제1조～제2조)
제2장 執行職務의 分配(제3조～제5조)
제3장 協定의 施行(제6조～제16조)
제4장 終結規定

스위스 刑法의 基本原則에 따라 동부 스위스지역에서 刑罰 및 處分의 執行을 觀察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쮜리히, 그라루스, 샤프하우젠, 아펜젤 A. Rh, 아펜젤 I. Rh., 갈렌, 그라우뷔덴 및 투르고우 州에 의해 聯邦憲法 제7조 및 스위스 刑法 제383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제1장 組 織

제1조 (行刑委員會) 이 協定의 最上級機関은 관여한 諸州의 代表者들로 구성되는 東部스위스 行刑委員會이다.

행형위원회는 이 協定의 운영을 監督할 의무를 진다. 이 委員會는 施行

und entscheidet in Streitfällen. Sie ist überdies befugt, die notwendigen Richtlinien zu erlassen. Diese können mit Zustimmung aller Beteiligten als verbindlich erklärt werden. Die Kommission tritt mindestens einmal im Kalenderjahr zusammen. Sie wählt den Vorsitzenden und dessen Stellvertreter. Im übrigen ordnet die Kommission ihr Verfahren selbst.

Art. 2

Sekretariat und Zentralstelle

Die Strafvollzugskommission wählt als vollziehendes Organ die Zentralstelle, bestehend aus dem Leiter, der auch die Sekretariatsgeschäfte der Kommission besorgt, einem Vollzugsbeamten und einem Leiter einer Vollzugsanstalt.

Die Aufgaben dier Zentralstelle werden von der Strafvollzugskommission in den Ausführungsbestimmungen festgelegt.

Die Kosten des Sekretariates und der Zentralstelle tragen die beteiligten Kantone im Verhältnis der Einwohnerzahl gemäss der jeweils letzten eidgenössischen Volkszählung. Es kann auch ein Grundbeitrag festgelegt werden.

II. Aufteilung der Vollzugsaufgaben

Art. 3

Grundsatz

Die beteiligten Kantone verpflichten sich, die von ihnen zu vollziehenden Freiheitsstrafen und freiheitsentziehenden Massnahmen nach StGB gemäss den Artikeln 4 und 5 zu vollziehen. Massnahmen nach Vormundschafts- und kantonalem Recht sollen, soweit die kantonalen Vorschriften es zulassen, nach Möglichkeit gemäss den Artikeln 4 und 5 vollzogen werden.

Vorbehalten bleibt die Abtretung des Vollzuges gemäss Artikel 3 der Verordnung (1) vom 13. November 1973[1)] zum Schweizerischen Strafgesetzbuch und Artikel 4 Absatz 2 des Konkordates vom 23. Juni 1944[2)] über die Kosten des Strafvollzuges an einen der Vereinbarung nicht angehörenden Kanton.

規則을 선포하고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며, 이 협정의 적용에서 나타날 決定을 표명하고 紛爭事件을 심판한다. 이 위원회는 그밖에 필요한 指針을 발포할 권한을 가진다. 이는 관여한 모든 州의 동의를 얻어 拘束力있는 것으로 공포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歷年으로 매년 1회이상 소집된다. 委員會는 議長과 그 代理人을 선출한다. 그밖에 위원회는 절차 자체를 정리한다.

제2조 (事務局 및 中央機関) 행형위원회는 執行機関으로서 위원회의 事務局 사무도 담당하는 그 長, 執行官 및 執行員의 長으로 구성되는 중앙기관을 선정한다.

中央機関의 職務는 행형위원회가 施行規則에서 이를 확정한다.

事務局과 중앙기관의 費用은 당시의 마지막 聯邦人口調査에 의한 인구수에 比例하여 締約州가 부담한다. 기본부담금액도 정할 수 있다.

제2장 執行職務의 分配

제3조 (基本原則) 締約州는 당해 州가 집행할 스위스 刑法上의 自由刑 및 自由剝奪處分을 제4조 및 제5조에 의해 집행할 의무를 진다. 後見法 및 州法上의 처분은 州規定이 허용하는 한 가급적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스위스 刑法에 관한 1973.11.13의 命令(1) 제3조 및 協定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주에서의 刑執行의 費用에 관한 1944.6.23 조약의 제4조 제2항에 따른 집행의 인계는 이를 유보한다.

Art. 4

Strafen und Massnamen a) gegenüber Männern

Der Vollzug gegenüber Männern erfolgt:

1. bei Haftstrafen und Gefängnisstrafen bis zu drei Monaten (Art. 37bis und 39 StGB):
   a) in den Gefängnissen der Kantone;
   b) in Sonderfallen aus therapeutischen Gründen in der Anstalt Realta;
2. bei Gefängnisstrafen von mehr als drei Monaten und Zuchthausstrafen:
   a) in der Strafanstalt Saxerriet und der Strafanstalt Gmünden, wenn es sich um Erstmalige im Sinn von Artikel 37 Ziffer 2 Absatz 2 StGB oder um Rückfällige im Sinn von Artikel 37 Ziffer 2 Absatz 3 StGB handelt;
   b) in der Strafanstalt Regensdorf, wenn es sich um Rückfällige handelt oder um Erstmalige, die wegen besonderer Umstände (Art. 37 Ziff. 2 Abs. 2 Satz 2 StGB) in einer geschlossenen Anstalt unterzubringen sind;
   c) in den kantonalen Gefängnissen, wenn es sich um den Vollzug von Gefängnisstrafen handelt und die Gefängnisse über die Einrichtungen und Arbeitsmöglichkeiten für einen drei Monate übersteigenden Aufenthalt verfügen;
   d) in Sonderfällen aus therapeutischen Gründen in der Anstalt Realta;
3. bei Verwahrungen gemäss Artikel 42 StGB:
   a) in der Strafanstalt Regensdorf, wenn die Verwahrung in der geschlossenen Anstalt notwendig ist;
   b) in der Anstalt Realta, wenn die Verwahrung in der offenen Anstalt zu verantworten ist;
4. bei Massnahmen gemäss Artikel 43 Ziffer 1 Absatz 1 StGB (Einweisung in eine Heil- und Pflegeanstalt):
   a) in einer psychiatrischen Klinik, wenn dauernde ärztliche Behandlung notwendig ist;
   b) in der Anstalt Realta, wenn keine dauernde ärztliche Behandlung notwendig und die Unterbringung in der offenen Anstalt zu verantworten ist;
5. bei Massnahmen gemäss Artikel 43 Ziffer 1 Absatz 2 StGB (Verwahrung):

제4조 (男子에 대한 刑罰 및 處分) 男子에 대한 執行은

① 3월 이하의 拘禁刑 및 輕懲役刑의 경우(스위스 형법 제37조의 2및 제39조)에는

1. 州矯導所에서 하며

1) 이 조항은 형법 제37조의 21항1호 및 37조 제2항 제3호에 반함을 이유로 聯邦參議院에 의해 승인되지 아니함.

2. 治療事由에 기한 특별한 경우에는 레알타院에서 한다.

② 3월이상의 輕懲役刑과 重懲役刑의 경우에

1. 형법 제37조 2항 2조에서 말하는 初犯이거나 형법 제37조 2항3호에서 말하는 累犯인 때에는 작세리에트교도소 및 그뮌덴교도소에서 하고

2. 再犯이거나 특별한 사정때문에(형법 제37조 제2호 2문) 밀폐된 시설에 收容되어야 할 初犯인 때에는 레겐도르프교도소에서 하며

3. 형법 제37조의 제2항 1호 및 제3조2항 에 반함을 이유로 연방참의원에 의해 승인되지 아니함.

4. 輕懲役刑의 집행이 관련되어 3월이상 滯留를 위한 시설 및 勞作所에 拘禁된 때에는 州교도소에서 하며

5. 치료사유에 기한 특별한 경우에는 레알타院에서 행한다.

③ 형법 제42조에 따른 교도소의 경우에

1. 밀폐된 시설에서의 監護가 필요한 때에는 레겐도르프교도소에서 하며

2. 開放施設에서의 監護를 책임져야 할 때에는 레알타院에서 한다.

④ 형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처분의 경우에(治療所 및 援護院)

1. 지속적인 醫療的 處置가 필요한 때에는 정신병원에서 행하며

2. 어떠한 지속적인 醫療的處置도 필요하지 아니하며, 開放施設에의 수용을 책임져야 할 때에는 레알타院에서 행한다.

⑤ 형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處分(監護)의 경우에 폐쇄된 精神

bis eine geschlossene psychotherapeutische Anstalt oder Anstaltsabteilung zur Verfügung steht, in einer geeigneten Anstalt;

6. bei Massnahmen gemäss Artikel 44 StGB:
   a) in einer Trinkerheil- oder andern geeigneten Anstalt, wenn es sich um einen Trunksüchtigen handelt;
   b) in einer psychiatrischen Klinik, wenn der Trunksüchtige der ärztlichen Behandlung bedarf;
   c) in einer psychiatrischen Klinik oder einer andern geeigneten Anstalt, wenn es sich um einen Rauschgiftsüchtigen handelt;
7. bei Arbeitserziehung gemäss Artikel 100bis StGB:
   a) in der Arbeitserziehungsanstalt Uitikon-Waldegg, in erster Linie bei Einzuweisenden, die zur Absolvierung einer Berufslehre oder einer Anlehre fähig sind, ferner solche, die nur in einer geschlossenen Anstalt betreut werden können;
   b) in der Arbeitserziehungsanstalt Kalchrain, in der Regel Einzuweisende, die keine ordentliche Berufslehre absolvieren und in einer offenen Anstalt betreut werden können;
8. bei Versorgungen aufgrund des eidgenössischen oder kantonalen Rechtes:
   a) in der Arbeitsanstalt Bitzi-Mosnang;
   b) in Sonderfällen aus therapeutischen Gründen in der Anstalt Realta;
   c) in der Arbeitserziehungsanstalt Uitikon oder Kalchrain, wenn es sich um erziehungsfähige junge Erwachsene handelt;
   d) in besonderen Fällen in einer anderen geeigneten Anstalt.

Art. 5

b) gegenüber Frauen

Der Vollzug gegenüber Frauen erfolgt unter Vorbehalt abweichender Anordnungen im Einzelfall:

a) für Strafen bis zu drei Monaten in den Gefängnissen der Kantone,
b) für längere Strafen und Massnahmen in einer von der Strafvollzugskommission zu bestimmenden Anstalt.

療養院 또는 적절한 시설에서 행한다.

⑥ 형법 제44조에 의한 처분의 경우에

1. 酒癖者가 그 대상인 때에는 酒癖治療所 기타 적절한 시설에서 행하며
2. 주벽자가 醫療的 處置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精神病院에서 행하고
3. 麻藥中毒者가 그 대상인 때에는 정신병원 기타 적절한 시설에서 행한다.

⑦ 형법 제100조의 2에 의한 근로교육의 경우에는

1. 위티콘발데크 근로교육원에서 먼저 職業敎育 또는 敎育을 완료할 능력이 있고, 나아가 오직 폐쇄된 시설에서만 保護받을 수 있는 被指示處分者에게 행하며
2. 칼크라인勤勞學敎育院에서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職業敎育을 마치지 아니하고 또 開放된 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被指示處分者에게 행한다.

⑧ 聯邦法 또는 州法에 근거한 援護의 경우에는

1. 비트지모스당勤勞院에서 행하며
2. 치료사유에 기한 특별한 경우에는 레알타院에서 하며
3. 교육능력있는 젊은 成人이 對象者인 때에는 위티콘 또는 칼크라인勤勞敎育院에서 행하고
4. 특별한 경우에는 기타 적절한 시설에서 한다.

제5조 (婦女에 대한 刑罰 및 處分) 婦女에 대한 執行은 개별적인 경우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1. 3월이하의 刑罰에 대하여는 州의 矯導所이다.
2. 그 이상의 刑罰 및 處分에 대하여는 行刑委員會에서 규정하는 시설에서 행한다.

Vollzugsanstalten

Art. 6

Unter dem Vorbehalt der Bewilligung der erforderlichen Kredite durch die nach kantonalem Recht zuständigen Instanzen und der Gewährung der gesetzlich möglichen Bundesbeiträge verpflichten sich die nachstehend genannten Kantone, folgende Anstalten fürden Straf- und Massnahmenvollzug im Rahmen der Vereinbarung bereitzustellen, auszubauen und zu führen:

1. alle beteiligten Kantone im Rahmen ihres kantonalen Rechtes ihre Gefängnisse zum Vollzug von Haft- und kurzen Gefängnisstrafen gemäss Artikel 4 Ziffer 1 und 2 Buchstabe c;
2. der Kanton Zürich:
   a) die Strafanstalt Regensdorf zum Vollzug von Freiheitsstrafen gemäss Artikel 4 Ziffer 2 Buchstabe b und Verwahrungen gemäss Artikel 4 Ziffer 3 Buchstabe a,
   b) die Arbeitserziehungsanstalt Uitikon-Waldegg zum Vollzug der Arbeitserziehung gemäss Artikel 4 Ziffer 7 Buchstabe a und Ziffer 8 Buchstabe c;
3. der Kanton Appenzell A. Rh.: die Strafanstalt Gmünden zum Vollzug von Freiheitsstrafen gegenüber Erstmaligen gemäss Artikel 4 Ziffer 2 Buchstabe a;
4. der Kanton St. Gallen:
   a) die Strafanstalt Saxerriet zum Vollzug von Freiheitsstrafen gegenüber Erstmaligen gemäss Artikel 4 Ziffer 2 Buchstabe a,
   b) die Arbeitsanstalt Bitzi zum Vollzug von Versorgungen gemäss Artikel 4 Ziffer 8 Buchstabe a;
5. der Kanton Graubünden: die Anstalt Realta zum Vollzug von:
   a) Verwahrungen im Sinn von Artikel 42 StGB gemäss Artikel 4 Ziffer 3 Buchstabe b,
   b) Einweisungen geistig Abnormer gemäss Artikel 4 Ziffer 4 Buchstabe b,
   c) Versorgungen gemäss Artikel 4 Ziffer 8 Buchstabe b;
6. der Kanton Thurgau: die Arbeitserziehungsanstalt Kalchrain zum Vollzug der Arbeitserziehung gemäss Artikel 4 Ziffer 7 Buchstabe b und Ziffer 8 Buchstabe c.

제6조 (執行施設) 다음에 열거되는 諸州는 州法上의 管轄法院에 의한 필요한 信用의 承認과 법률상 가능한 聯邦分擔金의 保證이 있음을 조건으로 이 협정의 범위내에서 刑 및 處分의 執行을 의한 다음의 시설을 증축하고 운영해 나아갈 의무를 진다.

① 모든 締約州는 그들 州의 법의 테두리내에서 제4조 제1호 및 제2항 c호에 의한 拘禁刑 및 短期懲役刑의 집행을 위한 교도소를

② 쮜리히州는

1. 제4조 제2항 2호에 의한 自由刑 및 제4조 제3항 1호에 의한 감호의 집행을 위한 레겐도르프 교도소와,
2. 제4조 제7항 1호 및 제8항 3호에 의한 勤勞敎育의 執行을 위한 위티콘발데크 근로교육원을,

③ 아펜젤州는제4조 제2호 1문에 의한 初犯에 대한 自由刑의 집행을 위한 그뮌덴 교도소를

④ 갈렌州는

1. 제4조 제2항 1호에 의한 初犯에 대한 自由刑의 執行을 위한 작세리에교도소와,
2. 제4조 제8항 1호에 의한 援護의 執行을 위한 비티지 勤勞院(勞作所)을;

⑤ 그라우뷔덴주는

1. 제4조 제3항 2호에 의한 형법 제42조 정한 監護와,
2. 제4조 제4항 2호에 의한 精神異常者의 지정,
3. 제4조 제8항 2호에 의한 교도소;

의 집행을 위한 레알타院을

⑥ 투르고우주는 제4조 제7항 2호 및 제8항 3호에 의한 勤勞矯正執行을 위한 칼크라인 근로교정원을

Art. 7

Urteile der Bundesstrafbehörden

Die Bestimmungen der Artikel 4-6 gelten auch für Freiheitsstrafen und Massnahmen gemäss Urteilen der Strafbehörden des Bundes, deren Vollstreckung einem der beteiligten Kantone übertragen wird.

III. Durchführung der Vereinbarung

Art. 8

Bestimmung der Vollzugsanstalt

Der einweisende Kanton bestimmt im Einzelfall die nach den Artikeln 4 und 5 der Vereinbarung für den Vollzug in Frage kommende Anstalt.

Art. 9

Entscheidungsbefugnisse

Die Entscheide gemäss den Artikeln 38, 40, 42-45, 100bis, 100ter und 394 StGB sowie des kantonalen Versorgungsrechtes stehen dem einweisenden Kanton zu, soweit nicht eine Behörde des Bundes zuständig ist.

Vorbehalten bleibt die Übertragung von Entscheidungskompetenzen im Einzelfall.

Art. 10

Vollzugspflicht

Der mit dem Vollzug beauftragte Kanton ist verpflichtet, die ihm Zugewiesenen im Rahmen der Aufnahmefähigkeit seiner Anstalten zu übernehmen und sie nach den Anordnungen des einweisenden Kantons zu entlassen.

Ergeben sich aus der Übernahme des Vollzuges oder während desselben besondere Schwierigkeiten, so ist mit dem einweisenden Kanton auf dem Verhandlungsweg eine Lösung zu suchen.

Art. 11

Vollzugsvorschriften

Der Vollzug richtet sich nach den Vorschriften für die einzelnen Anstalten. Sie werden von dem Kanton erlassen, der die Anstalt führt.

Die Vorschriften haben den Bestrebungen des Schweizerischen Strafgesetzbuches Rechnung zu tragen.

제7조 (聯邦 刑事當局의 判決)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그 집행이 締約州에 위탁된 연방형사당국의 판결에 의한 自由刑 및 處分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3장 協定의 施行

제8조 (執行施設의 規定) 指定된 州는 이 協定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당해 施設에서의 집행을 個別的인 경우에 규정한다.

제9조 (裁判權) 형법 제38조, 제40조, 제42조 내지 제45조, 제100조의 2 및 제394조와 州援護法에 의한 裁判을 연방당국에 管轄權이 없는 한 지정된 州의 권한에 속한다.
개별적인 경우의 裁判權의 委任을 유보된다.

제10조 (執行義務) 執行을 委託받은 州는 배정된 자를 당해 주의 시설의 收容能力의 범위내에서 수용하고, 또한 지시된 주의 規則에 따라 석방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執行規則) 執行은 個別的인 施設에 대한 規則에 따른다. 規則은 시설을 管理하는 州가 발포한다.
규칙은 스위스 刑法이 指向하는 바를 고려하여야 한다.
시설규칙은 승인을 보기 위하여 行刑委員會에 제출한다.

Die Anstaltsvorschriften sind der Strafvollzugskommission zur Genehmigung vorzulegen.

Art. 12

Der einweisende Kanton hat dem vollziehenden Kanton die Vollzugskosten sowie die Auslagen für Einlieferung und Entlassung zu vergüten. Der Rückgriff auf andere Zahlungspflichtige bleibt dem einweisenden Kanton vorbehalten.

Die Höhe des Kostgeldes, die Nebenkosten und der Zahlungsmodus werden durch die Strafvollzugskommission geregelt.

IV. Schlussbestimmungen

Art. 13

Abmachungen mit andern Konkordaten und Kantonen

Die Strafvollzugskommission trifft die aufgrund dieser Vereinbarung notwendigen Abmachungen mit andern Konkordaten, insbesondere auch in bezug auf die Unterbringung Eingewiesener, die während des Vollzuges der Spitalpflege bedürfen.

Generelle Vereinbarungen einzelner Konkordatsmitglieder mit anderen Kantonen oder Konkordaten bedürfen der Genehmigung der Strafvollzugskommission.

Art. 14

Änderung der Vereinbarung

Über die Änderung der Zweckbestimmung einer Anstalt oder deren Aufhebung entscheidet die Strafvollzugskommission auf Antrag des die Anstalt führenden Kantons.

Art. 15

Kündigung

Jeder Kanton kann unter Beachtung einer fünfjährigen Frist auf Ende eines Kalenderjahres durch schriftliche Erklärung beim Vorsitzenden der Strafvollzugskommission, erstmals auf 31. Dezember 1990, von der Vereinbarung zurücktreten.

Mit dem Austritt der Kantone Zürich, Graubünden, St. Gallen und Thurgau fällt die Vereinbarung als Ganzes dahin.

제12조 (執行費用) 指定된 州는 執行할 州에게 집행비용과 引渡 및 釋放을 위한 支出費用을 지불하여야 한다. 기타의 지급의무자에 대한 償還請求는 지정된 州에 유보된다.
費用金額, 附帶費用 및 行刑委員會가 정한다.

제4장 終結規定

제13조 (다른 政策條約州 및 州와의 協調) 행형위원회는 이 협정에 근거하여 다른 政教條約州와 특히 병원내 救護의 執行 중에 요구되는 被指示處分者의 收容에 관해서도 필요한 협약을 체결한다.
각 個人의 政教條約加入州가 다른 州나 政條條約州와 하는 일반협정은 행정위원회의 승인을 요한다.

제14조 (協定의 改正) 施設의 目的規定의 개정 또는 삭제에 관해서는 行政委員會가 그 시설을 관리하는 州의 申請에 의하여 판단한다.

제15조 (廢棄通告) 각 州는 5년의 기간을 준수한 이후 歷年의 말일에 行刑委員會 議長에 대한 서면에 의한 意思表示를 통하여 1990. 12. 31에 이후 처음으로 이 協定에서 脫退할 수 있다. 쥐리히, 그라우뷔덴, 갈렌 및 투르고우州의 탈퇴가 있으면 이 協定 전부가 폐기된다.

Art. 16

Inkrafttreten

Die Vereinbarung tritt mit der Genehmigung durch den Bundesrat in Kraft.

Über den Zeitpunkt der Invollzugsetzung entscheidet die Strafvollzugskommission.

Art. 17

Aufhebung der bisherigen Vereinbarung

Mit der Invollzugsetzung dieser Vereinbarung wird jene vom 27. Januar 1956 aufgehoben.

제16조 (施行) 이 협정은 聯邦參議院의 동의가 있을 때 발효된다. 施行時期에 관하여는 행형위원회가 정한다.

제17조 (從前의 協定의 廢止) 이 協定의 시행시기를 정함과 함께 1956. 1.27. 협정은 이를 폐지한다.

Konkordat

über den Vollzug von Strafen und Massnahmen nach dem Schweizerischen Strafgesetzbuch und dem Recht der Kantone der Nordwest- und Innerschweiz

vom 4. März 1959

Vom Bundesrat genehmigt am 26. März 1959

I. Geltungsbereich
II. Konkordatsanstalten
  A. Die Vorhandenen Konkordatsanstalten
  B. Die Vorgesehenen Konkordatsanstalten
  C. Weitere Konkordatsanstalten
III. Einweisung und Aufnahme der Verurteilten
IV. Einweisungsverfahren
V. Dervollzug in den Konkordatsanstalten
VI. Konferenz der Kantone der Region
VII. Weitere Bestimmungen

Die Kantone Uri, Schwyz, Obwalden, Nidwalden, Luzern, Zug, Bern, Solothurn, Basel-Stadt, Basel-Landschaft und Aargau schliessen sich zur Region Nordwest- und Innerschweiz (genannt Region) zusammen und vereinbaren zur Verwirklichung der Landesplanung betreffend den Straf- und Massnahmenvollzug an Erwachsenen im Sinne der Artikel 382 ff. des Schweizerischen Strafgesetzbuches[1)] (StGB) folgende Verteilung der Aufgaben:

I. Geltungsbereich

Art. 1

Das Konkordat findet Anwendung auf den Vollzug der in den Kantonen der Region ausgesprochenen Strafen und Massnahmen an erwachsenen Personen, soweit dieser in Anstalten durchgeführt wird, welche dem gemeinsamen Vollzug dienen (genannt Konkordatsanstalten).

스위스 刑法과 西部 및 中部 스위스法에 의한 刑罰 및 處分의 執行에 관한 政教條約

(1959. 3. 4. 조인, 1959. 3. 26, 연방참의원에 의해 승인)

제1장 適用範圍(제1조)
제2장 條約上의 施設
  제1절 現存하는 條約上의 施設(제2조)
  제2절 豫見되는 條約上의 施設(제3조)
  제3절 其他의 條約上의 施設(제4조)
제3장 有罪判決 받은 자의 配定 및 收容(제5조~제6조)
제4장 配定節次(제7조)
제5장 條約上 施設에서의 執行(제8조~제16조)
제6장 地域州 會議(제17조)
제7장 其他規定(제8조)

우ー리, 슈비쯔, 오스발덴, 니드발덴, 루제른, 쭈크, 베른, 솔로투른, 바젤ー스타트, 바젤란트샤프트 및 아르 고우州는 북서스위스 및 중부 스위스라는 지역(이른바 지역)으로 연합하고 스위스 형법 제382조 이하에 규정한 성인에 대한 형 및 처분의 집행에 관련한 지방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직무분배를 협정한다.

제1장 適用範圍

제1조 이 條約은 地域의 州에서 宣告된 成年者에 대한 刑 및 處分의 執行에 적용된다. 다만 刑罰 및 處分이 共同의 執行에 이용되는 시설에서 집행되는 에 한하다(이른바 조약상의 시설).

II. Konkordatsanstalten

A. Die vorhandenen Konkordatsanstalten

Art. 2

Die Kantone der Region stellen dem gemeinsamen Vollzug folgende Anstalten zur Verfügung:

1. *Für "erstmals" bestrafte männliche Zuchthaus- und Gefängnisgefangene:*
   Kanton Bern: die Anstalten in Witzwil (400 Plätze)
   Kanton Solothurn: Anstalt Oberschöngrün (70 Plätze)
   Kanton Zug: Strafanstalt Zug (30 Plätze)

   In die Anstalten für "erstmals" Bestrafte werden eingewiesen:
   a) die Zuchthaus- und Gefängnisgefangenen, welche in den letzten fünf Jahren keine Zuchthaus- oder Gefängnisstrafen über sechs Monate verbüssten und weder gemein- noch fluchtgefährlich sind;
   b) in Ausnahmefällen "Vorbestrafte".

2. *Für "vorbestrafte" männliche Zuchthaus- und Gefängnisgefangene:*
   Kanton Aragau: Strafanstalt Lenzburg (140 Plätze)
   Kanton Basel-Stadt: Strafanstalt Basel (120 Plätze)
   Kanton Bern: Strafanstalt Thorberg (150 Plätze)
   Kanton Luzern: Anstalt Wauwilermoos (80 Plätze) und Anstalt Sedel (100 Plätze)

   In die Anstalten für "Vorbestrafte" werden eingewiesen:
   a) die Zuchthaus- und Gefängnisgefangenen, welche in den letzten fünf Jahren eine Zuchthaus- oder Gefängnisstrafe über sechs Monate verbüssten;
   b) ausnahmsweise "erstmals" Bestrafte, die gemein- oder fluchtgefährlich sind.

3. *Für männliche Verwahrte gemäss Artikel 42 StGB:*
   Kanton Argau: Verwahrungsanstalt Lenzburg (100 Plätze)
   Kanton Bern: Verwahrungsanstalt Thorberg (150 Plätze)

4. *Für administrativ Eingewiesene* (Vormundschaftsrecht oder kantonales Versorgungsrecht):

제2장 條約上의 施設

제1절 現存하는 條約上의 施設

제2조 地域의 州는 다음의 시설을 共同執行에 사용하게 한다.

① 초범자 重懲役刑 및 輕懲役刑의 남자수형자에 대해서는

베른주 : 비츠빌의 시설

졸로투른주 : 오버쉐그뤼의 시설

쭈크주 : 쭈크교도소

初犯인 수형자를 위한 시설에는

1. 최근 5년간 6월이상의 重懲役刑 또는 輕懲役刑을 받지 아니하고 또한 公共의 危險性 또 한 逃走의 위험성도 없는 중징역형 및 경징역형 수형자가
2. 예외적인 경우에는 미결수용자가 배정된다.

② 重懲役刑 및 輕懲役刑의 남자 미결수용자 에 대하여는

아아르고州 : 렌르버그교도소

바젤스타트州 : 바젤교도소

베른州 : 토르베르크교도소

루제른주 : 바우빌러무스施設과 제렐시설

未決收容者를 위한 施設에는

1. 최근 5년간 6월이상의 重懲役刑 또는 輕懲役刑을 받은 중징역형 및 경징역형 수형자가,
2. 예외적으로는 공동의 위험성이 있거나 도주의 워험성이 있는 자가 배정된다.

③ 형법 제42조에 의한 남자 피감호자에 대해서는

아아르고우州 : 렌즈버그감호원

베른州 : 토르베르그감호원

④ 행정상의 피지시처분자(후견법 또는 주원호법)에 대하여는

Kanton Bern: Arbeitsanstalt St. Johannsen (180 Plätze)
Kanton Schwyz: Arbeitsanstalt Kaltbach (50 Plätze)
Kanton Solothurn: Anstalt Schachen (65 Plätze)

B. Die vorgesehenen Konkordatsanstalten

Art. 3

Die Kantone Bern und Basel-Landschaft erklären sich bereit, folgende Konkordatsanstalten zu bauen und zu betreiben, vorausgesetzt, dass die erforderlichen Kredite nach dem kantonalen Recht bewilligt und die Bundesbeiträge nach den Artikeln 386 und 388 StGB zugesichert werden:

Kanton Bern: Strafanstalten für Frauen in Hindelbank. "Erstmals" Bestrafte und "Vorbestrafte" sind vollständig zu trennen. Für jede dieser beiden Kategorien sind je 80 Plätze vorgesehen. Als Übergangsheim steht der "Steinhof" in Burgdorf zur Verfügung.

Kanton Basel-Landschaft: Arbeitserziehungsanstalt für Männer (Art. 43 StGB[2)]) (für etwa 100 Zöglinge).

C. Weitere Konkordatsanstalten

Art. 4

Die Kantone der Region sehen je nach Bedarf weitere Konkordatsanstalten vor.

Der Kanton Basel-Stadt verpflichtet sich, im Falle des Abbruches seiner gegenwärtigen Strafanstalt unter den in Artikel 3 Absatz 1 erwähnten Voraussetzungen eine neue Konkordatsanstalt zu bauen, wobei er den Bedürfnissen der Region Rechnung tragen wird.

Für diese weiteren Konkordatsanstalten gelten die Bestimmungen dieses Konkordates.

III. Einweisung und Aufnahme der Verurteilten

Art. 5

Die Konkordatskantone verpflichten sich, ihre Verurteilten in die vor-

베른주 : 요한센노작소
슈비쯔주 : 칼트바르노작소
졸로투른주 : 샤켄원

제2절 豫見되는 條約上의 施設

제3조 베른 및 바젤란트샤프주는 필요로 하는 信用이 州法에 의해 허용되고 또한 聯邦分擔金이 형법 제386조 및 제3881)조에 의하여 保證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다음의 조약상의 시설을 건축하고 관리할 것을 동의한다.

베른주 : 힌델방크에 있는 여자교도소 初犯인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는 완전히 분리한다. 이 두 분류의 자들의 收容人員은 80명이 예정되어 있다. 부르도르프에 있는 스타인호프를 통과지의 가옥으로 조처한다.

바젤란트샤프트주 : 남자근로교정원(형법 제43조) 약 100명 수용

제3절 其他 條約上의 施設

제4조 地域의 州는 필요에 따라 그밖의 條約上의 施設을 마련한다.

바젤스타트州는 현존하는 교도소가 철거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문에 정한 요건아래에서 새로운 條約上의 시설을 建築할 의무를 지며, 이때 이 州는 지역의 요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의 조약상의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약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3장 有罪判決받은 자의 配定 및 收容

제5조 締約州는 현존하는 有罪判決을 받은 자를 條約上의 3월 이하의 단기

handenen Konkordatsanstalten einzuweisen. Kurze Gefängnisstrafen bis zu drei Monaten können von den Kantonen weiterhin in ihren Gefängnissen (Bezirksgefängnissen) vollzogen werden.

Die nachträgliche Versetzung eines Verurteilten in eine andere Konkordatsanstalt oder in eine weitere Anstalt bleibt unter besonderen Umständen vorbehalten.

Art. 6

Die Kantone, welche über Konkordatsanstalten verfügen, verpflichten sich, die Verurteilten der Region aufzunehmen. Sofern nachgewiesenermassen genügend Platz vorhanden ist, können sie auch Verurteilte der entsprechenden Kategorie aus Kantonen aufnehmen, die nicht zur Region gehören.

IV. Einweisungsverfahren

Art. 7

Der Kanton, der eine Strafe oder Massnahme zu vollziehen hat (genannt Vollzugskanton), weist den Verurteilten in eine der vorhandenen Konkordatsanstalten ein.

Der Vollzugskanton nimmt die Einweisung in die geeignete Anstalt auf Grund der Angaben vor, die er vom urteilenden Gericht erhält. Diese Angaben sowie das motivierte Urteil sind der Konkordatsanstalt zu übermitteln, welcher der Verurteilte zugewiesen wird.

V. Der Vollzug in den Konkordatsanstalten

Art. 8 Vollzugskompetenzen, Fürsorge

Der Vollzugskanton übt sämtliche Vollzugskompetenzen aus (wie endgültige oder bedingte Entlassung, Strafunterbruch, Urlaub, Aufhebung von Massnahmen, Rückversetzung, Schutzaufsicht, nachträglicher Vollzug der Strafe) und trifft die für die Verurteilten und ihre Angehörigen erforderliche Fürsorge, auch wenn der Vollzug in der Konkordatsanstalt eines anderen Kantons durchgeführt wird.

Die Bestimmungen des Konkordates über die Kosten des Strafvollzuges bleiben vorbehalten.

Art. 9 Anstaltsreglement

Alle in eine Konkordatsanstalt eingewiesenen Verurteilten unterstehen den gesetzlichen Vorschriften des Kantons, in dem die Anstalt liegt.

In wichtigen Angelegenheiten können sich die Verurteilten an die zuständigen Behörden des Vollzugskantons wenden, auch wenn sie in einer Konkordatsanstalt ausserhalb des Vollzugskantons untergebracht sind.

輕懲役刑은 州에 의하여 그 교도소(지구교도소)에서 집행될 수 있다. 有罪判決을 받은 자를 다른 條約上의 시설이나 기타 시설에 사후 이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보한다.

제6조 條約上의 施設을 관리하는 州는 지역의 有罪判決 받은 자를 收容할 의무를 진다. 확증된 충분한 장소가 있는 한 州는 지역에 소속되지 아니한 州로부터 오는 상응한 部類의 유죄판결받은 자도 수용할 수 있다.

제4장 配定節次

제7조 刑 또는 處分을 집행할 州(이른바 執行州)는 현존하는 조약상의 시설에 有罪判決받은 指示書에 의거하여 적절한 시설에 배정한다. 이 지시서 및 그 근거인 判決은 유죄판결받은 자가 配定되는 조약상 시설에 표시한다.

제5장 條約上 施設에서의 執行

제8조 (執行權限, 救護) 執行州는 집행이 다른 州의 條約上 施設에서 행하여지는 때에도 모든 執行에 관한 權限(즉, 종국적 또는 조건부석방, 州執行停地, 휴가, 처분의 취소, 再移管, 보호감독, 형의 사후집행)을 행사하며 또한 有罪判決 받은 자와 그의 가족에 필요한 救護를 행한다.
刑執行費用에 관한 條約의 제규정은 이를 유보한다.

제9조 (施設規定) 條約上 시설에 배정된 모든 有罪判決 받은 자는 그 시설이 있는 州의 법률상의 諸規定에 복종한다.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 유죄판결 받은 자는 그가 執行州 외부의 條約上 施設에 수용되어 있을 때에도 집행주의 관할 관청에 의뢰한다.

Art. 10 Recht zur Anstaltsbesichtigung und zum Besuch der Verurteilten

Die zuständigen Behörden der Vollzugskantone können jederzeit die Konkordatsanstalten besichtigen und mit den von ihnen eingewiesenen Verurteilten frei Rücksprache nehmen.

Art. 11 **Meldungen** über die Verurteilten

Die Konkordatsanstalten haben dem Vollzugskanton auf Wunsch hin über die Führung der Verurteilten zu berichten.

Bei besonderen Vorkommnissen, wie Flucht, Krankheit, Unfall, Tod eines Verurteilten, haben die Konkordatsanstalten dem Vollzugskanton sofort Meldung zu erstatten.

Art. 12 Seelsorge

In den Konkordatsanstalten ist die Seelsorge nach Konfessionen vorzusehen.

Art. 13 Krankheit und Unfall

Bei Krankheit eines Verurteilten gehen die Behandlungskosten, welche die normale ärztliche Betreuung in der Anstalt überschreiten, zu Lasten des Vollzugskantons. Die Konkordatsanstalten haben ihre Insassen in genügendem Umfang gegen Unfall und Invalidität zu versichern.

Art. 14 Kostgeld

Die Kantone der Region, welche die in Artikel 2 aufgezählten Konkordatsanstalten führen, erklären sich damit einverstanden, ein einheitliches Kostgeld zu verlangen. Dieses Kostgeld ist nach den Empfehlungen der Konkordatskonferenz festzusetzen.

Bei Konkordatsanstalten, die gemäss Artikel 4 neu erstellt werden oder im Hinblick auf dieses Konkordat wesentlich ausgebaut werden müssen und deren Betrieb entweder besonders qualifiziertes Personal oder besondere Einrichtungen erforderlich macht oder deren Insassen besonderer Behandlung bedürfen, können die erhöhten Betriebskosten bei der Festsetzung der Kostgelder gebührend berücksichtigt werden.

Konkordatsanstalten, welche ihre Insassen gegen Heilungskosten gemäss Artikel 13 dieses Konkordates ganz oder teilweise versichert haben, können einen entsprechenden Zuschlag zum Kostgeld verlangen.

Art. 15 Pekulium

Den Verurteilten der Konkordatsanstalten, wird nach Artikel 376 StGB ein Pekulium ausgerichtet. Die Kantone der Region erklären sich bereit, dieses nach einheitlichen Grundsätzen zu bemessen, wobei das Minimum nach den Empfehlungen der Konkordatskonferenz festzulegen ist.

제10조 (施設檢閱權과 受刑者에 대한 訪問權) 執行州의 관할관청은 언제든지 條約上 시설을 檢閱하고 당청에 의해 배정된 수형자와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다.

제11조 (受刑者에 관한 申告) 條約上 시설은 요청이 있으면 受刑者의 行狀에 관하여 執行州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형자에게 도주, 질병, 사고, 사망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조약상 시설은 집행주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司祭) 條約上 시설에는 司祭가 信仰告白에 대비한다.

제13조 (疾病과 事故) 수형자에게 疾病이 발생한 경우에 시설에서의 정상적인 疾病保護를 초과한 處置費用은 執行州가 이를 부담한다. 條約上 시설은 수용자를 충분한 범위내에서 事故 및 廢疾保險에 들게 하여야 한다.

제14조 (費用額) 제2조에 열거된 條約上 시설을 관리하는 地域의 州들은 통일된 비용액을 청구할 것에 동의한다. 이 費用額은 締約州會議의 권고에 따라 정한다.

제4조에 의해 새로이 설치되거나 이 條約과 관련하여 본질적으로 증축되어야 하고, 그 經營에 특별히 자격있는 자나 특별한 設備物을 필요로 하거나 수용자가 특별한 처우를 받은 것을 하는 條約上 시설의 경우에는 증축된 經營費用은 비용금액의 확정시에 적절히 고려될 수 있다.

그 수용자의 治療費用은 이 조약 제13조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 保險에 든 條約上 시설은 그에 따라 증가된 비용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 (페쿨리움) 條約上 시설에 수용된 收容者에게는 형법 제376조에 따라 페쿨리움을 행한다. 지역의 州들은 통일된 基本原則에 의해 이를 量定하고, 이때 그 최소한은 締約州의 勸告에 따라 확정한다.

Art. 16 Berufs- und Fortbildungskurse

Die Kantone der Region verpflichten sich, in den Konkordatsanstalten nach Möglichkeit Berufs- und Fortbildungskurse durchzuführen. Diese sollen den Verurteilten das Fortkommen nach der Entlassung erleichtern.

VI. Konferenz der Kantone der Region

Art. 17 Zusammensetzung und Aufgaben

Die Konferenz über die Planung im Strafvollzugswesen der Nordwest- und Innerschweiz (genannt Konkordatskonferenz) besteht aus den Regierungsvertretern der Konkordatskantone.

Der Konkordatskonferenz obliegt die Aufsicht über die Anwendung und Auslegung dieses Konkordates sowie die Entscheidung in Streitfällen. Sie entscheidet auch über die Errichtung weiterer Konkordatsanstalten. Ferner kann sie Empfehlungen an die Kantone der Region über Verbesserungen des Strafvollzuges im Sinne des Schweizerischen Strafgesetzbuches abgeben. Über das Verfahren erlässt die Konferenz ein Reglement.

VII. Weitere Bestimmungen

Art. 18 Inkrafttreten des Konkordates

Das Konkordat tritt nach Genehmigung durch die zuständigen Instanzen der Konkordatskantone und des Bundesrates frühestens am 1. Januar 1960 in Kraft.

Solange die gegenwärtige Strafanstalt Liestal noch in Betrieb ist, wird sie in die vorhandenen Konkordatsanstalten einbezogen.

In den nach den Artikeln 3 und 4 vorgesehenen Konkordatsanstalten wird der Vollzug nach Konkordat aufgenommen, sobald sie betriebsbereit sind.

Art. 19

Falls die Verhältnisse es erfordern sollten, kann die Konkordatskonferenz im Einverständnis mit den interessierten Kantonen die Zweckbestimmung einer Anstalt abändern.

Art. 20 Aus- und Weiterbildung des Anstaltspersonals

Die Konkordatskonferenz fördert die Aus- und Weiterbildung des Anstaltsper-

제16조 (職業敎育 및 補習敎育課程) 地域의 諸州는 조약상 시설에서 가급적 敎育敎育 및 補習敎育課程을 시행할 의무를 진다. 이 州들은 수형자들의 석방 후 生計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제6장 地域州 會議

제17조 (構成 및 職務) 北部 및 中部 스위스의 行刑플랜에 관한 議會(이른바 締約州 會議)는 체약주들의 정부대표들로 구성된다.

締約州會議는 紛爭事件에 있어서의 이 조약의 適用과 解釈 및 審判에 관하여 감독할 의무를 진다. 이 회의는 그밖의 조약상 施設의 設置에 관하여도 판단한다. 나아가 스위스 형법에 정한 行刑改善에 관하여 地域州들에게 권고를 할 수도 있다. 이 의회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을 발표한다.

제7장 其他 規定

제18조 (條約의 施行) 이 條約은 締約州와 聯邦參議院의 관할청에 의한 동의를 얻은 후에 1960.1.1부터 시행한다.

현재의 리스탈矯導所가 아직 運營되고 있는 한 이는 현존하는 조약상 시설에 포함한다.

제3조 및 제4조에 정한 條約上 시설에서 그 經營이 준비되는 대로 조약에 의한 집행을 수용한다.

제19조 均衡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締約州會議는 관련 州들의 동의를 얻어 시설의 目的規定을 개정할 수 있다.

제20조 (施設職員의 訓練 및 補習敎育) 締約州 회의는 시설직원의 訓練 및 補

sonals.

Art. 21 Widersprechende Abmachungen

Kantone der Region, welche früher mit andern Kantonen Vereinbarungen über den Strafvollzug getroffen hatten, welche diesem Konkordat widersprechen, verpflichten sich, diese auf den nächstmöglichen Termin anzupassen oder aufzulösen.

Art. 22 Kündigung

Jeder Kanton der Region kann das Konkordat unter Beobachtung einer sechsjährigen Frist auf Ende eines Kalenderjahres durch schriftliche Erklärung beim Präsidenten der Konkordatskonferenz kündigen.

習敎育을 촉진한다.

제21조 이 조약에 반하는 다른 州와의 行刑에 관한 協定을 일찌기 체결한 지역의 州들은 빠른 시일 내에 이 條約에 적합시키거나 이를 폐지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제22조 (廢棄通告) 지역의 각 州는 6년의 기간을 준수한 이후 歷年의 말일에 締約州會議의 議長에 대한 書面에 의한 意思表示를 통하여 이 조약의 폐기통고를 할 수 있다.

Westschweizerisches Konkordat über den Vollzug der Strafen und Massnahmen gegenüber Erwachsenen

vom 21. November 1963

Vom Bundesrat genehmigt am 2. September 1966

I. Anwendungsbereich
II. Konkordatsanstalten
  A. Bestehende Anstalten
  B. Geplante Anstalten
  C. Wie die bestehenden Anstalten auszurüsten sind
  D. Strafen und Massnahmen, deren Vollzug nicht unter dieses Konkordat fallen
III. Einweisung und Aufnahme der Verurteilten
IV. Einweisungsverfahren
V. Straf-und Massnahmenvollzug in den Konkordatsantalten
VI. Westschweizerische Konferenz der in Gefängnisengelegenheiten zuständigen Kantonalen Behörden
VII. Verschiedene Bestimmungen
VIII. Teilweiser Beitritt des Kantons Tessin

Die Kantone Freiburg, Waadt, Wallis, Neuenburg und Genf schliessen folgendes Konkordat ab, um den Straf- und Massnahmenvollzug in den westschweizerischen Kantonen zu harmonisieren und zu verbessern.

Im nachstehend angeführten Masse tritt der Kanton Tessin diesem Konkordat teilweise bei.

I. Anwendungsbereich

Art. 1

Das Konkordat gilt für den Vollzug der von den Konkordatskantonen gegenüber Erwachsenen ausgefällten Strafen und angeordneten Massnahmen, sofern der Vollzug in einer von diesem Konkordat vorgesehenen Anstalt stattfindet.

成人에 대한 刑罰 및 處分의 執行에 관한 西스위스 條約

(1963. 11. 21 조인, 1966. 9. 2. 연방참의원의 동의)

제1장 適用範圍(제1조)
제2장 條約上 施設
제1절 現存하는 施設(제2조)
제2절 計劃된 諸施設(제3조)
제3절 現存施設의 裝備(제4조～제5조)
제4절 그 執行이 이 條約의 對象이 아닌 刑罰과 處分 (제6조～제7조)
제3장 有罪判決을 받은 者의 配定 및 收容 (제8조～제9조)
제4장 配定節次 (제10조)
제5장 條約上 施設에서의 刑罰 및 處分의 執行 (제11조～제19조)
제6장 矯導所事務의 州管轄當局間의 西스위스會議 (제20조)
제7장 雜 則 (제23조～제25조)
제8장 테씬州의 部分加入 (제26조～제27조)

프라이부르크, 바아크, 발리스, 노이엔부르크 및 겐프州들은 西스위스州들에 있어서의 刑罰 및 處分의 執行을 균형화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약을 체결한다.

테씬州는 다음에 摘示한 방법으로 이 조약에 부분적으로 가입한다.

제1장 適用範圍

제1조 이 조약은 締約州에 의하여 成人에 과해진 刑罰과 명해진 處分의 執行이 이 조약에 정한 시설에서 행하여지는 한 이에 적용된다.

II. Konkordatsanstalten

A. Bestehende Anstalten

Art. 2

Zum Vollzug der Strafen und Massnahmen verfügen die westschweizerischen Kantone über folgende Anstalten:

1. *Für Erstmalige,* ob sie nun eine Zuchthaus- oder Gefängnisstrafe zu verbüssen haben:
   a) für Männer, die Anstalten von Bellechasse (Gefängnis und Kolonie);
   b) für Frauen, die Kolonie von Rolle.
   Ausnahmsweise und aus wichtigen Gründen können diese Anstalten auch Straffällige aufnehmen, die nicht Erstmalige sind.
2. *Für Rückfällige,* ob sie nun eine Zuchthaus- oder Gefängnisstrafe zu verbüssen haben:
   a) für Männer, die Anstalten der Plaine de l'Orbe (Gefängnis und Kolonie);
   b) für Frauen, das Frauengefängnis der Anstalten von Bellechasse.
   Ausnahmsweise können diese Anstalten Erstmalige aufnehmen, die gefährlich sind, oder bei denen Fluchtgefahr besteht oder eine Einweisung in eine Anstalt für Erstmalige aus einem anderen wichtigen Grund nicht angezeigt ist.
3. *Für Gewohnheitsverbrecher, verwahrt nach Artikel 42 des Schweizerischen Strafgesetzbuches (StGB):*
   a) für Männer, die Anstalten der Plaine der l'Orbe (Gefängnis und Kolonie);
   b) für Frauen, das Frauengefängnis der Anstalten von Bellechasse.
4. *Für Frauen, verurteilt nach Artikel 43 StGB):*
   eine Abteilung der Kolonie von Rolle.

제2장 條約上 施設

제1절 現存하는 施設

제2조 西스위스州들은 刑罰 및 處分의 執行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사용한다.

① 初犯의 경우에는 그가 현재 重懲役刑을 받을 자이건 또는 輕懲役刑을 받을 자이건 관계없이

1. 남자는 벨레카쎄의 시설(교도소 및 집단주거지)
2. 여자는 롤레의 집단거주지

예외적으로 또한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하여 이 시설들은 초범이 아닌 범죄인들을 수용할 수 있다.

② 累犯의 경우에는 그가 현재 重懲役刑을 받을 자이건 또는 輕懲役刑을 받을 자이건 관계없이

1. 남자는 드 로르브 平原의 施設(교도소 및 집단거주지)
2. 여자는 벨레카쎄의 여자교도소

예외적으로 이 시설들은 위험한 初犯이나 도주의 위험이 있거나 다른 중요한 이유에 의하여 초범을 위한 시설에의 配定이 指示되지 아니한 초범을 수용할 수 있다.

③ 常習犯罪人의 경우에는 스위스형법 제42조에 의해

1. 남자는 드로르브시원의 시설(교도소 및 집단거주지)에
2. 여자는 베레카세의 시설에 있는 여자교도소에 한다.

④ 스위스형법 제43조에 의하여 유죄선고를 받은 여자는 롤레의 집단거주지의 分所

B. Geplante Anstalten

Art. 3

Vorausgesetzt, dass die zuständigen kantonalen Behörden die nötigen Kredite gewähren und die im Schweizerischen Strafgesetzbuch (Art. 386, 388 und 389) vorgesehenen Bundesbeiträge zugesichert werden, erklären sich die Kantone Wallis, Neuenburg und Genf bereit, folgende Anstalten zu errichten und zu betreiben:

1. *Genf:*
   a) eine Anstalte in Genf für Verurteilte nach Artikel 43 StGB[2)], für die das System der Halbfreiheit eingeführt werden kann;
   b) eine Zellenabteilung im Spital von Genf, wo, genügend verfügbare Plätze vorausgesetzt, Verurteilte oder Verwahrte eingewiesen werden können, die ärztlicher Betreuung bedürfen und für die Sicherheitsmassnahmen nötig sind;
   c) eine vom künftigen Gefängnis von Genf abhängige Sonderabteilung zur Aufnahme von geistig anormalen Straffälligen, die wegen ihres Geisteszustandes und der dadurch verursachten schweren Störungen nicht in eine Gefängnis- oder Krankenpflegeanstalt eingewiesen oder dort behalten werden können;
   d) eine vom künftigen Gefängnis von Genf abhängige psychiatrische Abteilung. Ungeachtet dessen, ob nun Massnahmen aufgrund der Artikel 14 oder 15 StGB angeordnet worden sind, können in diese Anstalt eingewiesen werden geistig anormale Straffällige, insbesondere die besonders schwierigen oder gefährlichen, die einer besonderen, in der Anstalt erteilten ärztlichen und psychiatrischen Pflege bedürfen und die wegen ihrer erhöhten Fluchtgefahr nicht in ein Spital eingewiesen oder dort behalten werden können.
2. *Neuenburg:*
   a) eine Anstalt in La Chaux-de-Fonds für Verurteilte nach Artikel 43 StGB , für die das System der Halbfreiheit eingeführt werden kann;
   b) eine Krankenpflegestation mit Zellen für Gefangene und Verwahrte, die ärztlicher Pflege bedürfen, welche die Einweisung in ein Spital nötig machen, und für die Sicherheitsmassnahmen nötig sind.
3. *Wallis:*
   a) eine Anstalt für Verurteilte nach Artikel 43 StGB , für die das System der Halbfreiheit nicht eingeführt werden kann;
   b) eine von der Anstalt von Crêtelongue abhängige Abteilung zur Aufnahme

제2절 計劃된 諸施設

제3조 발리스, 노이엔부르크 및 겐프주는 관할 州當局이 필요한 信用을 保證하고 스위스 형법(제386조, 제388조 및 제389조)에 정한 聯邦分擔金을 확약하였음을 조건으로 다음의 시설들을 설립하고 운영할 것을 밝힌다.

① 겐프

1. 그에 대하여 半自由 體制가 도입될 수 있는 자인 형법 제43조에 의한 유죄판결 받은 자를 위한 겐프에 있는 시설
2. 충분히 조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醫療的 배려가 요청되고 또 保安處分이 필요한 유죄판결받은 자 또는 被監護者가 배정될 수 있는 겐프의 병원에 있는 독거실
3. 그 정신상태와 그로 인하여 야기된 重한 跛行性 때문에 교도소나 요양원에 收容되거나 입원될 수 없는 精神異常의 累犯者의 收容을 위한 겐프에 장래 설치될 교도소에 수설된 特別院
4. 겐프에 장래 설치될 교도소에 부설된 정신병원, 현재 형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의거한 처분이 명해져 있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특히 중하거나 위험한, 즉 시설에서의 醫療的 및 精神病的 看護가 필요하고 또 그 높은 도주의 위험때문에 정신병원에 배정되거나 입원될 수 없는 精神異常犯罪人은 이 시설에 배정될 수 있다.

② 노이엔부르크

1. 그에 대하여 半自由體制가 도입될 수 있는 자인 형법 제43조에 의거한 유죄판결받은 자를 위한 라쇼드퐁의 시설
2. 治療的 配慮가 필요하여 精神病院에 배정함이 긴요하고 또한 保安處分이 불가피한 수형자 및 피감호자를 위한 독거실이 딸린 요양소.

③ 발리스

1. 그에 대하여 半自由體制가 도입될 수 없는 자인 형법 제43조[4]에 의거한 유죄판결받은 자를 위한 시설
2. 刑期滿了에 달하였고 또 그에 대하여 半自由에까지 이를 수 있는 보다 많

von Verurteilten, die am Ende ihrer Strafverbüssung angelangen und für die das System grösserer Freiheit, die bis zur Halbfreiheit gehen kann, eingeführt werden kann.

C. Wie die bestehenden Anstalten auszurüsten sind

Art. 4

Die Kantone Freiburg und Waadt verpflichten sich unter demselben Vorbehalt wie unter Artikel 3, die unter ihrer Hoheit stehenden Anstalten wie folgt auszurüsten:

a) die Anstalten Bellechasse werden mit dem nötigen Personal versehen, damit Gefangene, die die nötigen Fähigkeiten und eine genügend lange Strafe zu verbüssen haben, eine Berufsausbildung erwerben können;
b) die Kolonie von Rolle wird eine Abteilung für Verurteilte nach Artikel 43 StGB erhalten, die über eine für diese Kategorie vorbehaltene Werkstatt verfügt;
c) eine Abteilung mit erhöhten Sicherheitsvorkehrungen wird in den Anstalten der Plaine de l'Orbe für besonders gefährliche Gefangene und Verwahrte eingerichtet, bei denen alle anderen Überlegungen vor jenen der Sicherheit zurücktreten müssen.

Art. 5

Die Kantone Freiburg und Waadt werden die Möglichkeit und Zweckmässigkeit prüfen, für Erstmalige in den Anstalten von Bellechasse und für Rückfällige in den Anstalten der Plaine de l'Orbe Abteilungen für junge Erwachsene zu schaffen.

D. Strafen und Massnahmen, deren Vollzug nicht unter dieses Konkordat fallen

Art. 6 Kurze Strafen

Der Vollzug von Strafen unter drei Monaten fällt nicht unter dieses Konkordat. Die westschweizerischen Kantone behalten auf diesem Gebiet ihre volle Freiheit.

Die Kantone Freiburg und Waadt erklären sich jedoch bereit, auf Verlangen eines Konkordatskantons Straffällige, die wenigstens zu einem Monat verurteilt wurden, aufzunehmen, und zwar die Männer in den Anstalten von Bellechasse (Erstmalige) und in den Anstalten der Plaine de l'Orbe (Rückfällige) und die Frauen in der Kolonie von Rolle (Erstmalige) und im Frauengefängnis der Anstalten von Bellechasse (Rückfällige).

은 自身의 體制가 도입될 수 있는 유죄판결받은 자의 收容을 위한 크레떼롱그의 시설에 딸린 支院

제3절 現存施設의 裝備

제4조 프라이부르크州와 바아크州는 제3조에 규정된 동일한 留保하에 現存施設을 다음과 같이 장비한다.

1. 벨레카쎄의 시설에는 필요한 능력과 충분히 長期의 刑을 마친 수형자가 職業敎育을 받을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직원을 배치한다.
2. 롤레의 集團居住地에는 형법 제43조에 의한 有罪判決받은 자를 위한 作業場을 처리하는 部局을 둔다.
3. 드로르브平原의 시설에는 특별히 위험한 수형자 및 피감호자를 위한 증가된 保安裝備를 갖춘 부국을 설치한다.

제5조 프라이부르크주와 바아크州는 벨레카쎄의 시설에 수용된 累犯者와 드로르브平原의 시설에 수용된 累犯者를 위한 靑少年의 설립 가능성과 그 합목적성을 심사한다.

제4절 그 執行이 이 條約의 對象이 아닌 刑罰과 處分

제6조 (短期刑) 3월이하의 刑의 執行은 이 條約의 대상이 아니다. 西스위스州들은 이 범위내에서 완전한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프라이부르크州와 바아크州는 締約州의 신청에 의하여 적어도 1월의 刑宣告를 받은 범죄자와 나아가 벨레카세의 시설에(初犯)과 드로로브시만의 시설(累犯)에 수감된 남자와 롤레의 집단 거주지와 벨레카쎄의 시설에 있는 女子矯導所에 수용된 여자를 수용할 의사를 표명한다.

Art. 7 Massnahmen gemäss Artikel 14, 15, 44 und 45 StGB

Der Vollzug der in den Artikel 14, 15, 44 und 45 StGB vorgesehenen Massnahmen fällt nicht unter dieses Konkordat. Ausgenommen sind jene Massnahmen, die geistig anormale, besonders schwierige oder gefährliche Straffällige betreffen. Die westschweizerischen Kantone bleiben also völlig frei, diese Massnahmen in Anstalten (Gefängnis, Krankenpflegeanstalt oder Spital) zu vollziehen, die in diesem Konkordat nicht enthalten sind.

III. Einweisung und Aufnahme der Verurteilten

Art. 8

Die westschweizerischen Kantone verpflichten sich, ihre Gefangenen und Verwahrten in die Konkordatsanstalten einzuweisen. Vorbehalten bleiben die Artikel 6 und 7.

Unter besonderen Umständen bleibt die Überführung eines Gefangenen oder Verwahrten in eine andere Konkordats- oder Nichtkonkordatsanstalt während des Straf- oder Massnahmenvollzugs vorbehalten.

Art. 9

Die Kantone, die über Konkordatsanstalten verfügen, verpflichten sich, die Gefangenen und Verwahrten der Konkordatskantone aufzunehmen. Verfügen sie über genügend Plätze, können sie auch Gefangene und Verwahrte der Kategorie, für die die Anstalt bestimmt ist, aus Nichtkonkordatskantonen aufnehmen.

IV. Einweisungsverfahren

Art. 10

Der nach Artikel 374 StGB für den Vollzug des Urteils oder des Entscheides verantwortliche Kanton (im folgenden Urteilskanton genannt) weist nach seiner eigenen Würdigung den Verurteilten in die entsprechende Anstalt ein, gemäss den im Urteil enthaltenen Angaben. Das begründete Urteil und gegebenenfalls auch der im Verlaufe der Untersuchung erstellte psychiatrische Expertenbericht wird der Direktion der Konkordatsanstalt zugestellt.

Kommt die Anstaltsdirektion im Verlaufe des Straf- oder Massnahmenvollzugs zur Überzeugung, dass der Gefangene oder Verwahrte in eine andere Anstalt überwiesen werden sollte, stellt sie der zuständigen Behörde des Urteil-

제7조 형법 제14조, 제15조 제44조 및 제45조에 정한 處分의 執行은 이 조약의 대상이 아니다. 精神異常이 특히 중하거나 위험한 犯罪者에 대한 處分은 예외로 한다. 西스위스州들은 이 조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시설(교도소, 요양원 또는 정신병원)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이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장 有罪判決 받은 자의 配定 및 收容

제8조 西스위스州들은 수형자와 피감호자를을 條約上 施設에 배정할 의무를 진다. 제6조 및 제7조는 유보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刑罰 또는 處分의 執行期間 중에 수형자 또는 피감호자를 다른 非條約上 施設이나 조약상 시설에이송하는 것을 유보한다.

제9조 條約上 시설을 관리하는 州들은 締約州의 受刑者와 被監護者를 수용할 의무를 진다. 이 州들이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이들을 위해 시설이 규정되어 있는 그러한 범주의 수형자와 피감호자도 非締約州로부터 이들을 수용할 수 있다.

제4장 配定節次

제10조 형법 제374조에 의하여 判決 또는 裁判의 執行에 대해 책임이 있는 州(다음의 判決地州서 지정된)는 각 州의 허가에 의하여 有罪判決받은 자를 判決에 포함된 指示에 따라 상응한 시설에로 배정한다. 근거가 된 판결과 경우에 따라서는 調査進行 중에 제출된 精神病專門家의 報告書도 조약상 시설의 관리국에 제출한다.

刑 또는 處分의 집행이 진행 중에 施設管理局이 수형자 또는 피감호자가 다른 施設에로 移送되어야 한다는 확신에 이른 때에는 移送要請書를 判決地州의 관

skantons ein Überweisungsbegehren. Bei Meinungsverschiedenheiten zwischen dem Urteilskanton und der das Überweisungsbegehren stellenden Anstalt oder zwischen dem Urteilskanton und der Anstalt, in die die Überweisung begehrt wird, entscheidet die Westschweizerische Konferenz der in Gefängnisangelegenheiten zuständigen kantonalen Behörden nach dem im Ausführungsreglement zum Konkordat enthaltenen Verfahren.

V. Straf- und Massnahmenvollzug in den Konkordatsanstalten

Art. 11 Zuständigkeit

Der Urteilskanton übt in bezug auf den Strafvollzung alle gesetzlichen Kompetenzen aus, es sei denn, er habe sie ausdrücklich einem anderen Kanton delegiert. Er beschliesst insbesondere über die endgültige oder bedingte Entlassung, den Unterbruch der Strafe, die Aufhebung einer Massnahme, die Wiedereinweisung, den Aufschub des Strafvollzugs, die Überweisung in eine andere Anstalt, die Urlaubsgewährung, usw. In dem Masse, in dem er die Schutzaufsichtskompetenzen nicht an die Behörden des Kantons delegiert hat, in den sich der Gefangene nach seiner Entlassung begibt, übt er diese Kompetenz selbst aus. Der Urteilskanton trifft auch die nötigen Fürsorgemassnahmen gegenüber dem Gefangenen und Verwahrten oder seiner Familie.

Die Bestimmungen des Konkordats vom 23. Juni 1944 uber die Kosten des Strafvollzugs bleiben für jene Kantone vorbehalten, die diesem Konkordat beigetreten sind.

Art. 12

Die in einer Konkordatsanstalt Gefangenen und Verwahrten unterstehen den Gesetzes- und Reglementsvorschriften des Kantons, in dem die Anstalt ihren Sitz hat. Die Behörden dieses Kantons sind insbesondere zuständig, Disziplinarstrafen zu verhängen.

Art. 13 Besuchsrecht

Die zuständigen Behörden des Urteilskantons haben jederzeit das Recht, die Konkordatsanstalten zu besuchen.

Art. 14 Mitteilungen über die Gefangenen

Die Konkordatsanstalten informieren den Urteilskanton auf sein Verlangen über die Führung und den Gesundheitszustand des Gefangenen. Die Direktion dieser Anstalten nimmt insbesondere begründet Stellung zur bedingten Entlassung, Begnadigung, Urlaubsgewährung, zum Unterbruch der Strafe usw.

할관청에 제출한다. 判決地州와 移送申請書를 제출할 시설사이에 또는 판결지주와 이송이 요청되는 지역의 시설사이에 異見이 있는 때에는 교도소사무를 관장하는 州當局의 西스위스회의 條約施行規則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심판한다.

제5장 條約上 施設에서의 刑罰 및 處分의 執行

제11조 (管轄) 判決地州는 刑執行을 명시적으로 다른 州에 委任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관한 모든 법률상의 권한을 행사한다. 판결지주는 특히 종국적 또는 조건부석방, 형집행정치, 처분의 취소, 재배정, 형의 집행유예, 타시설에의 이송, 휴가허용 등을 결정한다. 判決地州가 수형자에게 釋放이 주어진 州의 당국에 保護監督權을 委任하지 아니한 처분에 있어서는 판결지주가 이 권한을 스스로 행사한다. 판결지주는 수형자 및 피감호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保護處分도 행한다.

行刑費用에 관한 1944.6.23. 條約의 諸規定은 이 조약에 가입한 모든 州에 대하여 이를 유보한다.

제12조 條約上 施設에 수용된 수형자 및 피감호자는 이 시설이 소재하는 州의 法律 및 規則에 복종한다. 이 州의 당국은 특히 懲戒罰의 부과에 管轄權을 가진다.

제13조 (訪問權) 판결지주의 관할관청은 언제라도 조약상 시설을 방문할 권한을 가진다.

제14조 (受刑者에 과한 報告) 조약상 시설은 신청에 의하여 受刑者의 行狀 및 健康狀態에 관하여 판결지주에 보고한다. 이 시설의 管理國은 특히 조건부석방, 恩赦, 휴가부여, 刑執行停止 등에 관한 理由附의 意見을 결정한다.

Bei Flucht, schwerer Krankheit, Unfall oder Tod setzt die Direktion sowohl den Kanton, dem sie untersteht, als auch den Urteilskanton sofort in Kenntnis.

Art. 15 Seelsorge

Die Konkordatsanstalten sorgen für die Seelsorge der Gefangenen und Verwahrten.

Art. 16 Krankheit und Unfall

Bei Krankheit oder Unfall eines Gefangenen oder Verwahrten gehen die Behandlungskosten zu Lasten des Urteilskantons.

Die Gefangenen und Verwahrten werden nach einheitlichen Massstäben und zureichend gegen Unfälle und Invalidität versichert.

Art. 17 Pensionspreis

Die Pensionskosten der Gefangenen und Verwahrten gehen zu Lasten des Urteilskantons. Die Bestimmungen des Konkordats vom 23. Juni 1944 über die Kosten des Strafvollzugs bleiben für jene Kantone vorbehalten, die ihm beigetreten sind.

Der Pensionspreis in den Konkordatsanstalten wird festgesetzt unter Berücksichtigung der Bestimmung einer jeden Anstalt und den sich daraus ergebenden Lasten sowie der näheren Betriebsumstände. Diese Preise werden nach den Richtlinien der Westschweizerischen Konferenz der in Gefängnisangelegenheiten zuständigen kantonalen Behörden durch jene Kantone festgesetzt, denen die betreffenden Anstalten unterstellt sind.

Art. 18 Berufsbildung

Die Konkordatskantone verpflichten sich, nach Möglichkeit in den ihnen unterstellten Anstalten Berufs- und Weiterbildungsmöglichkeiten einzuführen, die die Erziehung der Gefangenen und ihre Rückkehr in die Freiheit erleichtern sollen.

Art. 19 Anspruch der Gefangenen auf einen Teil ihres Arbeitseinkommens

Die in den Konkordatsanstalten eingewiesenen Gefangenen und Verwahrten erhalten einen Teil ihres Arbeitseinkommens, gemäss den Bestimmungen des Schweizerischen Strafgesetzbuches. Die westschweizerischen Kantone erklären sich bereit, diesen Anteil zu bestimmen nach einheitlichen Grundsätzen, die von der Westschweizerischen Konferenz der in Gefängnisangelegenheiten zuständigen kantonalen Behörden aufzustellen sind.

도주, 중병, 사고 또는 사망의 사유가 수형자에게 발생한 때에는 관리국 및 동국이 소재하는 州, 그리고 판결지주에도 즉시 이를 통지한다.

제15조 (信仰配慮) 조약상 시설은 수형자 및 피감호자의 신앙을 배려한다.

제16조 (疾病 및 事故) 수형자 또는 피감호자에게 疾病이나 事故가 발생한 경우에 그 處遇配慮은 판결지주의 부담으로 한다.

수형자와 피감호자는 事故와 廢疾에 대비하여 통일된 尺度에 따라 충분하게 保險에 들도록 한다.

제17조 (食費) 수형자와 피감호자의 食費는 판결지주의 부담으로 한다. 行刑費用에 관한 1944.6.23 조약의 제규정은 이에 가입한 모든 주에게 이를 유보한다.

條約上 施設의 食費는 각 시설의 규정과 이로부터 밝혀지는 負担 및 상세한 運營狀態를 고려하여 정한다. 이 비용은 교도소사무의 관할 주당국의 西스위스會議의 指針에 따라 당해 시설이 不在한 각 州에 의하여 정한다.

제18조 (職業敎育) 締約州는 가능한 한 그 州에 소재한 시설에서 수형자의 敎育과 自由에의 復歸를 용이하게 할 職業敎育 및 補習敎育의 도입할 의무를 진다.

제19조 (受刑者의 作業所得 일부의 請求權) 條約上 施設에 배속된 수형자와 피감호자는 西스위스 형법전의 제규정에 따라 그의 作業所得에 일부를 가진다. 西스위스州들은 교도소사무 관할 州當局의 西스위스會議에 의해 정해진 통일된 원칙에 의거하여 이 몫을 정할 것을 표명한다.

VI. Westschweizerische Konferenz der in Gefängnisangelegenheiten zuständigen kantonalen Behörden

Art. 20

Die Westschweizerische Konferenz der in Gefängnisangelegenheiten zuständigen kantonalen Behörden setzt sich zusammen aus einem Vertreter eines jeden westschweizerischen Kantons. Jede Kantonsregierung bezeichnet einen Staatsrat, der sie in der Konferenz vertritt und in ihrem Namen handelt.

Ein Vertreter des Kantons Tessin nimmt an den Sitzungen mit beratender Stimme teil.

Die Konferenzmitglieder können sich durch Beamte verbeiständen lassen, welche in den Konkordatskantonen mit dem Strafvollzug betraut sind. Sie haben keine beschliessende Stimme.

Die Konferenz bezeichnet einen Präsidenten für eine vierjährige Amtszeit. Er ist wiederwählbar.

Die Konferenz bestellt ein Sekretariat, dessen Kosten von den Konkordatskantonen gemeinsam getragen werden.

Die Konferenz bestimmt ihr Verfahren selbst. Sie kann Ausschüsse mit Sonderaufgaben betrauen.

Die Konferenz regelt und überwacht den Vollzug und die Auslegung des Konkordates. In diesem Rahmen entscheidet sie Meinungsverschiedenheiten zwischen zwei Konkordatskantonen. Sie kann den Konkordatskantonen die Schaffung neuer Anstalten oder Verbesserungen im Strafvollzug vorschlagen.

Die Konferenz tritt jedesmal zusammen, wenn es nötig erscheint, mindestens aber einmal jährlich. Sie wird einberufen, wenn ein Konkordatskanton dies verlangt.

Art. 21

Wenn die Umstände es rechtfertigen, kann die Westschweizerische Konferenz der in Gefängnisangelegenheiten zuständigen kantonalen Behörden im Einverständnis mit den betroffenen Kantonen die Bestimmung der Konkordatsanstalten ändern.

Art. 22

Die Westschweizerische Konferenz der in Gefängnisangelegenheiten zuständigen kantonalen Behörden fördert die Berufs- und Weiterbildung der Anstaltsangestellten.

제6장 矯導所事務의 州管轄當局間의 西스위스會議

제20조 (矯導所事務의 管轄) 州當局간의 西스위스會議는 모든 西스위스州의 代表者들로 구성한다. 각 州政府는 이 회의에서 각주를 대표하며 또 州의 이름으로 행위하는 國家參事官을 임명한다.

테씬州의 대표자는 審議權을 가지고 의회에 참가한다.

會議의 會員은 체약주에서 行刑을 委任받은 공무원의 助力을 받을 수 있다. 이 公務員은 議決權을 가지지 아니한다.

이 회의는 4년 임기의 議長을 선출한다. 의장은 延任될 수 없다.

회의는 1인의 書記를 임명하며, 그 費用은 締約州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회의는 그 절차를 스스로 규정한다. 이 회의는 특별임무를 가지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회의는 條約의 執行 및 釋放을 규율·감독한다. 이 범위내에서 이 회의는 2개의 締約州 사이의 異見을 심판한다. 이 회의는 새로운 시설의 創設이나 行刑의 改善을 제안할 수 있다.

會議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어도 매년에 1회 會合을 가진다. 締約州가 要請하는 때에는 회의가 소집된다.

제21조 事情이 許容하는 때에는 矯導所事務의 州管轄 당국간의 西스위스會議는 관련된 州들과의 합의하에 조약상 시설의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제22조 교도소사무의 주관할 당국간의 西스위스會議는 시설의 雇傭人들의 職業敎育 및 補習敎育을 장려한다.

VII. Verschiedene Bestimmungen

Art. 23 Inkrafttreten

Nach Genehmigung durch die zuständigen Behörden der Konkordatskantone und den Bundesrat tritt dieses Konkordat am 1. Januar 1969 in Kraft.

In bezug auf die in den Artikeln 3 und 4 vorgesehenen Konkordatsanstalten tritt das Konkordat in Kraft, sobald sie betriebsbereit sind. Die Westschweizerische Konferenz der in Gefängnisangelegenheiten zuständigen kantonalen Behörden wacht darüber, dass die Studien und Arbeiten zur Schaffung dieser Anstalten zeitgerecht unternommen werden.

Art. 24 Widersprechende Abmachungen

Die Konkordatskantone, die diesem Konkordat widersprechende Abmachungen getroffen haben, verpflichten sich, diese schnellstmöglich zu ändern oder aufzuheben.

Art. 25 Kündigung

Jeder Konkordatskanton kann dieses Konkordat unter Wahrung einer fünfjährigen Frist auf das Ende eines Kalenderjahres kündigen.

Das Kündigungsschreiben hat die Kantonsregierung an den Präsidenten der Westschweizerischen Konferenz der in Gefängnisangelegenheiten zuständigen kantonalen Behörden zu richten.

VIII. Teilweiser Beitritt des Kantons Tessin

Art. 26 Einweisung von Tessiner Gefangenen oder Verwahrten in die Konkordatsanstalten

Die westschweizerischen Kantone sind bereit, die vom Kanton Tessin eingewiesenen Verurteilten aufzunehmen:

a) in den Anstalten für Erstmalige, Rückfällige und aufgrund von Artikel 42 StGB Verwahrte, sofern es sich um französisch- oder deutschsprachige Verurteilte handelt;
b) in den Anstalten, die für Verurteilte nach Artikel 43 StGB bestimmt sind;
c) in den Anstalten, die für besonders schwierige oder gefährliche geistig anormale Verurteilte bestimmt sind.

제7장 雜 則

제23조 (施設日) 이 條約은 체약주의 관할관청과 聯邦參議院의 동의를 얻어 1969.1.1.부터 시행한다. 조약은 제3조 및 제4조에 정한 條約上 施設들에 관하여는 이들이 運營準備가 된 때부터 시행된다. 교도소사무의 州管轄當局 西스위스會議는 이 시설들의 창설을 위한 硏究 및 作業이 시기적절하게 시도되었는지를 감독한다.

제24조 (條約에 反하는 協定) 이 조약에 반하는 協定을 체결한 締約州는 이 협정을 가능한 신속히 개정하거나 폐기할 의무를 진다.

제25조 (廢棄通告) 각 체약주는 5년이 保全期間을 거쳐 歷年의 말에 이 조약의 廢棄通告를 할 수 있다.

제8장 테씬州의 部分加入

제26조 (테씬州의 受刑者 또는 被監護者의 條約上 施設에의 配置) 西스위스州들은 테씬州에 의해 배치된 有罪判決받은 자를

1. 프랑스어나 독일어를 사용하는 유죄를 선고받은 자인 初犯者, 累犯者 및 형법 제42조에 근거한 被監護者를 위한 시설에,
2. 有罪判決을 받은 자를 위하여 형법 제43조에 규정된 시설에,
3. 특히 중하거나 위험한 精神異常의 有罪判決받은 자를 위하여 규정된 시설에 수용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Art. 27 Einweisung von westschweizerischen Gefangenen und Verwahrten in die Tessiner Anstalten

Der Kanton Tessin ist bereit, die von westschweizerischen Kantonen eingewiesenen Verurteilten im Gefängnis von Lugano oder in einer spezialisierten Anstalt aufzunehmen, sofern es sich um italienischsprachige Gefangene oder Verwahrte handelt und sofern Plätze vorhanden sind.

제27조 (西스위스의 受刑者 및 被監護者의 테씬施設에의 配置) 테씬州는 스위스州들에 의하여 배치된 有罪判決받은 자는 이들이 이태리어를 사용하는 受刑者 또는 被監護者이며 또 수용공간이 있을 때에는 이들을 루가노교도소 또는 특별시설에 수용할 준비를 갖춘다.

Nachtrag zum Westschweizer Konkordat vom 21. November 1963 über den Vollzug von Strafen und Massnahmen gegenüber Erwachsenen

vom 27. November 1980

Vom Bundesrat genehmigt am 19. Januar 1981

Die Kantone Freiburg, Waadt, Wallis, Neuenburg, Genf und Tessin sowie der Kanton Jura treffen nachstehende Vereinbarung:

Art. 1

Dem Beitrittsgesuch des Kantons Jura zum Westschweizer Konkordat über den Vollzug der Strafen und Massnahmen gegenüber Erwachsenen (nachstehend Konkordat) wird zugestimmt. Der Kanton Jura wird vollberechtigtes Mitglied des Konkordates.

Art. 2

Der Kanton Jura erklärt Zustimmung zum Konkordat und zu den Richtlinien und Entscheiden der Westschweizer Konferenz der in Gefängnisangelegenheiten zuständigen kantonalen Behörden über dessen Vollzug.

Art. 3

1. Dieser Beitritt unterliegt den nachstehenden besonderen Bedingungen:

a) Bis zur Änderung des Konkordates besteht für den Kanton Jura keine Verpflichtung, den anderen Konkordatskantonen eine oder mehrere Anstalten zum Vollzug der konkordatlichen Aufgaben zur Verfügung zu stellen.

b) Der Kanton Jura erklärt sich bereit, nach der Änderung des Konkordates einen angemessenen Teil der aus dem Vollzug der konkordatlichen Aufgaben erwachsenden Belastungen zu übernehmen.

2. Diese Beteiligung wird entweder in der Bereitstellung von Anstalten bestehen, oder in einem, in Berücksichtigung der von den anderen Kantonen erbrachten Leistungen gleichwertigen finanziellen Beitrag.

成人에 대한 刑罰 및 處分의 執行에 관한 西스위스條約

(1980. 11. 27. 조인, 1981. 1. 19. 연방참의원의 동의)

프라이부르크, 바아트, 발리스, 노이엔부르크, 겐프 및 테씬州와 유라州는 다음의 協定을 締結한다.

제1조 成人에 대한 刑罰 및 處分의 執行에 관한 西스위스條約에의 유라州의 가입신청에 동의한다. 유라州는 완전한 權利를 가지는 이 조약의 會員이다.

제2조 유라州는 條約 및 교도소업무의 管轄當局의 행형집행에 관한 西스위스 會議의 指針과 審判에 관한 동의를 표명한다.

제3조 ① 이 加入은 다음의 특별한 諸條件에 복종한다.

1. 이 유라州는 條約이 改正될 때까지 조약상 任務의 執行을 위하여 1개 또는 다수의 시설을 다른 締約州의 조치에 맡도록 할 의무가 없다.
2. 유라州는 조약의 개정 후에 條約上 任務의 執行에서 생길 부담의 적절한 부분은 인수할 뜻을 표명한다.

② 이 加入은 시설의 준비나 또는 다른 체약주에 의한 給付를 고려하여 同價値의 財政的 負擔金을 부담하는 것이다.

第111輯　外國 矯正關係法令集 (Ⅲ)

1988. 12. 5 印刷
1988. 12. 20 發行

非賣品

編輯및發行 **法務部矯政局**

印　刷 **永登浦矯導所**

政刊委審議畢